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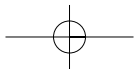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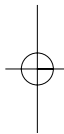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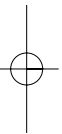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목차

2013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제1편 201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17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17
2. 농경지	18
제2절 농가경제	21
1. 소득 동향	21
2. 가계지출 동향	25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26
4. 농가자산 동향	26
5. 농가부채 동향	27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27
7. 주·부업별 지표	28
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29
9. 경영규모별 주요지표	30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30
11. 지역별 주요지표	31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31
1. 개황	31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32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34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35
1. 개황	35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37
3. 농림업 부가가치	38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39
1. 식량 수급 동향	39
2. 원예·특용작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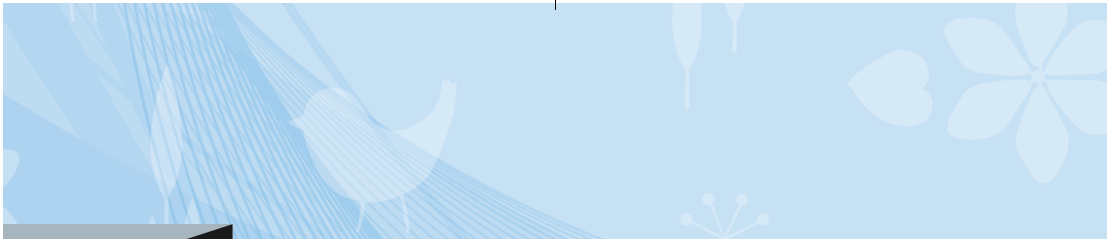
3. 축산물과 사료작물	47
제2절 식품 수급동향	52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52
2. 식품 수요현황	55
3. 식품산업 동향	62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67
1. 농식품 수출입동향	67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72

### 제3장 국제 곡물수급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74
1. 국제곡물 수급동향	74
2. 국제곡물 가격동향	77
제2절 주요국가 농업·농촌 동향 및 양자 간 통상협력	80
1. 주요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80
2. 주요국가 통상협력	92

## 제2편 201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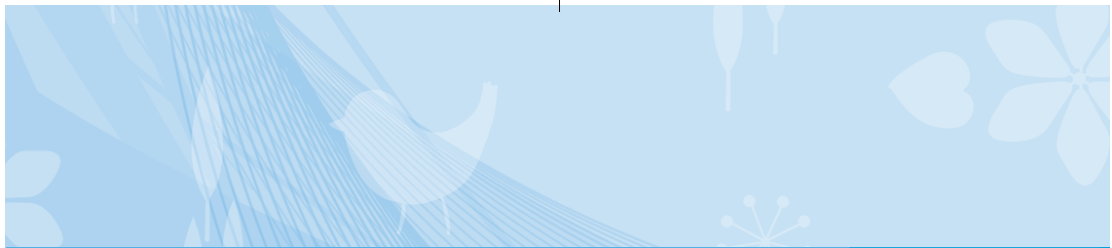
제1장 총론	105
제2장 농가 경영혁신·소득 안정 및 핵심인력 양성	
제1절 농가 소득 안정	109
1.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추진	109
2.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111
3.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운영	113
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	116
5. FTA 피해보전 직불제 운영	118



# 목차

<p>제2절 농가경영 안정지원 120</p> <p>1. 농지은행 활성화 120</p> <p>2. 재해농가 지원 확충 124</p> <p>3.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125</p> <p>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128</p> <p>5. 농업부문 세제지원 129</p> <p>6.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132</p> <p>7. 농림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134</p> <p>8. 농기계 임대 활성화 136</p> <p>9. FTA 폐업지원 137</p> <p>제3절 핵심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139</p> <p>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39</p> <p>2. 농업법인 활성화 142</p> <p>3. 농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144</p> <p>4.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147</p> <p>5. 귀농·귀촌 지원대책 정비 150</p> <p><b>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b></p> <p>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152</p> <p>1. 산지 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152</p> <p>2.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154</p> <p>3.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156</p> <p>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158</p> <p>5.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163</p> <p>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66</p> <p>1. 공공비축 제도 운영 166</p> <p>2. 쌀 안정생산 169</p> <p>3. 발식량작물 안정생산 170</p> <p><b>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b></p> <p>제1절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농식품 R&amp;D 혁신 172</p> <p>1.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 172</p> <p>2.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175</p> <p>3.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 177</p> <p>4. 농림축산식품 R&amp;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180</p>	<p>5. 종자산업 육성 185</p> <p>6. 곤충산업 육성 187</p> <p>제2절 농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p> <p>1. 농협 사업구조 개편 190</p> <p>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내실화 194</p> <p>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197</p> <p>4. 농지제도 개선 201</p> <p><b>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b></p> <p>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203</p> <p>1. WTO/DDA 협상대응 203</p> <p>2. 한·미 FTA 협상 207</p> <p>3. 한·EU FTA 협상 210</p> <p>4. 한·페루 FTA 협상 211</p> <p>5. 한·콜롬비아 FTA 협상 213</p> <p>6. 한·호주 FTA 협상 214</p> <p>7. 한·뉴질랜드 FTA 협상 216</p> <p>8. 한·인도 CEPA 협상 218</p> <p>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강화 220</p> <p>1.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 220</p> <p>2.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223</p> <p>3. OECD 활동 225</p> <p>4. FAO 활동 229</p> <p><b>제6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b></p> <p>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233</p> <p>1. 농산물·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확대 233</p> <p>2. 농식품안전성검사 확대 235</p> <p>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대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236</p> <p>4.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관리 238</p> <p>5. 농식품 정보망 구축·지원 및 소비정보 교류사업 240</p> <p>6. 축산물 이력제 추진 242</p>
---	---





제2절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245
1. 가축질병 방역강화	245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강화	247
3.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249
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251
제3절 친환경농업 육성	253
1.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253
2. 친환경 비료 지원	255
3. 친환경 농업 직불제	257
4. 친환경 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260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262

**제7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264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264
2.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266
3.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	268
4. 전통주 산업육성	271
5.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74
6. 식생활 교육 추진	276
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활성화	280
제2절 농식품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282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282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286

**제8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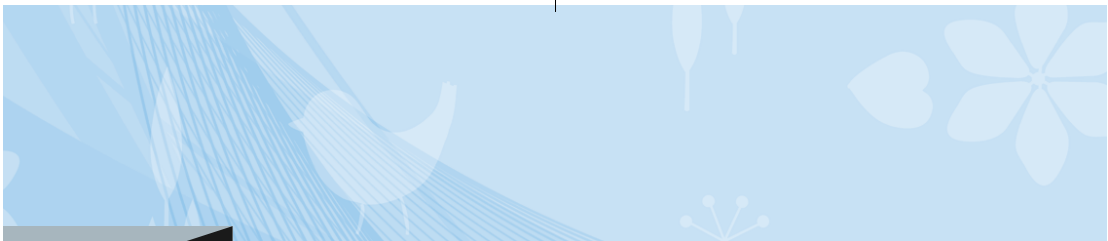
제1절 농촌 복지여건 개선	290
1. 농촌 서비스기준 운용	290
2. 농촌 영향평가 운용	293
3.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95
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298
5. 여성·취약농가 지원 확대	300
6. 농업인재해보험 보상수준 확대	303
7. 농지연금 활성화	305

제2절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산업육성	306
1. 농촌 종합개발	306
2. 농촌 주거환경 개선	311
3.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313
4.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319
5. 농업의 6차산업화	321
6. 향토자원 산업화	323
7. 농공단지 조성	326
제3절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328
1. 대구획 경지정리	328
2. 밭기반 정비	329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31
4. 배수개선 등 기타 기반정비	332
5. 수리시설 개보수	334
6. 농촌용수 개발사업	335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	338

**제3편 2013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1절 어업 구조	345
1. 어가 및 어가인구	345
2. 어업 총생산	348
3. 어선 등록 현황	349
4. 이용어장	351
5. 어업경영체	353
제2절 어가 경제	358
1. 어가소득	358
2. 어가 가계지출	359
3. 어가자산	359
4. 어가부채	360



# 목차

<b>제2장 국내·국제 수산업 동향</b>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361
1. 생산동향	361
2. 연근해어업	362
3. 양식어업	368
4. 내수면어업	369
5. 원양어업	370
제2절 국내 수산물 수출·수입	371
1. 수출	371
2. 수입	373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377
1. 수급	377
2. 소비	377
3. 가격	378
제4절 국내 어업 및 어장환경	379
1. 어황	379
2. 자원동향	381
3. 연안어장 및 환경 변화	384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388
1. 세계 수산물 생산	388
2. 세계 수산물 교역	389
<b>제4편 2013년 수산업 정책</b>	
제1장 총론	393
<b>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b>	
제1절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400
1.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400
2. 유어산업 육성	405
3. 내수면산업 육성	408
4.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411
5. 수산물 수출 진흥	414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416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416
2. 자원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417
3. 미래형 자원관리 체계 추진	419
4. 수산업협동조합 경영 정상화	423
5. 수산분야 창업 투자 기반 조성	425
<b>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b>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427
1.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427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429
3.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431
4.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432
5.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434
제2절 어업질서확립	437
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437
2.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439
3.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440
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442
<b>제4장 어가경영안정·소득증대</b>	
제1절 어가 소득 증대	444
1.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444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447
제2절 어가경영안정 지원	449
1. 직접피해보전제도 내실화	449
2. 어선원·어선보험 내실화	451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453
4. 수산분야 공제제도 추진	456
5. 적조 피해예방 및 방제 강화	457
6.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461

**제5장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어촌 활력 증진**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466
1. 어업후계인력 육성	466
2.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468
3. 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469
제2절 살기 좋은 어촌 개발	471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	471
2. 어촌종합개발사업 체계 개편	474
3.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476
4. 어항시설 확충	478
5. 어촌·어항 관광개발	480
6. 어촌·어항 관광 기반 조성	482

**제6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484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484
2.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체계 구축	485
3. 수출·수입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487
4. 수출·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488
5. 양식어장 환경 개선	491
제2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492
1.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492
2. 민간 가격안정 사업	494
3. 수산물 수급조절 지원 기능 강화	495

**제7장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제1절 양식업의 산업화 기반 확보	497
1.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497
2.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 적용	498
3.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	500
4.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502
제2절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	503
1. 수산물 10대 수출전략품목 육성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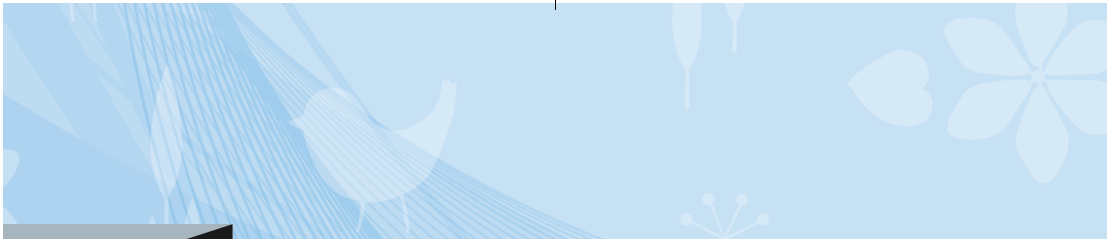
2. 수산종자산업 육성	506
3. 질병·백신·사료 기술 촉진	509
4. 관상어 산업 육성	517

**제8장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제1절 수산물 유통기반 강화	519
1. 수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개선	519
2. 수산물 위생·물류 환경 개선	521
제2절 수산식품 육성 지원	523
1. 가공시설 확충 및 거점별 지원	523
2. 소금산업 성장기반 마련	526
3. 품질인증제도 개편	529

**제9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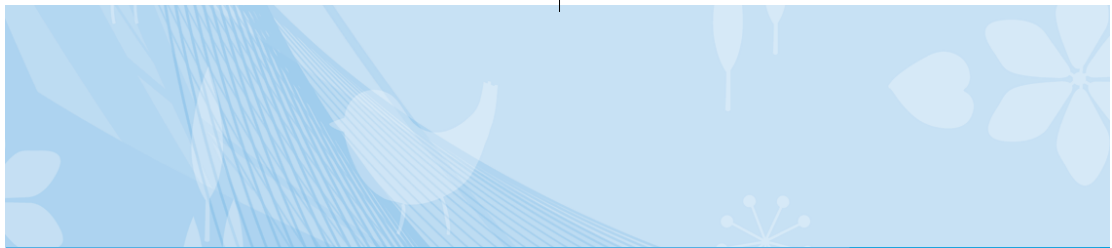
제1절 국제협상 강화	531
1. WTO-DDA 수산 분야 협상대응	531
2. FTA 수산 분야 협상 동향 및 대응	533
3. FTA 국내대책 이행	535
4.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538
5. 한·일 어업협정	541
6. 한·중 어업협정	545
7. 한·러 어업협정	547
8. 남북수산협력 사업 추진	551
제2절 해외 수산자원 개발	553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553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555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557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558



# 목차

## 제5편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가 및 어가인구 561</li> <li>2. 연도별 어가 현황(전·겸업별) 562</li> <li>3. 어업형태별 어가 현황 563</li> <li>4. 어가 및 어가인구 증감 현황 564</li> <li>5. 지역별 어가 및 어가인구 565</li> <li>6. 연도별·지역별 어업인구 566</li> <li>7. 성별 어업인구 및 어업종사 가구원 567</li> <li>8. 어업가구 568</li> <li>9. 어가소득 569</li> <li>10. 어가가계비 570</li> <li>11. 어가자산 571</li> <li>12. 어가부채 572</li> <li>13. 지구별·조합별 어촌계 및 어촌계원 현황 574</li> <li>14. 영어자금 공급 현황 575</li> <li>15. 연도별 수산정책자금 지원 현황 576</li> <li>16. 연도별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577</li> <li>17. 어업융면세유 공급 실적 578</li> <li>18. 어업인후계자 육성 현황 579</li> <li>19. 연도별 어업생산량 (어업별 총괄) 580</li> <li>20. 연도별 어업생산량 (품종별 총괄) 581</li> <li>21. 주요품종별 연도별 생산량(일반해면) 582</li> <li>22. 천해양식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588</li> <li>23.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592</li> <li>24.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594</li> <li>25. 연근해 주요 어업별 생산량 595</li> <li>26. 연근해어업 생산량(지역별) 596</li> <li>27.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지역별) 597</li> <li>28. 내수면어업 생산량 598</li> <li>29. 원양어업 생산 추이 599</li> <li>30.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600</li> <li>31.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601</li> <li>32. 원양업체 현황 602</li> <li>33. 원양어업 선량별·업종별 현황 603</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4.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604</li> <li>35. 수출입 실적 605</li> <li>36. 세계 수산물 수출입현황(FAO, 2011년) 612</li> <li>37. 세계 수산물 생산현황(FAO, 2012년) 613</li> <li>38. 연도별 수산물 가공 생산량 614</li> <li>39.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물량 615</li> <li>40.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금액 616</li> <li>41. 연도별 수산물 소비량 617</li> <li>42. 수산물 수급 현황 618</li> <li>43. 어업권 현황 619</li> <li>44. 연도별 어선 세력 620</li> <li>45. 연도별·톤급별 어선 척수 현황 621</li> <li>46. 연도별·어업별 어선등록 현황 622</li> <li>47. 인공어초 시설 현황 623</li> <li>48. 불법어업 단속 실적 625</li> <li>49.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626</li> <li>50. 국가 및 지방어항 건설 추진 현황 627</li> <li>51. 시·도별 국가 및 지방어항 건설 추진 현황 628</li> <li>52. 어촌 정주어항 지정 및 소규모어항 현황 629</li> <li>53. 어촌종합개발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실적 631</li> </ol>
--	---



# 표 · 그림목차

2013년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표목차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18	〈표 1-2-7〉 화훼산업 현황	44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19	〈표 1-2-8〉 특용작물 수급동향	45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20	〈표 1-2-9〉 버섯류 수급동향	46
〈표 1-1-4〉 휴경면적	20	〈표 1-2-10〉 버섯종류별 수출액	46
〈표 1-1-5〉 농가소득	21	〈표 1-2-11〉 인삼류 생산동향	47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22	〈표 1-2-12〉 쇠고기 수급동향	48
〈표 1-1-7〉 농업소득	22	〈표 1-2-13〉 사료 수급 추이	50
〈표 1-1-8〉 농업총수입	23	〈표 1-2-14〉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51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23	〈표 1-2-15〉 초지조성 실적	51
〈표 1-1-10〉 농업경영비	24	〈표 1-2-16〉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 (도시가구)	52
〈표 1-1-11〉 농업외소득	24	〈표 1-2-17〉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2012년도 도시가구평균)	53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25	〈표 1-2-18〉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54
〈표 1-1-13〉 가계비 지출	25	〈표 1-2-19〉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55
〈표 1-1-14〉 가처분소득 / 잉여금	26	〈표 1-2-20〉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57
〈표 1-1-15〉 농가자산	26	〈표 1-2-21〉 연도별 자금률 추이	59
〈표 1-1-16〉 농가부채	27	〈표 1-2-22〉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60
〈표 1-1-17〉 2013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28	〈표 1-2-23〉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61
〈표 1-1-18〉 2013 주 · 부업별 지표	29	〈표 1-2-24〉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62
〈표 1-1-19〉 2013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29	〈표 1-2-25〉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12)	63
〈표 1-1-20〉 2013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30	〈표 1-2-26〉 규모별 추이	64
〈표 1-1-21〉 2013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30	〈표 1-2-27〉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64
〈표 1-1-22〉 2013 지역별 주요지표	31	〈표 1-2-28〉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65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32	〈표 1-2-29〉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2012)	66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33	〈표 1-2-30〉 사업체수 연도별 추이	67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35	〈표 1-2-31〉 농식품 수출실적	68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36	〈표 1-2-32〉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69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36	〈표 1-2-33〉 농림수산물 수입실적	70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37	〈표 1-2-34〉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입실적	71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38	〈표 1-2-35〉 농식품 남북교역동향	72
〈표 1-2-1〉 연도별 식량 생산량	39	〈표 1-2-36〉 대북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73
〈표 1-2-2〉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40	〈표 1-2-37〉 대북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73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41	〈표 1-3-1〉 국제 주요 곡물 수급동향	76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42	〈표 1-3-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79
〈표 1-2-5〉 채소류 주요 품목별 생산동향	42		
〈표 1-2-6〉 과실류 수급동향	43		

## 표 · 그림목차

〈표 1-3-3〉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81	〈표 2-3-6〉 국가별 쌀 약정 현황	168
〈표 1-3-4〉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	81	〈표 2-4-1〉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173
〈표 1-3-5〉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81	〈표 2-4-2〉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176
〈표 1-3-6〉 중국의 주요 농업지표	84	〈표 2-4-3〉 농림식품 R&D 투자 현황	181
〈표 1-3-7〉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86	〈표 2-4-4〉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185
〈표 1-3-8〉 EU의 주요 농업지표	89	〈표 2-4-5〉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186
〈표 1-3-9〉 한·미간 농림축수산식품 교역 동향	93	〈표 2-4-6〉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187
〈표 1-3-10〉 주요 수출 품목	93	〈표 2-4-7〉 농식품투자조합 결성('10~'13) 현황	196
〈표 1-3-11〉 주요 수입 품목	94	〈표 2-4-8〉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 (2013년말 기준)	199
〈표 1-3-12〉 농림축수산식품 수출입 실적	97	〈표 2-5-1〉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지역별 현황	221
〈표 1-3-13〉 대 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림축산식품('13)	97	〈표 2-5-2〉 2013년도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	224
〈표 2-2-1〉 연도별 직불금 지급현황	116	〈표 2-6-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관리 추진 실적	237
〈표 2-2-2〉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요건 (법 제7조제1항 각 호)	119	〈표 2-6-2〉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여 현황	244
〈표 2-2-3〉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121	〈표 2-6-3〉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추진 현황	248
〈표 2-2-4〉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122	〈표 2-6-4〉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	256
〈표 2-2-5〉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122	〈표 2-6-5〉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256
〈표 2-2-6〉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123	〈표 2-6-6〉 유기질비료 지원조건(국고, '13년)	257
〈표 2-2-7〉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126	〈표 2-6-7〉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258
〈표 2-2-8〉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129	〈표 2-6-8〉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지급단가	263
〈표 2-2-9〉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130	〈표 2-6-9〉 친환경 축산물 인증현황	263
〈표 2-2-10〉 농업용 면세유 현황	131	〈표 2-7-1〉 6대 분야 18대 핵심기술	265
〈표 2-2-11〉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131	〈표 2-7-2〉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283
〈표 2-2-12〉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132	〈표 2-7-3〉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284
〈표 2-2-13〉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135	〈표 2-7-4〉 19개 수출 전략품목	284
〈표 2-2-14〉 2013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140	〈표 2-8-1〉 도시-농어촌 서비스 차이	290
〈표 2-2-15〉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143	〈표 2-8-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291
〈표 2-2-16〉 농업법인 주요 경영지표	143	〈표 2-8-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296
〈표 2-2-17〉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148	〈표 2-8-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297
〈표 2-3-1〉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청과부류)	156	〈표 2-8-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297
〈표 2-3-2〉 2013년 농축산물 신유통경로 거래액	160	〈표 2-8-6〉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299
〈표 2-3-3〉 2013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164	〈표 2-8-7〉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실적	301
〈표 2-3-4〉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167	〈표 2-8-8〉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인원	301
〈표 2-3-5〉 양곡년도말 공공비축미곡 재고량 목표 및 매입물량	168	〈표 2-8-9〉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302
		〈표 2-8-10〉 농업인 안전보험 추진실적	304

2013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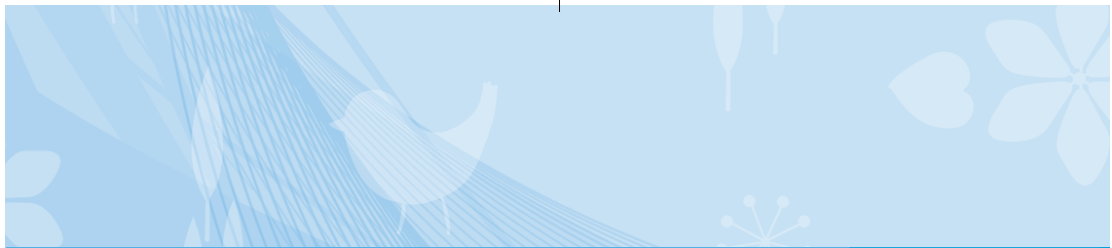
〈표 2-8-11〉 농지연금 월 지급금 예시 (종신형 기준, 감평)	305	〈표 3-1-8〉 어업 총생산(부가가치) 현황	348
〈표 2-8-12〉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	305	〈표 3-1-9〉 연도별 어선 등록 현황	349
〈표 2-8-13〉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307	〈표 3-1-10〉 연도별 선질별 어선 등록 현황	350
〈표 2-8-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308	〈표 3-1-11〉 연도별 톤급별 어선 등록 현황	350
〈표 2-8-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309	〈표 3-1-12〉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53
〈표 2-8-16〉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310	〈표 3-1-13〉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353
〈표 2-8-17〉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312	〈표 3-1-14〉 연도별 연안어업 경영체	354
〈표 2-8-18〉 농업인 정보화 수준	318	〈표 3-1-15〉 연도별 근해어업 경영체	355
〈표 2-8-19〉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325	〈표 3-1-16〉 연도별·면적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56
〈표 2-8-2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325	〈표 3-1-17〉 연도별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356
〈표 2-8-21〉 부처별 지원 현황	327	〈표 3-1-18〉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57
〈표 2-8-22〉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329	〈표 3-1-19〉 연도별 원양업체 및 조업척수	357
〈표 2-8-23〉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330	〈표 3-1-20〉 연도별 어가소득	358
〈표 2-8-2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331	〈표 3-1-21〉 연도별 어업소득	358
〈표 2-8-25〉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333	〈표 3-1-22〉 연도별 어업의 소득	359
〈표 2-8-26〉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334	〈표 3-1-23〉 연도별 기계지출	359
〈표 2-8-2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334	〈표 3-1-24〉 연도별 어가자산	360
〈표 2-8-28〉 연도별 논 및 수리담 현황	336	〈표 3-1-25〉 연도별 어가부채	360
〈표 2-8-29〉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336	〈표 3-2-1〉 어업별 생산 현황	361
〈표 2-8-30〉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336	〈표 3-2-2〉 부류별 생산 현황	362
〈표 2-8-31〉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337	〈표 3-2-3〉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	363
〈표 2-8-32〉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 중 지구 개발유형	338	〈표 3-2-4〉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 현황	367
〈표 2-8-33〉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340	〈표 3-2-5〉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 현황	368
〈표 2-8-3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341	〈표 3-2-6〉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 현황	369
〈표 3-1-1〉 연도별 어업가구와 인구	345	〈표 3-2-7〉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 현황	370
〈표 3-1-2〉 연도별 총인구 대비 어가 인구의 비율	346	〈표 3-2-8〉 수산물 수출 현황	371
〈표 3-1-3〉 연도별 어업종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346	〈표 3-2-9〉 품목별 수출 현황	372
〈표 3-1-4〉 연도별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347	〈표 3-2-10〉 국가별 수출 현황	372
〈표 3-1-5〉 연도별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347	〈표 3-2-11〉 주요 어종별 수출 현황	373
〈표 3-1-6〉 연도별 어업 생산량 현황	348	〈표 3-2-12〉 수산물 수입 현황	374
〈표 3-1-7〉 연도별 어업 생산액 현황	348	〈표 3-2-13〉 품목별 수입 현황	374
		〈표 3-2-14〉 국가별 수입 현황	375
		〈표 3-2-15〉 주요 어종별 수입 현황	376
		〈표 3-2-16〉 수산물 수급 동향	377
		〈표 3-2-17〉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 현황	378
		〈표 3-2-18〉 동물성 단백질 공급 현황	378
		〈표 3-2-19〉 수산식품 소비자 물가 동향	378



## 표 · 그림목차

〈표 3-2-20〉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한 자원 평가	381	〈표 4-4-1〉 연도별 어업별 생산액 동향	445
〈표 3-2-21〉 TAC 대상어종의 적정어획량 및 자원동향	382	〈표 4-4-2〉 연도별 영어자금 공급 현황	445
〈표 3-2-22〉 2013년 전국 연안 어장의 연평균 생태기반 수질지수 등급	385	〈표 4-4-3〉 2013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총괄표	446
〈표 3-2-23〉 2013년도 적조 특보 발령 현황 및 적조 생물수	386	〈표 4-4-4〉 시도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현황	448
〈표 3-2-24〉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388	〈표 4-4-5〉 어선원 보험 가입현황	451
〈표 3-2-25〉 세계 수산물 수출 추이	390	〈표 4-4-6〉 양식보험 대상품목 현황	454
〈표 3-2-26〉 세계 수산물 수입 추이	390	〈표 4-4-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최근 3년간 가입 실적	455
〈표 4-2-1〉 2013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402	〈표 4-4-8〉 수산인안전공제 가입 및 국고지원 현황	456
〈표 4-2-2〉 바다숲 추진현황 및 계획	403	〈표 4-4-9〉 연도별 적조 발생일 및 피해 현황	458
〈표 4-2-3〉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404	〈표 4-4-10〉 일자별 주요내용 및 추진사항	459
〈표 4-2-4〉 국내 낚시 인구 현황	405	〈표 4-4-11〉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주요내용	460
〈표 4-2-5〉 낚시터, 낚시어선, 유어장 현황	406	〈표 4-4-12〉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추진 현황 (2013년 기준)	463
〈표 4-2-6〉 2013년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 현황	412	〈표 4-5-1〉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실적	467
〈표 4-2-7〉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13년 말 기준)	413	〈표 4-5-2〉 사업별 사업개요	472
〈표 4-2-8〉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현황(2013년)	416	〈표 4-5-3〉 사업별 성과지표 실적 현황	473
〈표 4-2-9〉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417	〈표 4-5-4〉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474
〈표 4-2-10〉 2013년까지 시도별 참여공동체 및 육성사업비 지원 현황	419	〈표 4-5-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475
〈표 4-2-11〉 프로젝트 핵심기술 내용	421	〈표 4-5-6〉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476
〈표 4-2-12〉 일선수협 순자본비율 및 이익잉여금 현황	424	〈표 4-5-7〉 2010~2013년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 현황	477
〈표 4-3-1〉 감척 필요 어선척수	428	〈표 4-5-8〉 어항 지정 현황	478
〈표 4-3-2〉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430	〈표 4-5-9〉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479
〈표 4-3-3〉 2013 어업별 평균 조업현황	431	〈표 4-5-10〉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 현황	479
〈표 4-3-4〉 2013 어업별 평균 경영상태	431	〈표 4-5-11〉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	479
〈표 4-3-5〉 연도별 불법 어업 단속 현황	437	〈표 4-5-12〉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480
〈표 4-3-6〉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 어업 단속현황	438	〈표 4-5-13〉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481
〈표 4-3-7〉 2013년도 불법 어업 없는 우수 마을 선정 현황	441	〈표 4-5-1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481
〈표 4-3-8〉 어선사고 원인별 현황	443	〈표 4-5-15〉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481
〈표 4-3-9〉 어선사고 종류별 현황	443	〈표 4-5-16〉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483
		〈표 4-5-17〉 다기능어항개발 사업내용	483
		〈표 4-6-1〉 수산생물 수출입 검역실적	490
		〈표 4-6-2〉 2013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493
		〈표 4-7-1〉 최근 3개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예산 현황	501
		〈표 4-7-2〉 2013년도 10대 전략품목 주요성과표	505
		〈표 4-7-3〉 2013년 Golden Seed 프로젝트 정량적 성과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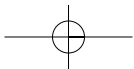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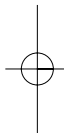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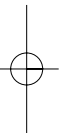




<표 4-7-4> 수산식품품종 출원 현황	508	<그림 2-6-2>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방법	245
<표 4-7-5> 2013년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시설 및 관찰량	510	<그림 2-7-1>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목표, 추진전략	278
<표 4-7-6> 관상어산업의 범위	518	<그림 2-7-2> 2013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주요결과	279
<표 4-8-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523	<그림 2-7-3>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283
<표 4-8-2>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계획	524	<그림 2-8-1>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314
<표 4-8-3>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2013년도말 기준)	525	<그림 2-8-2>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314
<표 4-8-4> 천일염생산시설개선 등 지원 현황	528	<그림 2-8-3>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체계	315
<표 4-8-5> 천일염생산량 및 수출 현황	528	<그림 2-8-4> 농식품 ICT 융복합 지원센터	315
<표 4-8-6>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운영 현황	529	<그림 2-8-5> 농업경영체 DB의 연계/통합 확대계획안	316
<표 4-8-7> 수산물 품질인증 누계실적 현황 (2013년말 기준)	530	<그림 2-8-6> 식품종합정보망 원스톱 정보서비스 개념도	317
<표 4-9-1> 2013년 수산부문 FTA 국내대책 추진 실적	536	<그림 3-2-1> 보름달물해파리(좌) 및 노무라입깃해파리(우) 출현율	387
<표 4-9-2>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 현황	541	<그림 4-2-1> 인공산란장 조성 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409
<표 4-9-3> 2013년 한·일 EEZ 입어실적 비교(총괄)	543	<그림 4-2-2> 대천천(보령)과 덕천강(산청)의 어도 설치 현장	410
<표 4-9-4> 2013년 한·일 EEZ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	543	<그림 4-2-3> 수산자원조사선 확충에 따른 조사방법 개선	422
<표 4-9-5> 우리어선의 일본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544	<그림 4-2-4> 수산자원조사센터 모식도	422
<표 4-9-6> 일본어선의 우리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544	<그림 4-3-1> 유실된 통발·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429
<표 4-9-7> 한·중·일 어업협정 개요	545	<그림 4-3-2> 분쟁조정 절차	435
<표 4-9-8>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 동향	549	<그림 4-7-1> 바이오플락 양식기술	499
<표 4-9-9> 남북 수산협력사업 주요 추진 경과	552	<그림 4-7-2> 순환여과식 양식기술	499
<표 4-9-10>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556	<그림 4-7-3> 양식(상) 및 자연산(하) 어류 질병감염 비율	511

### 그림목차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19	<그림 4-7-4> 향 스쿠티카 토끼 혈청을 이용한 응집반응	513
<그림 1-3-1>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주기	77	<그림 4-7-5> 낚치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516
<그림 1-3-2>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변천 동향	90	<그림 4-7-6> 배합사료 공급프로그램 개발	516
<그림 2-3-1> 양곡관리 시스템	167	<그림 4-8-1> 생산자 중심의 新유통체계	520
<그림 2-4-1>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194	<그림 4-8-2>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 후 조감도	520
<그림 2-5-1> 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 개요	230	<그림 4-8-3> 소비자분산물류센터 조감도	521
<그림 2-6-1>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체계	239	<그림 4-8-4> 어상자 공동이용 시스템(안)	522
		<그림 4-8-5> 권역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계획	526



| 2013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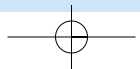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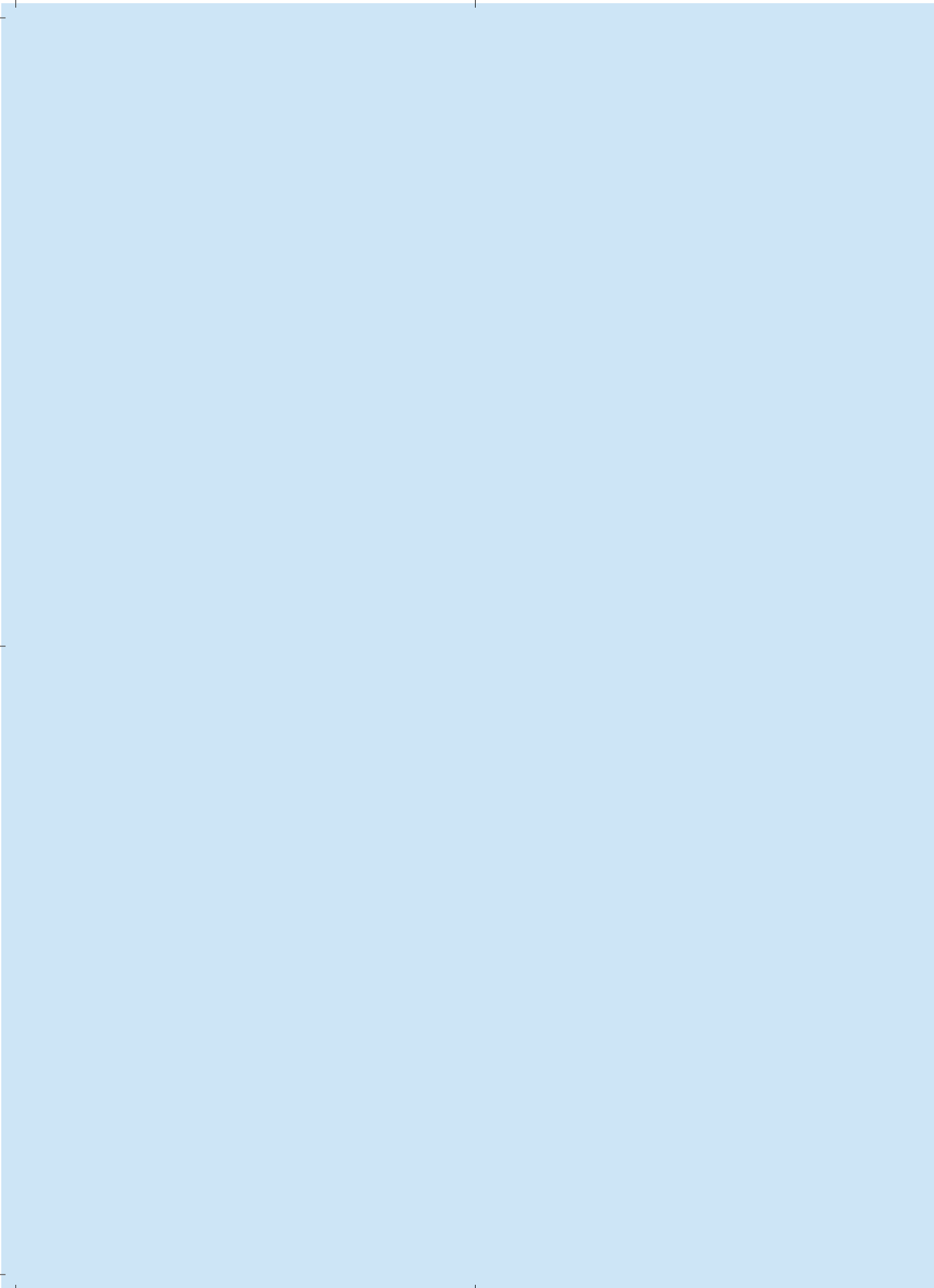
# 제1편

## 201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3장 국제 곡물수급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제1장 농업 · 농촌 경제동향

## 제1절 농업구조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박상무

###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13년 12월 1일 현재 전국 농가 수는 1,142천가구로 전년의 1,151천가구보다 0.8%(9천가구)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2,847천명으로 전년의 2,912천명보다 2.2%(64천명)이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53.2%인 607천가구로 전년의 625천가구(54.3%)보다 18천가구가 감소하고 비중은 1.1%p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 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46.8%인 535천가구로 전년의 526천가구(45.7%)보다 9천가구가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50,220천명)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전년보다 0.1%p 감소하였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2013년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은 5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화를 나타내는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도 37.3%로 2012년 35.6%보다 1.7%p 증가하였다.(※ 전국 고령화율(%) : 11.8(12) → 12.2(13)).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1,387천명(48.7%), 여자가 1,461천명(51.3%)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호 수	천호	1,383	1,273	1,177	1,163	1,151	1,142	△9	△0.8	
전 업 농가 (비 중)	천호 (%)	902 (65.2)	796 (62.5)	627 (53.3)	630 (54.2)	625 (54.3)	607 (53.2)	△18 -	△2.9 -	
겸 업 농가 (비 중)	천호 (%)	481 (34.8)	477 (37.5)	550 (46.7)	533 (45.8)	526 (45.7)	535 (46.8)	9 -	1.7 -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031 (8.6)	3,434 (7.1)	3,063 (6.2)	2,962 (6.0)	2,912 (5.8)	2,847 (5.7)	△64	△2.2	
호당농가인구	명	2.91	2.70	2.60	2.55	2.53	2.49	△0.04	△1.6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	%	32.7	43.2	46.4	48.6	51.3	53.5	-	-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	%	21.7	29.1	31.8	33.7	35.6	37.3	-	-	
성 별 농 가 인 구	남 자 (구성비)	천명 (%)	1,971 (48.9)	1,677 (48.8)	1,501 (49.0)	1,456 (49.2)	1,424 (48.9)	1,387 (48.7)	△37	△2.6
	여 자 (구성비)	천명 (%)	2,060 (51.1)	1,757 (51.2)	1,562 (51.0)	1,506 (50.8)	1,488 (51.1)	1,461 (51.3)	△2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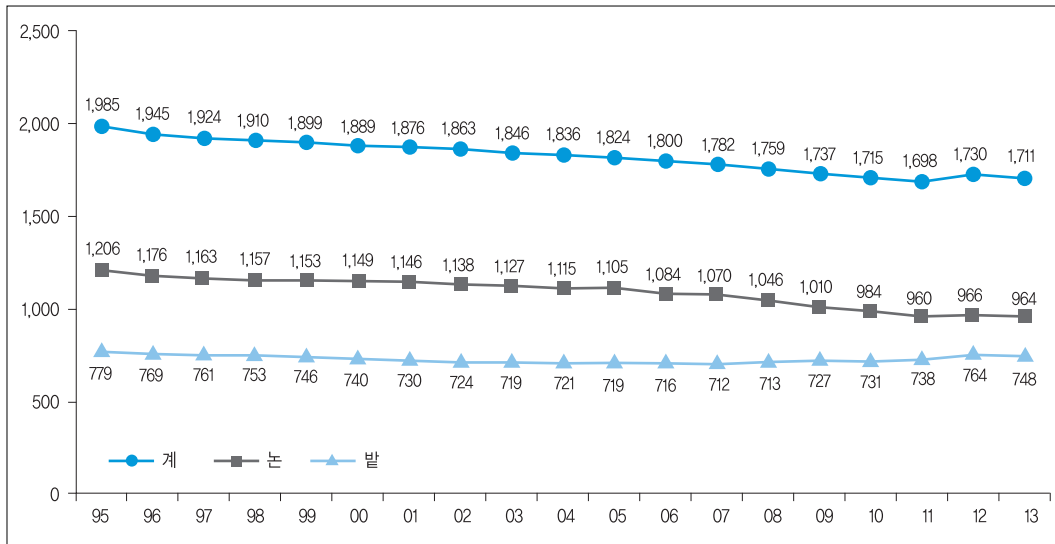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1년 이후는 농업조사결과, 2000, 2005, 2010년은 농업총조사

## 2.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 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3년 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9천ha 감소한 1,711천ha로, 이 가운데 논 면적은 964천ha로 전년에 비하여 2천ha 감소하였으며, 밭 면적은 748천ha로 전년대비 16천ha가 감소하였다. 또한 최초로 조사된 세종시의 2013년 경지면적은 10천ha이고, 논 면적은 6천ha, 밭 면적은 5천ha로 나타났다.

2013년의 작물재배면적은 1,749천ha로 전년보다 17천ha가 감소하였고,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04.0%에서 101.1%로 낮아졌다. 경지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1,040천ha로 전년보다 12천ha 감소, 채소는 291천ha로 4천ha 증가, 과수는 161천ha로 1천ha 증가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40.8천ha로 전년보다 4.3천ha 감소하였고, 전체 경지면적 중 휴경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3%p 감소한 2.5%로 나타났다.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논밭전환	개간	간척	기타	계	논밭전환	건물건축	공공시설	유휴지	기타	
2001	21,408	13,670	4,356	1,061	2,321	34,031	13,670	5,636	5,534	4,766	4,425	△12,623
2002	15,482	10,972	3,292	319	899	29,002	10,972	6,420	4,379	4,031	3,200	△13,520
2003	14,616	11,370	2,349	-	897	31,244	11,370	7,927	4,823	4,406	2,718	△16,628
2004	21,292	10,350	7,249	345	648	31,652	13,050	6,695	5,742	4,209	1,959	△10,360
2005	10,426	8,695	1,008	411	312	22,021	8,695	5,209	3,517	3,068	1,532	△11,595
2006	30,691	26,144	4,159	16	372	54,260	26,144	9,819	6,315	4,462	7,520	△23,569
2007	22,420	18,125	3,392	550	353	41,311	18,125	10,167	4,067	6,127	2,825	△18,891
2008	32,734	27,122	4,643	443	526	55,518	27,122	9,834	5,157	10,037	3,368	△22,784
2009	61,785	35,094	23,013	2,685	993	83,782	35,094	15,156	13,939	14,984	4,609	△21,997
2010	36,122	26,621	7,875	354	1,272	57,619	26,621	8,356	9,318	10,138	3,186	△21,497
2011	30,609	24,297	5,175	412	725	47,870	24,297	7,940	5,627	7,410	2,596	△17,261
2012	-	-	-	-	-	-	-	-	-	-	-	-
2013	64,125	29,641	23,802	367	10,316	82,671	29,641	5,336	1,163	-	46,531	△18,546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2012년은 조사방법 변경(현지 표본조사 → 원격탐사 이용 조사)으로 증감사유별 조사제외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작물재배면적	2,197	2,098	1,921	1,825	1,802	1,766	1,749	△17	△1.0
식 량 작 물	1,346	1,318	1,234	1,093	1,054	1,052	1,040	△12	△1.1
(미 곡)	(1,056)	(1,072)	(980)	(892)	(854)	(849)	(833)	△17	△1.9
(맥 류)	(90)	(68)	(61)	(51)	(42)	(31)	(33)	2	6.5
(두류 등)	(200)	(177)	(193)	(150)	(158)	(170)	(173)	3	1.8
경 제 작 물	851	780	689	641	743	804	797	△7	△0.9
(채 소)	(322)	(296)	(240)	(206)	(227)	(287)	(291)	4	1.4
(과 수)	(172)	(169)	(150)	(156)	(154)	(160)	(161)	1	0.6
(기 타) <sup>1)</sup>	(357)	(315)	(299)	(279)	(362)	(357)	(345)	△12	△3.4
경 지 면 적	1,985	1,889	1,824	1,715	1,698	1,730	1,711	△19	△1.1
경지이용률(%)	108.1	110.5	104.7	104.8	105.1	104.0	101.1	△2.9	△2.8
(논)	(104.1)	(106.3)	(102.9)	(106.2)	(105.6)	(105.1)	(103.1)	△2.0	△1.9
(밭)	(114.7)	(116.9)	(107.3)	(102.7)	(103.6)	(102.7)	(98.6)	△4.1	△4.0

주 : 1) 특·약용작물, 병발,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4〉 휴경면적

(단위 : 천ha)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휴경면적	64.6	16.8	44.2	50.5	54.6	45.1	40.8	△4.3	△9.5
논	33.5	4.3	24.1	20.1	22.4	15.2	14.1	△1.1	△7.2
밭	31.1	12.5	20.1	30.4	32.2	29.9	26.7	△3.2	△10.7
휴경률(%)	3.2	0.9	2.4	3.0	3.3	2.8	2.5	-	-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 제2절 농가경제

|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박상무

### 1. 소득 동향

#### ❖ 농가소득

2013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4,524천원으로서 전년(31,031천원)에 비해 11.3%(3,493천원) 증가하여 1994년 이래 19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소득 종류별로는 농업외소득(15.6%), 농업소득(9.9%), 비경상소득(8.7%) 및 이전소득(4.1%) 순으로 증가하였다.

〈표 1-1-5〉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소 득 <sup>1)</sup>	21,803	30,503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3	11.3
□ 경 상 소 득	21,803	25,778	27,306	28,654	27,155	28,326	31,584	3,258	11.5
• 농 업 소 득	10,469	11,815	9,698	10,098	8,753	9,127	10,035	908	9.9
• 농 업 외 소 득	6,931	9,884	12,128	12,946	12,949	13,585	15,705	2,120	15.6
• 이 전 소 득	4,403	4,078	5,481	5,610	5,453	5,614	5,844	230	4.1
□ 비 경 상 소 득 <sup>2)</sup>	-	4,725	3,507	3,467	2,993	2,705	2,940	235	8.7

주 :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비경상소득 : 우발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13년 농업의존도는 29.1%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0.3%p 감소하였다.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농 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경 상 소 득	100.0	84.5	88.6	89.2	90.1	91.3	91.5
• 농업소득	48.0	38.7	31.5	31.4	29.0	29.4	29.1
• 농외소득	31.8	32.4	39.4	40.3	43.0	43.8	45.5
• 이전소득	20.2	13.4	17.8	17.5	18.1	18.1	16.9
□ 비경상소득	-	15.5	11.4	10.8	9.9	8.7	8.5
〈일 본〉 • 농업소득	12.8	24.6	22.8	26.2	25.8	-	-

주 : 1)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2) 일본은 2003년 조사체계개편(경영주 부부 및 농업 관련 세대원 중심으로 파악)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

### 농업소득

2013년 농업경영비가 11.7%(2,152천원) 증가하였으나, 농업총수입이 11.1%(3,059천원) 증가하여 농업소득은 10,035천원으로 전년(9,127천원)에 비해 9.9%(908천원) 증가하였다.

〈표 1-1-7〉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농 업 소 득 (농업소득률)	10,469 (65.4)	11,815 (44.6)	9,698 (36.4)	10,098 (37.1)	8,753 (33.1)	9,127 (33.1)	10,035 (32.7)	908	9.9
• 농업총수입	16,012	26,496	26,621	27,221	26,457	27,589	30,648	3,059	11.1
• 농업경영비	5,543	14,681	16,924	17,123	17,704	18,461	20,613	2,152	11.7

주 :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은 30,648천원으로 전년(27,589천원)에 비해 11.1%(3,059천원) 증가하였다. 미곡수입, 축산수입과 과수수입은 각각 1.2%, 45.1%, 22.7% 증가하였고, 채소수입은 4.0% 감소하였다.

〈표 1-1-8〉 농업총수입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총수입	16,012	26,496	26,102	26,621	27,221	26,457	27,589	30,648	3,059	11.1
• 미곡수입	5,450	7,264	7,296	6,522	5,368	6,254	6,243	6,315	72	1.2
• 축산수입	3,981	6,386	5,145	6,972	5,892	4,335	5,099	7,397	2,298	45.1
• 채소수입	3,386	6,388	6,817	6,198	7,251	7,675	8,427	8,094	△333	△4.0
• 과수수입	1,542	2,945	3,192	3,355	4,147	3,762	3,683	4,519	836	22.7
• 기타수입 <sup>*)</sup>	1,653	3,513	3,652	3,574	4,563	4,431	4,137	4,323	186	4.5

주 :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 구성비를 보면 채소수입(26.4%), 축산수입(24.1%), 미곡수입(20.6%), 과수수입(14.7%) 그리고 기타수입(1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미곡수입	34.0	27.4	24.5	19.7	23.6	22.6	20.6
• 축산수입	24.9	24.1	26.2	21.6	16.4	18.5	24.1
• 채소수입	21.1	24.1	23.3	26.6	29.0	30.5	26.4
• 과수수입	9.6	11.1	12.6	15.2	14.2	13.3	14.7
• 기타수입	10.4	13.3	13.4	16.9	16.8	15.1	14.1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경영비는 20,613천원으로 전년(18,461천원)에 비해 11.7%(2,152천원) 증가하였다. 수선 및 농구비, 노무비, 양축비, 비료·농약비, 임차료 각각 34.3%, 43.3%, 32.5%, 2.0%, 7.1% 증가하였다.

〈표 1-1-10〉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경영비	5,543	14,681	16,924	17,123	17,704	18,461	20,613	2,152	11.7
• 수선및농구비	807	318	327	372	330	332	446	114	34.3
• 노 무 비	441	913	843	897	857	938	1,344	406	43.3
• 양 축 비	1,261	2,747	3,676	3,125	3,345	3,344	4,430	1,086	32.5
• 비료·농약비	695	1,624	2,078	2,117	1,961	2,100	2,143	43	2.0
• 임 차 료	1,070	1,096	905	912	985	1,072	1,148	76	7.1
• 기타비용 <sup>1)</sup>	1,269	7,983	9,095	9,700	10,226	10,675	11,102	427	4.0

주 : 1) 감가상각비, 종묘비, 기타, 광열비,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 및 부담금, 지급이자, 영농잡비용, 보험료 및 수수료, 기타판매 및 관리비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농업외소득

2013년 농업외소득은 15,705천원으로 전년(13,585천원)에 비해 15.6%(2,120천원) 증가하였다. 겸업 소득은 5.4%, 사업외소득은 19.8% 증가하였다.

\* 겸업소득 :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농업 외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 사업외소득 : 노임, 급료, 임대료 등 사업 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표 1-1-11〉 농업외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외소득	6,931	9,884	12,128	12,946	12,949	13,585	15,705	2,120	15.6
• 겸업소득	1,527 (22.0)	2,531 (25.6)	3,296 (27.2)	3,467 (26.8)	3,653 (28.2)	3,966 (29.2)	4,182 (26.6)	216 -	5.4 -
• 사업외소득	5,404 (78.0)	7,353 (74.4)	8,832 (72.8)	9,480 (73.2)	9,296 (71.8)	9,619 (70.8)	11,523 (73.4)	1,904 -	19.8 -

주 :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2013년 이전소득은 4.1%(230천원) 증가하고, 비경상소득은 8.7%(235천원) 증가하여 합계는 전년에 비해 5.6%(465천원) 증가한 8,784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403	8,803	8,988	9,077	8,447	8,319	8,784	465	5.6
• 이 전 소 득	-	4,078	5,481	5,610	5,454	5,614	5,844	230	4.1
• 비 경 상 소 득	-	4,725	3,507	3,467	2,993	2,705	2,940	235	8.7

주 :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 산설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2. 가계지출 동향

2013년 가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30,264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24,184천원으로 전년(22,315천원)에 비해 8.4%(1,869천원) 증가하고, 비소비지출은 6,080천원으로 전년(5,176천원)에 비해 17.5%(904천원) 증가하였다.

〈표 1-1-13〉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가 계 비	14,782	26,649	26,574	27,672	27,906	27,490	30,264	2,774	10.1
• 소 비 지 출	14,782	19,378	20,017	21,264	22,156	22,315	24,184	1,869	8.4
• 비 소 비 지 출 <sup>1)</sup>	-	7,271	6,557	6,408	5,750	5,176	6,080	904	17.5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44.3	36.5	36.5	31.4	33.2	33.2	-	-
평 균 소 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sup>2)</sup> )	68.3	83.4	82.5	82.7	90.8	86.3	85.0	-	-

주 : 1)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분리 산설됨  
 2)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비소비지출  
 2003년 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조세·부담금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013년 28,444천원이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4,260천원으로 전년(3,540천원)에 비해 20.3%(720천원) 증가하였다.

〈표 1-1-14〉 가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 처분가능소득 <sup>1)</sup>	21,629	23,232	24,257	25,712	24,398	25,855	28,444	2,589	10.0
• 소 비 지 출 (분가지출)	14,782 (548)	19,378 -	20,017 -	21,264 -	22,156 -	22,315 -	24,184 -	1,869 -	8.4 -
• 잉 여 금 <sup>2)</sup>	6,299	3,854	4,240	4,449	2,242	3,540	4,260	720	20.3

주 : 1)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 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2) 2003년부터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3년 이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4. 농가자산 동향

2013년 말 현재 가구당 평균자산은 400,580천원으로 전년(407,872천원)에 비해 1.8%(7,292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유동자산이 70,458천원으로 전년(97,856천원)대비 28.0%(27,398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금 및 예·저금 등 금융자산의 감소로 당좌자산이 29.5%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5〉 농가자산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자 산	158,171	298,178	358,029	372,476	387,180	407,872	400,580	△7,292	△1.8
• 고 정 자 산 <sup>1)</sup>	134,334 (84.9)	238,399 (80.0)	289,539 (80.9)	289,435 (77.7)	295,637 (76.4)	310,016 (76.0)	330,123 (82.4)	20,107	6.5
• 유 동 자 산 <sup>2)</sup>	23,837 (15.1)	59,779 (20.0)	68,490 (19.1)	83,041 (22.3)	91,542 (23.6)	97,856 (24.0)	70,458 (17.6)	△27,398	△28.0

주 : 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유동자산 :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재고자산(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5. 농가부채 동향

농가부채는 2013년 말 현재 가구당 27,363천원으로 전년(27,262천원)에 비해 0.4%(101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용 부채가 전년 대비 10.7%(1,408천원) 감소하였으나, 가계용 부채나 기타용 부채 등 농업용 이외 부채가 10.7%(1,508천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농가부채 비율(농가부채/당좌자산)은 42.1%로 전년(29.6%)에 비해 12.5%p 악화되었다.

〈표 1-1-16〉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부 채 (A)	9,163	27,210	26,268	27,210	26,035	27,262	27,363	101	0.4
• 농업용 부채 (구성비)	6,351 (69.3)	16,315 (60.0)	13,150 (50.1)	12,930 (47.5)	11,892 (45.7)	13,123 (48.1)	11,715 (42.8)	△1,408 -	△10.7 -
• 농업용이외부채 <sup>1)</sup> (구성비)	2,812 (30.7)	10,895 (40.0)	13,118 (49.9)	14,280 (52.5)	14,143 (54.3)	14,139 (51.9)	15,647 (57.2)	1,508 -	10.7 -
당 좌 자 산 (B)	19,739	54,354	63,493	77,668	85,848	92,215	65,053	△27,162	△29.5
단 기 상 환 능 령 <sup>2)</sup> [(A/B)×100]	46.4	50.1	41.4	35.0	30.3	29.6	42.1	-	-

주 : 1) 농업용이외 부채는 가계용 + 겸업용 + 기타용 부채임

2) 당좌자산 대비 농가부채가 적을수록(수치가 적을수록) 상환능력이 개선됨을 의미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전·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많고, 제1종 겸업농가보다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42,975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 소득의 62.5% 수준이었다.

〈표 1-1-17〉 2013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 가 소 득	34,524	26,864	39,054	42,975	77.8	113.1	124.5
가 계 지 출	30,264	24,885	30,911	37,348	82.2	102.1	123.4
자 산	400,580	403,871	434,999	380,451	100.8	108.6	95.0
부 채 (부채 / 자산)	27,363 (6.8)	24,723 (6.1)	35,379 (8.1)	27,346 (7.2)	90.4 -	129.3 -	99.9 -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자산의 경우 제1종 겸업농가가 434,999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평균자산보다 8.6% 많았다. 부채의 경우 역시 제1종 겸업농가가 35,379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 7. 주·부업별 지표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소득이 43,126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급농가 소득(35,316천원)의 1.2배 수준이었다. 전문농가의 자산은 480,140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농가의 자산(279,113천원)은 전문농가의 58.1% 수준이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3ha 이상 경지를 보유한 전문농가가 9.4%로 가장 높았다.

### ※ 주·부업농가 기준

- 전문농가 : 경지규모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0만원 이상 농가
- 일반농가 : 경지규모 3ha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원 미만 농가
- 부업농가 :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표 1-1-18〉 2013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주 업 농 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 가 소 득	34,524	43,126	17,430	42,438	35,316
가 계 지 출	30,264	33,739	18,809	37,810	29,734
자 산	400,580	480,140	279,113	464,240	325,034
부 채 (부채 / 자산)	27,363 (6.8)	45,207 (9.4)	9,419 (3.4)	31,881 (6.9)	15,224 (4.7)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52,721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과수농가가 34,352천원으로 나타났다. 논벼농가의 소득은 23,325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4,524천원)의 67.6% 수준이다.

자산의 경우 축산농가가 587,466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훼농가(533,627천원), 과수농가(427,909천원) 순서였다.

부채/자산비율은 화훼농가가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작 농가는 2.7%로 가장 낮았다.

〈표 1-1-19〉 2013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sup>1)</sup>	축산
농 가 소 득	34,524	23,325	34,352	29,125	21,081	21,878	20,122	52,721
가 계 지 출	30,264	23,060	28,563	26,809	21,581	33,051	19,629	37,105
자 산	400,580	423,843	427,909	359,315	305,037	533,627	294,506	587,466
부 채 (부채/자산)	27,363 (6.8)	19,190 (4.5)	30,137 (7.0)	24,654 (6.9)	8,300 (2.7)	72,692 (13.6)	11,747 (4.0)	68,795 (11.7)

주 : 1)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경지규모별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5.0~7.0ha일 때 56,577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0.5~1.0ha일 경우 27,992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지규모별 농가자산은 경지규모가 10.0ha 이상일 때 922,910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부채/자산비율은 경지규모가 7.0~10.0ha일 경우 1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0〉 2013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5.0ha	5.0~7.0ha	7.0~10.0ha	10.0ha 이상
농가소득	34,524	32,220	27,992	34,830	37,568	36,987	41,627	56,577	45,006	53,129
가계지출	30,264	28,898	27,412	30,085	28,306	32,321	32,381	43,496	42,852	50,191
자 산	400,580	311,256	354,364	429,118	421,409	403,540	572,830	600,008	548,695	922,910
부 채 (부채/자산)	27,363 (6.8)	16,734 (5.4)	22,299 (6.3)	27,649 (6.4)	28,234 (6.7)	28,463 (7.1)	43,757 (7.6)	58,117 (9.7)	86,546 (15.8)	95,156 (10.3)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은 50대의 경우 54,745천원으로 가장 많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22,08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가자산은 50대가 500,210천원으로 가장 많고, 60대(415,309천원), 40대(345,384천원) 순이다. 농가부채는 50대가 51,351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40대(45,455천원), 30대(43,735천원) 순이나 70세 이상은 9,119천원으로 경영주 연령 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21〉 2013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농가소득	34,524	44,870	43,135	54,745	34,223	22,088
가계지출	30,264	36,658	39,847	46,263	30,176	19,915
자 산	400,580	213,216	345,384	500,210	415,309	343,811
부 채 (부채 / 자산)	27,363 (6.8)	43,735 (20.5)	45,455 (13.2)	51,351 (10.3)	29,506 (7.1)	9,119 (2.7)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11. 지역별 주요지표

지역별로는 제주지역 농가가 가구당 41,640천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다. 경기지역이 39,748천원, 충북지역이 35,418천원, 강원지역이 34,920천원, 경북지역이 34,894천원 내외이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지역은 전국 평균 농가소득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산의 경우 토지가격이 높은 경기지역이 808,904천원으로 월등히 많고, 부채는 경기(45,373천원), 제주(45,221천원)지역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표 1-1-22〉 2013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소득	34,524	39,748	34,920	35,418	32,038	30,869	33,858	34,894	29,946	41,640
가계지출	30,264	37,059	27,089	28,168	29,237	26,647	28,628	27,784	31,948	35,241
자산	400,580	808,904	374,774	296,717	357,525	273,722	242,375	322,022	347,561	410,802
부채 (부채/자산)	27,363 (6.8)	45,373 (5.6)	22,106 (5.9)	14,365 (4.8)	26,687 (7.5)	21,614 (7.9)	26,571 (11.0)	17,671 (5.5)	30,749 (8.8)	45,221 (11.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박상무

### 1. 개황

2013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3.2로 전년에 비해 4.3%p 하락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7.1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5.7로 나타났다. 여기서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이상이면 채산성이 호전된 것으로, 100 이하이면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10=100)

구 분	2005	2010	2011	2012	2013
농가판매가격지수(①)	92.5	100.0	107.6	117.5	113.2
농가구입가격지수(②)	81.8	100.0	103.5	106.1	107.1
농가교역조건지수(①/②×100)	113.1	100.0	104.0	110.7	105.7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13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3.2로 곡물, 축산물, 기타 농산물은 전년에 비해 각각 2.6%, 3.1%, 3.0% 상승했으나, 청과물은 전년대비 10.5%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3.7% 하락하였다.

### ❖ 곡 물

2013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4.0으로 전년에 비해 2.6% 상승하였는데, 품목별로는 미곡, 맥류, 두류/잡곡 등은 전년보다 각각 4.4%, 11.6%, 4.1% 상승하고, 서류는 전년보다 26.0% 하락하였다.

### ❖ 청과물

2013년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4.4로 전년 대비 10.5% 하락하였다. 채소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5.2% 하락하였는데 품목별로 보면 전년대비 엽채류와 근채류는 각각 11.7%, 10.9% 상승하였으나, 조미채소와 과채류는 전년대비 각각 13.6%, 2.3% 하락하였다.

과실류는 전년보다 배가 10.9%, 복숭아는 15.0% 등 상승하였으나, 사과, 포도, 감 등이 각각 전년대비 16.8%, 8.3%, 9.0%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17.3% 하락하였다.

### ❖ 축산물

2013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4.0으로 한우 암소는 1.2%, 육우는 11.0% 등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한우 수컷, 한우 송아지 수컷, 닭, 오리 등이 각각 전년대비 10.2%, 11.8%, 8.7%, 9.3%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다.

### 기타 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13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0.5로서 전년 대비 3.0%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들깨가 전년대비 24.2% 상승하는 등 특용작물은 전년에 비해 9.4% 상승하였고, 백합이 20.0% 하락하는 등 화훼류는 전년대비 15.5% 하락하였다.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10=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5	2010	2011	2012	2013	2012	2013
총 지 수	1,000	92.5	100.0	107.6	117.5	113.2	9.2	△3.7
곡 물	280.8	101.5	100.0	113.5	120.8	124.0	6.4	2.6
미 곡	234.9	110.7	100.0	111.6	119.2	124.5	6.8	4.4
맥 류	5.5	118.1	100.0	97.3	107.5	120.0	10.5	11.6
두류/잡곡	24.0	69.7	100.0	134.7	133.3	138.8	△1.0	4.1
서 류	16.4	68.7	100.0	114.7	129.0	95.4	12.5	△26.0
청 과 물	407.0	88.5	100.0	111.4	139.0	124.4	24.8	△10.5
채 소	269.1	81.7	100.0	111.8	117.5	111.4	5.1	△5.2
(엽채류)	43.6	109.5	100.0	98.0	98.9	110.5	0.9	11.7
(근채류)	9.6	53.7	100.0	156.3	109.5	121.4	△29.9	10.9
(조미채)	114.4	67.9	100.0	114.8	128.2	110.8	11.7	△13.6
(과채류)	101.6	97.2	100.0	110.1	114.1	111.5	3.6	△2.3
과 실	137.9	106.3	100.0	110.6	181.1	149.9	63.8	△17.3
축 산 물	251.7	93.0	100.0	96.4	81.5	84.0	△15.5	3.1
가 축	184.1	96.0	100.0	89.7	72.9	72.2	△18.7	△1.0
유 란	67.6	87.4	100.0	115.0	105.2	116.3	△8.5	10.6
기타농산물	60.4	75.4	100.0	101.6	107.3	110.5	5.6	3.0
특용작물	42.1	100.0	100.0	103.2	109.9	120.2	6.5	9.4
화 훼	15.4	46.3	100.0	99.9	101.9	86.1	2.0	△15.5
부 산 물	3.0	109.6	100.0	87.8	97.9	98.5	11.5	0.6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13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7.1로 농업용품(1.6%), 농촌 임료금(7.0%)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0.9% 상승하였다.

#### ▼ 가계용품

2013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5.5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3.9%), 의류 및 신발(3.0%), 오락 및 문화(2.0%), 음식 및 숙박(1.6%) 등이 올랐으나 전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다.

#### ▼ 농업용품

2013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7.7로 영농광열(4.1%), 비료(5.2%), 영농자재(3.9%), 농약(2.2%) 등이 하락했으나, 종자(11.9%), 농기구(2.9%), 사료(2.1%) 등이 상승하여 전년보다 1.6% 상승하였다.

#### ▼ 농촌임료금

2013년 농촌임료금 구입가격지수는 122.2로 전년보다 7.0%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노동임금은 7.2%, 농기계임차료는 4.7% 상승하였다.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10=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5	2010	2011	2012	2013	2012	2013
총 지 수	1,000	81.8	100.0	103.5	106.1	107.1	2.5	0.9
가 계 용 품	576.0	85.0	100.0	104.6	105.5	105.5	0.9	0.0
농 업 용 품	377.5	73.8	100.0	101.3	106.0	107.7	4.6	1.6
종 자	29.9	93.9	100.0	103.3	129.1	144.4	25.0	11.9
비 료	39.0	46.7	100.0	73.4	97.5	92.4	32.8	△5.2
농 약	29.9	80.1	100.0	98.0	116.2	113.7	18.6	△2.2
농 기 구	64.0	83.3	100.0	105.4	110.9	114.1	5.2	2.9
영농광열	26.7	82.9	100.0	124.4	132.8	127.3	6.8	△4.1
가 축	51.3	121.5	100.0	80.2	57.0	60.2	△28.9	5.6
사 료	125.0	60.2	100.0	110.7	112.1	114.4	1.3	2.1
영농자재	11.7	80.7	100.0	114.8	112.3	107.9	△2.2	△3.9
농 촌 임 료 금	47.1	84.9	100.0	107.3	114.2	122.2	6.4	7.0
농업노동임금	44.9	79.8	100.0	107.3	114.2	122.4	6.4	7.2
농기계임차료	2.2	91.0	100.0	106.3	112.6	117.9	5.9	4.7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박상무

### 1. 개황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13년 호당 자영농업 노동시간은 1,140시간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농업자본투입액은 62,298천원으로 전년보다 14.1% 증가하였다. 호당 경지면적의 경우 1.50ha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 분	1995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자영농업노동시간	1,376	1,253	1,487	1,103	1,091	1,034	1,140	106	10.3
농업자본투입액	21,323	31,425	49,721	53,323	54,976	54,609	62,298	7,689	14.1
호 당 경 지 면 적	1.32	1.37	1.43	1.46	1.46	1.50	1.50	0.0	0.0

\* 호당경지면적 = 경지면적 / 농가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경제통계(수익성·생산성·안정성지표)

2013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6,115원으로 전년 16,591원보다 2.9% 감소하였고, 자본생산성은 0.29원으로 전년보다 6.5% 감소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88시간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하였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도 4,793천원으로 전년보다 16.2% 증가하였다.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노동생산성 <sup>1)</sup>	원/시간	9,387	11,778	12,297	15,698	14,876	16,591	16,115	△476	△2.9
토지생산성 <sup>2)</sup>	천원/10a	954	1,051	1,141	1,273	1,229	1,296	1,413	117	9.0
자본생산성 <sup>3)</sup>	원/원	0.61	0.47	0.36	0.32	0.30	0.31	0.29	△0.02	△6.5
노동집약도 <sup>4)</sup>	시간/10a	102	89	93	81	83	78	88	10	12.8
자본집약도 <sup>5)</sup>	천원/10a	1,575	2,237	3,138	3,920	4,162	4,126	4,793	667	16.2

주 :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서 얻은 생산량의 비율  
 2)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3)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투입액)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4) 노동집약도(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  
 5)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수익성·생산성·안정성지표)



##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013년 10a당 생산비는 논벼가 726천원으로 전년 713천원보다 1.8% 증가하였으며, 마늘은 2,879천원으로 전년 2,811천원보다 2.4% 증가하였고, 양파는 2,157천원으로 전년 1,826천원보다 18.2% 증가하였으나, 고추는 3,038천원으로 전년 3,049천원보다 0.4% 감소하였다.

2013년 10a당 경영비는 마늘이 1,585천원으로 가장 많고, 양파가 1,287천원, 고추 1,033천원, 논벼가 431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10a당 소득을 보면 양파가 3,078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마늘 2,061천원, 고추 1,877천원, 논벼 643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단위: 천원)

구 분	연 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2대비	
									증감	증감률(%)
논 벼	조수입(A)	737	1,041	879	822	968	989	1,075	86	8.7
	생산비(B)	412	538	588	614	628	713	726	13	1.8
	경영비(C)	198	280	334	388	398	410	431	21	5.1
	순수익(A-B)	325	503	292	208	340	276	349	73	26.5
	소 득(A-C)	539	761	546	434	570	578	643	65	11.3
마 늘	조수입(A)	2,001	1,427	2,007	4,268	4,562	4,111	3,646	△465	△11.2
	생산비(B)	1,067	1,226	1,423	1,811	2,295	2,811	2,879	68	2.4
	경영비(C)	582	683	798	1,091	1,510	1,452	1,585	133	9.1
	순수익(A-B)	934	201	584	2,457	2,267	1,300	767	△533	△41.0
	소 득(A-C)	1,420	744	1,209	3,177	3,053	2,659	2,061	△598	△22.5
양 파	조수입(A)	1,178	1,519	1,908	3,244	2,908	3,493	4,365	872	25.0
	생산비(B)	733	921	1,048	1,422	1,509	1,826	2,157	331	18.2
	경영비(C)	414	485	610	936	1,007	1,092	1,287	195	17.9
	순수익(A-B)	445	598	860	1,822	1,400	1,667	2,207	540	32.4
	소 득(A-C)	764	1,034	1,298	2,308	1,902	2,401	3,078	677	28.2
고 추	조수입(A)	1,613	1,837	2,209	2,452	4,217	4,322	2,910	△1,412	△32.7
	생산비(B)	937	1,127	1,497	1,908	2,063	3,049	3,038	△11	△0.4
	경영비(C)	347	428	638	929	994	1,034	1,033	△1	△0.1
	순수익(A-B)	676	711	712	544	2,155	1,273	△128	-	-
	소 득(A-C)	1,266	1,410	1,572	1,523	3,224	3,288	1,877	△1,411	△42.9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논벼, 마늘, 양파, 고추 소득분석)

### 3. 농림업 부가가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 김태우

2013년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05년 연쇄(기준)가격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한 29조 2,48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4% 증가, 어업은 4.0% 감소하였다.

농업 부가가치 중 재배업은 전년대비 4.7% 증가하였고, 축산업은 9.7% 증가하였다. 재배업 부가가치 증가는 쌀, 채소류의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축산업 부가가치 증가는 주요 축종인 한육우, 돼지의 생산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어업 부가가치는 일본 방사능 누출로 인한 소비 감소에 따라 내수면어업을 제외한 연·근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의 생산액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율

(단위 : 10억 원, %, 2005년 연쇄가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p)	
농 립 어 업	27,294	28,827	29,759	28,444	27,857	27,687	29,248	
실 질 증감률	농 립 어 업	4.0	5.6	3.2	△4.4	△2.1	△0.6	5.6
	재 배 업	1.2	5.0	2.1	△7.5	△2.0	△3.3	4.7
	축 산 업	9.1	10.6	4.8	7.8	△4.2	13.6	9.7
	임 업	11.0	2.8	15.4	3.3	0.7	△7.6	△3.2
	어 업	12.7	1.9	2.2	△6.5	△1.7	△2.4	△4.0
	농 립 어 업 서 비 스	△1.1	3.5	7.3	△3.1	3.4	1.6	1.9

자료 : 한국은행

##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 1. 식량 수급 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김보람

##### ❖ 식량 공급

2013 양곡년도 전체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4,583천톤(정곡)으로 2012양곡년도 4,748천톤보다 165천톤 감소하였다. 이는 태풍, 백수피해 등의 영향으로 쌀의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쌀이 전년 4,224천톤에 비해 218천톤 감소한 4,006천톤이 생산되었으며, 밀, 콩도 전년보다 다소 적은 23천톤, 123천톤 생산되었다. 반면, 보리쌀, 옥수수, 서류, 기타작물의 경우는 전년보다 다소 높은 61천톤, 83천톤, 255천톤, 32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1〉 연도별 식량 생산량

(단위 : 천톤)

양곡년도	합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2010	5,510	4,916	81	39	77	139	232	26
2011	4,839	4,295	75	44	74	105	220	26
2012	4,748	4,224	57	37	74	129	202	25
2013(잠정)	4,583	4,006	61	23	83	123	255	3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 식량 수요

소비량은 19,800천톤으로 전년 20,135천톤에 비해 335천톤 감소하였다. 식량용은 전년 대비 767천톤 감소하여 9,706천톤이 소비되었고, 사료용이 전년대비 432천톤이 증가하여 10,094천톤이 소비되었다. 사료용 작물중 옥수수, 콩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식량의 연말재고는 1,773천톤으로 전년 1,774천톤에 비해 1천톤이 감소하였다. 이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식량용 소비도 비슷하게 감소한 영향이다.

2013년도 전체 곡물자급도는 23.1%로 2012년 22.8%보다 0.3p% 증가하였고, 사료용을 제외하면 47.2%로 2012년 45.0%보다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량용 소비가 감소하고, 사료용 소비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12년 121.8kg보다 2.4kg 감소한 119.4kg으로 나타났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69.8kg에서 2.6kg 줄어든 67.2kg으로 나타났으며, 보리쌀, 옥수수, 콩, 서류는 전년과 동일한 1.3kg, 3.7kg, 8.0kg, 3.1kg으로 나타났고, 밀, 기타작물은 전년보다 0.1kg이 늘어나서 각각 32.3kg, 3.8kg으로 나타났다.

〈표 1-2-2〉 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 월	2,676	2,509	2,904	3,019	2,031	2,706	2,189	1,975	2,650	2,404	2,841	2,240	1,774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931	5,720	5,315	5,031	5,470	5,510	4,839	4,748	4,583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624	13,860	13,852	13,769	12,822	14,808	14,356	14,921	15,215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961	19,779	19,382	18,125	18,538	19,946	19,882	20,135	19,800
-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14	10,892	10,487	9,721	9,623	10,205	10,699	10,473	9,706
-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285	8,887	8,895	8,404	8,915	9,741	9,183	9,662	10,094
연 말 재 고	2,179	2,280	3,657	3,119	2,625	2,507	1,975	2,650	2,404	2,835	2,156	1,774	1,773
자급률 (%)	56.0	48.4	43.1	29.1	29.7	29.4	27.2	27.8	29.6	27.6	24.3	22.8	23.1
(사료용 제외)	(69.6)	(71.6)	(70.3)	(55.7)	(55.6)	(54.0)	(51.6)	(51.8)	(56.2)	(54.0)	(45.3)	(45.0)	47.2
1인당 연간 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53.3	137.5	131.9	127.3	125.4	125.6	126.7	121.8	119.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5	137.5	80.7	1.2	33.2	4.9	9.3	4.2	4.0
2006	134.4	78.8	1.2	33.3	4.6	8.9	3.5	4.12
2007	131.9	76.9	1.1	33.7	4.5	8.5	3.3	3.9
2008	127.3	75.8	1.1	30.9	4.5	7.6	3.5	3.9
2009	125.4	74.0	1.2	31.4	4.0	7.6	3.4	3.8
2010	125.8	72.8	1.3	31.0	4.6	8.5	3.5	4.1
2011	126.7	71.2	1.3	35.0	3.7	7.8	3.4	4.3
2012	121.8	69.8	1.3	32.2	3.7	8.0	3.1	3.7
2013	119.4	67.2	1.3	32.3	3.7	8.0	3.1	3.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2. 원예 · 특용작물

### ❖ 채소류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정락

2013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251.6천ha이었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6.7% 감소한 9,243천톤이었다.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봄무·배추 재배면적은 15.2천ha로 전년에 비해 13.5% 증가하고 생산량도 전년에 비해 16.5% 증가한 684천톤이었다. 고랭지 무·배추는 재배면적이 7.7천ha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262천톤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하였다. 가을무·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2.6천ha이었고, 생산량은 20.9% 감소한 2,175천톤이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45천ha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전년 104천톤 보다 13.1% 증가한 118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29천ha로 전년보다 3.8%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21.6% 증가한 412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4.4% 감소한 20천ha가 재배되었고 생산량은 8.2% 증가한 1,294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요	계	8,697	10,670	11,502	10,730	10,224	10,753	10,557	9,235	10,931	9,826
	내 수	8,677	10,611	11,461	10,658	10,155	10,658	10,450	9,139	10,802	9,695
	수 출	20	59	41	72	69	95	107	96	129	131
공 급	계	8,697	10,670	11,502	10,730	10,224	10,753	10,557	9,235	10,931	9,826
	생 산	8,677	10,586	11,282	9,994	9,394	9,935	9,889	8,391	9,747	8,662
	수 입	20	84	220	736	830	818	668	854	1,184	1,164
1인당소비량(kg)		132.6	160.6	165.9	153.8	149.9	154.2	148.9	132.2	150.6	160.6

주 : 수입·수출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식품수급표) 자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

〈표 1-2-5〉 채소류 주요 품목별 생산동향

구 분		2012			2013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엽근채소	배 추	30,540	7,045	2,151	32,186	7,420	2,388
	무	21,821	5,224	1,140	21,790	5,959	1,299
	상 추	4,252	2,633	112	3,587	2,695	97
	양배추	5,867	5,163	303	6,016	5,220	314
	당 근	2,214	2,881	64	2,549	3,131	80
양념채소	고 추	45,459	229	104	45,360	260	118
	마 늘	28,278	1,199	339	29,352	1,405	412
	양 파	20,965	5,703	1,196	20,036	6,458	1,29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

## 과실류

원예경영과 사무관 이명남

과수 총 재배면적은 1997년 176.1천ha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은 160.8천ha로 '11년 161.2천ha, '12년 159.7천ha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97년 대비 8.7% 감소한 수준이다. 과종별 재배면적은 사과 30천ha, 배 14천ha, 포도 17천ha, 감귤 21천ha, 단감 13천ha, 복숭아 15천ha로 복숭아를 제외하고 전년대비 재배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주요 과종이 타과수에 비해 소득이 적고,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이 적은 매실 등 다른 과수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과실 생산량은 2,523천톤으로 전년의 2,374천톤에 비해 6.2%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과와 배를 제외하고 생산량이 모두 감소하였다. 사과의 경우 494천톤으로 25.1% 증가하였으며 이는 '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배는 '12년도 태풍 블라벤 등으로 인한 낙과피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13년에는 전년대비 63.5%가 증가 하였다.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은 전년대비 1.4kg 증가한 63.2kg이었다.

신선과실류 수출은 주로 배, 단감 위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3년 수출량은 35천톤, 수출액은 80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량 14.5%, 수출액은 6.8% 증가하였다. 특히, 사과의 경우 수출액은 7.0백만달러로 25.9% 증가, 배는 54.9백만달러로 10.3% 증가하였다.

〈표 1-2-6〉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요	내수	1,790	2,473	2,747	3,029	3,294	3,182	3,299	3,051	3,104	3,090	3,171
	수출	13	11	20	36	31	39	51	40	32	30	35
공 급	생산	1,766	2,300	2,429	2,593	2,750	2,698	2,881	2,489	2,459	2,374	2,523
	수입	37	184	338	472	575	523	469	602	677	746	683
1인당소비량(kg)		41.8	54.8	58.8	62.6	67.9	65.5	67.7	62.4	62.4	61.8	63.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 화훼류

원예경영과 사무관 우현경

화훼류 재배농가수 및 재배면적은 2005년 12,859호, 7,568ha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은 9,147호, 6,460ha로 2012년 9,450호, 6,538ha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5년 대비 각각 28.9%, 14.6% 감소한 수준이다. 분류별 재배면적을 보면 절화류·분화류의 경우 감소한 반면 초화류·관상수류·화목류는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시농업·조경산업 활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화훼류 생산액은 7,368억원으로 2012년 7,567억원에 비해 2.6%, 199억원 감소하였다. 2013년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14,452원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화훼류 수출은 절화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수출국은 일본이다. 2013년은 61,182천\$를 수출하여 2012년 83,960천\$에 비해 27.1%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 수출국 일본의 현지 경매가격 및 원엔 환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화훼류 수입은 61,182천\$로 2012년 47,852천\$에 비해 6.8% 증가하였다.

〈표 1-2-7〉 화훼산업 현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배농가 (호)	8,945	12,509	13,080	12,859	12,021	11,588	10,685	10,347	10,054	9,450	9,147
재배면적 (ha)	3,674	5,343	6,047	7,950	7,509	7,073	6,639	6,829	6,833	6,538	6,460
생 산 액 (억 원)	2,628	5,090	6,650	10,105	9,237	8,969	8,640	8,510	8,215	7,567	7,368
수 출 액 (천\$)	1,443	6,363	28,888	52,142	58,089	76,222	77,179	103,067	90,596	83,960	61,182
수 입 액 (천\$)	5,907	26,738	19,472	28,845	40,974	42,757	38,107	44,744	44,427	47,852	51,10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특용작물

원예산업과 사무관 서수철

참깨 생산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생산량은 2012년 대비 27.2% 증가한 12.4천톤, 2013년 자급률은 13.0% 수준이다.

\* 생산량 : (97)33천톤 → (00)32 → (05)23.5 → (10)12.7 → (11)9.5 → (12)9.8 → (13)12.4

참깨 수입은 연간 70~80천톤 내외의 수준이며,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시장접근물량으로 도입되어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 생산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등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3년 생산량은 2012년 대비 5.98% 증가한 11.0천톤이며, 자급률은 27.1% 수준이다.

\* 생산량 : (98)14천톤 → (00)9 → (05)6.6 → (10)13.9 → (11)10.8 → (12)9.9 → (13)11.0

〈표 1-2-8〉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참 깨								땅 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수 요	계	57.8	88.9	101.6	100.6	93.4	96.3	96.0	97.6	44.2	29.7	42.9	40.8	43.6	43.3	40.2	41.8
	당년소비	56.8	86.3	94.6	90.7	86.9	90.2	88.7	89.3	40.1	25.1	41.0	39.9	43.1	42.6	39.5	41.8
	수 출	0.4	-	-	-	-	-	-	-	-	2.3	0.4	-	-	-	-	-
공 급	채년이월	0.6	2.6	7.0	9.9	6.5	6.1	7.3	8.3	4.1	2.3	1.5	0.9	0.5	0.7	0.7	-
	계	57.8	88.9	101.6	100.6	93.4	93.1	96.0	97.6	44.2	29.7	42.9	40.8	43.6	40.1	40.2	41.8
	전년이월	4.7	19.0	7.5	13.1	5.1	7.0	6.1	7.3	8.1	3.3	2.7	1.1	1.0	0.4	0.7	-
자 급	생 산	38.1	27.9	24.1	20.9	12.7	9.5	9.7	12.4	28.7	16.8	12.4	8.3	13.9	10.8	11.0	11.0
	수 입	15.0	42.0	70.0	66.6	75.6	76.6	80.2	77.9	7.4	9.6	27.8	31.4	28.7	28.9	29.6	30.1
자 급 률(%)	67	32	30	23	14	14	10.9	13.9	72	67	30	21	32	32	25.1	26.2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

버섯 생산량은 소득 향상과 식품의 고급화에 따라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3년 농산 버섯 생산량은 2012년 대비 6.78% 감소한 161.6천톤이며, 양송이, 느타리, 팽이, 새송이버섯 등 4품목 생산량이 150.2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2.9%를 차지한다.

\* 생산량 : (97)114천톤 → (00)117 → (05)162 → (10)174 → (11)165 → (12)173 → (13)161.6

〈표 1-2-9〉 버섯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수요	계	58.4	103.3	126.8	174.2	190.2	184.4	191.4	182.8
	당년소비	55.4	103.2	126.6	173.7	169.0	166.2	176.8	166.5
	수 출	3.0	0.1	0.2	0.5	21.2	18.2	14.6	16.3
	차년이월	-	-	-	-	-	-	-	-
공급	계	58.4	103.3	126.8	174.2	190.2	184.4	191.4	182.8
	전년이월	-	-	-	-	-	-	-	-
	생 산	55.3	95.8	117.6	162.1	173.6	165.3	173.4	161.6
	수 입	3.1	7.5	9.2	12.1	13.8	19.4	18.0	21.2
자급률(%)		100	93	93	93	103	99.5	98.1	97.1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수출은 팽이, 새송이버섯의 생산기술 향상으로 가격·품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수출액은 2012년 대비 13.4% 감소한 37,999천달러이다.

\* 수출액 : (00)5,562달러 → (08)23,185 → (09)33,038 → (10)38,886 → (11) 38,231 → (12) 33,501 → (13) 37,999

〈표 1-2-10〉 버섯종류별 수출액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액(천불)	5,562	8,633	23,185	33,038	38,886	38,231	33,501	37,999
팽 이	62	3,448	11,259	21,276	26,296	22,591	16,863	19,486
새송이	-	3,455	7,298	9,667	11,267	13,671	12,483	14,155
느타리	23	693	1,347	224	311	351	746	1,224
기 타	5,477	1,037	3,281	1,871	1,012	1,499	3,409	3,13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

## 인삼류

원예산업과 사무관 서영주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품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수출상품이다. 우리나라의 인삼가공

기술은 해외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매우 뛰어나다. 인삼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감소하다가 1995년 전매제 폐지이후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왔다. 최근에는 연작장해와 이로 인한 신규 경작지 확보 어려움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생산량도 감소 추세이다. 2013년 재배면적은 2012년에 비해 5.5%감소한 15,824ha이며, 생산량은 15.7% 감소한 21,968톤이다.

인삼 재배농가수는 2012년 23,795호, 2013년 24,376호로 전체 농가수의 2% 수준이지만, 인삼 수출액은 2013년 175백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11〉 인삼류 생산동향

(단위: ha, 톤, 호, 백만달러)

구분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배면적	12,184	9,375	12,445	14,153	19,408	19,702	19,010	17,601	16,174	15,824
생산량	13,889	11,971	13,664	14,561	24,613	27,460	26,944	26,737	26,057	21,968
농가수	36,404	23,172	23,011	15,793	24,298	23,285	23,857	23,578	23,795	24,376
수출액	165	140	79	82	97	109	124	189	151	17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인삼 통계자료집

###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 축산물

❏ 축산경영과 서기관 서재호, 사무관 이연섭, 주동철, 우만수

##### ▼▼ 쇠고기

2013년 쇠고기 소비량은 519천톤으로 전년(486천톤)보다 6.8%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국내산 출하물량 증가와 더불어, 한우자조금을 통한 연중 할인판매 및 대체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13년도 소비량 중 국내산은 260천톤으로 전년대비 10.8%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산은 전년 비슷한 259천톤이 소비되었다. 한편 2013년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0.3kg로 전년(9.7kg)보다 6.2% 증가하였다.

산지소값은 2010년이후 지속적인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른 출하물량 증가로 2013년 연 평균가격

(큰 수소)이 5,022천원까지 하락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상승세(2014.8월 559만원)를 유지하고 있다.

소 사육마리수는 2010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암소감축 등 사육마리수 감축정책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92만두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08년 181천호, 2009년 175천호, 2010년 172천호, 2012년 147천호, 2013년 130천호로 전년(147천호)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마리수는 2008년 13.4두, 2009년 15.1두, 2010년 17.0두, 2011년 18.1두, 2012년 20.8두, 2013년 23.5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육 규모화는 구조조정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12〉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소비량	317	330	369	365	396	431	505	486	519
- 국내산	152	158	171	173	198	186	216	234	260
- 수입산	164	172	198	191	198	245	289	252	259
1인당 소비량(kg)	6.7	6.8	7.6	7.5	8.1	8.8	10.2	9.7	10.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13년 총 소비량은 2012년 960천톤보다 9.3% 증가한 1,049천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12년 19.2kg에서 2013년 20.9kg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돼지 사육두수는 2012년 12월 9,916천두에서 2013년 12월에는 9,912천두로 비슷하였고, 2013년 12월 모돈 수는 895천두로 2012년 12월 962천두보다 7.0% 감소하였다.

사육가구 수는 2012년 12월 6.0천 가구에서 2013년 12월 5.6천두 가구로 6.7%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12년 12월 1,642두에서 2013년 12월 1,759두로 증가하였다.

산지 돼지가격도 2012년 연간 평균가격이 335천원/110kg이었으나 2013년은 300천원/110kg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구제역에서 회복하여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고 수입량이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 ▼▼ 닭고기

닭고기의 2013년 총 소비량은 2012년 579천톤보다 0.2% 증가한 580천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10.7kg, 2011년 11.4kg, 2012년 11.6kg, 2013년 11.5kg으로 전년대비 0.1kg 감소하였다. 닭고기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8.2% 증가하여 연평균 1,837원/kg이었으며, 2013년 12월 기준 전체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76백만마리였다.

전체 사육가구 수는 2013년 12월에 1.6천호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48,874마리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1,175호로 규모화·전업화가 가속되고 있다.

### ▼▼ 계란

계란의 2013년 총 소비량은 631천톤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12.6kg으로 전년 대비 0.5kg 증가하였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15.3% 증가한 1,303원/10개(특란기준)이었다.

### ▼▼ 우유

2013년 원유 총 생산량은 2,093천톤으로 2012년 2,111천톤 대비 0.8%(18천톤) 감소하였다.

유제품 소비량(수출 포함)은 3,679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12년 3,452천톤보다 6.6% 증가하였고, 시유 소비량은 2013년 1,587천톤으로 2012년보다 0.6%(9천톤) 증가하였다.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71.3kg으로 2012년 67.2kg보다 6.1% 증가하였으며, 음용유 소비량은 33.5kg으로 전년 33.6kg보다 0.1kg 감소하였다. 유제품 수입량 증가 등으로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하였으나, 대체음료 개발 등으로 음용유 소비는 감소 또는 정체상태에 있다.

2013년도 국산원유 2,093천톤 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 양은 1,928천톤(백색시유 1,412, 가공시유 175, 기타 유제품 341)으로서 전년도 투입량 1,915천톤에 비해 0.7% 증가하였으며, 잉여량(분유 가공량)은 전년 196천톤에 비해 15.8% 감소한 165천톤 수준이었다.

우유 지급률은 FTA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유제품 증가로 인해 전년에 비해 7% 감소한 58.4%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가축사각비, 사료비 등의 증가로 전년 784원/ℓ 보다 2.9% 높아진 807원/ℓ 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13년 12월 424천두로 지난해 420천두보다 1% 증가하였으며, 젖소사육농가수는 2012년 12월 6,007호에서 2013년 12월 5,830호로 2.9% 감소되었다.

낙농업의 전업화 및 규모화로 인해 가구당 사육두수는 2013년 12월 73두로 전년 동월 70두보다 4.3% 증가하였다.

❖ 사료작물

❏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상현, 사무관 홍기성

2013년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6,845천톤으로 전년(24,960천톤)보다 7.6% 증가하였으며, 이 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21,635천톤, 조사료가 5,731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9,086천톤으로 전년(18,640천톤)보다 2.4% 증가하였다.

〈표 1-2-13〉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2000	2006	2009	2010	2011	2012(A)	2013(B)	증감률(B/A)
합 계	19,289	21,271	24,547	25,157	24,960	26,845	27,366	1
농 후 사 료	15,897	17,049	19,344	20,124	19,383	21,182	21,635	2.1
- 배 합 사 료	15,105	15,693	16,665	17,710	16,815	18,640	19,086	2.4
- 농 가 자 급 사 료	792	1,356	2,679	2,414	2,568	2,542	2,549	0.3
조 사 료	3,392	4,222	5,203	5,033	5,577	5,663	5,731	1.2
- 사료작물 및 목초류	992	1,326	2,101	1,870	2,454	2,503	2,690	7.5
- 산야초, 볏짚 등	2,400	2,896	3,102	3,163	3,123	3,160	3,041	△3.8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이며,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생산에 투입된 원료사용량 기준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종별로는 양돈용, 한육우용이 각각 7.9%, 1.4% 증가한 반면 양계용, 젖소용 기타의 경우는 각각 0.7%, 0.4%, 2.2%로 감소하였다. 이는 FMD 영향으로 인해 감소되었던 돼지 등의 사육 마릿수가 모든 입식 증가 등 FMD 발생 이전의 사육두수를 회복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사료 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3년 배합사료 가격은 대두박을 비롯한 식물성 박류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2012년 대비 0.6% 인상되었다.

〈표 1-2-14〉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 분	1995	2000	2006	2009	2010	2011	2012(A)	2013(B)	증감률(B/A)
합 계	14,856	15,105	15,693	16,665	17,710	16,815	18,640	19,086	2.4
양 계 용	3,766	3,867	4,267	4,463	4,658	4,748	4,823	4,790	△0.7
양 돈 용	4,725	5,215	5,175	5,332	5,535	4,482	5,685	6,136	7.9
젖 소 용	2,905	1,892	1,539	1,311	1,292	1,240	1,337	1,332	△0.4
한육우용	3,680	3,340	3,574	4,310	4,761	4,792	5,143	5,213	1.4
기 타	589	792	1,138	1,249	1,464	1,553	1,652	1,615	△2.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사료자원 개발을 통한 사료자급도를 높이고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의 기반인 초지면적은 2013년 현재 37천ha로 277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고,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1.7%감소하였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어려운 반면, 레저·관광산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제외 면적이 줄어 든 것이다.

〈표 1-2-15〉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구 분	2000	2003	2006	2009	2010	2011	2012(A)	2013(B)	증감률(B/A)
관 리 면 적	51,870	46,546	42,114	40,057	39,371	38,953	37,675	37,030	△1.7
목초생산량	364	343	294	280	273	273	266	277	4.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제2절 식품 수급동향

###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재

#### ❖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2005~2012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3.0%로 같은 기간 소비 지출액 증가율 3.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식품류별로는 빵 및 떡류(8.0%), 당류 및 과자(5.7%), 육류 및 육류가공품(4.9%)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해조 및 해조가공품(-5.0%), 곡류 및 곡물가공품(-0.3%)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가 2012년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류 및 육류가공품(9.1%), 과일 및 과일이공품(6.6%), 채소 및 채소가공품(6.0%), 곡류 및 곡류가공품(5.7%)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유지류(0.4%), 해조 및 해조가공품(0.6%), 기타식품(1.5%)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1-2-16〉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도시가구)

(단위: 천 원,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및 곡류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및 육류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이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	조미 식품	기타 식품	차, 음료, 주류	외식비
2005	1925.6	546.5 (100)	39.2 (7.2)	12.9 (2.4)	43.5 (8.0)	32.1 (5.9)	24.8 (4.5)	2.3 (0.4)	32.2 (5.9)	31.8 (5.8)	6.2 (1.1)	17.6 (3.2)	11.6 (2.1)	7.7 (1.4)	21.8 (4.0)	262.7 (48.1)
2006	1997.4	551.8 (100)	36.5 (6.6)	13.7 (2.5)	44.9 (8.1)	33.3 (6.0)	24.0 (4.3)	2.4 (0.4)	33.8 (6.1)	32.8 (5.9)	6.3 (1.1)	16.4 (3.0)	11.7 (2.1)	8.5 (1.5)	22.6 (4.1)	264.9 (48.0)
2007	2072.6	565.0 (100)	35.5 (6.3)	14.9 (2.6)	46.1 (8.2)	34.0 (6.0)	23.8 (4.2)	2.3 (0.4)	34.1 (6.0)	33.9 (6.0)	6.5 (1.2)	16.7 (3.0)	10.2 (1.8)	8.8 (1.6)	22.7 (4.0)	275.3 (48.7)
2008	2179.6	605.3 (100)	39.2 (6.5)	17.5 (2.9)	50.5 (8.3)	35.3 (5.8)	27.0 (4.5)	2.8 (0.5)	36.4 (6.0)	33.4 (5.5)	6.9 (1.1)	18.7 (3.1)	10.9 (1.8)	9.4 (1.6)	24.8 (4.1)	292.8 (48.4)
2009	2179.9	589.7 (100)	37.2 (6.3)	18.5 (3.1)	52.4 (8.9)	34.2 (5.8)	28.7 (4.9)	2.9 (0.5)	36.1 (6.1)	32.0 (5.4)	3.9 (0.7)	19.8 (3.4)	10.9 (1.8)	8.9 (1.5)	24.4 (4.1)	280.0 (47.5)
2010	2312.5	619.6 (100)	34.5 (5.6)	20.3 (3.3)	56.0 (9.0)	34.9 (5.6)	29.3 (4.7)	2.8 (0.5)	38.5 (6.2)	39.2 (6.3)	4.1 (0.7)	22.0 (3.6)	10.9 (1.8)	9.9 (1.6)	26.3 (4.2)	290.9 (47.0)
2011	2404.3	650.5 (100)	37.7 (5.8)	21.4 (3.3)	60.1 (9.2)	36.9 (5.7)	30.3 (4.7)	2.8 (0.4)	40.7 (6.3)	38.3 (5.9)	4.4 (0.7)	24.5 (3.8)	14.7 (2.3)	10.1 (1.6)	28.6 (4.4)	300.2 (46.1)
2012	2485.2	673.5 (100.0)	38.3 (5.7)	22.1 (3.3)	61.0 (9.1)	35.1 (5.2)	31.7 (4.7)	2.8 (0.4)	44.2 (6.6)	40.3 (6.0)	4.3 (0.6)	25.9 (3.8)	14.7 (2.2)	10.3 (1.5)	30.1 (4.5)	312.6 (46.4)
05-12	3.7	3.0	-0.3	8.0	4.9	1.3	3.6	2.8	4.6	3.4	-5.0	5.7	3.5	4.3	4.7	2.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2012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간소득계층(3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빵 및 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기타식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차·음료·주류, 당류 및 과자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품목은 채소 및 채소가공품, 곡류 및 곡류가공품 등이다. 조미식품은 소득 증가에 따라 오히려 지출액이 감소하였다.

〈표 1-2-17〉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2012년도 도시가구평균)

(단위: 천원)

구 분	1·2분위		3분위		4·5분위	
소 비 지 출	1,608	(66.5)	2,418	(100)	3,396	(140.5)
식 료 품	490	(72.1)	679	(100)	855	(125.8)
곡류 및 곡류가공품	36	(95.3)	38	(100)	41	(108.1)
빵 및 떡 류	15	(66.1)	23	(100)	29	(124.5)
육류 및 육류가공품	46	(75.2)	62	(100)	75	(121.8)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1	(94.1)	33	(100)	40	(122.1)
유 제 품 및 알	25	(75.2)	33	(100)	38	(113.4)
유 지 류	3	(88.5)	3	(100)	3	(109.5)
과일 및 과일가공품	33	(76.7)	43	(100)	57	(132.8)
채소 및 채소가공품	39	(101.3)	38	(100)	43	(112.3)
해조 및 해조가공품	4	(88.4)	4	(100)	5	(117.2)
당 류 및 과 자	19	(66.7)	28	(100)	31	(110.2)
조 미 식 품	15	(108.8)	14	(100)	15	(103.3)
기 타 식 품	7	(68.1)	11	(100)	13	(117.3)
차 · 음 료 · 주 류	23	(71.2)	32	(100)	37	(116.6)
외 식 비	194	(61.1)	317	(100)	429	(135.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는 감소추세에 있다가, 최근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지방과 비타민C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1,994kcal, 단백질 72.4g, 지방 45.2g, 철 14.5mg, 비타민C 105.3m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8〉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구 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5	1,936	74.5	29.5	569	15.6	1,846	1.3	1.2	25.7	64.7
1990	1,868	78.9	28.9	517	22.7	1,662	1.2	1.3	21.6	81.2
1995	1,839	73.3	38.5	531	21.9	443	1.2	1.2	16.7	98.3
1998	1,985	74.2	41.5	511	12.5	625	1.4	1.1	15.7	123.1
2001	1,976	71.6	41.6	497	12.2	624	1.3	1.1	16.9	132.6
2005	2,016	75.8	46.0	553	13.6	782	1.3	1.2	17.1	98.2
2007	1,831	65.9	37.7	469	13.1	736	1.2	1.1	14.7	93.2
2009	1,885	67.5	39.9	492	13.5	769	1.3	1.2	15.5	100.4
2011	2,030	73.5	45.0	515	14.6	813	1.4	1.3	17.0	103.9
2012	1,994	72.4	45.2	502	14.5	864	1.4	1.3	16.9	105.3

주 :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2010년에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70.0%로 매우 낮았다. 철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상에 쌀의 철 함량이 하향 조정된 데 기인한다. 단백질(155.7%), 철(142.4%), 비타민A(132.4%), 티아민(123.6%), 나이아신(116.8%), 비타민 C(112.0%)는 섭취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에너지는 96.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19〉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영양소	1987	1989	1991	1993	1995	1998	2001	2005	2007	2009	2011	2012
에너지	87.7	87.5	93.1	90.0	88.6	94.5	94.8	98.4	87.5	91.1	98.2	96.5
단백질	107.7	118.2	118.1	117.9	116.7	117.8	127.0	169.0	142.9	146.7	159.1	155.7
칼슘	78.1	76.2	82.3	84.0	75.4	72.8	71.0	76.3	63.4	67.1	71.9	70.0
철	167.7	156.7	177.3	176.0	159.5	91.9**	95.2	126.3	119.8	125.4	142.5	142.4
비타민 A	53.6	77.2	84.3	67.7	67.2	95.6	95.4	121.9	108.4	118.1	124.6	132.4
티아민	95.2	99.3	120.7	140.1	108.8	126.3	119.8	122.3	114.4	115.9	124.7	123.6
리보플라빈	87.3	85.0	98.4	97.3	96.0	86.2	91.0	95.8	82.5	93.2	100.2	100.1
나이아신	127.8	133.5	126.7	120.6	119.8	110.8	119.4	121.5	102.6	107.8	118.5	116.8
비타민 C	98.8	119.7	175.8	175.6	185.4	234.0	197.1	106.6	99.3	107.4	110.8	112.0

주 : 1) 1995년까지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부터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임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 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당질 61.9%, 단백질 13.7%, 지방 24.5%로 나타났다. 당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 식품 수요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재

### ❖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12년 쌀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악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곡류도 대부분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으나, 옥수수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곡류의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채소류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으며, 과일류는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감소에도 수입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서류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용

공급량이 소폭 감소하였다. 육류는 사육마리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어패류는 국내 생산량의 한계 및 수요 증가, 수입자유화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해조류는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쌀 생산량이 71천 톤, 이입량이 541천 톤이 감소하여, 수입량이 298천 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용공급량은 80.58kg에서 79.45kg으로 1.13kg 감소하였다. 밀 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7천톤, 908천톤이 감소하여, 이입량이 전년대비 84천 톤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용공급량은 34.05kg에서 32.43kg으로 1.62kg이 감소하였다.

감자는 2012년 재배 면적 감소와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14천 톤 감소하여, 수입량이 2.3천 톤이 증가하였으나, 1인당 식용공급량은 8.42kg에서 8.27kg으로 0.15kg 감소하였다. 고구마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6.0% 감소하고,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전년 대비 4.13kg에서 3.46kg으로 0.66kg 감소하였다.

채소류는 무, 배추, 파 등의 주요 작물의 생산량 감소에 의해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154.56kg에서 138.92kg으로 15.64kg 감소하였다. 배추는 전년도의 가격 하락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4.0%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529천톤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배추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39.1kg에서 31.9kg으로 전년대비 7.2kg이나 감소하였다. 무는 2012년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4% 감소하여 생산량이 97천 톤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은 16.4kg에서 15.0kg으로 2.4kg 감소하였다. 파는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2.5% 감소하였으며, 수확기 한파 피해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125천 톤 감소하였으며, 식용공급량은 7.2kg에서 5.2kg으로 2.0kg 감소하였다.

〈표 1-2-20〉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품 목	2011(확정)	2012(잠정)	증가율(%)
곡 류	144.48	146.08	△1.11
쌀	80.58	79.45	▽1.40
보 리	1.33	1.04	▽21.80
밀	34.05	32.43	▽4.76
옥수수	25.60	30.58	△19.45
기 타	2.93	2.58	▽11.95
서 류	12.55	11.74	▽6.45
감 자	8.42	8.27	▽1.78
고구마	4.13	3.46	▽16.22
설 탕 류	22.69	22.58	▽0.48
두 류	9.91	10.96	△10.60
콩	7.91	8.98	△13.53
팥	0.58	0.68	△17.24
기 타	1.42	1.30	▽8.45
견 과 류	1.53	1.54	△0.65
종 실 류	0.85	0.74	▽12.94
참 깨	0.37	0.33	▽10.81
기 타	0.47	0.41	▽12.77
채 소 류	154.56	138.92	▽15.64
과 실 류	46.69	46.21	▽0.48
육 류	44.43	45.97	△3.47
쇠 고 기	9.82	9.39	▽4.38
돼지고기	18.47	18.79	△1.73
닭 고 기	8.88	9.05	△1.91
부 산 물	7.26	8.74	△20.39
계 란 류	9.86	10.35	△4.97
우 유 류	59.27	54.89	▽7.39
우 유	58.09	53.67	▽7.61
어 패 류	37.07	38.99	△5.18
어 류	20.56	22.77	△10.75
패 류	16.50	16.23	▽1.64
해 조 류	15.73	15.88	△0.95
유 지 류	13.87	14.68	△5.84
식 물 성	13.57	14.24	△4.94
동 물 성	0.30	0.44	△46.67
주 류	80.67	82.92	△2.7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식품수급표」, 2013.

과실은 재배면적이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기상호조로 사과, 단감, 포도, 귤 등의 품목이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입량도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0.48kg 정도만 감소하였다. 사과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기상호조로 대과 생산 비율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15천 톤 증가하였다. 포도는 폐원 및 작목전환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착과 양호와 기상호전으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9천톤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배는 폐원 및 타품목 전환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태풍에 따른 낙과 발생 과다와 흑성병 발생으로 생산량이 약 117천 톤이 감소하였다.

쇠고기는 한·육우 사육두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생산량이 18.1천 톤 증가하고, 수입육 재고 증가로 수입량이 35.9천 톤이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9.82kg에서 9.39kg으로 0.43kg 감소하였다. 돼지는 사육 마리수와 도축 두수 증가와 함께 생산량이 전년대비 174.1kg이 증가하여, 수입량이 95.2kg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용공급량은 18.47kg에서 18.79kg으로 0.32kg정도 증가하였다. 닭고기는 양계농가의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7천 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8.88kg에서 9.05kg으로 0.17kg 증가하였다.

어류는 2012년도 생산량이 전년대비 128.5천 톤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248.6천 톤이나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20.56kg에서 22.77kg으로 2.21kg증가하였다. 패류는 생산이 9.9천 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6.50kg에서 16.23kg으로 0.27kg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해조류는 생산이 25.4천 톤 증가하고, 수입은 2.1천 톤 정도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5.73kg에서 15.88kg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식물성 유지는 생산량이 1.8천 톤 감소하였으나 수입량과 이입량이 각각 42.5천 톤, 0.7천 톤으로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3.57kg에서 14.24kg으로 0.67kg이 증가하였다. 동물성 유지는 어유의 생산이 전년대비 3.7천 톤이 증가하였으며, 수입량도 4.3천 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0.30kg에서 0.44kg으로 0.14kg 증가하였다.

### ❖ 식품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대체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곡류자급률은 1990~2012년간 43.8%에서 22.9%, 채소류는 98.9%에서 89.7%, 과실류는 102.5%에서 76.1%, 육류는 92.9%에서 77.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류는 92.8%에서 61.5%, 어패류는 121.7%에서 62.9%, 유지류는 8.0%에서 2.0%로 하락하였다.

〈표 1-2-21〉 연도별 자급률 추이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공급 영양 자급률	칼로리	62.6	50.6	50.6	45.4	49.3	41.2	41.1
	단백질	67.8	57.2	52.8	47.0	47.6	44.2	43.1
	지 방	30.3	26.8	21.4	18.1	20.4	18.4	18.1
물량 기준 자급률	곡 류	43.8	30.0	30.8	29.4	28.1	23.1	22.9
	쌀	108.3	91.1	102.9	96.0	104.5	83.0	86.1
	두 류	24.5	11.7	8.2	10.7	11.0	7.6	10.4
	채소류	98.9	99.2	97.7	94.5	90.1	90.4	89.7
	과실류	102.5	93.2	88.7	85.6	81.0	78.5	76.1
	육 류	92.9	89.2	83.9	81.6	78.6	68.8	77.3
	쇠고기	53.6	50.8	53.2	48.1	43.2	42.8	48.2
	돼지고기	100.3	96.6	91.6	83.7	81.0	61.4	78.2
	닭고기	100.0	98.1	79.9	84.3	83.4	80.6	80.0
	계란류	100.0	99.9	100.0	99.3	99.7	99.5	99.6
	우유류	92.8	93.3	81.2	72.8	66.3	53.4	61.5
	어패류	121.7	100.4	87.7	60.0	68.1	70.5	62.9
	유지류	8.0	4.8	3.2	2.8	2.6	1.8	2.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식품수급표」, 2013.

칼로리 자급률<sup>1)</sup>은 1970년 79.5%, 1990년 62.6%, 2012년 41.1% 수준으로 1970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12년 43.1%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12년 18.1% 수준이다.

### ❖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민 1인 1년당 식품 공급량(조식품기준)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곡류(155.8kg), 채소류(152.6kg), 어패류(80.5kg) 등은 비교적 많은 반면, 설탕류(14.0kg), 과실류(56.1kg), 육류(49.1kg),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 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 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우유류(54.9kg) 등은 비교적 적다

곡류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155.8kg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 대만에 비해서 많은 편이며, 유럽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한편 두류의 1인 1년당 공급량은 13.4kg으로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다.

채소류의 연간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2012년에 152.6kg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대만,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육류의 공급량은 49.1kg으로 일본, 파키스탄 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유럽국가와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계란류(11.9kg), 우유류(54.9kg)의 공급량도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어패류의 공급량은 80.5kg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 1-2-22〉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12	2009	2009	2009	2009	2009
곡 류	155.8	114.6	87.2	108.0	109.5	136.9
서 류	12.7	31.8	21.9	56.9	71.9	16.1
설탕 류	14.0	27.7	25.6	64.2	46.7	27.7
두 류	13.4	12.4	25.2	13.1	10.6	8.8
채 소 류	152.6	101.5	103.7	123.0	93.1	32.5
과 실 류	56.1	52.6	119.0	110.6	83.2	33.9
육 류	49.1	46.0	73.7	120.1	88.0	14.6
계 란 류	11.9	19.0	16.4	14.2	12.0	2.6
어 패 류	80.5	56.6	29.6	24.1	15.3	1.8
우 유 류	54.9	73.7	20.1	255.5	263.9	171.9
유 지 류	14.7	16.8	22.3	33.6	38.3	17.5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식품수급표」, 2013.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1980년 2,485kcal에서 2000년에는 3,010kcal로 증가하여 연평균 0.1%씩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대체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3,000kcal에서 2012년도에는 2,928kcal로 감소하여 연평균 0.2%씩 감소하고 있다.



캐나다와 덴마크,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의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3,1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분질 식품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 2012년 현재 에너지원의 54.6%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그러나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성식품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구성비는 소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25.1%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표 1-2-23〉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12	2009	2009	2009	2009	2009
에너지(kcal)	2,927	2,556	2,680	3,494	3,223	2,368
전 분 질(%)	54.6	44.3	42.8	27.5	30.7	52.1
설 탕(%)	8.1	10.3	9.6	17.3	14.2	11.3
동 물 성(%)	17.0	20.4	20.4	26.0	24.4	16.0
유 지 류(%)	12.6	15.4	20.0	21.1	22.8	16.8
기 타(%)	7.7	9.5	7.3	8.1	7.8	3.8
1인당GNI(\$)	22,670	37,610	16,901	48,040	41,550	1,040

주 : 한국,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식품수급표」, 2013.

### 3. 식품산업 동향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정경석

#### ❖ 식품제조업

2012년 식품제조업체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는 4,423개로 2001년(3,572개)보다 23.8%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79천명으로 2001년(159천명)보다 12.6% 증가하였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출하액은 2012년 75.2조원으로 2001년 36.1조원 대비 108.3% 증가하였다.

2012년 식품제조업 1개 사업체당 출하액(출하액/사업체수)은 170억원으로 2001년 101억원보다 68.2% 증가하였다. 한편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는 1,5억원으로 2001년(0.93억원) 대비 56.1%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은 2012년 34.7%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24〉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

구 분	200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사업체수(A)	3,572	4,257	4,061	4,169	4,261	4,360	4,423
○ 종사자수(B)	159	163	161	167	171	177	179
○ 출하액(C)	36,081	48,149	55,212	60,771	63,725	70,208	75,150
※ 업체당 출하액(C/A)	10.101	11.311	13.596	14.577	14.955	16.103	16.991
※ 1인당 부가가치	93.4	119.5	128.3	130.6	132.5	136.2	145.8
※ 부가가치율	41.2	40.4	37.4	35.9	35.6	34.3	34.7

주 :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종사자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출하액×10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식품제조업 내 세부업종별 현황을 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21.2조원(전체 식품제조업의 28.2%), 사업체수 1,555개(35.2%)로 전체 식품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2012년 음료제조업 규모는 사업체수 250개(5.7%), 출하액 9.6조원(12.7%) 수준을 보였다.

2012년 품목별 식품제조업체 구분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815개),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702개), 과일 및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436개),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 제조업(261개) 순서이고, 출하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

(10.8조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7조원),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7.4조원) 순서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 식품제조업체 중 25.4%가 경기지역(1,122개)에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경남(405개, 9.2%), 충남(395개, 8.9%) 지역에 사업체가 많이 있었다.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8.9조원), 충북(9.4조원) 순서이며, 업체당 출하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최고:인천 360.1억원, 최저:전남 75.9억원), 이는 지역에 분포된 주요 업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25〉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12)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비중(%)
□ 식품 제조업	4,423	178,839	75,149,913	100.0%
• 식품 제조업	4,173	165,694	65,587,683	87.3%
-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	702	31,662	10,819,518	14.4%
-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	815	25,827	4,651,072	6.2%
-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436	14,222	2,412,444	3.2%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57	1,763	2,342,641	3.1%
-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	107	9,777	7,403,023	9.9%
-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제조업	261	7,806	5,998,857	8.0%
- 기타 식품제조업	1,555	66,396	21,220,743	28.2%
- 동물성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40	8,241	10,739,385	14.3%
• 음료 제조업	250	13,145	9,562,230	12.7%
- 알콜 음료 제조업	95	6,196	4,728,131	6.3%
- 비알콜 음료, 열음 제조업	155	6,949	4,834,099	6.4%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2012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가 전체의 80.5%이고 2001년 이후 79.6% 수준에서 2007년 82.6%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의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 : 54개소 → 2012년 : 43개소). 또한 식품제조업체의 80.5%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의 41.5%, 출하액 비중은 27.7%에 불과해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출하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15.9%이고, 1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업체는 80.0%,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4.1%에 그쳤다.

〈표 1-2-26〉 규모별 추이

(단위 : 개, %)

구 분	200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업체수	3,572	4,257	4,061	4,169	4,261	4,360	4,423
• 종사자규모별							
- 50인 미만	79.6	82.6	81.5	81.0	81.2	80.7	80.5
- 50~300인	18.9	16.4	17.5	18.0	17.9	18.3	18.5
- 300인 이상	1.5	0.9	1.0	1.0	0.9	1.0	1.0
• 출하액규모별							
- 10억원 미만	37.3	26.9	22.9	19.4	19.2	17.3	15.9
- 10~100억원	47.2	55.1	56.6	57.9	57.7	58.2	58.9
- 100~1,000억원	13.4	15.6	17.3	19.2	19.7	20.7	21.1
- 1,000억원 이상	2.2	2.3	3.2	3.5	3.4	3.8	4.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외식산업

#### Ⅰ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도경록

2012년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625천개로 지난 10년간 50만개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753천명으로 2002년 1,586천명보다 10.5%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77.3조원으로 2002년 40.5조원에 비해 90.9% 증가하여 큰 증가세를 보였다.

외식산업 1개 사업체당 매출액(매출액/사업체수)은 2012년 123.7백만원으로 2002년 68.0백만원에 비해 81.9% 증가하였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매출액/종사자수)은 2012년 44.1백만원으로 2002년 25.5백만원에 비해 72.9% 증가하였다.

〈표 1-2-27〉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천원/m<sup>2</sup>)

구 분	200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체수(A)	596	546.5	577.3	577.0	580.5	586.2	607.2	624.8
종사자수(B)	1,586	1,450	1,567	1,578	1,601	1,609	1,683	1,753
매출액(C)	40,491	50,892	56,365	64,712	69,865	67,566	73,507	77,285
- 업체당 매출액(C/A)	68.0	93.1	97.6	112.2	123.5	115.2	121.1	123.7
- 1인당 매출액(C/B)	25.5	35.1	36.0	41.0	43.6	41.9	43.6	44.1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10), 통계청 도소매업조사('12)

업종별 내역을 보면 한식당 사업체수가 295천개, 매출액은 35.2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사업체 및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기관구내식당, 서양식, 중식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식당 사업체수는 2011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3.8% 증가하여 업체당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8〉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단위 : 개, 10억원, 백만원/개소)

업종	2011			2012		
	사업체수(A)	매출액(B)	업체당매출액(B/A)	사업체수(A)	매출액(B)	업체당매출액(B/A)
음식점 및 주점업	607,180	73,507	121.0	624,831	77,285	124
□ 음식점업	439,794	59,637	135.6	451,338	63,119	140
• 일반 음식점업	327,093	42,372	129.5	334,917	44,164	132
- 한식	289,218	33,891	117.1	295,348	35,178	119
- 중식	21,458	3,008	140.1	21,680	3,011	139
- 일식	6,707	1,972	294.0	7,211	2,170	300
- 서양식	8,533	3,209	376.0	9,175	3,447	376
- 기타 외국식	1,177	290	246.3	1,503	358	238
• 기관구내식당업	5,578	3,697	662.7	6,955	4,700	676
• 출장 및 이동음식업	459	109	237.4	496	127	256
• 기타 음식점업	106,664	13,457	126.1	108,970	14,129	130
- 제과점업	14,632	3,785	258.6	14,799	3,970	268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13,678	3,273	239.2	13,711	3,424	250
- 치킨 전문점	29,095	2,395	82.3	31,139	2,659	85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44,912	2,870	63.9	45,070	3,007	67
- 그외 기타 음식점업	4,347	1,133	260.6	4,251	1,069	251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67,386	13,869	82.8	173,493	14,160	82
• 주점업	131,137	10,960	83.5	131,035	10,888	83
• 비알콜 음료점업	36,249	2,909	80.2	42,428	3,278	77

자료 : 도소매업조사('12)

지역별로는 경기(124천개)와 서울(116천개) 지역에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중 38.4%가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매출액은 서울(1.69억원), 경기(1.32억원), 대전(1.31억원), 울산(1.29억원), 인천(1.25억원) 등 대다수 지역이 1억원 이상이고, 강원(0.88억원), 경북(0.82억원) 지역이 9천만원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2-29〉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2012)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구 분	사업체수	비 중	종사자수	매출액	업체당매출액	1인당매출액
전 국	625	100	1,753	77,285	124	44
서 울	116	18.6	396	19,552	169	49
부 산	47	7.5	131	5,613	119	43
대 구	31	5.0	82	3,266	105	40
인 천	29	4.6	82	3,613	125	44
광 주	17	2.7	49	2,012	118	41
대 전	18	2.9	51	2,353	131	46
울 산	16	2.6	41	2,063	129	50
세 종	2	0.3	3	162	81	54
경 기	124	19.8	369	16,389	132	44
강 원	28	4.5	66	2,468	88	37
충 북	22	3.5	55	2,197	100	40
충 남	28	4.5	69	3,036	108	44
전 북	22	3.5	58	2,498	114	43
전 남	25	4.0	59	2,510	100	43
경 북	41	6.6	92	3,350	82	36
경 남	49	7.8	120	4,991	102	42
제 주	10	1.6	30	1,212	121	40

2012년 전국 음식점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수는 88.6%이며, 종사자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2% 수준이다. 2012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63.8%로 2011년 64.3%에 비해 0.5%p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업체는 전체의 35.2%으로 2011년 34.6%에 비해 0.6%p 증가하였다.

〈표 1-2-30〉 사업체수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체수	546.5	550.8	577.0	580.5	586.2	607.2	624.8
종사자규모별							
- 5인 미만	90.4	89.9	89.8	89.6	91.3	90.5	88.6
- 5~10인	7.9	8.2	8.2	8.4	6.5	7.3	9.2
- 10인 이상	1.8	1.9	1.9	2.5	2.1	2.2	2.2
매출액규모별							
- 100백만원 미만	75.0	71.3	70.5	66.7	72.9	64.3	63.8
- 100~1,000백만원	24.3	27.9	28.5	32.1	26.0	34.6	35.2
- 1,000백만원 이상	0.7	0.7	1.0	1.20	1.1	1.1	1.0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10), 도소매업조사( '12)

##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 1. 농식품 수출입동향

#### ▼ 수출동향

수출진흥팀 사무관 유재형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5,724.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실적이나 엔화환율 약세, 유럽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시장 다변화 노력과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식품 수출 증가로 이뤄낸 성과이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신선식품은 2012년 대비 9.4% 증가한 1,180.5백만달러, 가공식품은 0.5% 감소한 4,544.1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엔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식품 수출은 9.4%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신선식품은 동남아 지역의 수요증가로 딸기(22.8%),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품위 우위로 버섯류

(13.4%)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엔저현상에 따른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파프리카( $\Delta 2.0\%$ )와 화훼류( $\Delta 27.1\%$ ) 등은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가공식품은 중화권에서 한국산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조제분유(22.5%)가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2011년 급성장했던 막걸리( $\Delta 48.9\%$ )는 일본 주류시장 트렌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표 1-2-31〉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B/A)
		물 량	금 액(A)	물 량	금 액(B)	
농림축산식품	5,383.5	3,206.0	5,644.8	3,335.9	5,724.6	1.4
(신선농식품)	1,015.3	355.3	1,079.4	366.2	1,180.5	9.4
(가공농식품)	4,368.2	2,850.7	4,565.4	2,969.7	4,544.1	$\Delta 0.5$
- 농 산 물	4,940.8	2,337.8	4,785.0	2,566.1	4,741.0	$\Delta 0.9$
- 축 산 물	176.3	95.5	395.1	126.9	435.7	10.3
- 임 산 물	266.4	772.7	464.7	642.9	547.9	17.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aT, 2013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ASEAN(19.0%), 미국(10.5%) 등 FTA 체결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 $\Delta 8.6$ ), EU( $\Delta 4.5$ ) 등은 엔저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농식품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은 엔저 영향에 따른 수출업체 채산성 악화와 일본 내 수요 감소로 화훼류 및 라면, 막걸리 등 수출 감소가 전반적인 수출 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 5.2%(10개국)를 차지했던 1억달러 이상 수출 국가는 적극적인 시장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싱가포르가 추가된 총 11개국으로 전체 수출대상국(203개국) 대비 5.4%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국 대비 주요국 수출비중은 85.0%로 최대 수출국가인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전년(24.9%) 대비 2.4% 감소(22.5%)하여 점진적인 시장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상위 수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일 본 : 제3맥주(전년 대비 △3.1%), 파프리카(△2.2), 소주(△22.7), 김치(△22.2), 껌(85.9)
- 중 국 : 설탕(△12.3), 조제분유(44.2), 커피조제품(△4.0), 인삼(21.3), 음료(20.7)
- 미 국 : 껌(27.9), 음료(△4.3), 라면(18.4), 배(△7.0), 비스킷(26.1)
- 러시아 : 커피조제품(△7.8), 마요네즈(4.8), 음료(△9.4), 껌(27.1), 라면(△21.0)
- 홍콩 : 설탕(△17.5), 인삼(65.0), 껌(216.1), 맥주(12.4), 비스킷(39.6)
- 대 만 : 배(25.5), 껌(31.6), 인삼(△6.0), 커피조제품(△20.2), 비스킷(5.1)
- 아세안 : 껌(△16.5), 커피조제품(17.8), 음료(55.0), 과당(37.6), 라면(△2.7)
- E U : 라면(16.1), 음료(33.2), 새송이버섯(4.4), 김치(17.0), 커피조제품(△39.5)

〈표 1-2-32〉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분	2012년(A)		2013년(B)		증감률(B/A)		점유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3,206.0	5,644.8	3,335.9	5,724.6	4.1	1.4	100.0
일본	809.5	1,407.6	888.7	1,286.6	9.8	△8.6	22.5
중국	731.6	906.4	757.8	947.5	3.6	4.5	16.6
미국	188.4	473.1	202.4	522.7	7.4	10.5	9.1
러시아	129.4	251.4	121.8	244.4	△5.8	△2.8	4.3
홍콩	192.2	268.8	215.6	346.0	12.1	28.7	6.0
대만	252.3	225.3	178.3	234.5	△29.3	4.1	4.1
아세안	451.7	828.1	499.3	985.1	10.5	19.0	17.2
EU	121.8	312.0	165.5	297.9	35.9	△4.5	5.2
기타	329.1	972.1	306.5	859.9	△6.9	△11.5	15.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aT, 2012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 수입동향

### 농업통상과 사무관 고연자

2013년도 농림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4,193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류별 수입동향을 보면 과실류는 오렌지, 키위 등 주 수출국의 작황부진으로 수입량은 전년대비 4.6%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망고, 레몬, 포도 등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6.0% 증가한 1,497.7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곡류는 밀, 보리 등의 수입감소로 수입량은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4.5% 증가한 4,970.6백만달러였고, 채소류는 마늘, 고추 등의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한 836.6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축산물은 소고기의 경우 국내 도축 물량 증가와 수입육 재고 누적으로 수입량이 0.6% 소폭 증가하였고, 돼지고기는 구제역 발생이후 지속적인 모돈 증식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국내 공급량이 증가하여 수입량이 20.0% 감소하였으며, 닭고기도 국내 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량이 2.8%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4,687.7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임산물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6,505.9백만달러가 수입되었으며, 수산물은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전년 대비 2.3%, 러시아 9.8%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여 전년 대비 2.1% 감소한 3,893.3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표 1-2-33〉 농림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 분	2012년(A)		2013년(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51,365.8	33,422.4	52,555.0	34,192.7	2.3	2.3
곡 류	14,499.1	4,755.5	14,355.8	4,970.6	△1.0	4.5
박 류	5,446.7	1,595.7	5,790.9	1,921.9	6.3	20.2
과실류	1,009.9	1,412.4	964	1,497.7	△4.55	6.0
채소류	991.3	839.0	1,002.1	836.6	1.1	△0.3
두 류	1,228.6	814.0	1,204.4	823.3	△2.0	1.1
주 류	384.7	726.7	395.1	721.5	2.7	△0.7
커피류	115.4	598.5	121.7	503.8	5.5	△15.8
연초류	68.5	369.6	69.6	395	1.6	6.9
화훼류	12.8	47.9	11.9	51.1	△7.1	6.8
인삼류	0.1	3.1	0.1	3.9	△20.3	23.6
육류(포유가축)	1.1	37.1	0.6	32.5	△48.4	△12.5
어 류	814.4	2,049.9	790	2,017.3	△3.0	△1.6
갑각류	107.3	672.0	94.6	683.5	△11.8	1.7
기 타	26,685.9	19,501.0	27,754.3	19,734.0	1.2	4.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aT, 2013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미국은 옥수수 등의 작황 부진과 GMO에 대한 우려, 국내 경기침체 및 외식수요 감소에 따른 밀 수입 감소, 사료용 곡물의 가격상승, 돼지고기의 국내 생산증가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한 6,163.1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중국은 쌀, 참깨등의 수입 증가로 수입량은 전년대비 10.3%, 수입액은 가격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한 5,739.1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브라질은 미국의 작황 부진에 따른 옥수수, 대두박, 밀 등 곡물류의 수입증가로 수입량은 전년대비 61.6%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29.2% 증가한 2,875.8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호주는 밀, 보리, 옥수수의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량은 전년대비 22.4%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2% 감소한 2,448.9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표 1-2-34〉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 분	2012년(A)		2013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51,365.8	33,422.4	52,555.0	34,192.7	2.3	2.3
미 국	10,026.5	6,710.6	6,458.9	6,163.1	△35.6	△8.2
중 국	6,987.9	5,296.6	7,707.1	5,739.1	10.3	8.6
브 라 질	3,824.1	2,225.8	6,179.7	2,875.8	61.6	29.2
호 주	6,608.8	2,887.2	5,131.4	2,448.9	△22.4	△15.2
아르헨티나	1,846.5	943.4	2,831.0	1,108.5	53.3	17.5
인 도	2,240.7	730.8	3,182.5	1,087.7	42.0	48.8
베 트 남	1,743.2	1,080.3	1,909.2	1,076.9	9.5	△0.3
A S E A N	8,025.8	4,747.6	8,307.5	4,743.6	3.5	△0.1
E U	1,841.5	2,982.4	2,714.0	3,332.1	47.4	11.7
기 타 국 가	9,070.2	5,559.5	9,182.0	6,043.9	1.2	8.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aT, 2013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농업정책과 사무관 안완기

### ❖ 농식품 교역규모

2013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의 가동중단(4.9~9.15)사태로 인해 전년 19억 7,111만 달러 대비 42.40% 감소한 11억 3,58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농식품 교역실적도 2,083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 규모 11억 3,585만 달러의 1.8%를 차지하였다.

〈표 1-2-35〉 농식품 남북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연도	연도별 교역실적		
		2012	2013	증감률(%)
전 체		1,971.1	1,135.8	△42.4
농 립 수 산 물		38.6	20.8	△46.0

자료 : 통일부 2014 통일백서

### ❖ 농식품 교역동향

#### ▼▼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13년 농식품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17백만 달러로서 전년도 31.4백만 달러보다 -45.8% 감소하였고, 반입은 3.8백만 달러로 전년도 7.2백만 달러보다 -47.1% 감소하였다.

#### ▼▼ 주요 품목별 반출입실적

##### ▼ 반출실적

농식품 반출 총 품목 수는 90여개로, 이 중 농축산물은 쌀, 빵, 소시지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섬유관 등이며, 수산물은 미역, 톳 등으로 나타났다. 반출실적은 17백만달러로 전년도보다 -45.8% 감소하였다.

〈표 1-2-36〉 대북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2012(A)		2013(B)		증감률(B/A,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림수산물 합계	14,799	31,419	6,923	17,036	-7,876	-45.7
쌀	38	75	27	55	-11	-26.6
감 자	0.4	1	-	-	-	-
밀 가루	1,733	765	30	22	-1,703	-97.1
마 늘	-	-	-	-	-	-
대 두 유	112	192	80	119	-32	-38
곡류가공품	232	730	0.2	7	-232	-99
빵	2,208	7,991	909	3,540	-1,299	-55.7
면 류	1,279	3,935	802	2,845	-477	-27.7
기타농산가공품	2,643	5,659	1,455	3,982	-1,188	-29.6
축 산 물	301	1,893	103	814	-198	-56.9
임 산 물	517	541	276	334	-241	-38.2
수 산 물	3,254	1,858	2,130	1,192	-1,124	-35.8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 현황(2013. 12월)

▼ 반입실적

농식품 반입 총 품목은 20개 품목이며, 이 중 농산물은 참깨, 밤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및 기타 목재류, 수산물은 미역, 툃 등이다. 반입실적은 3.8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47.1% 감소하였다.

〈표 1-2-37〉 대북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2012(A)		2013(B)		증감률(B/A,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림수산물 합계	3,930	7,184	2,429	3,798	-1,501	-47.1
참 깨	444	1,501	153	718	-291	-52.1
들 깨	186	536	108	449	-78	-16.2
고 추	27	118	10	71	-17	-39.8
밤	375	1,200	151	484	-224	-59.6
참기름	118	483	13	93	-105	-80.7
기타유지가공품	111	246	44	117	-67	-52.4
합 판	0.5	2	0.2	1	-	-50
기타 목재류	21	94	-	-	-	-
툃	6	108	18	311	12	187.9
미 역	1,835	1,679	1,252	904	-583	-46.1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 현황(2013. 12월)

## 제3장 국제 곡물수급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제1절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양지연

국제 곡물시장은 생산국에서 소비 후 남는 양을 해외에 수출하는 원시적인 시장(primitive market) 구조를 갖고 있으며, 교역량 또한 세계 총 생산량의 15%에 불과한 ‘얇은 시장(thin market)’의 특성을 띠고 있다. 또한, 주요 곡물의 수출이 특정국에 편중되어 있는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세계 곡물의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등 수급 상황은 주요 생산국의 기후여건, 농업정책, 대체에너지 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곡물수급 전망분석 공동 연구를 통해 2022년까지 곡물 생산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13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23억 1,980만톤) 대비 2.3% 감소한 22억 6,710만톤이었으며, 소비량도 전년(23억 1,300만톤)보다 1.2% 감소한 22억 8,470만톤을 기록하여 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기말재고량은 전년(4억 7,240만톤) 보다 3.7% 감소한 4억 5,480만톤을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살펴 보면, 우선 쌀의 경우 2012/13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 보다 1.0% 증가한 4억 7,170만톤이었으며, 소비량 또한 전년 대비 1.9% 증가한 4억 6,850만톤을 기록하였다.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억 990만톤이었으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3%p 높은 23.5%를 나타내었다.

2012/13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5.4% 감소한 6억 5,820만톤, 소비량은 전년보다 2.5% 감소한 6억 7,970만톤을 각각 기록하였다. 기말재고량은 1억 7,560만톤으로 전년보다 12.7% 감소하였고,

기말재고율은 2.5%p 감소한 25.8%를 나타내었다. 밀은 2012/13년도 생산, 공급, 소비, 교역, 기말재고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2.3% 감소한 8억 6,880만톤, 소비량은 전년보다 2.2% 감소한 8억 6,520만톤을 각각 기록하였다. 기말재고량은 전년 보다 2.6% 증가한 1억 3,810만톤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8%p 증가한 16.0%를 기록하였다.

2012/13년도 세계 콩 생산량은 2억 6,790만톤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하였다. 소비량도 전년 2억 5,760만톤 보다 230만톤 늘어난 2억 5,990만톤을 기록하였다. 기말재고량은 5,680만톤으로 전년의 5,350만톤과 비교하여 6.1% 증가하였으며,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1.1%p 증가한 21.9를 기록하였다.

〈표 1-3-1〉 국제 수요 곡물 수급 동향

(단위 : 백만톤)

구 분		'11 / '12	'12 / '13	'13 / '14(추정)		변동률(% , 8월기준)	
				'13.7월	'13.8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전 체 곡 물	생 산 량	2,319.8	2,267.1	2,466.7	2,464.2	8.7	-0.1
	공 급 량	2,785.5	2,739.6	2,921.6	2,919.0	6.5	-0.1
	소 비 량	2,313.0	2,284.7	2,416.7	2,417.8	5.8	-
	교 역 량	344.8	299.5	362.5	364.2	21.6	0.5
	기말재고량	472.4	454.8	504.9	501.2	10.2	-0.7
	기말재고율(%)	20.4	19.9	20.9	20.7	4.0%P	-1.0%P
	쌀	생 산 량	466.9	471.7	477.5	475.8	0.9
공 급 량		566.5	578.5	587.4	585.7	1.2	-0.3
소 비 량		459.8	468.5	475.8	475.6	1.5	-
교 역 량		39.9	39.3	40.7	40.5	3.1	-0.5
기말재고량		106.8	109.9	111.5	110.1	0.2	-1.3
기말재고율(%)		23.2	23.5	23.4	23.2	-1.3%P	-0.9%P
밀		생 산 량	695.9	658.2	714.2	714.1	8.5
	공 급 량	894.1	855.3	889.8	889.7	4.0	-
	소 비 량	697.0	679.7	705.5	706.0	3.9	0.1
	교 역 량	158.2	137.3	164.3	165.3	20.4	0.6
	기말재고량	197.1	175.6	184.3	183.7	4.6	-0.3
	기말재고율(%)	28.3	25.8	26.1	26.0	0.8%P	-0.4%P
	곡 수 수	생 산 량	889.3	868.8	984.4	984.4	13.3
공 급 량		1,019.4	1,003.4	1,122.6	1,122.5	11.9	-
소 비 량		884.8	865.2	949.2	951.4	10.0	0.2
교 역 량		116.9	95.2	125.0	125.5	31.8	0.4
기말재고량		134.6	138.1	173.4	171.1	23.9	-1.3
기말재고율(%)		15.2	16.0	18.3	18.0	12.5%P	-1.6%P
곡		생 산 량	239.5	267.9	283.9	283.9	6.0
	공 급 량	309.8	321.4	340.7	340.8	6.0	-
	소 비 량	257.6	259.9	270.1	269.8	3.8	-0.1
	교 역 량	92.2	100.5	111.6	112.7	12.1	1.0
	기말재고량	53.5	56.8	67.2	67.1	18.1	-0.1
	기말재고율(%)	20.8	21.9	24.9	24.9	13.7%P	-

\* USDA, '14.8월 기준, '13/14 추정치는 '15년초 확정 예정

\* 전체곡물 = 쌀 + 밀 + 잡곡(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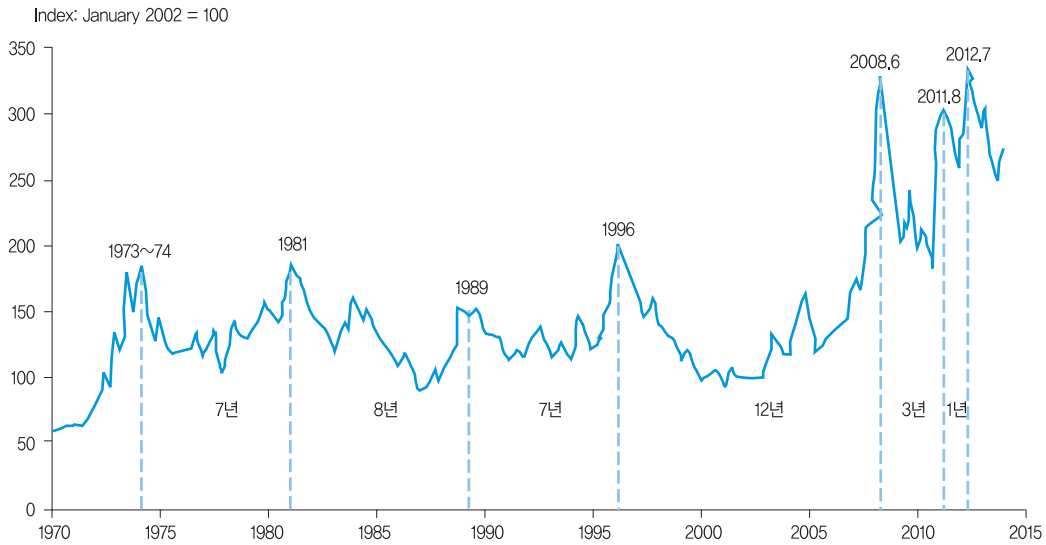


##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양지연

국제 곡물가격은 2000년대 들어와서 변동폭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6~08년, 2010년, 2012년에는 급등세를 나타내었다. 곡물가격 급등 주기도 과거에는 7~8년 또는 10년 정도의 주기로 변동을 보였으나 2000년 후반 이후에는 변동 주기가 짧아지고 변동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1〉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주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매월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는 2008년 6월 애그플레이션 당시 224.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2월에 237.9포인트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였다. 이는 2010년 하반기부터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밀, 콩,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2013년 식량가격지수는 209.8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식량가격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곡물가격 지수의 경우 2008년 6월 274.1로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2013년의 경우 1월에 기록한 248포인트가 최고치였고,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219.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 쌀 가격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평균 가격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913달러/톤, 1,019달러/톤으로 급등한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13년 평균 가격은 674달러/톤을 기록하였다. 태국산 장립종 쌀의 평균 가격은 2008년 671달러/톤으로 급등한 이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 각각 576달러/톤, 514달러/톤을 기록하였다.

### ❖ 대두 가격 동향

콩 가격은 2009년 이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미국 곡창지대 가뭄으로 인해 평균 가격은 537달러/톤으로 전년 대비 10.7%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3년 평균 가격은 511달러/톤을 기록하였다.

### ❖ 밀 가격 동향(경질밀 기준)

2013년 밀 평균가격은 270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9%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2009년 평균가격 206달러/톤, 2010년 평균가격 224달러/톤 보다는 여전히 31% 및 2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 옥수수 가격 동향

2013년 옥수수 평균가격은 225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3% 낮은 수치이지만, 2009년 평균가격 148달러/톤 및 2010년 평균가격 169달러/톤 보다는 여전히 34.2% 및 33.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3-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단위 : US\$/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쌀 (중립)	'07	551	551	551	551	551	536	529	535	576	584	584	584	557
	'08	590	595	595	758	926	963	1,036	1,061	1,119	1,113	1,102	1,102	913
	'09	1,102	1,075	1,123	1,208	1,202	1,150	1,067	948	895	849	816	794	1,019
	'10	772	772	732	728	719	739	728	675	705	750	811	827	746
	'11	827	827	827	827	827	827	827	800	816	816	763	720	809
	'12	772	772	744	728	736	739	744	755	750	741	739	728	746
	'13	705	705	705	705	691	661	661	661	661	661	656	639	632
쌀 (장립)	'07	320	323	327	324	325	331	335	334	332	336	349	368	334
	'08	384	474	615	929	949	789	756	709	701	634	574	543	671
	'09	598	615	615	572	547	592	602	553	544	513	550	605	576
	'10	596	576	538	502	478	463	465	472	494	501	534	550	514
	'11	534	538	509	500	498	531	557	576	614	615	629	608	559
	'12	557	552	563	554	614	612	587	579	579	571	573	569	576
	'13	575	575	573	571	558	536	519	493	461	445	433	428	514
대 두	'07	258	278	279	271	285	303	314	310	350	358	391	423	318
	'08	464	508	500	483	491	552	553	470	432	339	331	319	454
	'09	365	341	332	374	419	445	388	392	342	355	372	379	375
	'10	361	345	349	358	351	349	367	376	391	427	462	484	385
	'11	513	512	500	501	499	500	500	501	492	446	430	420	484
	'12	443	462	497	529	521	522	602	618	616	566	532	535	537
	'13	521	536	531	518	529	560	527	478	494	473	475	489	511
밀	'07	179	181	179	178	177	206	224	244	310	318	300	350	237
	'08	350	409	424	345	305	326	311	313	281	222	209	208	309
	'09	226	209	211	211	235	233	205	190	176	186	198	197	206
	'10	193	183	181	181	184	176	215	260	274	268	271	305	224
	'11	324	343	315	336	333	301	278	299	290	262	253	246	298
	'12	253	255	254	238	241	248	320	325	336	330	331	318	287
	'13	302	285	275	273	278	265	257	258	258	278	260	246	270
옥 수 수	'07	154	162	160	142	147	150	130	130	141	141	150	170	148
	'08	192	203	218	234	237	275	254	216	215	162	147	145	208
	'09	154	142	150	152	166	162	129	129	128	146	154	158	148
	'10	152	143	145	139	145	137	149	161	193	215	217	233	169
	'11	250	272	270	296	285	284	263	281	273	249	247	239	267
	'12	248	252	255	250	237	237	299	316	301	295	291	284	272
	'13	281	278	282	255	256	261	208	190	181	173	167	169	225

\* 자료 : USDA Rice Outlook( 14,8,14), USDA ERS( 14,8,12)

주) 쌀(중립종) : 미국산(California medium grain milled No.1) 내수용 공창출고가(bulk), 쌀(장립종) : 태국산(100% B) FOB, (USDA 예측가) / 대두·밀(HRW)·옥수수 : 선물거래가( 13.9.20일까지 평균가)제3장 국제 곡물수급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제2절 주요국가 농업·농촌 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 1. 주요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 미국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은섭

##### ▼▼ 농업경제동향

미국은 세계 유수의 농업국으로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이며 밀이나 면화의 생산량도 많다. 축산 분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생산이 왕성하다. 2010년 기준 미국 국내총생산액 144,471억달러 중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1,734억달러이다.

미국의 농경지 규모는 전체 토지면적(98,315만ha)의 41.8%인 41,120만ha가 농용지이며, 이 중 17,050만ha가 경지로, 270만ha는 영년생작물용지로, 23,800만ha는 방목지 등으로 이용된다. 2012년 미국 농무부 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호수는 220만호로 2011년 대비 0.53% 감소하였고,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2010년 57.1세로 2002년 55.3세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2002년 대비 75세 이상의 농장주는 20% 증가, 25세 이하 농장주는 30% 감소하였다. 농가당 평균 농지규모는 2012년 170ha로 2002년 176ha보다 감소하였다. 농업인구는 2007년 센서스 결과 3,337,450명으로 2002년 3,115,172명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농장 중 연 매출액 25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농장 비중이 10%(약 22만개)이며, 이들이 총 생산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연 매출액 1만 달러 이하 소규모 농장은 60%(약 126만개)로, 전체 생산량의 2% 정도를 차지하며 대부분 취미농 형태이다.

2010년 가축농 전체 평균 소득은 83천 달러이며, 이 중 농업소득은 13%(11천달러 내외)를 차지하고 농업외소득(off-farm income)이 77%로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1만달러 이하 매출 소규모 농장의 농업순소득은 미미한 반면, 25만달러 이상 매출 대규모 농장의 농업소득은 20만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농외소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농산물로는 밀, 옥수수, 콩,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가 있다.

〈표 1-3-3〉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 만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 밀	5,724	4,922	5,582	6,802	6,031	
옥수수	28,226	26,750	33,118	30,714	33,301	
콩	8,350	8,700	7,286	8,075	9,142	
우유	8,025	8,246	8,419	8,616	8,586	
쇠고기	1,120	1,186	1,198	1,184	1,189	
돼지고기	938	955	995	1,060	1,044	
□ 닭고기	1,604	1,622	1,663	1,700	1,633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미국은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며, 옥수수, 콩, 밀, 면화의 수출액은 세계 1위, 돼지고기, 닭고기는 2위이다. 특히 옥수수는 전 세계 수출액의 5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FAO, 2008).

〈표 1-3-4〉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

수 출	수출액(억달러)	점유율(%)	수 입	수입액(억달러)	점유율(%)
□ 캐나 다	162	14.0	□ 캐나 다	179	22.6
멕시코	156	12.5	EU	158	19.9
일본	131	11.3	멕시코	108	13.6
중국	112	9.7	중국	34	4.3
EU	107	9.3	인도네시아	27	3.4
□ 총액	1,155	100	□ 총액	793	1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표 1-3-5〉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수 출	수출액(억달러)	점유율(%)	수 입	수입액(억달러)	점유율(%)
□ 콩	155	13.1	□ 음료	55	6.8
옥수수	139	11.8	와인	46	5.7
밀	113	9.6	원재료	38	4.7
면화	48	4.1	커피원두	38	4.7
조정식료품	48	4.1	맥주(보리)	37	4.6
□ 총액	1,179	100	□ 총액	804	1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 농업정책동향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농업법(Farm Bill)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이 2012년 만료됨에 따라 신 농업법 논의를 위한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11.8월부터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예산 삭감안에 대한 미 상·하원간 입장차로 2008년 농업법을 2013년 9월 30일까지 연장 조치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으며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업법은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1862년 미국 농업부(USDA) 창설 이후 가족농 중심의 소득보전과 가격지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가격지지는 직불제 형태로 생산조정과 재고관리를 시장기능에 따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법은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policy + Program)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도별 지원 예산규모를 명시, 규범법과 집행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1965년 농업법 이후 4~5년 주기로 개정·보완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 단계를 감시, 식품 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 및 수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003년 12월 BSE 발생 이후 소와 쇠고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NAIS(동물개체식별시스템)를 통한 동물 이동 이력 추적, 연구개발사업이 확충되어 실시되었다.

한편 2011년 1월 4일 미국 내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미 FDA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기준 및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 생산·수확·포장 및 보관 기준, 식품 우수제조 공정 및 위해분석 기반 예방적 관리, 제3자 심사기관 인증, 해외공급업자 검증프로그램 등 관련 하위규정들에 대한 입법절차중이다.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상실 등의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장려 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UIP)도 확충하였다. 이러한 환경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 생산 감소 효과를 가져와 곡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여가와 복지 육구의 충족 및 종합적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여타 분야의 농무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TO 허용보조 프로

그램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미국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농산물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를 위해 WTO, APEC, FTA, TPP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양다자간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1년간 연평균 1.8%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농업 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 비료나 농기계에 대한 기술향상 등 네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미국 정부는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정책 방향 즉, ①농산물 수출 증대 ②바이오연료 및 재생가능연료 생산 촉진 ③지역 농업생산과 지역 소비의 연계 ④미국 농촌에 초고속 통신망(broadband) 설치 ⑤ 야외 여가 시설에 투자 ⑥생태계 시장(ecosystem markets)의 활용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 ❖ 중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한병

### ▼▼ 농업경제동향

중국의 2012년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47.4%(2011년 48.7%)인 642,220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 전체 면적 960만 평방km의 12.8%인 121.72만 평방km이다. 호당 경지면적(11년)은 0.46ha로 한국의 1.46ha보다 오히려 적다. 2013년 농산물 수입액은 1,188.7억달러로 2012년 대비 5.7% 증가하였고, 수출액 678.3억달러보다 1.75배가량 많다. 농촌가구 1인당 순수입(2012년 기준)은 7,917위안으로, 전년도(6,977위안)에 비하여 13.5% 증가하였다.

\* 경지면적은 2008년 말 중국 국토자원부 발표수치

〈표 1-3-6〉 중국의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구 분	단 위	
○ 농가인구(2012) - 총인구 대비	천명 %	642,220 47.43	○ 농촌가구 1인당 순수입(2012) ○ 농촌가구 1인당 가계비(2012)	위안/인 위안/인	7,917 5,414
○ 농가호수(2010) - 총 가구수(2010)	천호 천호	263,846 401,934	○ 농림어업 취업자(2012) - 총 취업자 대비	천명 %	3,389 2.2
○ GDP(2013)	억위안	568,845.21	○ 농산물 수출(2013)	억달러	1,188.7
○ 경지면적(2008) - 국토 대비	천 h a %	8,246	○ 농산물 수입(2013)	억달러	678.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2013, 한편으로 보는 중국농업(KREI) 2013 및 중국 제 6차 인구조사 자료

### ▼▼ 농업정책동향

중국 정부(국무원과 공산당)는 2004년부터 매년 주요 국정방향과 과제를 담은 중앙1호문건의 주제로 줄곧 삼농(三農 :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채택해 왔다. 2012년 중앙1호문건의 주제 역시 삼농이다. 연속 9년 동안 삼농이 중국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가 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참으로 중대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농업과학기술혁신 추진을 가속화하여 농산물 공급보장능력을 증강시키기로 하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산물의 효율적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열쇠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전제하고, 농업과학기술은 국가식량안보 확보의 바탕이고 자연환경 제약을 돌파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며 현대농업 건설의 결정적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제 장애를 돌파하고 농업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이를 발전시켜 농업생산 증대·민소득 제고 및 농촌번영 실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12년 농업·농촌업무의 총체적 요구는 공업화·도시화 및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강농(強農)혜농(惠農) 부농(富農)정책의 강도를 가일층 강화시켜 농업 생산을 쟁취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며 농촌사회의 화해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문건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대 정책 과제와 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투자 강도와 업무 역량을 확대하여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식량성장책임제와 장바구니프로젝트(채람자공정) 실시를 강화하고 삼농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농업·농촌에 대한 국가고정 자산투자 강화, 농업과학기술투자 증가, 농촌금융서비스 수준 제고 및 농촌토지정책의 안정과 완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농업 건설을 지원한다. 농업과학기술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체제를 완비하여 여건을 개선, 종자산업 과학기술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농업과학기술 보급능력을 향상시켜 농업사회화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기층 공익적 농업기술보급서비스를 강화하고, 과학연구교육기구로 하여금 농업기술서비스를 적극 전개하도록 유도 하며, 신형 농업사회화서비스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과학기술교육훈련 강화로 신형 농업·농촌 인재풀을 전면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업교육 발전을 진흥시키고, 농업과학기술인재 육성을 가속화하며, 농촌실용인재를 대대적으로 육성 훈련시킨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설비와 장비 여건 개선으로 농업발전의 물자기반을 구축한다. 구체 방안으로는 농지수리 건설을 견지하고, 고표준농지 건설을 강화하며, 농업기계화를 가속화하고 생태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시장유통효율 제고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실히 보장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방식을 혁신하며, 농산물 시장조정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사회 안정의 핵심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삼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기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모를 까닭이 없는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농민소득을 빠르게 증대시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농업세를 전면 폐지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조를 강화하는 것 등은 농민소득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조치이다. 그 결과 농촌주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으나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농산물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노무비와 농자재 등 주요 농업생산요소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제고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영농의 전면적인 시행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농업과학기술혁신이란 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종자산업 발전 및 생산기술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고 결국 중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후진타오 주석 정책노선의 대표적 슬로건인 과학발전관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삼농정책 시행의 궁극적 목표는 화해사회 실현으로 귀결된다.

❖ 일본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한병

▼▼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13년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4.4%(2010년 5.1%)인 5,634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 37,793천ha의 약 12.0%(2010년 12.1%)인 4,537천ha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1.79ha로 한국의 1.50ha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농산물 수입액은 61,365억엔으로 2012년 54,419억엔 대비 증가하였고, 수출액 3,136억엔보다 19.6배가량 많다. 일본의 식량자급률(2012년 기준)은 열량 기준으로 39%이며, 생산액 기준 68%이다. 이 중 쌀의 자급률은 100%이다.

〈표 1-3-7〉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구 분	단 위	
○ 농가인구(2013) - 총인구 대비	천명 %	5,634 4.4	○ 농가 총소득(2012) - 농가소득(2012)	천엔 천엔	4,762 2,900
○ 농가호수(2010) - 총 가구 대비	천호 %	2,528 4.8	○ 농림업 취업자(2013.12) - 총 취업자 대비	천명 %	2,210 3.5
○ GDP(2012) - 농업 총생산액	억엔 억엔	4,737,771 85,251	○ 농산물 수출(2013)	억엔	3,136
○ 경지면적(2013) - 호당 (2013)	천 ha ha	4,537 1.79	○ 농산물 수입(2013)	억엔	61,365

자료 : 일본 농림수산통계(2013)

▼▼ 농업정책동향

일본정부는 2013년 12월 농림수산성의 「공세적 농림수산업 추진본부」를 통해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에서 농정개혁의 밑그림이 될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을 결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농업·농촌 전체 소득을 향후 10년간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강한 농림수산업, 아름답고 활력있는 농산어촌을 창조하기 위해 4가지 마스터 플랜을 축으로 정책을 재구축하기로 하였다.

4가지 정책방향은 ①국내외 수요 프론티어의 확대 ②수요와 공급을 잇는 밸류체인의 구축 ③ 농지 중간관리기구를 통한 농지의 집약화 등 생산코스트 삭감 추진 및 경영소득 안정대책과 쌀 생산조정제고 등 생산현장의 강화 ④구조개혁을 지원하면서 아름답고 전통 있는 농산어촌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다면적 기능을 유지·발휘토록 추진 등이다.

또한 마스터 플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으로서 ①농지중간관리기구의 창설, ②경영소득안정대책의 재검토, ③수전의 최대한 활용과 쌀 정책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지역정책으로서 일본형 직불제를 창설하는 등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양운식

### ▼▼ 농업경제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13년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연합체로서 1인당 GDP 25,200유로(2012), 인구 503,297천명(2012), 면적 4,103천km<sup>2</sup>의 거대 경제권이다.

EU 27개 회원국의 경지면적은 176,31천ha(2012), 농업 분야 취업자 수는 11,564천명(2012)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 총 생산액은 4,060억유로(2012) 정도이다. 2012년 농산물 생산액은 채소 및 과일이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채소 16.3%, 곡물류 15.1%, 우유 13.2%, 돼지고기 9.6%, 쇠고기 8.5%, 가금육 7.7% 순이었다.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의 비중(2012)을 보면 프랑스(19.0%), 독일(13.4%), 이탈리아(10.4%), 스페인(10.4%), 영국(7.2%), 네덜란드(6.5%), 폴란드(5.7%), 루마니아(3.5%), 덴마크(2.9%), 그리스(2.6%), 벨기에(2.1%), 오스트리아(1.8%), 포르투갈(1.6%), 헝가리(1.9%), 아일랜드(1.7%), 스웨덴(1.6%), 핀란드(1.2%), 체코(1.2%), 불가리아(1.1%), 리투아니아(0.7%), 슬로바키아(0.6%), 라트비아(0.3%), 슬로베니아(0.3%), 에스토니아(0.2%), 사이프러스(0.2%), 룩셈부르크(0.1%), 몰타(0.0%)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은 5.2%이다.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1.1%), 영국(1.2%), 벨기에(1.3%), 독일(1.6%) 등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루마니아(30.6%), 불가리아(18.9%), 폴란드(12.6%), 그리스(12.2%) 등은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인구 중 농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업이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은 룩셈부르크(0.3%), 영국(0.5%), 스웨덴(0.5%), 독일(0.6%), 벨기에(0.6%)는 낮은 편이며, 루마니아(4.7%), 슬로베니아(1.1%), 헝가리(2.7%) 등의 국가도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2012)은 수출이

6.8%(총 1조,6863억유로 중 1,144억유로)이며, 수입은 5.7%(총 1조7908억유로 중 1021억유로)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5,119백만유로), 러시아(11,352백만유로), 스위스(6,720백만유로), 중국(6,070백만유로), 일본(5,216백만유로) 순이고, 주류 및 음료, 낙농품, 육류, 달걀 및 벌꿀, 밀가루 또는 전분제조품 등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14,320백만유로), 미국(8,357백만유로), 아르헨티나(6,116백만유로), 중국(4,505백만유로) 스위스(3,831백만유로) 등이며, 과일 및 견과류, 커피·차·마테 및 향신료, 식품가공 부산물, 유지종자류,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EU의 역외 농산물 무역은 2007년 이후 계속된 적자에서 벗어나 2010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출처: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3)

〈표 1-3-8〉 EU의 주요 농업지표

국 가 (27개국)	경지 면적 (천ha)	농장수 <sup>1)</sup> (천개)	농장당 경지 면적 (ha)	농업분야고용		농 업 생산액 (백만 유로)	농업 부가 가치 (백만 유로)	GDP 대 비 (%)	농산물 무역			가계 비중 식품비 (%)
				취업자 (천 명)	전체 대비 (%)				수입 비중 (%)	수출 비중 (%)	무 역 수 지 (백만유로)	
	2012	2010	2010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1
EU_27	176,316	11,756	15.0	11,564	5.2	406,066	160,916	1.2	5.7	6.8	12,220	16.5
벨 기 에	1,358	42	32.4	59	1.3	8,545	2,407	0.6	8.8	9.7	3,625	16.9
불가리아	5,123	357	14.3	649	18.9	4,424	1,662	4.2	9.4	16.6	1,009	26.6
체 코	3,526	23	156.2	168	3.3	4,866	1,358	0.9	6.3	4.8	-1,117	23.9
덴 마 크	2,664	41	65.8	66	2.4	11,873	3,604	1.5	12.8	19.2	6,585	14.9
독 일	16,667	298	56.0	666	1.6	54,578	17,030	0.6	8.3	6.0	-9,804	14.7
에스토니아	956	19	49.1	28	4.7	898	360	2.1	9.3	8.1	-245	28.3
아일랜드	4,533	140	32.4	86	4.7	7,049	1,755	1.1	14.3	16.5	8,002	15.8
그 리 스	4,151	717	5.8	497	12.2	10,752	5,500	2.8	11.9	17.0	-1,222	20.6
스 페 인	23,463	967	24.3	747	4.2	42,191	21,526	2.1	9.8	15.0	8,742	16.9
프 랑 스	29,001	507	57.2	755	2.8	77,353	31,870	1.6	8.4	13.5	15,585	16.6
이탈리아	13,134	1,616	8.1	937	3.8	48,632	25,566	1.6	9.6	8.2	-4,367	17.0
사이프러스	115	38	3.0	14	3.6	720	333	1.9	16.7	16.9	-721	17.3
라트비아	1,841	83	22.2	69	7.9	1,323	319	1.4	14.3	18.9	164	27.3
리투아니아	2,842	200	14.2	112	8.8	2,973	1,169	3.5	12.3	17.4	940	-:
룩셈부르크	131	2	60.3	4	1.1	397	115	0.3	9.0	6.7	-932	16.9
헝 가 리	5,338	534	10.0	303	7.4	7,514	2,593	2.7	632	10.3	3,539	24.7
몰 타	11	12	0.9	6	3.2	128	57	0.8	9.4	3.7	-361	18.2
네덜란드	1,842	71	26.1	217	2.5	26,268	8,426	1.4	11.0	15.1	25,878	14.8
오스트리아	2,864	149	19.2	189	4.5	7,245	3,000	1.0	7.9	7.8	-932	13.4
폴 란 드	14,529	1,499	9.7	1,951	12.6	23,198	9,013	2.4	8.3	11.6	3,818	25.3
포르투갈	3,598	304	11.8	512	11.0	6,466	2,201	1.3	13.4	9.9	-2,999	20.3
루마니아	13,733	3,724	3.7	2,815	30.6	14,410	6,201	4.7	8.9	9.3	-729	-:
슬로베니아	480	74	6.4	78	8.3	1,149	387	1.1	10.1	6.8	-839	20.4
슬로바키아	1,927	24	81.3	68	3.1	2,397	578	0.8	7.1	6.1	-501	22.3
핀 란 드	2,285	63	36.0	116	4.6	5,032	1,660	0.9	7.9	4.2	-2,356	17.2
스 웨 덴	3,032	70	43.1	97	2.1	6,429	1,865	0.5	7.8	3.7	-5,007	15.6
영 국	17,172	183	94.0	354	1.2	29,257	10,362	0.5	8.8	6.2	-24,734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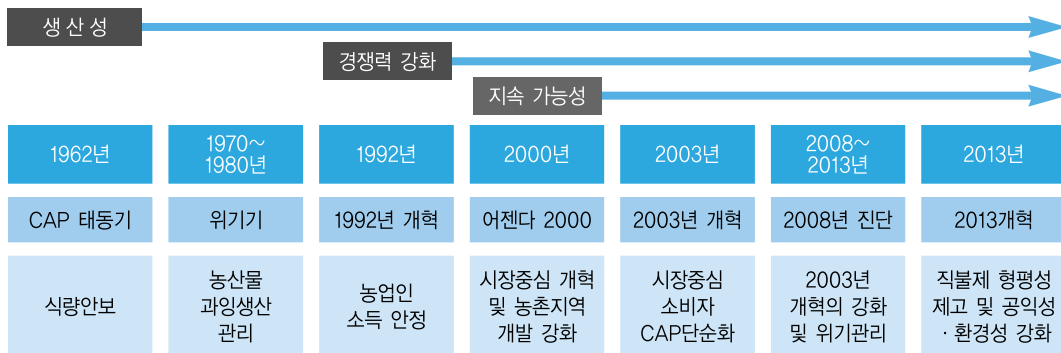
주 : 1) 농장수(agricultural holdings) :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단일 관리단위로 농지, 건물, 산림 등을 포함  
 자료 :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3

### ▼▼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년 3월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영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 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정한 소비자 가격 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2003년 7월(MTR) 및 2008년 건전성 평가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 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 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 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 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 7)은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 제5차 개혁(2013.6)은 기초직불제 도입, 회원국내 농가간 직불금 형평성 제고, 젊은 창업농 직불금 단가 상향, 소농에 대한 별도 직불제 도입, 직불금 30%는 환경보전의무 준수 조건으로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림 1-3-2〉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변천 동향



공동농업정책은 5~6년간 지속되며, 2007~2013년 CAP 종료에 따라 2014년 EU 중기예산 편성을 기점으로 새로운 CAP 채택을 추진 하였다. EU 집행위는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표하였다(12.10.21). 유럽의회 · EU이사회 · 집행위는 '13.4월부터 40여 차례의 3개기관 협의를 거쳐 '13.6월 차기 CAP 개혁안을 타결 하였다. 차기('14~'20) CAP 개혁안은 직불제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성 · 환경성 강화, 농가의 경영안정 강화, 공동농업정책의 효율성 · 투명성 강화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신규 CAP은 '13년 9월 30일 최종타결 되었으며 개혁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단 직불제를 포함한 상당수의 정책들은 2014년 집행준비를 거쳐 실제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 차기 CAP 주요내용

정책방향	주요 내용
① 고용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소득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직불금의 형평성, 목표지향성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li> <li>- Basic Payment Scheme*을 도입하여 농가 간, 지역 간, 회원국 간 분배의 형평성 제고</li> <li>* 실제 활동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액 체감기준(연간 15만유로) 및 상한액 설정(30만유로)</li> </ul>
②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가격변동성 확대 문제 대응을 위해, 현행 공적 개입과 민간 보유 지원 제도를 유지 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li> <li>- 모든 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시장관리정책 도입으로 광범위한 시장교란 위기 시 EU집행위의 시장개입 허용</li> <li>- 농산물 관련 보험과 무추얼 펀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li> </ul>
③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녹색' 직불금 도입 (greening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농가 직불금의 30%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을 최적화 사용토록 하는 부대조건* 부여</li> <li>* 재배작물 다양화, 영구적 초지 유지, 생태학적 목적의 경지면적(7%) 유보 등</li> </ul>
④ 연구 및 혁신 관련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의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연구/혁신 예산 증액 및 농업계와 과학계 간의 파트너십으로 연구결과의 농촌현장 활용도 제고</li> </ul>
⑤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식품 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분야의 거래 교섭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 및 분야 간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li> <li>- 현재 EU의 유일한 쿼터제도인 설탕 쿼터제도를 '15.9.30 이후 폐지키로 함</li> <li>- 학교 급식(과일 및 우유 지원) 제도 확산</li> </ul>
⑥ 농업/환경정책의 지역 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별, 지역별 차원의 농업/환경정책 활성화 추진*에 우선순위 부여</li> <li>* 생태계 보존/회복,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li> </ul>
⑦ 젊은 농업인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세 이하 농업인에 대해, 창업 초기 5년간 Basic Payment를 25% 추가 지원 (단, 회원국별 중소농에 한함)</li> </ul>
⑧ 농촌의 고용과 기업 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rter kit"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신설 및 LEADER 프로그램의 지역활동그룹의 역할 더욱 강화</li> <li>* 농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간 7만유로까지 지원</li> </ul>
⑨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막화 방지 및 비옥한 영토 보존을 위해, 자연조건 불리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회원국 차원의 지원액 증액*(현행 회원국 예산의 5% 범위 내)</li> <li>· 이를 위해 EU의 회원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및 기존 농촌지역개발정책 차원의 예산 이외에 추가예산 지원</li> </ul>
⑩ CAP 단순화 및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CAP 집행과정 단순화</li> <li>· 예를 들어, 환경보존 의무 등 cross-compliance 의무이행 항목 감소</li> <li>- Small Farmers Scheme 제도 도입으로 중소농 지원책 단순화</li> <li>· 2014. 10. 15까지 동 제도수혜 신청 중소농에 대해서 500~1000유로의 직불금을 연간 지급, Cross-compliance 의무 경감 및 녹색 직불금 의무 면제 등</li> <li>- 경영이양 중소농의 농지 매매 활성화로 농업 구조조정 촉진</li> </ul>

## 2. 주요 국가 통상협력

### ▼ 미국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은섭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식품 수입국으로 2013년에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 등 축산물, 오렌지·건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주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식품에 걸쳐 약 61억달러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미 수출은 김, 배, 조제품 등이 7.4억달러 수준으로 2012년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농식품의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농식품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 간 농식품 통상현안은 동식물 검역 문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 등이 있다.

2007년 4월 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미국을 소해면상뇌증(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시작하여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을 맺고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기가공 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역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우리정부는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양측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 등을 통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통제 강화와 유전자변형 농산물 함유 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상표표시 의무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미국에 열처리 가공육 제품 수출 가능 국가로 등재될 수 있도록 삼계탕 대미 수출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한라봉, 천혜향 등 우리 나라산 감귤류에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간의 농식품 통상현안은 WTO/SPS 회의, 한미통상현안회의 및 한·미 동식물검역전문가회의와 같은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 및 수의검역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9〉 한·미간 농림축수산식품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2012(%)
수출	합 계	599.8	664.0	740.2	11.5
	- 농산물	394.3	429.8	464.3	8.0
	- 축산물	14.0	26.9	34.8	29.7
	- 임산물	10.7	16.4	23.4	42.7
	- 수산물	180.9	190.9	217.5	13.9
수입	합 계	7,706.2	6,710.6	6,163.1	△8.2
	- 농산물	5,245.5	4,330.2	3,624.8	△16.3
	- 축산물	1,686.0	1,410.6	1,470.9	4.3
	- 임산물	619.4	792.4	846.2	6.8
	- 수산물	155.3	177.4	221.2	22.7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0〉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김	4.5	38.7	김	4.5	51.3	김	5.1	67.3
음료	41.9	33.8	음료	61.8	50.3	곶련	2.7	49.8
곶련	1.5	29.4	곶련	2.1	39.0	음료	54.1	43.1
배	8.2	23.8	배	8.1	26.3	라면	7.1	26.1
굴	3.6	21.4	라면	6.3	22.1	배	8.5	24.4
라면	6.4	20.5	오징어	9.4	20.1	비스킷	4.3	23.4
비스킷	4.1	19.7	비스킷	3.8	18.6	국수	6.2	11.0
오징어	4.8	15.8	젤라틴	1.7	17.7	젤라틴	1.2	10.6
곡류조제품	3.1	12.1	곡류조제품	3.4	13.0	오징어	4.9	9.7
국수	6.0	11.6	국수	6.6	12.3	소주	6.0	9.5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1〉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옥수수	6,024.1	1,936.7	옥수수	2,836.2	931.0	쇠고기	101.4	577.9
쇠고기	128.4	653.0	밀	2,400.8	764.5	밀	1,139.4	429.2
돼지고기	164.7	509.9	쇠고기	105.8	522.5	혼합조제식품	16,772	406.0
밀	1,281.1	507.0	돼지고기	131.3	391.3	대두	554.0	371.4
혼합조제식품	98.3	437.2	혼합조제식품	16.3	333.0	사료용근채류	876.0	313.9
면	106.4	402.4	대두	496.4	310.3	돼지고기	112.0	313.4
대두	556.3	326.0	사료용근채류	847.3	284.5	오렌지	164.9	234.8
펠프	293.9	232.9	오렌지	176.5	241.0	판지	839.5	200.9
사료용근채류	776.3	229.9	판지	815.1	201.5	치즈	42.5	188.3
오렌지	141.2	178.4	펠프	248.3	174.0	펠프	231.5	164.7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 중국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한병

한국과 중국의 농식품 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2012년 기준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중국에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3년 양국 간 농식품 교역량은 한국이 중국에 1,317백만달러를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5,739백만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전체 산업 분야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 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농식품의 한국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 폐지 및 세율 인하, 수입입찰제도 개선, 중국산 과일수입문제 등 경제·통상 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양국 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제15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2013년 5월 중국 연운항시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2002년 제7차 회의 시 한·중 농업산협력위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종전 정보 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정책 및 통상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11월 '김치 기생충알 파동'이 한·중 간 통상 마찰로 촉발되면서 양국 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협약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2006년 1월 제1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 간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5차 회의가 2011년 11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본 협의회를 통해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품, 농식품의 검사검역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일본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한병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일본 농수산물 수출 규모는 2,101백만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 7,875백만달러의 26.6%를 차지한다.

일본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통상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고, 양국 주재 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협의를 위한 '한·일 고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9월 제8차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다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 양국 통상 분야 협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여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46차 회의를 2013년 9월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농림축산물의 생산·가공 단계 등에서 사용되어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5월 29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 시행 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29개 종류에 대하여 우리 기준을 반영시켰으며,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 측 잔류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캐나다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은섭

캐나다산 농림축산수산물식품은 2013년 약 10억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펄프·원목·돼지고기·밀·유채유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림축산수산물식품은 라면·음료·아이스크림·비스킷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13년 약 0.8억달러에 그쳐 양국 간 농림축산수산물식품 교역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캐나다와는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 측은 2003년 5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이후 금지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미국과 동일한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차별 없는 수입조건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 측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한 바 있다. 캐나다 측은 2009년 4월 9일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8월 31일 분쟁패널이 구성되는 등 WTO 분쟁절차가 진행되었다. 2011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를 이루었고, 같은 해 12월 국회심의 절차도 마무리되었다. WTO 분쟁절차는 양자 간 합의에 따라 2012년 6월 공식 종료되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대해 자국산 블루베리의 수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제정된 북미식물검역보호기구(NAPPO) 지역위생기준을 통해 캐나다에 출입 또는 수출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무감염 증명 규정을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통해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예찰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표 1-3-12〉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 출 (A)	합 계	52.6	62.6	83.1	81.8
	농 산 물	35.8	43.4	54.5	58.1
	축 산 물	0.9	1.4	2.1	2.0
	임 산 물	0.6	0.6	1.5	0.7
	수 산 물	15.4	17.2	25.0	21.0
수 입 (B)	합 계	1,062.8	1,709.5	1,182.7	1,022.7
	농 산 물	303.2	728.0	336.5	289.3
	축 산 물	153.3	288.4	207.3	128.2
	임 산 물	553.4	625.4	575.9	528.2
	수 산 물	52.9	67.7	63.0	77.1
무역수지(A-B)		-1,010.2	-1,646.9	-1,099.6	-940.9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3〉 대 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림축산식품(\*13)

(단위 : 백만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1	김	9.3	목재펠프	155
2	혼합조제식료품	8.1	침엽수 원목	98
3	과자류	6.8	돼지고기	60.6
4	라면	5.9	유채유	37
5	음료	4.4	바다가재	31
6	소스류	4.3	혼합제조식료품	26
7	버섯류	4.2	맥아	19
8	과실	3.9	실장어	11
9	채소류	3.2	대두	7.5
10	인삼류	2.6	과실류	7.4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 ❖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양운식

유럽연합(EU, 28개국)과 우리나라 간 농림축수산물 교역은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EU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이 약 3억달러(13)로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에 이어 세계 6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은 33.3억달러(13)로 미국, 중국에 어 3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이와 같이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EU로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한국과 EU 간에는 주로 EU에서 한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위생 및 검역 문제가 양측 간 통상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현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EU 회원국산 동물·동물성산물 및 식물·식물성산물의 수입문제이다. 이들 현안은 주로 한국과 EU 개별 회원국의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해진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이미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도 개별 회원국과 기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는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EU 기본협력협정하에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수산 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동 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업 실무 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 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으나, 2011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동식물 검역 관련 통상현안 문제는 FTA 협정하에 설치된 SPS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U 측의 관심사항인 EU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EU 측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확보 및 다른 국가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사례 등을 들어 EU산 쇠고기에 대하여도 위험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 측은 EU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EU 측이 요청하는 육류 수출작업장 일괄 승인(pre-listing) 방식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요청 시 해당 국가의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 다른 작업장의 위생 관리 평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국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와의 검역현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WTO/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WTO/TBT), 세계동물기구(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틀 안에서 협의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양자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의 동구권 국가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업 분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및 식품안전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 기술 및 경험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 중남미 국가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정세정

중남미 국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농작물 및 가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중해 과실파리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농산물 교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농업국가로서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옥수수,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 검역문제가 해소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유, 옥수수, 대두박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칠레와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레몬·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망고·감귤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양벧·양고기, 멕시코의 페르시안라임 및 가금육, 페루의 멕시칸라임·아보카도, 우루과이의 감귤류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열대과일 및 육류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 농산물의 경우 UR 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식량 및 유전자원의 확보 등 자원 외교적 측면과 농업 분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 간의 농업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과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농업협력 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6년 2월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1차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2차 농업협력 위원회는 2008년 8월에 서울에서, 3차는 2010년 11월 브라질에서, 4차는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한 정보 및 전문가 교환, 공동 연구 등 농업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전주연, 온누리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로 미작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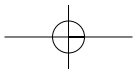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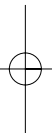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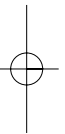
특히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데, 매년 무역 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검역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열대과일·축산물 등 농산물 수입 허용, 검역협정 체결 등 자국산 농산물의 대한민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농업장관면담, 경제공동위, 주한주재관 면담 등 다각적인 협의 통로를 통해 UR 등 국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수입관리 제도의 이해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WTO·SPS규정 및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 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검역 시스템을 소개하고, 참가국 간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 및 축산물안전관리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입허용절차 등 동식물 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 남아공 등과의 정례적인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 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농업교류 확대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제2편 201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 제1장 총론

제2장 농가 경영혁신·소득 안정 및 핵심인력 양성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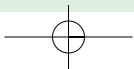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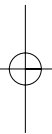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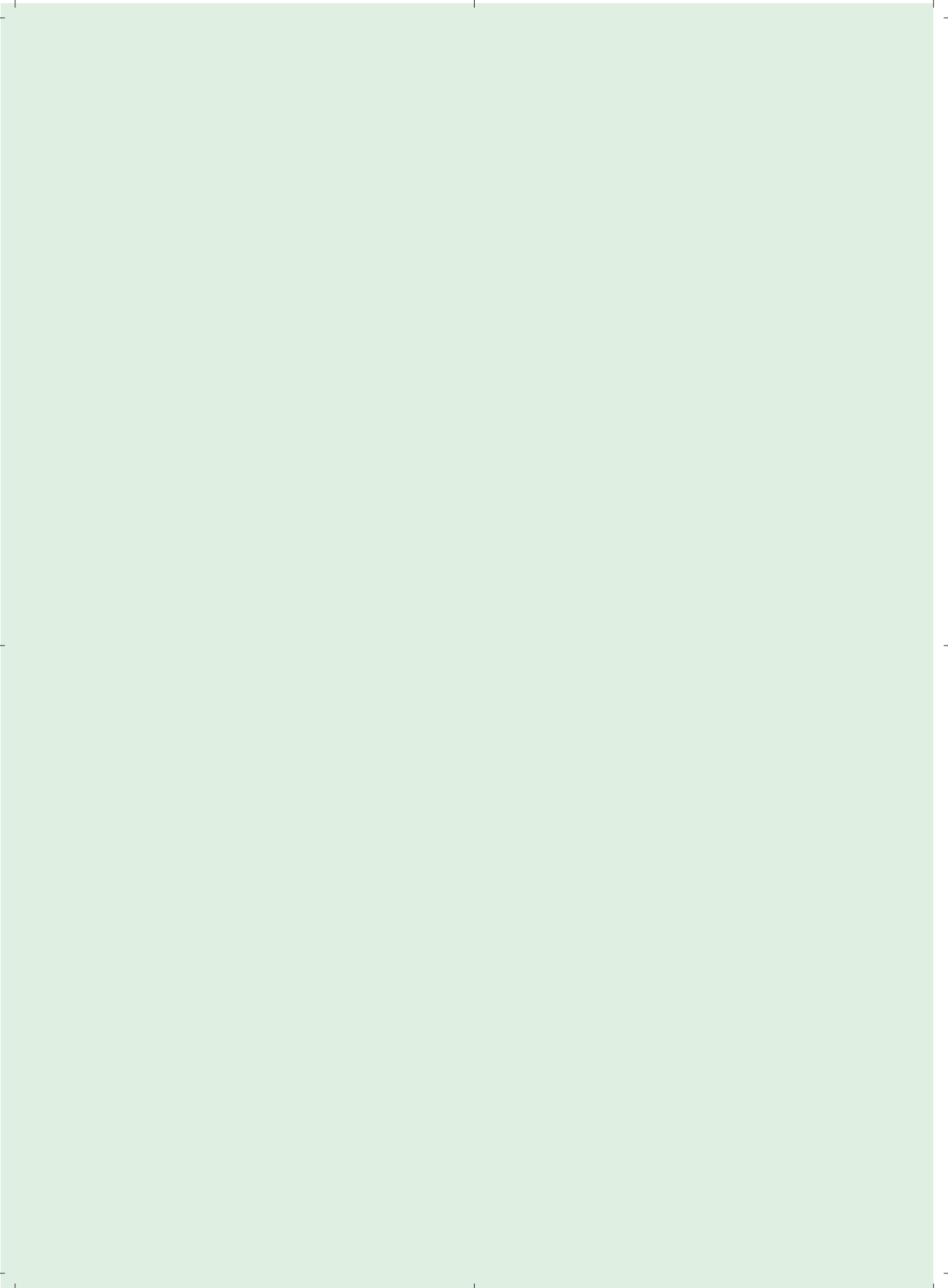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제6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제7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8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 제1장 총론

| 기획통계담당관실 사무관 조혜윤

우리 농업은 저성장 및 농촌 고령화 심화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 확대 등 전면적인 개방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농업계 내부에서는 명확한 농정 철학 정립과 새로운 농정방향 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왔다.

정부는 농정방향 부재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고 농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농업인,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바탕으로 경쟁력, 소득, 복지의 3대축을 기초로 25대 중과제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 추진된 주요 농정시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 ❖ 농가소득 증대

’13년 농가소득은 약 35백만 원으로 ’12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TO 체제가 출범한 ’94년 이래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시장개방과 국내 농식품 소비 감소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농가당 농업총수입이 30백만 원을 넘었고, 농업외 소득도 15백만 원을 넘어섰다. 6차산업화 정책등의 영향으로 농업외 소득이 전년대비 15.6% 증가하여 농가소득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가소득 증가에 힘입어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도 ’12년 57.6%에서 62.5%로 높아졌고, 60세 미만 농가의 1인당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1인당 소득을 넘어서게 되었다.

## ❖ 유통구조 개선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만들기위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시 긴급 수입

등에 의존하던 정부 주도의 인위적 수급조절방식에서 탈피하여 신뢰와 원칙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주요 5개 채소에 대해 수급 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10~'12년 평균 19%였던 5대 채소 가격변동률이 '13년에는 12.9%로 축소되었다.

더불어 물가 안정을 위한 과도한 시장 개입 조치로 지적되던 할당관세 적용을 35개 품목에서 13개 품목으로 축소하여 농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직거래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유통 경로 비중 확대('12년 8.4% → '13년 11.7) 및 산지조직화 진전 등으로 '12년에 2,919억 원이었던 유통비용 절감액이 '13년에는 4,24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조농업 기반 구축

전면적 개방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전통농업의 면모를 일신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에 ICT기술을 융복합하는 '과학기술기반 창조농업 촉진전략'을 추진하였다.

온실·축사 등의 농업시설과 재배·사양관리를 원격으로 자동제어하는 ICT 융복합 모델을 개발·보급하여('10~'13, 21개) 노동비를 20%절감하고 생산성은 30%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실용적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촉진을 위해 '7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정책·R&D·현장의 연계를 추진하였고, 신기술인증제도 도입하였다.

BT기술을 활용한 종자개발을 통해 장미, 국화 등 59개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종자 로열티 지급액이 14억 원 절감되었고, 지속적인 가축개량을 통해 4,986억 원의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 ▼ 농가 경영·소득 안전망 확충

최근 수년간 정체상태에 있던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을 확대하였다. 쌀 고정직불금을 80만원/ha으로 인상하여 농가당 쌀 직불금 수급액이 '12년 770천원에서 '13년 880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밭 직불 대상품목도 '12년 19개에서 '13년 26개로 확대하여 밭직불금을 지급받는 농가 수가 '12년 182천호(54천ha)에서 '13년 220천호(73천ha)로 늘어났으며, '14년부터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40만원/ha)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기상이변의 심화로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협에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전면 개편하고 재해지원 체계를 개선하였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였고, 전문손해평가인력을 육성(426명)하여 재해피해 조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피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불가항력적인 정전에 의한 2차 피해를 지원하고 재난복구비를 인상하였다.

### ❖ 농업인 생활·복지 안정 강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농지가격의 2%에 상당하던 가입비를 폐지하면서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12년 2,202건에서 '13년 2,927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12년 266천명(1,077억 원)에서 '13년 285천명(1,192억 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농업인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촌 주민들도 불편함 없이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농어촌특례를 확대하였다. 농어업인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정시 농업인에게만 적용되던 소득평가액 차감항목을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출비용을 확대하였으며, 소득평가액 산정시 차감되는 직불금 항목도 쌀·조건불리 직불금을 추가하여 5개로 확대하였다.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라 기존의 보육료 특례효과 유지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육료 특례(15만원 한도)를 보육시설 이용비용(특별활동비, 간식비 등)으로 변경하여 특례의 실효성도 제고하였다.

### ❖ 소비자 알권리 충족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표시제를 개선하였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12개 품목에 양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의 4개 품목을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였고,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에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커피 가공품 4종류(원두, 액상, 조제, 인스턴트)를 추가하였고, 국산농수산물의 경우 양잠산물(누에번데기, 오디, 뽕잎)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 규제개혁 가속화

귀농인 창업 및 지원기준 개선 등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촉진하고, 동물판매업·인삼류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및 쌀 등급표시 개선 등을 통한 농축산식품 관련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지원하였으며, 농약 수입허가 절차 개선, 쌀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였다. 특히 농업·농촌·식품산업분야 「손톱 밑 가시뽑기」 과제 발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였다.



## 제2장 농가 경영혁신 · 소득 안정 및 핵심인력 양성

### 제1절 농가 소득 안정

#### 1.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추진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김세진

##### ▼ 추진배경 및 개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WTO·DDA 협상 논의, 한·미 FTA와 한·EU FTA 타결, 한·중 FTA협상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 요인으로 인한 가격하락 압력이 증가하여 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의 당해년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직전 5개년의 농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농업소득)보다 감소할 경우 그 격차의 일정비율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전해주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을 '10년부터 '12년 도상연습 실시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상연습 결과, 농가소득신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등 소득과약에 대한 인프라 부족, 현행 쌀·밭 직불제에 비해 대상 농가수 및 농가당 수급액이 감소하여 식량재배농가의 소득안정효과는 미흡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12년부터 밭농업직불제가 신규 도입되며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추진여건이 변화되었다. 결국 소득과약의 어려움, 소득안정효과 약화 및 직불금 집중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건변화 등으로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격변동이 큰 품목의 농가 경영안정 제도가 미비한 현 농가소득안정체계에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격위험에 농산물의 가격안정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수입보장보험은 품목별 평년 수확량과 평년 가격을 각각 산출하여 기준수입을 정한 후 기준수입의

일정 비율인 보장수입과 농가가 실제 얻은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 된다. 이를 통해 농가는 가격하락, 재해발생 등 수입하락 위험에 대해 최소한 보장수입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게 된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는 2013년 3월부터 1년 동안,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입보장보험 제1차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대상 품목은 생산규모,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격·수입변동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도입 용이성, 보험 설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한우(비육우) 등 6개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도상연습에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총 26개 지역의 1,000여 농가가 참여하였으며, 재해보험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 등 사업 집행을 담당하였다. '13년도 도상연습 결과에 따르면 포도, 콩의 경우 별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확기 가격 수준도 평년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여 손해율이 40%로 낮았다. 양파의 경우는 '13년 이른 봄에 발생한 동해와 냉해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확기 가격이 표준가격 390원보다 크게 증가한 1,166원을 기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실적은 저조하였다. 전반적으로 '13년도 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 대상품목의 농가 수입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수입보험의 발동은 저조하였다. 그러나 분석의 범위를 2005~2012년 까지로 넓힌 후,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미가입한 농가보다 얼마나 수입이 안정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양파 21.6%, 포도 27%, 배추 19% 품목별 수입변동성(표준편차/평균)이 감소하였다. 이는 보험 가입농가의 경영안정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기간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보험에 가입한 생산자의 위험감소분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확실성 증가수입을 통해 산출한 생산자 잉여와 농산물 생산량이 1% 증가함에 따른 소비자 후생증가분의 합이 수입보험 도입에 따른 보험료, 운영비와 같은 비용에 비해 약 204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자료를 통해 산출이 가능한 배추, 양파, 포도, 콩에 대한 분석) 이러한 추정이 수입보험 가입률이 10%, 보험 가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이 1%라는 보수적인 가정에 기초하였으므로 실제 수입보험 도입 시, 기대되는 사회적 순편익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14년도에는 대상 품목과 농가를 확대하고 1차 도상연습 결과 나타난 상품 설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업수입보장보험 2차 도상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품목은 '13년도 6개 품목에 더하여, 벼, 마늘, 고구마, 감귤, 시설토마토 5개 품목을 추가하였다. 2차 도상연습에서는 정책효과, 변동성, 가입가능성의 3개 항목에 9개 지표를 마련하여 품목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수량 및 가격 측정의 용이성, 상품 설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품목을 선정하게 되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수량보장에 가격하락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장을 하는 제도로서 품목별 기준가격 설정의 문제는 제도의 운영에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 1차 도상연습의 평가에 따르면 수입보장보험의 도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달리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선물시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품목·품종·지역별로 상이한 기준가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의 문제가 1차 도상연습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손해평가를 하는 재해보험과 달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수입산출을 위해 손해평가를 해야 하는 수입보장 보험의 운영비가 높아질 가능성 또한 제기 되었다. 이에 2차 도상연습에서는 다양한 기준가격에 따른 보험금 산출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기준가격 설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평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다.

'15년에는 1차, 2차 도상연습 결과 및 평가를 근거로 도입가능성·도입필요성이 높은 3개 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입보장보험의 현실적 운영가능성을 타진해 볼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2.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최춘태

### ▼ 추진배경 및 개요

2013년 전체 농가인구 2,847천명 중 65세 이상이 약 37.3%(1,062천명)로 전년 대비 1.7%p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농가 1,142호 가운데 65.2%(744천호)는 경지 규모가 1.0ha 미만으로 영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농지를 규모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WTO/DDA 협상이나 FTA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여건 하에서 고령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도록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통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추진해오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경영이양 이전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75세가 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25만원(연간 300만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의 효과적 홍보, 약정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초기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부터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흥지역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였으며,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하는 등「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렇듯 한·미 FTA 차결에 대비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비준 지연,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영농 편리성, 고령 농업인의 강한 농지 소유욕 등으로 사업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어 일부 예산이 불용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고령농업인의 비중이 높아 적정 양수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의 농업인까지 확대 하였다.

사업 활성화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373회 7천명)하였으며, 지역별 8개 케이블방송 자막 방송, 지방지 129회 광고 게재, 안내문 7만매, 리플릿 3만매, 현수막 설치 167개, 지역신문(시군단위) 169회, 포스터부착 1만부, 좌담회 개최 121회 3천명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이양 농업인 99.8천명에게 직불금 4,001억원(1인당 연간 4,00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72.5천ha를 전업농 69.6천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4ha로 영농 규모를 확대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에게 ha당 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귀농인, 후계농업인 등의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14년에는 사업신청 가능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의향조사, 고령 경영주 농가 증감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양수대상자 및 이양대상자 연령 확대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농업구조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아울러 사업에 참여했던 고령 농업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3.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김선범

#### ▼ 추진배경 및 개요

2004년 WTO 쌀 재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5년 이전에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WTO규정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허용 보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만큼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2004년에 일시 시행한 쌀소득보전금은 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신속하게 보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적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쌀 농가의 소득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하여 통합 시행(2005년 7월 1일)하였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10월~익년1월) 산지 평균 쌀값이 쌀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떨어진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변경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년산부터 적용되고 있는 목표가격은 2001~2003년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로 인한 쌀값지지와 쌀농가 소득에 기여한 직접소득효과, 2003년도 논농업 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쌀 80kg당 170,083원으로 설정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고정직접지불금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에 대하여 벼 재배 여부나 쌀값하락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80만원(농업진흥지역 안 850천원, 농업진흥지역 밖 680천원)을 매년 말에 지급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2008년도 하반기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 수령한 일부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사건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도개선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05년부터 '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면서 그동안은 신규진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쌀 직불금 신규진입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다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그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부재지주들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둘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조정하였다.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쌀 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까지만 쌀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급상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지금까지는 부당수령한 사람만 등록제한하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부당수령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체계를 강화하였다. 우선 쌀 직불금 등록신청 기관을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아울러 쌀 직불금 등록신청자들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부재지주들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쌀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 면적을 최대 30일간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당하게 신청한 자 또는 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부당하게 등록 또는 수령한 자와 허위로 경작사실을 증명해 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과 그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10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당 등록자 또는 수령자는 종전에 3년간 등록제한 하던 것을 5년간 등록제한 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종전 행정안전부의 쌀 직불금 농촌행정전산시스템을 농림수산물부으로 이관 받아 새로운 Agrix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도 또는 시·군간 중복 신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관련 자료와 일괄 대조함으로써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소지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2013년도에는 2013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80kg당 174,707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80kg당 지급액이 변동직불금은 0원, 고정직불금은 11,509원으로 80kg당 총 12,713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목표가격(188,000원/80kg) 대비 99.7%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였다.



〈표 2-2-1〉 연도별 직불금 지급현황

구 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총지급액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원)	고정+변동 (억원)
2013년산	770	855	6,866	697	735	-	6,866
2012년산	791	866	6,101	719	747	-	6,101
2011년산	812	875	6,174	740	754	-	6,174
2010년산	838	883	6,223	781	789	7,501	13,729
2009년산	866	891	6,328	815	809	5945	12,330
2008년산	1,097	1,013	7,118	-	-	-	7,118
2007년산	1,077	1,018	7,120	1,020	933	2,792	9,912

### ▽ 평가 및 향후계획

2008년도 하반기부터 불거진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된 쌀소득직불제 특별조사와 제도 개선이 2009년에 마무리되었고, 이후 개선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쌀직불제도는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로써, 쌀생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13년부터 시도간 교차 점검을 통해 부당수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최근 귀농, 귀촌 등 신규농 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여론에 따라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농에 대한 진입기준을 대폭 낮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부당수령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최춘태

### ▽ 추진배경 및 개요

2011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읍·면)의 면적은 9,014천ha로 전 국토의 90.0%에 달하지만 농어촌 거주인구는 전체인구의 18.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정한 농어촌 인구의 확보 없이는 농어촌지역 정주에 필요한 기초서비스 공급은 물론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창출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인구과소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저하는 많은 농어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영농여건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4~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경지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직불금은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법정리에 연접하는 읍·면에 실거주하며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직불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의 활력 증진, 마을 공동 방역 등 공익적 기능증진, 농용지 보전활동, 지역마켓팅 활동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국 139개 시·군(1,4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제2기(12년~16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법정리를 재선정한 결과 2011년 3,137개에서 3,550개(전국 읍·면 지역 15,238개 법정리 중 23.3%)로 조정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지방비 부담을 30%에서 20%로 경감하였고 414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394억원이 지급되어 조건불리지역 농업인 등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200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지급단가가 변동없이 유지되어 그동안 꾸준하게 지급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2010년부터는 밭 50만원/ha('09년. 40만원), 초지 25만원/ha('09년. 2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각각 25%씩 인상하였다.

2012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원면적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형편이 열악한 점을 반영하여 지방비 분담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였고, 향후 조건불리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운용 등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밭농업 이용 농지에 대한

받고정직불금 지급에 대비, 조건불리직불금을 받게 대해서는 가산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반영할 계획이다.

## 5. FTA 피해보전 직불제 운영

농업정책과 사무관 최민지

### ▼ 추진배경 및 개요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의 일부분을 보전하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한·칠레 FTA 대책으로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도입당시 제도의 이름은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제”였으며, 2004년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규정하였다. 한칠레 FTA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포도와 키위를 대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였다. 지급요건은 지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량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였다. 기준가격 및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의 비율은 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기준가격은 해당품목의 직전 5개 년도 평균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의 80%였고, 보전비율도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80%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간 요건을 충족한 품목이 없어 지급 실적은 전무했다.

이후 정부는 한EU 및 한미 FTA 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이 까다로워 한 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대상품목을 FTA 체결로 관세가 감축 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발동요건과 보전비율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완화 및 상향조정하였다. 한EU FTA 여·야·정 합의문에 따라 2011 년도에 보전비율이 90%로, 발동요건이 85%로 상향조정되었고, 제도의 명칭도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로 개정하여 제도의 취지가 FTA 이행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012년에는 한미 FTA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여 발표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보완 대책」에 따라 발동요건이 90%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 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 조정계수로 정해져 있고,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의 90%이다.

〈표 2-2-2〉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요건 (법 제7조제1항 각 호)

가 격 요 건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수 입 량 요 건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양)을 초과
총수입량요건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중요 43개 품목, 농업인이 신청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발동요건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발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2013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속적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요건을 완화해온 결과이다. 4월 29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되어 5월 31일에 품목고시가 되었고, 7월 21일부터 두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각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는 신청 서류에 따라 농업인의 실제 사육 여부 및 지급대상 마릿수를 현장 점검 및 소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FTA 체결로 인한 수입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2013년 1월 21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2013년 지원대상품목인 한우와 한우송아지의 수입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각각 24.4%와 12.9%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결과 피해보전직불금의 마리당 지급액은 한우가 13,545원, 송아지가 57,343원으로 확정되었다. 신청 결과 총 302,049 마리(한우 601,646마리, 한우송아지 300,403마리)의 신청이 들어와 총 254억원을 지급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2013년도에 지급된 피해보전직불금은 그간 발동이 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피해보전 직불제가 최초로 지급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조사대상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충족한 경우 차질없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보전직불제가 FTA 시대에 효과적인 경영 안정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제2절 농가 경영 안정

### 1. 농지은행 활성화

| 농지와 사무관 박홍진

####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촌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지법」개정(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05.12.29.)을 통해 「농지은행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였다. 이후 2009년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지은행사업에 추가하였고, 2010년 농지매입비축사업, 2011년 농지 연금사업 시행 등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은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과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을 위해 한국농어촌 공사가 주로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등에 장기저리의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농업인 간의 농지교환·분합을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2013년도에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1,384ha 1,232억원, 농지임대차 1,219ha 344억원, 농지교환·분합 6ha 9억원 등 총 2,609ha 1,584억원을 3,224농가에 지원하였으며,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조 8,229억원을 지원하여 166,976ha의 농지를 규모화시켰다.

〈표 2-2-3〉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구 분	합 계	1990~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면 적	166,976	143,504	5,863	5,220	4,282	2,787	2,711	2,609
금 액	68,229	55,579	3,204	2,512	2,118	1,611	1,621	1,58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특히,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호당 평균 6ha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95년부터 쌀전업농을 선정하여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13년까지 규모화 사업을 통해 139천ha의 농지를 지원하여 쌀전업농 수는 1995년 14천호에서 2013년 70천호로 늘어나고,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2013년 5.9ha로 2.3배 이상 확대되었다.

※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규모 : (95) 2.5ha → (05) 4.2 → (10) 5.2 → (13) 5.9

이는 2013년 쌀 재배농가(700천호)의 평균 경영규모 1.19ha의 4.9배의 규모이다. 또한, 2013년 쌀 전업농의 벼 재배면적(416천ha)은 전체 벼 재배면적(833천ha)의 49.9%로서 쌀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관리를 통해 농지의 이용효율화를 도모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10.1.부터 시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과 낮은 임차료로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16,487농가에 9,706ha를 임대하여 호당 평균 경영규모 0.6ha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2-2-4〉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단위: 호, ha)

구 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농가수	115,799	219	6,613	7,997	9,737	27,237	14,948	15,923	16,638	16,487
면 적	67,597	110	3,372	4,277	5,162	15,956	8,118	10,837	10,059	9,70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는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들이 부채를 갚고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있으며,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수준에 해당하는 저가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 대신 낮은 임차료(매매가격의 1%이내) 지급으로 농가 부담을 감소시켜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회생을 도모하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예산(2,6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연령제한 상한을 완화(만 70세 이하 → 만 75세 이하)하였다.

〈표 2-2-5〉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단위 : 호, ha, 억원)

구 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농가수	5,917	183	444	490	635	1,148	978	1,009	1,021
면 적	7,761	311	629	696	878	1,369	1,313	1,302	1,252
금 액	14,235	422	953	1,195	1,700	2,400	2,400	2,600	2,56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촌고령화 심화, FTA확대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 이농·전업(轉業)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 농지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안의 우량농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고령은퇴 및 농지유동화를 촉진 하고, 매입 비축한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주어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13년도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730ha를 매입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입한 농지 2,651ha 중 2,630ha를 2,964농가(농가당 0.9ha)에게 임대해 주었다.

〈표 2-2-6〉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ha, 억원)

구 분	매 입					임 대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면 적	2,651	495	711	715	730	2,630	192	755	876	807
농 가	4,444	829	1,175	1,236	1,204	2,964	262	831	1,019	852
금 액	5,587	750	1,573	1,599	1,665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지구묘화사업은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 동안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미약하다는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수료율 인하(평균 10 → 5%), 임차인 선정의 투명성 제고 등 사업활성화 방안(13.10)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 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 문제 및 환매대금 일시 완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2. 재해농가 지원 확충

재해보험팀 사무관 정병석

###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산업이며, 실제로 매년 많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재해를 피하기 위한 여러 예방사업 및 예방대책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인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영농재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 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3년에는 대설·동상해·우박·강풍·집중호우·가뭄·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29,778ha, 농림시설(비닐하우스) 221ha, 인삼재배시설 573ha, 농경지 유실·매몰 574ha 등의 피해를 입어 약 816억원(보조 582, 융자 152, 자담 82)의 복구비를 지원하였다.

봄철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수 동상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설·가뭄·우박·강풍·태풍 등으로 인한 낙과피해 및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파비, 농약대, 생계지원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고, 복구비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한 해 또는 수 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이 물거품이 되는 금전적 피해와 함께 삶의 의지가 꺾이는 등 정신적 피해도 크게 받는다. 재해복구비는 농작물 등 손실액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아니며 복구비 또한 현실단가의 60% 수준으로 다소 부족하나, 재해복구비 지원은 농업인의 영농재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또한 지원기준 단가가 없거나 현실보다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단가의 신설 및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규모 피해발생 시 신속한 재해농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다.

### 3.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재해보험팀 사무관 서은희

####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태풍과 같은 거대재해 발생빈도 증가 및 폭염·가뭄·홍수 등 예측불허의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상황으로 지난 “루사(2002)”, “매미(2003)” 태풍으로 255명이 사망하고 약 9조 8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는 “볼라벤·덴빈”, “산바”와 같은 연이은 태풍과 호우·강풍·대설 등 22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2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기상재해로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재해 발생 시 정부는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 이자상환 연기, 학자금 지원, 대파대·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수준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직불제사업과 더불어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2-2-7〉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품목		6	7 (뽕은감 추가)	10 (밤,참다래, 자두 추가)	15 (콩,감자, 고추,양파, 수박 추가)	20 (벼,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추가)	25 (대추,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추가)	30 (풋고추, 호박,국화, 시설장미, 복분자 추가)	35 (파프리카, 시설멜론, 인삼,오디, 차 추가)	40 (시설상추·부추·시금치, 표고·느타리버섯 추가)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26,328	27,419	29,145	32,538	45,882	52,738	67,653	74,983	95,102
	가입면적(ha)	20,301	21,466	23,661	26,037	48,331	53,452	86,604	108,373	160,203
	가입률(%)	23.4	24.0	22.7	28.5	12.5	13.0	15.0	13.6	19.1
지원 규모	순보험료(%)	61.2	58.4	55.6	52.8	50	50	50	50	50
	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고지원액	53,462	76,290	70,444	78,961	86,152	103,040	98,172	146,506	181,596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5,877	5,174	7,198	3,382	8,681	14,343	19,611	46,337	8,600
	보험금	23,871	21,112	61,464	24,932	66,176	90,330	13,263	490,978	45,088
	손해율(%)	43.5	36.6	110.4	45.0	105.8	104.6	119.4	357.1	21.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NH농협손해보험(주)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대상품목 확대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짧은 기간에 규모면에서 급성장하여, 대상품목의 경우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에서 2013년 현재 40개 품목으로 매년 확대 해왔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사업 초기 과수작물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을 2007년 이후부터는 벼·콩·고추 등 식량·채소작물 등으로 다양화 하였다.

\* '13년 대상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뽕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딸기,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멜론, 시설파프리카, 대추,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인삼, 오디, 녹차, 시설상추,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 ▼▼ 보장범위 강화

보장범위의 경우도 태풍·우박·동상해 등 특정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것을 2007년 이후부터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포함하도록 강화하였다. 벼 품목의 경우에는 병충해의 일부(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와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으며, 복숭아, 포도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특정위험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 중인 과수 5개 품목(사과·배·단감·뽕은감·감귤)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순차적인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을 목표로 2013년에는 우선 배 품목의 시범사업(3개 시·군)을 추진하였다.

### ▼▼ 보험 가입률 제고

2013년도에는 전년도 가입률 13.7% 대비 2.9% 증가하여 95,102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12년 108,3734ha에서 160,203ha로 크게 늘어 가입률 19.1%(사과·배·감귤·단감·뽕은감 과수 5개 품목 가입률 51.0%)를 달성하였다. 특히 사과·배의 경우 전국 대상 면적의 82.6% 이상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과·배를 제외한 감귤·포도·복숭아 등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20% 이내에 머무는 등 아직까지도 재해보험이 농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 작물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2013년까지 140천 농가에 1조 56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대상재해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보험 가입률 및 규모 면에 있어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2017년까지 보험대상 농작물을 53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2~3년간 주산지 위주로 운영하면서 상품을 개선·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전국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예시설보험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 중인 과수 5개 품목(사과·배·단감·뽕은감·감귤)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형태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행 수확량 보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재해보험팀 사무관 문정호

### ▼ 추진 배경 및 개요

가축은 사육 중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축산농가로서는 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농가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부터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태풍,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보험가입 수요 및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대상품목 확대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한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대상축종을 지속 확대하여 2011년에는 “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16개 축종에 관한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매년 상품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 재해 및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 ▼▼ 상품개선을 통한 보장 강화

2013년에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화재시 인접농가도 보상하는 축사화재실화대물배상, 폐사 시 가축 잔존물 처리비용 지원, 돼지보험 가입농가의 자기부담 경감 등 농가 수요를 반영한 상품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축산농가 보장범위

확대, 대농업인 보험가입 홍보 강화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전년 71.4% 대비 5.9%p 증가한 77.3%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무료 가축진료 및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전기 소방시설의 점검을 통한 화재예방과 보험계약자에 대해 점검하여 민원의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힘썼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에는 자연재해·화재·가축질병 피해 등으로 5,036농가에 65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한편 보험 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축종별로 돼지가금은 높은 반면 소, 말 등은 낮아,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각종 재해 및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진료 등 보장 범위를 확대 및 다양화 하여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상품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8〉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	7.2	6.9	7.1	8.3	8.1	7.8	6.7	6.1	7.6	7.6
돼지	48.2	57.2	66.7	63.2	65.0	77.0	74.8	82.7	85.1	100
말	2.1	4.9	6.7	7.2	7.9	8.6	6.3	5.2	4.9	3.3
가금	24.0	37.0	39.3	43.1	45.2	46.9	51.6	54.8	73.1	78.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NH농협손해보험(주), LIG손해보험(주)

## 5. 농업부문 세제지원

농업금융정책과 주무관 황윤지

### ▼ 추진 배경 및 개요

조세제도는 법과 제도, 공공인프라, 재정·금융지원과 더불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분야에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를 운영하여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기능별 예산분류기준(16개 부문)에 따라 조세감면 실적을 분류했을 때, 농림축산 분야의 지원실적이

전체(181,534억)의 28.0%(53,167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조세지원 실적이 높은 편이며, 직접적 재정 지출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농업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인 관련 조세경감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취득·등록세) 등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직접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전담 임대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농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이자소득세 감면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이 있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에 대한 감면도 다양하다. 다음으로 간접세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축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인지세의 경우에는 농협 조합원 예적금 증서, 용자서류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밖에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면세 등 다양한 조세감면이 행해지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부문의 조세감면 항목(국세 52여개, 지방세 25여개) 중 조세감면 실적 추정이 가능한 주요 항목으로는 농업용 석유류 면세(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업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이 있다.

이들 감면 항목에 대한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9〉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 면세유	11,208	11,353	9,646	10,403	10,854
•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2,108	11,675	11,213	11,870	11,500
•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1,129	1,014	1,299	1,431	1,490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18,779	17,134	12,375	10,911	9,934
• 농지 대토시 양도세 면제	1,791	2,036	955	766	594
•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2,578	2,516	2,458	2,322	1,921

석유류 면세가 농기계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3월부터이다. 2013년말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기계 42개 기종이고, 면세유류 공급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농업용 면세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10〉 농업용 면세유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급물량 (천℔)	1,898	1,923	1,807	1,761	1,706
공 급 액 (억원)	14,110	16,410	19,344	20,147	18,738
감면세액 (억원)	11,208	11,353	9,646	10,403	10,854

농업·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89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현행 적용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농기계 32종, 사료, 축산기자재 39종, 임업용 기자재 15종,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3종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2001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 농업용 필름 등 46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2-11〉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료	1,800	1,548	1,481	1,664	1,873
농 약	1,310	1,250	1,258	1,339	1,352
농 기계	958	1,019	1,004	890	1,000
사 료	7,300	7,500	7,350	7,830	7,208
축산기자재 등	740	358	120	147	67
계	12,108	11,675	11,213	11,870	11,500

〈표 2-2-12〉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사후환급적용자재	연간환급세액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용 필름	238	237	250	276	308	318
농업용 파이프	185	209	196	225	295	308
농업용 포장상자	341	336	350	400	371	357
농업용 PP포대	13	16	15	21	13	21
과 일 봉 지	38	42	41	45	40	35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27	24	20	20	26	19
차광망(연초건조용, 과수, 화훼재배용)	2	5	4	5	6	19
농업용 부직포	36	53	51	64	57	61
농업용 배지	30	36	39	42	52	54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2	1	1	2	2
축 산 자 재	14	23	26	38	53	53
기 타	33	146	21	162	208	243
계	957	1,129	1,014	1,299	1,431	1,490

### ❖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국제 유가·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농가 생산비 부담이 증가 하고, FTA의 확대에 의한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율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6.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서영주

###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가부채 규모는 영농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상업농화가 진전되면서 시설투자 증가, 경영비 상승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다 2008년 이후 정체상태이며, 농가 자산의 상승에 힘입어 전반적인 부채상환 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의 FTA 진전,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고리채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6차례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기상이변·시장개방 등에 따라 각종 재해나 농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인해 건실하게 영농을 영위하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법인 포함)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프로그램으로 농업경영 회생자금(연리 3%, 3년거치 7년분할상환조건)을 지원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 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등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까지 부채대책(2001·2004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4·2006·2009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 지원 및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등) 추진으로 32,933억원의 재정이 지원(이차보전)되었고, 이는 농가당 연평균 2,033천원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농가의 부채를 줄이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회생프로그램(경영회생지원+농지 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조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0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 3.3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대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부채 경감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들 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재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유통체계 개편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7.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 식량산업과 서기관 이범섭

###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어업용 면세유류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류제도는 수차례의 법 개정과 관리체계 개선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으며, 공급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농어업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 고유가 현상과 자원고갈 문제의 대두, 한·미 FTA, 농촌 경제의 어려움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살펴보면 농업용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등 42개 기종, 어업용의 경우 어업용 선박 및 시설 등이 해당되며, 대상유종은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이다.

농림어업용 면세유류는 현행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내역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각각 529원, 375원, 주행세는 「지방세법」 제136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3년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270만kl(농업용 176만kl, 어업용 101만kl)로 2012년 270만kl과 비슷하며, 2013년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도 1조 7,612억원(농업용 1조 854억원, 어업용 6,758억원)으로 2012년 1조 7,000억원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표 2-2-13〉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단위 : 만ℓ, 억원)

구 분		연 도	2010	2011	2012	2013
사용량	농업용		192	181	176	171
	어업용		110	99	94	101
감면세액	농업용		11,353	11,174	10,403	10,854
	어업용		7,005	6,626	6,393	6,758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어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여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농업과 어선어업을 촉진하여 신선채소의 연중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해 국내 물가안정과 국민가계 부담의 완충역할을 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수혜자는 농어업인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기계 및 어선을 가진 농어업인은 농어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도시민은 농수산물을 보다 싸게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취약한 농어업의 경영 안정화, 환경보호 측면, 도로 비주행 등의 이유로 자국의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세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효과는 면세유류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근절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킴으로써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가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사용량을 전량 공급하고, 신규 개발되거나 농작업 사용이 증가하는 농기계는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에 소요되는 유류는 충분히 공급하되 부정유통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방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 8. 농기계임대 활성화

| 식량산업과 서기관 이범섭

###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0년 이후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대체하고 과학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을 늘려 나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후한 소형 농기계를 대체하면서 중대형 농기계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농업인의 부채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대형 농기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 등에 따른 농기계의 이용 효율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발작물 농기계의 경우 영세한 영농규모, 짧은 사용기간, 발농업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기계화율이 50%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 주거나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지역농업이 영농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던 것을 2000년대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부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 하면서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농협이 신용사업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농가부채 탕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논농업 중심의 농기계 은행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의 영농관리센터를 두 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국고 200억원을 지원하여 총 293개소를 설치하였고, 2013년 농기계 이용률은 9.6일/대로 전국 평균 작업일수 1.5일 대비 6배 높은 성과를 거두어 농기계 이용률 및 발농사 기계화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의 경우 2013년 전국 지역농협 861개 중 695개소(80.7%)가 참여하였고, 영세·고령농의 농작업 대행면적은 208천ha로 전체 비면적의 24.7%를 달성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농업인에 대한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고령·영세농의 농작업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12년부터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고추·마늘 등 규모화된 밭작물 단지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향후 2016년까지 고추·마늘·양파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5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신규 임대용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령·영세농과 조건불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해 지역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직영농협을 확대할 것이며, 그 범위도 재배에서 방제, 수확 및 그 이후의 영농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9. FTA 폐업지원

| 농업정책과 사무관 최민지

### ▼ 추진 배경 및 개요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을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하는 폐업지원제는 2004년 한·칠레 FTA 대책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법적 근거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으며, 시행령으로 시행기간을 2008년까지로 규정하였다. 지급대상품목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중 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설포도·키위·복숭아가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고시되었다.

시설포도·키위·복숭아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377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검역문제로 수입되지 않은 복숭아에 지급되는 등 사전지정제도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한미 FTA 대책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사후 지정제로 개선하였으며, 시행기간도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였다. 즉,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에서 ① 재배·사육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하면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하거나, ②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렵거나, ③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사후지정제로 개선된 후 최초로 2013년도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이 선정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한우를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인 한우(송아지 포함)의 자본평가액은 비육우가 599만원, 번식우 648만원으로 높은 편이고, 수익 소요 기간은 비육우가 28~29개월, 번식우가 22~25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4월 29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되어 5월 31일에 품목고시 되었고, 7월 21일부터 두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축산 분야에 처음으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생산자단체와 지자체를 통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어, 검토 후 필요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폐업지원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령 후 5년 간 해당 축사의 소 사육을 제한하고, 2013년에 소를 출하하지 않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품목고시일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다면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지침 보완으로 신청일이 지연되었음을 감안하여, 품목고시일(5월31일)부터 신청일(7월21일) 사이에 폐업한 농가도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였다. 개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폐업지원금 신청을 추가로 받도록 하였으며, 각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는 신청 서류, 농업인의 실제 사육 여부 및 지급 대상 마릿수를 현장 점검 및 소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였다.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결과, 총 신청금액은 2,305억 원으로 2013년도 예산 편성액(300억)의 7.7배 수준이었다. 폐업지원금은 해당 품목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급 가능하므로 2013년에는 폐업지원금 예산 및 FTA 기금 여유자금 등을 이용하여 총 819억 원을 지급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에 미지급된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5년 간 동일 품목 재배·사육이 금지되고, 재사육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위반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조사대상품목에 대해 폐업지원제 발동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충족한 경우 차질 없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다.

## 제3절 핵심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경영인력과 사무관 박경희

####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된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981년도부터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만 50세 미만(고령화 사회 추세에 따라 2013.3월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연령을 만 45세 미만을 만 50세 미만으로 확대함)의 청장년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경영·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영농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규모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 및 생산·유통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예비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우수농업경영인으로 분리하여 교육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습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잠재농업인력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농산업인턴제를,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인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 말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러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던 인턴사업을 통합하여 농산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외농업인턴제는 교육부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 ▼▼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은 연령, 영농·영어 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3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연령을 만 50세 미만으로 확대(기존 만 45세 미만)함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을 1,800명 수준으로 상향(기존 1,500명)하였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1,849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였다. 이 중 남성이 1,523명(82.4%), 여성이 326명(17.6%)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28명(23.1%), 30대가 647명(35.0%), 40대가 774명(41.9%)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353명, 경북 318명, 경기 261명, 전남 230명, 경남 172, 충남 163명 순이다.

〈표 2-2-14〉 2013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 명, %)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849	261	88	104	163	353	230	318	172	78	82
(%)	14.1	4.8	5.6	8.8	19.1	12.4	17.2	9.3	4.2	4.4

2010년까지는 창업융자금의 신청 및 융자금 대출이 확보한 예산의 50%에 못 미쳤으나, 융자금을 선정 당해 연도에 최소 4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40% 이상 사용한 자에 한해 3년 동안 분할하여 잔여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융자금 대출을 확보예산의 95%까지 지원하였다.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 중 창업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영농기반 확보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3년에는 경영성과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288명을 선정,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예비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우수농업경영인으로 분리하여 교육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선진기술 및 국제 감각 습득 지원을 위해 국내외 연수과정을 실시하여, 경영교육 1,198명, 국내 연수 21명, 국외 연수 111명을 교육하였다.



### ▼▼ 농산업인턴제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이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미취업자 또는 농고·농대 휴·재학생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턴 자격으로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실무연수를 하며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도농가는 최대 2인까지 인턴채용이 가능하며, 인턴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농업인턴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50%를 5개월간 지원한다. 2012년에는 기존 18세 이상이던 인턴 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에는 20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인턴이 창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창업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산업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 ▼▼ 해외농업인턴제

2009년부터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 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농장에 파견하는 해외농업인턴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하였으나, 해외연수 인원이 소수이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통폐합되어 교육부에서는 '13년부터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다.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대학에서 판단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에서 50%의 대응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조 4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136천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확보되었으며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영농정착 실적평가를 토대로 성장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신지식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2. 농업법인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조은지

###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90년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농업법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자금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종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관련 규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이 기업적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농업분야의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총 출자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실태 조사(시장·군수) 근거규정을 두어 관리 측면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법인 설립·운영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 규모화 및 경영효율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법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3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농업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효율적 지원 및 정책자료 축적을 위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DB 등록을 유도하고자 법인세 등 감면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농업법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13년 농업법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회계·노무 및 조직·갈등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법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2002년 5,598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농업법인 수는 12,981개이며 그 중 영농조합법인은 10,023개, 농업회사법인은 2,958개로 조사되었다. 농업법인 종사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9.7천명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5〉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단위 : 개)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법인 수	5,208	5,260	5,308	5,520	6,003	6,537	9,740	10,867	12,981
영농조합법인	3,852	4,293	4,410	4,624	5,075	5,597	8,107	8,724	10,023
농업회사법인	1,356	967	898	896	928	940	1,633	2,143	2,958

자료: 통계청, 단, 2009년 이후 모집단 작성방법 변경에 따라 2010년부터 이전 수치와 시계열 분석 단절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6.8명, 상시종사자 4인 이하 법인은 전체의 63.5% 수준이며, 주된 사업유형으로는 농업생산을 하는 농업법인이 32.4%, 유통업 25.7%, 가공업 18.6%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당 판매액은 평균 14.6억 원이고, 전체 판매액 중 유통업은 40.2%, 가공업 24.7%, 농업생산수입 23.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법인 당 자산은 12.8억 원, 부채는 7.9억 원이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62.1%로 전년(157.2%)보다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6〉 농업법인 주요 경영지표

(단위 : 개, 백만원, %, %p)

구 분	유 형	2011년	2012년	증감	증감률
전 체	결산 법인수	8,520	10,352	1,832	21.5
	자산	1,257	1,282	25	2.0
	부채	768	793	25	3.3
	매출액	1,675	1,639	-36	-2.1
	영업이익	35	11	-24	-68.6
영농조합 법 인	결산 법인수	6,594	7,636	1,042	15.8
	자산	952	931	-21	-2.2
	부채	575	553	-22	-3.7
	매출액	1,353	1,254	-99	-7.3
	영업이익	23	12	-11	-47.8
농업회사 법 인	결산 법인수	1,926	2,716	790	41.0
	자산	2,304	2,269	-35	-1.5
	부채	1,429	1,467	38	2.7
	매출액	2,778	2,720	-58	-2.1
	영업이익	77	9	-68	-88.3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2013년)

### ▼ 평가 및 향후 계획

세제지원 및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가 증가하고, 경영 지표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중소기업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6차산업화를 이끌 핵심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창업·투자유치 활성화, 전문화된 경영 컨설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주식·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료 축적을 통한 합리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의 원활한 기업상속을 위해 법인의 주식 등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공제 한도가 타 분야 중소기업에 비해 낮아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규모화된 농업법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농업법인도 기업상속공제 수준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3. 농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안치홍

### ▼ 추진 배경 및 개요

FTA 등으로 급변한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인에게는 전문적인 생산기술, 위기관리를 포함한 경영혁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습위주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전국대표실습장, 지역품목실습장 지정 등 현장실습교육장을 확충하고 현장실습교육(WPL)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품목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 향상 및 소득 증대와 연계되는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전면 경쟁체계를 도입한 공모방식으로 기관과 과정을 선정하는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외연수 운영 전문기관을 점검하고 농정방향에 부합되는

국외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13년에는 미래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생 대상 농산업연계 취·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사업 및 농고 산업연계프로그램 사업을 공모방식(기존 연속지원)으로 전면 개편하여 참여 학교와 학생을 확대, 저변을 확산하는 등 사업을 개선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13년 사업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지정을 통해 전국대표실습장 10개소와 지역품목실습장 81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실습교육 교육인프라를 확대하고 농업인·농대생·농고생 및 귀농자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국 9개 도, 30개 캠퍼스에서 96개 과정의 교육을 2년 동안 32학점을 이수하는 실습중심 평생교육체제로 '13년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하여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과 생산성 증대 및 경영 능력 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1~3월 농한기에 교육을 운영,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기에 농업교육과정 공모를 진행하였고, 공개경쟁방식을 지속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교육운영주체 발굴·지원 및 우수과정 선정 등 성과 중심 농업교육을 운영하였다. 농정목표와 현장수요에 부합하도록 창업·경영, 유통·마케팅, 농촌개발·거버넌스, 농식품가공, 친환경농업 등 5개 분야를 설정, 공모를 통하여 53개 기관 77개 과정을 선정하여 전문농업교육과정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이주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여성농업인을 연계하여 1:1 맞춤형 농업인교육을 통한 우수 여성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19개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과 국외 시장 개척을 선도하였다.

신규 미래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의 학교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농업계학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의욕있는 농업계 학생들의 참여를 넓히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연속지원방식의 지원 체계를 공모방식으로 전면개편,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사업성과를 높였다. 농고 17개교를 대상으로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산업과 연계하여 취·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실습/현장실습, 창조미래인력 양성, 산업체연계프로그램, 진로탐색/비전스쿨, 승계농/후계농 양성 등 현장교육 중심의 학교별 산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도농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73개 농고를 대상으로 선도농업인과 소통, 전국FFK전진대회, 선도농코칭, 우수학생 국외연수 등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전국 16개 농과대학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현장실습교육, 창업 및 취업교육,

영농승계교육, 컨설턴트 양성교육, 선진기술연수교육, 창조자율교육, 선진지 국외연수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였다.

교육기관들의 운영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 농대, 공모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5개 교육유형의 과정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13년도 교육운영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유형별 평가위원을 통해 서면평가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수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평가결과는 익년도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 시 환류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 농대)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전·후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단기교육과정(WPL)의 경우 현업적용도 평가를 처음 도입하여 교육성과평가를 확대·병행하여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의 교육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농업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있는 농업인력포털(AgriEDU)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정보노출 취약점 개선, 기능 장애 발생시 신속·정확한 조치 및 서비스 안정화, 최적 시스템 운영 환경을 위한 성능을 개선하였다.

최고의 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타인에게 이를 전수·지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발굴하고자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업마이스터는 3단계 시험절차(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각 시험단계별 시행계획, 관련규정, 시험운영위원 선정 등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하여 농업마이스터 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다각화된 홍보와 맞춤형 보수교육을 통해 지정된 농업마이스터들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컨설턴트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함께 이루어졌다.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 교육체계 개편 계획 수립을 통해 범농업계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전문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여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교육훈련은 농업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증대로 연계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등을 운영하여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제 영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교육비의 30%를 교육생 자부담 원칙으로 하여 교육 참여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

농업·농촌교육공모, 기획과제공모, 자생적 학습조직 운영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농업계학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방식 개선을 통하여 농정현안 및 중장기 농정수요에 대응하고, 농업교육체계를 개편하여 범농업계 교육의 전문성 확대 및 체계적인 교육 운영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교육생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4.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조은지

#####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확대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농축산물의 유입, 친환경농산물 선호 등 소비성향의 변화, 농업의 6차 산업화 등과 같은 국내외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농업경영체는 단순한 생산기술력 외 경영역량의 향상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생산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농업경영체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경영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업체와 컨설턴트를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인증 받은 농업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기술 또는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인 관주도의 기술 지도와는 달리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업경영컨설팅 평가점검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지정하고 컨설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절차 및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즉, 컨설팅성과에 대한 저해요소와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해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컨설턴트 1인당 사업량의 제한, 컨설팅 수행단계(계획, 중간, 완료)별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점검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인증기준 준수 및 부합을 확인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체 수요에 맞는 양질의 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인증업체 Pool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규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에는 농업경영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였다.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기술위주의 농가 컨설팅을 축소하고 법인 및 조직 경영체 중심의 기술·경영 컨설팅 위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조직경영체 우수 컨설팅사례를 발굴하여 타 경영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사회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컨설팅주체(지자체, 컨설팅업체, 경영체)별 사업성과를 심층 종합평가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컨설팅 수행단계별 평가점검

컨설팅 추진성과 및 핵심성과지표(KPI) 설정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평가점검단을 통해 '13년도 지원대상 578개 경영체별(개인 483, 법인 93, 조직경영체 2) 사업수행 계획서를 심사·승인하였으며, '12년 종료사업을 포함하여 총 962건('12년 649, '13년 313)의 사업완료 실적을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전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 여부 및 사업 성과를 사전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표 2-2-17〉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 분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량 (개소)	220	1,000	1,009	1,080	1,250	1,448	994	934	649	578
사업비 (백만원)	1,710	8,000	8,640	8,640	9,750	11,200	10,080	9,916	5,375	5,375
국 고	671	4,000	4,400	4,400	5,000	5,600	5,040	3,111	1,735	1,73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컨설팅 인프라 구축·강화

다양하고 우수한 컨설팅업체의 발굴 및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양질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농업경영컨설팅 참여업체 인증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4개의 신규 업체가 새로이 인증을



획득하여 '13년 총 64개의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를 확보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하여 농산업분야의 컨설턴트 Pool을 확대하고자 컨설턴트 등록 심사를 실시하고 컨설턴트별 역량검증을 통해 수임단가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13년 기준 총 779명의 컨설턴트가 농업경영컨설턴트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수임단가는 48.6만원이었다.

### ▼▼ 컨설팅 성과관리 및 확산

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의 일환으로 '12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Agrix)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649개 중 20%를 샘플링하여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과 고객관계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 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 및 성장관점에서 컨설팅 성과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 전후의 농업소득 증가율이 29.2%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종적·횡적 저변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백서를 제작하여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 및 향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가, 법인, 조직경영체에 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2013년 평가점검단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전후 매출액이 평균 29.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17.64%, 농업경영비는 29.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부터는 농가위주의 기술컨설팅에서 법인위주의 경영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지원 경영체 및 과제 선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즉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경영체 경영수준 및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컨설팅 성과와 만족도, 예산지원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귀농·귀촌 지원대책 정비

| 경영인력과 사무관 안종락

###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에 대비하여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2009년 4월 발표하였다. 그 후 귀농·귀촌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검토하여 귀농·귀촌인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완화, 안정적인 농업창업,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보 제공, 교육, 자금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식품산업 관점에서는 타 산업 경험 인력 유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 관점에서는 주민 확보는 물론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 활성화 등 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 ▼▼ 귀농·귀촌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 중인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여, 영농기술, 농지, 주거, 창업자금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의 One-stop 제공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2013 귀농귀촌창업박람회(13.10.25~27) 개최를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정보, 상담기회를 제공하였다.

#### ▼▼ 귀농·귀촌 교육 운영 내실화

귀농·귀촌인에게 관심 단계부터 실행, 정착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신규 콘텐츠 3종을 추가 개발·운영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과정도 도시민, 직장인 등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주말반, 야간반, 장·단기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전 등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3년에는 단계별(관심, 준비, 실행 등), 직업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 교육을 확대·운영하였다.

### ▼▼ 지자체의 귀농·귀촌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통해 35개 시·군의 귀농·귀촌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영농교육·실습,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개소(제천, 영주)를 건립 중에 있다.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자금 지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귀농인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하였다. 2억원 한도 내에서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을 위해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였다. 대출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착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귀농·귀촌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실행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농업 신규 인력 유입, 농촌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 등으로 귀농·귀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교육·실습, 자금 지원, 관련 법률 제정 등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제3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 1.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유통정책과 서기관 신우식

#### ❖ 추진배경 및 개요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 (buyer's market)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자 단체 및 산지유통주체도 규모화·조직화·전문화를 통한 교섭력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상당수 산지유통조직이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공동계산액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00년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사업자금 용자 지원을 통해 대형(공동마케팅조직), 중형(전문조직), 소형(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차등지원,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10년까지 공동마케팅조직(31개소) 및 전문조직(282개소) 등을 선정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시장개방 및 소비자 시장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개별경영체 위주의 육성 정책에서 통합경영체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57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2005년도에 최초로 9개 조직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공모를 통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산지유통활성화자금(대출기간 3년, 이자율 1%)과 무이자 인센티브,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2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상대평가를 통해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 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정책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해서 2011년부터는 통합경영체 위주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좀더 강화하여 육성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그동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체제 개선안을 마련(10.7월)하여, 장기정체 조직의 지원중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조직 간 합병·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유인을 제고하고, 합병·계열화의 결과, 통합조직 또는 계열화 상위조직으로 다량의 원물이 집중되어, 산지의 시장교섭력 제고 및 취급액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산지유통사업체제 개편안(10.7월)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기정체 조직에 대한 지원중단 강화로 산지조직의 적극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고, 산지조직간 수직계열화 촉진으로 산지 조직화·규모화 속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규모 또는 마케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직은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 계열조직으로 편입(상위등급 조직에 원물 공급)하여 상위등급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도록 유도하여 산지조직간 통합 및 수직계열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합마케팅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지유통 조직의 주요 원예농산물 유통점유비가 '17년까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조민경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유통비용 절감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1식품·1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2009년에는 방문객 수 29만명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3년엔 31만명에 57억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물가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전국 16개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임시 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이외에도 생산자단체와 소비지 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지 유통·1식품·1외식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상으로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정산소를 갖추어 대금 결제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에는 1조 6,073억원으로 성장하여 농수산 분야 B2B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소비지·생산지 간 직거래 확대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On-line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통합 관문홈페이지(싱싱장터, www.esingsing.co.kr)를 구축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B2C 거래를 증대하였으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 확대 등 온라인을 활용한 B2B

직거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직거래장터가 로컬푸드 차원에서 농가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산지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정례 장터 개설을 확대하여 도농 간 교류 확대 및 지역 생산물의 소비촉진,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 3.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고은

####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 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산지유통센터의 등장과 출하자 규모화, 대형유통업체·종합유통센터의 등장, 저온저장 및 콜드 시스템 발달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유휴 공간과 물류시설 부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신속한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고자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물류와 유통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경매 부조리,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물류효율화)을 개선하고 공정성·투명성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에서 나아가 거래 안정성·유통 효율성을 고려한 도매시장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3-1〉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청과부류)

(단위: 만톤, 조원)

구 분	2004	2006	2008	2010	2012
물 량	575	607	659	623	650
금 액	6.1	6.9	7.3	9.6	10.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 추진내용 및 성과

### ▼▼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품질·신선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물류·경매장 구조개선, 저온화 시스템, 저온저장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 공영도매시장(32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노후화가 심하고, 유통물량 과다로 시설이 부족한 공영도매시장(서울가락시장, 대전오정시장, 광주각화시장, 충남천안시장)를 선정하여 국고보조 30%, 국고용자 40%,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09년에서 '18년(10년간)까지 연면적 547,05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전오정시장은 '09년에서 '13년까지 연면적 42,933㎡ 3층의 규모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천안도매시장은 '12년에서 '14년까지 연면적 30,356㎡ 3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광주각화시장의 경우 당초 '09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사업기간 영업손해를 이유로 시설현대화를 적극 반대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

보다 효율적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13.3월), 시설정비위원회 구성('13.5월), 사업시행지침 마련('13.6월),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13.6월, 수원도매시장) 등을 추진하여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및 유통효율화 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였다.

### ▼▼ 운영효율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및 도매시장 평가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매제도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및 비상장품목 거래안전성 제고를 위해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2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개정하여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이 투명성·공정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방안 마련('13.5월)을 마련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및 가락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우선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 확대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T/F 구성(13.7월),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마련(13.8월) 및 도매시장법인 등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가락도매시장에 상장애외품목 대금정산조직을 설립(13.11월)하였다.

아울러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 다양화하기 위해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안법령을 개정(법률개정안 '13.11월 국회 제출, 시행령·시행규칙 '13.11월 개정·시행)하였다.

\* 매수집하 허용 및 가공·물류 등 겸영사업 범위 확대

\*\* 중도매인간 거래 단계적 허용을 통해 소매점의 one-stop 쇼핑 지원

### ▼ 평가 및 향후계획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도매시장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및 출하자 거래대금 정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 및 농산물 유통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각종 대책 및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정책과 서기관 변상문

###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0년 가을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생산량 감소는 배추의 소비자 가격을 평년에 비해 최고 3.5배까지 올리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세계 유수의 언론사인 TIME지는 2010년 10월 7일자 기사(Cabbage Crisis : South Korea Runs Out of Kimchi)를 통해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부족이 국가적 위기(national crisis)를 야기하였다고 표현하였다. 배추값 폭등을 계기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락하는 것을 막고 유통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채소류에 중점에 둔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마련(11.1)하고 2012년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13.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변동성 완화' 를 목표로 '13.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새롭게 수립한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은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 을 촉진하여 유통주체들의 유통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거래', '농산물 B2B',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체계적인 수급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생산자·소비자·정부·학계 등이 참여하여 수급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확정하는 '수급조절위원회' 를 새롭게 운영하였으며, 정부의 수급 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 을 수립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3년에는 과거에 비해 새로운 농산물 유통정책들이 많이 추진되었는데, 주요 추진 과제는 로컬푸드 기반의 직거래 확대, 체계적인 수급정책,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를 들 수 있다.

#### ❖❖ 농산물 직거래·B2B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 신유통 확대

2013년부터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 을 새롭게 추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사업, 직거래장터 및 직거래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직매장 사업자에 대해서 인테리어·시설 및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 결과, 2012년 3개소에 불과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3년말에는 32개소까지 증가하였다.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다양한 제철 농산물을 한데 모아 가정으로 배송하는 형태의 직거래인 '꾸러미사업' 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하였다. 또한, 직거래의 장점 및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거래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직거래 유형별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마케팅 지원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제1회 직거래 페스티벌을 10월말에 개최하여 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거래소' 를 통한 거래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거래실적은 1조 2,347억원(수산/가공제외)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하였다. 농협을 통한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는 2013.9월 개장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농협중앙회 도매분사를 통한 유통계열화 거래실적은 1조 478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경유할 경우 도매시장 경로에 비해 14.6%p 유통비용율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물에서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였는데, 패커를 통한 유통시 한우는 8.7%, 돼지는 6.0%의 유통비용율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실적은 1조 2,034억원으로 66.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직거래, 사이버거래소,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의 신유통이 확산된 결과, 2013년 신유통을 통한 거래액은 5조 50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6%가 증가하였다.

〈표 2-3-2〉 2013년 농축산물 신유통경로 거래액

(단위 : 억원)

구분	직거래	친환경전문	생협	aT 사이버거래소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농산물	축산물
2012년	10,173	934	2,540	8,504	9,596	7,224
2013년	12,059	1,031	2,991	12,347	10,047	12,034

### ▼▼ 농산물 유통에서 농협의 역할 강화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1994년부터 논의해 왔던 농업계의 숙원인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분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금번 농협법 개정에 따르면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계로 전환(12.3.2 시행)하고, 조합원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농협의 주요 책무로 삼도록 하였다. 산지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앙회 경제지주가 책임지고 판매한다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등의 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일례로 작년 고랭지배추의 경우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일반 도매시장 경로보다 33%의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농협은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수집하고, 농협 도매 유통회사는 전국단위 물류센터<sup>2)</sup>를 활용하여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수발주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농협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이다. 이러한 농협 직거래 체계를 활용하여 현재 생산량의 10% 내외에 불과한 계통출하 물량을 2020년 50%까지 확대하여 농협을 농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2) 전국 5개 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제주)에 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계획. 수도권(안성)은 2013년 9월, 기타 4개소는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

### ▼▼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농업 선진국과 같이 산지(產地)가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될수록 도매시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소매 시장이 중계 기구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농협을 비롯한 산지가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도매시장<sup>3)</sup>이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례로 채소를 보면 전체 생산량의 40% 내외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생산량 중 자가소비, 감모 등을 제외하고 실제 유통물량을 생산량의 82% 정도로 가정한다면 절반 가까이의 채소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도매시장은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집하·분산·중계라는 유통의 순기능 외에 경매라는 일일(一日) 수요공급량에 의한 가격결정이라는 불합리한 측면도 크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2년 2월에 농안법을 개정하여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였고, 같은 해 8월에 시행하였다. 현재는 도매시장 상장 시 정가·수의매매는 전자거래<sup>4)</sup>나 견본거래<sup>5)</sup> 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여 출하자가 경매와 정가·수의매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수급관리 체계화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하여 농업관측 고도화, 수급조절위원회 및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계약재배, 비축사업 등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농업관측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합리적인 영농의사결정과 정부의 수급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며, 주요 농축산물 31개 품목에 대한 관측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농업관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관측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관측 내용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2013년부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정부(농식품부, 기재부, 농진청 등) 및 학계·연구기관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13년에만 총 8회 개최하였고, 수급조절위원회를 농안법 시행규칙에 올림으로써 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수급조절매뉴얼도 2013년부터 새롭게 제정하였는데,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5개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을 제정하여 매월 가격대별로 위기구간을 설정하고 각 위기구간별 정부 대책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정책 투명성을 높였다.

3) 현재 우리나라에는 50개의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121개의 도매법인과 55개의 시장도매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4) 거래할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매매방법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제도(2007년 도입)

5) 일정 시월에 보관·저장 중인 농수산물의 견본(보관 농수산물 일부)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제도(2009년 도입)

### ▼▼ 농산물 공정거래제도의 정착으로 공생발전 추구

유통개선 대책의 마지막 분야는 농산물 분야 공정거래제도 정착이다. 1990년대 후반에 유통시장을 개방한 이래 대형유통업체의 시장교섭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산지 조직들이 불공정거래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추진 중인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농수산물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기 유통이 어려운 농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의 감액이나 반품 시 그 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과도한 저가납품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11년 5월에는 「대규모 소매업체의 불공정거래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산지에 배포하였다. 2012년에는 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홍보 하면서 계약체결부터 이행까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각 단계별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 및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한편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2년 11월 산지가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 소비자단체들이 산지를 방문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사례 및 거래 관행을 조사하여 평가·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예방적 성격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비자 단체와도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산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2013년 수립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농축산물 신유통경로는 8.4%에서 11.7%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유통비용절감액 추정치도 2012년 2919억원에서 4248억원으로 증가 하였다. 또한, 무·배추 등 5대 채소류의 전월대비 가격변동율도 19.0%(10~12년 평균)에서 12.9%로 감소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은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외부평가를 받아 점검 받고 있으며, 2014년 중에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5.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기주

###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동 센터를 농업관측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06년 12월 7일 동법 제5조 제3항에 농업관측사업의 지원근거가 규정되었다. (2007년 1월 3일 공포)

동 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측·분석하여,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영농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유통·가공업 종사자 및 소비자에게는 종합적인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산물 거래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9년 9개 품목으로 출발한 농업관측사업은 이후 지속적인 관측수요 증대에 따라 관측 대상품목이 확대되어 2014년 총 35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품목별로 채소 10개, 과일 6개, 과채 7개, 축산물 6개, 곡물 2개, 국제곡물 4개 품목이다.

생산·유통정보와 함께 소비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별로 연 4회 실시하던 소비자패널(1,000명) 조사를 2008년부터는 16회 실시하고, 패널수를 1,300명으로 확대하였다. 해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해외시장 환경 반영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칠레, 일본, 중국 총 4개국에 36명의 모니터 요원을 두고 주재국의 생산, 유통, 가격 정보 등을 수집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거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교역량이 급증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에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2005년 9월부터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중국농업부 정보센터와의 MOU를 갱신하여 곡물류 품목 추가 및 관련 중국통계 정보를 제공받았고, 3년마다 자동 갱신되도록 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관측센터는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가의 생산, 유통, 수출 동향뿐만 아니라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정책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관측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 관세청의 수출입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정보 관측기능을 강화하였다.

수집된 농업관측정보에 대한 가공·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7년부터 농축산물 정보가공시스템을 보강하고 있고, 2008년에는 주요 청과물의 계절별 생산·공급 모형을 보완해 왔으며, 미국 미주리대학 농업정책연구소(FAPRI)와 공동연구로 개별 품목의 품목별 수급모형(KREI-COMO)을 개발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제곡물 모형(World GEM LOCS)을 개발하여 곡물류, 유지류, 축산물 등 14개 품목에 대한 수급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

〈표 2-3-3〉 2013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구 분		발표시기		
채소 (10개)	엽근채소(5개)	배추·무·당근 ·양배추·감자	매월(1~2월 제외)	1일
	양념채소(4개)	건고추·마늘· 양파·대파	매월(1~2월 제외)	1일
	버섯(1개)		8, 12월	15일
과일 (6개)	사과·배·포도·감귤		매월(1~3월 제외)	7일
	복숭아		5, 7, 8, 9월	7일
	단 감		6, 9, 10, 12월	7일
과채 (7개)	오이·애호박·수박·토마토·꽃고추		매월(1~2월 제외)	7일
	참 외		3~9, 12월	7일
	딸 기		3~6, 9~12월	7일
축산 (6개)	한육우·젓소·산란계·오리		2, 5, 8, 11월	25일
	돼지·육계		매월(1월 제외)	25일
곡물 (2개)	쌀		3, 5, 9, 10, 11월	20일
	콩		3, 5, 9, 11월	20일
국제곡물 (4개)	밀·옥수수·대두·국제쌀		매월(1~2월 제외)	30일

한편, 농업관측의 고도화 및 정밀화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관측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sup>6)</sup>, 주산지 정보를 그래픽 위주의 지리정보와 연동하여 현행 텍스트 방식보다 쉽고 직관적인 형태로

6)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도매가격 및 산지가격 정보(2006), 수출입정보(2007), 저장정보(2008) 등을 연차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측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농업관측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측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작황예측 모형에 생물학적 요인을 반영하고, 축산 분기 모형을 월별 모형으로 개선하여 조기에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관측조사의 표본농가와 모니터링원을 확대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강화와 품목단체를 활용한 정보수집 등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중기선행관측을 통해 다음 작기의 생산량과 예측가격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수급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품목·모형 전문가를 추가 확충하여 모형의 정교화를 추진하였으며, 원예·축산의 생육(사육) 전문가를 확충하여 품목별 생산량 변화에 대한 예측 및 해석력을 높였다.

관측정보 제공면에서 기존 소극적인 배포방식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관측정보 서비스로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 'e-농업관측'을 작성하여 매월 6만 2천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측의 핵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월 14,400여명에게 농업관측알림(휴대폰 SMS)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1월부터는 관측센터 카카오토리를 개설하여 13,000여명의 회원에게 관측·품목·소비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연초(1월말)에는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관련단체, 학계, 관련 유통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농업관측센터가 주관 개최하는 농업전망대회는 한국농업부문 최대 행사로 명실상부한 위상이 정립되었다. 2013년 1월 16번째 대회는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등 2,800여명이 참석하였다. 농업전망대회에서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전망, 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 주요 정책이슈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품목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집중 토론회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2년도 농업관측사업에 대한 수요자 평가 조사결과, 농업관측정보 피제공자 이용률이 90.0%로 나타났다.(11년 : 85.5%)

2009년 시범으로 실시한 「소비관측」을 더욱 확대하여 2010년부터 소비관측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매월 소비의향지수, 분기별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결과 등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농업관측정보는 단기 시장유통물량 조절에 초점을 두어 생산단계 규모조절 기능이 미흡하였다. 기존 관측의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기작형의 생산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3~6개월 전에 미리 수급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중기선행관측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양파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0년 1월부터 양파, 배추, 무, 대파,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기선행관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마늘, 고추, 오이, 호박을 추가하여 10개 품목에 대해 중기선행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관측 대상품목은 2010년 31개에서 2012년에 국제곡물가격 상승 및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관측품목 4개(대두, 밀, 옥수수, 국제쌀)를 추가하여 총 35개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기후변화가 심한 6~9월에 고랭지 배추·무의 작황, 생산, 출하 동향을 선제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관측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던 관측 품목별 표본을 재배농가의 변화, 재배면적 및 작형 변화, 주산지 이동 등 모집단이 변화됨에 따라 2010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에 새롭게 관측 표본을 재설계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관측사업은 정확한 관측정보를 토대로 농산물 수급에 대한 상황분석·계획수립·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현장 분석과 관측조사·분석시스템 개선 등 농업관측 고도화 사업을 지속하여 더욱 정밀하고 유용한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1. 공공비축 제도 운영

▮ 식량정책과 사무관 김보람

#### ▼ 추진배경 및 개요

쌀이 부족한 '90년대까지는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의 육성, 생산기반 조성 등 증산위주의 쌀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중곡가제도인 추곡수매제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 보장(쌀의 고가 매입), 서민생활 안정(쌀의 저가 판매)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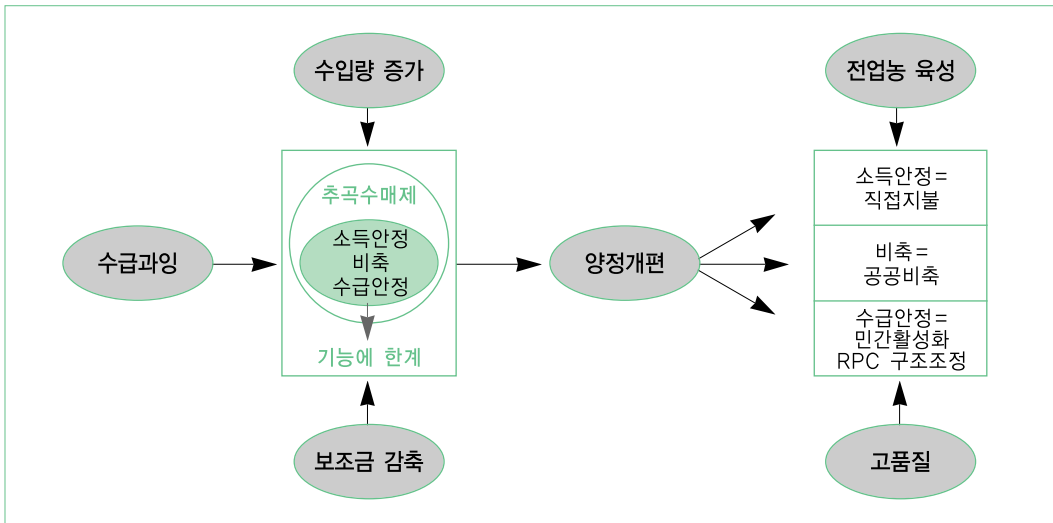
WTO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추곡수매제도는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인 보조금 감축으로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04년도에는 생산량의 15%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 기능과 물량흡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값은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그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문제는 재정지원(직불금)으로 보전한다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표 2-3-4〉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구 분	추곡수매제	공공비축제
매입 목적	①농가소득안정, ②쌀수급조절, ③안보용 비축	①안보용 비축
매입 물량	국회동의	국무회의 의결(3년 주기 결정)
매입 가격	행정가격(생산비 감안)	시장가격(통계청 조사가격)

〈그림 2-3-1〉 양곡관리 시스템



그에 따라, 현행 쌀 정책은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한 소득안정, 시가 매입·판매방식의 공공비축제 운영, 민간유통 기능 활성화와 쌀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품질 고급화·브랜드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 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되며 비축물량은 FAO 권고량(연간 소비량의 17%)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비축물량의 1/2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표 2-3-5〉 양곡년도말 공공비축미곡 재고량 목표 및 매입물량

● 1차('05~'07년) : 864천톤('05년 576천톤, '06년 504, '07년 432)
● 2차('08~'10년) : 720천톤('08년 400천톤, '09년 370, '10년 340)
● 3차('11~'13년) : 720천톤('11년 340천톤, '12년 370, '13년 370)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수확기 홍수출하물량 흡수를 위해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지 RPC를 중심으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욕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ASEAN+3 국가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국에서 비축해 둔 쌀을 재해가 발생한 나라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2011년 9월에는 제4차 협정문이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협정문이 최종 타결되어 제11차 AMAF+3 농림장관회의(2011.10.7, 인도네시아)에서 협정문이 승인되었고, '12.6.12 협정발효 요건이 성립되어 '12.7.12부터 발효되었다.

〈표 2-3-6〉 국가별 쌀 약정 현황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아 세 안	합 계
약정물량(천톤)	150	300	250	87	787
출연기금분담액(천불)	1,000	1,000	1,000	1,002	4,002
운영비용기부금(5년간)	75	75	75	74	299

공공비축제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적정 재고(약 72만톤)를 확보할 뿐 아니라, 쌀 이외 밀, 콩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을 시행하도록 법률(양곡관리법)을 개정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2013양곡년도 쌀 생산량이 4,006천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공공비축제를 포함한 쌀 수급정책을 통해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개발도상국의 식량 소비량 증가 추세에 따라 곡물의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공비축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식량 수급 여건 속에서 식량 무기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특히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DDA/WTO 등 양곡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비축제 도입은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쌀의 유통과 수급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가능케 하였다.

향후 공공비축제의 운영 내실화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축규모 및 정부양곡관리의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APTERR용 약정물량의 확보를 위해 약정물량의 일부를 별도 비축할 계획이며, 처음 매입하는 '14년산에 대해서는 3만톤을 매입한다.

## 2. 쌀 안정생산

| 식량산업과 서기관 김도범

### ▼ 추진배경 및 개요

2012년도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5천ha)와 백수 피해 등 기상재해 영향으로 10a당 수량이 '11년(496kg/10a)에 비해 5%수준 감소한 473kg으로 '11년에 비해 21만톤 줄어든 401천톤을 생산함에 따라 '14 양곡년도 수급에 필요한 '13년도 쌀 생산목표를 '12년보다 21만톤 많은 422만으로 설정하여 재배면적 836천ha 확보와 10a당 505kg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13년도 쌀 안정생산대책을 추진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13년 쌀 안정생산대책을 확정·시행(4.3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농지전용 억제, 우량농지 보전,

지자체별 목표면적 부여 등 재배면적 확보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기반 확충, 가공용벼 계약재배 등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 우량종자 공급(22.5천톤) 및 건전육묘 대책, 유기질비료 지원과 녹비작물 재배 확대 등 지력증진, 내재해성 품종 재배 확대와 숙기별 품종분산, 내병성 품종 재배 확대, 병해충 예찰 정보 제공 및 적기방제, 재해대비 노후된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지 규모화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지원을 통한 공동작업 활성화, 공동육묘, 직파재배 시범단지 조성 등 생산비 절감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농협,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실무자 워크숍 개최(6월) 등을 통해 쌀 안정생산대책을 유관기관간 역할분담하여 협업체계로 추진하였다.

2013년도 쌀 안정생산대책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은 833천ha로 목표 836천ha 대비 3천ha 줄었지만 10a당 수량이 508kg로 목표 505kg 대비 3kg가 증가하여 생산목표 422만톤보다 1만톤 많은 423만톤을 생산함으로써 '12년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13년도 풍년농사로 '14년 양곡년도 쌀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었으며, 쌀 안정생산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우수경영체에 대한 시상(12월)을 통해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내산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영농 규모화 촉진, 기계화, 생산비 절감, 자연재해 최소화 등 쌀 안정생산대책을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 3. 발식량작물 안정생산

| 식량정책과 사무관 김성

### ▼ 추진배경 및 개요

쌀을 제외한 발식량작물은 최근 웰빙·건강식품 선호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급률이 낮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외 잇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에너지작물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기상재해 등으로 국제곡물가격 및 생산금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불안 해소와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발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발식량작물 경영체 육성은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4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내용은 농가조직화를 통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에서 가공·처리·판매까지 일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체 육성, 내실 있는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포럼·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경영체육성 지원규모 : 1개소 × 1,000백만원(사업규모) × 30%(국고보조율) = 300백만원

건조·선별·저장 등 유통시설은 2009년부터 지원하여 2013년 현재 맥류건조저장시설 1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콩유통종합처리장은 2012년에 최초로 1개소를 지원하여 발식량작물의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 밀·보리 건조·저장시설(신설) : 1개소 × 900백만원(사업규모) × 30%(보조율) = 270백만원
- 밀·보리 건조·저장시설(증설) : 1개소 × 600백만원(사업규모) × 30%(보조율) = 180백만원
- 콩 유통처리시설 확충 : 1개소 × 2,500백만원 × 40%(보조율) = 1,000백만원

### ❖ 평가 및 향후 계획

발식량작물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자급률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련사업들은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나 대상도 타 지원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생산체계의 개편을 위해 경영체를 육성하여 조직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발작물 기계화를 통해 논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발식량작물에도 기계화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발식량작물의 품목별 연간 생산이 줄면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이 10~20%만 증가하여도 거래가격이 급락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한 체계가 영세성으로 인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세성 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 제1절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농식품 R&D혁신

#### 1.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

| 기후변화대응과 사무관 김승동

##### ▼ 추진배경 및 개요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가뭄, 폭염 등 기상재해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후협약 체결 및 글로벌 차원의 대응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다보스 포럼, APEC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지구 온난화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1911~2010년) 평균기온이 1.8℃ 상승하여 세계 평균 상승치(0.75℃)를 2배 이상 상회하고, 집중호우, 폭설 등 이상 기상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에 취약한 농업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 환경의 변화는 재배지의 변화, 기상재해 및 병충해 등의 증가에 따른 농업 생산량의 감소뿐 아니라 수급 불안정 및 식량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하락, 물가변동 확대, 식량안보 위협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



다임으로 제시하고,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전 부문에 걸쳐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09.2.16)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10.4.14 시행)하였다.

한편, 2013년 3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우리 부는 녹색성장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요인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0년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확정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 이용·관리,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등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및 50개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표 2-4-1〉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비 고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①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② 녹색기술·장비보급 확대, ③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24개 세부과제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 이용·관리	④ 농산어촌 활력 증진, ⑤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대, ⑥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16개 세부과제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⑦ 친환경 농산업 기반육성, ⑧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⑨ 녹색생활 실천 확산	10개 세부과제

또한 2011년 5월에는 농식품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중 최초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11~2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적응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산림, 식품·유통 등 6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에는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를 위해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분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2년차 추진하였다.

2013년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 감축활동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목표관리제 대상기업(25개사)의 감축목표치(40천tCO<sub>2</sub>) 대비 10천tCO<sub>2</sub>를 초과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고, 기업별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및 에너지 절감형 공정개선 등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성과를 냈다.

더불어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역량 향상을 위해 농업 탄소상쇄 방법론을 6건 추가 개발(누적 12건)하였고,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5건의 시범사업(가축분뇨 2건, 목재펠릿, 논물관리 등 묶음형, 수막재배)을 등록하였다. 특히 2012년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검·인증하여, 2013년 농업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 4,859tCO<sub>2</sub>에 대해 인센티브(1만원/tCO<sub>2</sub>)를 지급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가의 추가적 소득을 창출하였다.

이와 함께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제품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인 "작성지침"을 추가 개발(33개 품목, 누계 41개 품목)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을 통해 제도 참여 농가가 확대(12년 : 60 → '13년 433농가)되었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운영규정(고시)'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그 밖에도 2012년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제정·시행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1회 전국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도 제고 및 도시농업 기술·정보 교류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도시텃밭 참여자가 2011년 373천명에서 2013년 885천명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체험 중심의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단체·학교·민간 교육기관·지자체 등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전략적인 녹색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 협력을 강화하였다. 2012년 6월에는 지속적인 식량생산과 농업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제 연구 협력체인 '농업 온실가스 국제연구 연맹(GRA)' 제2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공동 연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5년차인 2012년에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등 녹색농업 기반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제1차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2013년) 추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차 계획 수립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되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4.5월)와 국무회의 심의(14.6월)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중앙추진계획을 9월초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온난화 대응품종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분야 과제도 대폭 발굴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취약 계층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 2.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 원예경영과 사무관 방문진

### ❖ 추진배경 및 개요

2008년도 이후 세계경기 회복 기대감, 중동지역 정정불안, 부존자원의 한계 인식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 국가별로 무한 에너지 확보 경쟁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10% 수준이며,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이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고유가·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원에 분야의 유류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 난방 비중이 비교적 높은 시설원예산업에 대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표 2-4-2〉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단위 : 천TOE)

구 분	1990	2000	2005	2009	2010	2012
총에너지소비량	75,107	149,852	170,854	182,066	183,912	208,120
농 립 어 업	1,813(2.4%)	4,069(2.7)	3,385(2.0)	3,035(1.7)	2,409(1.3)	3,172(1.5)
- 석유제품	1,687(3.7%)	3,600(3.9)	2,755(2.9)	2,244(2.3)	1,377(1.7)	2,128(2.1)
- 전 력	125(1.5%)	456(2.2)	603(2.1)	786(2.3)	769(2.3)	1,038(2.6)

\* ( )안은 국가총소비량 대비 비중, 2013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10년도부터는 어업제외  
 \* TOE :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물리적 단위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목재펠릿난방기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보급·지원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을 통해 유류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감 장비지원은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배기열회수장치 등의 시설장비를 시설원예농가에 보급·지원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펠릿난방기, 지열냉난방시설 등의 설비를, 2012년에는 공기열냉난방시설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절감자재·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농업용 화석에너지(특히 면세유) 사용 절감과 시설원예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배기열회수장치, 고효율난방기,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등 난방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급했다. 2012년에는 1,008ha, 2013년에는 765ha에 에너지 절감시설·장비를 지원하였다.

#### ▼▼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

농업 분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원예산업의 유류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률이 78%에 달하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면적을 2020년까지 가온면적의 30% 수준인 4,453ha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열사업은 2012년에 84ha, 2013년에는 62ha를, 목재펠릿난방기는 2012년에 129ha, 2013년에 128ha에 대하여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 ▼ 시설원예에너지 다변화 추진

2010년에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에너지 절감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동 사업의 시설현대화 분야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면세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계측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설원예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대상을 축산 분야까지 확대한 바 있고, 지원세부사업도 2012년에 공기열난방시설을 추가하는 등 에너지 절감시설·자재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국제유가는 다소 안정돼 있는 상황이나 화석에너지의 유한성과 심화되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 농가의 냉난방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농업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지중저수열과 폐열 재활용시설 등의 다양한 냉난방설비 도입 등 다양한 에너지시설·기자재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

| 방역관리과 사무관 김정주

#### ▼ 추진배경 및 개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토양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가축분뇨를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 등에 필요한 처리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 ▼▼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수립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13.4월)」을 수립하였다.

대책은 4개 대과제 및 16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 화시설 확충을 통해 '17년까지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달성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민간전문관리 설립 등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확대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품질 퇴·액비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환경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창조산업으로 육성하여 화학비료 및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스 또는 전기)를 생산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2012년 693억원에서 2013년 853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 사업비 : (08) 664 → (09) 754 → (10) 791 → (11) 801 → (12) 693 → (13) 853

또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여 농경지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12년 88.7%에서 '13년 89.2%로 끌어 올렸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가 더 이상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하여 5억원 이내에서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 조직체에 대하여

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1991년부터 2012년까지 15,615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액비저장조 700기를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액비유통센터 (15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가축밀집 사육지역, 중규모(1~3천두) 농가가 많은 지역, 도시화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이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조직체에 대하여 1일 100톤 처리 기준으로 30/4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50개소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07)5개소 → (08)19 → (09)39 → (10)56 → (11)68 → (12)88

### ▼▼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및 기술상의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악취제어·관리기술,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작물별·절별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IT를 이용한 개별농가 및 국가단위 가축분뇨 통합관리기술 개발 등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 처리를 통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축사업 육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비료성분, 부숙도 및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실태 등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특히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평가결과 3년 연속 “하” 등급을 받는 경우



모든 정책지원을 제외하고, 불량 액비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액비저장조의 이용을 제고를 위해 슬러지 제거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신규 저장조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아울러,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농림축산식품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정재환

##### ▼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농업은 FTA 확대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농식품 분야의 최근 환경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농림축산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화 및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급속한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2009년에는 농림수산물 R&D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제1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 계획(2010~2014)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 종합계획에 따른 2013년 시행계획은 농림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자, FTA대응, 식품, 융복합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3,974억원을 투자하고, 미래대비를 위해 식량안보, 기후변화, 가축질병 등의 분야에 3,387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09~13) 농림식품 전체예산(농진청·산림청 포함)은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R&D 예산은 연평균 8.0%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개편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을 마련하고, 기존 산업 육성 중심의 R&D투자 체계에서 정부 주요 정책과 R&D목표가 연계된 ‘4대 중점분야(글로벌 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와 ‘50대 핵심기술’을 설정하였다.

2014년부터는 50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농림식품 R&D가 농림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연 3%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표 2-4-3〉 농림식품 R&D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증가율
농식품부·양청 R&D예산(A)	6,257	6,699	7,463	7,983	8,439	8.0
국가연구개발비(B)	123,437	137,014	148,902	160,244	168,777	7.2
농식품부·양청 총지출(C)	151,434	155,040	159,584	163,454	167,256	2.6
A/B(%)	5.1	4.9	5.0	5.0	5.0	-
A/C(%)	4.1	4.3	4.7	4.9	5.0	-

### ❖ 추진내용 및 성과

#### ▼ 제1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3년 시행계획 수립

농림식품 R&D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제1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0~2014)의 201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기초하되, 골든시드프로젝트(GSP)본격추진, 식품 및 융복합 기술개발의 중요성 증대 등 농림식품 R&D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한 R&D 투자 전략과 R&D 우선 지원분야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2012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결과 2010~2012년도 투자된 7대 산업별 투자총액(1조 6,886억원)은 종합계획 수립 당시 목표한 전체 투자계획 금액(2010~2014년, 3조 8,804억원)의 43.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향후 점진적인 투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 수립

농림식품 R&D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비전 및 목표 제시와 체계적인 실행을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을 수립하였다. 육성 중장기 계획은 농림축산식품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대비를 위한 전략적 R&D 투자 배분체계 구축을 목표로, 그간의 산업 육성 중심의 R&D투자체계에서 벗어나 정부 주요 정책과 R&D목표가 연계된 '4대 중점분야'(글로벌 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를 설정하고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핵심현안 해결과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5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역할 확대

농림식품 분야 R&D의 효율적인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2009년에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설치하였고, 2013년에는 제4기 위원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제5기(2013.08.19~ 2015.08.18) 농과위 위원을 구성하였다. 제5기 농과위에서는 농과위 안전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여 주요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안전 발굴 기능 강화하였으며, 제출 안전 심의 중심의 수동적 기능에서 안전 직접 발굴 등 능동적 농과위로 전환을 추구하였다. 또한 농과위의 심의기능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개정(13.12.13.)을 추진하였으며,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구 Green & Life Technology)’을 통해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농과위 위원과 정책 수요자, 타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교류 및 수렴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획조정전문위원회, 생산기반전문위원회, 종자·생명전문위원회, 안전·유통전문위원회, 자원환경전문위원회 등 5개 농과위 전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소관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R&D 기획에 참여 가능한 유능하고 적극적인 전문가를 발굴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통해 타 분야와 융합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기획, 농림식품 R&D 연구방향 설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다양한 포럼 및 소위원회 활동 지원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농식품 이슈발굴 및 구제역·AI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정확한 과학적 논거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네트워크 확산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 미래유망 신규 사업 발굴·기획

농림축산식품산업을 미래 新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기술수요·정책수요 및 산업동향을 반영한 신규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극복기술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응하였으며, ‘Golden Product Project(농생명소재기술 개발사업)’, ‘신자산어보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술성평가를 추진했다.

또한 다부처 공동기획을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투자계획에 따라 '14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현장수요접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산업의 실용적인 적용이 가능한 R&D 기획을 위해서는 농산업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농식품 R&D 사업 및 과제기획에서 현장수요조사는 기획의 타당성, 산업화 및 실용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기술수요조사 온라인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적인

현장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자 중심에서 농업인 등 일반인도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어조사를 신설하고, 별도로 기업체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수요조사의 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상시 의견수렴의 체계를 확립, 현장수요조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요조사를 접수하였다. 2014년에는 농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농식품 R&D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수요조사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 녹색인증제도 시행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의 통합고시를 마련하여 녹색인증제를 시행(2010년 4월)하고 있다.

또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표(2010년 8월)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녹색인증 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평가기관)을 통한 '13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 녹색인증·확인 건수는 총 58건으로 녹색기술 37건, 녹색기술제품 9건, 녹색사업 1건, 녹색전문기업 11건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녹색인증제 시행 이후 인증수요 부족 등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이 발생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녹색인증제 홍보, 현장교육,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인증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및 성과조사체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인증제로 한 번 더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의 2014년도 녹색인증·확인 목표는 최근 3년 평균 녹색인증건수의 15% 이상(최소 51건)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및 각종 홍보를 강화하여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녹색인증기술 활용의 확대를 위해 전문기업확인 유도를 통한 기술의 부가가치창출을 제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타 부처와 차별화된 서비스(농업융합자금융자사업, 체계화된 홍보시스템 등)를 제공할 계획이다.

###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 DB 운영·관리의 효율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던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2010년 기존 NTIS 표준관리항목에 농림수산식품 분야만의 특화정보를 포함하는 농림수산식품 R&D 통합 DB를 구축하였다.

통합 DB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관의 연계서버로부터 구축된 통합 DB로 R&D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으며, 한국식품연구원, 농어촌연구원 등의 R&D 정보도 별도 수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운영관리 효율성과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담당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 DB 운영관리 범위 명확화, 관계기관의 의무사항 추가 등을 반영한 통합 DB 운영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확정정보에 기반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R&D 정보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과제·성과 통합검색기능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스템 활용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R&D 동향정보 원스톱 서비스, 찾아가는 이메일 서비스 등과 같은 정부 3.0 기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의 수립을 시작으로 R&D투자 재원 배분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부처간 융합형 거버넌스 구축, 지역 R&D 활성화, 경쟁 개방형 시스템 강화, 민간 R&D 투자 활성화 등을 목표로 R&D 추진 시스템을 개편하여 농림식품 R&D가 농림식품산업 부가가치를 연 3%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수립예정인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을 통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에서 제시한 장기(10년) 비전을 5개년 단위의 R&D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로 구체화 할 계획이며, 사장이 우려되는 우수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사업', '기술금융제도 활성화' 등 R&D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농업 촉진전략을 마련중에 있으며, 정책-현장-R&D를 연계한 농정현안 해결형 R&D 모델 도입을 통해 고질적인 농정현안을 해결하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5. 종자산업의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이상준

###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여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육종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 우수종자 생산 유통, 민간역량강화·사업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의 종자업체가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육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확대(10ha, 270억원 → 54ha, 656억원)를 위하여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첨단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2년 3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내에 “GSP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 상세기획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현황조사·분석 및 품목별 세부 연구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해 2월에 5개 분야 사업단장을 선정하였으며, 7월에는 사업단 품목별 프로젝트 연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를 개시하였다.

또한 기존 종자산업법에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종자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 과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고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으로 분리하여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 종자업 등록 업체 수는 2013년 12월 말 기준 1,368개이다.

〈표 2-4-4〉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2013. 12. 31.현재)

연도	계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뽕	기타
2006	736	18	163	235	110	115	26	69
2007	813	25	182	249	126	123	26	82
2008	871	33	189	257	139	126	28	99
2009	819	37	173	250	121	110	30	98
2010	966	35	197	283	152	130	30	139
2011	932	39	185	300	139	112	30	127
2012	1,073	39	202	328	160	118	33	193
2013	1,368	60	227	411	213	132	48	277

한편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신품종 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 유전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생명자원통합 DB를 2014년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종자수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2009년 22백만 달러에서 2012년 45백만 달러로 꾸준한 증가추세였으나, 2013년 기상악화, 병충해 발생 등으로 종자기업의 해외채종 생산량에 차질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한 41백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수출종자 품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채소작물 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된 품종보호 제도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출원 건수가 세계 8위 수준일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말 현재 품종보호등록은 4,736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5〉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2013. 12. 31. 현재)

구분 작물	국 내						외 국				총 계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화 웨 류	1,532	317	128	534	532	21	1,147	33	1,114	0	2,679	350	1,242	534	532	21
식량작물	762	22	27	62	592	59	3	1	2	0	765	23	29	62	592	59
채 소 류	756	24	565	48	94	25	7	0	7	0	763	24	572	48	94	25
과 수 류	239	89	22	34	90	4	4	1	3	0	243	90	25	34	90	4
특용작물	171	4	21	19	122	5	1	0	1	0	172	4	22	19	122	5
버 섯 류	85	19	11	33	19	3	3	2	1	0	88	21	12	33	19	3
사료작물	25	3	0	0	22	0	1	0	1	0	26	3	1	0	22	0
계	3,570	478	774	730	1,471	117	1,166	37	1,129	0	4,736	515	1,903	730	1,471	11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유 중인 농업식물자원은 219천점(14년 현재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식량자원에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 수출전용 품종개발, 육종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수산생명자원 통합 DB’ 구축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 이후에는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재래종 유전자원 주권 강화를 위해 신규 수집자원에 대한 DB구축을 지속하여 농생명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검색부터 분양까지 One-stop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6. 곤충산업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정재원

### ▼ 추진배경 및 개요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의 70% 이상(약 130만종)을 차지하는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평가 되면서,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곤충이 친환경 농업 및 시설원예의 확산으로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과 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충, 그리고 학습·애완·관광상품용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의 곤충산업화가 확산되는 추세로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표 2-4-6〉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억 원)

활용분야	대상 곤충 종류	시장 규모(추정)	
		2009	2015
학습·애완곤충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등 50여종	400	540
화분매개 곤충	뒤영벌, 가위벌, 꿀벌	540	880
천 적 곤 충	무당벌레,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등 34종	230	300
지역행사곤충	나비류, 반딧불이	400	560
사료용, 의약용	동애등애, 풍뎅이유충, 거미 등	-	700
합 계		1,570	2,98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2010년.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3년도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12월에 “2009년 1,570억 원의 곤충산업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1~2015)』에 대한 「201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곤충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총 3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천적, 경북은 화분매개, 경남은 식·약·사료용 소재를 특화할 계획이다. 각 센터에서는 특화분야 연구 및 상품화, 농가지원을 총괄할 예정이다.

### ▼▼ 곤충자원의 R&D 강화

“곤충의 식약용 원료 사용을 위한 약리성 및 안전성 연구개발”, “곤충유래 고기능성 항생펩타이드를 이용한 천연항생제 개발”, “곤충자원을 이용한 가축 사료화 이용시설 및 제품개발” 등과 같이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 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다양한 곤충자원의 확보와 유전적 특성평가를 통해 곤충산업 소재로 제공할 계획으로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조사·수집·보존 및 표본자료 DB구축, 곤충의 가치평가 및 유용곤충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강화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곤충관련 대학·연구기관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곤충산업육성 교육과정을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농촌진흥청의 교육기관에 개설하였다.



▼▼ **곤충가치 및 산업정책 홍보사업**

'13.9.10~10.20일간 경남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곤충산업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곤충산업 라디오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생명산업대전” 행사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활용한 고부가 생명산업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장 마련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였다.

▼▼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복구비 산정 단가’(고시)에 곤충(천적, 환경사료용, 학습용)신규 반영하여 사육농가에 대한 피해 보전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동애등을 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개발됨에 따라 등에분변토 생산시설을 폐기물재활용 시설에 추가하여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1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무궁무진한 미개발 유용 곤충자원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정책인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기존 시장이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위주로 편중되어 공급이 과잉되는 등 곤충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확대가 필요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안전한 단백질공급원으로서 사료곤충의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곤충사료화에 대한 기획 연구를 실시하고 곤충자원을 이용한 사료소재로서 산업화의 길을 개척하여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 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향후 곤충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곤충산업화의 다양성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제2절 농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정미영

#### ▼ 추진배경 및 개요

19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이 마련(20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농협중앙회의 신용 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 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농협 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중앙회, 농업경제지주, 농업금융지주)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이 2011년 3월에 공포되었다.

정부는 실질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 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 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그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공포(2009.6.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 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20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20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2009.12)하여, 국회에 제출(2009.12.16)하였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상정(2010.2)을 거쳐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국회 공청회(2.11) 및 법안상정 대체 토론(2.22)을 개최하고,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총 6차례의 심사소위(10.2.24, 4.14, 4.19, 4.22, 12.6, '11.3.3)와 2차례의 농식품위 전체회의(4.16, 6.21)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드디어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농협중앙회, 금융위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 홍보(OBS, 한국경제, KTV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 국회의원 개별 방문 설명(이낙연 위원장 외 다수 실시), 조합장·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병행하던 농협중앙회를 지도 및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 금융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였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과 별도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분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토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현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2011.3.31)하여 농업협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농협 사업구조 개편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서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 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에 일부 위탁하였다. 동 농협법시행령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6일 공포되었다.

개정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공포) 부칙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에 따라 정부는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여 2011년 9월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요청한 6조원 중 4조원을 반영하였고, 지원형식은 3조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1조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2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이차보전 4조원과 현물출자 1조원 지원방안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국회에도 보고되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근본 취지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 분야 7개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 8월까지 추진하였다. 동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중앙회는 2012년 9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2~2020년까지 4.96조원의 경제사업 신규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 농협법에 따라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농협 중앙회 신용사업은 동일자로 지주회사에 완전 이관되었고, 경제사업은 농협법(부칙 제6조)에 따라 2017년까지 경제지주로 순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 개편 이행 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업구조 개편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은 1단계 농협법 개정에서 이어 즉시 2단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협개혁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은 농업계의 숙원사항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루어 졌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 농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협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사업구조 개편 관련 홍보 계획을 수립, 언론 기고, 방송 인터뷰 및 기자단 설명회 등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자본금·조세 등의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은 판매농협 실현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출발점에 불과하다. 향후 농협의 경제사업을 차질없이 경제지주 및 자회사로 이관하여 농협의 판매·유통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법령개정 등 점차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협이 당초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과정을 점검·평가해 나갈 것이며, 효율적인 사업이관과 사업이관 후 중앙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협으로 거듭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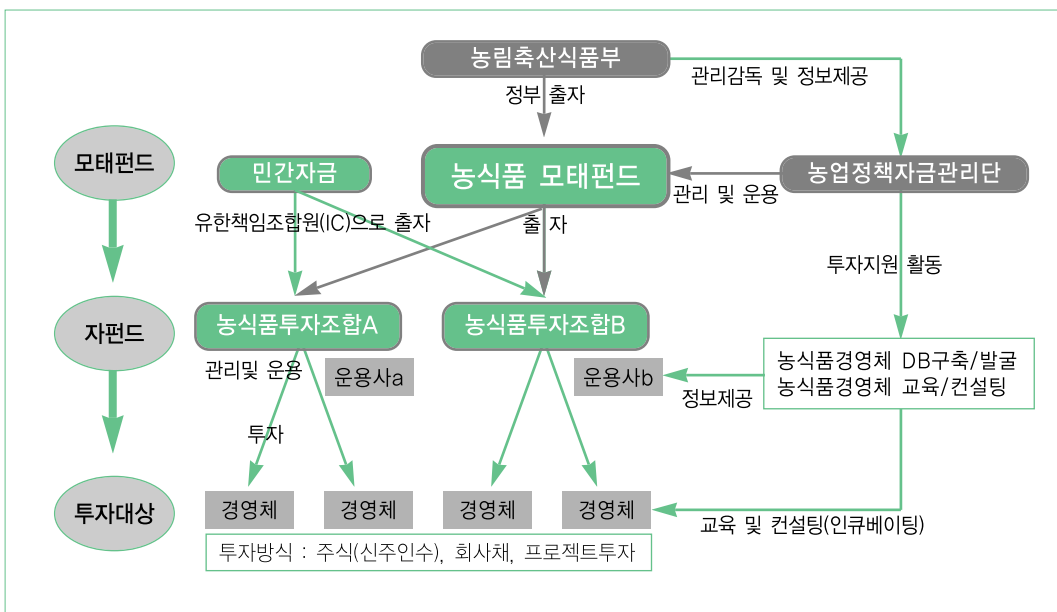
##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내실화

| 농협경제지원팀 서기관 김영만

### ❖ 추진배경 및 개요

전통적 농업 금융인 투융자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제3섹터형 정책금융으로 도입된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에 펀드 결성·운용의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개시하여 펀드운용을 본격화하였다. 그동안 농식품 분야의 투자는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자본에 의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민관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정부 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는 민간과의 매칭펀딩으로 결성된 농식품투자펀드(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함으로써 투융자 등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 농식품 분야에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시장개방,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과 열악한 농식품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일반 펀드와는 차별화된 운용전략이 필요하여 투자관리 외에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교육·지도 및 경영컨설팅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 그림 2-4-1 〉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 9월, 597.3억원으로 농식품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이 결성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에서 각 500억원씩을 추가 출자하여 누적규모 2,097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였다. 또한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802억원을 출자하여 총 21개(일반펀드 14, 특수목적펀드 7)의 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을 결성하였다.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출자를 받은 자조합의 총 결성규모는 3,530억원으로 이 중 1,728억원을 민간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 등에 대한 투자는 연차별 의무투자비율(1년 20%, 2년 40%, 3년 60%, 4년 80%)에 따라 이루어지며 2013년 말 기준 1,199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편 농식품모태펀드의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근거법률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농식품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세제 관련법상의 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으로 우수 투자사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 및 지역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농업인 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투자처 발굴 및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투자지원 활동을 강화하였다.



〈 표 2-4-7〉 농식품투자조합 결성('10~'13) 현황

(단위: 억 원)

사업연도	펀드형태	투자분야	운영사	정부 출자비율	결성금액			결성월
					정부	민간	계	
2010년 (4개)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일반	그린부산창업투자	45%	90	110	200	'11.3
		농림축산업	아주IB투자	50%	100	100	200	'11.3
		식품산업	미시간벤처캐피탈	40%	100	150	250	'11.3
	사모투자전문회사	프로젝트사업	현대증권/동양(공동)	50%	157	163	320	'11.3
2011년 (5개)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축산업 (2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50%	100	100	200	'11.6
			아시아인베스트	50%	100	100	200	'11.7
		식품산업 (2개)	나우아이비캐피탈	40%	80	120	200	'11.7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50%	80	90	170	'11.11
		프로젝트사업	미래에셋벤처투자	50%	100	100	200	'11.7
2012년 (6개)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축산업 (2개)	에이케이지인베스트	50%	80	80	160	'12.12
			미래에셋벤처투자	50%	80	80	160	'12.9
		식품산업 (2개)	나우아이비캐피탈	50%	80	80	160	'12.7
			산은캐피탈	50%	80	80	160	'12.7
		소규모경영체 (2개)	유큐아이파트너스	70%	70	30	100	'12.7
			이앤인베스트먼트	70%	70	30	100	'12.7
2013년 (6개)	농식품 투자조합	농림축산업 (3개)	메가농식품투자조합 1호	50%	75	75	150	'13.9
			동양 농식품2호투자펀드	50%	75	75	150	'13.9
			세종농식품바이오 투자조합1호	50%	75	75	150	'13.10
		소규모경영체 (2개)	솔리더스-고창농식품 프로젝트투자조합	70%	70	30	100	'13.7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 투자조합2호	70%	70	30	100	'13.7
		6차산업	엘앤에스농식품6차 산업화투자조합	70%	70	30	100	'13.12
		총 계('13년말)					1,802	1,728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4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농식품모태펀드에 6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8개의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 결성할 계획(일반펀드 4, 특수목적펀드 4)이며, 2014년 말까지 농식품모태펀드는 자조합 총 결성액 기준 4,660억원(정부 2,472, 민간 2,188)의 29개 펀드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펀드운영이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할 경우 정책혜택이 대규모 경영체 등 일부 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영체에 펀드 결성액의 전액을 투자하는 소형프로젝트 펀드, 6차산업에 전액 투자하는 6차산업 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201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R&D, 사업준비 단계에 있는 농식품경영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특수목적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결성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1년차(20%) 투자의무비율을 신설하였고, 조기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및 벌칙조항을 수립하여 투자의무비율 조기달성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다른 산업에 비하여 열악한 농식품 분야 투자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 심사역을 대상으로 농식품경영체 특성, 심사방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체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 경영진단, 투자연계 등을 포함하는 농식품경영체 인큐베이팅사업(12년, 10개 경영체) 및 15회의 투자로드쇼(투자설명회)를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수의 농식품투자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결성된 조합의 농식품경영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와 투자유치 경영체 간의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2014년도에는 기존 피투자농식품경영체의 가치증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식품모태펀드가 단순히 민간 분야의 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의 선진투자 및 경영기법 및 책임경영 등의 노하우를 농어업에 접목하여 농식품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 투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서영주, 황진원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 분야의 낮은 수익률 등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정책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정책금융은 농업 분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지원됨에 따라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로 농협 등을 통해 지원하여 오던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중은행에서도 농업 분야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 ▼ 정책자금 지원현황 및 취급 금융기관 확대

농식품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리스크 부담이 커 민간자본의 진입이 어려워 대부분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 지출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97년 농업종합자금 등을 이차보전(금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금리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으로 확대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2013년말 기준,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23.9조원(재정용자 10.8조원, 이차보전 13.1조원) 수준으로 전년(23.7조원) 대비 8.4%증가하였다. 이차보전액의 경우 2,139억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은 44.5%로 전년(2,410억원, 65.1%) 대비 지원실적이 다소 저조하였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는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기준금리 차(△0.85%p)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농가 등에 지원되는 대출규모는 6조 512억으로 전년(5조 5,987억원) 8.1%증가하였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루트를 다양화하여 농업금융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축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자금의 취급을 일반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축발기금의 모든 용자사업과 농특자금으로 지원되는 용자사업 중 농기계구입자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을, 2008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과 농기계사후관리자금 및 신규후계농 및 창업농·후계농추가지원 자금을, 2010년에는 농촌주택정비사업, 재해복구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등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4-8〉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13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농 협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시중은행
정부자금	농특회계	12,656	9,897	2,759	-	-	-
	에특회계	153	153	-	-	-	-
	재특회계	5,680	5,680	-	-	-	-
	소 계(a)	18,489	15,730	2,759	-	-	-
	농안기금	30,721	22,507	-	8,214	-	-
	농지기금	38,815	3	-	-	38,812	-
	축발기금	13,647	11,978	-	-	-	1,669
	FTA기금	6,473	4,539	-	3	1,931	-
	소 계(b)	89,656	39,027	-	8,217	40,743	1,669
	계(A=a+b)	108,145	54,757	2,759	8,217	40,743	1,669
차관자금(B)		24	24	-	-	-	-
민간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111,612	107,988	2,651	-	-	973
	부채대책	19,763	19,473	290	-	-	-
	계(C)	131,375	127,461	2,941	-	-	973
합 계(A+B+C)		239,544	182,242	5,700	8,217	40,743	2,642

자료 : 농협 대출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산림조합 대출 : 산림조합중앙회, 농안기금 중 유통공사 대출액 : 유통정책과(유통공사 수정), 농지기금 : 농지과(농어촌공사 수정), 축발기금 중 시중은행 대출액 : 축산정책과, FTA 기금 중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대출액 : 농업정책과, 이차보전 시중은행 대출액 : 농업금융정책과

### ▼▼ 정책자금 관리체계 확립

2004년 5월에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하여 농특회계 용자금의 관리 및 상시 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2005년 4월에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2008년 1월에는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 자금을 관리토록 함과 아울러 6월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2010년 6월부터는 모태펀드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2012년 국정감사시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3년부터 농안기금·축발기금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사후관리를 위탁하여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원활한 경영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13년말 현재 약 100조원(누계)에 달하는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증대 및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주로 생산자(농가) 지원에 치중함으로써,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및 창조 농업 지원에 한계가 있고 2008년 이후 기금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적극적인 기금운용 및 출연기관 부담경감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금융위·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2014년 1월 16일 “창조 농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창업지원 및 기술·투자 우대를 통해 창조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법인 및 가공·유통분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농신보 운영 개선을 통해 기금 적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이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총 보증 증가(5.8조원) 중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증가(3.9조원) 비중이 6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보증의 경우 2013년 0.9조원(비중 : 10%)에서 2018년 5.1조원(비중 : 33.5%)으로, 가공업자 보증의 경우 2013년 0.4조원(비중 : 4%)에서 2018년 2.3조원(비중 : 15.1%)으로, 신규우대 보증의 경우 2013년 0.0조원(비중 : 0%)에서 2018년 0.9조원(비중 : 6.0%)으로 확대될 것이다. 보증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 건전성(18년 운용배수 추정 : 7.2배)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수준으로 확보가 예상된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도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책자금 취급을 시중은행에 개방하였음에도 기준금리의 차이, 회계검사 의무화, 대손보전 제외 등으로 인해 취급 확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농축산경영자금은 영농규모에 상응한 적정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경영비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후 지원하고, 규모가 큰 농가는 농업종합자금에서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소요 경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를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정책자금(용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검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4. 농지제도 개선

| 농지와 사무관 문지인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농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적으로 농업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요건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 허용,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 농지잠식 방지를 위한 가축·곤충 관리시설 및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의 면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농지제도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방안’ 및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 ▼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요건의 완화(농지법 시행령)

유휴농지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리경작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농지의 처분 의무를 통지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누구나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라 귀농·귀촌인 등도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어 유휴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시설 확대(농지법 시행령)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이는 최근 심화된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

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1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등의 조정(농지법 시행령)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을 100퍼센트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비율을 일부 축소하였다.

### ▼▼ 부속시설의 면적제한 규정을 추가(농지법 시행규칙)

방만한 부속시설 확대로 인한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시설 중 사육하는 가축·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그 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 부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농막·간이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 역시 각각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저장 용량 200톤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유희농지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요건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시설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등의 조정, 부속시설의 면적제한 규정 추가에 따른 농지제도 개선은 변화된 농업여건과 관련하여 유희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인·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도운영 현황을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제5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 1. WTO/DDA 협상 대응

| 농업통상과 사무관 유정연

#### ▼ 추진배경 및 개요

WTO는 UR 협상결과에 따라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WTO는 출범 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지속적 개혁 및 자유화를 위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을 출범시켰다. 동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하도록 일정을 정하였다.

동 시한 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2003년 3월 내지 5월 말로 예정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y) 합의에 실패하는 등 중간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에 관한 공동제안서가 제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무역원활화 등 일부 이슈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이후 DDA 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2004년 들어 협상진전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세부원칙의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고, 마침내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2004년 말로 예정되었던 협상 시한을 연기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에는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세부원칙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각료회의 직전까지 핵심쟁점들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으나, 각료회의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데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각료선언문에 따라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고 2006년 7월말까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향후 협상일정을 정하였으며, 그간 EU와 미국, 수출국들 간에 입장대립이 극심했던 수출보조 철폐 시한을 정하였다.

2006년에 들어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주요국 및 주요 그룹 간 입장차가 매우 커서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지 못하였다. 이후 2006년 7월에 개최된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DDA 협상의 교착상황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였으나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DDA 협상의 일시중단을 선언하고 협상재개 시까지 각국이 입장을 재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그룹별로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미 사무총장은 2006년 11월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를 통해 DDA 협상 전반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이는 본격적 협상의 재개라기보다 주요국간 탐색 및 주요 그룹 내의 기술적 협의의 성격이 강하였다.

2007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는 주요국 각료들이 DDA 협상의 본격적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는 DDA 세부원칙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었고, 농업분야에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2007년 7월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동 세부원칙 초안이 협상진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논의는 동 초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7월 이후 하반기 DDA 협상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그룹 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 협상(약 30여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2월에 팔코너 의장이 세부원칙 수정안을 배포하였고, 5월에 2차, 7월에 3차 수정안이 배포되어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수준 등에 대해 집중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차 수정안이 배포된 7월에는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세부원칙이 타결될 전망도 보였으나 일부 잔여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 대립으로 결국 세부원칙 타결에 실패하였다. 팔코너 의장은 7월 각료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12월에 4차 수정안을 배포하고 비공식 각료회의를 추진하였으나,



미국 등 주요국들이 국내 일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8년도 DDA 협상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접근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은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였으며, 4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DDA 협상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월 초 인도에서 개최된 비공식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주요국들이 하반기 DDA 협상 진행과 2010년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에 합의하였고,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통상장관들이 2010년 초 협상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이를 차기 정상회의에서 검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협상이 활기를 띠어 농업협상그룹 의장 주제로 이행계획서 작성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민감품목, TRQ 신설, 관세상환, 관세단순화, SSM(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 등에 대해 각국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2010년 12월에서 2011년 4월까지 실무급 및 고위급 회의를 통해 잔여쟁점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2011년 4월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세부원칙 수정안 회람 대신 농업의장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다.

2011년 12월에 개최된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의 지속, DDA 협상의 교착,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 등 대내외적 도전 속에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도하 각료선언 47항의 조기수확, 복수국간 합의 방식 등 새로운 접근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기수확의 포함될 의제로는 최빈개도국(LDC) 이슈, 무역원활화, 비관세장벽 등이 거론되었으며, 최근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DDA 협상을 포기하지 말고 합의 가능한 분야를 우선 진전시키는 등 새로운 진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3년 1월에 다보스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의 신뢰회복을 위해 12월 개최되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일부라도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말하자면 기존의 일괄타결방식을 포기하고 패키지 형식의 부분타결을 이룩하자는 기존의 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진전의 의지를 다진 셈이다. 여기에 9월 선임 WTO 사무총장으로 브라질 통상외교관 출신의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가 취임함에 따라 DDA협상은 급진전을 겪게 되었다.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각료회의에서는 TRQ관리, 개도국 공공비축 관련 평화조항, 수출경쟁, 허용보조 중 일반서비스 확대, 면화 등 5개 농업분야 이슈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발리패키지). 이들 5개 분야는 회원국들의 이해가 크지 않거나 당장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로서 회원국들의 합의를 얻어내는 데 비교적 수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TRQ관리에 대한 합의는 TRQ 정보 공표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 시 TRQ 관리방식을 변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TRQ 관리방식 변경 의무가 면제되나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에서 3년연속 미소진 메카니즘 및 개도국 의무 면제에 대한 수정·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과 관련된 평화조항에 따르면 개도국이 비축 곡물의 수매·방출로 인해 보조한도를 초과할 경우 개도국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분쟁 제기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조치는 잠정조치로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에 영구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계속 적용된다. 한편, 동 조항을 원용하기 위해서 개도국은 WTO 통보 및 투명성 강화, 무역왜곡 금지 등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경쟁과 관련한 합의에서는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등의 무역왜곡을 인정하고 균형적 감축의 필요성 및 홍콩각료선언의 이행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수출보조 등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활용자제를 촉구하였다. 다만 동 합의는 수출보조 정책이 가장 왜곡이 큰 보조금임을 확인하고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그룹(G33)과 수입국 그룹(G10)의 핵심국으로 참여하면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들과 공조하여 우리의 이해가 큰 TRQ 관리 제안의 개도국 의무 면제 변경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으며, G33 식량안보 제안에 대해서도 G33 회원국으로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온 바 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2001년 DDA협상 개시 이래로 10년이 넘게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신뢰성의 위기를 겪어오던 다자통상체제가 2013년 제9차 WTO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발리패키지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활기를 띠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의지 또한 남다르다. 각국은 관세상한, 민감품목, SSM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기 시작하였으며, R.Azevedo WTO 사무총장 역시 발리에서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이자 수입국인 실정, 농업품목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향후 진행되는 내용으로는 발리패키지 이행프로그램의 준비 및 DDA협상의 잔여의제 협상 진행 등이 있다. 발리패키지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보조 실적, 수출보조, TRQ 관리방식·이행실적 등을 적시에 통보함으로써 그간의 성과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DDA잔여의제 협상과 관련하여 개도국 특별조항과 관련된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입장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G33 개도국그룹과의 공조 하에 민감품목, 특별품목, SSM, TRQ관리방법 등의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작성된 농업협상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과 관련하여 이미 합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TRQ 관리방식 등에 여러 의제협상에 있어서 주요선진국 유리하게 논의가 흘러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 우대와 관련된 조항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각국의 협상 동향 파악과 더불어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2014년 말까지 DDA워크프로그램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2014년 상반기 내에 기본 방향이 마련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서 DDA 잔여의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한·미 FTA 협상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사무관 이충녕

### ▼ 추진배경 및 개요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 개시 후 그해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차례의 공식협상(제6차~제8차 협상) 및 2차례의 농업 분야 고위급 협상이 있었고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장관급 협상이 개최되어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비준이 되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났고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2010년

12월 추가협상을 타결하였으며, 동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기존 타결된 협상의 비준동의안을 2011년 6월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국회 비준절차 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미 FTA 협상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토의와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2011년 11월 22일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국익 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과 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 후 양국 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양국 간 확인서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 FTA가 실제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국회비준안을 2007년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준동의안은 2008년 2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절차에 들어갔으며, 국회 통외통위는 한·미 FTA 찬반 양측 전문가들과 통외통위 위원들이 참여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2008년 2월 15일 개최하였다.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농어촌 지원 대책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FTA농어촌지원 대책특위’를 출범(2008년 2월 19일)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미 간 쇠고기 협상, 미국의 비준현황,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18대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 내 입법절차 및 국회 비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친 후 2008년 7월 1일 국무회의 통과, 7월 3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2008년 10월 8일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10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 내 비준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비준이 되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났고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 11월 30일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12월 3일 추가협상을 타결하였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돼지고기 냉동목살에 대한 양허기간을 2년 연장하여 양돈농가의 경쟁력 제고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2011년 6월 3일 외교통상부는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기존 비준동의안을 묶어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추가협상으로 인해 협상의 이익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상정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있었다. 이에 국회 및 정부에서는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회 여당, 야당 및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상의 이익균형, 피해 분야의 대책 등 비준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한편 정부 측과 민간인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한 한·미 FTA 찬반 토론인 끝장토론을 통해 공개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과정 끝에 2011년 11월 22일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어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한·미 FTA 농산물 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 측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였다. 쌀 관련 16개 세번은 양허제외 했으며, 식용대두·식용감자·분유·천연꿀·오렌지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포도·오렌지·칩용감자 등 민감 품목은 계절관세를 보호하는 한편, 사과·배·감자·대두 등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하였다. 쇠고기·돼지고기·사과·고추·마늘·양파·인삼·보리 등은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농산물 셰이프가드를 발동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호했다. 위생 및 검역의 경우, 한·미 양측은 위생 검역 관련 분쟁 발생시 WTO SPS 협정을 준용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 경우,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초 농산물 생산을 보호했으며, 가공 농산물은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출 증진을 도모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농산물의 관세가 감축되면 필연적으로 미국산 농식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FTA 대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3. 한·EU FTA 협상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사무관 이충녕

#### ▼ 추진배경 및 개요

EU는 2010년 IMF 통계 기준으로 GDP가 16조 3천억불로서 미국(14조 7천억불)을 능가하는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다. 또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2위의 교역파트너이며 우리의 대EU 총교역과 수출은 각각 922억불과 535억불로써 미국(총교역 902억불, 수출 498억불)보다 크다. 이러한 EU 시장에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일본 등 경쟁국들 보다 선제적 진출효과를 얻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 체결을 추진하게 된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한·EU FTA는 2007년 5월 협상 개시 후 2007년 7월 2차협상에서부터 본격적인 농산물 양허협상을 시작했으며, 2009년 3월까지 총 8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통상장관회담이 2009년 4월, 5월과 6월 세차례 개최되어 2009년 7월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시 스톡홀름에서 사실상 타결을 발표하였다. 사실상 타결 이후 한·EU FTA 협정문은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되었고, 2010년 10월 6일 정식서명 되었다. 그리고 2011년 2월 17일 EU의회는 한-EU FTA 협정문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011년 5월에는 우리 국회가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마침내 2011년 7월 1일 한-EU FTA는 잠정발효 되었다. 잠정 발효란 EU의 모든 회원국이 각국별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전 EU의회의 비준으로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품분야에 대해서는 정식발효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한-EU FTA 농산물 관세양허 협상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등 예외 조치와 관세 존속기간의 장기화를 확보하였다. 민감품목 중 쌀은 양허제외, 대두·보리·감자·마늘·양파·인삼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했으며,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쇠고기는 관세 존속 기간을 장기화 했다. 과실류에 대해서도 양허기간을 장기화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EU측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를 5년내 폐지하며, 특히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는 즉시 철폐 되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한·EU FTA 협정 농산물 분야에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수입물량이 발동기준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농산물 셰이프 가드(ASG) 제도를 두었고, WTO 농업협정 제5조의 특별긴급관세(SSG)도 적용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위생, 검역 분야에서는 WTO/SPS 협정 내용 수준에서 타결하였고, 양측간 위생, 검역 관련 분쟁 발생시 WTO 절차가 적용되도록 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신선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한편, 가공농산물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시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의 이행과정에서 EU산 농식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축산물 분야의 수입증가로 인한 생산 감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FTA 피해보전 대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EU FTA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4. 한·페루 FTA 협상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사무관 이충녕

### ▼ 추진배경 및 개요

페루는 경제규모는 작지만 중남미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유망 신흥국가이며 특히 은, 아연, 주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페루와의 FTA는 에너지와 자원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했다. 한-페루 FTA를 통해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마련하고, 자원개발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 또한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보다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페루 시장의 선점효과도 목표로 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한·페루 FTA는 2008년 11월 협상 개시 후 2009년 10월까지 총 4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2009년 11월 12일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으며, 2010년 6월 이후 페루측에서 신축성을 보이며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후 2010년 8월 30일 제5차 협상에서 한-페루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최종 타결 이후 한·페루 FTA 협정문은 2010년 11월 15일 가서명 되었고, 2011년 3월 21일 정식서명 되었다. 그리고 2011년 6월 29일 우리 국회는 한-페루 FTA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마침내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는 발효 되었다.

한-페루 FTA 농산물 관세양허 협상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계절관세,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등을 확보하였다. 대부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 또는 현행관세를 유지했으며, 포도, 오렌지 등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페루측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를 10년내 폐지하며, 특히 우리의 대페루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의 관세를 5년 이내로 철폐하도록 합의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한·페루 FTA 협정 농산물 분야에서 쌀, 쇠고기, 분유, 마늘, 양파,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품목들은 양허제외 또는 현행관세를 유지함으로써 민감성을 보호하였고, 여타 농산물도 수입액이 미미하여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의 대세계 주요 수출품목인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다치즈, 녹두, 팥, 천연꿀, 맨더린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물량이 발동기준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제도를 두었다. 위생, 검역 분야에서는 WTO/SPS 협정 내용 수준에서 타결하였고, 양측간 위생, 검역 관련 분쟁 발생시 WTO 절차가 적용 되도록 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도록 했으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하도록 했다.

한·페루 양국간 농산물의 교역액이 미미함으로 감안할 때, 2011년 8월 1일 발효된 한·페루 FTA가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닭고기, 천연꿀 등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 관련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한·페루 FTA로 인한 농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5. 한·콜롬비아 FTA 협상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사무관 이충녕

### ▼ 추진배경 및 개요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에너지,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민간공동연구(2009.3~8)를 종료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2009.10)를 거쳐 2009년 11월 18일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12월 협상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 협의 및 분야별 양측 입장교환을 위한 한·콜롬비아 FTA 제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까지 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여 상품을 비롯한 각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양허안 교환 등 일부 분야에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

상품 양허협상은 몇 차례 수정 양허안 교환이 있었으나 콜롬비아 측은 쇠고기, 낙농품, 열대과일, 화훼류 등 관심품목에 대해, 우리 측은 자동차 및 차 부품, 가전, 철강 등 공산품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관심품목에 대한 기대 수준의 차이로 양허협상의 진전은 미미하였다.

아울러 농업 관련 협정문 분야에서도 콜롬비아 측은 농업섹션 별도 구성 주장 등 농업 분야의 이슈화에 큰 관심을 보인 반면, 우리는 농업 분야의 이슈화에 반대하고,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도입, 농업수출 보조금 유지 등 농수산업의 민감성 확보와 더불어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 10월까지 4차례의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핵심협상 분야인 상품 양허협상에서 진전이 미흡함에 따라 동 분야 협상 진전을 위한 소규모 회의 개최, 수석대표 간 회의 등을 통해 5차 협상 이전까지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갔다.

2011년 10월 제5차 협상(서울)에서 양측은 협상의 조기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은 핵심관심 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교환하여 최대 쟁점 분야인 상품 양허협상의 진전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양허안에서 우리 측은 자동차 등 8개 품목에 대해, 콜롬비아 측은 쇠고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 양측의 기체결 FTA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였다.

콜롬비아 측의 핵심관심품목이 농산물 및 주요 민감 농산물에 집중됨에 따라 우리는 양허협상의 진전과 더불어 주요 농수산물의 민감성 확보를 위해 커피 등 덜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탄력적 양허 입장을, 쇠고기, 낙농품 등 핵심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수적 양허 입장을 견지하였다.

2012년 4월 6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및 각 협상분과별로 대부분 합의하였고, 2012년 6월 7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 패키지를 마련하여 2012년 6월 25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선언하였다. 2012년 8월 31일 양국은 한-콜롬비아 FTA 협정에 가서명하였고, 이듬해인 2013년 2월 21일 마침내 정식 서명을 하였다. 2013년 8월 21일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은 우리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10번째 FTA가 된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한·콜롬비아 FTA 농산물 협상은 커피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 파급 영향이 적은 품목은 즉시 철폐하고,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며,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하였다.

한·콜롬비아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영향이 예상 되는 기타 절화류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산정 기반 마련을 위한 관세 세분화, 중장기 투융자사업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 6. 한·호주 FTA 협상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사무관 김소형

### ▼ 추진배경 및 개요

대호주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호주의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한·호주 FTA는 2009년 3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년 8개월동안 총 7차례 공식협상이 개최되었다. 쇠고기, 낙농품의 양허 수준 및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 차가 커, 2010년 5월 제5차 협상 이후 공식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3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호주 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데 합의하였고, 호주 측에서도 2013년 9월 총선 이후 정권 교체로 ISD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13년 11월 한·호주 FTA 제6차 공식협상이 개최되었고, ISD 조항 반영 및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국간 의견이 상당 수준 접근하였다. 제6차 협상에 이어, 2013년 12월 제7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2013년 12월 4일,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한·호주 FTA 실질 타결을 선언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한·호주 FTA의 농산물 양허결과는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 및 계절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한 품목의 비율이 농산물 전체 품목 중 38.5%로 한·미/한·EU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쌀, 분유,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였고, 오렌지, 포도, 키위 등에 대해 우리측 출하기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등 농산물 보호 장치를 설정하였다.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등 민감성이 비교적 낮은 품목(농산물 품목수 기준 61.5%)은 즉시철폐에서 10년 내 단기 관세 철폐 등 관세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였으나,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은 낮다.(한·미 FTA : 87.7%, 한·EU FTA : 86.3%)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쌀 및 쌀 관련 제품 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호주의 최대 관심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관세 철폐를 확보하면서,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등 주요 7개 세번에 대해 농업세이프가드(ASG)를 뒀다. 원유 수급 조절에 있어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와 연유는 양허제외되어 현행 관세를 유지했고, 치즈, 버터 등 민감 낙농품에 대해서는 12년 이상의 장기 양허기간을 확보하면서 대호주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저율관세할당(TRQ)를 부여하였다. 쌀, 길보리 등 주요 곡류는 양허제외하였고, 맥주맥·맥아는 15년 장기 철폐하되 TRQ를 제공하였다.

반면 호주측은 현행 5% 관세 품목인 치즈, 양파, 감자, 딸기 등을 포함하여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발효 후 즉시 철폐기로 하였다.

한·호주 FTA 농업관련 협정문은 농업세이프가드, TRQ 관리, 위생 및 검역(SPS), 원산지 및 식량안보 협력 등이다. 농업세이프가드는 쇠고기, 옥수수, 맥주맥/맥아, 정제설탕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발동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수입 급증시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TRQ 관리는 한·미/한·EU FTA보다 간결한 규정으로 합의함으로써 국내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SPS는 WTO 회원국으로서 WTO/SPS 협정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연락처(Contact Point)를 지정하고, 기술협의회(Technical meeting)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부문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면서도, 가공 농산물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협력사항으로 해외농업투자로 생산된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조치 관련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사후적으로 조기 복구책 마련을 위해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한·미 FTA와 한·EU FTA에 비해 한·호주 FTA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양허로 평가되나, 농업 강국인 호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조 아래 협상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추진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호주 FTA는 향후 법률 검토 및 정식 서명 등을 완료한 후, 내년 중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7. 한·뉴질랜드 FTA 협상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서기관 박은엽

### ▼ 추진배경 및 개요

뉴질랜드는 인구는 446만(2012년)으로 비교적 작은 시장규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의 2.7배에 해당하는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GDP가 37,749불(2012년)에 해당하는 선진국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세계 제1의 낙농 수출국가로서 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국제사회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민간공동연구

(2007.2~2008.4), 라운드테이블회의(2008.4.21), 한·뉴질랜드 FTA 제1차 예비협의(2008.9) 및 제2차 예비협의(2008.11),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2009.1) 등을 거쳐 2009년 6월 한·뉴질랜드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2010년 5월까지 총 네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상품 양허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중단되었다.

뉴질랜드 측은 쇠고기와 낙농품 등 우리측 농산물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 등 공산품의 뉴질랜드 관세가 이미 0%이거나 5% 이하의 낮은 수준인데다 시장규모도 작아 동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에는 양국간 이익균형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양국은 2011년 2월과 2012년 10월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다가, 201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뉴 FTA 협상 재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3차례의 수석 대표급 회의를 거쳐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양국은 2014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던 바, 양국간 상품양허 수준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진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뉴질랜드는 낙농품, 키위, 녹용 등 자국 주요 품목에 대해 한·미 FTA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낙농품, 키위, 호박 등 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높으므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국내 농산물의 민감성이 최대한 보호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간 이익균형의 확보를 위해 농업협력, 인력이동 등에 있어서도 우리측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8. 한·인도 CEPA 협상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사무관 이충녕

### ▼ 추진배경 및 개요

인도는 인구 11.5억, 구매력기준 세계 4위의 시장이므로,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CEPA를 체결한다면 거대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의 수입시장 성장률이 2003년 이후 매년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산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거대 잠재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서남아시아 경제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이므로 CEPA를 통해 인도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한·인도 CEPA에 대한 논의는 2003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공동위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J)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10월 뉴델리 양국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학계, 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한·인도 CEPA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인도 양국은 2005년 1~8월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를 3차례 실시했다. 2006년 1월 제4차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에서 양국간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2006년 2월 방한한 인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한·인도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006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15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2006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 및 양허안 교환시기, 향후 협상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2006년 5월(서울)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통관행정 및 절차의 5개 분과별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6월(뉴델리) 3차 협상에서는 일반 조항 및 분쟁해결, 경제협력 및 기타규범 등 총 7개 분과별 협상이 모두 시작되었다. 2007년 1월(인도 자이푸르) 5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양허 세부원칙 및 네거티브 방식 투자자유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같은 해 4월 6차 협상을 개최하고 개괄적 상품양허 초안과 서비스, 투자 분야 1차 개방안을 교환하고 원산지 분야 절충안도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2008년 9월까지 7~12차 협상을 계속하였고, 공식협상

사이 세 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가졌다.

2008년 9월(서울) 12차 협상에서 한국과 인도 양국은 협상 전부문에 걸쳐 실질적인 타결에 합의했다. 200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률검토 회의를 하였고, 2009년 2월 9일 뉴델리에서 한·인도 CEPA에 가서명하였다. 마침내 2009년 8월 7일 한·인도 CEPA 협정이 서울에서 공식 서명되었다. 2006년 3월 한·인도 CEPA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타결되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산물 양허협상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 낮은 개방수준으로 타결되어 한·인도 CEPA로 인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쌀·육류·과채류·양념류 등 대부분의 민감품목을 양허제외 또는 관세 부분감축 유형으로 분류했다. 대부분의 민감 농산물을 양허제외로 합의함에 따라 TRQ 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범은 마련하지 않았다. 위생 검역 분야의 경우, WTO SPS 협정과 유사한 수준에서 타결하였고, SPS 관련 분쟁은 CEPA 협정상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원산지 분야의 경우,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최소허용 기준도 신선 농산물은 적용을 배제토록하여 제3국산 농산물의 우회수입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인도 CEPA는 상품양허 수준이 낮고 관세 인하 및 철폐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단기에는 관세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산물 분야의 개방 수준이 매우 낮아 민감품목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경쟁국인 일본, 중국 보다 한발 빨리 CEPA를 체결한 선점효과를 충분히 살리고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의 한·인도 간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기 위해 한·인도 CEPA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강화

### 1.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

| 국제개발협력과 사무관 노상욱

#### ▼ 추진배경 및 개요

경제발전에서 있어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국가 이미지 제고와 FTA/DDA 등 농업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와 국익증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2010년 11월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국가별 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원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2010년 0.12%에서 2015년 0.25%까지 늘릴 계획이다.

최근 들어 동남아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새마을운동 등 농업·농촌 발전 경험과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해외농업개발 및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농업 관련 기술전수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UN에서 정한 새천년 개발계획(MDGs) 8대 목표 중 빈곤 감축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양자 간의 호혜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개도국 국민의 70~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이 주산업이며, 빈곤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지원 분야가 농업과 농촌개발임을 감안할 때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첫째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빈곤퇴치 기여로 국가 이미지 제고, 둘째 아국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DDA/FTA 협상 측면지원, 셋째 농식품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농촌개발 부문 국제협력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기아와 빈곤의 퇴치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농업협력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국제협력을 위하여 7억원가량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4억원에서 2010년 42억원, 2011년 100억원, 2012년 105억원, 2013년 128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농식품부가 추진한 협력사업은 2006년 이래 크게 늘어났다. 사업 개수로는 11개(06), 13개(08), 17개(10)로 늘었고, 이후 신규 협력사업의 추가, 타당성조사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23개(11), 18개(12), 21개(13)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수립한 ‘농림 분야 ODA발전방안’에 따라 단기성(1-2년 이내), 소규모(약1억)인 일반협력사업을 지양하고,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인적·물적지원을 패키지화한 중장기 기획협력과 공동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 개수는 2012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 국가별로는 몽골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모잠비크를 필두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나, 카메룬, 르완다 등이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3년에는 아시아 7개 국가, 아프리카 5개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나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14건의 기획협력사업, 컨설팅사업 1건(3개국), ‘개도국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 제고 사업’ 등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다자성양자 및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개도국 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상생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 확산 사업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이하 KAPEX)’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신규로 착수하였다.. KAPEX사업은 2013년에 라오스, 캄보디아,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발전 잠재역량 공동조사, 농정 성과 확산 연수(국내/현지), 정책협의 워크숍(국내/현지)’ 등을 실시하고, 11월에는 국제세미나에는 해당 국가와 미얀마 및 우간다의 정책관계자와 국내 유관기관 및 민간, NGO 등이 참여하여 KAPEX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내외 다양한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큰 성과를 얻었다.

〈표 2-5-1〉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연도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CIS	아프리카	다자/기타	계
2008	4	2	3	2		2	13
2009	4	1	7	1	1	1	15
2010	3	1	6		4	3	17
2011	2		11		7	3	23
2012	1		8		7	2	18
2013	1		10		7	3	21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소속기관, 외청, 유관단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7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 우선순위가 높은 1개 사업을 신규 지원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지원하였던 ‘가나 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르완다 농업 및 동물자원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수원국 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무상 ODA 협의체인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대 개도국 농업, 농촌 분야 ODA 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고, 부처 간 정책연계와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마을운동 ODA 사업 세계화에 적극 참여하였다.

더불어 대내적으로 소속기관, 양청 및 산하기관(단체)이 참여하는 ‘글로벌농림수산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외교부(KOICA), 기획재정부(EDCF), 안전행정부(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재외공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업·농촌개발 분야 ODA의 중복 및 분절화를 방지 및 연계 추진함으로써, 원조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식품부 지원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소규모·단기성 협력지원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중장기 기획협력사업과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관련 법·제도·조직 등을 체계화, 효율화함으로써 사업성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과 기술전수를 요청하는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 및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여전히 지원규모가 작은 편으로, 아직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새마을운동 등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 발굴 단계부터 목표 지향적인 사업을 기획, 추진하며, KOICA, EDCF 등 ODA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를 적극 운영하여 농림식품 분야 ODA 사업의 총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개도국의 식량안보, 빈곤 퇴치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 등 농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원조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완료 사업에 대한 미흡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완료 사업을 대상

으로 종료평가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제언 및 교훈사항의 환류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분야 ODA사업이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나갈 계획이다.

## 2.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 국제개발협력과 사무관 이행우

###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하는 구조적인 곡물 수입국으로, 국내 경지면적이 2013년 기준 171만ha로 국내 부존자원 활용으로는 식량자급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으로 곡물의 해외공급선을 확보하고자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사업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기술·정보 제공 및 외교 등 측면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에 부족한 곡물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우선이지만,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대를 돕는 데도 크게 힘을 보태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병행하여 추진 및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지난 5년간(2009~2013년) 120억원을 집행하였고, 융자사업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및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007억원을 12개 국가에 진출한 32개 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 ▼▼ 해외농업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해외농업개발은 2009년 추진 당시 해외농업 및 임산 자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구 지식경제부) 소관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2년부터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시행(12.1.15)하면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10년간 해외농업개발 추진의 기본 틀인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을 9월에 수립하여 공고하고, '13년에는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 보조사업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은 해외농업 진출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농업투자여건 정보 제공과 민간기업의 관심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환경조사 사업을 비롯하여 해외농업 개발 누리집(www.oads.or.kr) 운영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 기 진출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 진출 기업 확대 및 투자 증가 등 해외농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5-2〉 2013년도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

구 분	추진 실적	성 과
농업환경조사	- 정책조사 : 1997~2013 22개 국가 조사 - 맞춤형조사 : 2009~2013 33개 기업 지원	- OADS 정보제공
OADS운영	- 해외농업투자여건 정보 제공 - 해외농업개발사업 매뉴얼 제공 - 해외통신원 현지 농업정보 제공 - 국제곡물가격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회원수 : 2,864명(개인 2,591, 기업 273) - 지원신청 온라인으로 효율성 제고
컨설팅	- 3개 기업 7개 분야 지원	- 진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전문인력양성교육	- 30명 국내교육 1주, 해외현지교육 2주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전문교육 수요가 많음
해외인턴	- 2013년 2명	-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기업채용)
해외통신원 운영	- 12개 국가 통신원 운영	- 현지 농업정보 제공
심포지엄/워크숍	- 하반기 각 1회 실시	- 해외농업개발 진출사례 및 추진현황 발표, 해외농업개발 발전방안 분임토의 실시

### ▼▼ 용자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용자사업은 민간기업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농장형) 및 건조·저장·가공(유통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용자금은 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조건이다. 2013년에는 3개 기업에 35억원(농장형 1개 30억원, 유통형 2개 5억원)을 지원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2013년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시작한지 5년차로 보조사업 추진기관으로 해외농업개발협회가 추가 되는 등 추진 체제가 정비되었으며, 해외농업개발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확보한 곡물을 2012년과 비슷한 수준('12: 10,539톤 → '13: 9,950톤)으로 국내 반입하였다.

하지만 사업 특성상 진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국내 반입을 대폭 확대하는 데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13년에 주요 곡물(옥수수, 콩)의 수입관리제도를 개선하여 해외농업 개발 생산물에 관세 혜택을 부여하여, 3,198톤의 옥수수를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무관세로 국내 반입 하였다. 2014년부터는 우리진출 기업이 본격 진출한 지역에 영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며, 우선 러시아 연해주에 동 센터를 설치하여 그 성과에 따라 2015년 이후 동남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3. OECD 활동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온누리

### ▼ OECD 농업·농촌 및 식품 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회의, 농업무역 합동작업반회의, 농업환경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식품경제, 농업환경평가, 무역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 정도를 점검·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CD와 FAO가 공동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을 발간하고 있다.

## ▼ 최근 발간 주요 연례보고서의 주요 내용

### ▼▼ OECD 중기농업전망

OECD-FAO는 2005년 공동발간을 시작한 이래 2013년에는 '2013~2022 세계농업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을 내놓았다. 이는 매년 급격히 부상하는 시장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 증진 차원에서 세계 주요 농산물 품목과 시장에 대한 중기적 평가를 담은 보고서로서, FAO의 품목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상국, OECD의 정책적 전문성이 조화되어 농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농업전망에서 개도국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요소 비용 상승과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식량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국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재고량의 급격한 감소가 변동성의 주요원인이며 소비량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생산량은 정체 또는 변동(급감)을 반복하고 있고 생산량 부족분을 재고량으로 충당하다보니 기말 재고량과 재고율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문제로 작물 생산량은 감소해 식량부족과 기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많으므로 농산물 가격은 향후 10년간 상승 추세로 전망되고 있다. 전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의 침체로 농산물 수요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밀과 조곡의 생산은 2022년까지 2010-12년 대비 각각 16%, 22% 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쌀의 경우 동일기간 약 1% 내외의 미미한 증가가 예상된다. 2022년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와 유럽연합과 같은 주요 곡물 생산국들은 모두 곡물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개도국들도 상당수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며 밀과 조곡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쌀은 식용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재고는 단기적으로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유지종자 및 관련 농산물 생산은 수요 급증과 고수익으로 인해 확대될 전망이며 2022년까지 현재 보다 26% 증가하지만 과거보다는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원당생산의 경우 2022년까지 매년 1.9% 상승하고 2010-2012년 평균 대비 38 Mt 증가하여 2022년에는 거의 212 M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목화 생산은 연 1.6% 성장, 연 1.7%인 소비보다 조금 더 느리게 성장하여 2022년에는 27.2 Mt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며 바이오 연료 생산은 202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에탄올 생산은 2010-12년 평균 대비 약 70%까지 증가하여, 연 4% 성장하여 약 168 bnl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 2013년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13년 OECD는 '2013년 회원국 및 신흥국 농업정책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3)'를 발간하였다.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본 보고서는 비OECD EU 6개국, 신흥경제국 7개국, 그리고 OECD회원 34개국을 포함 총 47개국(유럽연합을 하나로 보면 21개국)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OECD 회원국의 구조적 다양성과 세계농업에서 신흥국가의 변화하는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2011~2012년 농업정책의 주요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농업 지지정책의 수준, 구성, 변화 등을 평가하였다.

OECD 회원국들에서 2012년도 농가수익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 비중(%PSE)은 17%로 전년도의 15%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PSE가 21%를 기록한 1995~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추세와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평가된다. 회원국들의 농정기조는 전반적으로 2010 OECD 농업각료회의(OECD Meeting of Ministers of Agriculture in 2010)에서 제안한 식량안보의 개선, 투자와 혁신환경 촉진, 가격변동을 포함한 농업 분야가 직면한 위험 관리 개선, 환경적인 성과를 강화하는 유인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적응·완화 전략 등의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일부 신흥경제국에서는 주로 농산물과 식료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에 대한 보조 수준을 높이는 추세가 확인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정책은 다년간의 계획 하에서 실행되며, 2012년에도 장기 농정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이 대다수이며 기존 계획이 만료될 경우에는 정책목표가 동일한 차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거나, 변화된 농정기조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증산정책들은 주로 정해진 자금목표에 따라 추진되며, 생산량에 기반을 둔 보조, 특히 높은 시장가격을 통한 지원은 여전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위험관리 정책은 다양한 수단들(가격지지 및 경기변동 직불, 보험, 정보제공)이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 자연재해는 정부의 원조지원 확대를 초래. 보험제도와 선물시장의 참여 또한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최근 낮아진 관세장벽과 국제 무역의 확대에 따라 식품안전, 동식물위생 문제, 생물안전성(Biosecurity) 등이 정책입안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일부 수축국들은 식품안전과 동식물 보건 분야 관련 기관들 사이의 공동작업을 촉진하고 있다. 국내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려는 국경조치는 관세, 관세율할당, 국영무역, 수입허가 필요조건, 수출보조금을 포함하며,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무역을 감소시키고 예산 수입이나 시장수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출 세와 수출규제도 실행되었고 이러한 통상정책은 대부분 2012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반면 농식품 무역은 최근에 SPS 협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 ▼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2006년 12월 1일자로 농업담당 사무국이 개편되어 기존의 식량·농업·수산물국이 무역국과 통합되어 무역농업국(Directorate for Trade and Agriculture)이 되었으며, 농업 관련 조직은 농업정책·무역 및 조정과, 농업정책 및 환경과, 농업무역 및 시장과, 비회원국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관련 협력 연구 프로그램, 농업관련표준과 Scheme, 수산 관련 1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2014년에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농식품분야의 혁신, 시장과 정책 중기 전망, 농산물 무역 자유화라는 큰 틀에서 사업계획이 운영되고 있다.

사업계획은 2년간의 OECD 분석활동의 청사진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농정추진과 관련 시사점이 큰 분야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수출입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수입국 공조모임, 의장단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주로 OECD 논의가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방향의 분석작업(무역자유화의 유익한 점, 국내정책의 무역왜곡 효과 등)을 유도하고,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 가능성, 식품 안전, 농촌개발 등 농업의 사회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활동은 3개 작업 분야(농정시장, 농업무역, 농업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정시장 분야에서는 회원국 및 신흥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농산물 가격변동성과 시장의 구조변화 분석, 농가위험관리, 농업 분야 민간자본 투자, 농식품 녹색성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제59차 농정시장작업반(13.3.19~21) 회의에서는 식품체인에서의 정책지지 측정을 검토하고, 무역 관점에서의 식량안보 분석 보고서를 공개 결정하였으며, 식품체인별 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보고서를 논의하였다.

제60차 농정시장작업반(13.5.22~23)에서는 「2013년 OECD 회원국 농정평가보고서」 및 「2013~2022 OECD-FAO 농업전망」 보고서를 공개 결정하였고, 일반서비스추정치(GSSE) 개선을 위한 내용을 논의하고 '농업발전환경' 및 '농업생산성과 혁신'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제61차 농정시장작업반(13.11.19~21)에서는 2014년 OECD 회원국과 신흥경제권의 농정평가보고서 및 2014~2023년 농업전망보고서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농정평가보고서' 통계부분 온라인 공개를 결정하고 '일반서비스추정치' 개선안을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업무역 분야에서는 제69차 및 제70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회의에서 농식품 부가가치 D/B의 범위,



농산물 수출제한 관련 보고서를 논의하였고 ‘지역무역협정과 농업’ 보고서는 향후 공개결정을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민간표준과 공적규제의 시너지’ 연구의 시범국가로서 사례분석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제35-36차 농업환경합동작업반 회의에서 녹색성장과 농업, 환경적 크레딧 시장과 상쇄 계획(scheme)의 경제적 및 환경적 성과의 축적(stacking)에 대한 의미와 OECD 주요국의 농업환경 공공재를 위한 정책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4.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활동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연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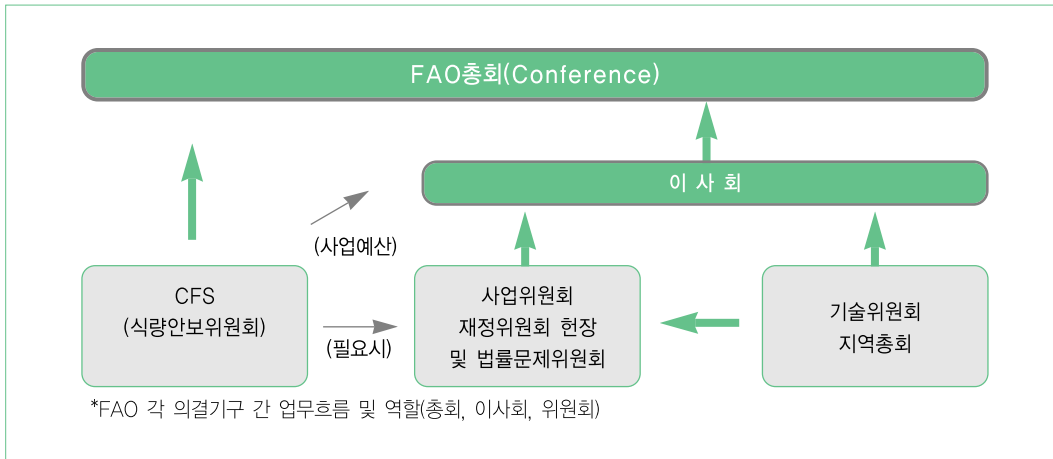
##### ▼ FAO 개요

FAO는 세계 인류를 위한 식량안보(food security) 달성, 즉 인류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 균형적인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 영양상태 개선, 농업생산성 제고, 농촌인구의 삶의 질 개선 및 세계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개발 지원, 영양·식량·농림축수산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회원국의 농업정책 기획·개발에 필요한 자문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FAO는 1945년 10월 26일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설립 총회에서「FAO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공식 설립되었으며, 1946년 12월 14일 FAO 제2차 총회에서 유엔과의 제휴협정이 채택되고 유엔총회가 이를 인준함으로써 유엔 최초의 상설전문기구가 되었다. FAO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2013년 현재 194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EU), 2개 준회원국(페로 제도, 토켈라우 제도)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는 총회, 이사회, 7개의 상임위원회(프로그램, 재정, 헌장 및 법률, 상품, 수산, 산림, 농업위원회),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및 5개의 지역총회(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근동, 남미·카리브, 유럽)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49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에서 이사국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연속하여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2-5-1〉 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 개요



총회(매 홀수연도)와 지역총회(매 짝수연도)는 2년마다 번갈아 개최되며,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한다. 총회는 정책 결정, 예산 승인, 정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가입 승인, 사무총장 및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 FAO 헌장 개정,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산하 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의 검토 등의 중요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2013년 현재 총 3,449명의 인력이 FA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정규 직원은 3명으로 본부에 2명, 베트남국가사무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 정규분담금(정규예산, Net Appropriation)과 자발적기금(Extra-budgetary)으로 구분된다. 정규분담금은 회원국별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유엔의 국가별 분담금 산정 기준을 토대로 FAO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국별 정규분담금 비율에 따라 회원국이 납부한다. 우리나라의 2012~2013년 정규분담금 비율은 2.271%로, 191개 회원국 중 11번째에 해당된다. 자발적기금은 정규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예산 지원, 현지프로그램, 기술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FAO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 절차의 효율성 제고, 직원 역량 제고, 본부 조직의 간소화 및 지역사무소 기능 강화, 대내외적 협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작업은 2004년 제127차 이사회에서 FAO 조직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부기관의 독립적인 FAO 운영 실태 평가(IEE : Independent External Evaluation)를 미국과 캐나다가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05~2007년 기간 중 IEE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개최된 제34차 총회에서 '성장을 동반한 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즉각행동계획(IPA : Immediate

Plan of Action)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제35차 특별총회에서 세부적인 개혁조치사항을 담은 즉각행동계획(IPA) 5개년 계획(2009~2013)을 승인하였다. 2013년 제38차 총회에서 즉각행동계획(IPA) 이행 및 FAO 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3년에는 FAO 총회(제38차 : 6.17~22), 3차례의 FAO 이사회(제146차 : 4.22~26, 제147차 : 6.24, 제148차 : 12.2~6)가 개최되었다. 이 밖에도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 ▼▼ 제38차 FAO 총회 참석

제38차 FAO 총회는 2013년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194개 FAO 회원국, 국제기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식량농업상황, 2014~2015년 사업예산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초연설을 통해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기반한 농업시스템 개혁, 식품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제고, 부처간 협업 등 우리의 식량안보 강화 전략 소개하였다. 또한, 이 연설을 통해 KOPIA 센터 설립 및 FAO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 식량안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개도국의 협력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표명 하였다.

#### ▼▼ FAO 이사회 참석

2013년에는 총 3차례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제146차 : 4.22~26, 제147차 : 6.24, 제148차 : 12.2~6). 이사회에서는 식량안보·프로그램·재정·현장 및 법률 등 각 상임위원회, 농업·산림 등 기술위원회 및 지역총회 결과가 보고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146차 이사회에서는 즉각행동계획 이행상황 및 FAO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FAO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2010~2019 전략계획 개정을 승인하였다.

제147차 이사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임원을 선출하고 마다가스카르의 메뚜기 떼에 의한 식량안보 위기상황 등이 논의되었다.

제148차 이사회에서는 2014~2015년 사업예산안을 승인하였고 식량안보·프로그램·재정·현장 및 법률 등 각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세계식량안보위원회는 2009년 개혁안 채택 이후 논의 의제와 참석자가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식량안보와 관련된 중심적 논의기구로서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40차 식량안보위원회는 2013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121개국 회원국을 비롯하여 182개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국제농업연구기구, 국제 및 지역 금융기구, 민간 부문 협회 및 자선재단 등 식량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2014~2015년도 다개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바이오연료와 식량안보 관계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였으며, 책임 있는 농업투자에 대한 원칙(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s)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동 회의 기간 중 개최된 국제식량가격에 대한 각료급회의에는 주최국인 총 37개국의 장·차관이 참석하여 국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식량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FAO는 19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세계 식량 및 농업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FAO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식량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선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FAO 분담금 규모, 인구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FAO에서 근무할 우리나라의 적정 인원은 15~20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근무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수한 인력을 적극 진출시키기 위한 정책과 FAO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및 정책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제농업협력 사업(ODA)을 확대함으로써, 남남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제6장 농식품 안전성 · 품질관리 강화

###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 1. 농산물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확대

소비안전정책과 사무관 김방연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4년도에 도입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외식문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식품소비 중 외식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외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 2008년 7월부터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2010년 2월 4일 제정 · 공포하고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제정된 법령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전국 62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적용하는 한편,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을 농산물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수입원료 사용비중이 높은 소금과 막걸리를 포함한 주류에도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수산물 6품목을 신규 도입하고, 찌개용·탕용 배추김치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통 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을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및 한국소비자원,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2012년 12월에는 김치류에 사용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및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하는 살아 있는 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수입 증가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와 갈치, 고등어, 명태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2013년 1월에는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계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하였고, 6월에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커피 가공품(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조제커피·액상커피)과 마찬가지로 수요 증가 추세에 있는 양잠산물(누에번데기·오디·뽕잎)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양잠산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 2013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농수산물·가공품 : 875품목(국산농수산물 396, 국내가공품 299, 수입농산물·가공품 180)
- 음식점 : 16품목(소·돼지·닭·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김치, 납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 표시강화 : 가공품 중 김치류(고춧가루 표시)  
음식점의 배추김치(고춧가루 표시) 및 살아 있는 수산물(제공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것)

▼ 평가 및 향후계획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방사능 오염에 관련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도 개선은 소비자 알권리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 받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표시방법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속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유관기관과의 지도·단속

협조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2. 농식품 안전성검사 확대

| 소비정책과 사무관 조경은

### ▼ 추진배경 및 개요

안전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초 안전성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판매되는 농산물,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을 수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해서는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3년에는 농산물 280개 품목을 대상으로 87,052건 검사하여 계획(84,000건) 대비 3.6%를 초과 달성하였다. 유해물질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농산물은 잔류농약 65,669건, 중금속 7,482건, 병원성 미생물 832건, 방사선조사 및 핵종 1,610건,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40건, 이물(기생충란) 150건, 훈증제 150건, 불산 100건을 조사하였고, 농지·용수·자재에 대해서도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7,126건 조사하였다. 2013년 안전성검사 결과 1,202건의 농산물이 부적합한(1.4%)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242건), 출하연기(364건), 용도전환(3), 관계기관 통보 등(596건)으로 조치하였다. 2013년 안전성검사 물량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률이 2012년 1.5%에서 2013년 1.4%로 향상되었다. 아울러 생산·저장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도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12,643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유해물질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분석능력이

우수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28개소)·운영하였으며, 분석실(24개소)의 정도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2014년에는 조사물량과 조사대상 분야를 88,000건(전년 계획 대비 4.7% 증)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잔류조사(54품목, 15,900건)를 추진하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검사기관 지정을 확대, 첨단 분석장비 확충 및 분석인력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늘어나는 안전성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 농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부적합 필지와 농산물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토양복원사업과 유통 전 수매 폐기조치 등을 추진, 폐광산 주변 지역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대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 소비정책과 사무관 조경은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농산물관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6년부터 농산물관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농산물의 생산·유통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력등록대상자는 농산물생산자, 유통자, 판매자이며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GAP위생시설 보완사업(보조 : 국비 30%, 지방비 20%)과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토양·용수·생산물에 대한 안전성분석 비용지원(국비 보조 100%), 민간인증기관의 운영비(국비 보조 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인증신청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인증기관은 신청농가를 방문하여 50개 항목(필수 27, 권장 23)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의 준수 가능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와 민간의 성실한 노력으로 <표 2-6-1>과 같이 GA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추진실적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소비 확대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장, 영양사 등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를 위한 TV, 라디오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9년에 대상 품목을 110개 품목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자 중 행사·노점상 등 단순판매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더불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확산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축·수산물의 이력추적 조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의 이력관리번호(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이력추적관리 성과는 <표 2-6-1>과 같다.

<표 2-6-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관리 추진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증기관(개소)	38	43	45	49	51	48
GAP관리시설(개소)	417	484	565	606	718	756
인증 농가수(호)	25,158	28,562	34,421	37,146	40,200	46,000
인증 면적(m <sup>2</sup> )	36,322	40,081	46,701	46,701	55,000	58,703
생산 계획량(톤)	419,842	434,047	509,931	642,165	691,000	749,274
농산물이력등록 농가수	48,214	70,612	88,218	94,949	103,556	103,245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농업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GAP제도 확대를 위해 2013년 정부기관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GAP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소비자가 우려하는 농산물의 위해요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GAP제도(안)을 확정(10월)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GAP제도에서, 적합한 위해요소관리가 되는 경우 불필요한 GAP시설경유 및 시설확충 등의 규정 완화를 통해 비용이 적게 들고 농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GAP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가의 등록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가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자의 고령화로 인한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경영체에 생산정보 대행입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향후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력관리농산물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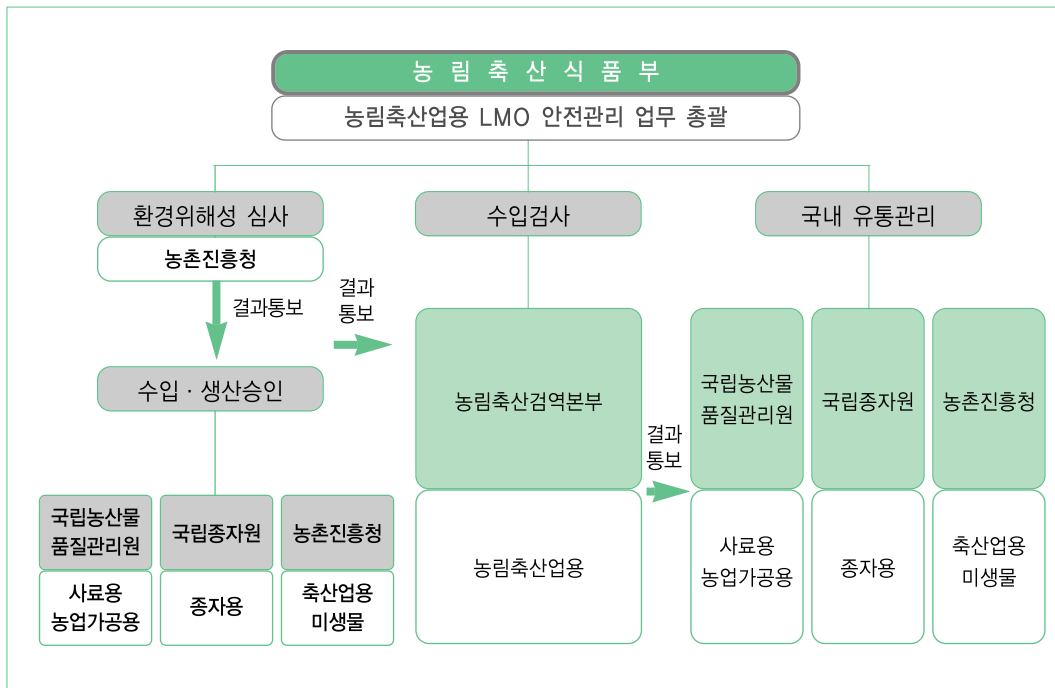
## 4.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관리

| 검역정책과 사무관 최동철

### ▼ 추진배경 및 개요

2008년 1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수입 및 생산 되는 모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2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LMO 안전관리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입·생산 및 국내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2-6-1〉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체계



### ❖ 추진내용 및 성과

LMO의 국내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NGO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9개반 121명)하여 2013년 7~8월까지 하역지부터 최종 사료공장 주변까지 경로상에 위치한 지점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취급관리기준 위반으로 1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LMO 취급관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취급·관리자를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LMO 취급관리 유의사항, 위반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의 부주의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 철저한 취급관리를 당부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축산업용 LMO의 안전관리는 2013년에 수립된 ‘제2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농림축산업용 LMO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료용 LMO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향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지점검과 이동 경로 및 사료공장 주변 등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및 NGO단체 등과의 합동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2013년에는 향후 5년간 적용할 '제2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LMO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5. 농식품 정보망 구축·지원 및 소비정보 교류사업

| 소비정책과 행정사무관 김기성

### ▼ 추진배경 및 개요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농식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식품이 과거 양적인 부족시대에서 질적인 성장단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정책 대상을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푸드시스템 전반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농식품 정보망 구축지원 및 소비정보 교류 사업을 확대하여 소비자 역량제고는 물론 건전하고 올바른 농식품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 추진내용 및 성과

#### ▼▼ 추진 방향

소비자와의 양방향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소비·식생활 홍보의 체계적인 관리·내실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분산된 농식품 소비·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수집 및 제공 체계를 구현하고 소비자 생활 속 활용형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참여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 ▼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

'농식품 스마트 아카데미' 개설 운영, 농사랑알리미 육성 등 기존의 중앙·수도권 중심의 소비자단체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사업을 지역, 지자체 등 전국단위로 확대 할 계획임. 또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건전한 소비·식문화 정착을 위해 맞춤형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 정보에 대한 필터링 강화할 예정임

### ▼ 농식품 정보망 구축지원

농식품 소비정책·동향정보 및 실천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콘텐츠 기획·점검·평가 등 정보망 운영 과정에 소비자 참여 및 교류 확대 할 계획임. 또한 농식품 유관기관, 소비·식생활 관련 사이트와 지속적 연계·통합으로 다양한 농식품 소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임

### ▼▼ 추진 성과

#### ▼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

식생활 소비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소비자협력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농식품안전사고예방 및 긴급대응에서 식생활 소비문화를 포함하는 소비자협력 체계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였음.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소비자 교육·홍보 공통 콘텐츠 제작·배포하였으며, 소비자 정보·의견교류 확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농식품 정책참여 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였음(소비자단체와의 협력 교육 78회 5,118명, 현장체험 8회 338명, 토론회 8회 339명)

### ▼ 농식품 정보망 구축지원

기존 운영한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식품종합정보망'으로 확대 개편·운영 (www.foodnuri.go.kr(농식품정보누리)하고 소비자 니즈 및 농식품 안전정책 추진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농식품 소비정보 제공을 확대하였음. 특히 소비자의 식품관련 정보 관심도가 기존 식품안전 중심에서 식품 영양, 조리, 가격정보, 식생활 등으로 다원화 하였음. 또한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6개 기관의 8개 사이트와 인증·식생활·가격 정보 시스템 연계구축하였으며 15년까지 16개 기관 21개 사이트와 연계 통합 할 계획임

### ▼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 주도의 일방향이 아닌 소비자와의 양방향 소통 및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권 제고, 식생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역량 제고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 할 계획임. 또한, 농식품 정보·교육·홍보사업을 중장기 추진계획 하에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6. 축산물 이력제 추진

| 방역총괄과 사무관 김정권

### ▼ 추진배경 및 개요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 관련 단체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대응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며, 종축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10년 및 2011년 구제역 발생,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를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최근 신속한 방역지원 및 한우 소비량 증가 등 소 이력관리 운영의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2011년부터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돼지고기이력제도 실시방안을 준비하였으며, 2013년 12월 27일자로 돼지 및 돼지고기에도 법적으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되었으며, 2014년 12월 28일 전국적인 시행을 목표로 '12년부터 전국 46개 브랜드경영체 등을 중심으로 농장단위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시작으로 시·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 부착, 이력정보의 전산입력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동 법률 시행령(08.12.9) 및 시행규칙(08.12.19) 등을 제정하여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절차와 도축·가공·판매 단계에서의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공급하고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 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기 위해 지역축협 등 135개소를 소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 부착 지원을 시행하는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등록소의 도축금지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2009년에는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 단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유통 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식육유통업체 등의 개체식별번호표시 및 거래실적의 기록·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쇠고기 이력제의 사후검증 수단인 DNA 동일성검사 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소 사육현황을 조사하는 소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이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였으며, DNA 동일성검사 장비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한 이력 정보 조회 방법 개발, 이력제 예산 및 마사회 적립금을 활용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였다.

2011년에는 소 질병 잠복기를 고려한 방역의 효율성 및 농가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질병 등에 취약한 젖소에서 태어난 육우의 초유떼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육우의 경우 귀표 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의무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를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국내산 귀표 개발을 완료하여 귀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묶음번호에 대한 이력조회 기능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조회 방법 등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각종 이력업무 처리 속도 및 저장용량 개선 등을 통해 현장업무 및 방역 효율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력제 대상 축종을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로 확대하기 위하여, 돼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돼지고기이력제 업무추진 단계별 사업실시요령 및 시범사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장단위 돼지고기이력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도에는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존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여 2013.12.27일자로 개정·공포





적극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의 직접 수혜 대상인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자에 대한 이력정보 조회 방법 등을 홍보하여 동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릴 계획에 있다.

〈그림 2-6-2〉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방법

	
<p>〈쇠고기 이력정보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 <a href="http://www.mtrace.go.kr">www.mtrace.go.kr</a>에서 검색</li> <li>■ 스마트폰 : 마켓·앱스토어 → 조회 → "안심장보기"앱 → 설치 → 이력정보 조회</li> <li>■ 휴대전화 : 6626(肉肉이력)+휴대폰 인터넷버튼</li> </ul>	<p>〈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이용 : <a href="http://pig.mtrace.go.kr">pig.mtrace.go.kr</a>에서 검색</li> <li>■ 스마트폰 : 마켓·앱스토어 → 조회 → "돼지고기이력정보"앱 → 설치 → 이력정보 조회</li> </ul>

## 제2절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 1. 가축질병 방역강화

#### 방역총괄과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미국·본 등에 소해면상뇌증(BSE)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질병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 상시 예방접종 체계 전환에 따라 농가의 자율접종체계 확립 및 백신접종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백신접종 결정이후, '11.9월부터는 기존 O형 단일백신에서 예방범위가

넓은 3종 혼합백신(O형+A형+Asia1형)을 100% 공급하고 있고, 지자체장을 포함한 농가별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담당농장을 방문하고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접종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검사와 혈청검사를 확대·강화하여 백신 미실시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점 관리하였다.

'10~'11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여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러스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심각”단계로 격상발령하고,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시한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대한 매뉴얼 습득 및 지자체·관계기관의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가상방역훈련(CPX) 강화하여 '13년에는 4회(현장훈련, 매뉴얼 훈련, 도상훈련, 평가대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 소독 전담반(400개)이 연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 예찰 강화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요원 417명을 채용하여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월 2회 이상 전화예찰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농가 발견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통보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11년 4월 경북 영천 마지막 구제역 발생이후 여러 차례 의심축 신고가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그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제시하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조건에 따른 방역정책을 충실히 추진하여 '13년 10월 11일에는 우리나라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서를 OIE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고병원성AI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안심 할 수는 없는 상황임으로 앞으로도 해외 유입질병 및 국내 상시발생 질병 등 가축질병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강화

검역정책과 사무관 이재명

###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2000년, 2002년, 2010년 3차례의 구제역 발생과 2003년, 2006년, 2009년, 2010년 4차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경험한 바 있으며, 우리 주변국인 중국, 일본, 몽골 등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 및 HPAI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다수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축산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경제발전에 따른 해외 여행 수요급증으로 여행객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유입도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외래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축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국경 검역조치를 통해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에 대해 신고·소독조치 등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불법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X-ray 검색활동을 통해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해외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대책의 일환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토록 안내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북아 등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발생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이들 가축질병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 등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건초에 대한 소독 및 실험실 검사,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육류 신고, 반입자제 등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선박의 여행객에 대해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 휴대육류 반입 여부를 검색하고, 모든 여행객에 대해 신발 소독 실시와 외국인 연수생 및 해외 축산행사 참석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동물 및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 및 수입 후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동물이나 축산물의 수입을 허용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허용 절차는 총 8단계로 이루어지며, 그 1단계는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2단계는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실문서 송부, 3단계는 가축위생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단계는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단계는 수입허용 여부 결정, 6단계는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단계는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그리고 마지막 8단계는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를 등 절차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이 수입되면 계류시설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에 입고되어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국내 통관이 허용된다.

〈표 2-6-3〉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추진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동물	수출	마리	7,488	45,734,948	8,488	76,857,815	9,013	25,741,746	8,619	68,191,118
		군	-	-	-	-	-	-	-	-
	수입	마리	8,320	1,216,782	10,029	3,541,885	9,633	1,446,715	8,285	889,275
군		2	70	-	-	-	-	1	20	
계	마리	15,808	46,951,730	18,517	80,399,700	18,646	27,188,461	16,904	69,080,393	
	군	2	70	-	-	-	-	1	20	
축산물	수출	톤	11,251	146,773	12,414	170,473	14,289	175,156	16,777	225,432
		천개	139	1,122	5	214	23	9	68	36
	수입	톤	144,449	2,125,598	161,165	2,545,147	156,705	2,506,157	139,621	2,130,591
		천개	464	2,823	458	970	414	1,161	391	1,194
	계	톤	155,700	2,272,370	173,579	2,715,620	170,994	2,681,313	156,398	2,356,023
천개	603	3,945	463	1,184	437	1,170	459	1,230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

### ▼ 평가 및 향후계획

해외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선제적인 국경검역 강화 조치로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공항·항만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경검역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주요 공항·항만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함께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외여행 축산 관계자 등에 대한 소독 등 검역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탐지견 투입과 X-ray 검색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외국 방문 시 축산농가 출입 자제 등에 대한 국경검역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위생정보에 대한 수집·검색을 강화하고, 법무부, 국토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경검역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더불어 과학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입허용절차의 진행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및 축산물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대국 수출 단계에서 해외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를 통한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도착 시 철저한 수입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및 축산물 검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 소비정책과 사무관 정승교

### ▼ 추진배경 및 개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 단계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그 위해요소를 사전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to-Table)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조직법 개편(13.3.23)에 따른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13.3.23)하여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되,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사육 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내성을 감소를 위하여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축하였으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한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를 마련(12.2.)하여 2013년 8월 시행하였다. 한편 사육 단계 HACCP 적용으로 항생제의 사용 절감, 생산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사육 단계의 HACCP 적용이 대폭 확대(11년 2,846개 농가 → '13년 5,310개 농가)되었다.

도축 단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라 도축장의 HACCP 운용여부를 점검하여 그 운용이 미흡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도축장의 HACCP 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립불능 상태의 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해면상뇌증(BSE) 우려를 감안하여 2009년 11월부터 부상 등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축을 제한하고, BSE 검사 후 사체는 폐기하고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

가공 단계에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HACCP 적용업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축·가공 단계의 위생수준 제고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잔류물질 100천건, 미생물 100천건에 대해 실시하며,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과거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비율을 높여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 역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히 식용란의 유통·판매 주체에 대해 법적 영업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계란을 포장하고 유통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도축장 위생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준수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에 관한 정책은 가축 사육 단계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From Farm-to-Table) 일관된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안심을 도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 사육 단계부터 위해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HACCP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생산 단계의 HACCP 적용 확대 및 최종 판매 단계까지의 HACCP 활성화 등 HACCP 인증과 인증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방역관리과 사무관 내인지

### ❖ 추진배경 및 개요

EU와 OIE(세계동물보건기구)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복지시책이 강화되고 있다. 우선 2004년 EU 헌법에 동물의 보호·복지 조항 명문화가 추진되었으며, 2006년에 EU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 2006~2010을 발표하였다. EU는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2004년 화장품 완제품, 2009년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였고 2013년부터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2012년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2013년에는 돼지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등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OIE에서는 2002년부터 동물복지 작업그룹을 중심으로 육상·해상·항공 운송, 도축, 질병 방역 목적의 살처분 등 9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여 2006년에 이를 제정하였으며, 육우 및 육계의 동물복지 생산시스템(Animal Production System)에 대한 지침도 추가 제정하였다.

국내의 경우 소득증대,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유실·유기



동물 및 동물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목줄·배설물 수거 등 동물소유자 의무를 위반하여 주민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험동물은 2013년 약 200여만마리가 사용되었으며, 동물실험의 정당성·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축산업은 그간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사양관리로 생산성 측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고 환경·동물복지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잃어버린 동물을 신속하게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한해 약 100억원의 유기동물보호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및 동물의 야생화로 인한 주민 위협·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2013년말 기준으로 69만 6천여마리가 등록되었다.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2년 산란계에 처음 도입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2013년 9월 돼지에 확대하였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관리의무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내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2013년 기준으로 46개 산란계농장이 인증을 받았으며, 돼지농장은 인증 심사중에 있다. 육류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육과정 뿐만 아니라 운송·도축단계에서도 동물복지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를 2013년 10월에 도입하였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실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윤리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의 3R원칙(동물실험 대체, 실험동물수 최소화, 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급하고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동물의 범위를 기존 포유류·조류에서 식용 목적이 아닌 파충류·양서류·어류까지 확대하고 동물학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물운송규정을 의무화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유포 행위도 금지하는 등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었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역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을 2013년 경기, 충북에 3억원씩 지원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령 및 관련 정책 이해도 제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초·중·고등학생,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TV, 라디오, SNS, 영화, 입양캠페인, 사생대회 등 동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복지정책에 관한 정보의 통합 관리·공개 및 안내를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및 동물보호 콜센터(1577-0954)도 운영중이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 실효성 증대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관련하여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및 젖소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한 소득감소 부담을 해소하여 동물복지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시범교육을 2013년 56개 학교에서 2014년 100개로 확대 실시하며, 일반인·동물소유자·동물복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캠페인 등의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제3절 친환경농업육성

### 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이상훈

#### ▼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은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과 조성에건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1995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원하였다.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 대·소규모지구사업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 또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는 별도로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중 10% 제고 및 농약·화학 비료사용량 40% 감축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방안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04.2)하여 농업환경 개선과 경종·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단지별 최소 600ha 규모로 조성되며, 2005년 기초조사와 설계 및 사업모형을 개발하였고, 2006년 3개 지역(완주, 순천, 울진) 선정, 2007년에는 6개 지역(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은 토양·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정책 추진의 세부 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의 목적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기타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단위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배양 등을 통해 토양을 개선하며 축산분뇨와 기타 농산부산물을 자원화 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 2012년까지 1,076 개소를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36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인증농가 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확충을 지원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등 친환경농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광역단위로 자원순환형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5%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반 영농구조,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3년에는 광역단지 신규 2개소와 2~3년차 사업 15개소에 국고 200억원의 지원을 통해 대규모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축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또 농업환경 개선, 친환경농업 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확대를 비롯하여 친환경 농업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시·군 단위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600ha 이상)와 마을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10ha 이상)를 지정·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 단지는 2013년 말까지 44개소를 선정·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3개소를 추가 선정·지원하는 등 총 사업비 4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13년 말까지 1,112개소를 선정·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30개의 지구를 추가 선정·지원 중에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총 1,3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광역친환경농업 단지는 2017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2. 친환경비료 지원

| 식량산업과·농기재산업팀 사무관 최남근

### ▼ 추진배경 및 개요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료를 과다

사용하여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감축·폐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6-4〉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

(단위 : kg/ha)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 국	257	340	311	267	233
미 국	117	124	121	104	108
캐 나 다	54	41	52	48	40
브 라 질	121	126	165	149	112
칠 레	334	357	399	457	438
호 주	48	40	41	34	29
일 본	323	309	326	259	219
중 국	370	392	434	415	432
영 국	271	252	252	207	238
프 랑 스	180	178	196	143	140

자료출처 : FAO

### ▼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는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 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다.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6년도 120만톤 420억원, 2007년 135만톤 473억원, 2008년 200만톤 1,160억원, 2009년 210만톤 1,218억원, 2010년 250만톤 1,450억원, 2011년 250만톤 1,250억원, 2012년 286만톤 1,434억원, 2013년 308만톤, 1,613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2-6-5〉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05까지	'06	'07	'08	'09	'10	'11	'12	'13
물 량	3,300	1,200	1,350	2,000	2,100	2,500	2,500	2,858	3,081
금 액	1,155	420	473	1,160	1,218	1,450	1,250	1,434	1,613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고 지원조건을 변경하여 2010년까지 포대(20kg)당 단가를 정액제로 책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 지원단가를 1~3등급으로 조정하여 등급별 지원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작물에 적합한 유기질비료를 시비하도록 개선하였다.

〈표 2-6-6〉 유기질비료 지원조건(국고, '13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퇴비(원/20kg)	1,2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의무부담(지사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맞춤형화학비료, 가축분퇴비 등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화학비료 가격 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2010년 465천톤 600억원, 2011년 541천톤 298억원, 2012년 496천톤 198억원을 지원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퇴비의 품질등급제 차등지원 등을 통한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강화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토양지력 증진, 농업환경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비료는 사용결과 효과 분석 및 신규 비종 설계 등으로 고농도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되, 2013년부터 국고 보조는 중단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 3.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이남윤

### ▽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들

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이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에 대해 매년 57억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37천ha에 대해 6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에 대해 287억원, 2009년에는 90천ha에 대해 345억원, 2010년에는 93천ha에 대해 376억원, 2011년에는 72천ha에 대해 305억원, 2012년에는 49천ha에 대해 294억원, 2013년에는 38천ha에 대해 24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6-7〉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단위 : 억원, ha, 천호)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급액	208	287	345	376	305	294	247
면 적	53,682	76,352	90,132	93,318	71,766	48,921	37,080
농가수	69	97	112	116	88	60	4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1년 전체경지면적의 0.2%(4,554ha)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8.3%(141,651ha)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2001년 전체농산물생산량의 0.2%에서 2013년에는 7.0%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 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2009년까지는 1회 실시하였던 이행점검을 2회까지 실시하도록 시군구에서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임야의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고 관리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엄격한 대상 관리를 위해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도 중 인증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 인증연장 신청 고지와 함께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 통지 시 향후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여부 통지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농약 및 유기재배 직불금 지급단가를 약 50% 수준 인상하였고, 유기재배에 한해 지급기간을 종전 3년(3회)에서 5년(5회)으로 연장하였다.

2013년부터는 이행점검 강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기간을 3.1~3.31까지(30일)로 단축하고,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통해 친환경인증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비료 사용량이 2004년 385kg/ha에서 2013년 256kg/ha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농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40천ha에 대해 269억원을 지원하고,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인증현황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 편의를 위하여 변경 항목 및 신청서식을 추가하며, 이행점검 종료 이후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농가의 직불금 수령 방지 및 관련 내용 확인 편의를 위해 지자체 통보절차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감소분 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을 고려하여 유기지속직불을 도입하고, 품목별 재배난이도를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차등화 하는 등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4.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이남윤

### ❖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생산부터 유통단계 까지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효율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전국친환경농업협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미래 소비자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추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 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2006년 8억원 신규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16억원, 2008년 14억원, 2009년 21억원, 2010년 15억원, 2011년 13.6억원, 2012년 13.5억원, 2013년에는 14.6억원을 조성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



행사, 시장개척,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사업을 통하여 5대 광역시 지역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홍보 CF를 제작·송출하였으며,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친환경농산물 유통정보지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였다.

###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용자)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08년 36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 400억원, 2011년 310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에는 445억원(추경 145억원 포함)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된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결제자금(용자) 1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물류센터에 입주한 친환경법인의 자금운용 부담을 경감하여 물류센터 운영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은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6~'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29, 지방비 251)을 투자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부지 69천㎡, 건축연면적 26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경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12년 10월에 건립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산지중심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수도권 등 대량 소비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호남권(나주시)에 총사업비 289억원(국비 144.5, 지방비 144.5)을 투입하여 부지 30천㎡, 건축면적 14천㎡ 규모로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친환경

자조금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조절·가격안정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 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체험 확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방역관리과 서기관 박홍식

### ▼ 추진배경 및 개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등 제도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 발생 등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와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 도입 등 친환경축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축산정책 전환, 경종농가와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2009년부터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 목적은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소득 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업 주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지원대상은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지원대상 축종은 한육우·젓소·돼지·닭·계란·오리(알) 등 7개 축종을 정하여 추진하였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경종농산물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농가당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20백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지원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6-8〉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지급단가

(단위 : 원/개, 마리, ℓ)

구 분	한 우	젖소(우유)	돼 지	산란계(계란)	육 계	오 리	오리알
유 기	170,000	50/ℓ	16,000	10/개	200	400	20/개
무항생제	65,000	10/ℓ	6,000	1/개	60	120	2/개

주) 육우는 한우의 50%감액, 토종닭은 육계의 30%증액 지급

2013년도에는 예산 10,025백만원 중 1,314농가에 약 9,995백만원이 집행되었고, '09년 이후 인증농가 수 및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친환경 축산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표 2-6-9〉 친환경 축산물 인증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가 수(호)	763	2,904	4,477	6,345	6,787	9,701	10,845
출하량(톤)	13,562	148,286	309,546	404,196	500,762	569,637	934,627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직접지불제 시행(2009)

### ▼ 평가 및 향후계획

유기인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단가는 축종별로 실제 소득감소분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고, 지급기한을 유기농산물과 동일하게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급대상 축종을 현재 7종에서 산양·메추리를 추가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16,28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7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 제1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차희수

##### ▼ 추진배경 및 개요

2009년 4.9조 달러였던 세계 식품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6.4조 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IT산업보다도 3.5배 이상 큰 규모다. 국내 식품시장 역시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유명 식품기업들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다양화되는 식품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의 틈새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식품 개발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웰빙, 다이어트, 건강 관련 식품 등 새로운 식품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특히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세계 식품시장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세계 식품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나,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미흡한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의 확대를 통해 민간의 R&D 투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1년부터 6대 부문 18개 핵심기술로 확대하여 추진 중이며, 중점

추진방향으로 글로벌 시장대응 수출 상품화를 위한 전통식품 상품화, 국내 기능성 강화식품 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 확대, 우수한 품질의 식품 공급을 위한 식품 품질관리기술,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식품소재, 식품 기자재, 저탄소·신가공 기술 분야를 신규 지원하였다.

〈표 2-7-1〉 6대 분야 18대 핵심기술

6대 분야	핵심기술
기능성강화 식품	①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② 질병예방·건강증진용 식품개발 ③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전통웰빙식품	④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⑤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 ⑥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품질관리	⑦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⑧ 식품의 원산지 및 위·변조 판별기술 ⑨ 고효율/표준화 물류시스템기술      ⑩ 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식품핵심소재	⑪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⑫ 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식품기자재	⑬ 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⑭ 식품기계 개발기술 ⑮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저탄소·신가공	⑯ 저탄소 식품가공기술      ⑰ 고효율 식품가공기술 ⑱ 융복합 식품가공기술

2013년에는 총 160개 과제에 3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이전에 선정되어 연구 중인 109개 계속 과제에 181억원과 신규 과제로 51개 과제를 선정하여 127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정공모과제는 일반지정 20과제 62억원과 수출품목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5과제 22억원 규모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였다. 자유응모과제는 연구기관에서 자유롭게 응모하는 과제로서 179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제품개발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와 기술 수준 향상,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6개 과제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연구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 식품산업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식품 R&D 정책방향을 주도하고 신시장 창출 및 식품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R&D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2.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차희수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도농 간의 소득 및 서비스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자생적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최근 FTA 체결 확산으로 농업은 피해집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타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의 도모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목표이자 7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식품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2011년에는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의 개편 및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발표 등 농어업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차 산업인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광역클러스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농수산물 및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산업화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77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019년까지 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1년 사업단 선정 시부터는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식품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즉, 기존 품목별 클러스터사업에서 지역 특화품목을 광역화하고, 식품가공업과 연계하여 산업화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업을 2·3차 식품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부터는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사업 개시 전전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년도에는 사업계획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충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농공상 융복합형 중소기업 육성

농식품산업은 IT·BT·N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 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을 활용한 농공상 융복합형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1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상 융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육성전략에 따라 농공상 융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동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농공상 융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지정완료하고 정책 금융 지원 강화, R&D 투자 강화, 마케팅 지원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농공상 융복합형 중소기업 지정 후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24% 증가하였다.

〈 농공상 융복합형 중소기업 유형 및 지정현황〉

- 공동출자형 : 농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 전략적제휴형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 농어업인경영형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단계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미용제품 등을 생산

지정년도	업체 유형별 지정현황			계
	전략적제휴형	농어업인경영형	공동출자형	
2012	135	49	1	185
2013	90	23	2	115
계	225(75%)	72	3	300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과 식품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7개 사업단 육성을 계기로 지역 농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한 우수 사례를 양산하는 등 사업이 정착 중에 있다. 향후에는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 개시 전전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년도에는 사업계획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성과 평가, 사업관리 강화 및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 지역전략식품산업 우수 사례 〉

- 경북 감 클러스터사업단 : 감 부산물(상품성이 떨어진 감, 껍질 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14건)을 통해 국내유통(상록프라자 등 입점, 홈쇼핑) 및 수출(캐나다, 일본, 대만 등 3억7천만원 수출)로 소득증대
  - \* 사업단 매출 : ('09) 7억 → ('10) 16 → ('11) 42 (500% ↑)
  - \* 참여기업 매출 : (초년도) 60억 → ('11) 100 (67% ↑)
  - \* 사업단의 주주는 네이처팜, 청도반시연합회, 상주F&G영농법인 등으로 농어민 지분율이 97.3%

한편 '농공상 융복합형 중소기업 육성'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 및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융복합형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우수 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융복합형 중소기업이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3. 전통 발효식품산업 활성화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황신구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산업의 규모<sup>7)</sup>는 약 4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식품산업 시장규모 (130조원)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효식품의 경우에는 약 3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전통 발효식품 산업 규모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건강잡지 'Health' 지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sup>8)</sup>에 발효식품이 3개가 선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발효식품은 건강식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도 영양학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식의 우수성에 문화를 접목해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국내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농어가 소득향상과도 직결되는 산업이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는 김치·장류·전통주 등 전통 발효식품산업 육성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7) 2012년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업원 수 10인 이상)

8) 세계 5대 건강식품(2006년 11월 미 'Health' 선정) : 김치, 올리브오일(스페인), 요구르트(그리스), 렌즈콩식품(인도), 공발효식품(일본)



##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식품의 소비 형태는 기술과 경제여건 개선으로 품질 외에 편의성, 안전성, 건강기능성 등이 중요시 되면서 유기식품(organic food),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 등 고부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건강·웰빙식품을 찾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은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통 발효식품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그동안 품질 개선·제품개발 등에 연구투자가 미흡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연구실적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발효기술 응용을 통한 다양한 고부가 전통 발효식품 개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 기반을 산업화·현대화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전통 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 개선·기능 규명·R&D 투자 확대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홍보·마케팅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82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전통식품산업의 체험·관광과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확대, 식품명인제도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명인 홍보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였다.

### ▼▼ 전통 발효식품의 세계 명품화 지원

전통 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적인 정보·통계조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해외 장류요리경연대회 개최, 전문지 기획기사 연재, TV 다큐 제작 등을 통해 전통 발효식품의 영양학적·기능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와 함께 전시·체험·시식 행사 및 전통식품업체 소비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전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과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식품명인의 해외 선진지 연수, 연찬회 및 우수 제품 판촉전 실시, 농협 하나로마트 식품명인 전문 홍보·판매관 설치 등 식품명인 활성화 및 판매·유통망 구축 등 판로 확대도 추진하였다.

### ▼▼ 전통 발효식품의 시설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 확충

전통 발효식품업체 대부분이 연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생산시설을 신축·증축·증설·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연 금리 3%~4%,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의 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2011년 6.9억 원, 2012년에는 6.2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에는 전통 발효식품의 시설현대화사업이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합(346억 원)되어 지원되었다. 전통 발효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는 제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업체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 ▼▼ 전통 발효식품의 6차산업화 추진

기존 농촌의 농산물 생산·가공 중심 구조에서 탈피하여 관광·서비스 3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 열차 연계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역 전통식품 직거래장터 개최 등을 통하여 전통식품체험과 철도여행을 융합, 전통식품산업의 6차산업화 추진하였다. 기존 철도 여행과 차별화하여 전통식품 체험에서 지역 관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모델 창출하였으며 코레일 5대 관광벨트열차와 연계하여 명인 및 전통식품 인식제고 및 소비 확대 추진으로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 식품명인제도 활성화 계획 수립

'94년부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 해왔으나 명인제도의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하여 제도운영이 소극적·단편적이었으며 정책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6차산업화를 위한 체험전수관 건립, 계약재배지원 및 판로확대를 위한 식품명인관 확대, 수출확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명인제도 활성화 계획을 2013년 7월 마련하여 설 추석맞이 명절 식품명인 홍보관 운영, 하나로마트 식품명인관 운영, 우체국 쇼핑몰 지원 등 체계적인 식품명인 홍보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전통 발효식품 육성지원은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기반 현대화 및 품질 개선,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전통 식품산업의 체험·관광과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등 전통식품산업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식품명인제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소극적

이며 단편적 이었던 식품명인제도의 운영이 식품명인홍보관 운영, 우체국 쇼핑몰 지원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명인 홍보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는 세계 각국의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우리의 우수한 발효식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및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전통식품 및 식품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품평회·전시회·시음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통 발효식품을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4. 전통주 등의 체계적 산업 육성

▶ 식품산업진흥과 서기관 문태섭

##### ▶ 추진배경 및 개요

2012년 국내 술 시장은 출고가 기준 약 8조4천억 원 규모로,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는 전체 술 시장의 6%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술 산업을 활성화하여 품질 고급화 및 세계화를 위해「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09.8.26. VIP보고)하고,「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0.8.5. 시행)하여 우리 술 산업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통주 등의 체계적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진흥기반 조성,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품질 고급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 ▶▶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실시

전통주 산업을 6차 산업화 하여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전통주의 저변을 확대하여 전통주 판로를 확대에 기여코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주질관리, 홍보, 스토리텔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양조장을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명소로 조성하고, 향후에는 양조장 관광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도에는 2개소(충남 당진 신평양조장, 충북 단양 대강양조장)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광객 체험 행사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방문객 현장 구매 등을 통한 실질적인 매출액 상승효과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향후에는 '17년까지 30개소를 선정하여 지자체, 유관 기관 등과 협의하여 선정된 양조장이 지역 내 관광코스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여 지속적인 체험·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생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 ▼▼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개최

'2013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유망 지역행사인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와 연계 추진하여 지역발전 기여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 행사는 우리 술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 브랜드를 선정·육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8개 주종별로 우수 제품 4점씩(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32점을 선발하였다. 각 시도 예비심사를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통하여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 후 입상한 제품은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국내 유통업체, 해외바이어, 해외공관 등에 배포하고 국내 각종 행사 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 ▼▼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 개최

우리술 시장 확대 및 국민적 축제의 장 마련을 통한 막걸리 등 우리 술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 촉진을 위해 '201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다. 이번 대축제는 전통주 산업진흥기반 조성 및 비즈니스 성격강화를 위해 KFS(Korea Food Show 2013)와 통합시행하였다.

이는 소비자에게 우리 술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려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자에게는 타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품질 고급화 및 상품성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술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간 산발적, 비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유사행사를 동일 시기, 장소에서 통합·연계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 술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다.

### ▼▼ '막걸리의 날' 행사 개최(햅쌀막걸리 전국 동시 출시 판촉전)

막걸리 소비촉진, 시장 활성화 및 세계화를 촉진하고자 쌀 수확 철과 연계하여 '막걸리의 날' (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 '13.10.31)을 지정하고, 이 날을 기점으로 전국의 양조장,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2013년산 햅쌀막걸리를 동시에 출시하는 햅쌀막걸리 전국 동시 출시전이 국내 제조업체, 중간 유통

업체, 전국 유명 판매업체의 협조 하에 추진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국내외 막걸리 붐(Boom)을 되살리고 우리 술 세계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햅쌀 막걸리 한·일 동시 출시행사도 마련하였다.

이는 당해년 햅쌀로 제조한 막걸리로 유통을 차별화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 ‘보졸레누보’ 출시 행사와 같은 콘셉트로 ‘막걸리의 날’ 이전에는 당해년 햅쌀막걸리 출시를 자제하고 ‘막걸리의 날’에 맞춰 동시 출시하는 판촉전이었다. 햅쌀막걸리 동시 출시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하고 햅쌀막걸리 표시 태그(Tag), 스티커 및 판매장 홍보포스터 등을 일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 ▼▼ 전통주 홍보 및 판매 행사 추진

막걸리 등 전통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막걸리의 국내외 홍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막걸리 UCC 공모전’을 개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또한 전통주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통주 판매·유통이 가능한 유통업체 지원을 통해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였고, 전통주 관련 홍보관을 지원하여 전통주 및 막걸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 ▼▼ 술 품질인증제 활성화

2010년 8월 5일 품질인증대상 품목(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및 품질인증마크를 고시하였다. 2010년 10월에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품질인증에 대한 세부기준을 고시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로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다. 2012년에는 술 품질인증대상 품목에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를 추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술품질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술 품질인증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술 품질인증제는 생산자의 경우 공들여 만든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도로 우리 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품질인증제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술 다양화 및 고급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술 산업진흥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 촉진을 위해 전통주 기반 조성 및 품질 고급화, 우리 술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5.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서기관 조규표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내의 농림수산물 생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식품산업 분야는 식생활소비 패턴이 외식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식품시장규모는 2010년 약 5.1조달러로 IT 시장(3.5조) 및 자동차 시장(1.6조)의 2~3배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 인구증가 및 신흥개발국 성장에 따라 2020년에는 6.4조달러로 성장이 예상되고, 이 중 아태지역이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Datamonitor, '11)

한편으로 국내 식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R&D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마케팅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업원 50인 미만인 업체가 약 85%를 차지하고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30~65%(국가과학기술위원회), 매출액 대비 R&D 투자규모는 0.57% 수준으로 선진국(1.6~2.6%)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일원 약 232만㎡의 부지에 식품기업과 식품연구소 등이 집적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식품연구소, 식품 관련 대학, 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적효과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35억원(국비 1,371, 지방비 622, 민자 3,542)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2만 3대 핵심 R&D센터 등 6개 H/W를 구축하고 R&D와 인력양성 등 10대 기업지원 S/W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이루어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08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를 전북 익산(왕궁면 일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그 사업시행은 LH 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7.15)

2009년에는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09.11)와 지자체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3대 영향평가(환경·재해·교통)를 거치고, 2010년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1.25)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 산단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중앙·지자체·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2011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의 국내외 식품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담당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11.2)하였으며, 2012년 3월 2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정책실 직속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신설하였다.

산업단지 조성 분야는 LH 공사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요청(11.12)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승인을 받아 2013년 하반기 중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2014년 3월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였고 16년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6개 기업지원시설은 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고 현재 공사준비(2014년 7월말 착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까지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관 운영을 통해 총 88개 기업체·연구소 등과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2015년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 완공 목표에 맞춰 기업지원시설 구축 및 기업투자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기업과 세계적 연구소의 유치가 필수적인 바, 투자유치 타깃기업과 연구소를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IT 등이 접목되고 정주·교통여건이 우수한 미래형 식품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 LH 공사,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6. 식생활 교육 추진

| 소비정책과 사무관 김진수

### ▼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서구화된 식문화의 무분별한 유입과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으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도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 및 중요성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으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우리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실정이다.

- \* 비만인구비율(19세 이상) : ('01) 29.6% → ('11) 31.4%(10명중 3명)
- \* 당뇨병(30세 이상) : ('01) 8.6% → ('11) 9.8%(10명중 1명)
-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연간) : ('05) 약 6천억원 → ('10) 약 8천억원

이에 2008년 12월 수립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의 3대 추진전략인 '안전 농식품 공급'의 세부 추진과제로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홍보 강화'를 제시하였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09.4)되고 공포('09.5)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설립('09.12) 되면서 정부 정책의 파트너



로서 민간기관이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개선,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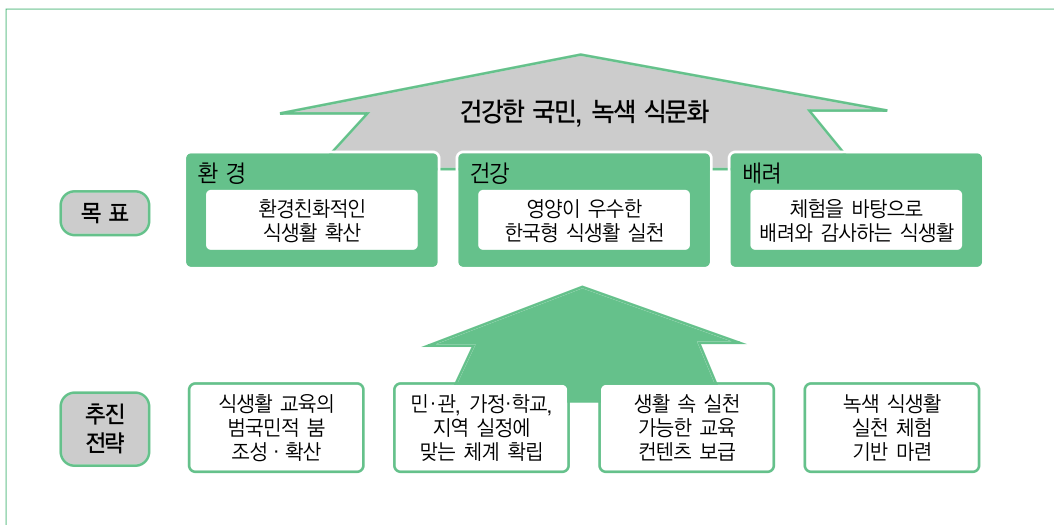
-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 등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식생활 교육 위원회**
  - 국가식생활교육 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장관, 민간위원 공동)
  -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 식생활 조사·연구**
  -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조사·연구
-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또는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건립 및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
-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지원, 식생활 교육 참여자(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연수기회 제공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10.2)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및 제1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10.4.2) 심의를 거쳐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실천방안, 농어업인과 소비자 교류촉진, 체험활동 활성화,

재원조달 등을 포함하는 '5개년(10~14)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10.4)하였다. 바른식생활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환경),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배려)하는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생산과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2-7-1〉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목표, 추진전략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바른 식생활의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0년부터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식생활 교육 다큐멘터리(KBS 과학카페 4부작) 및 공익 캠페인(지상파·케이블 TV, 라디오 등) 전개, 홍보물(리플릿, 포스터)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가정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문제점 인식 및 개선 의지를 유도하는 등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아 단계 식생활 교재·교구 개발, 초·중·고등학생 교육교재 보급 및 가정식생활 수첩(2010년부터 매년 100만권씩 400만권)을 제작·보급하는 등 활용 가능한 식생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바른 식습관 형성에 대한 교육효과가 높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녹색 식생활 및 전통음식 체험을 위해 바른식생활체험학교(방과후 교실)와 농어촌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바른식생활교육 시범 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단위 식생활교육 및 체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체험 중심의 식생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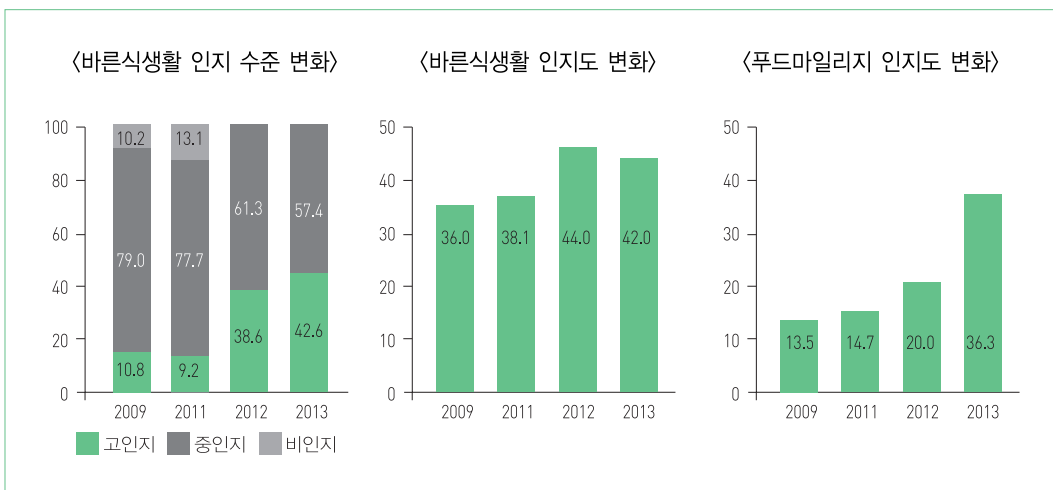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식생활교육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일반 국민들이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여 바른식생활 범국민 확산을 도모하였다. 한편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주체인 교사, 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식생활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 및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0~14)’은 ‘환경’, ‘건강’, ‘배려’를 핵심가치로 이를 반영한 녹색 식생활의 개념을 재정립, 기존 영양적 균형 중심의 식생활 교육에서 환경과 배려까지 고려하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문화’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바른 식생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바른식생활 인지도 및 푸드마일리지 인지도 변화 등 전반적으로 바른 식생활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국민들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바른식생활 실천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2-7-2〉 2013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주요결과



2013년 이후에는 교육·체험기회 확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강화, 식생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하여, 지난 3년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민간 주도의 식생활 운동을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바른식생활 실천이 전 연령대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연령·계층별 맞춤형 홍보 및 체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국민들이 바른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식생활개선 국민 캠페인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활성화

| 식량산업과 사무관 송재원

### ▼ 추진배경 및 개요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정체 혹은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소비는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쌀 재고량도 적정수준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과 쌀가공산업 육성을 추진, 쌀 수요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쌀 시장의 안정을 꾀하여, 주식인 쌀에 대한 이해와 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쌀 소비 활성화와 관련, 초기에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건강·편의식 소비층 증가에 따라 밥 중심의 쌀 소비에서 고부가 쌀가공 제품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시판되고 있는 쌀가공제품 중에서 「우수 쌀가공제품 Top 10」을 선정하여 가공업체의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쌀가공제품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방송, 신문 등 매체 홍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쌀 박물관을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관련 협회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우리

주식인 쌀의 중요성과 쌀 제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쌀가공산업 육성과 관련, 쌀가공업체의 경영개선과 시설개선 자금지원사업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구매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쌀가공업체의 가공용 원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08년부터 재고미를 중심으로 정부관리 쌀을 할인하여 공급하였다. 한편 쌀가공업체의 정부양곡 의존성을 개선하고 생산제품에 적합한 원료 쌀 공급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용 쌀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08년 269천톤에서 2013년 471천톤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떡류,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면류 등 간편 식사용 가공식품의 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 말 기준 쌀가공산업 시장 규모는 약 3조 3천억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11.11월)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2년 5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향후 쌀산업이 1차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쌀가공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은 이벤트 중심의 단기적인 홍보는 지양하고, 쌀가공제품에 대한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능성 홍보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

###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진흥팀 사무관 유재형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식품 수출은 FTA 등 글로벌 개방화 환경에서 우리 농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내로 유통될 물량을 해외로 격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출로 국내 유통량이 감소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농가소득 지지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은 국내 가격 안정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농림업 생산액 증가에도 기여한다. 또한 수출을 통해 국제 수준의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농식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 HACCP, ISO, GAP 등 안전성과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낙후된 국내 농식품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농식품 수출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 신선농산물 수출은 휴대폰 수출에 비해 1.9배, 가공식품은 1.8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의 경우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이 휴대폰 수출에 비해 각각 1.3배, 2.5배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식품 수출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2010년 농식품 수출확대지원 정책의 고용효과는 27,256명으로 분석되었다. 용자사업의 10억원당 생산유발효과는 185.4억~190.8억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촉진사업 348.7억~255.4억원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용자사업에 비해 해외시장개척 및 판매촉진사업이 여타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고용 측면에서도 더 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식문화 전파를 통한 국가 위상 및 품격 제고, 농어업의 자신감 회복, 식량안보 및 환경유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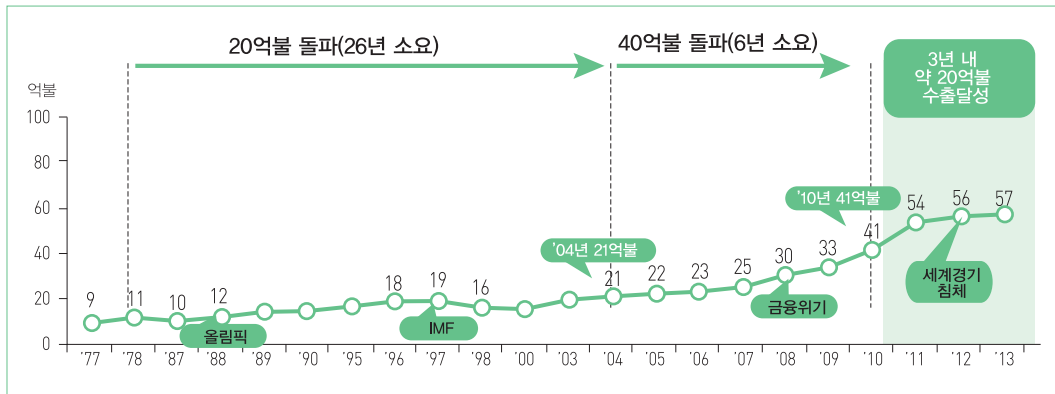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5,724.6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이는 당초 기대

에는 미치지 못한 실적이나 엔화환율 약세, 유럽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시장다변화 노력과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증가로 이뤄낸 성과이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신선농산물은 2012년 대비 9.4% 증가한 1,180.5백만불, 가공식품은 0.5% 감소한 4,544.1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엔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은 9.4%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림 2-7-3〉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 농식품 수출액 : ('88) 12억달러 ... ('04) 21 → ('10) 41 → ('11) 54 → ('12) 56 → ('13) 57

〈표 2-7-2〉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A)	2013(B)	증감률 (B/A)
농식품 합계	1,579.7	2,304.4	2,531.8	3,048.2	3,298.1	4,081.8	5,383.5	5,644.8	5,724.6	1.4
· 신선농산물	529.3	535.5	597.1	675.0	739.3	873.9	1,015.3	1,079.4	1,180.5	9.4
· 가공식품	1,050.4	1,768.9	1,934.7	2,373.2	2,558.8	3,207.9	4,368.2	4,565.4	4,544.1	△0.5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ASEAN(19.0%), 미국(10.5%) 등 FTA 체결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8.6), EU(△4.5) 등은 엔저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미국의 수출 증가는 라면, 홍삼, 김치 등의 FTA 관세혜택과 K-Food Fair 등 지속적인 마케팅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ASEAN의 경우는 한류의 영향, 식품박람회·K-Food Fair 등 40회에 걸친 홍보·관촉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은 엔저 영향에 따른 수출업체 채산성 악화와 일본 내 수요 감소로

화훼류 및 라면, 막걸리 등 수출 감소가 전반적인 수출 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 5.2%(10개국)를 차지했던 1억불 이상 수출 국가는 적극적인 시장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싱가포르가 추가된 총 11개국으로 전체 수출대상국(203개국) 대비 5.4%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국 대비 주요국 수출비중은 85.0%로 최대 수출국가인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전년(24.9%) 대비 2.4% 감소(22.5%)하여 점진적인 시장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7-3〉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EU
2013년 수출액(백만달러)	1,286.6	947.5	522.7	244.4	346.0	234.5	985.1	297.9
국가별 비중(%)	(22.5)	(16.6)	(9.1)	(4.3)	(6.0)	(4.1)	(17.2)	(5.2)
전년 대비 증가율(%)	△8.6	4.5	10.5	△2.8	28.7	4.1	19.0	△4.5
5년 평균 증가율(%)	7.4	23.6	12.2	3.0	18.2	14.2	25.9	11.5

\* 1억달러 이상 수출국 :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태국, 대만, 러시아, UAE,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농식품부는 2008년 「12년 농식품 100억불 수출 추진대책」에 따라 농식품 수출을 뒷받침할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수출 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해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2013에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농식품 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가 소득연계 효과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19개 수출 전략 품목을 지정하였다.

〈표 2-7-4〉 19개 수출 전략품목

구 분	품 목
신선식품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백합,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식품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유, 막걸리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사업이 중요하다. 국제박람회 참석은 권역별 대표 박람회 참가와 더불어 유망권역, 벤더 발굴, 미개척시장 등 전략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로 확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종합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34회, 개별 업체의 박람회 참가지원 155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대규모 판촉행사와 대형 전문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를 개최(3회)해 한국 농식품의 대량수출체계 구축과 해외시장 다변화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재외공관 연계 홍보와 미디어 광고, 소비자체험 마케팅 등을 활용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 5개국에 스텝인숍 형태 등의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새로운 해외 수요를 창출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 '13년부터 적용되는 물류비 산정단가는 물가 및 운송비,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08년 산정단가 대비 해상운송 5.9%, 항공운송 22.9% 상승된 물류비단가 현실화를 통한 업체 지원확대로 '13년 지원수출량은 190천톤으로 전년대비 6.3%증가 하였는바 이는 국가전체 농식품 수출량의 증가율인 2.8%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아울러 고품질의 농산물 수출을 유도하기 위한 집중 육성되고 있는 선도조직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인센티브 선정시점 이후 5년까지 종료시점 확정 및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비율 조정으로 일부조직에 대한 편중지원을 완화하였다.

전략품목 및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한 전략시장 인센티브 지원제도는 주 수출국을 제외한 차하위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하여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7%를 지원토록 개선하여 전략품목의 전략시장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다.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대기업기준도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하여 기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하였으며 수출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의 수요가 많은 수출보험, 해외인증등록 지원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안전지킴이, 선도유지제 지원 등 자부담 비율 완화를 통한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대한항공, 동방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수출업체 물류비용 부담 완화로 신선농산물 항공 수출 확대를 가져왔다.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980년부터 수출용 원료구매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95년부터 수출 부대 경비를 각각 지원하던 것을 2008년부터 “운영활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지원 하였으며, 2013년부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우선배정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현재 한국 농식품 수출은 일본, 미국 등 기존 시장에서 신규 시장으로 다변화되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주력 시장인 한국과 식문화가 유사하고 근거리에 있는 일본, 중국(동부연안), 미국 등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5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 등의 위기에 취약하고, 이들 시장에서 한국 업체 간 과당경쟁 발생, 현지 업체와의 가격경쟁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륙시장 진출, 러시아, 남미, 중동 등 적극적 신규 시장 개척이 절실히 필요하다.

농식품부 출범 이후 기존의 신선농산물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가공식품까지 정책영역을 확장하였다. 가공식품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농식품 수출의 상위품목도 대부분 가공식품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출물류비 및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대상에 식품업체들도 포함시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체 및 관계기관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농식품 수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내 공급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김재민 · 도경록

###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한식(韓食)을 포함한 한(韓)스타일<sup>9)</sup> 육성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6년

9) 한(韓)스타일(HanStyle)이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 등의 전통문화에 담겨 있는 한국적 양식을 일컫는다.

6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중 한식 분야는 농림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부는 20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sup>10)</sup>를 목표로 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식 조리법 표준화 및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본 실태조사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08년 농림수산물부가 2월에 출범하였고,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령이 정비되어 한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4월에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식 세계화 5대 전략」<sup>11)</sup>을 마련하여 국내와 해외로 나눠 9대 중점과제<sup>12)</sup>를 확정하고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식의 국내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식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한식 산업화 세계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2009년 4월 7일 한식 세계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후 범부처적, 민간 참여적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한식 세계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2010년 3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본격적인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식 재단을 설립하는 등 한식 세계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한식 세계화는 현재 초기 실행 단계로서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 등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3년까지 뉴욕, LA, 동경, 오사카, 상해, 연변, 홍콩, 파리, 런던, 애틀랜타, 시드니, 오클랜드 등 해외 주요 도시에 12개 해외한식당협의체를 결성하고, 한식 홍보행사, 종사자 교육, 한식당 맛지도 제작, 홈페이지 구축, 메뉴판 교체 및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였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 여러 국제행사 시 한식 오·만찬 제공, 한식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한식을 해외에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으며, 한식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그 결과를 한식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시험 연구를 수행하였고, 해외 우수 한식당 발굴·홍보를 통한 한식의 이미지 개선 및 한식 저변 확대를 위해 유럽, 일본, 미국, 중국 등지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10) 세계 5대 음식은 일반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태국을 일컬으며, 한식은 ethnicfood 중 20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미국 NRA, 2002)  
 11) 5대 전략 : ①인프라 구축 ②R&D 확대 ③인력양성 ④기업투자 활성화 ⑤식문화 홍보  
 12) 9대 중점과제 : (국내) ①법·제도 마련 등 한식 산업기반 구축 ②한식 요리명장 양성 ③스타 한식당 육성 ④한식 체험 기회 확대 (해외) ⑤한식 세계화 R&D 확대 ⑥국산 식재료 공급 활성화 ⑦한식 이미지 제고 ⑧한식 문화 알리기 ⑨한식 브랜드 100 프로젝트

또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정’, ‘향토음식 전문가과정’ 및 ‘북한음식 전문가과정 등 단기 심화과정을 운영하였고, 학교교육시스템을 활용한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4개교와 고교 1개교를 ‘한식조리 특성화학교’로 지정하였으며, 해외 한식당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연간 1,400명 수준)도 실시하였다.

지속적 성장 추세인 국내 외식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식산업진흥법이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6개월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외식산업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식산업진흥을 위한 육성정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통한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의 본격적인 한식 세계화 활동에 맞추어 언론 등에서도 한식 세계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한식 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11월 국내 여론조사 결과 국민 92%가 한식 세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80%가 실현 가능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국민적 관심을 얻었다. 외국인들의 한식 선호도 역시 가시적으로 상승하였다.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한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 9%였던 한식 선호도가 2011년 41%, 2013년에는 65%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최고 미식축제인 ‘마드리드 퓨전 2012’에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주빈국 행사를 주관하는 등 한식의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었다. 아시아 지역 특급호텔 레스토랑 중 홍콩 하버 그랜드호텔(11.1), 베이징 르네상스 호텔(11.9), 상해 메리어트 호텔(11.10), 홍콩 샹그릴 라·카오룽 호텔(12.1), 스페인 마드리드 인턴컨티넨탈 호텔(13년) 등 14개 호텔에 한식이 고정메뉴로 입점되었고, 해외에서 미술랭 스타 한식당 5개소(미국 2개소, 일본 3개소)가 한식당 사상 최초로 탄생하는 등 한식이 ‘파인다이닝’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한식의 세계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내 한식 기업의 해외진출 및 농식품 수출도 증가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한식 기업의 경우 2008년 27개 업체 109개 점포에서 2010년 10월 기준 30개 업체 172개 점포로, 2011년 37개 업체 210개 점포로, 2013년 45개 업체 257개 점포로 증가하였다. 농식품 수출액도 2008년 45억달러에서 2010년 59억달러, 2011년 77억달러, 2013년 79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지금까지의 한식세계화사업이 한식을 해외에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국내 한식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확산을 병행(two-track)하는 방향으로 한식 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분야별로 특색있는 우리 음식을 발굴·표준화하고, 한식 홍보 영상·요리법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문화적·역사적 한식 원형자료 D/B화·자원화 등을 추진하는 등 한식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중적인 우리 음식을 세계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국내 한식·외식기업들에게 해외 주요 도시별 외식시장 정보 제공,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현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한식의 해외 확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한식교육은 한식학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참가 지원 등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 한식강좌 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향토음식 등 음식과 농업·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음식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2014년은 외식산업진흥법과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근거로 다양한 외식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력, 정보·통계 측면의 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외식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경영주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 외식업경기지수, 국내 외식 트렌드,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등 정보·통계 제공기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교육, 경영 개선, 공통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외식업 지구'를 육성하여 많은 외식업 지구의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를 운영하여 우수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강도를 낮추고 우리 농식품의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외식업체에 우수 식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외식 기업과 산지가 함께 만나는 '산지 식재료 Fair'를 개최하며 '외식 식재료 전문몰'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외식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8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 제1절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 1.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농촌정책과 사무관 신지영

#####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고령화, 과소화 되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월)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04.12월)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으로 복지·교육·생활인프라 등 농어촌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도시와 농어촌간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여전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여건의 개선이 미흡하여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는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하였다.

〈표 2-8-1〉 도시-농어촌 서비스 차이

구 분	도 시	농어촌
약국 비율(2012)	91.5%(19,170개소, 시지역)	8.5%(1,783, 군지역)
보육시설 설치 비율(2013)	81.1%(35,501개소)	18.9%(8,269개소)
상수도 보급률(2012)	98.9.%(시지역)	62.2%(면지역)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치의 최소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제도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었다.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0~14) 기본계획 수립(09.12월)으로 제도의 도입·운영 계획이 구체화되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10.7월)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11.1월)을 거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2-8-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부문	항목	세부내용
주거 (5)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통 (3)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교육 (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3)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 (5)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2)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서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부 문	항 목	세 부 내 용
안전 (4)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방범 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문화 (3)	독 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정보통신 (1)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9개 분야(①주거, ②교통, ③교육, ④보건의료, ⑤복지, ⑥응급, ⑦안전, ⑧문화, ⑨정보통신) 32개 항목을 45개 세부기준으로 나누고 53개 지표로 통계 DB를 구축하여, 농어촌 138개 시·군 단위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12.16)하였다.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항목별로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하수도 보급률,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경찰출동, 읍·면내 의약품 구입,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제공 등에서 달성비율이 높았고, 항포구 방범용 CCTV 설치, 인도설치,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운영, 마을별 월 1회 순회방문, 방범용 CCTV 설치 등의 항목은 달성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백두대간이 지나는 강원, 경북·경남 지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종합 이행지수 분석결과, 경기 동부·남부, 충청 북부, 광역시 인근지역의 이행지수가 높은 반면, 경북·경남 지역과 전남·전북 일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강원 지역의 경우는 일부 시·군의 종합이행지수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반면, 경북 지역은 반대로 악화된 시·군이 일부 존재한다.

군과 도농통합시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교육, 보건의료, 응급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부문에서 도농통합시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률,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본격적 시행(11.1월)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기준과 정책수요 증가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치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 부문, “경찰 순찰” 항목을 신설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기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13.9월)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세부 내용 및 목표치」 고시를 개정(13.9월)하였다.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개념 정의 및 통계 DB 구축 등에 대한 관계부처, 전문가 자문을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를 개최(13.9월)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 수립(14.12월)을 계기로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 점검·평가, 환류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2.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 농촌정책과 사무관 신지영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 도시와 같이 공공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계절제 근무, 경제활동인력의 특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 농어촌 여건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농어촌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농어촌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고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면서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이 결정(09.12월)되었고, 이후 농어촌영향평가로 제도명을 변경하여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위한 마련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11.7월)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영향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자체평가는 평가매뉴얼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대상 정책을 선정·평가하는 것으로 5개 부처 및 9개도에서 소관 정책에 대해 실시하였다.

\*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전문평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에서 선정한 에너지복지정책(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센터 운영(보건복지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여성가족부) 및 주택바우처(국토교통부)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실시(KREI, '12.16)하였다.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성 중에서도 낮은 인구밀도와 소수의 정책수혜자 등의 관점에서 집중 분석하였으며 농어촌 에너지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① 정부차원의 에너지 빈곤층 규모파악, ② 도농 간 동등한 수준의 에너지 지원 체계 구축, ③ 농어촌 주거 특성을 고려한 난방비 지원 제도 등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성 중에서도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와 소수의 정책 수혜자, 사회자본과 민간 부문 인적자원 부족 등의 관점에서 집중 분석하였으며 농어촌 정신보건센터 개선을 위해 ① 정신보건센터 설치 의무화, ② 지역 규모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사업내용 차별화, ③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자료 생산 등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성 중에서도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등에 관점에서 집중 분석하였으며 농어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개선을 위해 ① 이주여성 긴급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고려, ② 지역센터의 운영시간을 24시간 Hot-line 체계로 확장, ③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및 통계자료 구축 필요 등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주택바우처정책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성 중에서도 소수의 정책 수혜자, 사업체의 영세성 등의 관점에서 집중 분석하였으며 농어촌 주택바우처정책 개선을 위해 ① 주거급여 감소 가구에 대한 이행 기대책(일정 기간 그 감소분에 대하여 추가 보장함)이 실효성 있게 추진 필요, ② 기존의 주택 개·보수 관련 사업들과 새로 도입되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③ 농어촌지역의 전·월세 실거래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필요 및 지역별 임대료 데이터에 대한 정보 축적 등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에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3.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농촌복지여성성과 사무관 광기형

### ▼ 추진배경 및 개요

####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 어려움과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종전 : 15%)하였다. 또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연금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후·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주민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표 2-8-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 고 지원율	18 %	28 %	28 %	28 %	28%	28%	28%	28%	28%
월 평균 지원세대	603천세대	521천세대	504천세대	484천세대	457천세대	435천세대	413천세대	402천세대	387천세대
지원예산 (전년대비 증감)	666억 (95.8% ↑)	1,339억 (68.4% ↑)	1,431억 (6.9% ↑)	1,559억 (8.9% ↑)	1,559억 (-)	1,626억 (4.3% ↑)	1,718억 (5.7% ↑)	1,704억 (0.8% ↓)	1,789억 (5.0%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 ▼▼ 연금보험료 지원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업인과 군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제도는 2013년 현재 월평균 290천명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등급체제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 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를 내실화하였다.

〈표 2-8-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1995.7~ 2002.12	2003.1~ 2004.6	2004.7~ 2005.12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2013년
기준등급 (기준소득 월액)	최저등급의 1/3	최저등급의 1/2	12등급 (440천원)	13등급 (480천원)	14등급 (520천원)	620천원	730천원	790천원
지원금액 (월/원)	2,200~ 4,400	4,400~ 7,700	8,800~ 19,800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9,900~ 35,550

\* 1995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의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표 2-8-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93	271	399	502	605	673	731	793	888	861	984	924	1,238

## ▼ 평가 및 향후계획

###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반적인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배제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12.10 개정안 국회제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차등지원 방안은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소득감소 등으로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14 : 79만천원 → 85)해 나가는 한편,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4.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이지은

### ▼ 추진배경 및 개요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UR타결 등으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자녀, 취약계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학자금 용자를 받은 학생은 졸업 후 2년 거치기간을 거쳐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사업운영을 위해 매년 용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정부가 311억원을 출연하여 40,267명을 대상으로 1,021억원(상환금 재용자액 포함)을 지원하였다.

〈표 2-8-6〉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현황

연 도	국고출연금(백만원)	용자현황	
		지원자수(명)	용자금액(백만원)
1994	8,000	1,723	1,712
1995	22,000	19,176	19,089
1996	20,000	19,302	19,252
1997	12,400	19,936	19,849
1998	15,100	19,562	19,396
1999	17,300	19,748	19,578
2000	30,550	20,668	20,475
2001	18,000	18,016	25,023
2002	15,000	16,571	23,764
2003	4,000	19,936	36,698
2004	2,100	26,424	60,652
2005	12,733	25,206	63,702
2006	48,288	24,964	67,664
2007	44,097	26,333	76,942
2008	41,260	26,721	83,743
2009	47,500	28,966	92,916
2010	50,521	31,093	101,218
2011	60,482	33,273	110,295
2012	35,507	33,694	92,496
2013	31,100	40,267	102,115
계	535,938	471,579	1,056,579

\* 지방비 : 600원/20kg 의무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2004년부터 교육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은 사업시행 이래 수혜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우선, 도입 당시에는 학기당 용자 한도액이 100만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한도액을 확대하였다. 2001년에는 학기당 150만원, 2003년에는 2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학교에서 통보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대학생 자녀 이외에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원격대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2009년부터 지원 시 직전학기 성적(70/100점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고, 2011년 용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1년 → 2년)하여 수혜자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였다. 2013년에는 장기연체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상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제를 도입(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수혜 학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학 외에도 농촌 지역의 고등학교, 귀농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자 및 단기연체자에게 상환 등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여 장기 연체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사업관리를 내실화하여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5. 여성·취약농가 지원 확대

|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 강봉규/ 사무관 광기형

### ❖ 추진배경 및 개요

#### ▼▼ 농촌 보육여건 개선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층의 농업인이 도시로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업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다.

####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취약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농어촌 인구 과소화 등으로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영농·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 ▼▼ 농촌 보육여건 개선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농촌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농촌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3년에는 6개소(3개소는 이동식 놀이교실)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의 우수한 보육교사들을 유인하고,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1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3년에는 약 41천명의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였다.

〈표 2-8-7〉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10	5	10	5	3
이동식 놀이교실	1	5	4	2	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표 2-8-8〉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인원

(단위 :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30,388	33,435	36,517	40,816	41,37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60천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2007년까지는 65세 이하,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69세, 5ha 미만, 2009년에는 70세 이하, 2010년은 75세 이하,

2013년은 80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20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5일 이상, 2013년에는 3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고, 2013년에는 15천 농가에 63억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가사도우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고령가구, 다문화 가정,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최대 12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사도우미의 1일 활동비 10천원의 70%를 국고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2006년에는 65세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 포함함으로써, 6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농어촌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에 가사도우미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천 가구에 8억원을 투입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표 2-8-9〉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단위 : 천호, 백만원)

연 도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농가수	지원금액	지원농가수	지원금액	지원농가수	지원금액
2008	28	5,792	13	4,732	15	1,060
2009	31	5,992	12	4,732	19	1,260
2010	33	6,520	13	5,460	20	1,060
2011	28	6,520	14	5,460	14	1,060
2012	25	6,300	15	5,460	10	840
2013	25	7,140	15	6,300	10	840

\* 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재조정

### ▽ 평가 및 향후계획

#### ▼ 농촌 보육여건 개선

농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의 경우 보육 수요는 있으나 적정 수의 아동 확보가 어려워 민간의 보육시설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시설 기준인원을 확대(당초 15인 → 20인)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별근무수당도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노인돌봄 대상 외의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2014년부터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 도우미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대,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업인재해보험 보상수준 확대

| 재해보험팀 사무관 이수현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 중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사고 및 농기계 사고를 보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재해보험사업(2012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공제사업에서 보험사업으로 변경)을 1996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재해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보상수준 확대 및 상품 개선

2013년에는 농업인안전보험 사망 시 보상수준을 최고 9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주요 상품 개선 사항으로는 의료비 부(不)담보형 상품을 신설, 중복지급이 불가한 의료비 실손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농가 보험료 부담을 완화 하였다. 또한 종전의 개별약정 계약방식에서 2009년부터는 개별 및 단체계약으로 변경하여 조합원 단체일괄 가입 시 일선영업점 및 농업인 모두에게 물적·시간적 비용 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게 하였다.

### ▼▼ 사업 홍보 강화 및 국고 지원 확대 등으로 보험가입 농업인 증가

농업분야 전문지·지역 언론, 기획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농협의 조합원 총회 등 행사 중에 보험 상품을 적극 알려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인재해보험 보험료 국고 지원은 2012년 358억원에서 2.8% 상승한 368억원을 지원하였고, 가입률은 2012년 54.2%에서 1.5% 상승한 55.7%로 나타났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인안전보험은 1996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이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까지 4,533억원의 장해·사망 보험금 및 치료·입원비 지원으로 안전사고를 입는 농업인 또는 유족의 생계비 일정 부분을 보전하고, 농작업 재해사고 이후 농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농업인을 보호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2-8-10〉 농업인 안전보험 추진실적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합 계	2005년 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량(계약건수)	12,842	6,658	658	742	764	791	804	817	803	805
지급보험금	4,533	1,345	201	284	367	403	497	446	474	51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NH농협생명(주)

한편 농업인은 재해·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0~14)”에 따라 2014년까지 안전보험 보상수준을 100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상품개선을 통한 보장수준 향상 등으로 가입률을 60% 수준으로 높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7. 농지연금 활성화

농지와 사무관 이창학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지연금의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 농지의 면적이 3ha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자가 사망하는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환 또는 농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의 채무(월 지급금 등)를 회수한다.

〈표 2-8-11〉 농지연금 월 지급금 예시(종신형 기준, 감평)

(단위 : 만원)

가입 연령	65세	70세	75세	80세
농지가격 2억원	51만원	58	66	77

2013년까지 총 가입건수는 2,927건이며, 총 452억원의 연금액을 지급하였다. 가입한 농가가 받는 평균 월 연금액은 농가당 81만원이고, 평균 연령은 74세로 나타났다.

〈표 2-8-12〉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

가 입 ( 건 )			평균 연금액 ( 만 원 )			담보농지(㎡, 백만원)	
계	종신형	기간형	계	종신형	기간형	평균면적	평균평가액
2,927	868	2,059	81	87	79	4,217	13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누계)

###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도록 '14.1부터는 담보농지 평가방법(감정평가 도입) 개선·가입비(농지가격의 2%) 폐지·이자율 인하(4%→3) 등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경감 및 월지급액 인상 효과를 기대하고, '14.5에는 가입연령 요건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만 65세 이상)를 통해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 차이가 많은 고령농업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2절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산업육성

### 1. 농어촌 종합개발

| 지역개발과 사무관 김기환

#### ▼ 추진배경 및 개요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3차원으로 구분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세부 사업을 22개 단위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18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화·효율화·자율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 즉 읍·면소재지 종합 개발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내용 측면으로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표 2-8-13〉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구 분	해당 시·군
경 기	평택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합천군, 창원시(마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표 2-8-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구 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 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li> <li>- 지역역량 강화 지원가능</li> <li>*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경관 개선으로 분류</li> <li>* 소득사업은 지양</li> </ul> </li> <li>■ 지원조건(4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li> <li>* 2013년부터 면 단위는 70억원</li> </ul> </li> </ul>	<통합된 사업> - 소득읍 육성사업 - 거점면소재지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중심</li> <li>- 지역소득 증대 지원가능</li> </ul> </li> <li>■ 지원조건(5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70억원</li> <li>* 2013년부터는 25~50억원</li> </ul> </li> </ul>	<통합된 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산촌생태마을 조성 -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신규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li> </ul> </li> <li>■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지원</li> </ul> </li> </ul>	<통합된 사업> - 전원마을조성사업
	기존마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li> </ul> </li> <li>■ 지원조건 (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비기준지원(한도액 초과 시 지방비 부담)</li> </ul> </li> </ul>	<통합된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정비(읍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 지역에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농어촌경관개선, 문화복지, 환경보전, 농어촌체험시설,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등의 시설</li> </ul> </li> <li>■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li> </ul> </li> </ul>	<통합된 사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 어촌체험마을사업 -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의 농업생산 지원시설</li> </ul> </li> <li>■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li> </ul> </li> </ul>	<통합된 사업>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마을공동소득창출 및 문화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소득 창출, 마을공동문화 조성</li> </ul> </li> <li>■ 지원조건(2년, 국고 70%, 지방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 소득창출 5억원, 문화조성 2억원</li> </ul> </li> </ul>	<통합된 사업> - 없음 * 2013년부터 신규시범 사업



〈표 2-8-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 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 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 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 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시군의 사업지원 경비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군 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지역 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주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등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중심지 육성',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되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복지·소득 증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 마을 개발사업 등을 통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 스스로 통합적인 중장기 농촌계획의 수립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장기 비전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체계를 단계적·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운동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2013년에는 117개 시·군, 1,162개 내역사업에 9,182억원을 지원하여 48,068명의 신규유입효과를 얻는 등 성과가 있었다.

〈표 2-8-16〉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계	930,447	918,246
세 종	2,559	3,483
경 기	38,506	33,696
강 원	67,551	60,077
충 북	76,583	79,236
충 남	114,485	115,290
전 북	112,492	115,113
전 남	204,380	200,994
경 북	160,130	157,331
경 남	133,415	132,680
제 주	20,346	20,34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예산설명서

### ▼ 평가 및 향후계획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시·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사업 대상 선정 및 투자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마을개발사업의 통합적 지원과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내용의 창의성 저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간 갈등, 소득사업 사유화 등 부실 운영, 중간지원조직이나 현장 지원체계 미비로 인한 주민 지원체계의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시·군의 창의적인 사업기획을 위한 다양한 사업군 신설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마을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역량에 맞는 단계별 투자로 정책방향이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역량과 사업 규모간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개편되어 읍·면소재지가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거점이자 농촌의 발전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향식 사업 지원을 위해 ‘농촌 현장포럼’ 확대, 광역단위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GIS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보완, 모니터링·컨설팅 강화 등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사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등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행주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면, 도시민 유치 촉진 등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 조정에 의해 197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농림수산물부로 이관되어 농림수산물부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에는 총 10,000동(사업비 5,000억원)의 농어촌 주택에 대해 개량자금을 용자 지원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용자하였다.

〈표 2-8-17〉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물량(세대)	7,000	8,000	8,000	8,000	10,000
세대당 용자한도액	40	50	50	50	50
용자재원	280,000	400,000	400,000	400,000	500,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또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감축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물량 중 30%를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에게 특별 배정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건축기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8종을 개발·보급하였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의 잠재적인 수요현황을 검토하여 농어촌 생활형 주택으로 개발·보급하였다.

한편, 2013년 농어촌 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2013.6.4)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송림마을,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방축마을, 전남 진도군 군내면 안농리 안농마을,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주치골 마을 등 4개 지구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2014년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지원한도를 높이고 노후 슬레이트 감축을 위해 지원물량의 30%를 슬레

이트 주택 거주에게 특별배정 하는 등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문화 정착 및 경제성 있는 주택보급을 위해 적정형 (affordable)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할 계획이다.

농촌마을리모델링사업의 본격 추진여부는 시범사업이후 지역주민들의 반응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계획이다.

### 3.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한태희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IT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시대 농업·농촌 정보화 추진목표는 ICT융복합 활성화로 미래성장산업화, 안전한 농식품 공급으로 국민 신뢰 향상, 정보화로 창조적 농정 실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이다.

우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농식품 ICT 융복합 성공모델 개발·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IT, BT, NT 등 기술간 융합 뿐 아니라 타산업과 IT산업의 융합, 사회 인프라에 IT 접목 등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 식품분야는 ICT융합 초기단계로 우리 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농축산물의 소비패턴이 다양화·고급화되고, 식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관련 모든 정보를 연차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 ▼ 농식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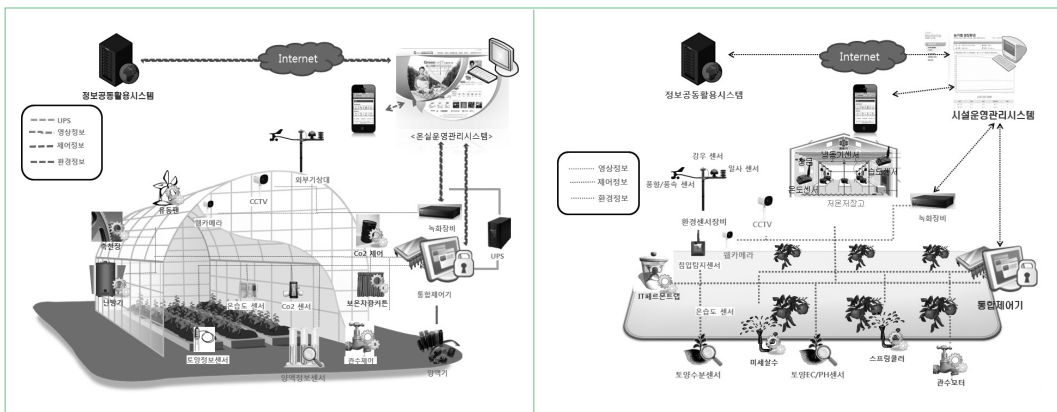
농식품 분야에서 ICT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ICT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델개발 사업을 통해 시설원예, 과수 및 양돈분야의 원격제어 및 자동제어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의 활용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노동력절감 등 성과를 확인하였다. 2013년 8월에는 ICT를 활용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확산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시설농업 중심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원예 분야의 확산사업인 스마트온실 보급사업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의 작물생장에 필요한 조건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ICT 융복합 시설 장비를 보급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각종 센서를 통해 온실 내외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실의 측창, 천창 등의 시설물을 제어하고 작물생장 시기별로 필요한 영양분(양액)의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가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수분야의 확산사업은 과수원의 온습도, 풍향, 강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물의 공급을 과학적으로 하고, 병해충의 예찰을 통해 방제의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서리방지, 냉해방지, 야생동물의 침입방지 등을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농가에서는 과수원의 토양, 병해충 상태, 기상 및 작물의 생리상태에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영농활동을 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8-1〉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그림 2-8-2〉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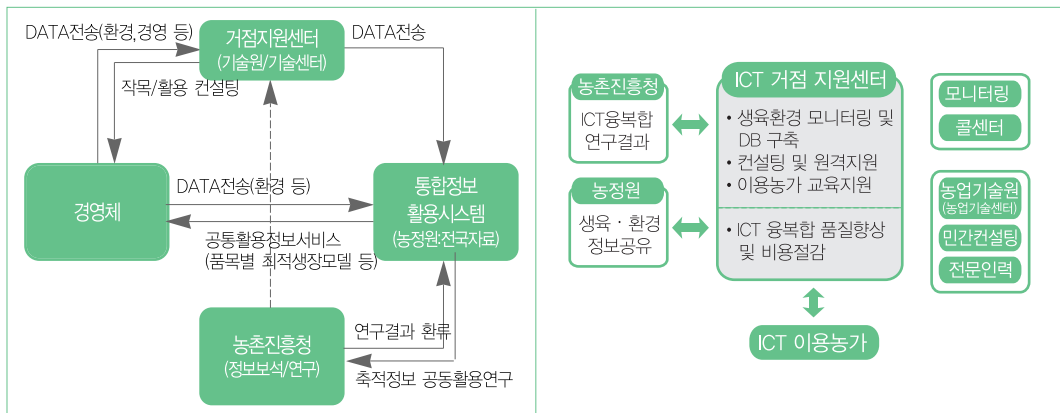


2014년에는 양돈분야에 대한 확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축사의 온도, 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돼지의 사육단계별로 필요한 사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급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축사별 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를 보급하고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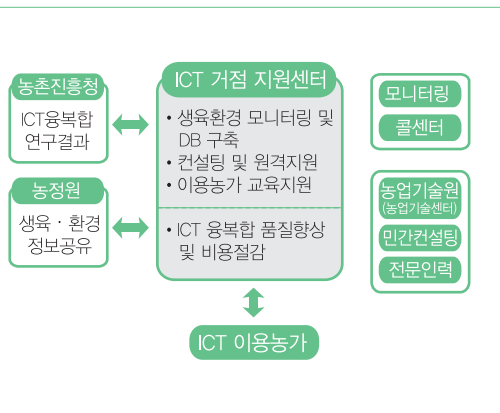
경영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향후 양계, 낙농 및 한우 등으로 ICT 융복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원에, 과수 및 양돈분야 등에서 추진하는 확산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에서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농가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ICT 융복합 거점지원센터에는 농장에서 축적된 ICT 융복합 정보를 활용하여 컨설팅 기반 체계를 마련하고 원격 및 현장지원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그림 2-8-3〉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체계



〈그림 2-8-4〉 농식품 ICT 융복합 지원센터



ICT 융복합 기술에 익숙지 않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지역에서 이론교육을 배우면서 현장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교육농장을 지정하고 실습형 교육과정도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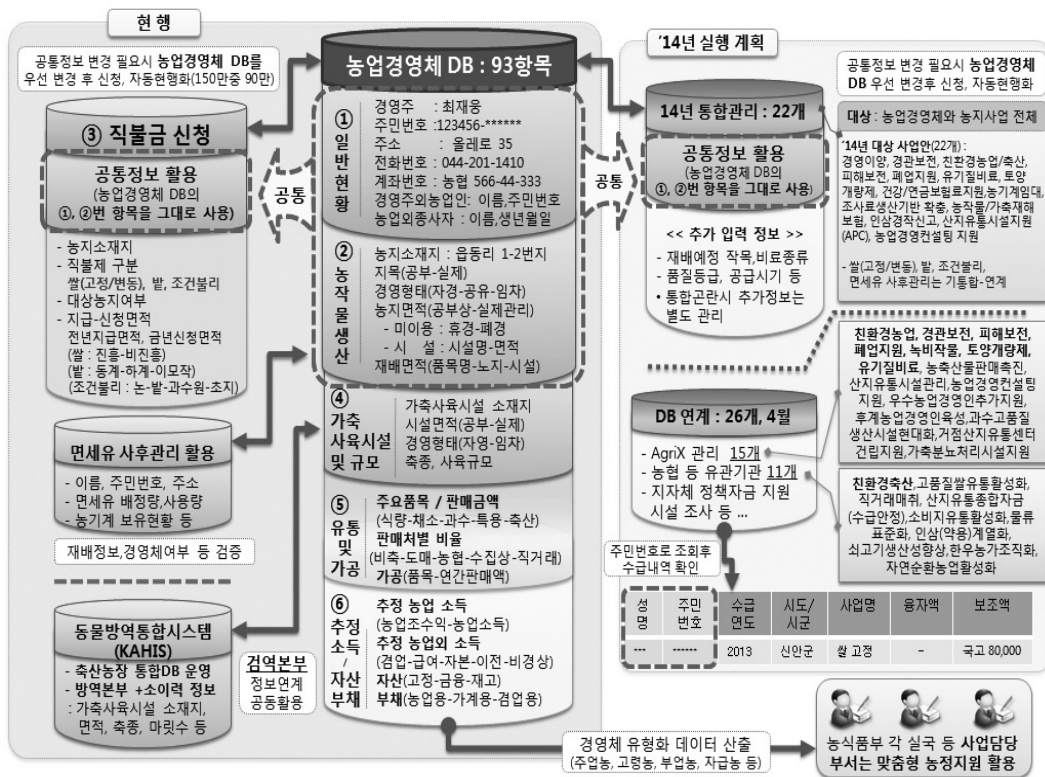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로 맞춤형 농정 구현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업경영체 DB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 가능한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축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을 통합하고 신규로 33개 항목(재배품목, 소득정보, 보조사업 신청 현황 등)을 추가하는 등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별 보조금 수혜이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유기질비료 지원 등 개별 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26개 사업도 경영체 DB와 연계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보조금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과정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16년까지 전체 농림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쌀고정직불, 쌀변동직불, 발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4개의 직불사업과 면세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비농업인 직불금 부당수령, 직불사업간 중복 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던 직불 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불금 수급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당 보조금 수령이 차단되며, 시스템적으로 각종 직불금 신청이 통합되어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 될 것이다.

〈그림 2-8-5〉 농업경영체 DB의 연계/통합 확대계획안



이러한 경영체 정보와 함께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 등 농림분야 유관기관들의 관련정보를 연계·통합·관리·개방·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농업분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빈번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던 농업 현안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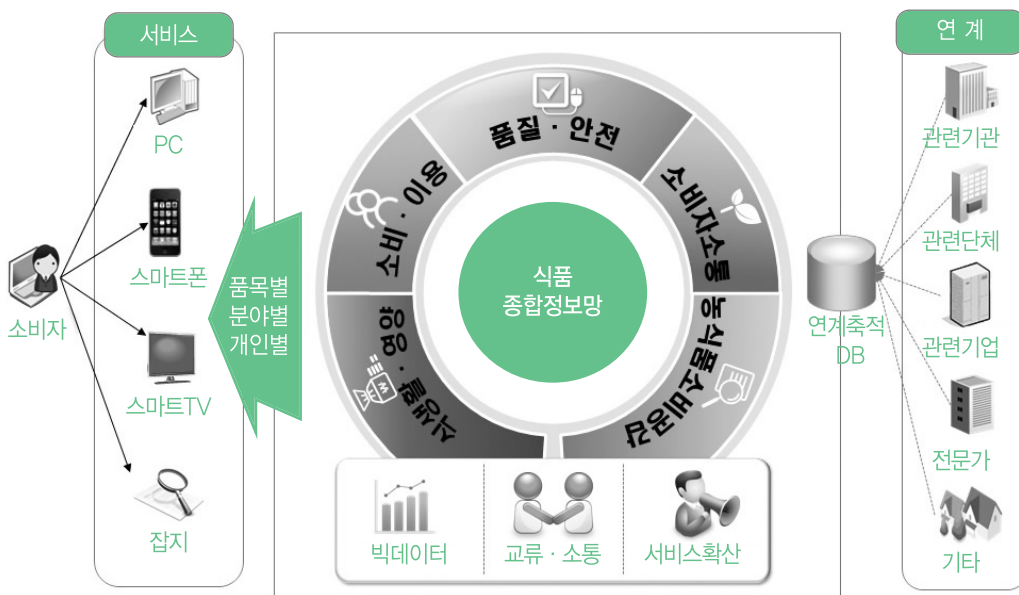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 협력사업과 정부3.0 선도과제로 채택된 '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 www.foodnuri.go.kr)' 구축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까지 16개 기관 21개 사이트로 확대하여 농식품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종합정보망은 품질안전정보, 소비이용정보, 식생활·영양정보, 레시피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농식품 정보를 체계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식품종합정보망 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웹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 지원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 리서치와 전문적인 테스트를 통해 매거진 형태로 매분기별 '농식품 소비공감'을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농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그림 2-8-6〉 식품종합정보망 원스톱 정보서비스 개념도



▼▼ 농업정보이용활성화로 정보격차 완화

'13년도 PC기반 일반국민 대비 농업인의 정보화 수준은 67.8%로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43.1%로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와 PC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취약한 상황이다(2013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표 2-8-18〉 농업인 정보화 수준

(단위 : %)

구 분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장 애 인	57.5	73.9	78.8	81.3	82.2	83.4	83.8
저소득층	55.6	73.0	78.1	80.5	81.4	82.2	83.2
농 업 인	33.8	49.8	57.9	61.8	63.6	64.8	67.8
장노년층	40.9	58.4	64.2	67.5	69.2	71.2	72.6
평 균	45.0	62.0	68.0	71.1	72.4	74.0	75.2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부는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정보서비스, 지식서비스 및 경영정보화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정보서비스의 측면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영농 단계별 정보제공, 품목별 커뮤니티 활성화 등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보화 교육 등 농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의 측면에서는 농식품 지식기부 등으로 TED형 교육컨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선도 농업인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유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체정보화 측면에서는 농가경영장부의 보급 확대 및 농업에 필요한 S/W를 안내 하고 있으며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13~’17)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다.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의 3대 과제인 ICT 융복합 모델 확산, 농식품 ICT 생태계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체 통합 DB 구축으로 보조금 이력관리, 중복지원 방지 등 사전·사후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보조금 정상화 및 정책자금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함은 물론 행정비용을 연간 468억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종합정보망구축은 분산 제공되고 있는 농식품 관련 정보 사이트를 품질(Quality)-소비(Consume)-식생활(Life)을 연계한 통합 농식품 소비 지원망을 구축하여 소비자 중심의 정부3.0 가치

실현 및 농식품 스마트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제공과 시스템을 보급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 4.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농촌산업과 사무관 최윤석

##### ▼ 추진배경 및 개요

생활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및 주 5일 수업 정착,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국민의 체험·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 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 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 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 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 분야 조성을 지원(마을당 3억원)하였다. 2013년 까지 727억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659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촌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였다.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교육생 역량수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6개 교육과정에 4,524명을 교육하였다.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관리, 도시민 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여 2013년에는 389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자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에 38개 마을(2012년 49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체험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농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폭넓은 도시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총 97천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체험관광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2013년에 386개 마을, 화재보험 165개 마을을 지원하였다.

농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고, 도시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등급제는 농촌관광 사업자의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여 부문별로 1~3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으로써, 2013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촌민박 20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은 도시와 농어촌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어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하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13년에는 10,446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농어촌 일손돕기 등 683억원의 교류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기업·단체의 자발적인 도농교류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하였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단체의 농촌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으로써, 2013년 22개의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1사1촌 운동 확산 등으로 농촌체험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계속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 마을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어촌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14년 2,840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며,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 운동,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 농촌관광 체험 콘텐츠 공모, 계절별 테마형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 도농교류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5.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산업과 사무관 김재형·방도혁·이재천

### ▼ 추진배경 및 개요

6차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 등의 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의 3차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넓지 않고, 농업소득이 불안정적이며, 농업에 종사

하는 인구 중 상당수가 고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시장개방으로 농업소득의 지속적 감소와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제조·관광 등 가치사슬의 연계를 강화하는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6차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경영능력, 자본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는 방법을 몰라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동안, 농가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 추진되었던 신활력사업이나, 향토산업 육성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및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등이 6차산업화와 관련되어 추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부처별, 품목별로 제조·가공 분야, 음식·관광·유통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하나의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기 보다는 단위 사업별로 하향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정책사업간 유기적 융합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3년은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마련의 기초를 다진 한해였다. 우선,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대상을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민 주도의 6차산업으로 정하였고, 특히 농업소득으로 가계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연계를 통해 6차산업 사업자의 창업부터 사업화, 활성화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6차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다. 법률에는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및 6차산업화 지구 등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담겨지게 될 것이다.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에 근거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이 구체화 되어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2013년은 6차산업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농업·농촌 분야 산업 들의 융·복합을 위해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6차산업화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정리하고, 사업들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차산업화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의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뒤 관련부처와 협의 혹은 해당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6차산업화의 주요 정책 대상이 되는 중·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대한 규제들을 찾아내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차산업화에 대한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증대시키고,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6차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보다 쉽게 6차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메뉴얼 및 지원정책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이미 6차산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6차산업화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농가 사이에서 6차산업화와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고,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지역 특성에 맞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6. 향토자원 산업화

농촌산업과 사무관 방도혁, 사무관 이재천

###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시장개방, 농가소득 정체,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약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07~2008년에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에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는 회계개편에 따라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이 미흡한 점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여러 사업을 포괄보조 사업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9개소를 착수하여 개소 당 3년 이내에 총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매년 30개소씩을 신규로 착수, 개소 당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제한적 H/W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구축 등 S/W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8-19〉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사업량(개소)	139	19	30	30	30	30	30	30	
예산(억원)	1,169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409	438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사무리사업비까지는 군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선정분부터는 군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 )는 군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및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도에는 2,356억원, 2011년도 2,435억원, 2012년도 2,031억원, 2013년도 2,280억원(수산분야 174억원 포함)의 국고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 H/W분야와 S/W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부문으로 분리되어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8-2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구 분	계	기획평가 구축지원	농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 가공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촌체험· 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지원
2010	2,356억원	-	1,035	396	10	392	523
2011	2,435	-	848	501	13	547	526
2012	2,031	-	557	545	38	429	462
2013	2,106	4	561	572	50	416	503

\* 2013년의 2,106억원은 수산분야 174억원 미포함 금액.

### ▼ 평가 및 향후계획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핵심사업으로 사업화 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0개 내외의 신규지구를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수립 단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반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이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부터 종전의 여러사업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였으나, 아직도 종전의 여러 개별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목표와 내용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다.

따라서 2013년부터 ①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 ④농산물 체험·전시지원, ⑤농촌 체험·관광지원, 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등 6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고,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 유도, 예산집행시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타 지자체 전파를 통해 포괄보조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촌산업과 사무관 이재천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공단지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2-8-21〉 부처별 지원 현황

부처명	지원내용	관련법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조성 지원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부	특화농공단지 수산분야	농어촌정비법
국토교통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화여부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로 구분하여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조성 32개소, 개보수 61개소 등 93개소에 50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3년 말 기준으로 453개소를 지정하고 390개소 조성을 완료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13년 말 6,44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5,683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 148천여 명, 생산액 49조 1,633억원(업체평균 86.5억원), 연간 수출액 118억 43백만 달러(업체평균 208만 달러) 등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당초 400개소 조성 목표를 조만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의 신규조성보다는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유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단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3년부터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의 신규 조성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특화단지에 한하여 신규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후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를 중점 지원해 나가고, 지역특화 단지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3절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신동원

#### ▼ 추진배경 및 개요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 평 수준으로 대형화 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13까지 국고 2조 5,412억원을 투입하여 125.1천ha를 완료 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표 2-8-22〉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3년 까지		2014년 계획		2015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69.6	125.1	73.8	2.1	75.0	42.4
사업비(억 원, 국고)	37,632	25,412	67.5	570	69.0	11,6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의향과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 2. 발 기반 정비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신동원

### ❖ 추진배경 및 개요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발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 영향으로 우량

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 기반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국고 1조 8,808억원을 투입하여 101,2천ha를 착수하였다.

〈표 2-8-23〉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3년 까지		2014년 계획		2015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80	101.2	56.2	4.7	58.8	74.1
사업비(억 원, 국고)	38,774	18,808	48.5	742	50.4	19,2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밭 기반 정비사업이 국민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신동원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도로서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서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 자율편성)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 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3년까지 국고 2조 1,002억원을 투입하여 목표연장 35천km 중 25.5천 km를 완료하였다.

〈표 2-8-2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3년 까지		2014년 계획		2015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km)	35	25.5	72.9	0.8	75.1	8.7
사업비(억 원, 국고)	29,689	21,002	70.7	666	73.0	8,02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 평가 및 향후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 구조개선에도 기여하였다.

향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추진하고, 농업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간척지농업과 사무관 조래형,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 추진배경 및 개요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까지 국고 4조 2,687억 원을 투입하여 160.9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 및 기상 이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증가된 강우량 등이 반영된 배수개선 설계 기준을 개정 및 시행(12.4월)하여 선제적 방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강우패턴 변화, 농의 재배작물 다양화 등을 감안하여 배수개선 대상면적을 확대(232천ha → 303천ha, '13.2월) 하였다.

〈표 2-8-25〉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13년 까지		2014년 계획		2015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302.7	160.9	53.2	5.1	54.8	136.7
사업비(억 원, 국고)	118,491	42,687	36.0	2,900	38.5	72,9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방조제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재도장,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2,869지구(국가관리 241지구, 지방관리 2,628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총 1,650지구(국가 179, 지방 1,471)를 완료하였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기후 변화와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강우 패턴 분석과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을 조사하여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배수개선사업에 2,900억원을 지원하여 101개(신규 22개 지구 포함) 지구의 사업을 시행 하고, 방조제개보수사업에 500억원을 지원하여 110개(신규 30개 지구 포함)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5. 수리시설개보수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추진배경 및 개요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최근의 기상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등 강우패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후화된 용·배수로는 용수누수가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 및 재해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8-26〉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계	70,043	17,477	7,729	18,108	2,696	24,033
30년 이상	40,738	16,646	3,128	15,113	2,426	3,425
30년 미만	29,305	831	4,601	2,995	270	20,608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2013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 추진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4,8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343지구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92지구를 준공하였고, 누수과다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0.4천km를 구조물화 또는 친환경 수로 등으로 정비하였다.

〈표 2-8-2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획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이후	
사 업 비	149,323	59,271	4,800	85,252	
사 업 량	수 원 공	5,842개소	2,344개소	131개소	3,271개소
	수로정비	21.6천km	6.7천km	0.4천km	14.5천km

### ▼ 평가 및 향후계획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한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6.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기반과 서기관 박종훈, 사무관 신동원

###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영농기반은 구축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등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용수공급기반은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시행중인 지구는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규모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966천ha로 수리시설 설치를 통해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778천ha(80.5%)이고, 수리시설이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수리불안전답(천수답) 면적은 188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73천ha(59.3%)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8-28〉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연 도	단위	2000	2003	2006	2009	2012
논 면 적(A)	천ha	1,149	1,127	1,084	1,010	966
수 리 답(B)	천ha	880	878	859	806	778
	(B/A)%	76.6	77.9	79.2	79.8	80.5
수리안전답(C)	천ha	421	440	478	504	573
	(C/A)%	36.6	39.0	44.1	49.9	59.3
수리불안전답(D)	천ha	269	249	225	204	188
	(D/A)%	23.4	22.1	20.8	20.2	19.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2013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물이 부족한 수해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81개 지구(32천ha)에 2,450억원을 투입하여 9개지구 3.0천ha를 준공하였고, 2014년도에는 80개 지구(32천ha)에 2,600억원을 투입하여 4개지구 1.6천ha를 준공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2-8-29〉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3까지	2014계획	2015이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90~’30)	사업량(천ha)	136.4	86.8	1.6	48.0
	추진율(%)	100	63.6	64.8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해면적 50ha 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국고 1,368억원을 투입하여 2.8천ha를 준공하였고, 2014년에는 28개 지구(0.9천ha)에 국고 124억원을 투입하여 12개 지구 0.3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2-8-30〉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3까지	2014계획	2015이후
소 규모 (’03~계속)	사업량(천ha)	11.0	2.8	0.3	7.9
	추진율(%)	100	25.5	28.2	

▼▼ 지표수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국고 9,004억원을 투입하여 30.6천ha를 준공하였고, 2014년에는 78개 지구(7.6천ha)에 국고 614억원을 투입하여 26개 지구 2.4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2-8-31〉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3까지	2014계획	2015이후
지표수 보강 (’95~계속)	사업량(천ha)	48.6	30.6	2.4	15.6
	추진율(%)	100	63.0	67.9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 80%정도 설치되어 안정영농 기반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년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담은 59%에 불과하고 자연강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19%정도여서 수리안전담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과 생활·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 충족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농촌경관 조성 및 공익적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홍수와 가뭄의 발생이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뭄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

간척지농업과 서기관 김춘기, 박재수

### ▼ 추진배경 및 개요

1960년대까지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단일 목적의 개별사업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계(水系) 단위의 종합개발방식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1970년대부터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금강(錦江), 영산강(榮山江) 등과 같은 대단위 수계(水系)의 말단부를 대상으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의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국가사업을 위탁·시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로써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은 육지부의 농업개발과 해안부의 간척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 2-8-32〉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 중 지구 개발유형

구 분	지구명	개발유형	재원
육지부 (4)	금강Ⅱ, 흥보, 영산강Ⅳ, 서산A	기존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시설재정비 등	농특회계
해안 + 육지부 (5)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옹, 시화, 새만금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옹, 새만금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농지관리기금

### ▼ 추진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추진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총 24개지구 306천ha를 진행하여 2013년까지 16개지구 166천ha를 완료하고, 현재는 금강Ⅱ 지구 등 8개지구 140천ha 및 서산A간척지 6천ha에 대해 시설재정비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시행 중인 8개 사업지구에 2013년까지 총 6조 4,887억원을 투입하여 급수면적 확대 13,661ha, 경지 정리 11,255ha, 배수개선 1,320ha, 간척농지 8,895ha를 조성함으로써 한해·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서산A간척지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능이 미달되어 재해대응능력을 높이고,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여 재정비를 하고 있으며, '13년까지 820억원을 지원하여 29% 진척을 보이고 있다.

서산A간척지는 70년대말 중동건설 붐 퇴조로 외국 건설현장에서 반입된 유휴장비를 활용하여 농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1995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간척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지어오다가 2000년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농업인에게 모두 매각하였다. 현대건설이 당초에 설치한 수로, 방수제, 양수장, 배수장 등 영농시설이 노후되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을뿐만 아니라 농기계 통행이 어려워 시설재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유리온실 및 축산 등 다양한 간척지의 농업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간척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를 토대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2010년 5월 관보를 통해 고시하였다.

이후 간척지의 다원적 활용 차원에서 2011년 12월에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 4공구(768ha)에 유리온실, 친환경축산단지, 말조련단지 및 종자연구단지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코팜랜드(경기도 주관)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세부설계, 재원부담 및 역할,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가 사업추진방식, 재원부담 등 협약을 5월에 체결하여 기반 조성공사와 하부시설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입찰 등을 추진한후 11월에 공사착수를 할 계획이다.

〈표 2-8-33〉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지구 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17지구)			166,097		4,649,714
금 강	전 북	부여, 익산	12,148	'70 ~ '76	16,823
평 택	경 기	평택, 화성	18,419	'70 ~ '77	37,657
영산강(Ⅰ)	전 남	나주, 담양	34,500	'72 ~ '79	81,238
경 주	경 북	경주	1,140	'74 ~ '77	4,916
계 화 도	전 북	부안	2,467	'74 ~ '79	12,521
창 녕	경 남	창녕	2,269	'75 ~ '81	17,358
임 진	경 기	파주, 고양	7,185	'75 ~ '83	45,807
남 강	경 남	진주, 함안	5,754	'77 ~ '85	61,903
낙 동 강	경 북	안동, 예천	3,600	'78 ~ '84	23,029
미호천(Ⅰ)	충 북	음성, 진천	11,554	'77 ~ '89	104,871
논 산	충 남	논산, 공주	9,938	'78 ~ '90	94,035
금 강(Ⅰ)	전 북	서천, 군산	하구둑	'83 ~ '90	101,000
삽 교 천	충 남	아산, 당진	24,574	'75 ~ '94	235,546
대 호	충 남	서산, 당진	7,419	'80 ~ '96	185,630
영산강(Ⅱ)	전 남	목포, 나주	20,700	'76 ~ '98	354,472
미 호 천(Ⅱ)	충 북	청원, 청주	4,430	'89 ~ '12	323,900
새만금(외곽시설)	전 북	군산, 김제, 부안	방조제	'91 ~ '11	2,949,008

새만금사업은 2010년 외곽시설인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한 개발방향 및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변화된 개발여건 등을 반영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2011년 3월)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방조제 내측의 간척지 8,570ha를 농업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선행 공종인 방수제 축조공사를 추진하여 공정율 61%까지 추진하였다

2013.6월에는 새만금방조제 내측 농업용지 조성 대상지 8,570ha중 방수제 공사가 완성단계에 있는 5공구 1,513ha 간척농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4년이후 착공을 위해 1공구(1,369ha) 및 4공구(666ha) 세부설계를 착수하였다.

또한 새만금지역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시도휴게시설 개발사업 등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고군산군도 등 주변 관광지와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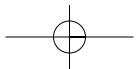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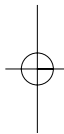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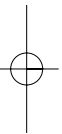
2014년에는 새만금, 금강Ⅱ 및 서산A간척지 재정비 등 시행 중 9지구에 국고(농특회계) 974억원과 농지관리기금 3,575억원을 투입(총 4,549억원), 금강Ⅱ지구 경지재정리 523ha를 준공하여 급수면적 326ha를 확대(용수개발) 하고, 영산강Ⅲ-2지구는 농지조성 144ha를 부분 준공할 계획이며, 홍보지구는 수질개선대책 일환인 습지조성 등 68ha, 화옹 4공구 에코팜랜드 768ha는 착공, 서산A간척지는 방수제 5.5km를 추진하는 등 영농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8-3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지구별	위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9지구)	5개 시도	20개 시군	144,394	'89 ~ '23	7,266,026
금 강Ⅱ	충남, 전북	서천, 완주, 부여, 군산, 익산, 김제	43,000	'89 ~ '18	833,384
홍 보	충 남	홍성, 보령	8,100	'91 ~ '16	482,410
영 산 강Ⅳ	전 남	무안, 신안, 함평, 영광	16,730	'01 ~ '15	832,497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재정비	충 남	서 산	6,446	'08 ~ '17	279,815
영산강Ⅲ-1	전 남	영암, 해남, 강진	13,160	'95 ~ '23	588,255
영산강Ⅲ-2	전 남	해 남	7,840	'97 ~ '18	424,600
화 옹	경 기	화 성	4,482	'91 ~ '22	935,517
시 화	경 기	안산, 화성	3,636	'98 ~ '16	439,413
새만금(내부개발)	전 북	부안, 김제, 군산	41,000	'09 ~ '20	2,450,135

또한 새만금지구는 새만금위원회(11.3)에서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농지조성구간의 방수제공사는 2015년, 농지조성은 대규모농업회사가 입주예정인 5공구(1,513ha)를 2013년 착공 2017년 까지 완공하여 조기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농업용지(6개 공구 7,057ha)는 세부설계를 거쳐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신시도휴게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세부설시설계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신시-야미구간 개발사업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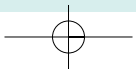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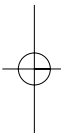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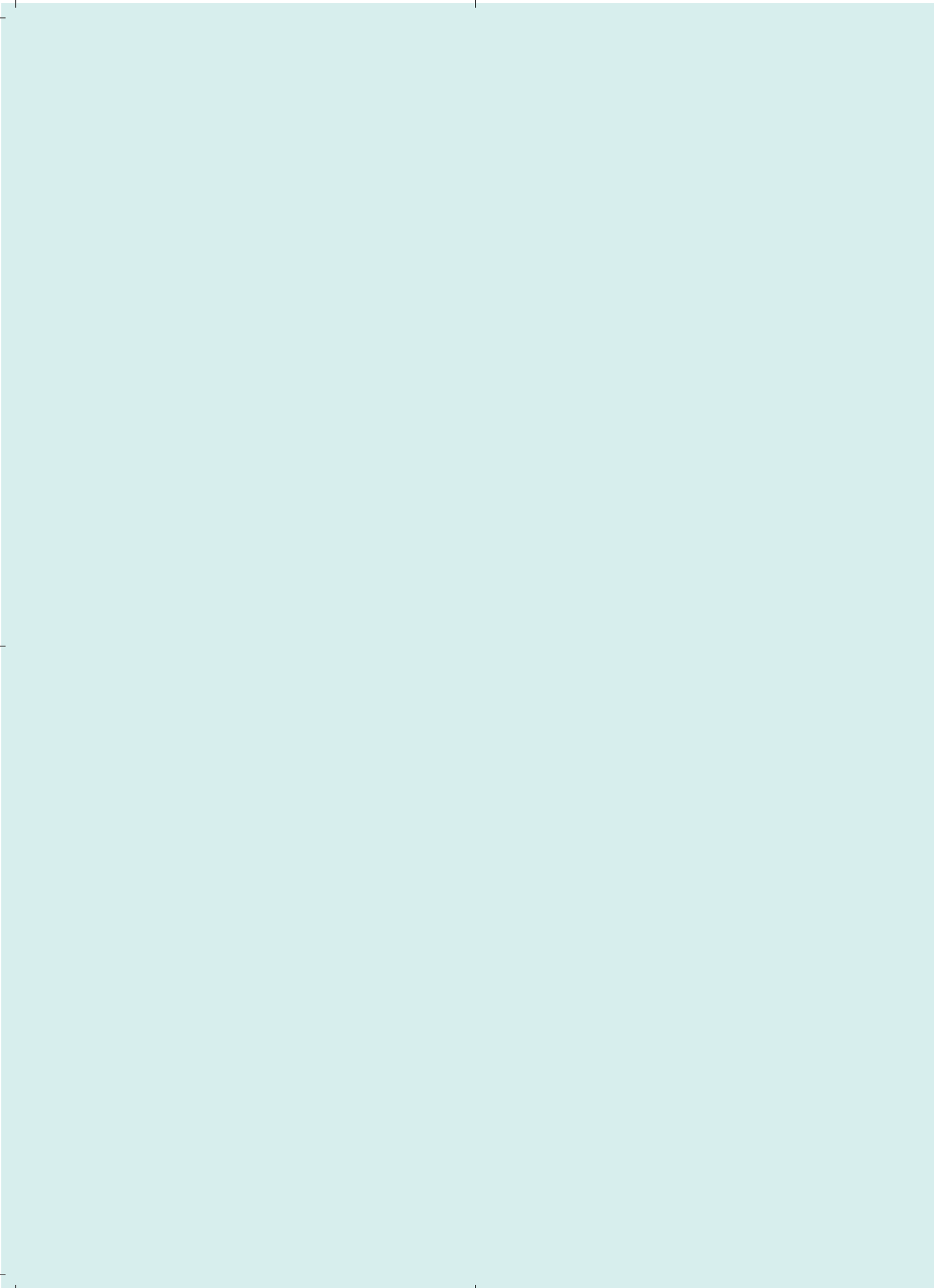


| 2013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제3편 2013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2장 국내·국제 수산업 동향



#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 제1절 어업 구조

### 1. 어가 및 어가인구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명호

2013년 말의 전국 어가 수는 60,325호로 2012년 대비 1,168호(1.9%)가 감소하였으며, 어가 인구도 147,330명으로 2012년 대비 5,776명(3.8%)이 감소하였다. 어가 수와 어가 인구는 1990년 이후 인구 고령화와 급속한 도시화,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 2010년을 기준으로 감소율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감소 경향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1〉 연도별 어업가구와 인구

(단위 : 가구, 명, %)

연도	구분	어 가	증감률	어가 인구	증감률
1990		121,525	△9.4	496,089	△31.6
1995		104,480	△14.0	347,210	△30.0
2000		81,571	△21.9	251,349	△27.6
2005		79,942	△2.0	221,132	△12.0
2010		65,775	△17.7	171,191	△22.6
2011		63,251	△3.8	159,299	△6.9
2012		61,493	△2.8	153,106	△3.9
2013		60,325	△1.9	147,330	△3.8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13년 말의 우리나라 어가 인구는 147천 명으로 총인구 대비 0.3%이며, 농가 인구 2,847천 명에 비하면 5.2% 수준이다. 농가 인구 대비 어가 인구의 비율은 2007년에 6.2%였던 것이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어가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는 30세 미만이 26천 명으로 전체 어가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청장년층은 66천 명으로 44.9%이다. 60세 이상의 장노년층은 41.5%, 61천 명으로 어가 인구 중에서 장노년층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3-1-2〉 연도별 총인구 대비 어가 인구의 비율

(단위 : 천 명, %)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어가 인구	계		192	184	171	159	153	147
	15세 미만		20	18	17	13	12	12
	15~29세		21	19	19	16	14	14
	30~59세		87	81	78	71	66	66
	60세 이상		65	66	57	59	61	61
농가 인구			3,187	3,117	3,062	2,962	2,912	2,847
농가 인구 대비 어가 인구			6.0	5.9	5.9	5.4	5.3	5.2
총인구			48,949	49,182	49,410	49,779	50,004	50,220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어업종사자는 2012년에 비해 5.7% 감소된 97,972명이며, 성별 구성은 남자가 50,936명(52.0%), 여자가 47,036명(48.0%)이다.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49.7%, 50대가 33.8%, 40대가 11.5%로 고령 가구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3-1-3〉 연도별 어업종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종사자			115,532	107,163	103,903	100,173	97,972	94.3
성별	남자		60,790 (52.6)	57,224 (53.3)	54,856 (52.8)	52,482 (52.4)	50,936 (52.0)	92.9 -
	여자		54,742 (47.4)	49,939 (46.7)	49,047 (47.2)	47,691 (47.6)	47,036 (48.0)	95.9 -
연령별	19세 이하		10 (0.01)	60 (0.06)	55 (0.05)	28 (0.03)	11 (0.01)	20.0 -
	20~29세		2,058 (1.8)	1,797 (1.7)	1,479 (1.4)	1,207 (1.2)	1,186 (1.2)	80.2 -
	30~39세		6,120 (5.3)	5,973 (5.6)	4,595 (4.4)	4,076 (4.1)	3,655 (3.7)	79.5 -
	40~49세		19,689 (17.0)	18,817 (17.6)	15,796 (15.2)	13,558 (13.5)	11,246 (11.5)	71.2 -
	50~59세		37,901 (32.8)	34,765 (32.4)	35,346 (34.0)	33,107 (33.1)	33,163 (33.8)	93.8 -
	60세 이상		49,753 (43.1)	45,751 (42.7)	46,632 (44.9)	48,197 (48.1)	48,711 (49.7)	104.5 -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총어가중 전업어가는 2012년에 비해 7.5%가 감소된 17,185호이며, 겸업어가는 0.5% 증가된 43,140호이다. 전업어가 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겸업어가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4〉 연도별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단위: 가구, %)

연도	구분	총어가	구성비	전업어가	구성비	겸업어가	구성비
1980		134,109	100.0	20,813	15.5	113,296	84.5
1990		121,525	100.0	28,051	23.1	93,474	76.9
1995		104,480	100.0	26,016	24.9	78,464	75.1
2000		81,571	100.0	29,699	36.4	51,872	63.6
2005		79,942	100.0	25,294	31.6	54,722	68.4
2010		65,775	100.0	19,323	29.4	46,452	70.6
2011		63,251	100.0	19,288	30.5	43,963	69.5
2012		61,493	100.0	18,573	30.2	42,920	69.8
2013		60,325	100.0	17,185	28.5	43,140	71.5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총어가중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의 비율은 26.9%인 16,244호이며, 어로어업 종사 어가는 73.1%인 44,082호이다. 양식어업 종사 어가의 비율은 2005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어로어업 종사 어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3-1-5〉 연도별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가구, %)

연도	구분	총어가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소 계	어선 사용	어선 비사용
1980		134,109 (100.0)	55,902 (41.7)	78,207 (58.3)	31,844 (23.7)	46,363 (34.6)
1990		121,525 (100.0)	49,727 (40.9)	71,798 (59.1)	39,170 (32.3)	32,628 (26.8)
1995		104,480 (100.0)	34,009 (32.6)	70,471 (67.4)	37,109 (35.5)	33,362 (31.9)
2000		81,571 (100.0)	24,810 (30.4)	56,761 (69.6)	38,968 (47.8)	17,793 (21.8)
2005		79,942 (100.0)	24,075 (30.1)	55,867 (69.9)	36,733 (46.0)	19,134 (23.9)
2010		65,775 (100.0)	17,386 (26.4)	48,389 (73.6)	29,062 (44.2)	19,327 (29.4)
2011		63,251 (100.0)	17,815 (28.2)	45,436 (71.8)	27,533 (43.5)	17,903 (28.3)
2012		61,493 (100.0)	16,805 (27.3)	44,688 (72.7)	26,642 (43.3)	18,046 (29.3)
2013		60,325 (100.0)	16,244 (26.9)	44,082 (73.1)	26,213 (43.5)	17,868 (29.6)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2. 어업 총생산

수산정책과 서기관 지정훈

2013년 말의 어업 총 생산량은 3,135천 톤으로 2012년에 비해 48천 톤, 1.5%가 감소하였으며, 어업 총생산액은 4.7% 감소한 7조 6,890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1-6〉 연도별 어업 생산량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2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2,514	2,714	3,111	3,256	3,183	3,135	△48	△1.5
연근해	1,189	1,097	1,133	1,235	1,091	1,045	△46	△4.2
양 식	653	1,041	1,355	1,478	1,489	1,515	26	1.7
내수면	21	24	31	32	28	25	△3	△10.7
원 양	651	552	592	511	575	550	△25	△4.3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3-1-7〉 연도별 어업 생산액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2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0,664	50,493	74,257	80,729	76,890	72,269	△4,621	△6.0
연근해	23,295	27,060	39,117	44,441	39,510	37,476	△2,034	△5.1
양 식	6,839	13,484	18,156	17,842	17,593	17,258	△335	△1.9
내수면	1,234	1,757	3,338	3,775	3,233	3,454	221	6.8
원 양	9,296	8,192	13,645	14,671	16,554	14,080	△2,474	△14.9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3-1-8〉 어업 총생산(부가가치) 현황

(단위 : 10억 원, %)

구 분	2012	2013(P)	증감률(%)
국내총생산(GDP)	1,377,457	1,428,295	3.7
국내총부가가치(GVA)	1,251,455	1,303,935	4.2
어업	3,416	3,099	△9.3
어업 GDP 구성비	0.2	0.2	-
어업 GVA 구성비	0.3	0.2	-

자료 : 한국은행



### 3. 어선 등록 현황

어업정책과 사무관 윤영호

2013년 말에 등록된 어선은 71,287척에 607,224톤으로 2012년에 비해 척수는 3,744척(5%)이 감소하였고, 톤수도 2,781톤(0.5%)이 감소하였다. 전체 등록 어선 중 동력어선은 69,323척(95.0%)에 605,303톤(99.6%)이다. 어업별 척수로 보면, 연근해어선이 66.6%로 가장 많고, 양식어장 관리선이 23.5%, 내수면어선이 4.1%, 원양어선이 0.4%, 기타가 5.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3-1-9〉 연도별 어선 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분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합 계	척 수	95,890	90,735	76,974	75,629	75,031	71,287	95.0
	- 동 력	89,294	87,554	74,669	73,427	72,922	69,323	95.0
	- 무동력	6,596	3,181	2,305	2,202	2,109	1,964	93.1
	톤 수	923,099	700,810	600,622	606,627	610,005	607,224	99.5
	- 동 력	917,963	697,956	598,365	604,414	607,887	605,303	99.6
	- 무동력	5,136	2,854	2,257	2,213	2,117	1,921	90.7
연근해	척 수	68,629	64,579	50,757	49,488	47,955	47,493	99.0
	톤 수	397,868	322,811	249,694	248,233	234,702	242,944	103.5
양 식	척 수	20,359	18,244	17,594	17,737	18,389	16,772	91.2
	톤 수	28,516	27,131	32,845	35,155	41,302	38,586	93.4
내수면	척 수	3,664	4,164	2,973	2,860	2,937	2,908	99.0
	톤 수	2,874	3,518	2,149	1,714	1,863	1,765	94.7
원 양	척 수	597	493	379	377	349	315	90.2
	톤 수	349,420	257,614	199,859	200,316	195,073	178,580	91.5
기 타	척 수	2,641	3,255	5,271	5,167	5,401	3,799	70.3
	톤 수	144,421	89,736	116,074	121,210	137,063	145,347	106.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어선의 재질별로 보면, 척수로는 합성수지선(FRP)이 전체의 90.3%, 목선이 7.1%, 강선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톤수로는 합성수지선(FRP)이 전체의 34.4%, 목선이 1.7%, 강선이 6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0〉 연도별 선질별 어선 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분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합 계	척수	95,890	90,735	76,974	75,629	75,031	71,287	95.0
	톤수	923,099	700,810	600,622	606,627	610,005	607,224	99.5
목 선	척수	40,057	22,281	11,788	10,115	8,646	5,074	58.7
	톤수	112,413	49,697	18,849	16,546	14,688	10,404	70.8
강 선	척수	3,442	2,417	1,865	1,843	1,795	1,757	97.9
	톤수	656,194	444,687	386,117	390,204	389,841	386,729	99.2
합성수지선 (FRP선)	척수	52,378	65,831	63,279	63,628	64,545	64,412	99.8
	톤수	154,425	205,754	194,954	199,177	204,571	209,171	102.2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척수의 8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5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은 12.4%, 5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은 1.1%, 100톤 이상 200톤 미만 어선은 0.4%, 200톤 이상의 대형어선은 0.7%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1〉 연도별 톤급별 어선 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분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합 계	척 수	95,890	90,735	76,974	75,629	75,031	71,287	95.0
	톤 수	923,099	700,810	600,622	606,627	610,005	607,224	99.5
1톤미만	척 수	37,542	30,962	24,454	22,627	21,295	18,644	87.5
	톤 수	23,620	20,069	16,331	15,169	14,413	12,631	87.6
1~5톤미만	척 수	44,794	47,253	42,957	43,213	43,634	42,260	96.9
	톤 수	107,263	111,344	98,768	98,968	99,721	98,206	98.5
5~50톤미만	척 수	10,797	10,607	8,032	8,249	8,573	8,866	103.4
	톤 수	138,130	123,424	96,234	98,102	100,877	104,160	103.3
50~100톤미만	척 수	1,584	1,024	778	791	785	777	99.0
	톤 수	120,489	75,783	56,877	57,787	57,375	56,862	99.1
100~200톤미만	척 수	518	346	263	265	260	261	100.4
	톤 수	73,551	50,640	38,853	38,849	38,106	38,203	100.3
200톤이상	척 수	655	543	490	484	484	479	99.0
	톤 수	460,046	319,550	293,559	297,752	299,510	297,162	99.2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4. 이용어장

### ▼ 연근해어장

| 어업정책과 사무관 양정규

「수산업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장 해역 범위는 동해~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이다. 동 수역을 제외한 수역은 해외어장으로서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은 1960년대에는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 '소코트라어장' 까지, 1970년대 이후에는 서해, 동중국해 및 동해의 '대화퇴어장' 까지 확대되었다. 이들 어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한·중·일 3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어장이 축소되면서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로 인해 한·일 양국은 1996년 5월부터 17차에 걸쳐 어업협정 개정 실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8년 11월 28일자로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9년 1월 22일 협정을 발효시킴에 따라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 입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수역으로 들어와 조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중국어선의 우리 EEZ 내 조업 문제는 조속한 양국 간 어업협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00년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상호 입어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쳐 2001년 6월 30일에 동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한·중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로 상호 입어를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과도 수역이 각자의 EEZ로 편입되면서 우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이 확대되었다.

한편, 중·일 간의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11일 서명 이후 담보 상태에 머물다가, 2000년 6월 1일 발효하면서 한·중·일 3국의 주변 수역이 완전한 EEZ 어업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장은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EEZ와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 ▼ 원양어장

| 원양산업과 사무관 박천일

원양어업은 1957년 참치 시험조업을 위해 인도양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장이 급격히 축소되었는데, 이는 2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과 1977년부터 미국·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최근 원양어업의 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원양어선의 노후화, 유가 및 인건비 상승, 어선원 구인난에 직면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연안국들의 조업규제 강화는 물론 국제수산물기구, 미국, EU 등의 IUU어업 등에 대한 국제규범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양어업의 어장 축소과정을 살펴보면, 조업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미국 수역에서 북양트롤어선이 철수하고, 1993년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유자망조업이 중지되었다. 1999년 11월 30일부터 일본 북해도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이 전면 철수하였다. 또한 해양의 특수성에 기인한 이슈·문제의 공동대응과 해양자원을 이용하려는 각국의 수요가 맞물려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었다. 이어 1995년 8월 「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이 채택되면서 해양수산 관련 의제가 국제사회의 주요현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해역 단위별로 공해자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다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설립되는 등 공해 수산자원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원양어업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말 현재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16개가 있다.

## ▼ 양식어장

|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김성희

우리나라의 해면(바다) 양식어장 개발은 1960년대에 김, 미역 등 해조류 중심으로 개발되던 것이 1970년대에는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업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넙치 인공종묘 생산기술이 확립되면서 어류양식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고부가가치 품종인 전복 양식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양식어장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양식되고 있는 주요 품종은 넙치, 조피볼락, 굴, 전복, 김, 미역, 톳, 우렁쟁이, 새우, 해삼 등 약 50여 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해삼 등 새로운 품종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식 면허면적(어장 면적)도 증가하는 추세다.

〈표 3-1-12〉 품목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전년대비 증 감 률
합 계	136,083	139,871	139,223	139,811	137,971	141,312	2.3
어 류	1,988 (1.5)	1,965 (1.4)	1,880 (1.3)	1,774 (1.3)	1,739 (1.3)	1,621 (1.1)	△6.8
패 류	49,169 (36.1)	49,538 (35.4)	49,721 (35.7)	49,848 (35.7)	49,591 (35.9)	50,056 (35.4)	0.9
해 조 류	79,504 (58.4)	81,601 (58.3)	81,255 (58.4)	81,837 (58.5)	79,247 (57.4)	82,903 (58.7)	4.6
기 타 수산동물	5,422 (4.0)	6,767 (4.8)	6,367 (4.6)	6,352 (4.5)	7,393 (5.4)	6,732 (4.8)	△8.9

주 : ( )는 구성비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013년 말의 해면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약 14.1만 ha이며, 육상수조식 및 축제식양식 등 허가어업권 총 면적은 1.2천ha이다.

〈표 3-1-13〉 종류별 · 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단위 : ha,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전년대비 증 감 률
합 계	1,641	1,382	1,419	1,388	1,264	1,188	△6.3
육상수조식양식 (어류 · 패류 등)	271 (16.5)	261 (18.9)	258 (18.2)	290 (20.9)	297 (23.5)	267 (22.5)	△11.2
축제식양식 (어류 · 새우 등)	1,370 (83.5)	1,121 (81.1)	1,161 (81.8)	1,099 (79.2)	967 (76.5)	921 (77.5)	△4.9

주 : ( )는 구성비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5. 어업경영체

### 연안어업

#### 어업정책과 사무관 강거영

2013년 말의 연안어업 경영체 수는 총 167,452개로 2012년에 비해 11.1%인 20,979개가 감소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각각 53,882건 및 6,193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 984건과 134건이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의 신규 어업허가 억제정책과 1994년부터 추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어선 감척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마을어업(면허어업)은 2,844건으로 전년에 비해 44건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어업인 소득을 위해 지자체들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면허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고어업은 총 104,020건으로 2012년에 비해 16.1%, 19,900건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어업자원 및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맨손어업 신고건수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안어업은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소규모 어업으로 어업과 다른 일을 겸업하는 형태로 종사하고 있지만,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하면 어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FTA 체결에 따른 영향으로 도시 근로자와의 소득 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자원 변동과 수산자원의 회복 정도 등 어업여건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 대책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14〉 연도별 연안어업 경영체

(단위 : 건수,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합 계	150,111	150,365	178,219	193,296	195,545	201,937	188,431	167,452	88.9	
허 가	소 계	83,334	79,202	73,798	68,287	64,631	61,856	60,075	98.2	
	연안어업	75,723	71,756	66,660	61,388	58,091	55,432	54,866	98.2	
	구획어업	7,611	7,446	7,138	6,899	6,540	6,424	6,327	6,193	97.9
면 허	소 계	3,279	3,390	3,437	3,556	3,594	3,418	3,318	3,357	101.2
	마을어업	2,726	2,835	2,897	3,020	3,058	2,892	2,800	2,844	101.6
	정치망어업	553	555	540	536	536	526	518	513	99.0
신 고	소 계	63,498	67,773	100,984	121,453	127,320	136,663	123,920	104,020	83.9
	맨손어업	57,561	61,631	94,768	114,557	120,200	129,447	117,006	96,920	82.8
	나잠어업	5,900	6,090	6,144	6,825	6,952	7,013	6,724	6,926	103.0
	투망어업	37	52	72	71	168	203	190	174	91.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지자체별 자료 취합)

## ❖ 근해어업

어업정책과 사무관 양정규

2013년의 근해어업 경영체 수는 3,188개로 2012년보다 1.5%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근해어업은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업종별로 허가건수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1992년 9월부터 새로운 허가는 전면 억제하였으며, 전체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정수 재조정(2003년, 2007, 2013년),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등으로 어업허가를 관리하고 있어 허가 건수에 큰 변동은 없었다.

업종별 경영체를 보면, 대형기선저인망(대형기저)만 1.2% 증가하였고, 그 외 모든 업종은 2012년과 동일 혹은 0.4~3.7% 감소하였다.

〈표 3-1-15〉 연도별 근해어업 경영체

(단위: 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합 계	3,404	3,276	3,280	3,238	3,188	△1.5
대형기선저인망	82	81	83	82	83	1.2
중형기선저인망	90	90	90	91	90	△1.1
근해트롤	89	91	90	91	90	△1.1
근해선망	74	72	72	72	71	△1.4
근해채낚기	720	699	699	702	680	△3.1
기선권현망	78	77	77	77	76	△1.3
근해저망	736	707	714	695	692	△0.4
근해안강망	247	238	236	240	231	△3.7
잡수기	236	236	236	236	235	△0.4
근해통발	331	310	309	304	301	△1.0
근해형망	101	94	85	84	84	0.0
근해연승	575	536	548	521	513	△1.5
근해봉수망	40	40	38	40	39	△2.5
근해자리돔들망	5	5	3	3	3	0.0

자료: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양식어업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김성희

최근 수산물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쳐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가 수는 중규모(면허면적 1ha 이상 3ha 미만) 경영체가 감소한 반면, 3ha 이상 대규모 경영체가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영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16〉 연도별·면적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건, %)

구 분	합계	1ha 미만	1~3ha	3~6ha	3~10ha	10ha 이상
2005	28,184 (100.0)	14,388 (51.1)	7,091 (25.2)	3,220 (11.4)	1,444 (5.1)	1,441 (5.1)
2010	22,016 (100.0)	10,506 (47.7)	5,250 (23.8)	2,810 (12.8)	1,249 (5.7)	2,201 (10.0)

주: ( )는 구성비임 \* 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청 5년 단위 조사로서 매년 변동추이 파악이 어려움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1년

2013년 말의 양식어업 면허건수는 총 9,922건으로 2013년의 9,711건 대비 1.7%, 167건이 증가하였다. 품종별로는 복합양식이 가장 많은 1,395건이며, 굴 1,240건, 새고막 975건, 김 773건, 피조개 740건, 바지락 591건, 다시마 447건, 미역 412건, 우렁쟁이 320건, 협동양식 281건 등이다.

그리고 허가어업은 총 3,592건으로 육상양식업이 1,133건(수조식 881건, 축제식 252건), 육상종묘생산업이 1,590건, 해상종묘생산업이 869건이다.

〈표 3-1-17〉 연도별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단위: 개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합 계	9,555	9,709	9,735	9,795	9,755	9,922	167
김	960	939	911	903	820	773	△47
굴	1,211	1,247	1,245	1,220	1,225	1,240	15
피 조 개	848	832	803	775	765	740	△25
새 고 막	862	875	915	946	981	975	△6
바 지 락	606	602	602	637	615	591	△24
미 역	451	432	435	474	506	412	△94
어 류	553	568	549	528	502	470	△32
우렁쟁이	506	521	463	456	483	320	△163
기 타	3,558	3,693	3,812	3,856	3,858	4,401	543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품종별 경영 형태를 보면, 어류 및 기타 수산물 양식은 개인과 협업 경영체가 주로 경영하고 있다.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은 어촌계 위주의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저소득 어업인들이 주로 경영하는데, 이는 양식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경영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류와 전복·진주조개·우렁쟁이·새우·가리비 양식 등은 많은 자본과 전문적인 양식기술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의 어장면적은 141,312ha로 전년 대비 2.4%, 3,341ha가 증가하였으며, 어촌계나 수협보다는 개인과 협업양식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8〉 소유자별 · 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합 계	136,083	139,867	141,015	139,811	137,971	141,312	2.4
어촌계 및 수협	111,800	115,166	116,550	115,943	115,363	117,817	2.1
개인 및 협업	24,283	24,701	24,465	23,868	22,608	23,495	3.9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향후 수산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어 양식어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소규모의 개인 양식업은 친환경적인 품질 중심의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대규모 양식업체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신품종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 원양어업

원양산업과 사무관 박천일

원양어업은 1957년에 제동산업의 지남호가 인도양에 진출한 것이 시발점으로, 원양어업 경영체는 매년 증가하여 1995년에는 185개사에 이르렀다. 이후 원양어장의 급격한 축소 등 조업환경의 악화로 2013년에는 1990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75개사로 감소하였다. 이 중 어선을 1~2척만 보유한 영세업체가 전체의 58.3%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트롤어업 등 기타 업종이다. 11척 이상을 보유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는 주로 참치연승 업종이다. 원양어선 척수도 1990년의 810척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42척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중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선박이 전체의 91.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9〉 연도별 원양업체 및 조업척수

(단위 : 개, 척)

연도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업체수	36	82	157	139	112	90	88	79	75
선박수	278	750	810	535	410	353	359	344	342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우리나라의 원양업체 수 및 어선 척수의 감소는 대외적으로는 연안국 및 국제수산물기구들이 조업규제를 강화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원양어선의 노후화, 유가 및 인건비 상승, 어선원 구인난 등으로 인해 원양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 제2절 어가 경제

### 1. 어가소득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영진

2013년의 연평균 어가소득은 38,586천 원으로 2012년에 비해 3.2%, 1,20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어업소득은 5.1% 감소, 어업외 소득은 14.8%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의 비중은 48%로 2012년에 비해 4.3% 감소하였다. 어가소득을 타 산업부분과 비교하면, 농가소득 대비 111.7%, 도시가계 소득 대비 69.8% 수준이다.

〈표 3-1-20〉 연도별 어가소득

(단위 : 천 원, %)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어 가 소 득	33,945	35,696	38,623	37,381	38,586	3.2
경 상 소 득	30,213	31,729	35,119	34,171	35,220	3.1
어 업 소 득	16,220	16,607	20,432	19,539	18,538	-5.1
어업외 소득	11,136	11,931	11,377	11,360	13,037	14.8
이 전 소 득	2,857	3,191	3,309	3,272	3,645	11.4
비경상소득	3,732	3,968	3,504	3,210	3,366	4.9
농 가 소 득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11.3
도시가계소득	46,664	48,092	50,983	53,908	55,275	2.5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표 3-1-21〉 연도별 어업소득

(단위 : 천 원, %)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어 업 소 득	16,220	16,607	20,432	19,539	18,538	-5.1
어업총수입	35,350	37,682	45,875	45,228	44,461	-1.7
어업경영비	19,130	21,075	25,443	25,689	25,923	0.9

주 : 어업소득 = 어업총수입 - 어업경영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표 3-1-22〉 연도별 어업외 소득

(단위 : 천 원,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어업외 소득		11,136	11,931	11,377	11,360	13,037	14.8
겸업소득		5,189	5,755	5,951	5,441	5,877	8.0
사업외 소득		5,946	6,176	5,426	5,920	7,160	20.9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2. 어가 가계지출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영진

2013년의 어가 가계지출은 28,032천 원으로 2012년에 비해 3.9%, 1,137천 원이 감소하였다. 이 중 소비지출이 21,569천 원으로 전년 대비 6%, 1,374천 원이 감소하였고, 비 소비지출은 6,46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8%, 237천 원이 증가하였다.

〈표 3-1-23〉 연도별 가계지출

(단위 : 천 원,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가계지출		27,065	28,700	29,906	29,169	28,032	-3.9
소비지출		20,656	21,982	23,524	22,943	21,569	-6.0
비소비지출		6,409	6,719	6,382	6,226	6,463	3.8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3. 어가자산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영진

2013년의 어가 평균자산은 298,462천 원으로 2012년에 비해 0.3%, 10,793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고정자산은 9.1%, 17,998천 원이 증가하였고, 유동자산은 17.4%, 17,205천 원이 감소하였다.

〈표 3-1-24〉 연도별 어가자산

(단위 : 천 원,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어 가 자 산		257,095	258,872	287,650	297,669	298,462	0.3
고정자산 (구성비)		186,102 (72.4)	178,364 (68.9)	195,232 (67.9)	198,667 (66.7)	216,665 (72.6)	9.1
유동자산 (구성비)		70,992 (27.6)	80,508 (31.1)	92,418 (32.1)	99,002 (33.3)	81,797 (27.4)	-17.4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4. 어가부채

수산정책과 서기관 지정훈

2013년의 어가부채는 가구당 40,422천 원으로 2012년에 2.3%, 904천 원이 증가하였다. 어업용 부채는 2.5%, 51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어업용 이외 부채도 2.0%, 391천 원이 증가하였다.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부채/당좌자산 비율은 55.8%로 2012년에 비해 12.4%p 상승하였다.

〈표 3-1-25〉 연도별 어가부채

(단위 : 천 원, %)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어 가 부 채(A)		35,864	35,640	37,862	39,518	40,422	102.3
어 업 용 부 채 (구성비)		19,038 (53.1)	18,277 (51.3)	18,631 (49.2)	20,177 (51.1)	20,690 (51.2)	102.5
어업용 이외 부채 (구성비)		16,826 (46.9)	17,363 (48.7)	19,231 (50.8)	19,341 (48.9)	19,732 (48.8)	102.0
당 좌 자 산(B)		63,648	73,560	83,867	90,976	72,461	79.6
단기상환능력[(A/B)×100]		56.3	48.5	45.1	43.4	55.8	-

주 :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제2장 국내 · 국제 수산업 동향

###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 1. 생산동향

수산정책과 서기관 이정훈

2013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은 2012년(3,183천톤)보다 1.5%(48천톤) 감소한 3,135천톤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업은 기상 악화로 멸치,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어군이 분산되면서 어로활동이 부진하여 전년에 비해 어획실적이 4.2% 감소하였고, 원양어업도 국제규제의 강화 등으로 생산이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다. 반면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김·다시마 등 해조류의 양식 작황 호조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금액은 전년(7조 6,890억원)보다 6.0% 감소한 7조 2,26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어업 등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생산금액도 동반하여 감소하였다.

〈표 3-2-1〉 어업별 생산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증감률(2013/2012,%)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합 계	3,256	80,729	3,183	76,890	3,135	72,269	△1.5	△6.0
연근해	1,235	44,441	1,091	39,510	1,045	37,476	△4.2	△5.1
양 식	1,478	17,842	1,489	17,593	1,515	17,258	1.7	△1.9
내수면	32	3,775	28	3,233	25	3,454	△10.7	6.8
원 양	511	14,671	575	16,554	550	14,080	△4.3	△14.9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 연근해어업

어업정책과 사무관 양정규

기상 악화(저수온 등), 유해성 적조 발생(7~9월) 등에 따른 어로활동 부진으로 2013년도 연근해어업(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은 1,045천톤을 기록, 2012년도(1,091천톤)보다 4.2% 감소하였으며, 생산금액도 3조 7,476억원으로 전년(3조 9,510억원)보다 5.4% 감소하였다.

부류별로는 갑각류와 기타 수산동물 생산은 증가한 반면, 나머지 부류의 생산은 감소하였다. 갑각류의 생산은 106천톤으로 전년(105천톤)에 비해 1%(1천톤) 증가하였다. 반면, 어류가 694천톤으로 전년(704천톤)에 비해 1.4%, 패류는 51천톤으로 전년(58천톤)에 비해 12.1%, 연체동물이 178천톤으로 전년(207천톤)에 비해 14.0%, 해조류는 9천톤으로 전년(10천톤)에 비해 10.0%(1천톤)가 각각 감소하였다.

〈표 3-2-2〉 부류별 생산 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 2013/2012
합 계	1,227	1,134	1,235	1,091	1,045	△4.2
어 류	796	736	843	704	694	△1.4
패 류	90	80	72	58	51	△12.1
갑 각 류	100	108	102	105	106	1.0
연체동물	223	188	197	207	178	△14.0
해 조 류	11	13	15	10	9	△10.0
기타 수산동물	7	8	7	6	7	16.7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3-2-3〉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 2013/2012
멸 치 류	203.7	249.6	292.7	222.0	209.1	△5.8
고 등 어	175.3	94.3	138.7	125.1	102.1	△18.4
갈 치	85.5	59.2	33.1	32.5	47.1	44.8
강 달 이 류	12.1	5.0	14.0	7.8	7.2	△7.7
전 갱 이 류	22.1	19.3	42.9	31.1	15.1	△51.5
참 조 기	34.0	31.9	59.2	36.8	35.3	△4.2
삼 치 류	36.8	35.8	29.3	33.4	29.4	△11.9
청 어	37.5	25.0	23.4	28.0	45.1	61.1
오 징 어 류	189.2	159.1	171.6	181.4	158.6	△12.6
문 어	15.4	10.8	10.4	10.1	9.1	△9.6
붉은 대 게	30.0	30.7	32.5	37.0	38.0	2.8
젓 새 우	18.9	18.9	20.7	20.2	18.9	△6.4
꽃 게	33.2	33.2	26.6	26.9	30.4	13.4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주요 어종별로는 갈치(47천톤, 44.8%), 청어(45천톤, 61.1%), 붉은대게(38천톤, 2.8%), 꽃게(30천톤, 13.4%)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멸치(209천톤, 5.8%), 고등어(102천톤, 18.4%), 강달이류(7천톤, 7.7%), 전갱이류(15천톤, 51.5%), 참조기(35천톤, 4.2%), 삼치류(29천톤, 11.9%), 오징어류(159천톤, 12.6%), 문어(9천톤, 9.6%), 젓새우(19천톤, 6.4%)의 생산은 감소하였다.

### ▶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은 50~140톤급 어선을 이용하며, 연근해어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종에 속한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소호산도, 제주도 및 동해남부해역 등에서 고등어·정어리·전갱이·삼치 등을 주 대상으로 연중 조업한다.

대형선망어업은 2005년도부터 자체 휴어기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4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도(126천톤)에는 2010년도(88천톤)에 급감했던 고등어류의 생산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3년의 경우 전년(117천톤)에 비해 18.3% 감소한 96천톤을 생산하였다.

### ❖ 대형저인망어업

대형저인망어업은 60~140톤급 어선 1척이 조업하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으로 구분되며, 제주근해와 서해중부해역에서 주로 갈치·가자미·조기류 등을 어획하는 어업이다.

세부 어업별 주요 어종의 생산 동향을 살펴 보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경우 민어의 어획량이 전년(935톤)에 비해 155.6%(2,390톤) 증가하였다. 반면, 가자미류 어획량은 전년(1,204톤)대비 15.8%(1,014톤), 눈볼대는 전년(1,454톤)보다 7.8%(1,340톤), 아귀류는 전년(1,171톤)에 비해 4.4%(1,119톤) 감소하였다.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갈치의 어획량이 전년(4,909톤)에 비해 85.4%(9,101톤), 멸치는 전년(4,874톤) 대비 3.5%(5,045톤), 병어류는 전년(1,147톤)보다 2.1%(1,171톤)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강달이류 어획량은 전년(5,296톤) 대비 32.8%(3,560톤), 삼치류는 전년(19,005톤)보다 25.4%(14,177톤), 전어는 전년(2,702톤)에 비해 31.1%(1,862톤), 참조기는 전년(1,766톤) 대비 39.5%(1,068톤) 감소하였다. 대형저인망의 2013년 전체 생산량은 전년(65,870톤)에 비해 2.6% 증가한 67,586톤을 기록하였다.

### ❖ 중형저인망어업

중형저인망어업은 20~6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오징어·가자미·도루묵·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에서 가자미·아귀·강달이·새우·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중형저인망어업의 어획량은 2004년 일시 감소했으나 이후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과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이 전년 수준 이상의 어획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전년(48,517톤)보다 7.3% 감소한 44,998톤을 기록하였다.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의 경우 2005년 까지는 거의 포획되지 않던 멸치 생산(3,983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012년도에는 1만톤 이상을 생산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4,197톤을 생산하는 데 머물렀다.

### ❖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8~90톤급 어선을 이용해 오징어·갈치·복어 등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주 어획대상인 오징어 어장은 어군의 북상기에 따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어기를 해역별로 보면 남해안에서는 제주도~대마도 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서해안에서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 동해안에서는 동해남부해역으로부터 강원도 및 대화퇴 근해에 걸쳐서 6~12월에 어장이 형성된다. 이 중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치어장은 주로 5~12월에 제주도 주변 및 제주도 동남해역에서 형성되고 있고, 복어어장은 1~4월에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중·일 잠정조치수역” 하단해역과 6~10월의 제주도 서남부해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근해채낚기어업의 2013년도 오징어 생산량은 39,386톤으로 전년(46,701톤)보다 15.7% 감소하였으며, 갈치의 생산량은 1,726톤으로 전년(1,218톤)에 비해 41.7% 증가하여 2013년 전체 생산량은 전년 (49,443톤)보다 13.9% 감소한 42,570톤을 기록하였다.

### ▼ 연근해안강망어업

연근해안강망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갈치·조기·멸치·병어·아귀·꽃게·젓새우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계절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남북 방향으로 어장 분포 범위가 변동한다.

연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동중국해에서 어획대상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대폭적인 어선감척으로 생산량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생산량은 전년 (59,364톤)보다 3.4% 증가한 61,370톤을 기록하였다.

### ▼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톤급 미만의 본선 2척을 비롯하여 어탐선·가공선·운반선이 1개의 선단을 이루어 남해연안 일대에서 멸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멸치는 전형적인 연안 회유성 어종으로 해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량이 해황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3년 멸치 생산량은 전년(126,663톤)보다 1.8% 증가한 128,950톤이었다. 2013년 기선권현망어업의 전체 생산량은 전년(132,776톤)보다 5.4% 증가한 139,970톤을 기록하였다.

### ❖ 연근해자망어업

연근해자망어업은 동·서·남해에서 조기·멸치·가자미·꽃게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조기의 경우 서해남부해역에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어장이 형성되면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2년도에 강달이류, 멸치, 참조기, 꽃게의 어획 부진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가 2013년도에는 전년(125,401톤)보다 7.5% 증가한 134,862톤을 기록하였다.

### ❖ 근해트롤어업

근해트롤어업은 60~140톤급 어선으로 서·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오징어·갈치·병어·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형트롤어업과 20~60톤급 어선으로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에서 새우류·가자미·도루묵·청어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 중형트롤어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형트롤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말쥐치의 대량 어획으로 호황을 이룬다 이후 대상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어선감척으로 인해 최근의 단위생산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해구 트롤어업은 처음엔 새우트롤어업으로 번성하여 왔으나, 이후 대상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에 애로를 겪어왔다. 최근에는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 생산량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근해트롤어업의 주 어획대상 어종이 되고 있는 오징어의 2012년 어획량은 95,032톤으로 전년(114,986톤)보다 17.4% 감소하였으며,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로 2013년도 전체 생산량은 101,237톤으로 전년(118,667톤)보다 14.7% 감소하였다.

### ❖ 연근해통발어업

통발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부터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이 어업은 어획대상에 따라 근해장어통발, 연근해통발(어류·계류·고동류), 근해문어단지로 구분된다.

근해장어통발어업은 통영지역을 중심으로 봉장어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1990년대 들어 자원 감소 및 어장 축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는 기미(2007년 11,801톤)를 보이다가 2008(8,521톤)년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생산량은 8,874톤을 기록하였다.

근해통발 중·대형어선은 양자강 하류의 동중국해에서 꽃게를 대상으로 조업하여 왔으나,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EEZ로 이동 조업을 하게 되면서 자망, 저인망, 연안어업 등 기존 어업과 경쟁 조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연근해통발어업의 생산량은 2013년도에 78,936톤으로, 전년(80,270톤)보다 1.7% 감소하였다.

### ❖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 어선에서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주 어획대상은 갈치·대구·복어·가자미·붕장어·불락류 등이며, 일반적으로 그물에 의한 조업이 불가한 암초지역에서 조업이 간단히 이루어져 기업형보다는 선주 겸 선장 형태의 소규모 방식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해연승어업의 생산량은 2004년(11,373톤) 이후 2008년(24,510톤)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부터 감소(16,614톤)하였으며, 2013년에는 붕장어 어획량 감소로 전년(15,329톤)보다 3.1% 감소한 14,857톤을 생산하였다.

〈표 3-2-4〉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 톤,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합 계	1,226,966	1,133,721	1,235,489	1,091,034	1,044,697	△4.2
대형선망	241,052	160,409	219,109	177,050	163,859	△7.5
대형저인망	63,737	64,327	72,268	65,870	67,586	2.6
중형저인망	36,922	40,844	45,482	48,517	44,998	△7.3
근해채낚기	60,478	46,147	45,073	49,443	42,570	△13.9
안강망	74,197	78,492	79,293	59,364	61,370	3.4
권현망	116,464	157,720	154,055	132,776	139,970	5.4
자망	135,038	131,451	138,937	125,401	134,862	7.5
근해트롤	119,578	99,620	118,443	118,667	101,237	△14.7
통발어업	70,930	72,437	73,021	80,270	78,936	△1.7
연승어업	16,614	15,277	16,696	15,329	14,857	△3.1
마을·구획어업	82,237	76,445	85,103	65,937	60,682	△8.0
기타	209,719	189,367	188,009	152,410	133,770	△12.2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3. 양식어업

어촌양식정책과 서기관 이규선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웰빙·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에게 단백질 등을 공급하는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3년도 천해양식어업 생산은 슈퍼김 보급 확대와 함께 연초 해황이 양호하여 해조류 양식 작황이 좋았고, 전복 양식시설량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8% 늘어난 1,515천톤으로 나타났다.

품종별 생산량은 김류가 406천톤(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시마류(373천톤), 미역류(327천톤), 굴류(240천톤), 넙치류(37천톤), 홍합류(34천톤), 조피볼락(24천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 현황

(단위 : 톤,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증 감 률
합 계		1,381,003	1,313,355	1,355,000	1,477,546	1,488,950	1,515,210	1.8
어류	소 계	99,006	109,516	80,110	72,449	76,308	73,108	△4.2
	넙 치	46,432	54,674	40,925	40,805	39,371	36,944	△6.2
	조피볼락	32,992	33,020	20,918	17,338	23,085	23,757	2.9
	기 타	19,582	21,822	18,267	14,306	13,852	12,407	△10.4
패류	소 계	343,704	326,544	355,699	389,159	370,074	291,026	△21.4
	굴	249,976	240,911	267,776	281,022	284,856	239,779	△15.8
	홍 합	67,442	55,035	54,440	70,554	61,310	34,429	△43.8
	바 지 락	15,541	17,905	23,430	25,862	12,623	4,580	△63.7
	전 복	5,146	6,207	6,228	6,779	6,564	7,479	13.9
	피 조 개	1,903	1,714	1,560	2,110	1,872	2,227	19.0
	기 타	3,696	4,772	2,265	2,832	2,849	2,532	△11.1
해조류	소 계	921,024	858,659	901,672	992,283	1,022,326	1,131,305	10.7
	김	224,242	211,444	235,534	316,729	349,827	405,525	15.9
	미 역	381,076	309,155	393,616	393,724	339,924	327,375	△3.7
	다 시 마	285,221	306,183	241,322	246,701	308,601	373,264	21.0
	기 타	30,485	31,877	31,200	35,129	23,974	25,141	4.9
기타수산 동물 <sup>1)</sup>		17,269	18,636	17,519	23,655	20,242	19,771	△2.3

주 : 1) 기타 수산동물은 우렁쉥이, 오만둥이, 미더덕, 흰다리새우 등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13년

## 4. 내수면어업

양식산업과 사무관 민병주

2013년도 내수면어업 총 생산량은 25천톤으로 전년도(28천톤) 대비 9.7% 감소하였다. 어업별로는 어로어업 생산량이 7천톤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양식어업 생산량은 18천톤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다.

내수면 어종 중 뱀장어의 경우 극동산 실뱀장어의 자원량 감소로 2012년까지 양식 생산이 감소하였다. 그러던 것이 2013년도에는 필리핀산(비콜라 등) 등 이종 개발 확산과 극동산 실뱀장어 포획·채취량 증가로 전년 대비 890톤이 늘어난 약 5천톤 가량이 양식으로 생산되었다.

〈표 3-2-6〉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 현황

(단위 : 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년 대비	
						증감	비율
합 계	30,071	30,982	32,270	28,131	25,414	△2,717	△9.7
어로어업	11,707	10,256	10,283	10,221	7,179	△3,042	△29.8
가 물 치	42	50	77	68	25	△43	△63.2
메 기	218	88	97	149	131	△18	△12.1
미꾸라지	0	3	19	14	0	△14	순감
뱀 장 어	145	119	72	106	69	△37	△34.9
붕 어	2,561	2,655	2,710	2,694	1,501	△1,193	△44.3
잉 어	1,777	1,802	1,775	1,897	1,032	△865	△45.6
피 라 미	156	227	249	292	214	△78	△26.7
패류(재첩 등)	1,393	1,510	1,774	1,275	1,776	501	39.3
기 타	5,415	3,802	3,510	3,726	2,431	△1,295	△34.8
양식어업	18,364	20,726	21,987	17,910	18,235	326	1.8
가 물 치	259	233	282	260	250	△10	△3.8
민 물 돔	336	251	220	184	139	△45	△24.5
뱀 장 어	6,621	7,902	7,185	4,259	5,149	890	20.9
잉 어	224	200	142	78	89	11	14.1
향 어	929	1,169	1,434	1,737	1,068	△669	△38.5
송 어 류	2,737	2,652	3,014	3,066	3,390	324	10.6
기 타	7,258	8,319	9,710	8,326	8,150	△176	△2.1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13년

## 5. 원양어업

원양산업과 사무관 박천일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1990년 선박 보유척수 810척, 생산량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조업 규제 등의 강화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총 생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명태는 100%, 콩치 85%, 오징어는 31%가 원양에서 생산·공급된다는 원양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원양어업 생산은 550천톤으로 전년도 575천톤에 비해 4.4% 감소하였다. 어종별로는 참치류 생산량이 275천톤, 원양오징어는 100천톤, 명태 24천톤, 콩치 20천톤을 생산하였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참치와 명태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오징어는 세계 최대 어장인 포클랜드 수역의 어황 호조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표 3-2-7〉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 현황

(단위 : 톤,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2012
계	611,950	592,116	510,624	575,308	549,974	95%
참치류	327,181	319,712	251,093	305,335	274,929	90%
명 태	38,996	46,794	48,793	39,025	24,341	62%
오징어	84,652	65,416	70,130	81,526	100,129	122%
콩 치	22,001	21,360	18,068	13,961	20,055	143%
기 타	139,120	138,834	122,540	135,461	130,520	96%

자료 : 원양산업통계연보

## 제2절 국내 수산물 수출·수입

### 1. 수출

수산정책과 서기관 이병웅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까지 15억달러 이상을 유지해 왔다. 이후 국내외 수출환경의 악화로 2001년에 12억달러로 감소한 이래 2008년까지 11억달러~14억달러 내외의 정체를 보여 왔으나, 2011년부터 23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2012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 2013년도에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 수출실적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은 우리나라 수산물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현상과 국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참치 품목의 수출 부진에 기인하였다. 이에 수산물 수출물량은 전년 대비 21천톤 감소(3.0%)하였고, 금액도 210백만달러 감소(8.9%)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에서 수산물 수출이 점유하는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4%였다.

〈표 3-2-8〉 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수출	363,533	466,383	555,213	547,870	559,632
수산물 구성비	1,511 (0.4)	1,798 (0.4)	2,308 (0.4)	2,362 (0.4)	2,152 (0.4)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 ❖ 품목별 수출 현황

2013년도 활어 수출은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의 3.5%를 차지하였는데, 장어류(뽕장어, 봉장어, 갯장어) 등의 수출 감소로 작년 대비 8.1% 감소한 75백만달러를 수출하였다. 신선냉장품 수출실적은 삼치, 바지락, 게 등의 수출 감소에 따라 2012년 대비 26.4% 감소한 184백만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의 8.5%를 차지하였다. 또한 수출 주력 품목인 냉동품은 가공용 수출품종인 참치, 고등어 등의 수출실적이 감소를 보임에 따라 2012년 대비 11.5% 감소한 1,239백만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의 58%를 차지하였다.

〈표 3-2-9〉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792,045	1,798,162	686,715	2,307,798	708,638	2,362,050	687,569	2,151,951
활 어	6,471	85,641	5,915	77,965	5,722	81,579	5,420	74,959
신선·냉장	30,129	192,678	26,138	228,235	28,239	249,750	22,115	183,929
냉 동	608,826	1,074,204	417,187	1,269,014	519,322	1,399,867	488,486	1,239,240
기 타	146,619	445,639	237,475	732,584	155,354	630,856	171,548	653,82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 국가별 수출 현황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의 37.9%를 수출하였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2위의 수출대상국가로 부상하였다. 또한, 미국은 2011년부터 수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 중 10.1%로 3위를 차지하였다. 더불어 베트남, 홍콩, 나이지리아 등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주 수출국인 태국, 뉴질랜드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2013년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비해 8개국이 증가한 152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였는데, 국별 비중은 일본 37.9%, 중국 17.2%, 미국 10.1%, 태국 9.6%, 베트남 3.3%, 뉴질랜드 3.0% 등으로 이들 5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8.1%를 차지하였다.

〈표 3-2-10〉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511,230	1,798,162	2,308,155	2,362,050	2,151,951
일 본	734,134	859,483	993,537	981,683	815,506
중 국	145,711	231,223	464,819	372,257	370,446
미 국	128,885	142,166	180,852	191,004	217,490
태 국	127,733	126,824	173,433	260,783	206,890
베 트 남	22,407	32,009	61,453	54,465	70,089
뉴질랜드	70,461	71,915	92,707	72,663	48,848
홍 콩	12,963	27,980	31,295	28,418	36,938
나이지리아	218	33	15,824	20,602	34,652
스 페 인	41,437	55,491	54,767	39,488	31,878
대 만	18,208	22,314	26,515	28,506	28,627
사 모 아	0	0	0	15,157	21,783
캐 나 다	11,818	15,383	17,199	24,949	21,022
이탈리아	23,231	34,331	15,036	22,919	18,186
프 랑 스	13,731	11,054	7,516	15,925	16,253
기 타	160,293	167,956	173,202	233,231	213,343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2008년부터 소금기 수산물로 분류됨)



〈표 3-2-11〉 주요 어종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511,230	1,798,162	2,308,155	2,362,050	2,151,951
참 치	314,373	374,354	393,668	603,419	556,512
김	81,507	105,197	161,495	231,039	251,727
오징어	108,052	114,762	181,034	119,636	139,310
넙 치	51,812	78,845	79,372	69,023	79,483
굴	42,247	66,057	81,689	55,843	70,163
붕장어	39,382	42,105	55,264	70,325	59,984
계 살	41,986	43,054	54,172	58,699	59,700
명 태	14,387	29,595	47,332	59,821	58,203
전 복	33,751	36,820	52,351	58,248	53,784
삼 치	45,361	54,635	67,667	53,717	52,297
고 등 어	38,097	27,364	48,879	71,579	46,166
어 란	6,956	14,427	45,863	52,647	37,977
이빨고기	23,437	28,505	46,651	40,596	37,328
대 구	4,670	25,621	53,052	36,235	34,713
바 지 락	34,763	42,960	37,989	39,366	29,676
미 역	16,811	19,039	40,765	36,494	28,503
돔	17,551	20,242	27,258	35,884	27,130
전갱이	21,117	24,825	23,076	27,805	26,253
캐비아	24,526	30,397	32,040	33,264	22,851
툰	28,904	29,622	31,886	27,165	20,993
기 타	521,540	589,736	746,652	581,245	459,198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 2. 수입

통상무역협력과 사무관 정재훈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은 국내생산량의 한계 및 수요 증가, 1997년도 수입자유화와 FTA 영향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01년도를 기점으로 수산물이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된 이래 최근 7년간 연평균 182백만달러씩 수입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3년에는 국내 수산물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

중국에서의 수입금액 감소로 전년 대비 2.0%(80백만달러) 감소한 3,895백만달러의 수입실적을 기록하였다. 국가 전체 수입액 대비 수산물 수입 점유율은 큰 변화 없이 1%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12〉 수산물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수 입	323,084	425,212	524,413	519,584	515,586
수 산 물 구 성 비	2,895 (0.9)	3,458 (0.8)	4,192 (0.8)	3,975 (0.8)	3,895 (0.8)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 ❖ 품목별 수입 현황

수산물 수입의 약 58%를 점유하는 냉동품이 2013년도에 전년 대비 5.9% 감소한 2,327백만달러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활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86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신선·냉장 수산물도 4.4% 증가하였으나 냉동 수입 금액 하락으로 전체 수입액은 다소 감소하였다. 제품유형별 수입액 점유율을 보면, 냉동품(60%), 기타수산물(12%), 조제품(10%), 신선·냉장(8%), 활어(7%), 건조(3%) 등의 순이다.

〈표 3-2-13〉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4,715,726	3,458,400	4,845,662	4,191,944	4,829,157	3,974,627	5,387,008	3,894,740
활 어	33,635	250,683	26,956	268,571	23,905	255,847	26,585	299,636
신선·냉장	102,143	302,771	114,329	336,996	107,795	312,394	96,965	312,392
냉 동	905,970	2,084,306	1,013,154	2,651,802	947,228	2,473,246	906,364	2,326,565
기 타	3,673,977	820,640	3,691,225	934,574	3,750,229	933,139	4,357,093	956,146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 ❖ 국가별 수입 현황

2013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국가를 살펴보면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26.3%를 차지한 중국이 1위였으며, 다음은 러시아, 베트남, 미국 순이다. 2013년도 국가별 수입증가율을 보면, 미국, 칠레,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에서의 수입액이 각각 24.8%, 8.9%, 5.1%, 22.4%, 48.2% 증가한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향 등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로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8.4% 감소하였다.

〈표 3-2-14〉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895,495	3,458,400	4,191,944	3,974,627	3,894,740
중 국	854,256	1,096,264	1,250,436	1,082,620	1,026,162
러 시 아	435,537	495,267	662,758	654,125	590,087
베 트 남	305,151	376,338	482,607	506,886	484,108
미 국	123,453	126,179	155,412	177,421	221,407
칠 레	81,407	76,957	142,581	110,864	120,718
노르웨이	69,571	97,108	138,833	114,402	120,249
태 국	85,141	100,957	135,111	144,216	119,345
대 만	88,136	96,041	128,598	131,795	117,271
일 본	195,063	226,204	168,543	116,003	106,223
호 주	102,340	118,435	112,822	102,324	100,908
캐 나 다	47,045	52,950	67,852	63,021	77,139
페 루	40,259	41,514	71,556	78,030	71,641
인 도	32,693	48,581	44,924	46,055	68,237
인도네시아	67,470	63,970	69,815	69,902	61,659
세 네 갈	6,351	12,709	18,038	35,681	55,924
기 타	361,622	428,926	542,058	541,282	553,662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국가별 수입액 점유율은 중국(26.3%)에 이어, 러시아(15.2%), 베트남(12.4%), 미국(5.7%), 칠레(3.1%)로, 상위 5개국의 수입액 합계가 약 62.7%를 기록하여 전년도 63.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3-2-15〉 주요 어종별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895,495	3,458,400	4,191,944	3,974,627	3,894,740
명 태	330,383	416,233	397,926	367,879	358,983
새 우	188,273	217,184	271,530	278,917	281,719
소 금	178,199	224,727	220,889	193,312	209,312
낙 지	118,480	154,129	194,527	174,911	176,033
새우살	94,293	106,037	141,224	152,879	155,898
오징어	62,822	90,063	142,476	164,992	145,316
참 치	111,307	89,278	139,500	165,970	139,078
연 어	67,317	68,917	122,583	98,621	136,493
실장어	13,885	53,073	81,643	82,312	108,498
갈 치	98,202	107,986	110,641	107,349	108,486
조 기	110,780	150,927	162,631	126,745	105,413
어 란	63,429	67,606	112,544	124,239	96,000
주꾸미	62,497	77,129	117,857	94,640	95,437
넙 치	29,047	39,352	73,399	68,172	72,502
대 계	29,702	23,213	41,951	60,805	59,419
아 귀	57,597	82,664	100,045	66,294	59,185
바다가재	15,593	22,306	23,745	31,609	57,784
골뱅이	32,699	33,940	37,529	40,816	56,155
대 구	26,177	40,566	66,035	52,895	55,255
공 치	46,198	46,178	62,678	62,102	53,528
기 타	1,158,615	1,346,892	1,570,591	1,459,168	1,364,246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성원

### 1. 수 급

2012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동향은 수입 증가로 총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0.9% 증가한 5,973천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4,024천톤을 소비하였고, 1,072천톤은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877톤은 2013년도 공급물량으로 이월되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연근해어업에서 1,091천톤, 천해양식어업 1,489천톤, 원양어업에서 575천톤 등 3,183천톤이 생산되었다. 국내 소비는 5.5% 증가했으며, 공급 부족분은 수입 2,144천톤과 전년도 재고량 659천톤으로 충당하였다.

〈표 3-2-16〉 수산물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 급	생 산	2,714	3,032	3,275	3,360	3,182	3,111	3,256	3,170
	수 입	2,557	2,646	2,604	2,135	2,186	2,339	2,059	2,144
	전년재고	531	512	575	618	567	528	603	659
합 계		5,802	6,190	6,454	6,113	5,935	5,978	5,918	5,973
수 요	국내소비	4,169	4,568	4,625	4,280	4,071	3,624	3,813	4,024
	수 출	1,121	1,047	1,211	1,266	1,336	1,751	1,466	1,072
	차년이월	512	575	618	567	528	603	639	877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기공과

### 2. 소 비

2012년도 기준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4.9kg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였다.

〈표 3-2-17〉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 현황

(단위 : kg/연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48.9	49.5	56.6	56.5	54.9	49.8	51.3	53.5	54.9
어 패 류	41.1	39.9	43.5	42.1	39.1	35.4	36.6	37.8	37.0
해 조 류	7.8	9.6	13.0	14.4	15.8	14.4	14.7	15.7	15.9

주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13)"

〈표 3-2-18〉 동물성 단백질 공급 현황

(단위 : g/1인당 1일,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46.66	45.43	48.14	48.46	46.71	46.46	47.32	49.23	49.36
축 산 물	26.61	26.29	27.39	28.59	28.30	29.94	30.17	31.11	30.94
어 패 류 (점 유 율)	20.05 (43.0)	19.14 (42.1)	20.75 (43.1)	19.86 (41.0)	18.41 (39.4)	16.52 (35.6)	17.15 (36.2)	18.12 (36.8)	18.42 (37.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13)"

### 3. 가 격

2013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어업의 조업 순조로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미역, 조개, 멸치 등의 생산량 감소로 수산물의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미역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3.5% 감소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0.6% 상승하였다.

〈표 3-2-19〉 수산식품 소비자 물가 동향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소비자물가	83.8	86.1	88.1	90.3	94.5	97.1	100.0	104.0	106.3	107.7
수산식품 소비자물가	74.6	75.7	76.2	76.3	80.5	89.9	100.0	108.5	111.2	112.8
신선어개류	74.2	76.2	77.1	75.8	80.0	88.3	100.0	108.7	110.5	110.1
해조류	76.8	78.5	81.0	83.5	91.8	97.9	100.0	107.1	124.7	135.9

주 : 기준년도(2010년) 대비 등락률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조사자료

2013년도 수산물의 소비자 물가는 대중성 어종 중 명태, 갈치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오징어, 고등어의 경우 생산량 증가 및 소비 둔화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 제4절 국내 어업 및 어장환경

### 1. 어황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최광호

#### ▽ 해역별

2012년 겨울부터 지속된 한파와 봄철 저수온(평년대비 0.1~2.9℃ 저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2013년 연근해 어획생산량은 전년대비 96%, 평년대비 86% 수준을 기록하였다. 1/4분기 동안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온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발달에 따라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에 비해 저수온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난류성 어류인 고등어, 살오징어 등의 남하회유가 빨라져 우리나라 어장을 벗어나면서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해역의 여름철 수온은 6월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1~2℃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고수온 현상은 11월까지 지속되었다.

해역별로 어황을 살펴보면 남해에서는 대형선망과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다. 대형선망 어업은 겨울철(1~3월)의 경우 우리나라 전해역에 나타났던 저수온 현상으로 어군의 남하회유가 빨라져 어획이 부진하였으며, 여름철에도 어군의 분산분포로 어황이 저조하였다. 가을 이후에는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밀도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어획량이 회복되었으나, 10월에는 기상악화에 따른 조업척수의 감소로 어황이 부진하였다. 대형선망어업의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대비 다소 부진하였다. 멸치어업은 멸치 유자망과 기선권현망어업에서 모두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대형트롤어업은 1~3월에는 동해남부 해역 및 남해근해에서 남하하는 살오징어(76%)를 대상으로 조업을 하였으며, 4월에는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에서 참돔, 물가자미,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실시하였다. 5~6월에는 어획활동이 거의 없었으며, 7월에는 남해 중부 및 제주 남부해역에서 살오징어와 갈치, 황돔, 참조기를 어획하였다. 8월에는 여러 해역에서 어획이 이루어졌는데, 서해중부해역에서는 살오징어, 제주도 남부해역에서는 갈치, 남해 중부해역에서는 갈치, 황돔,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다. 9~10월에는 서해남부, 제주도 남부해역과 더불어 남해동부해역까지 어장이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을 나타내었다.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근해안강망, 유자망, 저인망어업이 참조기, 갈치,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실시하였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나타내었다. 근해안강망어업은 시기별로 어획대상종과 어장이 변화하였는데, 1~3월에는 남해서부해역 및 제주도 서방해역에서 참조기, 아귀류, 갈치 등을

주 대상으로 어획을 하였으며, 4월에는 서해 중부해역으로 어장이 일부 이동하였다. 5~7월에는 서해로 어장이 확대되면서 갈치, 아귀류, 병어, 반지 등을 주로 어획하였다. 가을 이후에는 중심어장이 다시 남하여 제주서방 및 서해남부해역에서 중심 어장이 형성되어 갈치, 참조기, 아귀류 등을 주로 어획하였다.

동해의 오징어채낚기어업은 겨울철(1~3월)에는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남부해역 및 남해중동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봄철 이후 북상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을 실시하였다. 8월 이후 본격적인 어기가 시작되면서 강원연안에서 어장 밀도가 다소 높아져 오징어채낚기 어황은 전년 및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봄철 북상하는 꽁치를 대상으로 하는 꽁치유자망어업은 평년대비 순조로웠고, 동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가자미류, 도루묵, 대구, 청어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조업이 이루어져, 어황은 평년대비 순조로웠다.

## ▼ 어종별

고등어는 1월에는 저수온 현상에 의해 남하한 어군이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밀집하여 높은 어획이 보고되었으나, 2월 이후에는 동중국해로 빨리 남하하여 어획이 부진하였다. 여름철 이후 8월과 9월에는 어획량이 전년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10월에는 조업척수의 감소로 어획이 부진하였다.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에 비해 다소 부진하였으나 2012년 가을 이후 개체 크기가 큰 고등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미성어 어획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멸치의 어획량은 남해동부해역 및 동해남부해역으로의 내유량 증가로 평년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최대 어획을 기록하였던 2011년 29만 톤, 2012년 22만 톤에 비해 감소한 20.9만 톤을 기록하였다. 참다랑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주로 남해동부 및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어획되었으나 평년의 53% 수준으로 부진하였다. 말쥐치의 어획량은 2009년 가을부터 증가하여 2010년까지 높은 어획량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이후 어획이 부진하였다.

갈치는 여름철 이후 어획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45%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성어의 자원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미성어의 어획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어획노력량 감축 등이 필요하다. 참조기는 제주도 서부 및 서해남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살오징어는 겨울철(1~3월)에는 남하 회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남부해역 및 남해중동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4월에는 동해연안에서 북상회유를 시작하는 어군과 제주도 동방해역에서 남하 잔류군을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다. 5~6월에는 북상회유를 시작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중부연안~울릉도간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다. 7~10월에는 동해 전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다.



8월 이후 본격적인 어기가 시작되면서 강원연안에서 어장 밀도가 다소 높아져 오징어채낚기 어황은 전년 및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도루묵은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의해 동해 연안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 이후 어획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명태는 여전히 자원량이 낮아 향후 어획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자원동향

### ❖ 연근해 어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오택윤

TAC 대상어종(11종)을 포함하여 연근해 주요 40개 어종에 대해 생물학적 조사, 어획동향분석 및 자원상태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근해 자원상태는 1990년대 초에 비해 2013년에는 과잉노력상태였으며, 현재 어획노력량은 적정수준(1)의 1.6, 자원상태는 0.4로 추정되어 어획 강도는 높고 어획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종별 자원수준('99년 이후 자원상태)은 낮은 수준 13종, 중간 수준 18종, 높은 수준 9종이었으며, 자원동향(최근 5년간 자원변동)은 감소경향 16종, 평형상태 15종, 증가경향 9종으로 분석되었다.

〈표 3-2-20〉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한 자원 평가

구분	기준	어 종
자원 수준	낮음(13)	갈치, 봉장어, 병어류, 쥐치류, 복어류, 정어리, 꽁치, 대게, 명태, 강달이, 참홍어, 전어, 오분자기
	중간(18)	고등어, 참조기, 삼치류, 전갱이, 눈볼대, 갯장어, 망치고등어, 보구치, 살오징어, 꽃게, 키조개, 낙지, 개조개, 민어, 대구, 문치가자미, 소라, 옥돔
	높음(9)	가오리류, 참다랑어, 문어류, 도루묵, 멸치류, 아귀류, 붉은대게, 청어, 기름가자미
자원 동향	감소(16)	갈치, 병어류, 쥐치류, 복어류, 망치고등어, 정어리, 보구치, 꽁치, 명태, 꽃게, 키조개, 참홍어, 낙지, 소라, 옥돔, 오분자기
	평형(15)	고등어, 참조기, 삼치류, 전갱이, 봉장어, 눈볼대, 갯장어, 살오징어, 대게, 강달이, 전어, 개조개, 민어, 문치가자미, 기름가자미
	증가(9)	가오리류, 참다랑어, 문어류, 도루묵, 멸치류, 아귀류, 대구, 붉은대게, 청어

※ 자원수준 : 1999년 이후의 평균 및 1SD(표준편차)에 대하여 2012년의 값이 평균±1SD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중간 수준, 평균+1SD값 이상 및 평균-1SD 값 이하의 경우 각각 높은 수준 및 낮은 수준으로 판단.

자원동향 : 최근 5년간의 평균 및 1SD에 대하여 2012년의 값이 평균±1SD 범위내에 있는 경우 평형상태, 평균+1SD값 이상 및 평균-1SD 값 이하의 경우 각각 증가 및 감소 경향에 있는 것으로 판단.

우선순위 : ①자원량, ②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③어획량

2014년도 TAC 시행을 위해 대상어종 11종에 대하여 어획상황을 분석하고 자원상태를 평가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TAC 심의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도 TAC 대상어종의 자원수준은 높음 2종, 중간 7종, 낮음 2종이며, 자원동향은 증가 2종, 평형 6종, 감소 3종으로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에서 평형상태를 나타내었으며, 자원상태를 고려한 적정어획량(ABC)은 목표값 기준 16% 감소, 한계값 기준 5% 증가되었다.

〈표 3-2-21〉 TAC 대상어종의 적정어획량 및 자원동향

품종명	적정어획량(ABC)			자원수준/동향	
	2013	2014		전년	금년
		목표값	한계값		
합 계	413,151	349,063	432,802		
고등어	135,000	128,000	146,000	중간/증가	중간/평형
전갱이	14,700	18,000	21,000	낮음/감소	중간/평형
붉은대게	38,000	33,000	38,000	중간/증가	높음/증가
개조개	2,090	2,100	2,100	낮음/감소	중간/평형
키조개	6,800	7,549	8,455	중간/평형	중간/감소
제주소라*	1,300	1,096	1,310	중간/감소	중간/평형
대게	1,521	1,440	1,570	낮음/평형	낮음/평형
꽃게	19,500	9,400	14,600	중간/증가	중간/감소
오징어	191,000	145,000	196,000	중간/평형	중간/평형
도루묵	3,030	4,377	4,880	중간/증가	높음/증가
참홍어	200	197	197	낮음/감소	낮음/감소

\* 소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4년도 자체 분석 후 TAC 설정, 단위(톤)

### ▼ 원양 어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김장근

원양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국제 지역 수산기구가 규정한 보존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원양어업(트롤 등 6개 어업) 및 어종(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공동 자원평가를 통해 해역별 어업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였다. 각 해역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주요 다랑어류에 대한 자원상태를 살펴보면 눈다랑어는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남획된 상태는 아니지만, 태평양에서 과도어획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주의 깊은 모니

터링이 필요하다. 황다랑어는 인도양에서 안전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대서양에서는 남획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역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다랑어는 모든 해역에서 안전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태평양의 칠레진갱이는 어획수준을 2013년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설정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산란자원량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빙양 남극이빨고기의 자원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남동태평양 및 북태평양 돛돔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과학사항 이행 및 효과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랑어연승어업에 대한 바닷새 보존관리조치와 관련하여, 인도양 및 대서양의 경우 25°S 이남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연승어선들은 바닷새 부수어획 저감을 위해 야간조업, 바다새 보호줄, 무게 추 사용 중 최소 2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다랑어 연승어업에서는 거의 사용 경험이 없는 무게 추 사용시 어획효율 및 선원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상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게 추를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방식이 무게 추를 사용한 경우보다 어획율이 다소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40g의 무게 추를 낚시로부터 5cm 위에 달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종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태평양 선망 어류군집장치(FAD)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태평양 우리나라 선망어선에 대한 FAD 조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부상군(unassociated school)을 대상으로 조업하였으나, 2000년 중반 이후 FAD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약 20~30%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망 FAD 조업국들은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에 의거 FAD 조업으로 인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소형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 FAD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하고 있는 바, 이후 연구에서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선망 FAD 조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국제오퍼서버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국제오퍼서버 47명을 양성하였다.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 오퍼서버가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총 26회의 승선 조사를 통해 2,897일간 남빙양 저연승 2회 및 트롤 2회, 남서대서양 저연승 7회 및 트롤 4회, 남인도양 저연승 3회 및 트롤 2회, 남동대서양 트롤 1회 실시하였다. 2013년도 오퍼서버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인도양 연승어업에 의한 상어류 및 바다새에 대한 부수어획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기간 동안 상어류는 총 8종이 출현하였으며, 이 중에서 청새리상어가 상어류 총 어획량의 56%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이었고, 다음으로 청상아리였다. 상어 어획량은 총 어획량의 약 4%를 차지하였고, 이 중에서 폐기 또는 방류되는 양은 상어 어획량의 약 4%이었다. 바다새는 노란코알바트로스, 흰머리알바트로스, 검은눈썹알바트로스 등 3종류가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이 죽은 상태로 부수어획되었다. 그 외 국제오퍼서버로

부터 수집된 자료는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종 혼획 상태, 어업대상종의 분포 밀도 및 생물학적 특성치 등을 분석하여 어업대상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연안어장 및 환경 변화

#### ▼ 연안어장의 환경평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권정노

주로 연안에 위치한 양식어장은 육상 오염원의 유입에 따른 부영양화와 자가오염 등으로 유독성 적조의 대량 발생, 양식생물의 폐사 등과 같은 어장 노후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식어장의 노후화는 생산량 증가를 저해하고,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여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천해양식을 통한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안어장의 환경오염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체계적 어장환경 조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2013년 우리나라 연안의 주요 어장환경에 대하여 전국 54개 해역, 268개 정점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연안어장의 생태기반 해역수질 기준(해양환경관리법 제8조) 등급을 연평균으로 산정한 결과, 총 54개소 어장에서 평가 I등급과 II등급이 각각 11개소와 35개소로 전체의 약 85.2%가 양호한 상태를 보였으며, III등급이 8개소로서 보통 상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였으며, 어장별로는 후포·축산(우렁쉥이 어장), 강구(연안 어장), 기장(해조류 어장), 마산만·진해만·진주만(패류 어장), 섬진강하구(하구 어장)에서 III 등급으로 나타났다.

〈표 3-2-22〉 2013년 전국 연안 어장의 연평균 생태기반 수질지수 등급

해역명	연안명	등급	해역명	연안명	등급	해역명	연안명	등급
동해 중부	고성	I	남해 동부	거제도남안	I	서해 남부	고창	II
	속초	I		통영	II		곰소만	II
	양양	II		고성자란만	I	서해 중부	군산	II
	강릉	II		통영외안	II		금강하구역	II
	삼척	II		사천	II		보령	II
죽변	II	진주만	III	천수만	II			
동해 남부	후포	III	남해 서부	섬진강하구	III		태안	II
	축산	III		가막만	II	가로림	II	
	강구	III		여자만	II	아산	II	
	구룡포	II		고흥	II	인천	II	
	감포	II		득량만	II	한강하구역	II	
남해 동부	온산	II	서해 남부	완도	II	제주도	제주	I
	기장	III		도암만	II		한림	I
	부산	II		진도	II		대정	I
	낙동강하구	II		목포	II		서귀포	I
	마산만	III		영산강하구	II		표선	I
진해만	III	함평연안	II	성산포	I			
거제도동안	II	영광	II	조천	I			

▼ 적조 발생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이창규

2013년 적조 발생의 가장 큰 특징은 유해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이 조기에 발생(7.17) (역대 최초발생 시기: 7.19~9.4)한 것과 남해에 국한되던 적조가 전남도부터 강원도에 걸쳐서 광역으로 발생한 것이다.

적조의 조기 발생과 광역화의 원인은 낮은 강우로 인한 일사량 증가와 폭염의 지속, 그리고 평년대비 높은 수온(평균 05~1.0℃) 등 유해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7월 초부터 일찍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강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지속되어 외측수역의 적조생물이 연안으로 집적되었고, 중간 경쟁자인 규조류 등 식물플랑크톤의 발생량이 적어 적조 발생이 고밀도화, 광역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적조 발생에 따른 예보발령은 주의보 10회, 경보 6회였으며, 발생기간은 51일(7.17~9.5)

이었다. 최초 유해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출현은 6.17, 통영~여수 해역이었으며, 7.17 이후 전남 고흥군~강원도 양양군까지 광역적으로 발생 후 9.5에 전체 해역에서 소멸하였다.

〈표 3-2-23〉 2013년도 적조 특보 발령 현황 및 적조 생물수

특보종류	발령날짜	발령지역	적조생물수 (개체/mL)	비고
주의보(1)	7. 18	고흥군 내나로도 ~ 여수시 돌산 / 통영시 욕지도 ~ 미륵도	350~1,570	최초발령
주의보(2)	7. 20	고흥군 내나로도 ~ 거제시 지심도	300~4,000	확대발령
주의보(3)	7. 27	포항시 장기면 ~ 포항시 청하면	1,000~2,000	
주의보(4)	7. 28	경남 거제시 ~ 경북 포항시 양포항	200~6,000	
주의보(5)	8. 1	경북 포항시 월포해변 ~ 울진군 사동항	300~7,000	
주의보(6)	8. 14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 고평항	150~17,000	
주의보(7)	8. 15	울진군 북면 고평항 ~ 동해시 묵호항	100~16,520	
주의보(8)	8. 19	동해시 묵호항 ~ 강원도 양양 하조대	20~10,000	
경보(1)	7. 22	고흥군 내나로도~거제시 지심도	520~8,500	
경보(2)	7. 30	경주시 이견대 ~ 포항시 호미곶 등대	18,7~14,480	
경보(3)	8. 6	해운대구 청사포항 ~ 경주시 이견대	4~34,800	
경보(4)	8. 7	포항시 호미곶 등대 ~ 울진군 사동항	2~24,700	
경보(5)	8. 15	울진군 사동항 ~ 울진군 고평항	100~16,520	
경보(6)	8. 16	울진군 고평항 ~ 동해시 묵호항	50~15,000	
주의보대체	8. 28	통영시 수우도 ~ 울주군 간절곶 / 울진군 고평항~동해시 묵호항	10~100	대체발령
주의보대체	8. 29	고흥군 내나로도 ~ 울진군 고평항	2~80	
주의보해제	9. 3	해운대구 청사포항 ~ 양양군 하조대(37일 지속)	0	부분해제
주의보해제	9. 5	전남 고흥군 ~ 강원도 양양군(48일 지속)	0	전 해역 해제

### ❖ 해파리의 대량 출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윤원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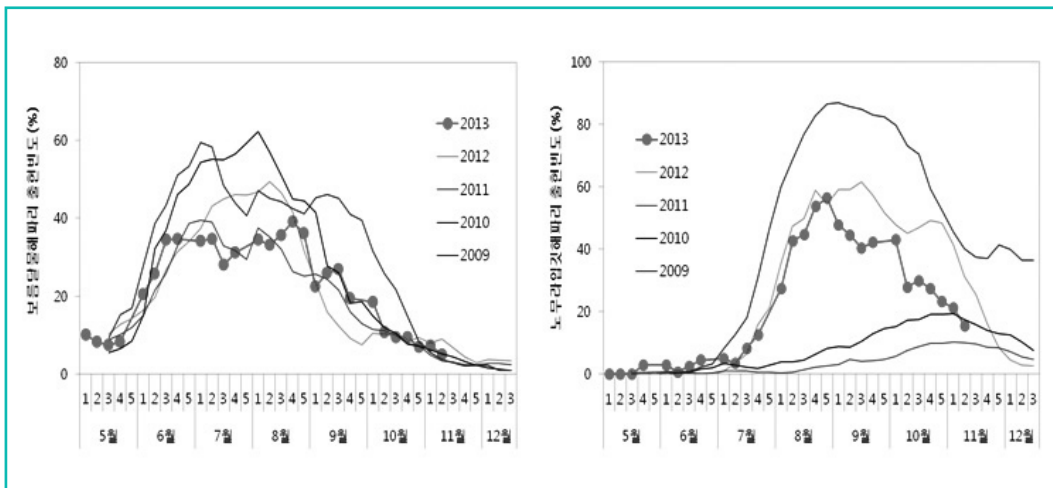
2013년 해파리 출현은 예년과 동일한 보름달물해파리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주요 출현종이었으며 두 종외에도 커튼원양해파리, 유령해파리, *Aurelia limbata*, 작은부레관해파리, 입방해파리 등이 출현하였다.

제주 지역에서 발견된 미기록 입방해파리, 속초에서의 미기록 관해파리의 출현과 기존 입방해파리류의 출현이 예년의 남해지역을 벗어나 통영, 부산, 대천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아열대성 해파리의 증가는 해류흐름과 수온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향후 작은부레관해파리, 꽃모자해파리 등의 다른 아열대성 독성 해파리류 증가의 가능성도 전망할 수 있다.

보름달물해파리의 6~9월 우점, 노무라입깃해파리의 8~10월 우점하는 기본적인 양상은 예년과 동일하나 전체적인 출현빈도 측면에서 볼 때 2013년은 예년에 비해 낮은 출현을 나타내었다(그림 3-2-1).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8월까지의 2012년 출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9월경 급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발생 기원지인 동중국해에서 유입되는 해파리의 양이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기존에 유입되었던 개체들이 우리나라 연안 안쪽까지 유입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 여겨진다. 예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안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에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유입량도 증가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2013년에는 태풍발생 빈도가 낮아 연안 유입량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지역에서 대량출현한 미기록 입방해파리는 유전자 분석결과에 의하면 입방해파리의 한 종인 아열대성 *Carybdea mora*로 밝혀졌다.

〈그림 3-2-1〉 보름달물해파리(좌) 및 노무라입깃해파리(우) 출현율



##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 최국일

### 1. 세계 수산물 생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2011년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은 178,303천 톤으로, 2010년도의 168,893천 톤보다 9,410천 톤(5.6%)이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China)이 전년보다 4% 증가한 66,219천 톤을 생산해 전년에 이어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고, 인도네시아 (Indonesia)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13,651 천 톤을 생산하여 2위, 인도(India)는 전년보다 5% 감소한 8,879천 톤을 생산하여 3위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페루, 미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러시아, 칠레, 미얀마, 대한민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도의 3,124천 톤보다 137천 톤(4%)이 증가한 3,261천 톤을 생산하여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의 1.2%를 점유하며 세계 12위를 차지하였다.

〈표 3-2-24〉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단위 : 천톤, %)

순 위	국 가	2009	2010	2011	2011/2010
1	중국	50,472	63,492	66,219	104
2	인도네시아	9,798	11,603	13,651	118
3	인도	7,845	9,348	8,879	95
4	페루	6,964	4,354	8,346	192
5	미국	4,710	4,874	5,559	114
6	베트남	4,833	5,128	5,555	108
7	필리핀	5,079	5,158	4,975	96
8	일본	5,194	5,292	4,756	90
9	러시아	3,950	4,197	4,391	105
10	칠 레	3,703	3,762	4,438	118
11	미얀마	3,545	3,913	4,150	106
12	대한민국	3,200	3,124	3,261	104
13	방글라데시	2,885	3,035	3,124	103
14	태국	3,284	3,096	2,870	93
세계 총 생산량		162,847	168,893	178,303	106
비율	한국/세계	2.0	1.8	1.2	

자료 : FAO yearbook 2011 : World fisheries production, by capture and aquaculture, by country (2011)  
FAO Global Production Statistics Online Query by country (2011)



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세계 어업과 양식 총생산량(해조류 제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억 5,620만 톤에 달하였다. 2011년 세계 총어획생산량은 3번째로 높은 9,350만 톤으로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인 1996년 및 2000년에 조금 못 미치는 생산량이다. 2011년 내수면 어업은 1,106만톤으로 2010년 최고치 어획량(1,124만톤)을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생산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내수면 어업은 2010년에 비해 300만톤 감소하였고, 아프리카지역에서는 100만톤 증가하였다. 양식업 생산량은 2001년 3,560만톤에서 2011년 6,270만 톤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세계 양식업은 1980년대 10.8%, 1990년대 9.5%로 높은 연 평균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는 6.3%로 완화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멸치류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어획된 어종은 알래스카 명태, 가다랑어, 대서양 청어, 고등어 순이다. 대서양 대구는 2011년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요 어종 중 10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1990년 후반 이후 유례없던 일이다. 기타 주요 상업종으로 어획되는 어종 중 다랑어와 새우의 생산량은 안정세를 보였으며, 생산량의 변화가 큰 두족류는 2009년에 감소한 후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세계 양식생산물 중 내수면 어류는 56.8%(3,360만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동물이 23%(1,440만톤), 갑각류 9.4%(590만톤), 회유성어류 6.4%(400만톤), 해면 어류는 3.2%(200만톤), 기타 수생동물이 1.2%(779.5천톤)를 차지했다. 어종별로는 잉어류가 전체 양식생산량의 40.1%를 차지했다. 단일 종으로는 붕어(Silver carp)가 530만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흰다리새우는 122억달러로 가장 높은 생산액을 차지했다.

2011년 해조류 등 수산식물의 생산은 2,210만 톤으로, 이중 2,100만 톤(95.1%)이 양식으로 생산되었으며, 다시마(Japanese kelp)가 530만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 2. 세계 수산물 교역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11년 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129,594백만달러로 2010년도 수출액 110,674백만달러에 비해 17% 증가하였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전년에 비하여 28% 증가한 16,959백만달러로 1위, 노르웨이가 9,456백만달러로 2위, 태국이 8,141백만달러로 3위이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597백만달러보다 26% 증가한 2,011백만달러로 21위에 머물렀다.

〈표 3-2-25〉 세계 수산물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국 가	2009	2010	2011	2011/2010
1	중국	10,245	13,267	16,959	128
2	노르웨이	7,072	8,819	9,456	107
3	태국	6,235	7,149	8,141	114
4	베트남	4,300	5,108	6,241	122
5	미국	4,144	4,661	5,788	124
6	칠레	3,606	3,401	4,504	132
7	덴마크	3,980	4,183	4,482	107
8	캐나다	3,239	3,847	4,198	109
9	스페인	3,142	3,310	4,185	126
10	네덜란드	3,137	3,205	3,549	111
:					
<b>21</b>	<b>대한민국</b>	<b>1,348</b>	<b>1,597</b>	<b>2,011</b>	<b>126</b>
	총 수출액	96,473	110,674	129,594	117
비율	한국/세계	1.4	1.5	1.6	

자료 : FAO yearbook 2011 : International trade in fishery commodities by principal importers and exporters

한편 세계의 수산물 수입액은 129,805백만달러로서 전년에 비하여 17% 증가하였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17,466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여 1위, 일본이 17,340백만달러로 2위, 중국이 7,572백만달러로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의 3,191백만달러에서 2011년에는 3,935백만달러로 23% 증가하여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

〈표 3-2-26〉 세계 수산물 수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국 가	2009	2010	2011	2011/2010
1	미국	13,858	15,496	17,466	113
2	일본	13,258	14,891	17,340	116
3	중국	4,976	6,157	7,572	123
4	스페인	5,907	6,512	7,309	112
5	프랑스	5,579	5,975	6,567	110
6	이탈리아	5,060	5,419	6,211	115
7	독일	4,570	5,026	5,513	110
8	영국	3,593	3,714	4,257	115
<b>9</b>	<b>한국</b>	<b>2,693</b>	<b>3,191</b>	<b>3,935</b>	<b>123</b>
10	스웨덴	2,617	3,317	3,663	110
	기타국	37,583	41,615	49,972	120
	총 수입액	99,892	111,313	129,805	117
비율	한국/세계	2.6	2.7	3.0	

자료 : FAO yearbook 2011 : International trade in fishery commodities by principal importers and exporters

## 제4편 2013년 수산업 정책

### 제1장 총론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4장 어가경영안정·소득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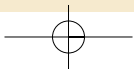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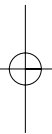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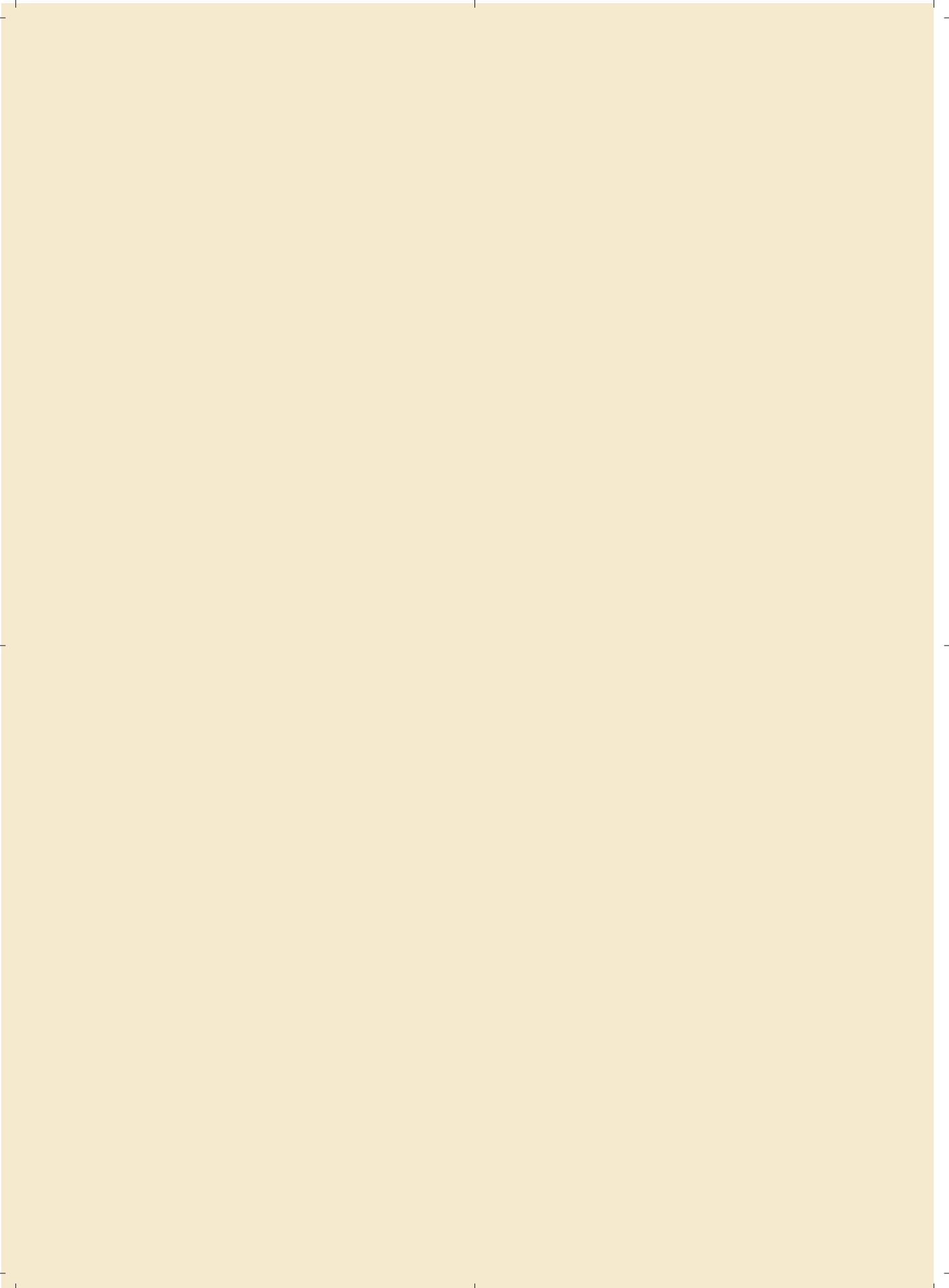
제5장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어촌 활력 증진

제6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제7장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제8장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제9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개발



## 제1장 총론

| 수산정책과 서기관 지정훈

### ❖ 서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50년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1970~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선진수산국으로 도약하며, 국민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1996년 11월)에 따른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체결(1998년 11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 여건과 공해조업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고, 연근해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한·중 간에도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고, 러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명태 등의 어획쿼터를 점차 줄여 나가는 등 우리나라 주변 수역은 본격적인 EEZ가 적용되는 신 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산물의 국내 수요 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1년 11월 출범한 WTO-DDA 협상에서는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을 대폭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17% 수준인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도 DDA 협상 결과 약 6%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호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등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와 맞물려 수산물 관세는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및 일본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92년 리우(Rio)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고, 선진국 중심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규정한 교토 프로토콜이 발효된 2005년 이후에는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제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관련법 제정에 따라 2015년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산화탄소를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로 간주하는 등 온실가스에 대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이론의 여지없이 확실한 환경문제로 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업 중 어선 어업은 산업 특성상 유류 소비가 많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적으로도 그간 매립·간척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 오염의 심화,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그동안의 자원관리 노력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감소세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다소 회복 추세에 있다. 수산자원량은 지난 1984년 920만톤에서 2004년 767만톤까지 줄었다가 2009년 831만톤, 2010년 835만톤, 2012년 860만톤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어장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며,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증감 등 어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 출현과 갯녹음 발생, 고수온 피해 등은 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나, 참다랑어 등 고가의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은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여건변화로 수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고용 기회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극복하고, 21세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013년 전반적인 국내 경기는 2012년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수산물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확대되어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다.

2013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부활하였으며, 수산업부는 수산정책관실, 어업자원정책관실, 국제원양정책관실 그리고 신설된 어촌양식정책관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새정부 해양수산부 국정과제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어가 소득증대, 유통구조 개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및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양식업의 첨단화 규모화, 낚시산업 등 수산업의 외연 확대, 수산분야 투자 촉진, 중국 불법어업 관련 정상회담 합의, 어업인의 복지 증진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유통가공과

정부는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① 생산지 품목별 특성화 대책으로 효율성 제고, ②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개선 및 현대화, ③ 수산물 직거래 확대, ④ 수산물 위생·물류 환경 개선, ⑤ 수산물 수급관리 및 관측 강화이다. 수산물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는 과거 정부에서 단편적·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숙원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 유통구조개선 대책반(TF), 민·관 합동 대책반(TF),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현행 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유통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 제한된 유통경로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4단계형 새로운 유통경로를 확보하여 경쟁촉진, 수산물의 안전·위생·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위판장·도매시장 현대화와 저온 유통시스템 구축 및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및 수산물 생산의 불확실성 및 계절적 변동성 등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정부비축 확대 및 관측 강화 등을 주요 추진 사항으로 하고 있다.

## ❖ 적조 발생과 관련 효과적인 대응조치 추진

양식산업과

적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아 어가에 큰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반면, 2012년에는 7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87일간 적조가 발생하여 전남, 충남, 경남 등지에서 넙치, 전복 등 양식어류 568만 마리가 폐사하고 약 44억원의 피해를 끼친 바 있다. 2013년에는 ‘적조’ 피해 어가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영여자금 용자절차를 개선하여 정부의 피해규모 확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으로 특별영여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적조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규모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출한도를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용자에는 2~3개월이 소요되었던 문제가 반복되었다. 이번 용자절차 개선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적조 등 재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12월에는 적조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과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12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예측 기능 강화 부문에서는 적조 예보체계를 현행 '주의보' '경보'의 2단계에서 '관심' '주의보' '경보'의 3단계로 세분화하고 발령기준을 완화,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주기가 단축되고 모니터링도 확대된다. 둘째, 발생→이동·확산→양식장유입 등 발생~소멸 전단계의 예방·피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R&D가 확대된다. 또 동아시아적조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도 강화된다. 셋째, 양식어장 구조개편도 추진된다. 가두리 양식시설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간 상습피해어장 120ha의 양식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적조에 강한 종류로 양식품종 변경을 유도하고 전환시설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육상 양식단지를 개발하고 외해양식을 늘리는 등 고소득 품종의 안정적인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넷째, 해양환경 관리강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어업인에게 3~5년 주기로 어장청소 의무를 부과하고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되면 어업권 재면허가 금지된다. 또 어장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효율·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을 서두르고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적조 피해 회복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황토 이외의 방제 물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방제 물질·장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 ❖ 낚시산업·서비스 선진화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통한 낚시산업 활성화 추진

수산자원정책과

수산업 미래성장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낚시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주 5일제 확대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가·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 레저 활동인 낚시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낚시 인구는 1995년 325만명에서 2013년 705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3년 12월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함으로써 2018년까지 308억원을 투자하여 낚시산업·서비스의 선진화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낚시인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쾌적한 낚시공간 조성, 민간 주도의 낚시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미래 세대도 즐길 수 있는 낚시 환경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이 있다. 이번 낚시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낚시산업이 발전하고 쾌적한 낚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더 많은 낚시인이 낚시공간을 찾음으로써 어촌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수산분야 민간과 함께 투자 촉진 추진

|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부 출범 후 첫 번째 수산펀드인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이하 투자조합)이 새로 결성되어 7월에 등록을 마쳤다. 투자조합은 수산 양식을 비롯해 해양바이오·신소재 등 수산분야 고부가가치 사업을 투자대상으로 총 150억원이 조성된다.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에서 75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의 (주)아이디벤처스와 (주)BK캐피탈이 각각 15억원과 6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이로써 수산전문 펀드 조성은 총 4개 펀드, 670억원(모태펀드 335억원, 민간 투자 335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저금리에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양식을 비롯한 수산분야는 고수익 투자기회가 많은 틈새시장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ICT 등 기술 기업들에 비해 전통 산업인 수산분야가 수익의 실현가능성과 조기 회수가능성이 우월한 장점을 바탕으로 수산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 양식업의 산업화를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

| 어촌양식정책과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산의 미래산업화'의 핵심 세부과제인 양식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안의 제정 방향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어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 유입 활성화 등을 통한 양식어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유희·부실어장의 어업권 퇴출을 위해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고, 기존면허를 제외한 신규면허 발급시 어장관리, 자본·기술력 등 경영능력을 고려하여 면허 할 수 있도록 면허 우선순위 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공동체(어촌계·조합)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양식면허) 운영에 어업회사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동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 등의 구성원 제한도 완화하고, 양식산업의 규모경제 실현,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양식분야의 진입·퇴출 제도 정비로 신규 자본과 인력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규모화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가칭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양식 관련 전·후방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4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 ▼ 신(新)자산어보 프로젝트

| 수산자원정책과

수산생명자원의 주권의 확보를 통해 수산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新)자산어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수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수산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4,2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생명자원 관리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생산시스템 개발 ▲안전한 수산 환경기반조성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의 6개 전략사업,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여 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경쟁력은 30개 주요 수산 국가 중 14위로 기술경쟁력과 시장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산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투자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정부 전체 R&D의 0.7%)하였다. 이제 정부는 200년 전, 정약전 선생의 저서 『자산어보(茲山魚譜)』를 승계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사업으로 “신 자산어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정보통신 기술과 수산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로 수산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중국 불법관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발표

| 지도교섭과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유관기관 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부속서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 불법어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양국은 2014년부터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으로 공동순시를 실시하고 중국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삼아시에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2014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 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에따라,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주변에서 한·중 수산고위급 중국어선 조업현장 공동시찰(韓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中 농업부 조홍무 어업국장)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흑산도·가거도 서방,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EEZ경계선 주변·제주도 서방해역 총269해리(498km)를 24시간 순시 하면서 중국어선의 조업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잠정조치수역에서 실시예정인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에 대한 필요성과 조기 이행을 위한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 ❖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

| 국제협력총괄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개도국 인력에 대한 수산 정책·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수산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끌어갈 '수산 공인 교육기관(세계수산대학)'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을 대상으로 물자공여, 기술전수 등 수산 원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지만, 이러한 원조가 개도국의 수산업 발전과 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고급인력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교육,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개도국 인력을 교육하는 사업을 마련하였다. 세계수산대학은 국내·외 석학을 교수진으로 초빙하여 수산 정책, 양식기술, 자원관리, 국제거버넌스 등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대학원 대학으로 꾸려나갈 예정이며, 2017년 FAO 총회 승인 후 2015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 ❖ 바다식목일 제정

| 수산자원정책과

최근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수온이 상승해 아열대 수역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생태계 변화로 인해 갯녹음이 발생한 해역에는 해조류가 사라지고 패류·어류 등 바다 생물이 살기 어려워 결국 육지의 사막처럼 바다는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황폐화된 바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범국민적 관심 속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가꾸기 위해 정부는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였다. 제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생명이 넘치는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라는 주제로 제주도 운진항에서 개최하여 어업인, 지역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바다식목일의 시작과 국민의 동참을 다짐하는 바다식목일 선포식, 바다숲 조성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바다숲 조성시연, 실물 해중림초 전시, 어란물고기 방류, 바다숲 조성과정사진·동영상 전시, 주민참여 축하공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개최되었다.

##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 제1절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 1.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 사무관 홍근형

#####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의 대내외 수산업 여건은 동북아 EEZ 체제 개편에 의한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전통적인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자원남획으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과잉어획,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나, 꾸준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자원회복사업 노력에 힘입어 2002년을 저점으로 수산자원은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과잉어획이 계속될 경우 회복세가 둔화되고 수산자원의 감소도 우려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적정생산 가능량을 추정하고 회복 대상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자원 조성, 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등,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은 해역별·어종별로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명확한 회복 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지자체·어업인·학계 등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회복 대상 자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자원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별 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 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조치하는 체계적·종합적인 자원관리계획이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적 계획을 2005년 12월에 마련하고 수산자원회복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공포(2009.4.22, 시행일 2010.4.23)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0.4.23.)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5.31.)을 제정하였다.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조기 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꽃게(서해), 도루묵(동해), 낙지(남해-무안), 오분자기(제주-성산)를 대상으로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참홍어(서해), 참조기(서남해), 대구(동남해) 등 3개 어종을 추가, 2008년에는 말쥐치(남해), 기름가자미(동해), 개조개(남해) 등 3종, 2009년에는 갯장어(남해), 갈치(남해) 등 2종을 추가했으며, 2012년에는 고등어, 대문어(동해), 옥돔(제주) 등 총 15종으로 대상 어종을 확대하였다.

한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수산과학원)에서 제시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해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발전·보완하여 나갈 계획이다.

#### ▼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TAC)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자원관리제도로 어획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정착시키고, 어업 여건 및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TAC제도 실시 대상 업종 및 어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도 TAC사업은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참홍어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417천톤의 TAC를 정하여 12개 업종에 1,181척, 1,226명이 참여하였다.

어종별 TAC 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였으며, 배분량의 할당은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에서 어선별로 할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TAC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판매장소를 121개소로 확대하였고, 고등어, 전갱이

등에 대해 자원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변동에 적극 대응하며, TAC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시도에는 TAC 경영개선자금과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예산의 지원 등을 통하여 TAC제도의 정착 및 어업인의 참여의식이 고취되도록 할 계획이다.

〈표 4-2-1〉 2013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단위 : 톤)

대상어종	TAC
합 계	417,010
대형선망	고등어 135,000 전갱이 14,700
근해통발	붉은대게 38,000
근해통발·근해자망	대게 1,521
잠수기어업	개조개 1,953 키조개 9,080
마을어업	제주소라 1,506
연근해자망 및 통발	꽃게 19,500
근해채낚기·대형선망·대형트롤·동해구트를	오징어 191,000
동해구기저·동해구트를	도루묵 4,550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	참홍어 200

### ▼▼ 바다목장 조성

199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6년까지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완공되었고, 2001년도 추진한 여수 바다목장은 2010년까지 총 307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에 완공되었다. 2013년까지 3개소(울진, 태안, 제주) 2013년도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바다목장을 2011년에는 174억원, 2012년 161억원, 2013년 231억원을 투입하여 테마형 바다목장으로 조성 완료하였다.

특히 관광형 바다목장으로 조성한 동해와 제주 바다목장은 2010년부터 체험관 건립, 수중해양공원, 바다체험장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하여 2013년 완공되었다.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연안 시·군·구 68개소 중 개발 잠재력이 높은 50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2011년 까지) 20개소, 2단계(2012~2020년까지) 30개소 등 총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2013년 30개소에서 2014년 부산, 인천, 전북, 경남, 제주(2개소) 6개소가 신규 사업지로 추가되어 총 36개소로 사업을 확대 하였다.

### ▼▼ 바다숲 조성

2009년도부터는 갯녹음(백화) 현상이 발생한 동해안과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연안어장의 생태계를 복원함은 물론, 탄소 저감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조류를 녹색 성장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연안압박에 무절석회조류 등이 번식하여 해조류가 서식하지 못하거나 생장을 저하시키는 갯녹음 발생 면적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연안 마을어장 압박지역 35,000ha에 대하여 갯녹음 발생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04년 6,954ha였던 갯녹음 발생 면적이 '10년에는 14,317ha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갯녹음이 진행되면 수산생물의 서식 기반 붕괴로 어업생산성이 감소하고, 어장의 황폐화가 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복원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자 2013년까지 47개소에 3,334ha를 조성하였고, 2030년까지 35천ha의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표 4-2-2〉 바다숲 추진현황 및 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추진실적					2013	2030까지
	계	2009	2010	2011	2012		
면적(ha)	1,946	121	250	715	860	1,388	35,000
사업비(억원)	538	100	150	129	159	198	3,110

### ▼▼ 인공어초 시설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7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은 어초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견실시공의 정착, 해역별·어종별·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의 개발과 시설, 어초어장의 시설 보전과 기능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사업비 42,811백만원을 투입하여 약 3,182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약 204,372ha의 어초어장에 대한 위치 상태 확인 및 폐그물 수거, 어초어장도 작성 등 사후관리와 인공어초 시설가능구역의 적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2-3〉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단위 : ha)

구분	연도	71~2012년	2013년	누 계
합 계		215,401	2,698	218,099
부 산		2,934	72	3,006
인 천		11,536	112	11,648
울 산		2,566	4	2,570
경 기		5,428	164	5,592
강 원		23,474	108	23,582
충 남		18,127	140	18,267
전 북		15,321	368	15,689
전 남		43,633	348	43,981
경 북		23,532	112	23,644
경 남		36,961	462	37,423
제 주		31,889	808	32,697

▼▼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방류어류의 생존율 향상 등 종묘방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종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였으며, 방류어종의 다양화를 꾀해 2009년부터 56종(해면 43종, 내수면 13종)으로 품종을 확대 시행하여, 2013년도는 65종(해수면 50종, 내수면 15종)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산종묘방류 총사업비의 10%를 방류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방류 대상 품종에 대한 질병 유무 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가 방류되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방류어종 검수 및 방류 시 종묘생산자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1단계('07~'09/넙치 등 4종)로 실시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 결과 넙치 2.61배, 전복 2.97배, 볼락 3.8배, 다슬기 1.6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단계는 '10~'12까지 감성돔, 강도다리, 꽃게, 해삼을 대상으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종묘방류효과조사 및 대상 품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주요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별 목표 설정 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차별 개선·발전 방안을 도출, 개별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 정책별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 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 전문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은 전문성이 강화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출범(2012.1)하였으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연구·개발·보급 등의 기능을 더욱 체계화시킨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2. 유어산업 육성

|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김남원

###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여가 선용 기회 확대로 국민들의 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표적 레저산업인 낚시 역시 그 향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약 705만명으로 추정되는 낚시 인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어업인들의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대표적 산업으로서 낚시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4-2-4〉 국내 낚시 인구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낚시인구	325 (한국갤럽)	400 (환경부)	500 (해수부)	573 (한국갤럽)	652 (세종대)	705 (예측)

\* 2013년 : 기존의 낚시인구 추정치에 따른 예측

특히, 최근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여가시간 활용경향이 바뀐에 따라 가족이 함께 유어를 즐길 수 있는 유어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터와 낚시어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유어장, 낚시터, 낚시어선이 어촌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며, 유어인들의 어촌방문 활성화로 지역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4-2-5〉 낚시터, 낚시어선, 유어장 현황

(단위 : 개, 개, 척)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유어장	148	168	176	185	198
낚시터	709	737	783	729	772
낚시어선	3,992	4,060	4,359	4,708	4,390

\* 자료 : 지자체

그러나,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로 인한 어획량 역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여 수산자원의 고갈 우려와 함께 지역어업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실납추, 투기된 쓰레기 등으로 낚시터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낚시인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낚시제한기준 설정, 유해낚시도구 사용금지, 낚시인과 낚시업경영인의 안전의무 부과 등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낚시 및 낚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낚시를 건전한 국민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연계하고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시행(‘12.9.10)되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낚시 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잡을 수 없는 시기나 크기 등을 제한하였다.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낚시인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낚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의 도입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제도 도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11년에는 낚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해 낚시 및 낚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육성하게 되었다. 특히,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낚시산업의 발전과 쾌적한 낚시공간 조성 마련의 내용을 담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13.12월)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낚시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낚시산업의 육성·발전과 함께 더 많은 낚시인이 어촌을 찾아 어촌·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내수면산업 육성

양식산업과 사무관 민병주

####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가두리양식업이 규제를 받으면서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 양식수산물의 양식 기술개발과 양식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도 늘리고 국제적 기준(HACCP)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 남획과 수질오염, 골재 채취 등 난개발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토속어류가 멸종 위기에 있다는 자각으로 주요 하천 등에 치어를 방류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내수면 레저 수요의 증대와 낚시인구의 증가로 어업의 장소보다는 레저 활동의 공간으로서 내수면의 역할이 변화되어 내수면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내수면 이용객들이 농어촌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내수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원 조성을 하여, 내수면 어종의 산업화 및 휴식공간으로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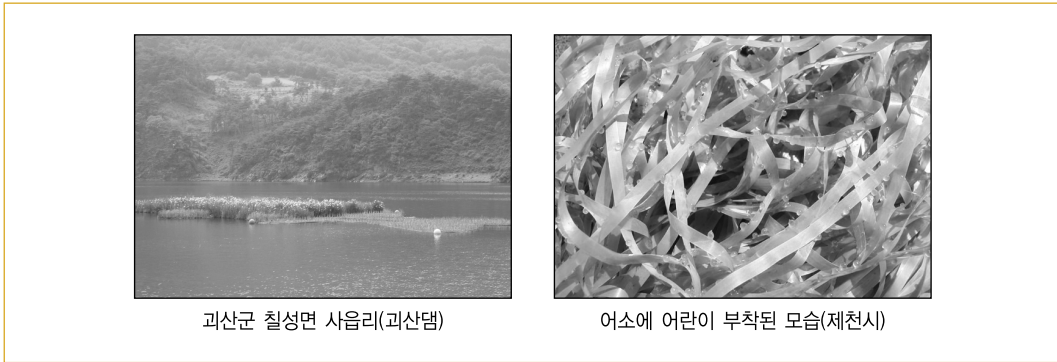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으로 내수면에서의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토속어류를 복원하고 내수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청정자원생태장 조성, 국가어도종합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한 어도개보수사 등을 통하여 어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류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 갈수기 등으로 자연 산란장이 파괴되어 산란된 알이 말라 죽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댐·하천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2012년도에 4개도 12개 시·군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다.

〈그림 4-2-1〉 인공산란장 조성 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괴산군 칠성면 사읍리(괴산댐)

어소에 어란이 부착된 모습(제천시)

▼▼ 청정자원생태장 조성 지원

민물고기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교육이 가능한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경상남도 거창군에 토속어 및 관상어를 이용한 전시·체험 시설 등을 건립하였다. 이를 수산자원의 중요성 제고와 자연학습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어도종합시스템 구축 및 어도 개보수 사업 추진

하천의 물 흐름을 가로막는 보(洑), 댐과 같은 수리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은어, 연어, 뱀장어 등 주요한 내수면 수산자원이 이동 및 산란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유용 가치가 높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복원을 위하여 어류 생태통로(어도, 魚道)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개정(12.5.23) 및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뱀장어와 은어 소상이 활발한 충남 보령 대천천과 경남 산청 덕천강에 각각 2개소의 시범어도를 설치하였다.

〈그림 4-2-2〉 대천천(보령)과 덕천강(산청)의 어도 설치 현장



보령 대천천 어도 설치 현황

산청 덕천강 어도 설치 현황

또한, 2014년부터는 경남, 전남, 강원도 등 3개 시도 6개지역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 75개 어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경제성 등을 평가하여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전국 3,528개 하천 중 어도설치율은 14.9%, 활용가능 어도는 4.9%에 불과

구 분	하천수	보(개)	어도(개)	어도설치율(%)	정상어도설치율(%)
국가하천	61	280	168	60	27.9
지방하천	3,467	33,732	4,913	14.6	4.7
계	3,528	34,012	5,081	14.9	4.9

\* 출처 : 전국어도실태조사 및 DB구축 연구보고서(2010, 한국농어촌공사)

- 전국 어도 5,081개소 중 어류의 소상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68%(약 3,453개소)의 어도를 개보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어도상태	양 호(%)	미 흡(%)	불 량(%)	비 고
전국어도(개소)	32.0 (1,628)	62.4 (3,169)	5.6 (284)	미흡, 불량 어도는 개보수 필요

▼ 평가 및 향후 계획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댐·보 등 난 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이어져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 하고자 향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대국민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유희 저수지 자원화 사업 및 양식단지 조성을 확대개발하여

한·중 FTA 체결에 적극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제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적극 개선하고, 내수면어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전략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개발에 박차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 4.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유통가공과 사무관 이재영

###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민소득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건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건강식품으로서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웰빙식품 선호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산식품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도하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확대 등으로 수산업 및 수산식품 등에 대한 국제사회간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먹거리 안전 확보 등의 기반확보를 통한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산물산지가공시설(99개소, 202억원)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수산물처리저장시설(7개소, 62억원) 및 수산물공동가공시설(2개소, 16억원) 등 총 65개소에 대해 국고 28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하여 고부가 가치의 수산식품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2013년도 총 8개소에 154억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표 4-2-6〉 2013년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지역	사업개요	'09까지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이후
합 계	9개소	11,256	8,759	14,360	16,750	15,400	36,850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09~'10)	500	1,150	-	-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08~'11)	4,772	1,000	5,350	-		
여수	수산물종합센터('09~'13)	1,984	2,000	2,000	5,000	3,516	
영광	염산항화도바다매체타워('09~'13)	500	1,000	1,000	1,500	1,000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09~'12)	500	1,000	1,000	2,450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10~'15)	-	250	1,760	1,000	1,100	3,390
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12~'14)	-	-	-	300	4,484	4,966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11~'14)	-	-	250	4,500	2,500	5,250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09~'15)	3,000	2,359	3,000	2,000	2,100	6,444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13~'16)					300	8,200
충북	충북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3~'16)					400	8,600

우수한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를 개편하였다. 「농수산물품질 관리법」에 의해 운영되던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를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세분화 되었다. 2013년 말 기준 친환경 수산물 출하량은 23,280톤으로써 전년도 출하량(17,128톤) 대비 약 36% 증가하였으며, 식품 안전성과 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다.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보성별교꼬막, 완도전복, 기장미역, 장흥키조개, 완도넙치 등 16개 품목이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4-2-7〉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013년 말 기준)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명칭	등록자
제1호	'09. 2. 25	보성별고꼬막	보성별고꼬막영어조합법인
제2호	'09. 2. 25	완도전복	완도전복협회영어조합법인
제3호	'09. 2. 25	완도미역	(사)완도군미역협회
제4호	'09. 2. 25	완도다시마	(사)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제5호	'09. 2. 25	기장미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6호	'09. 2. 25	기장다시마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7호	'09. 2. 25	장흥키조개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제8호	'10. 8. 20	완도김	완도김영어조합법인
제9호	'10. 8. 20	완도넙치	완도넙치영어조합법인
제10호	'11. 1. 18	장흥김	(사)장흥무산김생산자협회
제11호	'11. 5. 13	장흥매생이	(사)정남진장흥매생이생산자협의회
제12호	'12. 2. 28.	여수굴	여수굴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제13호	'12. 8. 27.	남원미꾸라지	(사)남원추어산업협의회
제14호	'12. 8. 27.	고흥미역	(사)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
제15호	'12. 8. 27.	고흥다시마	(사)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
제16호	'13. 9. 26.	진동미더덕	미더덕영어조합법인

### ❖ 평가 및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개발, 우수 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 확대 및 수산물 지리적표시품 발굴 등 수산물 인증·표시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5. 수산물 수출 진흥

수산정책과 서기관 이병웅

### ▼ 추진 배경 및 개요

한류의 긍정 이미지와 연계하여 한국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식문화가 유사한 아시아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면서 對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수산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WTO 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 국가의 FTA 체결의 가속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일본의 엔저 등으로 국제 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로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복하여 전략적으로 주력·유망 수출시장에 대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침으로서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2013년 주요 사업에는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우수수산물 지원이 있으며, 총 사업비 1,748억원을 투·융자 형태로 지원하여 수출 확대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자금 등 운영자금 1,340억원을 저리로 127개 업체에 융자하여 736백만달러의 우수 수산물 수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 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국제박람회 11회, 로드쇼 3회, 판촉전 1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등 시장조사 내용을 연중 수출업체에 홍보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와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 홍보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수입바이어에게 수출 카탈로그 송부, 해외수산전문지, 공항 광고 등을 위하여 6.9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김 이물질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등 42대의 기기 구입비 3.5억원을 수출업체에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산물 생산·가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9~2013년까지 총 1,421억원을 투자하여 '13. 7월 준공하였다. 아울러,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 수출용 활어·패류 항공물류센터 지원, 환변동 보험지원 등 중소 수출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다.

넷째 해외 수출시장 여건조성 및 유망·주력시장 발굴을 위하여 수출 1위 국가인 일본과 수산물 수입 할당(IQ : Import Quota) 개선에 관한 한·일 수산물 무역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수요자 할당 김에 대한 쿼터 미소진분 재분배, 공고시기 조정 등 통상협력을 추진하였고, 한·중 FTA 체결을 대비한 시장확보를 위해 국내 수산관련 기관 및 업계로 구성된 '중국 수출사절단'을 파견하여 수출판로를 모색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8.9% 감소한 21.5억달러이지만, 국내 수산물 수출의 약 38%를 차지하는 일본의 엔저현상 및 세계 경기침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산물 수출 확대 기반 조성 추진 및 수출업계의 애로 사항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대응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산물 수출 증가는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어촌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3년부터는 중화권·아세안 등 급증하는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김도순

#### ▼ 추진 배경 및 개요

연안생태계 및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1975년부터 경남·전남·충남 등 10개만(21개 시·군) 3,230km<sup>2</sup>(육지부 368, 해면부 2,526, 내수면 336)에 해면과 인접한 육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후 38여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2006년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2012년 말 현재 육지부 중 71%인 895km<sup>2</sup>를 해제하였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완화, 국가·지자체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표 4-2-8〉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현황(2013년)

구분	계	해수면			내수면
		계	육지	해면	
지정	3,230	2,894	368	2,526	336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존 개발 위주의 정책 방향에서 환경과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규제에 의한 주민생활 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자율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신동호

### ▼ 추진 배경 및 개요

한때 어업인의 경쟁적 조업과 함께,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 회복에 한계가 있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이 곤란한 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장 및 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장과 자원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시범사업 당시 63개소였으며, 2002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시행 12년차인 2013년 참여공동체수가 1,039개소까지 확대되어 기반 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심화 단계로 도약하였다.

〈표 4-2-9〉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공동체(개소)	659	758	863	932	989	1,039
마을어업	341	391	438	465	490	502
양식어업	78	80	85	89	96	98
어선어업	115	135	156	175	183	200
복합어업	102	124	143	153	165	176
내수면어업	23	28	41	50	55	63
참여어업인(명)	50,728	56,100	60,902	63,860	66,410	67,687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육성사업비 지원

2013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우수 공동체 선정결과 275개소에 242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육성사업비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 공동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자율관리어업 분쟁 조정

자율관리어업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지역 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유도하여 2012년까지 33건의 분쟁을 해결, 자율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참여공동체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

자율관리어업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새롭게 참여한 신규 공동체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의 지도·교육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의 민간컨설턴트(17명)를 위촉하여 공동체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동체별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화를 유도 하였다.

### ▼ 다각적 교육·홍보활동 전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차기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3회), 지방수산사무소 중심의 지역단위 현장집합 교육, 우수 공동체 견학(24개소) 및 미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 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산 선진국(호주, 일본, 중국)의 어촌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매달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발행과 전문지 홍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 ▼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근 3개년(10~12) 소득을 조사한 결과 2010년 1,226백만원, 2011년 1,277백만원, 2012년 1,318백만원으로 소득이 매년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산자원 회복에 따른 어획량 증가, 일정 크기 이상 채포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 및 공동판매 등을 통해

어가소득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다 낚시터, 체험어장 운영 및 지역 특산품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축제 행사 등 어촌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어업 외 소득도 증대되었다.

〈표 4-2-10〉 2013년까지 시도별 참여공동체 및 육성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동체수	1,039	31	53	21	36	84	18	99	50	293	106	193	55	
육성사업	지원수	1,497	42	52	37	55	169	27	110	107	379	177	256	86
	사업비	1,694.8	43.6	57.2	35.3	59.4	178.5	19.3	146.6	127.8	451.6	214.3	278.1	83.1

### ❖ 평가 및 향후 계획

정책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참여 어업인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분쟁도 조정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성숙 단계에 들어서 자율관리어업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마을어업공동체 중심으로 어업인의 약 50%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선어업이나 복합어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 참여율을 전체 어촌계의 60% 수준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법 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촌사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선도적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다.

## 3. 미래형 자원관리 체계 추진

|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홍근형

###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자원은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환경변화로 인해 수산자원량이 변동하고 있으며, 생물 유전자원 이용에 있어 원산국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으로 인해 수산생명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자원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자원량 회복 등 수산자원관리정책 수립과 한·중·일 간 해양영토분쟁과 어업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한 자원상태 파악을 통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이용을 위해 미래형 수산자원 조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新자산어보 프로젝트 추진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분야 최초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다.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이라는 2대 중점 분야를 근거로 11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첨단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수역에 있는 수산자원을 정확히 평가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자원조사선, 어선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500개 정점에 대해 계절별로 수산자원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의 정확한 자원생태지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환경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방사능·적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방사능물질이 수산물에 유입되는 단계를 추적·예측하며,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소비 증대를 목표로 한다.

현재 동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총 3,150억원(정부 2,945억원, 민간 205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미래부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위해 기획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표 4-2-11〉 프로젝트 핵심기술 내용

중점분야(2개)	핵심기술(11개)	성과물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성)	1. 수산자원 정보 조사 기술 -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통하여 자원분포, 생태 등 정보를 확보하고 DB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수산자원 조사자료 DB
	2. 수산자원 계측 및 추적 기술 - 수산자원의 정밀조사와 목표어종을 선택적으로 어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군탐지기 및 어구위치정보시스템 개발	· 어구위치정보 시스템 · 어종식별 어군탐지기 · 수중 자기장 통신 장치
	3. 수산자원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통합정보 활용 기술 - 확보된 수산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어업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구축	· 통합운영 어업정보시스템(FIS)
	4. 주요 수산자원 회유경로 예측 기술 - 주요 수산자원의 회유경로를 파악하고 회유경로 및 서식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	· 수산자원의 회유경로 모델
	5. 해수순환모델 기반의 수산자원 시공간 변동 예측 기술 - 생물-물리 요소를 결합한 고해상도 해수순환 모델을 개발하여 주요 수산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변동을 평가·예측하는 기술 개발	· 생물-물리 결합 해수순환 모델
	6. 주요 수산자원 서식지 변동 예측 및 관리 기술 -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서식지 적합성 평가인자와 원리체계를 개발하고 필수 서식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	· 서식지 변동 환경인자 DB
2. 안전한 수산물 생산환경 기반 조성(안전성)	7. 수산생물 방사성물질 추적 기술 - 수산자원의 회유 경로 및 먹이 영양단계별 방사성 물질의 추적경로를 평가 및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방사성 물질 예측 시스템
	8. 노로바이러스 피해 차단 제어 기술 - 수산물 생산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원 차단, 정확조 살균 및 패류를 정화하는 기술 개발	· 수출패류 생산 해역별 위생관리 시스템 · 한국형 표준 패류정화 시스템
	9. 병원성 미생물 및 기생충 제어 기술 - 생산해역에서 신종 병원성 미생물 및 기생충의 확산예측 모델과 제어용 활성소재를 개발하고 위해도 평가와 관리 방안 제시	· 확산예측 모델 및 제어 활성소재
	10. 원격감지기술 기반 적조 광역탐지 체계망 구축 기술 - 음향, 위성, 환경관측, 유전자 분석 등 원격 적조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광역 탐지 체계망을 구축	· 유해적조 광역 탐지 및 예보 시스템
	11. 해파리 자동탐지 및 제어 기술 - 과학어탐을 활용한 해파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파리 발생 원인 제어 기술과 해파리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	· 해파리 모니터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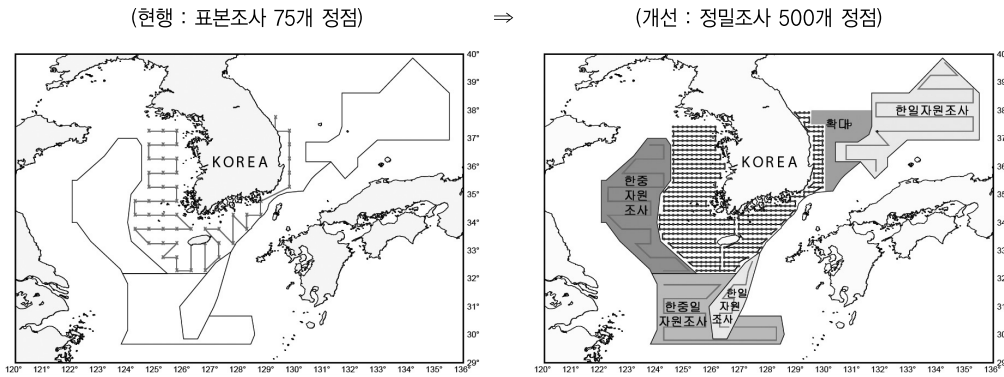
▼▼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및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 추진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는 수산자원조사선 건조와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800톤급 수산자원조사선 1척으로 우리나라 전해역에 대한 수산자원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밀자원조사의 수행을 위해 2019년까지 조사선 3척을 추가 건조하여 자원조사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현재 연 2회 75개 정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연 4회 500개 정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조사에서 한·중·일 간 중간해역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림 4-2-3〉 수산자원조사선 확충에 따른 조사방법 개선



또한 자원조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장기 자원변동연구 및 조사·분석인력의 교육을 위해 수산자원조사 센터를 2016년까지 건립하여 원활한 자원조사 및 통합적 분석기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4-2-4〉 수산자원조사센터 모식도



자원조사센터 예정부지(통영 경상대)

자원조사선 정박예정지

수산자원조사센터 조감도

### ❖ 평가 및 향후 계획

신자산어보 프로젝트 추진과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및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속도감 있는 수산자원관리정책 실현이 가능해져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어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후방 연관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산·학·연 간 협력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4. 수산업협동조합 경영 정상화

수산업정책과 사무관 하두식

#####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협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이 어업인 자조조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305억원의 무이자용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부실 규모(00기준 △3,860억원)에 비해 과소한 자금 지원과 수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부실이 증가(01기준 △5,370억원)하는 등 경영 개선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일선수협의 부실 원인과 규모 등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체 97개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실사(02.11~03.4)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61개 조합을 예비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중 자체 회생 의지를 보인 10개 조합과 상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전남서부수협을 제외한 50개 조합에 대해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47개 조합과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한 후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3개 조합에는 통폐합을 위한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부실 수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조합의 추가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6973호, 2003.9.3)을 제정 하였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7,165억원(경영개선자금 3,543억원, 구조개선자금 3,622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2013년 말 현재 경영정상화 대상 61개 조합 중 36개 조합이 정상화(순자본비율 0% 이상) 되었다.

그리고 순자본비율은 2009년 말 흑자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에는 3.0%를 달성하였으며, 미처리결손금도 2002년 8,419억원이었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11년부터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2013년에는 1,232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달성하였다.

〈표 4-2-12〉 일선수협 순자본비율 및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 %, 억원)

연도	2002	2005	2010	2011	2012	2013
순자본비율	△6.3	△2.3	2.0	2.6	2.8	3.0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8,419	△6,284	△405	804	1,152	1,232

\* 자료 : 수협중앙회

또한 2013년도에 24개 적기시정조치 수협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위판금액 증가, 부실채권 회수 등으로 경영이 개선되어 패류살포양식, 제3·4구 잠수기 수협 등 2개 조합이 권고조합에서 정상조합으로 상승하였으며, 전남서부 수협은 명령조합에서 요구조합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강구, 군산, 김제수협은 여신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손상각비 증가 등으로 자본적정성 등급 하락에 따라 정상조합에서 권고조합으로 하락하였으며, 경북어류수협은 사업기반 악화로 사업규모 축소(100억원 → 41억원)와 최근 3년간 실질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인 적자로서 적자사업 구조 등으로 명령조합으로 지속되었으며, 사랑수협은 재고자산 횡령사고(90억원, 2013년 10월)로 정상조합에서 명령조합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협 경영정상화를 통해 순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미처리결손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등 일선수협의 경영 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부실수협이 감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실 및 부실 우려 수협에 대해 경영 상태에 따른 실질적 이행목표를 부여하고 상시 경영 지도를 강화할 경우 일선수협이 조기에 경영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부실수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상조합의 경영부실화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실 발생이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5. 수산분야 창업 투자 기반 조성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정현

###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 수산물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는 우수한 입지 여건과 양식 생산성\*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나, 어획·양식 등 단순 어업 생산에 편중되어 가공·상품개발 등을 통한 수출 확대와 고성장의 기회 상실하고 있고, 수산업계의 정보·지식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수산 기업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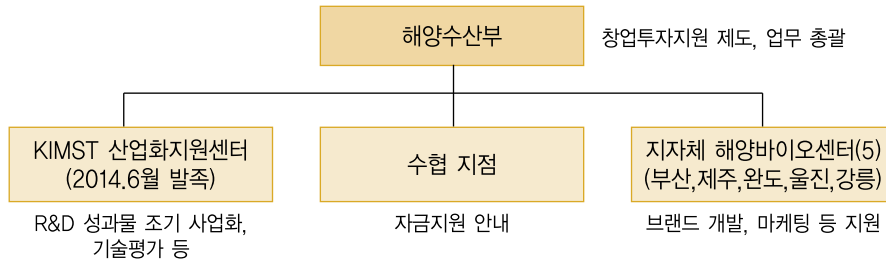
\* 1인당 연간 생산량(톤) : 한국 35, 중국 7, 아시아 기타 3.3, 세계 3.6

### ❖ 추진 내용 및 성과

추진방향으로는 국내 수요 위주의 단순 생산 구조에서 고차 가공 등 부가가치 높은 연관 산업과 마케팅·투자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수산업’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수산 관련 창업의 ‘A부터 Z까지’를 돕는 one-stop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R&D와 정책 수요를 적기 발굴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바이오센터를 통해 마케팅·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지식기반 창업시스템 구축을 하였으며, 시장수요 중심의 마케팅, 수출지원을 위해 신규 시장 개척, 검역·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농수산물 수출개척 협의회」\*를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 하였고, 한·중 FTA를 우리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현지 수산물 수출-마케팅지원센터 설치하였다.

수산 수출품의 품질 및 위생 안전 등을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 공신력을 갖춘 공인검사기관\* 설치·운영키로 하였으며, ‘수산물 韓流’를 조성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사능 등 포함)를 완료한 수산 수출품에 부착하는 ‘수출용 통합 인증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민간투자시장을 통한 성장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지속 출자\*를 통해 수산분야 민간투자 경험을 축적하기위해 모태펀드 435억원 출자를 통해 5개 수산펀드, 총 820억원 조성 하였고, 조성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은 농신보 예외보증 대상으로 지정 하여 보증한도 확대(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 30억원), 보증료율 0.2%p 인하하였으며, 수산모태펀드 운용사 및 출자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으로 수산투자자협의회를 구성\*(14상)하여 유망 투자처

발굴, 수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기법(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개발 하였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기업이 담보·매출실적·신용 없이도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술평가 체계\* 구축 및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그간 수산분야는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이나, 기금 등에 의한 정책자금 융자형태의 사업추진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는 관련 산업의 기초기반이 되는 기업화를 통해 WTO/FTA 등 국제적 어업질서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초기반이 취약한 국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산분야 창업투자 기반조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산업의 재편(re-positioning)차원에서 노력하여 왔으며, 이는 향후 수산정책의 주요한 방향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연관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2020년 까지 지역별로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기업화를 지원할 것이고, 우수기술을 사업화 하는데 있어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2020년까지 300억 규모로 확대 지원 할 계획이다. 수산 연관산업 시장 확대 및 규모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여 2020년까지 수산전문 모태펀드를 3,000억 규모로 조성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중견기업화 되지 못하고 있는 우량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스타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이고, 이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0년까지 100억매출 기업 100개소를 육성하고 2,6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 1.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어업정책과 사무관 최경삼

#####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 그리고 인건비, 유류비, 자재비 등의 출어경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소 추세인 수산자원의 회복과 악화된 경영수지의 개선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 조정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 사업은 연근해어선 감척을 통해 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과 폐업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선의 감척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1994년부터 2013년까지 1조 5,893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을 18,560척 감척했는데 그 결과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선세력은 어업자원량에 비해 11% 정도 초과된 상태이다.

연근해어선의 감척은 크게 일반감척사업과 국제감척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일반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5,635억원을 투입하여 15,928척을 감척하였고, 근해어선은 3,815억원을 투입하여 1,324척을 감척하였다. 또한 국제감척사업의 경우,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제정된「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원을 투입하여 1,308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하였다.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 어선세력은 꾸준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던 수산자원과 연근해 어획량은 감척사업 이후 늘기 시작하여 어획량과 어업소득은 증가 추세에 있다.

- \* 연근해어선척수 : (00) 68,629척 → (13) 45,598척으로 33.5% 감소
- \* 자원량 (만 톤) : (90)835 → (94)801 → (00)768 → (05)783 → (11)860 → (13)860
- \* 어획량 (만 톤) : (90)154 → (94)149 → (00)119 → (05)110 → (11)124 → (13)104

척당 생산량은 2000년에 17.3톤이었으나 2013년에는 22.0톤으로 27.2%가 증가했고, 척당 어로수입의 경우 2000년에 3,390만원에서 2013년에는 7,890만원으로 233%로 대폭 증가하였다.

- \* 척당 생산량 및 어로수입 증가
  - 척당 생산량 : (00) 17.3톤 → (13) 22.0톤
  - 척당 어로수입 : (00) 33.9백만 원 → (13) 78.9백만 원

### ▽ 평가 및 향후 계획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지금까지 감소 추세에 있던 수산자원과 연근해 어획량의 증가에 기여하였고 척당 어획량과 어업소득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국내의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어선세력이 수산자원에 적정한 수준까지 연근해어선을 지속적으로 감척해가는 한편,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정 감척을 통해 어업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11. 7. 26)에 따라 어선감척, 어업종류의 통합·변경, 어선 현대화사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 4-3-1〉 감척 필요 어선척수

(단위 : 척)

구 분	어선척수 (2013)	적정어선척수	과다 어선척수	
			건수	비율(%)
합 계	45,598	41,185	4,413	10.7
연안어업	42,818	38,579	4,239	11.0
근해어업	2,780	2,606	174	6.7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2013.12~2014.4 / 부경대), 정치성 구획어업은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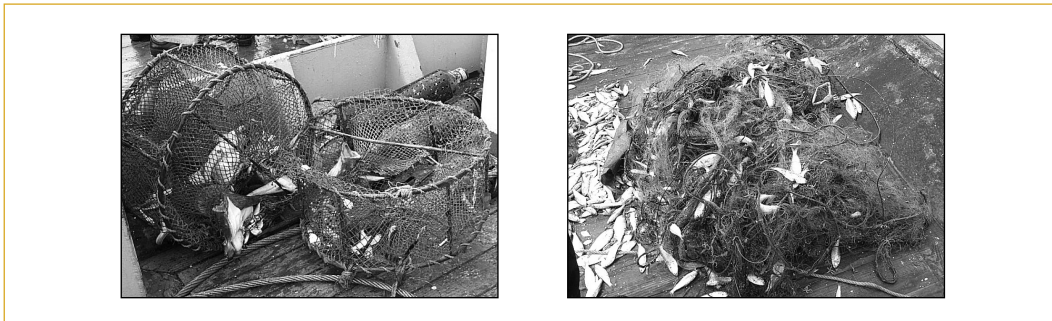
##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어업정책과 사무관 최경삼

###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선척수는 약 47천여척이다. 이 중에서 자망·통발어업의 어선척수는 전체 어선의 41%인 19천여척으로서 이들은 연중 조업을 하면서 연간 14,000여톤의 어구를 소비하고 있다. 자망·통발어업은 바다에서 1주일 이상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는 수동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타 어업에 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어구 유실률이 매우 높다. 이들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그물코에 물고기가 얽혀 죽거나, 해저 바닥에 쌓여서 생물의 서식장 및 산란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발생시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3-1〉 유실된 통발·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이러한 폐어구·폐어망에 의해 일어나는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연 생태계에서 수백 년 후에 분해되는 나일론 재질의 어구 대신에 수중에서 빨리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를 개발하고, 어업인들에게 친환경 인식 제고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해 생분해성어구의 사용 및 보급하는데 지원을 한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기존 나일론어구 대신에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어구가격의 일부를 지원(국비 70%, 지방비 30%)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및 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 중에서 적극적인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된 지원 내용은 어업인들에게 생분해성어구 표준단가와 나일론어구 표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기존 나일론어구 가격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사업 대상은 유실이 많은 자망과 통발이며, 2007년부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게자망어선 150척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3년까지 270억원을 지원하여 대게자망, 장어통발, 조기자망 등 2,000여척을 대상으로 생분해성어구를 확대·보급하여 어업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생분해성어구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사업대행기관으로 참여시켰으며,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을 국립수산물학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의 확대와 공정성을 높였다.

한편 국립수산물학원에서는 2004년부터 생분해성어구 개발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자망 10종, 통발 5종, 문어단지 및 주꾸미 인공소라 등 총 17종을 개발하였다. 이들에 대해 어획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 어구와 어획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척)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예산	20	43	39	40	43	43	43
생분해성어구 사용 척수	150	212	252	263	347	350	364

### ▼ 평가 및 향후 계획

생분해성어구의 어획성능은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나일론 어구와 대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년 정도 지나면 해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어장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보호 및 유령어업 발생의 감소를 통해 수산자원이 회복하여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수중에서 완전 분해되므로 폐어구 수거 및 처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방사, 편망 및 열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제망업계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어업정책과 사무관 최경삼

#### ❖ 추진 배경 및 개요

해양환경과 국내의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현실을 반영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업 및 어업경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조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동 법률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계획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연근해어업의 업종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업 실태조사에서는 관할 어업허가 처분관청의 어업허가대장을 활용하여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어업별·업종별·시도별·어선규모별 조업실태와 경영상태 등 어업전반에 대한 기초 조사와 감척희망 여부 등에 대한 표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4-3-3〉 2013 어업별 평균 조업현황

(단위 : 명, 년, 천원, 회, 일)

구 분	어선원 수	어선원경력	어선원임금	항차	조업일
근해어업	11	18	32,829	75	220
연안어업	4	21	14,732	170	174

〈표 4-3-4〉 2013 어업별 평균 경영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어업이익
근해어업	1,023,407	280,581	1,377,229	1,237,496	139,733
연안어업	124,740	44,589	65,973	48,456	17,517

어업별 평균 조업현황과 경영상태는 <표 4-3-3> 및 <표 4-3-4>와 같으며, 평균어업이익은 근해어업은 140백만원, 연안어업은 18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감척희망여부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는 근해어업의 경우 근해붕수망어업과 근해문어단지어업 응답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연안선망어업과 연안조망어업 응답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의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자료로 축적되어 단위어선 당 생산성 및 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어업경영의 안정과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활용되었다.

또한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어졌는데, 2014년부터는 전년도 자료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 자료로 폭 넓게 활용될 것이다.

## 4.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정책과 사무관 강거영·양정규

###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의 어업구조를 개편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부터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수산자원 및 어린고기 보호, 혼획 저감장치 개발 등 어종별 관리방식에 의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탄소저감을 위해 주요 어선어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어선어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방안과 산업화 기반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연근해어업의 상생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선권현망 등 규모가 큰 10개 업종의 조업구역 조정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협의·조정을 완료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는 정치망, 낭장망, 연안개량안강망, 기선권현망, 통발, 자망, 근해형망 등 혼획어업 실태조사와 해역별·업종별 혼획, 치어포획, 어획물 해상투기 실태조사,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방안, 국제어업 정책 동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조사를 토대로 자원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서·남해 지리적 어장환경과 특성이 다양하고 지역여건과 해역특성에 따라 어구와 어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제도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효율적 관리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안·구획·마을·정치망 어업을 대상으로 지역 및 해양환경 특성에 맞게 면허·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 이후 어업분쟁 및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이양을 통해 선진국형 어업제도를 마련하고자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2010년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면밀한 연구검토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수산업법 제89조에 근거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안건으로 상정(2010년 12월)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최종 제도개선안이 완성되면 어업제도개선협의회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속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04년 11월 러시아가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선진국은 1990년대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협약하고 OECD 국가 중 탄소배출량이 높은 10개국에 포함되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받아 2013~2017년까지 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41개 연근해 업종에 대하여 어선어업 유류소모량에 의한 탄소배출량과 10여개 주요 수산물의 생산단계별 탄소배출량을 설정하고 있고, 어선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근해어업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선권현망 등 10개 대형업종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이 관계법령(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행 조업금지구역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에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 트롤,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에 설정 되었었다. 지난 한·일,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 이후 조업구역이

축소되어 근해어선의 연안수역에서 조업이 증가하여 연안어선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2년과 2003년에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업종 간에 참여하게 의견이 대립으로 중단된 바 있다.

동 조정은 2012년 6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러 차례의 토론회 개최, 업종 간 협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 조정안이 마련되어 2014년 상반기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대형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5.5~17km) 밖으로 조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연안어업의 조업장소 확보는 물론 연근해 수역의 수산자원의 증가, 어린고기 어획 감소에 따른 미래가치 보전 등으로 약 2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어업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어업구조의 개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 등은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연근해어업의 상생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연근해어업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어구어법 개량 및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관계기관,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효율적 어업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어업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및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까지 주요 어선어업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제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 5.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어업정책과 사무관 강거영

### ▼ 추진 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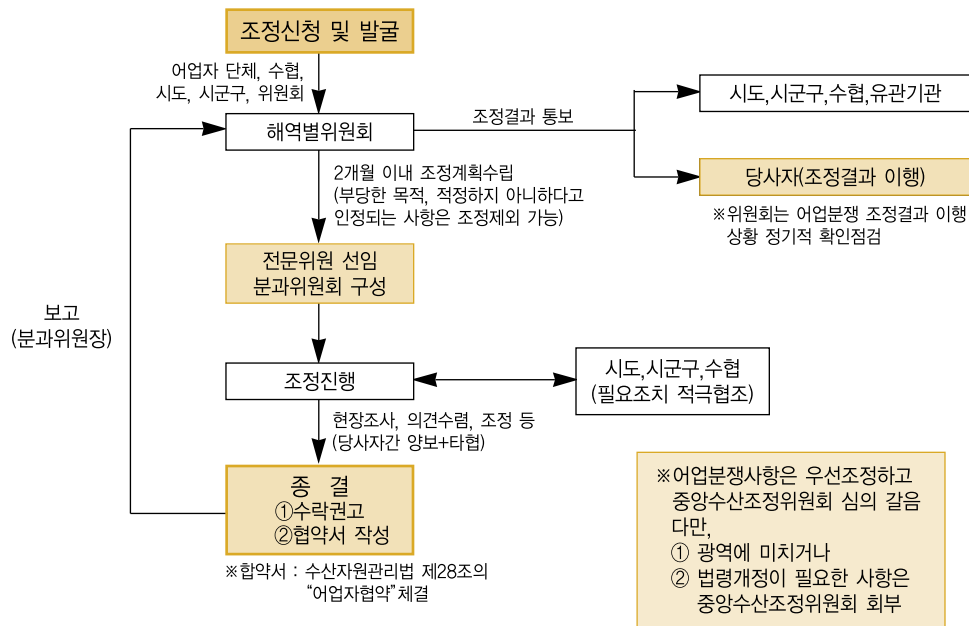
현재 연근해어업 41개 업종, 5만여 척의 어선이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해 축소된 우리나라 주변의 한정된 어장에서 조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업종 간,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조정위원회'는 그 분쟁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조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역별 어업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 나가기 위해 동·서해어업관리단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동해 2009년 10월 13일, 서해 2009년 11월 3일) 하였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9년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13년까지 3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이해당사자 간의 타협 등을 통해 13건은 조정 완료, 11건은 종결 처리, 3건은 부결 처리되었고, 나머지 5건은 계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다.

〈그림 4-3-2〉 분쟁조정 절차



### ❖ 효율적인 분쟁조정 노력 경주

어업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안건의 조정방향 설정, Know-how 공유를 위한 협의회 개최, 본 위원회, 분과위원회, 현장방문 간담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서해 어업조정

위원회에서 ‘충남지역 멸치 조업 분쟁조정’ 및 ‘권현망 울산연안 자율 조업금지구역 관련 어업조정’ 과제에 대해 분쟁조정을 완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홍보 및 분쟁조정 안건 발굴을 위해 11개 시·도 담당공무원,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교육 실시 및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출범은 해역별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어업분쟁은 어업자 간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조정결과를 담보할 권한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 내실화를 통해 효과적 분쟁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 제2절 어업질서확립

### 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지도교섭과 사무관 장귀표

####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유가 및 어가 상승 등으로 조업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남획, 선형·어구변형, 어업분쟁 유발 등 어업질서의 문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어업 단속시스템을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어업인 및 업종 간 어장 확보와 이용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선형·어구의 개조 및 변형조업으로 불법 어업 및 조업 갈등의 형태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불법 어업의 단속건수는 2010년 3,221건, 2011년 3,293건, 2012년 2,833건, 2013년 2,959건이었다.

〈표 4-3-5〉 연도별 불법 어업 단속 현황

(단위 : 척)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3,221	3,293	2,833	2,959
어업관리단	610	818	847	923
해경청	1,871	1,685	1,189	1,340
지방자치단체	740	790	797	696

또한 2013년에는 처음으로 정부 주도 하에 서해 태안해역에서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닳자망 62틀, 근해안강망 8통을 강제로 철거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불법어구 철거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한 EEZ 체제가 확립되었는데 한·일 간은 조업질서가 정착되고 있는 반면, 한·중 간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3-6〉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 어업 단속현황

(단위 : 척)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381	370	534	467	487
영해침범	27	53	32	32	35
무 허 가	91	91	170	119	149
조업조건위반 등	263	226	332	316	303

### ▼ 추진 내용 및 성과

정부는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어패류 산란기와 성육 기인 5월과 10월에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자원을 남획과 민원을 야기하는 불법 어업에 대하여 9월~12월 기간 중에 '자원남획형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일선 지자체 및 수협에 배포 하였다. 또한 방송매체(라디오)와 다수의 어업인, 수산단체, 그리고 수산전문지·잡지 등을 통하여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 어업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의 방지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단속을 강화하고,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국 정부로 하여금 불법 어업의 방지를 촉구함은 물론, 어업교섭 시 조업 조건 강화 등 제도적 대응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부의 불법 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결과 대표적 불법 어업 유형인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구초과 부설, 공조조업 등은 감소한 반면, 무허가 및 허가어선에 의한 불법 어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 간 또는 업종 간의 조업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수산자원의 고갈은 물론 생계형 어업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 EEZ 수역 내의 우리 어선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한편, 우리 EEZ 수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합정을 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EEZ어업법」개정(2012년 5월)을 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 조업어선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중전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어구와 어획물을 압수토록 하여 불법 어업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소형 어업지도선 1척을 1,000톤급으로 대체 건조하고, 위치발신 구명조끼와 헬멧 등 개인 보호장비 12종을 보강하여 단속공무원의 안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앞으로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 지도교섭과 서기관 전갈권

###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 어업 단속, 그리고 우리 EEZ 내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정부는 1966년부터 1999년까지 517억원을 투입하여 어업지도선을 20척 확보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1999년 1월 한·일 어업협정 및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관할수역이 영해에서 EEZ까지 광역화되면서 관할수역은 88천km<sup>2</sup>에서 361천km<sup>2</sup>로 4.1배, 활동거리는 1,143마일에서 1,952마일로 809마일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어업지도선을 2009년 20척 수준에서 38척까지 추가 확보하고자 2002년과 2003년에 감척된 트롤어선 5척(139척)에 대해 55억원을 투입하여 국가 어업지도선으로 개조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730억원을 투입하여 500톤급 8척을 확충하였고, 2007년과 2008년 동안 113억원을 투입하여 500톤급 노후지도선을 1척 대체하였으며, 2009년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시험조사선 탐구1호를 지도선으로 전환하여 국가 지도선을 모두 34척까지 증척하였다.

2013년에는 선령 25년 이상의 노후한 어업지도선을 대체하기 위해 198억원을 투입하여 1,149톤급 1척을 준공하고 1,470톤급 1척을 착공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205억원을 투입하여 1,638톤급 1척을 준공하고 1,600톤급 1척을 착공하여 어업지도선의 안전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4년의 국가 어업지도선은 100~2,000톤급 34척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후 대체와 신규 확충을 추진하여 EEZ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EZ 관리를 위해서는 EEZ 수역 24척, 중간수역 12척, 제주도 주변 수역 2척 모두 38척이 필요하지만 선령 25년 이상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가 우선 시급하다. 그리고 중국어선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대형 지도선의 건조가 필요하므로 2015년까지 노후선 대체와 대형선 건조를 완료한 다음 이어서 신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2014년에 1척을 대체하고 2015년에 1척을 500톤 이하에서 1,000톤급으로 대형화할 계획이다.

## 3.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지도교섭과 사무관 장규표

###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연근해어업에서는 어장의 조업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불법 어업으로 인해 어업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의 감소, 유가 및 어가 상승 등으로 업종 간, 지역 간에 한정된 수산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어업경합과 자원남획, 선형 및 어구의 변형, 어업분쟁 등 어업질서의 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불법 어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 8월 14일 불법 어업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신고대상이 소형기저 및 공조조업으로 한정되어 신고실적 등이 저조하였고, 허가어선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 계속 늘어났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신고대상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신고대상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어선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하여 불법 어업의 합동단속에 참여시키고, 매년 불법 어업 없는 우수 마을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정부의 준법 어업에 대한 어업인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시킨 결과 허가어선의 불법 어업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710여척)된 어선을 전국 일제단속 기간 중에 참여토록 하여 활동실적에 따른 개별적인 포상도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불법 어업이 없는 우수 어촌계 및 단체를 선정(최우수, 우수, 모범 등급으로 구분)하여 포상함으로써 어촌사회에 준법의식을 장려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수산자원의 회복, 선진화된 어업질서로 전환을 유도하였다.

〈표 4-3-7〉 2013년도 불법 어업 없는 우수 마을 선정 현황

구분	어촌계(단체)	대표자	선정결과
강원도	동해시 연승연합회	서병삼	최우수

\* 선정기준 : 시도지사 추천 → 현장실사 → 심의·의결 → 선정

### ❖ 평가 및 향후 계획

불법 어업의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시행,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의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자율적인 참가, 그리고 불법 어업 없는 우수 마을 포상 등을 통한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향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활용 및 불법 어업 없는 우수 마을 포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자율어업질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 지도교섭과 서기관 전길권

### ❖ 추진 배경 및 개요

연근해어선의 기관사고 등 설비 관련 해난사고는 2012년 485척에서 2013년 421척으로 15.2% 감소하였다. 2013년 해난사고 원인은 운항과실이 198척(47.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181건(43.0%), 어망감김 85건(20.2%), 충돌 64건(15.2%)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을 수립하여 자체점검 생활화, 해황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 기상특보 방송 강화,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조업 교육 내실화를 위해 300백만원을 투입하여 33,097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범실시하고, 조업 중 해상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400백만원을 투자하여 구명조끼 4,412개를 보급하였다. 또한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위치발신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가칭「어선안전조업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난사고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2014년에도 '201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을 수립하여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추진하여 어선 해난사고 감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표 4-3-8〉 어선사고 원인별 현황

연도	구분	계	기상 악화	선박불량				운항과실			
				소계	기관고장	조타기, 스크류	기타	소계	어망, 로프감김	운항 부주의	부주의
2012		454척 (44명)	10 (3)	250 (4)	202 (1)	35 (-)	13 (3)	194 (37)	90 (-)	68 (13)	36 (24)
2013		421척 (39명)	9 (-)	211 (19)	161 (1)	25 (-)	25 (18)	201 (20)	80 (-)	88 (6)	33 (14)

\* ( ) 은 인명피해

〈표 4-3-9〉 어선사고 종류별 현황

연도	구분	계	표류	충돌	좌초	화재	침몰	전복	침수
2012		454척 (44명)	327 (1)	52 (13)	19 (2)	130 (3)	11 (12)	15 (10)	17 (3)
2013		421척 (39명)	265 (1)	64 (5)	32 (1)	26 (18)	6 (5)	12 (8)	16 (1)

\* ( ) 은 인명피해

## 제4장 어가경영안정 · 소득증대

### 제1절 어가 소득 증대

#### 1.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수산정책과 사무관 변혜중

##### ❖ 추진배경 및 개요

어업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영어자금은 1차 산업인 어업의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산발전기금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비롯한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수산 분야의 유일한 기금이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영어자금의 총 운영 규모는 1조 9,700억원으로, 이 중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7,887억원, 원양어업 분야에 988억원이 공급되었다. 수산발전기금은 3,650억원이 공급되었다. 2011년 3.11 일본 도호쿠 지방 쓰나미와 원전사고에 의해 수산업 생산이 축소되었으나 어업 수산업 경영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다.



〈표 4-4-1〉 연도별 어업별 생산액 동향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12/'13년)
합 계	57,518	63,451	69,243	74,256	80,728	76,890	72,269	▽6.0
연근해어업	29,391	32,223	36,404	39,117	44,441	39,510	37,476	▽5.2
천해양식	15,995	15,201	18,463	18,156	17,842	17,593	17,259	△1.9
원양어업	9,901	13,274	11,638	13,645	14,670	16,554	14,080	△14.9
내수면어업	2,231	2,753	2,738	3,338	3,775	3,233	3,454	6.8

\* 자료 : 통계청

▼▼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

전체 공급자금 1조 9,168억원 중 700억원은 어선조난, 흉어, 재해,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 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하였다. 특히 적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해안 어업인의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도 영어자금 공급재원별로는 정부의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78억원, 수협중앙회의 신용자금에서 12,541억원,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금에서 2,481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대출된 자금을 대한 연체 감소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4-4-2〉 연도별 영어자금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 요 액	41,685	44,223	46,837	49,221	62,352	63,045	
공 급 액	15,050	19,050	19,050	19,050	19,050	19,700	
공 급 률	(36)	(43)	(41)	38.7	30.5	30.2	
연근해	소 요 액	36,668	39,210	40,973	42,654	56,003	59,808
	공 급 액	14,250	17,850	17,850	17,850	17,950	18,650
	공 급 률	38.9	45.5	43.6	41.8	31.9	31.1
원 양	소 요 액	5,017	5,013	5,864	6,036	6,349	6,752
	공 급 액	800	1,200	1,200	1,200	1,100	1,050
	공 급 률	15.9	23.9	20.5	19.9	17.3	15.6
재원별	재정자금	5,636	5,636	5,525	5,525	4,982	4,678
	수협자금	4,433	8,433	9,544	10,044	11,087	12,541
	상호금융	4,981	4,981	3,981	3,481	2,981	2,481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수산발전기금의 조달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된 장기 용자사업의 거치 기간 종료로 정기상환 용자원금이 일부 회수되면서 용자원금 회수액이 증가하고 법정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체 수입이 확대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사업비가 확대 지원되면서 여유자금 회수액이 축소 편성되었다. 또한 정부 내부 수입(정부출연금)은 폐업지원금, 소득보전직불금,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 FTA 피해 지원을 위해 150억원 편성되었다.

기금운용은 크게 기금운영비,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으로 분류되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비의 규모는 5,118억원으로 용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 사업비는 해양환경개선 추진, 수산물가격 안정,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산지 및 소비자 유통개선 등의 분야에 지원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등 수산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4-4-3〉 2013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계획(A)	2013실적(B)	증 감	달성률(B/A)
• 용자사업비	518,230	511,806	△6,424	98.8%
- 어업경영자금	61,271	61,271	-	100.0%
- 품목별경쟁력강화	43,500	39,276	△4,224	90.3%
- 수산물가격안정(용자)	256,943	256,943	-	100.0%
- 유통·가공시설(용자)	24,916	24,916	-	100.0%
- 수산물유통자금지원(용자)	131,600	129,400	△2,200	98.3%
• 경상사업비	85,020	75,033	△9,987	88.3%
- 해양환경개선	17,789	16,586	△1,203	93.2%
- 수산물가격안정	52,141	51,473	△668	98.7%
- 연안어장및내수면환경개선	6,750	6,685	△65	99.0%
- 직접피해지원	8,000	0	△8,000	0.0%
- 유통·가공시설	140	119	△21	85.0%
- 수산물유통자금지원	200	170	△30	85.0%
• 기금운영비	1,481	1,349	△132	91.1%
• 기금간거래	5,177	4,443	△734	85.8%
• 여유자금운용	135,646	128,498	△7,148	94.7%
- 통화금융기관예치	69,584	60,920	△8,664	87.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66,062	67,578	1,516	102.3%
합 계	745,554	721,129	△24,425	96.7%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정책은 WTO-DDA 협상,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및 수산업 생산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수산업 경영자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영진

###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3년 기준으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수는 전체 인구의 0.29%에 불과하며 낙도의 어업인의 수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는 어업의 전진기지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보전, 국경감시, 해난구조 등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낙도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어촌인구가 낙도에 정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낙도의 정주여건은 연안의 어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어업의 부가가치가 낮은 실정이다.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하여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수산업이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였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2012년과 2013년에는 육지로부터 각각 50km이상, 30km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지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단, 육지로부터 8km 미만 떨어진 섬 지역은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고 연육교가 없으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이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를 단위로 지급한다. 이러한 기준에 속하는 어업인이 바닷가 청소, 어장관리 등에 참여하고, 수산직불금의 수령액 중 30%이상을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인 2012년과 2013년에 어가당 지급한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 간 3년(07~09)동안 연간 평균 어업 소득차액인 98만원의 50%인 49만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도에 도서지역의 64개 어촌계(5개 시도, 6개 시·군), 1,381어를 대상으로 59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도서지역 111개 어촌계(6개 시도, 11개 시·군), 2,531어가에 대하여 총 1,23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 본 사업부터는 어가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재원은 국고 80%,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원 20%이다.

〈표 4-4-4〉 시도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현황

(단위 : 어가수, 백만원)

구분	계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지급어가 (보조금) 1,381 (592)	169 (83)	-	77 (30)	789 (333)	156 (69)	-	190 (77)
2013	지급어가 (보조금) 2,531 (1,232)	452 (201)	97(41)	171 (73)	1,477 (773)	156 (71)	-	178 (73)

\* 자료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직접지불제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은 물론 어촌의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제도이다. 또한,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증진활동 사업을 위하여 어가당 지급액의 일정액(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동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예산 집행율은 '12년 33%, '13년 42%로 각각 부진하였다. '12년도에 사업대상인 4,415어가 중 1,381어가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13년도에는 사업대상인 7,145어가 중 2,531어가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어가로 최종 선정되었다.

따라서 2014년 본 사업에서는 수산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어업실적 증빙서류 인정기간을 확대하여

어업인의 신청률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어업인의 수산직불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직불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직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수산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하여 근거법률(「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 제2절 어가경영안정 지원

### 1. 직접피해보전제도 내실화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명호

####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명태, 민어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유예 및 장기 양허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 15년 후에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산부문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및 보완과 함께 수산부문에 1조 300억 원의 투자·융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회에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1.7.21)하여 FTA 이행에 대응하여 수산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률에 의거한 FTA 국내보완대책 중 하나로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직접피해보전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접피해보전제도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로 구성된다. 전자는 FTA의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후자는 FTA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동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칠레 FTA에 대응하여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에 대해 사전지정방식

으로 지원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사후지정방식으로 전환되어 수산 품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전 제도에 비해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였다.

수산부문 직접피해보전제도 지원 예산은 2017년까지 전체 투자·용자 규모의 8.2%인 845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다. 그런데 피해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산부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농업분야와 유사한 형태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져 수산부문에 적합한 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 직접피해보전제도 내실화 방향

현재 수산부문 직접피해보전제도의 대상은 농업부문과 달리 어업인(어업 경영자)에 한정되어 있어 어선원 등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제조하는 어업인은 동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FTA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어업종사자와 소금산업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지원 대상을 어업종사자와 소금산업 종사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수산물의 관세율 구조가 농산물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은 농업부문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부문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농업부문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가 해당 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의 90%로 설정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지급단가 산정 시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의 영향을 조정계수로 반영한 지급단가가 낮아져 충분한 피해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보전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 수립을 위하여 2014년에 전문가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2. 어선원·어선보험 내실화

| 소득복지과 사무관 이진우

### ❖ 추진 배경 및 개요

재해발생으로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2003년 3월 19일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법률 제6866호)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 동 법에 근거하여 수협중앙회에 보험사업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3년도에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11,283척 및 어선보험에 가입한 11,591척에 대하여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65,656백만원과 누적결손금 출연 등에 총 78,22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4-4-5〉 어선원 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척,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2012년
• 어선원보험료								
- 인 원	35,815	37,116	37,283	34,899	36,112	37,426	38,504	103%
- 보 조 액	9,829	11,968	15,612	21,491	21,100	25,146	25,382	101%
• 어선보험료								
- 척 수	5,397	5,704	6,518	7,233	8,494	10,360	11,591	112%
- 보 조 액	2,615	3,897	6,002	9,139	12,285	13,618	19,062	140%
• 위탁운영사업비								
- 보 조 액	7,683	10,675	12,153	18,145	17,093	20,828	21,212	102%

\* 자료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어업인 지원 및 제도 개선

어선원의 기초 생계안정과 근로조건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어선원보험의 기준임금을 고시하였다. 어선보험에서 실제 손해액(수리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시행중인 실손보상 제도를 기본계약으로 편입하였다. 선택적 자기부담금 제도를 어선보험에 도입하여 단일 적용되던 자기부담비율을 가입어선의 위험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비율 및 자기부담 최고한도를 다양화 하였다.

그리고 업종 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 운영실적을 어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반영함으로써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 요율을 조정하였다. 과거 3개년간 보험실적을 기초로 산출된 요율 조정요인(용역결과 전체 평균 어선원보험 10.5%, 어선보험 3.3% 인상)을 반영하여 어선원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5톤이상 25톤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3.5% 인상 하였으며, 어선보험은 동결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수지균형 유지 방안의 일환으로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계약에 대해 재보험사와 특약(50% 비례 재보험)을 갱신하여 지속적인 위험분산을 통한 사업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 ▼▼ 홍보활동을 통한 보험 가입률 제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가입 안내장 60,000부와 만화 안내장 6,000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계약안내를 위한 안내서 30,000부, 홍보 포스터 1,000장, 플래카드 285개, 홍보용 동영상 5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또한 어선원 및 어선보험과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선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선원보험 법령 요약서 4,000부, 어업 무선방송을 통한 보험가입 독려 방송 연중 실시, 수산전문지 광고 게재 및 정책보험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소형어선 보험 가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5톤 미만 어선원보험, 20톤 미만 어선보험을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캠페인을 실시(13.4~9) 하였다.

#### ▼▼ 어선사고 예방 및 현장 서비스 강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지정선박수리소 199개소, 지정병원 527개소를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관 무상점검 서비스(1,961척)를 실시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4년도에는 장해어선원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재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어선원보험 압류 방지 전용계좌 도입, 어선원보험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등 대어업인 지원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선복지 및 재해 등 정책보험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정책보험 전산 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인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장기적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의견수렴을 위하여 연안 11개 시·도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 소득복지과 사무관 이진우

#### ❖ 추진 배경 및 개요

WTO/DDA 출범에 따른 재해대책비 축소를 보완하고 거대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양식 어업인의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12월 제정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10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식보험은 태풍(강풍)·해일·풍랑·적조·호우·홍수·대설·동해·이상조류 등의 자연재해는 물론, 수산질병, 전기 장치 이상으로 보험가입 수산 양식물 또는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 제고를 위해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대상품목 및 본 사업 품목 확대

2008년 7월 “넙치” 1개 품목을 양식보험 대상으로 선정하여 양식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송어, 명게, 뱀장어, 미역 등을 양식보험 대상품목으로 확대하였고 향후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늘여갈 예정이다.

2010년 넙치양식보험이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하는 본 사업으로 편입되었고, 2013년 두 번째로 전복 양식보험이 본 사업으로 편입되었다.

〈표 4-4-6〉 양식보험 대상품목 현황

구 분 (품목수)	2008년 (1개)	2009년 (1개)	2010년 (2개)	2011년 (5개)	2012년 (11개)	2013년 (15개)
본사업			넙치	넙치	넙치	넙치, 전복
시범사업	넙치	넙치	전복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송어, 멍게, 뽕장어, 미역

▼▼ 어업인 편의 및 피해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양식보험에 가입하는 양식 어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양식어업인이 보다 용이하게 양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13년 2월 보험가입 절차(9단계 → 4단계)와 보험가입서류를 간소화(9종 → 6종)하였다. 신속한 보험가입을 위해 현지조사 처리기간을 신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하였다.

그리고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어업인 의견을 반영하여 자기부담금 최저한도를 축소하였고(보험가입금액 2% → 보험가입금액 1%), 양식 어업인의 피해 보장 확대를 위해 전복과 해사가두리어류양식보험의 대상재해에 이상조류(특약 개발)를 추가하였다.

▼▼ 양식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양식 어업인들의 양식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 전문지, 월간지 등에 양식 보험 광고를 게재함과 동시에 양식보험 가입 캠페인(3~6월)을 실시하여 집중재해기간(7~8월) 이전에 어업인의 보험 가입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어업인 현장 마케팅 강화와 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해 어업인 설명회 및 간담회(총 24회)를 실시하였다.

〈표 4-4-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최근 3년 가입 실적

(단위: 어가,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계	4,811	396	8.2	6,899	836	12.1	8,688	2,032	23.4
넙치	621	204	32.9	590	254	43.1	590	346	58.6
전복	1,451	164	11.3	1,462	227	15.5	1,502	780	51.9
조피볼락	843	24	2.8	887	114	12.9	1,000	204	20.4
굴	859	2	0.2	1,359	74	5.4	1,877	268	14.3
김	1,037	2	0.2	1,037	2	0.2	1,037	16	1.5
참돔				506	85	16.8	579	188	32.5
돌돔				109	10	9.2	136	29	21.3
감성돔				354	19	5.4	381	57	15.0
농어				272	37	13.6	293	84	28.7
쥐치				87	4	4.6	108	20	18.5
기타볼락				236	10	4.2	249	11	4.4
송어							108	29	26.9
멍게							249	-	0.0
뱀장어							125	-	0.0
미역							454	-	0.0

\* 자료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 중 품목 확대 및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32어가가 가입, 전년 대비 167%(1,394어가)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어업인이 양식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본전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13년에 발생한 적조 등의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209억원(손해율 215.5%)이 지급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보다 많은 어업인이 양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대상 품목을 27개로, 본 사업 품목을 15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김양식보험 상품구조 변경, 외해가두리 양식장 인수 등의 어업인 요구 의견을 검토하여 현행 상품에 반영할 예정이다.

## 4. 수산분야 공제제도 추진

| 소득복지과 사무관 이진우

### ❖ 추진 배경 및 개요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수산인 안전공제 상품을 2009년 1월 15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수산인안전공제 상품은 수산업 관련 활동 또는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지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되었으며 주계약 공제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3년도 수산인안전공제 가입자 30,294명에 대해 약 13억원을 국고 지원하였으며, 가입인원은 전년 대비 약 16%, 국고 지원액은 약 13% 증가하였다.

〈표 4-4-8〉 수산인안전공제 가입 및 국고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인원	78,000	78,000	78,000	73,413	73,466
가입인원	17,062	23,547	24,441	26,097	30,294
가입률	22%	30%	31%	36%	41%
국고보조 지원액	776	932	1,084	1,186	1,344

### ❖ 가입률 제고를 위한 연간 캠페인 실시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산인안전공제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협중앙회 주관 각종 평가 시 수산인안전공제 실적을 포함시켜 가입확대를 도모하였고 수산인 안전공제 우수조합에 대해 판촉물 등 물품 지원을 강화하였다.

▼▼ 어업인 현장 중심 홍보강화

정책(어선, 어선원)보험과 연계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때 수산인안전공제 상품내용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어업인에게 홍보하였다. 특히 수산인안전공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산인안전공제 현수막(37개)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상품안내장 35,000부 및 포스터 1,2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에 60백만원을 보장하던 고액형을 '14년도에 80백만원으로 확대하고 1억원 보장하는 프리미엄형을 신설하여 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을 확대하였다. 어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보장금액의 확대에 따른 공제로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한 위험률의 개정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들의 공제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계약 공제로 외에도 장제비지원특약 및 재해장해연금특약에 대한 공제료도 추가로 50% 국고보조 추진할 계획이다.

5. 적조 피해예방 및 방제 강화

| 양식산업과 사무관 하해성

▼ 발생 및 피해

2013년 적조는 예년보다 빠른 7월 14일 최초로 발생하였다. 적조가 일찍 발생한 원인은 장마기간 중 남부지방은 중부지방과 달리 강수량이 매우 적은 가운데 강한 일사량과 폭염이 지속되어 연안수온도 예년보다 0.5~1.5℃ 정도 높아 고온, 고염, 고조도에서 잘 자라는 적조생물의 성장 호적환경이 조기에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7월에는 남풍계열의 바람이 단일 방향으로 장기간 지속(초순~하순)됨으로써 외측수역에 분포하는 적조생물 유영세포의 연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연안 내측에 고밀도 집적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예년과 달리 6~7월 동안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연안역 영양염류 유입이 적어 규조류의 성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규조류의 생체량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로 인해 연안역에 유입된 유해적조생물이 중간경쟁 없이 단기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조를 일으켜 경남, 경북, 강원도

양양까지 확산되어 어류, 전복 등 2,818만마리를 폐사시키고 272어가에 247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 ❖ 확산 및 대응

2013년 적조는 연안 내측에서의 고밀도 집적현상이 있었고,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한 후 10일 만에 (포항연안, 7월 27일 발생) 발생하여 강원도 양양까지 북상함으로써 북상속도가 예년보다 1주일 이상 빨리 진행되었다. 적조 확산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대마난류 강세로 인해 남해안에서 동해안으로 흐르는 조류의 이동속도가 예년보다 빨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9〉 연도별 적조 발생일 및 피해 현황

연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발생일	8.29	8.14	8.2	8.13	8.5	7.20	8.7	7.31	7.30	10.28	9.17	-	7.30	7.17
지속일	55	41	57	62	35	58	23	50	62	20	5	-	87	51
피해(억원)	764	84	49	215	1.2	11.4	0.7	115	-	-	-	-	44	247

\* (2013년) 7.17(발생)→7.18(주의보)→7.22(경보)→8.28(주의보로 완화)→9.5(해제)

적조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유사 시 총력 방제체제 구축과 함께 적조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의 관계부처가 합동 참여하는 '적조대책 T/F' 를 구성하여「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마련 등 피해 예방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 ❖ 추진내용 및 성과

2013년 적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5월 10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황토확보, 황토살포기, 액화산소 공급기 등의 적조 방제장비와 시설들을 사전 점검하였다. 6월 5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적조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단계 별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7월 11일에는 환경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조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여 2013년 적조 피해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사육량 조사, 방제장비 사전점검 및 확보상황, 유사 시 공동 대응 노력 등을 협의하였다.

최근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2013년 적조발생 시에 해양수산부는 군, 경,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 방제동원 가능한 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총력 방제에 나섰다. 방제 현황(누계치)을 살펴보면 특보 기간 중 13,209척의 선박과 32,515명의 인력을 동원하였고, 황토살포는 전해수 황토살포선 96척, 일반 살포선박 3,959척을 동원하여 총 56,812톤을 살포하였으며, 황토운반선, 바지선, 포크레인 등의 장비 1,875대를 투입하였다.

또한 적조가 양식장에 접근하는 시점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양식하던 참돔, 감성돔, 강도다리 등 총 944천마리를 피해 발생 전 사전방류를 실시하여 폐사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조성에도 기여하였다. 어류, 전복 등 28,185천마리 폐사에 24,685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 우리 부에서 추진한 일자별 주요내용 및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4-10〉 일자별 주요내용 및 추진사항

구분	주요내용	세부추진상황
5. 10	• 2013 적조대비 양식생물 사육량 조사 및 방제 시설 사전점검 실시 지시	• 대상 : 시·도, 지방청, 수협 • 내용 : 적조방제시설 및 사육량조사
6. 5	• 2013적조위기대응매뉴얼 정비 시달	• 대상 : 시·도, 지방청, 수협 • 내용 : 단계별 행동요령
6. 10	• 2013 적조 피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자체 및 관련기관 통보	• 대상 : 총리실, 환경부, 해양청, 수과원, 지자체, 수협 등
6. 24	•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요령 일부개정	• 대상 : 해수부, 환경부, 해양청, 수과원, 수산사무소, 지자체, 수협 등
7. 9	• 2013년도 적조피해예방대책회의 보도자료제출	• 대상 : 대변인실
7. 11	• 2013년도 적조 피해예방 대책회의 개최	• 장소 :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 참석 : 해수부, 환경부, 해양청, 수과원, 수산사무소, 지자체, 수협 등 40명
7. 17	• 적조 최초발생	• 전남 여수시 돌산, 통영 연화/코클로디니움 • 발생밀도 : 350~1,200개체/ml
7. 18	• 적조주의보 최초 발령	• 적조주의보발령(350~1,200cells/ml) • 관련기관 적조예찰 및 보고철저
7. 22	• 적조 경보 발령	• 전남 고흥 내나로도 동측 ~ 경남 거제시 지심도 종단 • 발생밀도 : 520~8,500개체
9. 5	• 해제	

한편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적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의 관계부처가 합동 참여하는 '적조대책 T/F' 를 구성하였다. 9월 10일에 동 T/F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2013년 12월 19일자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4-11〉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주요내용

분 야	과 제	주요내용
예보·예측기능 강화 (해수부, 미래부)	• 예보시스템 개선	• 예보체계 세분화 -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관심, 주의보, 경보) • 발령 기준 강화 - 적조주의보 발령을 300개체/m <sup>2</sup> 에서 100개체로 강화
	• 예찰시스템 강화	• 광역조사 주기를 단축(격주 → 매주) • 동중국해, 남해에 대해 적조 유입 모니터링 수행 • 무인부이 설치 실시간 관측
적조 대응 R&D 강화 (해수부, 미래부)	•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강화	• 적조대응 R&D 협의회」를 구성·운영('13.9~) • 공동 및 개별 연구과제 수행, 결과 시범 실시
	• 적조 연구	• 해수부는 메카니즘 규명(예측분야) • 미래부는 구제물질 개발(제어분야)
양식어장 구조개편 (해수부)	• 양식제도 개선	• 적정 입식량제도를 도입 •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임시대피지” 지정
	• 상습피해어장 구조개선	• 이동식 양식시설 보급 및 품종변경 지원
	• 육상 및 외해 양식 어장 개발	• 육상 양식단지 개 • 외해양식(수심 35m이상)을 확대하여 내만의 양식장 이전
해양환경 관리강화 (해수부, 환경부)	• 육상기인 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 고농도 산업폐수를 처리하여 부영양화 예방 • 분뇨처리, 가축분뇨 처리 시설 설치 및 개선
	• 해상기인 오염원 저감사업 강화	• 어장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어장환경 오염실태 등을 측정·평가 •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등 어장환경 관리의무 강화
적조관련 제도개선 (해수부, 환경부)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 양식 재해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확대 •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자체 보조 확대
	• 방제물질·장비의 활용도 제고	• 방제물질·장비의 조기 실용화 • 방제장비의 일괄 관리방안 마련
	• 피해복구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사전방류 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어업인 참여 유도 • 폐사 수산물의 신속 처리를 위해 매물처리 근거를 신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도는 적조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발생범위가 동해안의 강원도 양양까지 확산되는 등으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총력 방제하였지만 피해방지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3년 12월 19일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에 의하여



적조 발생 및 성장, 확산, 소멸 등에 대한 근원적인 구명과 함께 방제방법 및 물질의 개발, 환경관리 강화,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적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 6.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 지원총괄팀 서기관 신만철

###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의 예인줄 절단으로 3천톤급 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이 밀리면서 대산항으로 입항 대기 중이던 유조선(Hebei Spirit호)과 충돌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12,547kl(10,900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3개도(충남, 전남·북의 11개 시·군)에 걸쳐 대규모 유류오염 피해를 발생시켰다. 구체적 사고 경위는 2009년도 연차보고서에 수록한 바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당한 어업인 등 피해민을 위해 우리 부는 유류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 ▼▼ 유류오염 피해어장의 환경개선 및 복원사업

우리 부에서는 2009년 7월 유류오염 피해어장에 대한 어장환경개선 및 복원을 위한 「어장환경복원 계획(2010~2019년 3,821억원)」에 따라 수산생물 서식환경개선사업(신규 사업, 1,577억원) 및 어장생산력 증진사업(기존 사업, 2,244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산생물 서식환경개선사업에 776억원, 어장생산력 증진사업에 701억원 등 총 1,327억원을 투입하였다.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으로는 연구용역 및 홍보 등에 우리 부에서 71억원을 직접 집행하여 어장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어장환경개선 효과 등 24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해지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705억원을 배정하여 각 지자체별로 마을어장 및 조업어장 등 피해어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어업인 재기 및 지역숙원사업으로 갯벌참굴 시범사업 및 종묘발생장 “썩” 제거사업과 바지락 종패발생장 복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어장생산력 증진사업으로는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장 제공을 위한 해중립 및 인공어초 조성에 304억원, 해역 특성에 맞는 바다목장 조성에 250억원, 자원증강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에 147억원을 투입하였다.

### ▼▼ 선주 책임제한채권 신고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해 선박 규모별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선주 책임제한 채권' 은 2012년 기준 총 127,471건 4조2,272억원이 채권관리 소관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고되었다.

### ▼▼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배·보상 청구 및 사정 동향

IOPC 92 Fund는 2011년 10월 제53차 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액을 최대 2,826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IOPC Fund 서울사무소인 허베이스피리트센터(HSC)에 접수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청구액은 2조7,752억원으로 IOPC 92 Fund의 피해 추정액을 크게 초과하였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민의 대부분이 2009년 5월 8일 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선주 책임제한 채권' 신고가 끝난 후에, 국제기금(HSC) 측에 손해 배·보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09년 상반기까지 국제기금 측에 대한 손해 배·보상 청구가 저조하였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손해 배·보상 청구가 증가하여 2013년 말 현재 128,403건이 청구되었으며, 국제기금 측은 이 중 99.9%인 128,391건을 사정하여 44.4%인 57,025건을 인정하였다.

〈표 4-4-12〉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추진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청 구	사 정		인 정		배 · 보상			
	채권수/ 금액	채권수	사정율	채권수	인정율(명) 인정율(액)	합 계	선주 보험사	정부대지급	
						채권수/금액	채권수/금액	채권수/금액	
합 계	128,404 (29,017건)	128,391 (29,004건)	99.9%	57,025 (4,856명)	44.4% 7.2%	32,303 (4,418건)	32,260 (4,375건)	43 (43건)	
	2,775,997	-	-	198,768	-	176,566	171,884	4,682	
관광분야	10,704	10,702	99.9%	2,593	24.2% 13.1%	2,483	2,474	9	
	247,323	-	-	32,483	-	31,842	31,653	189	
방제비용	304	293	96.4%	240	78.9% 29.5%	209	184	25	
	393,206	-	-	115,870	-	97,237	93,070	4,167	
수산 분야	소계	110,332 (10,945건)	110,332 (10,945건)	100.0%	53,820 (1,651건)	48.8% 3.0%	29,304 (1,419건)	29,295 (1,410건)	9 (9건)
		1,605,338	-	-	47,962	-	45,292	44,966	326
	포획 어업	100,691 (1,304건)	100,691 (1,304건)	100.0%	52,513 (344건)	21.3% 2.1%	28,101 (216건)	28,101 (216건)	-
		999,005	-	-	21,456	-	19,850	19,850	-
	양식	9,641	9,641	100.0%	1,307	13.6% 4.4%	1,203	1,194	9
		606,333	-	-	26,506	-	25,442	25,116	326
기 타	7,064	7,064	100.0%	372	5.3% 0.5%	307	307	-	
	530,131	-	-	2,453	-	2,195	2,195	-	

▼▼ 기타 피해지역 지원사항

우리 부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축산발전기금 및 한국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2010년 지역경제 활성화 지구력 승마대회」에 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특별 적립금 0.7억원)하는 등 피해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 참여

우리 부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위해 한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2013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차례의 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IOPC Fund 제58차와 제59차 집행위원회(5월 및 10월)에 참석하여 국제기금의 보상시기 및 지급을 상향 등을 논의하였다.

###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서울사무소와 정례회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피해 배·보상 업무를 위해 국제기금 측은 서울사무소(HSC)를 개설하고, 피해 배·보상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항의 해소와 의견 교환을 위해 한국정부 측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7월에 첫 회의를 했으며 양측이 번갈아가며 회의를 주재하기로 함에 따라 2013년 총 4회(2012년에도 4회)의 회의를 통해 우리 부는 신속한 사정 촉구 등 현안사항에 대해 국제기금 측과 협의하고 설명하는 등 양측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우리 부는 2013년에도 모든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해양오염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여 해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어장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우리 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은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류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실시하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피해어업인 배·보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 유류오염 피해지역 지원사업

우리 부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어장환경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에 반영토록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우리 부의 어장환경복원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94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투입하여,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801억원) 및 어장생산력 증진사업(1,543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자원 서식환경개선사업으로는 어장환경 정밀조사 및 정책연구, 마을 및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갯벌참굴, 바지락을 비롯한 고소득 생산기반 조성 등이 있다. 어장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바다목장화 사업, 인공어초 조성사업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유류오염사고로 훼손된 수산자원 및 생태계를 자연적인 생물 다양성을 지닌 건강한 어장으로 복원해 나갈 예정이다.

### ▼▼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우리 부는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오염영향을 평가하여 피해어장을 신속하게 복원하기 위하여 3개년에 걸쳐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1차년도인 2008년에 5억원의 예산으로 유류 유출사고가 서해연안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태안 인근의 주요 양식장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인 2009년에는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피해지역의 어장환경 및 복원사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도에 7억원으로 환경조사, 갯벌 생태조사, 태안어장 수산자원 밀도 변동조사 및 굴·바지락에 대한 양식품종별 복원시험사업을 실시하였다.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유류오염 영향에 대한 정밀조사 및 어장환경 복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우리 부는 2013년 9월까지 총 3차에 걸쳐 75개 사업을 선정, 2020년까지 1조4670억원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투입하여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2013년 말까지 총 7,200억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위판장 설치, 양식장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2013년에는 1,377억원을 투입하여 수산물가공센터 건립, 내수면조성사업 등을 지원 하였다. 2014년에는 28개 사업에 1,068억원을 투입하여 어항시설 개선사업, 선박계류장 설치사업 등의 주민체감형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우리 부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어촌체험마을,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민체감형 사업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촉과의 협의 추진

우리 부는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보상 주체인 IOPC Fund 촉과 각종 회의를 통해 피해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2014년도에도 4월, 10월에 개최 예정인 집행 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신속한 보상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피해어업인 대표 등과 피해 배·보상 활동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모든 피해 배·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업인과 함께 할 것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국제기금 사무국과 집행위원회 주요 이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어업인의 정당한 배·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신속한 피해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제5장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어촌 활력 증진

##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 1. 어업후계인력 육성

|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윤이

#### ▼ 추진배경 및 개요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 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년·장년층에게 수산경영 및 기술지도,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산업경영자는 광역지자체(수산업진흥기관) 단위로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이들이 수립한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 기술지도와 자문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높은 계획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수산에 대한 기술지도, 경영기술 및 교육 등 각종 수산관계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순으로 단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운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3% 장기저리(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로 육성자금을 지원하되, 사업계획과 신용도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은 각각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981년부터 2013년까지 21,601명에게 총 6,130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4-5-1〉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실적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합 계		2012년 까지		2013년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21,601	612,909	20,621	562,890	980	50,019
어업인후계자(1981년 부터)	17,871	398,198	17,118	364,799	753	33,399
전업경영인(1992년 부터)	3,486	191,396	3,285	177,376	201	14,020
선도우수경영인(1995년 부터)	244	23,315	218	20,715	26	2,600

\* 자료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추진 내용 및 성과

정부는 수산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2013년도 한 해에만 980명에게 5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업인후계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은 용자금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업경영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높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어촌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창업자금지원 2억 원과 주택구입비 혹은 신축자금 4천만 원을 3% 장기저리(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76명에게 귀어·귀촌정책지원금 361억 원을 지원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어촌사회의 고령화·공동화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 어업후계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어업인후계자 대상연령을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업경영인의 경우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나야 선정될 수 있으며, 선도우수경영인의 경우에는 어업인후계자 선정 5년 이상 혹은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선정되도록 하는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후계자 1인당 지원한도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은 각각 1억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지속적인 어촌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귀어·귀촌에 대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 용자 등 지원규모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윤이

###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화·개방화로 수산업의 위축과 함께 어촌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양질의 후계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어촌을 선도해 나갈 정예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수산계 고등학교(전국 10개교)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정부는 2013년에도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계 고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수산계 고등학교에 취업·창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공통 프로그램(종합승선실습, 현장실습훈련,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등) 12억 원, 학교 자체프로그램(현장체험, 해외연수, 수상레저프로그램 등) 8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별 추진이 어려운 해기사양성과정인 종합승선실습을 통해 5급 항해사 및 기관사를 양성하여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 및 원양업계에 취업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을 수산업의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종합 승선실습, 현장실습훈련,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수산계 고교 학생 중 수산분야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창업과 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승선예비역 제도 확대, 산업체별 취업설명회를 통한 취업 알선 및 마이스터고 선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인력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 3. 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 어촌어항과 서기관 정동기

#### ❖ 추진 배경 및 개요

어촌의 국내외 여건변화는 어촌주민의 생산의욕과 생활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보다 빠른 어촌지역의 고령화·공동화 문제는 어촌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촌 단순한 어업생산활동의 전진 기지 차원을 넘어 어촌관광, 해양레저, 휴양·정주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차원의 어촌모델 개발이 조기에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어촌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정부는 2007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어촌 지역개발 리더의 육성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부터 지역개발리더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낙후된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지역개발리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조조직인 어촌사랑 주부모임을 활성화시켜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어촌관광사업 지도자 과정」, 「어촌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및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등 4개 전문인력 양성반을 개설함으로써 지역 어업인 및 어촌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어촌주민의 자발적 주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어촌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하는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 어촌개발사업과정

어촌개발사업과정은 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마을개발,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단지 등)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촌계장, 어촌계사무장, 어촌계운영위원 등 어촌지역의 리더 등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1회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어촌관광사업 지도자과정

어촌관광사업 지도자과정은 어촌계장, 이장, 어촌관광리더·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어촌관광 트렌드의 변화, 어촌관광자원 조성, 상품화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고객관리 및 갈등관리 등 지도자 양성과정에 중점을 두고 매년 1회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어촌체험마을사무장 과정은 어촌체험, 관광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육성을 위하여 매년 2회 연간 8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으로서 기본소양 함양 및 전문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홍보 마케팅 전략,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홈페이지 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

#### ▼▼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과정은 어촌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역할 증대와 권익 신장을 위하여 2009년부터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 및 리더양성 워크숍을 매년 2회, 연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은 어촌마을 주민 스스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어촌마을을 방문하여 어촌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역량강화 사업의 교육과정은 ‘공동체 활성화’, ‘마을자원 발굴 및 선진사례 학습’, ‘자원지도 작성 및 마을특화 전략세우기’, ‘특화어촌조성 실습’,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며, 2013년은 8개 마을에서 각각 8회차(1회차 : 1일 3시간)에 걸쳐 마을당 평균 3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어촌지역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창의적인 지역개발 모델과 살기 좋은 어촌마을로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주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제2절 살기 좋은 어촌 개발

###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

| 소득복지과 사무관 신선호

###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2004년 3월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10~14년)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5-2〉 사업별 사업개요

분야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보건복지 분야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수협중앙회	2009년~ 계속	-	어업인 61천 명 및 배우자	국비 50%	어업인부담 공제료일부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해양수산부 (수협 위탁)	2004년~ 계속	-	연근해 어선 원등	국비 20%~70%	어업인부담 보험료일부 지원
기초생활 인프라	국고여객선 건조	해양수산부 (지방청)	1995년~ 계속	해당 없음	매년 여객선 1~2척 건조	국비 100%	낙도보조항로 운항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여객선 운임보조	지자체	2006년~ 계속	해당 없음	연간 도서민 약 350만명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수산 정보이용 활성화	지자체	2013~계속	-	1개과제	국비 40%, 지방비 등 60%	수산분야 IT융복합 모델 개발 및 확산
경제활동 다각화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자체	1994년~ 계속	8,801억 원	230개권역	국비 80%, 70%, 5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어촌어항 관광개발	지자체	2004년~ 계속	-	어촌, 어항	국비 50%, 지방비 50%	관광안내센터, 해안공원 조성, 수산물 판매장, 해안산책로 등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자체	2001년~ 계속	-	134개소	국비 80%, 70%, 50%	관광안내소, 샤워장, 화장실 등
환경경관 개선	해양폐기물 정화 (해양쓰레기 수매)	지자체	2006년~ 계속	계속사업	37개 시군	국비 50%, 지방비 50%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해양폐기물 정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지자체	2010년~ 계속	계속사업	20개 시군	국비 50%, 지방비 50%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시설 등
	양식어장정화사업	지자체	1986년~ 계속	-	약 52만 ha	국비 80%, 지방비 20%	연안 양식어장의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 등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지원	지자체(농어촌공사위탁)	2011년~ 계속	-	수요지자체	국비 60%, 지방비 20%, 자담 20%	육상종묘 생산시설 및 양식시설 히트펌프 보급 지원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국가	2010년~ 계속	-	기술개발식	국비 100%	해조류바이오매스 대량생산기법 및 활용기반 기술 개발

❖ 추진 내용 및 성과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 시행계획은 4개 부문 12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그 중 10개 과제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어촌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사업(13년 1,440백만원)과 어선원 및 어선보

험 지원사업( 13년 78,222백만원)을 추진하였다. 30,294명의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자의 주계약 순공제로 및 부가공제로 50%를 지원하였고, 어선원보험 가입자 38,504명, 어선보험 가입 어선 11,591척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15~71%)하였다.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포지역(향화~낙월 항로) 노후여객선(신해5호) 대체 건조를 진행 중 (13년~)이고, 여객운임의 20% 및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하였다. 또한 수산분야 IT 융복합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고 있다.

어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를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시설 등을 개발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조성, 관광안내센터 및 수산물판매장 설치, 해안공원 및 산책로 조성 등으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였다.

어촌 환경경관 개선을 위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해양쓰레기를 수매하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지원하였고, 양식어장정화사업을 통해 8,678ha의 연안 양식어장의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육상종묘 생산시설 및 양식시설에 총 19,309kW의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였다. 또한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R&D)로 해조류 바이오매스 대량생산기법 및 활용기반 기술을 개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하였다.

〈표 4-5-3〉 사업별 성과지표 실적 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13목표	실적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보험가입율	40%	41.2%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보험가입율	15.4%	17.2%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공사 공정률(%)	100	100
여객선 운임보조	도서민 수송실적(천명)	3,652	3,509
수산 정보이용 활성화	생산성 향상(%)	20	28.6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완료 진척도	86%	86%
어촌어항관광개발	개소 수(누계)	27개소	27개소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완료 진척도	74.6%	74.6%
해양폐기물 정화(해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수매량	5,000톤	5,298톤
해양폐기물 정화(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선상집하장 설치 실적	51개	52개
양식어장정화사업	어장정화 면적	5,231ha	8,678ha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보급량(KW)	15,000kW	19,309kW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특허지수	1.0	1.0
	학술논문발표지수	17.0	12.0
	제품화 지수	1.0	1.0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분야 4개 부문 12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역량강화 부문(귀어·귀촌활성화 지원) 등 확대, 지속적인 사업비 확대 투자와 더불어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 어촌종합개발사업 체계 개편

어촌어항과 사무관 한지웅

### ❖ 추진 배경 및 개요

어촌은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젊은 어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고령화·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어촌사회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촌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잘사는 어촌 건설을 위해 정부는 1994년부터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환경 개선, 어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4〉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1994~계속	8,754억 원	230개권역	국고보조80%, 70%, 5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 특수상황지역 80%, 일반농산어촌지역 70%, 도시활력증진지역 50%

### ❖ 추진 내용 및 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어촌의 항·포구를 축으로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개편하였다.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정 등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8,754억 원 중 2013년까지 7,622억 원을 투자하여 200개 권역은 완공하고 30개 권역은 사업추진(완공률 86%) 중에 있다.

〈표 4-5-5〉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 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어촌종합 개발사업	사 업 량	174(160)	174(160)	184(170)	190(173)	206(181)	208(188)	212(200)	18(30)
	사 업 비	576,031	24,789	25,831	26,457	39,484	35,019	34,594	113,212

\* 사업량 : 착수기준 누계, ( )내는 사업완료 권역수

사업의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1단계 사업 160개 권역은 1994~2007년까지 권역당 평균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 사업 70개 권역은 2007~2013년까지 대·중·소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당 최대 50억 원까지 증액하여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사업이면서 어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편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230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어촌어항법에 의한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2014~2018)”을 새롭게 수립함에 따라 “어촌특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과 휴양·관광산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화어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3.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어촌어항과 서기관 정동기

####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민들의 소득증가 및 여가시간 증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에게는 어업 외 소득 증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어촌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초기에는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사업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휴양·관광 등의 어촌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등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6〉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민간보조 (어촌어항협회 등)	2005년 ~계속	- 억 원	어촌체험마을 134개소, 어촌계 1,993개소, 자매결연체결 1,327개소	민간보조 국비100%, 지자체 국비 50%	홍보, 사무장 채용 및 컨설팅 지원 등

#### ❖ 추진 내용 및 성과

바다와 어촌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도시와 어촌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우수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컨설팅 제공, 도시-어촌교류축진 및 어촌전통문화재현(체험)행사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바다와 어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오프라인 및 대중화된 방송매체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체험객 안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홍보 등 어촌체험마을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 ▼▼ 1인1촌 컨설팅 추진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주민 관광 마인드 제고 및 갈등요인 해소, 마을에 적합한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1인1촌 컨설팅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 어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2010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관광객들에게 품질 높은 시설·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마을, 발전가능마을, 미흡마을로 구분하여 마을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홍보함으로써 다른 어촌체험마을에 전파하여 체험마을의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마을에는 추가 사업비(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명품 어촌체험마을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경우 체험객 수에 있어 2010년 771천 명에서 2013년 948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체험소득도 2010년 179억 원에서 2013년 228억 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4-5-7〉 2010~2013년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 현황

(단위 : 백만원, 천명)

구 분	2010년	2013년	증(Δ)감(2013-2010)	증가율(%)
체험운영 수	91	90	-	Δ0.1
방문객(천명)	5,022	12,150	7,128	143.7
이용객(천명)	771	948	177	23.0
직접소득	17,857	22,799	4,942	27.7
간접소득	33,419	50,376	16,957	50.7

\* 직접소득은 체험이용료, 민박, 식사, 수산물 판매에 한정

\*\* 간접소득은 어촌체험프로그램 이외의 일반 관광객에 의한 소득

### ▼▼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2013년에는 바다여행 포털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바다콘서트 등 축제 지원, 도시지역 어촌체험놀이관 운영,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나는야 바다해설사 책자발간,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등을 통해 어촌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로 국민들이 어촌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으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프로그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추진, ‘고품격의 어촌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촌을 찾도록 시행 중인 어촌관광 소프트웨어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문제점 발굴을 통한 개선 방안과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어촌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4. 어항시설 확충

| 어촌어항과 사무관 오기열

#####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구분하여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8〉 어항 지정 현황

( '12.12월 말 기준)

구 분		항 수	지정권자	투입재원	비 고
법정항	국가어항	109	해양수산부장관	국 비 100%	
	지방어항	285	시도지사	국 비 80% 지방비 20%	
	어촌정주어항	595	시장·군수·구청장	"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비법정항	소규모항	1,306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비 100%	육지 548개항 도서 761개항

\*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9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2013년까지 33,039억 원을 투입하여 100개 항을 완공하여

91.7%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에는 44개 항에 1,735억 원을 투입하여 이 중 전남 회진항이 완공되었다.

〈표 4-5-9〉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109	3	5	2	1	14	8	6	31	14	19	6
완공항	100	2	5	2	-	14	7	5	29	14	16	6

\*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 지방어항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3년 말 현재 285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1972~1994년까지 일반회계, 1995~2004년까지 농특회계, 2005~2009년까지 균특회계,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42개 항에 590억 원(국비 472억원, 지방비 118억 원)을 투입하여 4개 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5개 항 중 175개 항이 완공(완공률 61.4%)되었다.

〈표 4-5-10〉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 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285	13	15	4	5	14	29	12	91	23	61	18
완공항	175	9	10	4	4	9	22	5	46	15	45	6

\*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 어촌정주어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12년 현재 595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4-5-11〉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595	5	31	9	11	24	20	14	84	9	342	46
완공항	148	1	10	7	7	9	-	-	-	-	114	-

\*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부와 지자체는 어업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이들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어항 44개항에 1,735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어항 42개 항에 590억 원(지방비 118억 원 포함)을 투자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어항시설의 투자 방향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소득창출형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5. 어촌·어항 관광개발

어촌어항과 서기관 정동기

###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들어 경제성장, 교통의 발달,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사회적 여건변화와 더불어 WTO-DDA,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생산 위주의 직접지원보다는 자원관리·어촌관광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 격차 등으로 침체된 어촌지역에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업자원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어업 외 소득원 창출이 필요하다.

〈표 4-5-12〉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구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자체	2001년~계속	-	134개소	국비80%, 70%,50%	마을안내소, 사위장, 진입로, 화장실 등
어촌어항 관광개발	지자체	2004년~계속	-	계속사업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터, 해안공원 조성, 수산물판매장, 해안산책로 등

\* 특수성황지역 80%, 일반농산어촌지역 70%, 도시활력증진지역 50%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어촌체험마을조성

도시민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어촌체험마을을 선정, 2001년부터 134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22개소에 792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 주도형 어촌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등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표 4-5-13〉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년 까지	122	3	5	-	10	11	1	11	7	35	10	20	9
해제	-22		-2	-	-1	-4	-1	-3	-	-6	-3	-	-2
계	100	3	3	0	9	7	0	8	7	29	7	20	7

〈표 4-5-1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별	목표	2008년 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년 이후
어촌체험 마을조성	사업량	134	95	7	3	3	7	34
	사업비	53,893	31,905	2,150	1,250	500	1,930	13,381

\* 국비기준

### ❖ 어촌어항관광개발

어촌의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 고유한 자원특성과 어항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어항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본 종합대책에 따라 어촌·어항 복합관광형, 어촌관광단지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2005년부터 투자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33개소에 사업을 착수하여 총 20개소를 완료하였다. 동 사업은 2010년부터 광특회계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4-5-15〉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별	목표	2008년 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년 이후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량	계속사업	18(4)	18(7)	20(10)	25(14)	30(17)	33(20)
	사업비	계속사업	27,954	35,588	41,932	49,122	57,598	33,374

\* 사업량 : 누계기준, ( )는 완료누계, 사업비 : 국비 누계기준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어촌어항관광개발을 통해 어민들의 어업 외 소득이 늘어나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적정 수요인 13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함과 더불어 마을별 4계절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으로 운영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은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등 맞춤형 어촌개발을 통해 편안하고 정감 있는 관광어촌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6. 어촌·어항 관광 기반 조성

| 어촌어항과 사무관 오기열

### ❖ 추진 배경 및 개요

어항은 어선어업의 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어촌은 WTO-DDA, FTA 협상 진전에 따른 시장개방 및 보조금 제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어촌 지원방안 마련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어촌소득으로 연계할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어업 외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어촌관광모델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2004년)을 수립하고 다기능어항 13개항을 지정·개발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어항을 수산업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회 제공,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함으로써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코자 대포, 격포 등 13개소의 다기능어항을 지정, 개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2,541억 원을 투자하여 12개항을 완공하고 1개항을 지원 중에 있다.

〈표 4-5-16〉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목 표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량	13	5(6)	2(5)	1(4)	3(1)	1(1)	1
사업비	258,496	153,059	40,421	28,552	21,653	10,400	5,060

\* ( ) 은 계속사업

〈표 4-5-17〉 다기능어항개발 사업내용

구 분	어촌·어항복합공간형	다기능종합어항형
개 념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기존어항 + 관광기능
대상지역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배후에 어촌이 없어 연계가 곤란한 국가·지방어항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개소(2004.12.15선정)</li> <li>- 어유정항(인천 강화군)</li> <li>- 정 자 항(울산 북구)</li> <li>- 강 릉 항(강원 강릉)</li> <li>- 마 량 항(전남 강진)</li> <li>- 양 포 항(경북 포항)</li> <li>- 맥전포항(경북 고성)</li> <li>- 모슬포항(제주 남제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소(2004.10.25선정)</li> <li>- 대변항(부산 기장)</li> <li>- 대포항(강원 속초)</li> <li>- 홍원항(충남 서천)</li> <li>- 국동항(전남 여수)</li> <li>- 격포항(전북 부안)</li> <li>- 지세포항(경남 거제)</li> </ul>
사업기간	2004~2014(11개년)	2004~2013(10개년)
사 업 비	(항당) 100억원	(항당) 500억원(민자200억원 포함)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다기능어항개발은 기존의 국가어항개발과 달리 정부투자 이외에 민간투자 부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정부투자 부문도 기본시설 외에 친수공간 및 조정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 되어 있다.

2013년 2월 다기능어항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어촌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는 어촌 마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특화 개발(복합형·낚시관광형·피서리나형 다기능어항)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2014년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6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정적 공급

### 제1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김종모

##### ▼ 추진배경 및 개요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2013년 7~8월 일본 정부의 방사능 물질 해양 누출 공식발표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수입산 뿐만 아니라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어업인과 수산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한편, 소득 향상, 웰빙 소비 트렌드의 보편화로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도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산물 소비도 상당 기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어획(양식)에서 소비까지의 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동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제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일본산 주요 수입 수산물과 중복되는 품목(고등어, 갈치, 명태)과 대중성 품목(조기, 넙치, 전복, 뱀장어)을 취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력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13년 기준 20개 품목, 4,912개 업체 참여)

또한, 항생제, 사료, 용수, 외부 오염물질 등 육상양식장의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과다한 규제, 복잡한 규정, 구축 시 과도한 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양식장 HACCP 구축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등록이 26개소에 불과하며, 전체 대상 양식장(약 1천 개소)의 2.6%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수산물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패류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패류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60개 해역에 대한 조사 결과, 3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청정해역에 해당되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물 이력제는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참여업체 및 이력표시 물량을 증대시켜 나가며,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양식장 HACCP은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참여업체의 비용 및 노동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당 대상 업체를 전년 대비 6~7배(70개소 정도) 확대하여 HACCP 참여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생산해역 위생조사는 등급제를 통한 안정적인 위생관리 대책 마련에 기반이 되는 만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지원을 위하여 동 위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1~2개의 해역에 대해 추가적인 지정해역 지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2.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체계 구축

| 어촌양식정책과 서기관 지일구

###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생산,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금속, 항생물질 등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패류독소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으로 조사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2005년 7월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저장 및 거래 전단계 안전성조사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2013년 7월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 등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안전성조사 기관은 검역, 소금 수입검사 등 신규업무 폭주로 안전성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약 2만 3천여 개소)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중앙 단위에서의 안전성조사에 대한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이에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 장비 구축 지원 방안(2009년 7월)을 마련하여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2009년에 전남도 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부산시·경남도 2개소, 2013년 경북 1개소에 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안전성조사 업무를 공동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2013년까지 1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방사능에 대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은 주 1회, 원양산 수산물은 주 2회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를 주 2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과정을 8회 공개하는 등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부에서는 수산물 생산 지자체 12개소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

하여 수산물 안전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품목 및 검사횟수 등을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3. 수출·수입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김종모

####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물 수입 자유화로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저질·위해 수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등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우리나라 수출 패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쿠도아충이 검출된다는 이유로 수출 할넙치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출 수산물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중국, EU 등 수출 상대국의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 현장점검에 대응하여 위생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대미 패류 수출 재개를 위하여 우리 부,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합동으로 지정해역 주변 가두리 양식장에 화장실 설치 등 육·해상 오염원 관리를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역이용자의 의식전환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수출 패류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미국으로 패류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에콰도르, 러시아와의 추가적인 위생약정 실시로 국내 수입 수산물의 위생안전 및 검역당국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앞으로는 위생약정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불량 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넙치 쿠도아충에 의한 감염증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산 넙치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4. 수출·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어촌양식정책과 서기관 김봉현

###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제정·시행(2008.12.22)되었다. 최근에는 수산생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전염병의 유입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2012년 7월 살아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孢子)를 포함한 수산식물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확대·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경 검역대상 또한 종전의 수산동물 중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용으로 승인받은 수산식물을 비롯해 수산생물제품(냉동·냉장한 전복류 및 굴) 등으로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국가 간 수산생물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검역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검역대상 확대 및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각적인 검역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검역 선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첫째, 해외 수산생물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강화된 검역 기반을 구축하였다. 해외발생 질병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검역강화 및 방역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외래 어종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유전자검사방법을 도입하였다. 값싼 외래 어종의 이종품(異種品) 혼입 및 국제 멸종 보호어종의 불법반입을 막기 위하여 유전자 종판별분석법(遺傳子種判別分析法)을 도입하여 양식업계의 경제적 피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셋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연구사업을 실시하였다. 수산생물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양식산업 및 수중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산생물의 수입위험분석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산생물검역관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프랑스, 영국 등 국제수역사무국(OIE) 표준실험실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산물검역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관세청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민원 신청·접수부터 검역결과의 통보까지 온라인화하여 대국민서비스에 기여하는 등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표 4-6-1〉 수산생물 수출입 검역실적

(단위: 건, 톤, 천\$)

구분	용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합계		49,920	105,271	517,440	55,922	105,108	449,032	55,794	101,031	521,818
수입	소계	49,889	105,264	517,204	55,897	104,958	446,273	55,785	101,015	521,589
	이식용	445	5,743	94,252	662	6,402	93,125	846	4,445	130,992
	식용	13,027	99,446	419,039	14,099	98,456	347,829	15,205	96,496	386,335
	관상용	36,415	73	3,912	41,173	100	5,319	39,728	74	4,262
	시험연구조사용	2	2	1	3	0	0	6	0	0
수출	소계	31	7	236	25	60	2,759	9	16	229
	이식용	2	2	35	7	51	2,603	4	15	188
	식용	-	-	-	1	0	2	1	1	39
	관상용	25	1	127	14	1	71	2	0	1
	시험연구조사용	-	-	-	-	-	-	1	0	0
	기타용	4	4	74	3	8	83	1	0	1

\*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 ❖ 평가 및 향후 계획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수산물(계, 새우류 등)을 검역대상에 포함하여 미끼로부터 외래 질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확대 및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생물검역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술연수프로그램도 내실화하고 신속한 검역을 위해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분석실 기능 정립을 통해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선진 검역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수산생물 검역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

## 5. 양식어장 환경 개선

양식산업과 사무관 권오승

###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양식어장의 입지는 어장 설치·관리의 용이성, 태풍 등의 연안재해 예방성, 풍부한 먹이생물 등의 조건을 갖춘 반폐쇄성 만을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오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정 해역에서는 육상기인 오염원의 유입과 양식어장 자가오염 부하량 증대로 어장의 환경오염도가 악화되고, 양식어장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 및 수산물 전면 수입 개방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어장환경의 보전·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986년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장기간 양식 등으로 어장이 노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양식어장, 마을어장 등을 대상으로 48억 원(국고 80%, 지방비 20%)을 투입, 8,678ha에 대해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해적생물 구제 등 정화·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연안어장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간 이용으로 오염된 어장의 환경을 보전 및 개선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어장환경개선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지속적인 어장이용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어장환경수용력 산정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안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부표(스티로폼)는 값싼 저밀도 제품이 대부분으로 태풍·파도에 쉽게 파손되고 쓰레기 수거도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여, 인천 등 7개 연안 시도의 양식 어장을 대상으로 고밀도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75억 원(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을 투입하여 「어장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제품(고밀도 등) 114만개를 양식 어장에 교체·보급하였다. 아울러, 2013년에는 폐각 12만 톤의 친환경 처리를 위하여 25억 원(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을 투입하였다.

한편 어장관리법의 핵심제도인 어장관리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정될 경우 환경이 악화된 어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부각을 우려하여 지자체에서는 어장관리

해역의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장관리법을 개정(14.8.13), 어장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어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어장환경조사망과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양식어장 환경개선 정책은 어업인의 어장청소 등 연안 양식어장 환경개선·보전,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하절기 지속적인 적조와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피해예방 및 최소화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어장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어장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 제2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 1.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유통가공과 사무관 김성원

####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주 생산시기에 산지수협을 통해 적정량을 수매하고, 성수기에 주요 소비지에 방출하는 수산물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축사업은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 안정을 통해 원활한 구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3년에는 냉동고등어·냉동명태·냉동오징어 등 6개 품목 19,377톤을 수매하여 계획물량의 100%를 달성하였다. 품목별로는 어황이 좋았던 갈치·조기는 각각 104%, 120%로 계획물량을 초과 수매하였다. 어황이 좋지 않았던 고등어와 오징어는 각각 77%, 83%, 원양산 등의 반입이 원활하였던 명태는 130%를 수매하였다. 2013년 정부비축 물량은 설·추석 및 어한기 등 수산물 수급 불안시기에 전통시장,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 8,234톤을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

〈표 4-6-2〉 2013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19,310	49,600	19,377	48,933	100.3	98.7
냉동명태	7,130	11,600	9,301	14,765	130.4	127.3
냉동 오징어	3,390	15,000	2,821	11,382	83.2	75.9
냉동 고등어	2,480	8,000	1,904	5,028	76.8	62.9
냉동갈치	630	8,418	652	9,816	103.5	116.6
냉동조기	490	4,582	587	6,109	119.8	133.3
천일엽	5,190	2,000	4,112	1,833	79.2	91.7

\*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기공과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인 설·추석기간 중에 정부비축 물량을 방출함으로써 2013년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변동률 1.3%p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전체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2013년은 전년보다 정부비축 예산이 증가(242억 원, 49%)함에 따라 비축물량도 늘어났고, 방출시기, 방출방법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 대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방출방법 측면에서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직접 판매 물량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방출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앞으로 ‘안정적 수산물 식량수급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7년까지 대중성 어종의 비축규모를 소비량의 4% 수준까지 확대(매년 0.5% 수준 확대)할 계획이다.

## 2. 민간 가격안정 사업

유통가공과 사무관 김성원

### ❖ 추진 배경 및 개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저장 또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단체)에게 수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용자 지원하여 수산물 주 생산시기에 적극 구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필요한 시기에 이를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3년에는 민간 가격안정사업으로 1,229억 원을 지원하여 오징어·명태·조기·갈치·멸치 등 1,214억 원, 204천 톤을 구매하였다.

부문별로는 원료구매 지원사업에 1,120억 원을 지원하여 188천 톤을 구매하였고, 가공구매 지원사업에 93억 원을 지원하여 16천 톤을 구매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산지 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판장과 소비지에서 수산물의 집하·분산 역할을 담당하는 수산부류 도매시장에서의 출하주에게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한 위판장 출하지원자금 1,004억 원과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138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민간 가격안정사업은 정부비축사업의 물가안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설·추석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중 정부비축물량과 함께 민간보유물량의 방출은 물가대책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 및 방출을 민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구매 및 방출이 용이하지 않아 그 효과 측면에서 일부 보완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산물 구매지원사업의 산지가격 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고, 소비자물가 안정기능 강화를 위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금리 부여, 새로운 소비지 가격안정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

### 3. 수산물 수급조절 지원 기능 강화

여촌양식정책과 서기관 이규선

#### ❖ 추진 배경 및 개요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정부 주도적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도부터 수산업 관측 및 자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수산물 생산 및 가격, 유통, 수출입, 해외 동향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생산자, 유통인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 생산 및 적정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자조금사업은 수산물 수급을 고려한 적정 생산 및 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수산물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업관측사업은 양식수산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7개 품목(김, 미역, 광어, 우럭, 전복, 송어, 굴)과 주요 대중성 4개 품목(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에 대해 수행되고 있다. 수산업관측 내용을 보면 시설, 입식(채묘), 양성, 출하, 사료, 소비, 수출입에 대한 물량 및 가격 동향,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측정보는 관측월보를 연간 14만부 발간하여 어업인, 유통인, 유관기관, 소비자 등에게 매월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양식어업동향도 연간 1만부를 제작·배포하여 양식어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소비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동향지에는 소비량이 많은 주요 대중성 품목에 대해 생산, 가격, 수출입 등의 수급동향과 어황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자 8개 단체(김, 광어, 송어, 전복, 자라, 민물장어, 향어, 메기)에 자조금을 지원하여 자율적 출하조절과 홍보활동, 품질향상 및 관측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시장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2013년도에는 총 5,082백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한편 해상에 있는 양식시설물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시설량을 판독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양식시설량 판독을 위해 2011년부터는 항공영상 판독을 도입하여 3개 품목(김, 전복, 어류)을 판독하였고, 2013년에는 5개 품목(김, 어류, 전복, 미역, 굴)으로 확대하여 양식시설량을 판독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업계의 자율적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시장개척, 소비촉진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이 좀 더 강화되어 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수산업관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측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관측자료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수급전망모형 개발, 관측정보 D/B 시스템 구축, 소비자패널 구축 등을 강화하여 관측기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가고 이를 위해 전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등 자조금사업 집행·관리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향후 수산업관측 및 자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이 향상되는 등 수산물에 대한 민간 주도의 시장 지향적 자율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7장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제1절 양식업의 산업화 기반 확보

#### 1.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승룡

##### ❖ 추진배경 및 개요

양식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 경제발전 등이 진행됨에 따라 국제적인 수산물 소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FAO에 따르면 전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0년 18.9kg에서 '20년에는 22.4kg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원 고갈, 어업 규제 문제 등으로 어획을 통한 수산물 공급량 증가는 한계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양식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산업적 육성가치가 있으나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이 부족한 양식분야의 생산·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연구·생산시설 구축에 노력을 기하고, 고부가가치 품종의 집중육성을 통한 수출양식단지 조성, 기존 내만 중심의 양식 외연을 외해로 확장시키는 외해양식 도입 등 양식부문의 규모화·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지자체의 양식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2년도에 7,8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23.7% 증가한 9,65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갯벌패류, 해삼종묘에 대한 연구 및 생산을 각 지자체에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생산 기반을 만들었다.

외해양식어업을 도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총 6개소 시험어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2개(전남, 제주)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까지 외해양식어업 9개소(참다랑어 5개소, 일반어류 4개소)를 개발하고 참다랑어 완전양식을 위하여 종묘생산 기술 등 연구기반을 만들었다.

한편, 전복, 해삼 등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을 중심으로 대량생산-가공-수출이 집적된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위해 2013년 1월 「수출양식단지(양식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5년까지 국비 16,500백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 7개소(전복섬 1개소, 해삼섬 6개소)를 추진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내만 이외 외해에 양식 적지 발굴로 양식 생산의 외연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대량생산을 위한 대규모양식단지 구축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 양식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한·중 FTA 등 향후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양식산업이 국내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지자체 양식기술·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해 9,22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양식단지(양식섬) 조성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외해 양식 주요 품종인 참다랑어 완전 양식을 위하여 종묘 생산 및 중간 육성 기술을 고도화 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참다랑어종묘공급기지 조성을 위해 4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2.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 적용

|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승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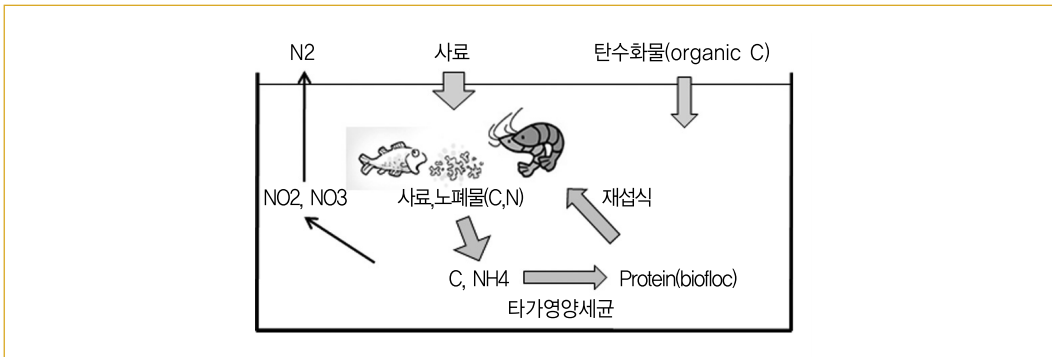
### ▼ 추진 배경 및 개요

기존의 양식은 내만의 좁은 해역에 집단 밀식함에 따라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태풍, 적조, 저수온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 해외의 양식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서 IT, BT등이 융복합된 첨단 신개념 육상 양식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연구하였고, 현재 상용화중인 만큼 상당한 기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바이오플라, 순환여과식, 빌딩양식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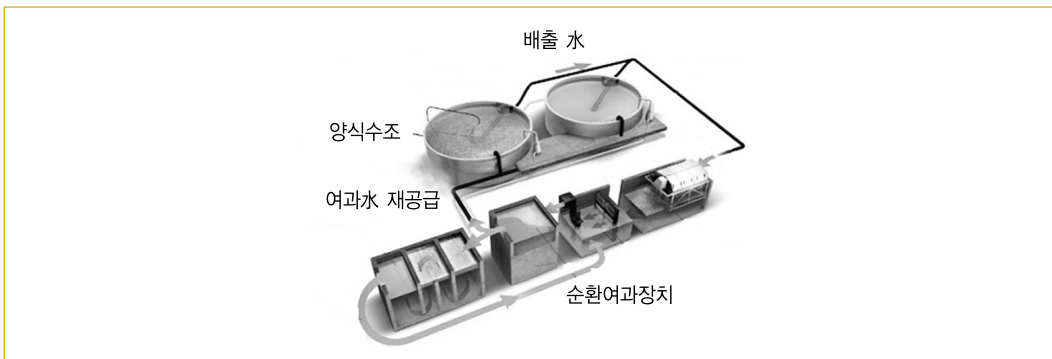
바이오플락 기술은 미생물이 사육수 내 사료나 노폐물 등 오염물질을 자연분해하여 정화시키거나 섭이 가능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등 유기합성물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무환수식 친환경 양식기술로서, 현재 새우 양식에 성공적으로 도입시켰다. 기존 노지(축제식)에서 1ha당 3톤 정도의 생산에 그치던 새우 양식을, 2013년까지 바이오플락 기술이 접목된 새우양식시설(무병종묘생산시설 포함) 11개소 보급을 통해 기존 축제식 양식의 30~50배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림 4-7-1〉 바이오플락 양식기술



순환여과식 기술은 양식수조 외부에 설치한 순환여과장치를 통해 양식장 배출수를 정화하여 양식 수조에 재공급함으로써, 배출수를 통제하고 최소화하여 사료, 노폐물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친환경 양식기술이다. 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의 기본모델을 정립하고 경제성 평가 및 현대화 정책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수 순환여과식 플랫폼 개발을 위한 파일럿 연구에 착수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4-7-2〉 순환여과식 양식기술



### ▼ 평가 및 향후 계획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질병을 저감하고,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켰으며,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등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개발이라는 세계 양식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나라도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240백만원을 투입하여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시설을 3~7개소 추가 보급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뱀장어, 황복, 넙치 등 대상 양식어종을 다양화 하고 성공적인 상업모델을 개발하여 양식 어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순환여과식 장치가 도입된 넙치 중간육성 양식시설 지원을 통해 순환 여과식 기술의 실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4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3.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

|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승룡

### ▼ 추진 배경 및 개요

한·미, 한·중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양식어업분야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육상 종묘생산·양식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저감시킴으로서 양식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양식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양식어업분야의 FTA 체결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수산 금융이차보전사업)은 노후된 양식시설을 신축,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자금을 신축 양식시설의 경우 최대 64억원까지 개보수 시설은 40억원까지 저금리 융자(연리 1%,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수협을 통해 총 76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양식어가에 지원하였는데, 총 270여가가 약 350억원의 융자를 지원 받았으며, 2013년도에는 총 1,152억원 규모의 융자금 중 247여가가 약 450억



원의 용자를 지원 받았다.

또한, 육상 종묘생산 및 양식시설에서 동절기에 경영비 부담이 큰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수 또는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 히트펌프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표 4-7-1〉 최근 3개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예 산	25,870	21,706	16,860

히트펌프 지원사업은 유류비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바, 양식어업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열 등 친환경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다양한 국가들과의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양식산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식시설현대화사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은 양식어가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으로 양식어가에 지속적인 지원 유지·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양식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생산량 증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각각 70점 이상으로 세부적으로는 생산규모 확대, 노동환경 개선, 생산량 증가 등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8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2014년 768억원)할 계획이나, 양식어업인들의 담보 제공 능력 한계로 전체 융자규모의 50%이하로 실제 융자를 받고 있어 많은 양식어가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간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을 통해 히트펌프를 설치한 232개 어가를 대상으로 난방비 절감과 조수입 증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난방비는 어가당 평균 22백만원(59%), 조수입은 어가당 69백만원(평균 9.4%)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2013년까지 육상 종묘생산 및 양식시설 수면적 기준 보급률이 2% 미만으로 더 많은 양식어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도에도 15,071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4.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양식산업과 사무관 민병주

### ▼ 추진 배경 및 개요

한·중 수교 이후 저가의 중국산 미꾸라지, 메기, 향어 등 국내시장 잠식 확산으로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 약화가 진행되면서 내수면 업계에 많은 피해를 가져 오고 있으며,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등 어업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어 수입수산물 이력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 내수면업계 보호를 위해서는 내수면양식장 시설의 현대화·규모화·첨단화·집적화 등으로 생산·판매·유통·관광산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6차산업화 형태의 사업 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고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조성 사업은 2019년까지 6차산업화와 연계한 모델 4개소를 개발할 목표로 2014년도에 1개소가 예산에 편성되어 충청남도 괴산군에 건립 중에 있으며, 매년 연차적으로 1개소씩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개소당 내수면 양식단지 기반조성 사업 기간은 3년으로 하고, 4년차에 참여 어가에서 양식장을 자담으로 시설할 예정이다

한·중 FTA 체결시 경쟁력이 어려워진 양식 어가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롤 모델 개발로 생산 원가 절감 및 단위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기반형 양식장이 건설될 계획이다

또한, 고밀도 순환여과식 형태인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양식으로 재래식 양식장 대비 3배 이상의 고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생산·판매·유통·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신개념 6차산업 양식 물 모델 개발과 내수면 양식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절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

### 1. 수산물 10대 수출전략품목 육성

| 양식산업과 사무관 남우진

####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 인구 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폭발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산 자원량의 한계로 수산물 공급방식의 패러다임이 어로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일본 원전 사고 및 중국 수산물 소비 증가 등 주변국 여건변화 등으로 수산물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미, 한·EU FTA 체결 등으로 수산물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넙치, 전복 대량양식체계 보유 등 높은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위생·안전 생산 및 유통인프라 구축과 기초연구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10대 수출전략품목을 대상으로 품목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전략을 설정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투자 정책을 정리하는 등 10대 전략품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인공종자개발-양성기술개발-대량생산기술개발-수출지원」에 대한 단계별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총 169억원을 투자하였다.

\* 산업화 지원(넙치·전복·해조류) > 단기 집중육성(해삼·민물장어) > 중장기 기반마련(참다랑어·갯벌참굴·관상어) > 해외어장 개발(능성어·새우)

종자개발을 위해서는 참다랑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및 치어분양 성공, 해조류 신품 출원 2건(김1, 미역1), 갯벌참굴 3배체 치패 천만패 생산, 파랑돔 생산 및 분양 등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양성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참다랑어 중간육성 종묘 민간분양, 넙치 쿠도아충 예방을 위한 Live 검사법 적용 및 환경조사, 전복 양성기술 표준화를 위한 생산지별 효율성 검증(35개소), 능성어 종묘생산단계의 NNV 모니터링 기술개발 등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새우 바이오플락 친환경 야외사육 시범사업 성공(생산성 3배 향상), 해삼 축제식 대량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호지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수출지원을 위해 전복 공동브랜드(카발로니) 개발 및 중국시장 조사, 수출용 넙치 가공제품 개발, 관상어 국제박람회 참가(26만불 수출계약) 등으로 해외 수출 및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4-7-2〉 2013년도 10대 전략품목 주요성과표

품 목	주요성과
넙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종넙치(속성장, 내병성) 수정란 보급(21개소 32건)</li> <li>• 쿠도아충 예방을 위한 Live검사법 적용 및 환경 조사</li> <li>• 수출용 넙치 가공제품 개발 및 품평회 등 실시('13.11)</li> <li>• 넙치 보급센터 준공('13.12)</li> </ul>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기술 표준화를 위한 생산지별 효율성 검증(35개소)</li> <li>• 해상가두리 및 고밀도 전복 치패 중간육성 시스템 개발</li> <li>• 중중 전복양식 시스템 개발</li> <li>• 중국시장 조사('13.9~11) 및 전복 브랜드 제정('13.11)</li> </ul>
해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종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출원(김1, 미역1)</li> <li>• 육종품종의 종묘 배양 및 생산(김2, 미역2)</li> <li>• 육종 김·미역 현장검증을 통한 본양성 완료</li> <li>• 해역별 해양환경 조사 진행중('13.10~'14.5)</li> </ul>
해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안 축제식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종묘입식(5,500마리)</li> <li>• 축제식 대량양식 기술개발을 위한 호지 조성 및 은신처 개발 : 1ha, 5종</li> <li>• 육성용 중국 대체 가능 시험사로 개발 : 3종</li> <li>• 간척지 내 해삼양식 시범양식지 선정 1개소 10ha</li> </ul>
민물장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물장어 부화자어의 새로운 먹이생물(Rotifer 및 Biofloc) 이용 가능성 확인</li> <li>• 배우자(난, 정자) 평가용 Bio marker 개발</li> <li>• 민물장어 성성숙 촉진 재조합 호르몬(FSH, LH) 생산</li> </ul>
다랑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참다랑어 수정란 부화, 종자생산 성공(8월)</li> <li>• 중간육성하여 민간 분양(9월) - 500g 종묘, 200미 민간분양</li> <li>• 참다랑어 월동종묘(3~5kg) 수송 기술 확보(10월)</li> <li>• 자동먹이공급장치 현장 적용(9월)</li> </ul>
갯벌참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기술(미국)을 도입, 3배체 1,000만패 치패 생산</li> <li>• 3배체 종패 중 20만패 중간육성장 입식(이원어장)</li> <li>• 갯벌참굴 양성시설 개발(특허 출원 중 3건)</li> <li>• 인천, 경기, 충남지역 어촌계 21개소(278ha) 적지조사</li> </ul>
관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비노형 토속어종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li> <li>• 고급 구피 생산 및 민간 양식장 분양(11품종)</li> <li>• 해수 관상어 파랑점자돔 대량생산(5천마리)</li> <li>• 관상어 수출전략을 위한 중국국제박람회 참가('13.11)</li> </ul>
능성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육성을 위한 가온사육시스템 구축</li> <li>• 양성실험용 능성어 305마리, 붉바리 450마리 확보</li> <li>• 종묘생산단계의 NNV 모니터링 기술개발</li> <li>• 해외양식기반을 위한 어미 확보 마우스그루퍼 16마리</li> </ul>
새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우 무병종묘 대량생산 및 보급(5월, 3천만미)</li> <li>• BFT 친환경 야외사육 시범사업 성공(10월, 2톤생산/생산성 3배 향상)</li> <li>• 첨단 친환경 기술보급(5월/국내 30명, 12월/국외 3명)</li> <li>• 어분대체사료 개발(어분 30%)로 양식단가 절감(10월)</li> </ul>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도는 10대 전략품목육성사업 첫해로서 10대 전략품목 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양성기술 및 대량생산기반 마련과 수출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였으나, 조속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였다.

2014년부터는 각 품목별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며, R&D 결과가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직접적인 산업화 효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현장교육프로그램 운영 등과 병행하여 연구결과를 민간에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의 체계와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능률 향상을 위해 각 품목별 중장기전략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 2. 수산종자산업 육성

양식산업과 사무관 남우진

###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인구의 증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기르는 어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우수한 수산종자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첨단과학기술의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에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가입하였으며, 가입 10년 이내에 모든 식물에 품종보호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수산식물은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방안’을 수립(12.10)하여 제도개선, 기초연구 및 신품종개발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수산종자산업육성 제도 강화

현 ‘종자산업법’(해수부, 농림부 공동법령)은 식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 수산종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도에는 법률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수산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친어등록제, 수산종자산업관측, 수산종자생산기술 개발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지원, 기타 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동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Golden Seed Project) 추진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형 수출종자(넙치, 전복, 바리과) 및 수입대체 종자(김) 개발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품목별 상세 기획을 수립(13.4월)하고, 수산종자사업단 협약(5월) 및 프로젝트 연구기관과 협약(7월)하여 본격적인 1단계(13~16년간) 연구를 착수하였다. 그리고 사업단 중간점검(8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였으며 2013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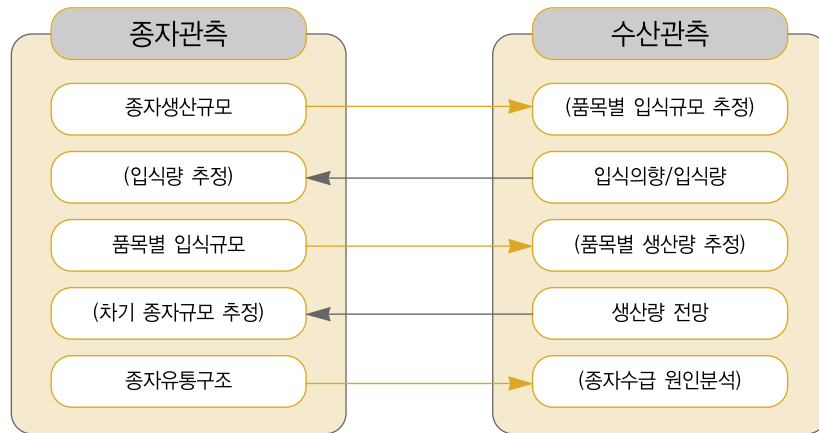
〈표 4-7-3〉 2013년 Golden Seed 프로젝트 정량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특허 출원 : 1건</li> <li>• 분자마커 발굴 : 108건</li> <li>• 우량 친어집단 및 계통주 : 4,984개체, 11계통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 : 11건(비SCI포함)</li> <li>• 유용 유전자원 수집 : 119건</li> <li>• 인력양성 : 4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과제 : 아열대 바리과 우량종자 개발</li> <li>▶ 논문 : 넙치 질병 관리에 관한 연구</li> <li>▶ 특허출원 : 어류채란 및 수정란 생산용 작업대</li> <li>▶ 분자마커 108개 발굴(종/아종 구별, 친자확인 및 개체식별용 등)</li> </ul>	

▼▼ 수산종자관측사업 추진

수산종자업체의 비계획적인 종자 생산으로 수산종자의 과잉생산 및 가격 변동성 심화 등으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산종자관측사업 타당성 및 관측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동 연구결과, 2014년도에는 주요 양식생산 품종인 넙치, 김, 전복, 조피볼락을 대상으로 시범관측 사업을 하기로 했으며, 2015년부터는 본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 수산식물 품종보호제도 강화

2013년 국가기관에서 출원한 신품종 건수는 2품종(김 1, 미역 1)이며, 품목별 누적 출원 건수는 김이 총 7품종으로 58.4%를 차지해 가장 많고, 미역 33.3%(4품종), 다시마 8.3%(1품종) 순이다. 출원자 현황은 국가기관 8품종(66.6%), 지자체 2품종(16.7%), 산업체 2품종(16.7%)이었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에서 출원된 품종 중 12품종에 대해 재배심사를 진행하였다.

〈표 4-7-4〉 수산식물품종 출원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김	미역	다시마
2012	10	6	3	1
2013	2	1	1	-

### ▼ 평가 및 향후 계획

Golden Seed 프로젝트(수출용 종자개발 등) 및 수산종자 신품종 개발 등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 및 품종보호 전략종자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에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로열티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수산종자산업육성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국내 중요생산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였다.

수산생명과학인 수산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마련 등을 통하여 수산종자 개발을 위한 기초 요소기술인 사료, 어미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고, 현장에 우량



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신품종보급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수급 예측을 위한 수산 종자관측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2년 이후 출원 및 재배심사를 거친 해조류 신품종 5품종은 2014년에 국내 처음으로 신품종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이들 품종은 산업적으로 활용되어 양식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민간육종 지원 및 종자유통체계 확립 등으로 수산식물 종자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 3. 질병·백신·사료 기술 촉진

#### 1) 질병관리 기술개발 촉진

어촌양식정책과 서기관 김봉현

#####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생물질병은 국내 양식기술의 발달, 양식어류의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피해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는 대국민 단백질 공급, 수산동물의 생산 증대 및 고품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저변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수산생물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의 유행성을 파악하고 병원생물의 감염상태 조사와 병인학적 연구를 통해 이들 질병의 특성과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치료 및 예방법을 유기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생물질병관리를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수산용 의약품 사용의 지도·관리·감독 및 수산생물 질병 원인규명과 병원체 특성연구, 수산생물 진단법 연구, 현안질병 대응연구와 생태 안전형 천연소독제를 개발하였다.

##### ▼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

2013년도 수산생물 예찰 대상시설 1,653개소에 대하여 수산생물질병 현장 및 유선 예찰을 실시

하였으며, 주요 양식대상 품종인 전복, 새우, 무지개송어 및 잉어류를 양식하고 있는 71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예찰을 실시하였다(현장 예찰율 44%). 품종별 시설현황 대비 예찰 실적은 새우류 80%, 송어류 53%, 넙치 35% 순으로 나타났다. 예찰에서 조사된 법정 및 비법정 질병발생 건수는 19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은 1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발생 건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기타 질병발생 179건은 주로 세균성, 기생충성 질병 및 세균과 기생충이 복합 감염된 것이 110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4-7-5〉 2013년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시설 및 관찰량

(단위 : 개소/만마리)

구 분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		계	
	개소	관찰량	개소	관찰량	개소	관찰량	개소	관찰량	개소	관찰량
실 적	1,273	141,650	64	1,192	204	6,142	125	3,048	1,653	151,841

\* 자료 : 국립수산물학원 병리연구과

▼▼ 수산용 의약품 사용의 지도·관리·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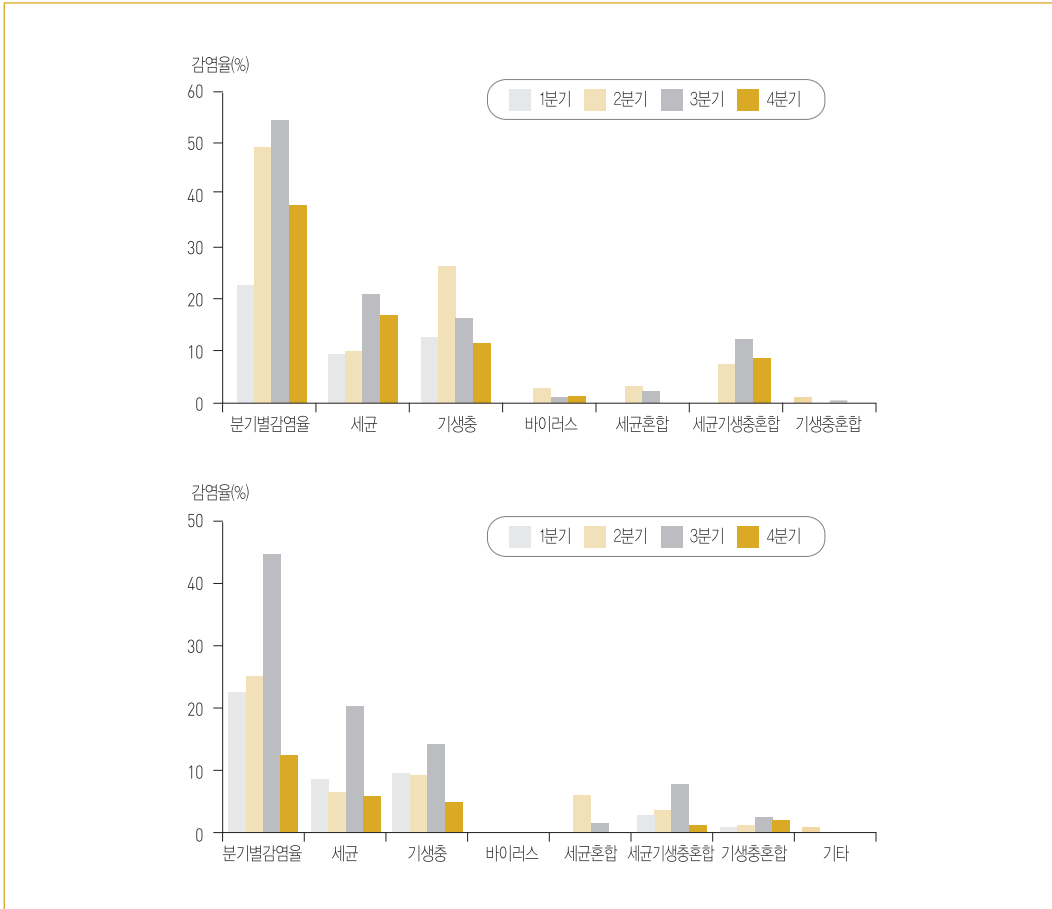
국내 양식시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의약품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예찰 대상시설에 대해 수산용 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총 1,618개소의 양식장에 대해 수산용 의약품 사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질병 치료 및 예방용 항생제로 아목시실린(41%)과 옥시테트라사이클린(31%)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충용으로 수산용 포르말린(87%)을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양식시설에서 승인된 수산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육관리 일지 및 약품사용 일지를 기재하고 있지 않거나 약품을 별도의 장소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관리하는 등 의약품에 대한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생물 질병 특성 및 진단법 연구

동·서·남해 및 제주도의 양식산 11종, 자연산 26종에 대해 4회에 걸쳐 실시한 질병조사에서 양식산 수산동물(594마리)의 44%, 자연산 수산동물(512마리)의 48.4%가 병원체 검출율을 보였다. 양식 메기 표피박리증의 원인균(*Aeromonas veronii*)의 인위감염에 따른 병원성은 고수온 보다 저수온에서 강한 것이 확인되었다. 참굴 치패와 먹이생물에서는 굴허피스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굴 성패에서 2% 검출되었다. 충남지역에서 어획되는 문치가자미의 유두종 발병률은 3~5월에 약 7% 확인되었다. 넙치 치어기 병원체 오염 현황조사 결과 먹이생물의 세균수는 종묘장별로 차이가 있으며, 로티퍼의 총 세균수가 알테미아 보다 많았고, 로티퍼를 먹는 치어에 공통적으로 분리되는 비브리오균을 확인하였다.

전복바이러스 질병진단용 주화세포개발을 위해 전복 간체장, 근육 조직을 초대 배양하여 전복 세포를 13차 계대배양(繼代培養)하고 유전자 검증으로 전복 유래 세포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4-7-3〉 양식(상) 및 자연산(하) 어류 질병감염 비율



▼▼ 생태안전형 천연소독제 개발

천연 소독제인 '아쿠아팜세이프'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산용 동물용 의약외품(소독제)으로 2013.5.8 품목허가를 취득하였다. 홍보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자 제주도 및 국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사용설명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각 용량별 제품이 생산되어 같은 해 7월부터 판매하였다. 신규 후보 천연물질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험관내 약리활성 검색을 통해 개통속에서 어류병원체에 대한 항활성 차이가 나타났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는 생산성 향상으로 양식어업인 소득 제고와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수산생물의 질병발생 현황조사와 병원체 특성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대처방법 제시 및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진단법 개발, 품종별 현안성 질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생물전염병 예찰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방역의 기본이 되는 업무이다. 2014년도에는 웹사이트 수산생물질병 방역관리시스템의 예찰 대상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등 시스템 고도화와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으로 있다.

## 2) 수산용 백신개발 기술 촉진

| 어촌양식정책과 서기관 김봉현

###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양식산업은 1998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13년 현재 2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식장은 과다 입식에 의한 고밀도 사육과 이에 따른 수질 저하 등으로 인한 사육환경의 악화로 각종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혼합 감염에 의한 피해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약 2,500억 원(사육량의 25~30%)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은 다양한 양식 연령에서 연중 단독 또는 혼합 감염되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단 질병이 발생된 이후에는 항생제의 지속적 사용에 의한 내성균 출현으로 기존 항생제의 치료 효능이 떨어져 치료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양식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그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다양한 수산용 백신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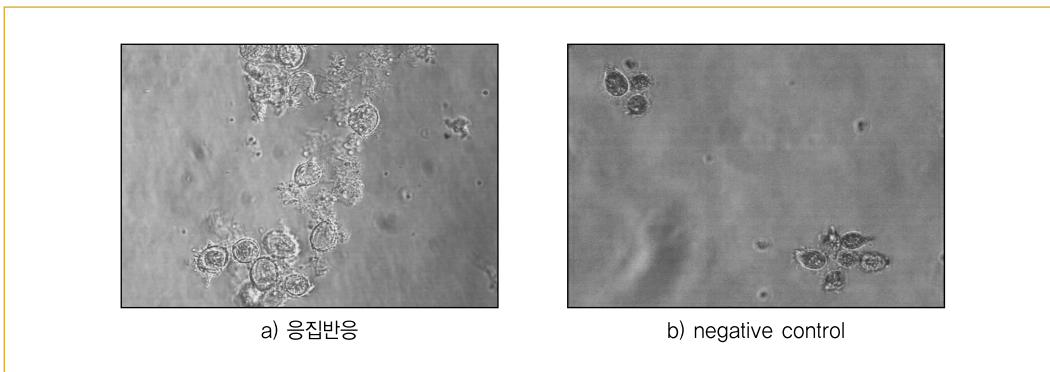
### ▼ 추진 내용 및 성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국내 최초의 수산용 백신인 에드워드 백신 및 연쇄구균 백신을 개발, 기술

이전을 통해 세균단독백신의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이후 세균 혼합백신인 에드워드균 + 연쇄구균 혼합백신, 연쇄2종(*Streptococcus iniae* + *S. parauberis*) 혼합백신을 개발하여 기술 이전함으로써 1회 접종으로 2종 이상의 질병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스쿠티카충과 세균 혼합백신인 비브리오팀 + 에드워드균 + 연쇄구균 + 스쿠티카충과 관련된 혼합백신 개발을 위하여 백신대상 세균과 기생충을 선정하였다. 백신대상 세균으로 *Vibrio harveyi*, *S. iniae*, *Edwardsiella tarda*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세균의 formalin killed cells을 제작하여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세균 혼합백신은 각 균체를 어체당 1mg씩 혼합해 투여하였을 때 높은 효능을 나타내었으며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4-7-4〉 향 스쿠티카 토끼 혈청을 이용한 응집반응



스쿠티카충 백신개발을 위하여 52개의 strain을 확보하였으며, 응집 반응 및 섬모충 내의 다양성 조사에 사용되는 cox I gene 분석을 통하여 52개 strain에서 2종류의 혈청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백신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국내 수산용 백신시장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로서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지만 몇몇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국내 수산용 백신은 세균성 질병 예방백신만 상용화되어 있어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병 예방을 위해 양식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넓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백신을 개발해 기술 이전하였으며,

현재 산업체에서 품목허가 준비 중으로 곧 실용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기생충성 질병 중 넙치 양식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스킨카충 질병 예방백신은 2013년에 스킨카충 백신대상 strain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에 스킨카충 백신, 2016년에는 세균과 스킨카충 혼합백신을 개발하여 기술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양식현장의 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용 백신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내에서 상용화된 백신은 모두 넙치에 대한 질병 예방백신으로 다른 어종의 백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산업체에서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생산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넙치 이외 다른 어종에 대한 백신개발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3.2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약사법 제85조의 개정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에 관한 29종의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됨에 따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백신 국가검정과 품목 심사·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수산용 백신의 특수성 및 전문성이 고려된 결과로 앞으로 수산용 백신의 개발 및 보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용 백신 국가검정기관으로서 백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포함해 효능 검정지침과 접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상업성이 결여되어 민간이 백신개발을 꺼리고 있는 어종의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개발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 3) 사료 기술개발 촉진

양식산업과 사무관 남우진

#### ❖ 추진 배경 및 개요

오늘날 양어사료분야는 양식산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사료비가 어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양식 생산원가의 30~60%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서도 사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해산어 양식 생산량은 1990년대 초 3천여 톤에서 2013년도에는 7만여 톤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도 양식사료 공급량은 531천 톤이었으며, 그 중 생사료가 425천 톤(79%), 배합사료는 112천 톤(21%)으로 생사료 위주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생사료 위주의 양식은 연안자원 남획과 사료허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안어장을 보호하고 양식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양식사료를 완전배합사료로 대체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배합사료는 생사료와 비교하여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로 만들 수 있고, 보관 및 취급이 용이하며, 사료 급이량 조절이 쉬워 양식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또한 생산량을 쉽게 조절하여 기간별

계획생산이 가능하므로 공급과 가격이 안정적이다. 이와 같이 배합사료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사료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사료회사간의 가격경쟁 및 어분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배합사료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성어기의 성장둔화로 배합사료가 생사료에 비해 1~3개월 출하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식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고효율 실용배합사료를 개발하여 양식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저어분 배합사료 개발 등을 통해 사료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친환경 배합사료 공급 정책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양식어업인들이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남획 및 어장환경 오염 방지 등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의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연구개발을 위해서 어종별 영양소 요구 및 사료원료 이용성 연구를 통해 어종의 크기별 및 수온별 영양기준 표준화 기술을 확립하였다. 양식 현장에서 생사료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배합사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략어종인 넙치 및 조피볼락 대상으로 실용배합사료 2종을 개발하여 현장시험(제주, 경북, 통영, 거제)을 실시한 결과, 넙치의 성장이 생사료와 비교하여 90~95% 수준이며, 조피볼락은 80~85% 수준에 도달하였다.

최근에는 고효율 배합사료의 품질개선(사료계수 향상) 및 배합사료 공급체계를 위하여 양식현장 검증 시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넙치에 있어서 사료계수 1.8(2008)에서 1.1(2013) 수준의 뛰어난 품질 개선 효과뿐 아니라 수온 및 크기별 배합사료 공급프로그램(software)을 개발하여 현재 국립수산물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에 공개하여 양식어업인 및 사료회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이후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조성물에 대한 특허(등록 1건, 출원 1건)를 획득하여,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 업체에 기술 이전(3건)함으로써 양식현장 산업화 보급 확대(제주지역) 및 어업인의 배합사료 품질불신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상기 결과들을 토대로 지역별 양식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워크숍(2013년 제주지역, 2014년 완도 예정)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확산시키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향후 배합사료 연구개발, 정책지원 등으로 인하여 배합사료 사용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산어 사료의 경우 생사료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폭등, 생사료 사용 시 수반되는 냉동창고 운영, 모이스트 펠렛 기계 설비와 전기료 및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 배합사료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생사료 사용량의 전부를 배합사료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배합사료 생산량은 300,000톤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양어사료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5〉 넙치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그림 4-7-6〉 배합사료 공급프로그램 개발



따라서 양식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실용적인 배합사료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것은 양식어의 성장, 사료 효율 향상으로 양식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양식생산 원가의 절반 이상 되는 사료비의 절감으로 양식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성장 및 수질 오염 경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배합사료 품질개선에 대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어분에 대한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의 탐색, 개발 및 대체원료 이용성 향상에 대한 저어분 배합사료의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고효율 사료개발과 함께 주요 어종별 사료공급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며, 배합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일정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관상어 산업 육성

양식산업과 연구관 고행범

###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변화 속에 애완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 애완동물'인 관상어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세계 관상어시장 규모는 4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수산의 미래산업화'를 채택하고 관상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우리나라 주요 10대수출품목의 하나로 선정 관상어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관상어 산업은 국제적인 산업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각종 전략품종과 새로운 기획이 나날이 신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세계적인 식용어 양식기술 인력과 시설 등의 양식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생산품종 다양화 등을 추진 마치 패션시장과 같은 세계적인 관상어 시장에 새로운 코리아브랜드가 선점되도록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화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관상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14.2.14)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내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통계작성, 생산유통단지지원,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담수토속관상어 연구결과로는 종어10종 1,500마리를 민간 기업에 보급하였으며, 유전육종기술을 접목한 담수 토속어종 관상가치 개발을 위해 알비노형 토속어종 양식기술개발 및 묵납자루의 단성화 기술개발을 위한 4배체 생산용 virgin을 확보하였다. 관상생물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해 고급 고정 구피 11품종 329마리를 생산 120마리를 민간양식장에 분양을 완료하여 6개월 후에는 한 마리 종어에서 연간 3천만원의 기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대체 및 수출 가능한 고급 금붕어 종어 확보를 위해 어미 품종 가계도(8종 374마리)를 확보하였다.

해수 관상생물 양식기술 연구 결과로는 연산호 양식에 성공하여 민간기업 4개소에 연산호 1천조각을 분양하였고, 세계 최초 파랑돔류 해수관상어 양식산업화 기반 확립을 위한 파랑점자돔 대량생산(5천마리)에 성공하였으며, 관상용품에 있어서는 복잡한 기존시스템을 개선한 첨단소자가 채택된 Full in One시스템 수조가 개발되어 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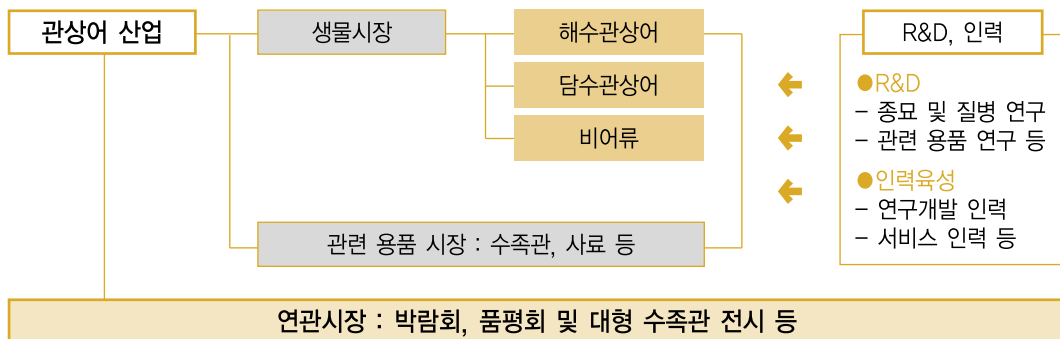
관상생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상어 산업의 국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관상어 국제산업 규모가 약 426억달러(약43조원)로 2010년 23조원이던 시장이 최근3년사이에 2배가량 성장하였고, 관상생물산업의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관상 생물산업, 용품산업, 서비스 R&D부분에 있어 각각 싱가포르, 중국, 독일에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관상어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 중국이 세계경쟁력 1위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중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5점을 확보 중간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관상어업체를 중심으로 중국 국제관상어박람회(CIPS) 한국관 운영을 지원한 결과 수출 상담실적이 285건, 주문 92건으로 256만달러 수출실적을 올렸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보고 즐기는 관상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세계적인 관상산업이 매년 신장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관상어산업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관상어 양식기술개발(담수어·해수어)을 통해 새로운 품종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관상어 대량양산기술개발이 민간양식장으로 확대되어 소득창출에 일조하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은 국내 관상어산업을 알리고 수출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관상어육성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상어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하며, 산업화 양산기술개발을 위해 양식과 용품관련 산업화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상어에 대한 홍보를 위해 국제박람회지원, 국내 관상어 품평회개최, 수족관보급 등을 추진하여 관상어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Aqua-pet 수출진흥단지” 설립을 통해 수입의존 국내 관상어 시장의 수입대체 및 수출기반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표 4-7-6〉 관상어산업의 범위



## 제8장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제1절 수산물 유통기반 강화

#### 1. 수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개선

유통가공과 사무관 김학조

##### ❖ 추진배경 및 개요

위판장과 도매시장으로 연결되는 전통적 유통채널이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과 함께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구매력이 강한 대형유통업체 등은 산지와 직거래·자체 물류센터 보유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는 가격 교섭력에서 산지의 생산자에 비해 소비지의 유통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어 가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FTA 등 대외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산지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산지의 가격 교섭력을 높여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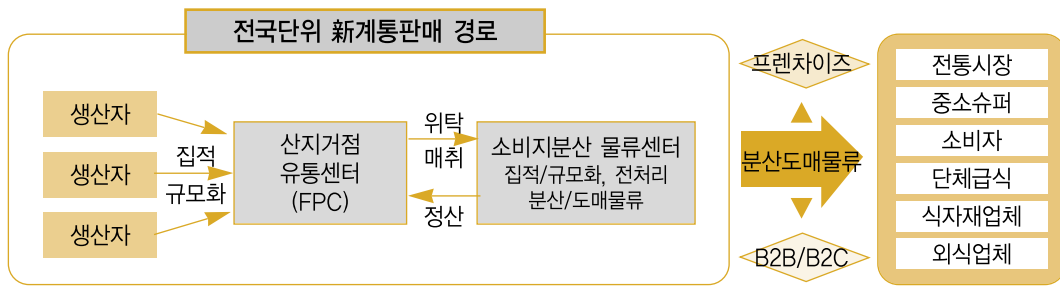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도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목표로 2013년 7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지에서는 지역수협 등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의

2012년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강원 속초시수협과 제주 한림수협의 2개소 이외에 2013년에 전남 완도금일수협, 경북 경주시수협, 경남 고성 (주)해승수산 등 3개소를 추가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소비자 유통개선을 위해 FPC·위판장 등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 단위에서 집적하여 판매하는 도매중심 유통시설인 소비자분산물류센터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 구축과 맞물려 생산자단체가 판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물확보자금, 마케팅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4-8-1〉 생산자 중심의 新유통체계



한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12년 4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 및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실시설계 적격심의 등을 거쳐 2012년 12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말 기준 진행 공정률은 24%이다.

〈그림 4-8-2〉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후 조감도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4년에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의 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 중인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16년 준공을 목표로 대구에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범사업 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2015년 8월 완료 예정인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은 향후 물류 개선 및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광·외식사업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4-8-3〉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조감도



2. 수산물 위생·물류 환경 개선

| 유통기공과 사무관 김학조

❖ 추진 배경 및 개요

수산물은 상품 특성 상 위생·안전 관리 및 산지에서 소비지간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이거나 이에 맞는 물류환경이 미흡한 편으로 산지 위판장의 경우 바닥 상장이 빈번하고 저온저장시설이 미비하며, 산지에서 소비지로의 운송과정 상의 위생관리체계도 부실하다.

반면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매우 낮아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어지는 물류위생 시스템 구축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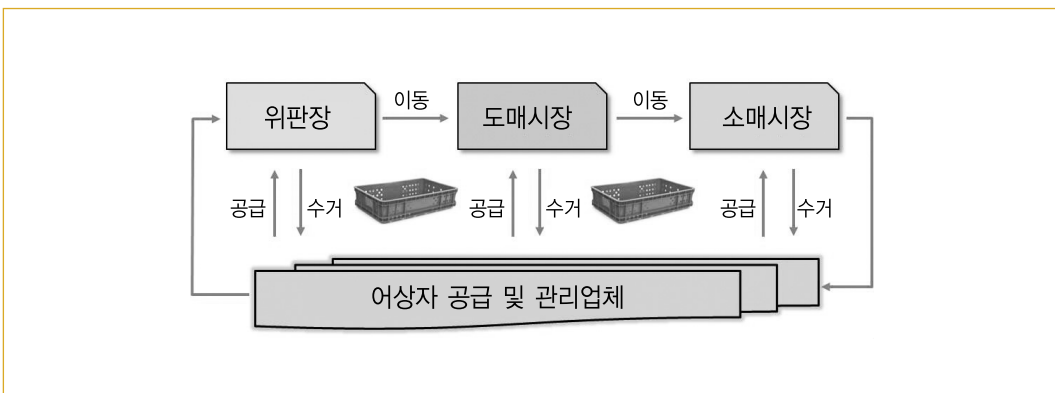
이에 정부는 산지 위판장 위생수준 제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수산물 규격화 등 수산물 위생·물류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2013년 7월에 수립·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경우 저온유통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HACCP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특성을 반영하여 물류 개선 등을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2013. 12월, 의원입법발의).

### ❖ 평가 및 향후 계획

향후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위판장을 위생관리 수준별로 등급화하여 공인 인증하는 위판장 ‘품질 위생관리인증제’ 도입 등 위판장의 위생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 완비를 위해 유통시설 간 물류이동에 대한 수산물 온도관리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어상자 세척·공급 등 어상자 공동이용체제를 마련하여 위판장·도매 시장 등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위생적 어상자 개발 및 이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4-8-4〉 어상자 공동이용 시스템(안)



## 제2절 수산식품 육성 지원

### 1. 가공시설 확충 및 거점별 지원

유통가공과 사무관 이재영

#### ❖ 추진 배경 및 개요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가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 및 사업에는 산지가공시설, 처리·저장시설,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산업육성 및 지역특화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수산식품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표 4-8-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산지가공시설	처리·저장시설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지원대상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사업자, 어촌계, 협동조합 등	• 수산업협동조합	•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사업내용	• 건물 및 시설: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 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오페수처리시설 등 신규시설(부지구입비는 제외) • 기존 시설에 HACCP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 • 기존 시설을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는 가공기계류 구입 및 설치장소 시설·보완	•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수산물 공동가공을 위해 필요한 가공시설 및 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의 신축 및 현대화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국비 50%, 지방비 50%

### ❖ 추진 내용 및 성과

1990년대 이전에는 수산가공 기반시설의 미비로 생산된 대부분의 수산물은 미가공상태로 유통되었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각각 약 18만톤, 36만톤의 규모에 불과하였다. 반면, 1990년대 이후 가공시설 확충과 해당 시설의 현대화·자동화에 따른 고차가공품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약 176만톤 규모에서 2013년도에는 약 182만톤 규모의 수산가공품이 생산되었다. 이와 같은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등을 위해 1987년도부터 산지가공시설 및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추진되었고,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되었다.

〈표 4-8-2〉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합 계	404,702	71,317	90,780	438,320
국 비	139,430	25,855	31,046	137,980
지 방 비	131,811	24,555	29,460	137,788
자 부 담	133,461	20,907	30,274	162,552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72,494	49,017	71,720	318,615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81,000	13,000	15,860	89,205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4,300	9,300	3,200	30,500
○ 쿨박신공장 시설	22,400	-	-	-
○ 젓갈타운 조성	19,286	-	-	-
○ 전북진주산업센터	2,222	-	-	-
○ 김가공공장 현대화 사업	3,000	-	-	-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산식품거점단지에는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외 가공시설, 유통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2008년도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2013년말까지 총 5개소(부산, 목포, 여수, 영광, 부안)에 거점단지가 조성되었다.



〈표 4-8-3〉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2013년도말 기준)

지 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편성 기준)	총사업비 (단위 : 억원)
부 산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연구센터(완공)	2009~2010	33
목 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완공)	2008~2011	222
여 수	수산물종합센터(완공)	2009~2013	290
영 광	염산항화도바다매체타워(완공)	2009~2013	100
부 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완공)	2009~2012	99
고 창	풍천장어웰빙센터(계속)	2010~2015	150
군 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계속)	2012~2014	195
영 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계속)	2011~2014	250
포 향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계속)	2009~2015	380
울 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신규)	2013~2016	170
충 북	충북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신규)	2013~2016	180

#### ❖ 평가 및 향후 계획

그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지원예산 대부분은 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위주의 하드웨어적 지원에 집중되었던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산지시설 등 수산물 가공 관련 인프라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가공품에서 단순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12년 기준으로 수산물 가공품 중에서 단순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8.1%이고, 고차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9%이다. 이와 같은 수산물 가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산물 가공품 브랜드화, 수출 확대 등 판로개척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강화를 통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수산식품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7개 권역에 총 20개소의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그림 4-8-5〉 권역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계획



## 2. 소금산업 성장기반 마련

유동기공과 사무관 김수정

### ❖ 추진 배경 및 개요

천일염은 ‘식품’으로 인정(2008. 3.)되기까지 지난 45년간 광물로 분류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식품으로서의 위생 기반이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측면에서의 육성정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출범하고, 천일염 관리 업무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2009.3.)를 거쳐 해양수산부(2013.3.)로 이관되면서 수산식품의 한 분야로 소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갯벌천일염은 다른 나라 소금에 비해 고혈압의 원인으로 알려진 염화나트륨 성분이 적고,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성분면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까지 식품이 아닌 광물로 취급받아 산업적 발전 기반이 미흡하였다. 앞으로 국내산 갯벌천일염의 우수성을 잘 살려 산업화해 나갈 경우 세계 명품소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낙후된

천일염 생산시설을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소금산업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염전바닥재 개선, 해주(海宙, 농축된 바닷물 저장고)·소금창고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고, 천일염 생산을 위한 바닷물, 갯벌, 기자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는 국산 천일염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수입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고,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천일염 이력관리제’를 시행하였다.

###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위생적인 생산기반 구축

천일염 생산에 필수 시설인 해주(海宙)와 소금창고의 신축·개보수 등 시설의 현대화(19억, 용자)를 지원하였고, 이와 함께 염전 결정지의 바닥재를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한 타일·옹기 등의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는 염전바닥재 개선지원 사업(538ha, 49억원)을 추진함으로써 생산단계의 식품 위생·안전성 확보를 강화하였다.

### ▼▼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추진

「소금산업진흥법(12.11.23.시행)」 이후 식용천일염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향상하고자 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한「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16호)를 제정하였다. 또한, ‘천일염품질인증제’를 마련하여 우수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산자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자 「우수 천일염·생산방식인증천일염·친환경천일염의 생산기준」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3-24호)를 제정하였다.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소금산업을 발전시키고 품질 좋은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 천일염 유통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천일염이력관리제 시행

국산 천일염의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수입산 소금의 국산 둔갑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을 '1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1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의 생산·유통 과정을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확인 할 수 있어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국산 천일염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4-8-4〉 천일염생산시설개선 등 지원 현황

(단위 : 천개/ha/동/개소)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포장재지원	10,000	-	2,000	2,000	2,000	4,000	
염전바닥재개선	1,658	-	220	450	450	538	
페슬레이트처리	7,200	-	-	-	3,000	4,200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16	2	4	5	5	-	

〈표 4-8-5〉 천일염생산량 및 수출 현황

(단위 : 천톤, 천불, %)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
생산량	377	222	368	335	420	20.2
수출량	34	49	50	43	51	15.6
수출액	7,460	8,460	9,727	8,977	12,374	27.4

### ❖ 평가 및 향후 계획

천일염을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수의 식품기업이 천일염 시장에 진출하였고, 각종 연구를 통해 건강 측면에서 천일염의 우수성이 확인되면서 천일염의 품질 향상과 함께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염전시설의 현대화 및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기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천일염 이력관리제 확대, 품질인증제를 시행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상품개발, 마케팅·홍보 및 공동 브랜드 관리, 천일염 수출 증대, 관광산업과 연계 등 천일염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3. 품질인증제도 개편

유통가공과 사무관 이재영

#### ❖ 추진 배경 및 개요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에 따라 수산식품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거래 활성화, 생산자에게는 수취가격 제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식품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표 4-8-6〉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운영 현황

구분	품질·특성인증					친환경인증		
	수산물	수산특산물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식품명인	유기식품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
관계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2조	제22조	제14조	제19조 및 제34조		
목적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통식품 품질향상, 생산장려, 소비자보호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	환경보전, 유기식품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도입시기	'93.4월	'93.4월	'99.1월	'93.4월	'93.4월	'13.6월		
인증기간	2년		없음	3년	없음	1년		
대상품목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특산물		지리적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통식품	-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기관	수품원 민간기관		수품원	수품원 민간기관	해양수산부	수품원 민간기관		
인증표시								

####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산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부인증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차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입에 대한 안전성과 접근성을, 생산자에게는 매출향상의 효과를 제공해 오고 있다.

〈표 4-8-7〉 수산물 품질인증 누계실적 현황(2013년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품질·특성인증					친환경인증		
	수산물	수산특산물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식품명인	유기식품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누계 인증실적	320	7	16	98	2(명)	친환경(62) 유기(4)	-	-

### ❖ 평가 및 향후 계획

수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업무 수행 및 관리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제도 및 제품에 대한 홍보 부족, 인증 수산물 판로개척 미흡 등으로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 인증제도별 통합 및 단순화, 국제 수준의 위생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인증업무 관련 민관 협력체제 확립, 인증 수산물 홍보강화 및 판로개척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단계별로 통합하여 '우수수산물 품질인증(가칭)'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인증제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최소한의 인증기준 제정으로 품질과 위생관리가 된 제품이라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생산 → 유통 → 소비단계까지의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산물이력제와 新 인증제도의 결합에 대해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제9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개발

### 제1절 국제협상 강화

#### 1. WTO-DDA 수산 분야 협상 대응

통상무역협력과 사무관 배은정

##### ▼ 추진배경 및 개요

2001년 11월 출범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규범, 서비스 등 9개 협상 분야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이다.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결렬되었고, 2006년 협상이 중단되는 등 각국의 큰 입장 차로 인해 쉽지 않은 진행과정을 거쳐 왔다.

2008년 7월에는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분야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의 협상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미국의 면화보조금 및 분야별 자유화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대립이 계속되어 결국 실패하였다.

2008년 12월 DDA 협상 진전을 목적으로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에 대한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주요 개도국들(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간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었다.

한편, 2013년 12월,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 모멘텀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 가운데 농업분야 중 일부(TRQ), 무역원활화 및 개도국 이슈에 대한 소규모 패키지의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2014년말 까지 DDA 협상 그룹별 잔여 쟁점 타결을 위한 “발리後 작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수산보조금

2001년 11월 DDA 출범 시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도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규범 협상 분야의 의장은 어선건조, 어항시설, 면세유 등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장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의장안에 대하여 미국·호주·뉴질랜드·칠레 등 수산자원 보호 주장국들은 의장안을 적극 지지하였고, 중국·인도 중심의 개도국들은 의장안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공해어업 보조금을 허용하는 등의 개도국 특별대우 확대를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일본·대만·EU 등은 의장안의 기본골격에 반대하고 금지보조금의 광범위함을 지적하며 축소를 주장했다. 이에 의장은 의장안 초안을 일단 유보하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09년도에는 6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어 의장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2010년부터는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개도국 특별대우, 유류보조, 공해어업보조금 금지, 소규모 어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하여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의장안에 대응하여 면세유 등 운영비, 항만인프라 지원, 가격보조, 소득보조 등을 금지보조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안서를 2010년 9월에 제출하였다.

마침내 Lamy WTO 사무총장은 2011년 4월까지 새로운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이에 강도 높은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에 결국 규범의장은 수정협정문안 대신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3년 12월의 발리 각료회의를 계기로 2014년 말까지 규범 협상그룹의 향후 작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므로 현재까지 교착상태인 수산보조금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수산물 관세

수산물 관세감축은 공산품 관세감축과 같이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 분야에서 논의된다. NAMA의 주요 쟁점은 크게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신축성 및 분야별 무세화이다.



관세감축공식은 흔히 스위스공식이라 불리는 것으로 관세감축 계수 이하로 최종관세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08년 12월 의장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스위스공식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경우, 선진국은 8, 개도국은 부가 조건(신축성 적용 범위)에 따라 20, 22, 25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도국 신축성 적용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선진국 계수 8을 적용할 경우 최종관세는 8% 이하로 떨어진다. 개도국은 관세 인하 신축성(관세 감축폭의 50%만 적용 또는 관세감축 면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수 20을 사용할 경우 제일 높은 수준의 신축성이 부여되고 계수 25를 사용하면 신축성을 사용할 수 없다. 개도국 신축성은 또한 특정 HS chapter에서 일정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신축성 제한요건(ACC : Anti-Concentration) 적용을 받는다.

분야별 무세화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보석, 화학약품, 수산물 등 14개 분야가 제안되었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태국, 중국 등은 수산물 무세화를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은 이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분야별 제안국 주도의 양자협약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반 이후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강조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이에 자발적 참여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등 주요 개도국들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NAMA 협상의 주요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NAMA 협상에 공세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국내적으로 민감한 수산물을 보호해야 하는 딜레마도 있다. 향후 일부 민감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상의 신축성이 주어져야 하고, 이에 대해 상대국의 이익제기 시 양자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수산물 무세화(sectoral) 협상은 유사 입장국과 공조하여 참여 불가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14년 말까지 수립이 요구되는 발리 후 작업계획에도 이러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 2. FTA 수산 분야 협상 동향 및 대응

통상무역협력과 사무관 신범준

### ▼ 추진 배경 및 협상 동향

201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거나 이미 발효한 나라는 칠레, 아세안, EU 등 47개국이다. 올해에는 새롭게 FTA를 체결한 나라는 없었으나, 그 동안 중단되었던 호주, 캐나다와의 협상이

재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수산강국과 활발하게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 통합체인 한·중·일 FTA 및 아세안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일본, 한국으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체인 RCEP은 2012년말 공식 협상 개시 선언 이후 공식 협상을 시작하였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3년에는 그 동안 중단된 호주, 캐나다와의 협상을 중심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해였다. 아울러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권 형성을 위한 RCEP 협상이 시작되어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9월 7차 협상을 통해 양국 민감성 보호를 위한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2단계 품목별 협상을 시작하였다.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4차례 공식 협상을 가졌으나, 양국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 문제 등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한·베트남 FTA도 2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의 관심 사항을 확인하였다. 호주, 캐나다와는 협상을 재개하여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였다. 2013년도에 협상을 개시한 한·중·일, RCEP 등 다자간 FTA도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계획, 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FTA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과 경쟁하거나 대체 가능성 있는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어려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등 예외적 조치 확보에 역점을 두어 FTA 협상에 임하고 있다.

FTA는 수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은 우리 수산물 수출시장의 42%(12년 기준)를 점유하는 데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수입쿼터(IQ) 및 과도한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추진하는 등, 우리 수산물 수출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3. FTA 국내대책 이행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명호

#### ❖ 추진 배경 및 개요

FTA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산부문의 피해에 대응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2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산분야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총 1조 302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직접피해보전 846억원, 경쟁력 강화 9,456억원이다. 직접피해보전 분야 사업으로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 분야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와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분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3년 수산부문 FTA 국내대책은 'FTA 환경 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피해보전,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의 세 분야에서 18개의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전체 예산 1,550억원 중 1,349억원을 집행하여 전체적으로 91.9%의 예산 집행률을 달성하였다.<sup>13)</sup>

2013년 수산부문 FTA 국내대책 사업의 추진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전체적으로 높은 실적을 나타내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활어운반선 3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5개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1개소,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1개소를 건립·제작하여 계획대비 100%의 실적률을 달성하였다. 다만, 원양어업 관리회사와 원양어선 설비현대화는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양식시설현대화 사업은 600건이 지원 목표였으나 신청이 다소 적어 380건을 지원하여 계획대비 63.3%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분야는 대부분 계획 대비 실적률이 100%를 넘어 높은 달성률을 나타냈다.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는 103만개 보급 계획에 114만개를 보급하였고,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352척 보급 계획에 364척에 보급하였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도 보급률 19.2%를 달성하여 목표치(19%)를 초과하였으며, 해양폐기물 정화도 인양쓰레기 수매 및 선상집하장 설치 실적이 100%를 초과

13) 직접적 피해보전분야의 경우 2013년 예산(80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전체 예산 집행률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하였다. 자율관리공동체 참여율이 55.2%로 목표치(53%)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수산자원조성지원 사업도 바다숲, 바다목장을 계획 대비 초과하여 시설하였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경우, 7,145어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844어가를 지원하여 39.8%의 달성률을 보였다.

〈표 4-9-1〉 2013년 수산부문 FTA 국내대책 추진 실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단위	계획(A)	실적(B)	달성률(B/A)	
직접적 피해보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	-	-	
	폐업지원제	-	-	-	-	
산업경쟁력 강화	원양어업 관리회사	개소	2	0	0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건	1	0	0	
	활어운반선 건조(활어수출용컨테이너 제작)	건	3	3	100.0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	5	5	100.0	
	양식시설현대화	건	600	380	63.3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	1	1	100.0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건	1	1	100.0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	-	-	-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	건	103만	114만	110.7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건	352	364	103.4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	19.0	20.4	107.3	
	해양폐기물 정화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톤	5,000	5,298	106.0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개소	51	52	102.0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연구	건	1	1	100.0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	53.0	55.2	104.2	
	수산자원조성 지원 사업	바다숲	ha	1,337	1,388	103.8
		바다목장(인공어초시설)	ha	1,620	2,058	127.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	7,145	2,844	39.8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사업에 대한 비시장가치를 추정한 결과, 전체 우리나라 가구가 동 사업에 지불 가능한 비용은 1,169억원으로 2013년 지속가능한 환경구축사업에 투입된 예산 1,025억원을 초과하여 비용편익 비율이 1.1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사업이 비시장가치로도 경제성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 중 어업인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사업<sup>14)</sup>에 대해 사업만족도를

14) 양식시설현대화사업,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2014년 3월 사업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업의 만족도가 70% 이상으로 FTA 국내대책 사업에 대해 직접적 사업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 추진된 FTA 국내대책 사업의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 어업인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FTA 국내대책 사업은 계획대비 목표 달성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용자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직접적 피해보전사업인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발동요건 충족 품목이 발생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으나 이들 사업에 대한 어업인 인식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직접피해보전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용자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용자사업인 원양어업 관리회사,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부문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친환경 수산업 구축, 수산자원 보호 및 친환경 어업생태계 조성, 어가의 안정적 소득 체계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면서 사업 기반이 미흡하여 집행 실적이 미흡하였다. 2014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 홍보 활동과 지원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4.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정충모 · 방종화

### ❖ 추진 배경 및 개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발효 1994년 11월),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채택(발효 2001년 12월) 및 1995년 FAO의 ‘책임 수산업 규범 채택’ 등으로 국제수산자원관리에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 각국의 책임 있는 어업 이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 상업 어종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또한 강화되고 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1/105)」는 해산(海山) 등에서 행해지는 공해상 저층어업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FAO 및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수역에서는 각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저층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FAO는 2008년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Guideline)을 발간했으며,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별로 해산 등에서의 저층어업활동이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09년 유엔은 2006년 결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엔총회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4/72)」를 통해 FAO 지침에 근거한 보다 강력하고 조속한 보존관리조치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였다. 2009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2011년 유엔 차원의 결의 이행평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저층어업 규제 이외에도 상어 등 부수 어획종 보호,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멸종위기 생물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는 저층어업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논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6월 FAO 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소규모어업을 위한 자율지침」을 기반으로 소외된 소규모 어업인 보호문제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고, 「기국평가를 위한 자율지침」의 채택으로 인해 향후 기국의 책임 있는 수산업이 강조될 전망이다.

전 세계의 참치자원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등 5개 지역수산관리기구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참치기구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

참치는 고가 상업어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남획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며, 어획 쿼터량 축소, 어업세력 감소 등 참치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등 기존 기구에서도 “어종별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선박

감시체제(VMS) 및 “어획증명제도”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어업질서에 대응하여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조업 보장과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수산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 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가입 추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이 곤란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인도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연승 및 트롤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채택된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태평양 공해상의 비 참치어종, 특히 전갱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8월에 설립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에 가입하였다. 또한 북서태평양의 저층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 중인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 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주요 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국제수산기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은 물론, 해외 어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국제수산기구 연례회의 및 과학회의를 국내에서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참석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어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유엔, OECD, FAO 등 수산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68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회의에 참석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참여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문안은 최종결의안(Resolution A/RES/68/71)에 채택되었다. FAO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와 관련해서는



FAO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2008)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2010, 부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련 논의에 대한 국내 수산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켰고, 동 회의를 계기로 한·FAO 고위급 양자회담을 통해 양자 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11년 2월, 한국과 FAO는 '수산양식 연구 및 역량 구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도국 공동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건강한 해양생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수산업과 친환경양식업을 중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주도 할 수 있도록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하고 있다. 제31차 FAO 수산위원회(2014, 로마 FAO 본부)에서 우리나라는 FAO가 리오+20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색성장계획(Blue Growth Initiative)에 주목하며 한국이 FAO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이 FAO 청색성장계획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많은 참여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고 회원국들간 FAO 세계수산대학을 통해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및 IUU어업 근절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는 제32차 FAO 수산위원회(16 개최예정) 부의장국으로 합류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FAO 산하 아·태 수산위원회(APFIC) 의장으로서 제72차 APFIC 집행이사회(2009, 서울), 제3차 지역자문포럼 및 제31차 총회(2010, 제주)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역내 능력배양 논의에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2014년 개최한 APFIC 제33차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IUU 어업 근절 노력 및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관해 참여 회원국들에게 인지시키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가져줄 것을 표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ECD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 부의장국으로서 수산자원 회복, 기후변화, 양식 부문 등 주요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OECD 기후변화 워크숍(2010, 부산)을 개최해 향후 수산 부문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 양식 워크숍을 개최, 지속 가능한 양식업에 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국제수산기구 중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주요 기구의 활동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9-2〉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 현황

(2014년 8월 기준)

구분	기구(회의)명	가입일	본부	회원국	협약목적	
수산 정책 규범 (4)	FAO 수산위원회	'65.12	로마	미국 등 192개국	수산업 관련 국제규범 수립	
	UN(수산결의안, 해양법 결의 등)	'91.9	뉴욕	미국 등 193개국	어업관리 규범 마련	
	OECD 수산위원회	'96.12	파리	미국 등 28개국	주요 수산이슈의 경제적 분석	
	APEC 해양수산실무그룹	'91.3	싱가폴	일본 등 21개국	해양수산 자원관리 방안 논의	
지역 수산 기구	참치 기구 (5)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70.8	마드리드	EU 등 48개국	대서양 참치자원 보존 및 이용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96.3	세이셸	EU 등 31개국	인도양 참치자원 보존이용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01.10	캔버라	일본 등 5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04.11	미크로네시아	호주 등 26개국	태평양수역 참치자원 보존관리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05.12	라호야	미국 등 15개국	동부태평양 참치자원 보존관리
	비참치 기구 (13)	국제포경위원회(IWC)	'78.12	캠브리지	일본 등 88개국	고래자원 보존관리, 상업포경
		남극해양생물보존위(CCAMLR)	'85.4	호바트	호주 등 24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
		중부베링해명태협약(CCBSF)	'95.12	시애틀	미국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 보존관리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NPAFC)	'03.5	밴쿠버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 보존관리
		북서대서양수산위(NAFO)	'93.12	캐나다	캐나다 등 12개국	북서대서양수역 수산자원 관리
		중동대서양수산기구(CECAF)	'74.1	FAO	일본 등 32개국	중동대서양수역 수산자원 관리
		중서대서양수산기구(WECAFC)	'74.1	FAO	이태리 등 33개국	중서대서양수역 수산자원 관리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11.4	나미비아	앙골라 등 5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SPRFMO)	'12.4	뉴질랜드	EU, 칠레 등 12개국	저층어업 및 비참치어종 관리
		아시아·태평양수산위(APFIC)	'50.1	방콕	호주 등 20개국	수산정책 수립 및 이행지원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PICES)	'92.3	캐나다	미국 등 6개국	해양생물 및 환경 과학적 연구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가입추진	미정	EU, 일본 등 7개국	남인도양 수산자원 보존관리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가입추진	동경	일본, 미국 등 7개국	저층어업 및 비참치어종 관리

\*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5. 한·일 어업협정

▮ 지도교섭과 사무관 문성필

###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경쟁적으로 선포하면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EEZ로 확대되었다. 한·일 양국은 1996년 각각 자국의 EEZ를 선포하였으나, 한·일 양국의

관련 수역인 동·남해 및 제주 남부수역의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양국의 EEZ가 중첩되고 EEZ 기점에 관한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EEZ 경계 획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과 1998년 15차례의 회의를 거쳐 양국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약 35해리 이내의 EEZ를 설정하고, 나머지 수역은 2개의 중간수역으로 하여 EEZ 경계 획정이 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성격의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98.11)·발효('99.1)하였고, 매년 다음 연도의 상대국 EEZ에서의 입어 규모, 조업조건 등에 관해 협의·결정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한·일 양국은 2013년 6월 21일 일본에서 「제15차 · 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어기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를 860척, 60,0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 ▼▼ 입어 규모

2013년 어기 중 총 어획할당량은 60,000톤, 총 입어척수는 860척으로 전년 대비 입어척수 10척을 감축한 반면, 어선 1척당 어획할당량 69톤을 유지하여 기존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우리의 연승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선망어업 등을 비롯한 주력업종의 조업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수역 확대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제안하였으나, 우리 측은 새로운 조업규제의 추가 도입에 강력 반대하여 일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우리 어업인들이 일본 EEZ 수역에서 유리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대부분 반영하여 타결하였다. 어업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은 ▲2013년 어기의 한·일 양국어선의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톤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 ▲GPS 항적기록보존조업의 실시 시기를 당초 2014.3.1에서 2014.6월말까지 연장하고 차기 협상에서 적용실시 시기를 계속논의 ▲한일양국의 연승업계간 조업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협의회 실시, ▲한·일 양국은 조업규제 검토 협의회를 2013년 11월에 개최하여 양국의 불균형적인 조업규제에 대하여 협의·검토 등이다.

또한 양국 EEZ 내의 해양생물자원 중 2014년 어기 어획할당과 관련한 어종의 어획동향자료, 자원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2014년 1월에 일본에서 개최하였고, 양국 어선 간 안전조업 질서유지 및 해상 내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3년 어기 한·일 양국 EEZ 내 총 어획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11,696톤으로 할당량 대비 19.5%, 일본은 8,428톤으로 할당량 대비 14%를 기록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1.4배 더 어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척수는 우리나라가 522척으로 합의척수 대비 60.7%, 일본은 113척으로 합의척수 대비 13.1%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4.6배 더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어선이 다양한 업종에 의해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9-3〉 2013년 한·일 EEZ 입어실적 비교(총괄)

구 분	합의사항		실 적		대 비(%)	
	할당량(A)	입어척수(B)	어획량(C)	조업척수(D)	C/A	D/B
한 국(a)	60,000톤	860척	11,696톤	522척	19.5	60.7
일 본(b)	60,000톤	860척	8,428톤	113척	14.0	13.1
대비%(a/b)	100	100	138.8	462	-	-

\* 자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종별 조업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등어류, 꽁치, 살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어획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고등어류가 약 6,544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77.6%를 차지하였다.

〈표 4-9-4〉 2013년 한·일 EEZ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

(단위 : 톤)

구 분	계	꽁 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붕장어	기 타
한국(A)	11,696	-	963	2,501	2,155	734	12	1,819	309	3,203
(%)	(100)	-	(8.2)	(21.3)	(18.4)	(6.3)	(0.1)	(15.5)	(2.6)	(27.4)
일본(B)	8,428	-	235	6,544	82	-	0.7	1.0	8.8	1,556.5
(%)	(100)	-	(2.8)	(77.6)	(1.0)	-	(0.0)	(0.0)	(0.1)	(18.4)
A - B	3,268	-	728	▲4,043	2,073	734	11.3	1,818	300.2	1,646.5

\* 자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또한 어종별 어획할당량에 대한 소진실적에서도 우리 측은 고등어류, 살오징어, 갈치, 가자미류 등 여러 종을 어획하고 있는 반면, 일본 측은 주어종인 고등어류를 어획할당량 대비 17.3%에 그쳤다.

〈표 4-9-5〉 우리어선의 일본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꽁 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기 타
할당(A)	60,000	7,000	3,500	23,385	8,750	1,150	220	2,120	13,875
어획(B)	11,696	-	963	2,501	2,155	734	12	1,819	3,203
B/A(%)	19.5	-	27.5	10.7	24.6	63.8	5.5	85.8	23.1

\* 자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표 4-9-6〉 일본어선의 우리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붕장어	기 타
할당(A)	60,000	3,000	37,814	3,150	40	78	10	50	15,858
어획(B)	8,428	235	6,544	82	-	0.7	1.0	8.8	1,556.5
B/A(%)	14	7.8	17.3	2.6	-	0.9	10.0	17.6	9.8

\* 자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 어기 중 입어 규모인 어획할당량 60,000톤, 총 허가척수 860척 중 우리어선 10척을 감척 하였고, 우리 측 제안으로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연기하였다. 2013.11월에는 한·일 양국의 조업규제 검토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부과된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예정인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측은 매년 자국 어업인과의 조업분쟁, 자국수역의 자원관리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연승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선망어업 등 주력어종의 조업조건을 강화하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원활하고 경제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6. 한·중 어업협정

지도교섭과 서기관 김학기

###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2년 8월 한·중 간 외교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어업문제 해결을 위해 1993년 12월 부터 1998년 11월까지 19차례의 양국 정부 간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을 거쳐 1998년 11월 11일 한·중 어업협정에 가서명 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이 가서명 이후 1999년 3월 중국의 양자강 주변 수역을 연중 조업금지수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우리 어선이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국내적으로는 한·중 어업협정 조기발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조기발효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정부에서는 어업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자강 보호수역 문제를 어업의 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강 연안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권을 협정발효 이후 2년간 확보하는 내용을 받아들여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하였다.

정식서명 이후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호 입어 규모와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측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1년 4월 5일 양국 수산당국 차관급 회담에서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와 업종별 세부 조업조건을 최종 타결하고, 외교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2001년 6월 30일 한·중 어업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한·중 어업협정 발효로 한·일 어업협정(1999년 1월 발효)과 중·일 어업협정(2000년 6월 발효)에 이어 한·중, 한·일, 중·일 3개국 간의 양자 간 어업협정이 완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질서체제가 동북아에 형성되었다.

〈표 4-9-7〉 한·중·일 어업협정 개요

구 분	어업협정 가서명	어업협정 정식서명	어업협정 발효	협정 유효기간	협정 효력상실
한·중	1998. 11. 11	2000. 8. 3	2001. 6. 30	5년	1년 전 서면통보
한·일	1998. 10. 9	1998. 11. 28	1999. 1. 22	3년	통지 후 6개월 이후
중·일	1997. 11	1997. 11. 11	2000. 6. 1	5년	6개월 전 서면통보



무허가조업, 영해침범조업, 폭력저항 어선에 대해 3년간 입어자격 취소, 단속·정선명령 위반어선에 대해 30일간 어업정지 처분, 자망어업의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제도 실시, 지도선 교차승선 확대 등 조업 질서 확립 및 중국어선 불법 조업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우리 EEZ에서의 수산자원 보호, 중국어선들과의 조업질서 확립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우리 측 단속기관의 승선조사 시 일부 중국어선의 집단·폭력적 저항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 EEZ 내 중국어선의 조업실적에 비해 중국 EEZ 내 우리 어선의 조업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조업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 어업 근절방안 및 한·중 간 입어 불균형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 산하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며,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실시 추진 및 어업지도 단속실무협의를 통한 공동 순시 등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 7. 한·러 어업협정

▮ 원양산업과 사무관 조성남

### ❖ 추진 배경 및 개요

1970년대부터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해 오던 우리나라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은 1989년 미국의 상업적 어업활동 중단 방침에 따라 새로운 어장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1991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91.10 발효)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은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의 조업 형태는 정부 간 협력사업과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최대 34척까지 조업하였으나 2001년부터 민간쿼터 배정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였고, 이마저 2003년 없어짐에 따라 민간 쿼터에 의한 조업은 합작사업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조업하고, 국적선은 5~7척 정도만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조업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민의 수산물 불법 어획 및 교역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 협정 체결을 요구하여, 2009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어업(IUU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 분야 투자와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역 어획권 배정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인프라, 노동력, 세금, 과실송금 등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 ▼▼ 러시아수역 안정적인 어획권 확보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는 우리나라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정발효 초기에는 정부쿼터와 민간쿼터로 구분하여 정부쿼터는 어종교환과 상업쿼터로 분류되고, 민간쿼터는 직접어로, 공동어로, 합작사업으로 나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1992년의 경우 명태, 대구저연승, 게통발 등 3개 업종에서 정부 또는 민간협력에 의해 약 109천톤이 어획되었고, 이와 별도로 오호츠크 공해에서 약 206천톤이 어획되어 총 315천톤 정도의 어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호츠크 공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993년 4월 25일부터 조업을 자제하였고, 게통발 어선은 러시아연방 대륙붕법 공포(95.11.30)에 따라 러시아수역에서 통발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해도에서 조업하던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이 1999년 모두 철수함에 따라 러시아수역은 우리나라 명태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유일한 어장이 되었다.

정부 간 협력에 의한 명태쿼터(상업쿼터)는 1993년 150천톤으로 최고 물량을 확보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20천톤까지 감소하였으나, 러시아 측과 IUU어업 방지협정 체결 및 이행,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 분야 투자 추진 등 적극적인 수산협력으로 명태쿼터는 다시 증가하여 2010년부터 40천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쿼터에 의한 명태조업 방법 중 직접어로는 매년 19천톤~164천톤 정도 어획하여 왔으나, 러시아가 2001년부터 불법 어획 및 교역 방지를 위해 경쟁입찰(옥선)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간쿼터에 의한 조업은 종료되었다. 공동어로는 매년 17~58천톤 정도 어획하여 왔으나, 2000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합작사업은 협정체결 초기부터 1~2개 업체가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협력에 의한 직접조업 및 공동어로가 불가능해진 어선들이 합작 형태로 협력방법을 전환하여 2013년 현재 14개사 25척이 합작사업을 하고 있다.



〈표 4-9-8〉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 동향

(단위 : 천톤)

구분	'92	'01	'02	'04	'07	'09	'11	'12	'13
계	187	200	25	20	21	39	50	40	40
정부쿼터	100	35	25	20	21	39	50	40	40
민간쿼터	87	165	-	-	-	-	-	-	-

\*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 추진

러시아는 제7차('97년)부터 제11차('01년) 한·러 어업위원회까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의 입항정보 등의 자료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우리나라는 동 자료를 2003년 1/4분기부터 러시아 측에 꾸준히 제공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러시아수역 명태 민간조업쿼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특별쿼터 배정을 요청('02.5)한 데 대하여 러시아 측은 이 문제는 러시아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 협력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200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2004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제13차('03)부터 제17차('07)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양측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협의하였으며, 제18차 한·러 어업위원회('08)에서 양측은 2009년 1/4분기 중에 동 협정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의 세부내용을 협의한 후 2009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으로 러시아산 불법 수산물이 러시아 선박에 의해 한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불법 교역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 교역이 아직 남아 있고, 특히 계 불법 교역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2012년 7월 24일부터 계 수입 신고 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제도를 시행하였고, 2014년 1월부터는 항만국 검색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러시아산 계류 수입 시 러시아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입항·하역을 못하도록 불법어획된 러시아산 계 교역을 원천 차단하였다.

### ▼▼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 분야 투자활성화 추진

2003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3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한·러 수산협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러시아 측이 한국에 명태쿼터를 향후 10년간 매년 5만톤씩 제공할 경우 한국 측은 매년 5백만달러씩 10년간 러시아 극동에 냉동창고·가공공장 건설 등의 어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2008년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수역 명태쿼터를 과거(4만톤)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과 한·러 수산물 불법 수출방지 협정의 조기체결을 희망하면서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09)에서 양측은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물가공공장, 어선 건조 및 수리소 투자진출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합의하였다.

2010년 12월 명태업계(북양트롤위원회)와 러시아 Ecarma社 간 수산물 냉동창고 및 수산가공시설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였고, 150만달러를 투자하여 사할린에 1,000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2012년 2월 준공하였다.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11.11월)에서 수산물교역센터 설립을 위해 공동 투자를 제안 하였고 이후, 러시아측은 지속적으로 명태조업쿼터와 투자협력을 연계하면서 한국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인프라 부족과 수익성이 낮아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음을 설득하여 2014년에 극동지역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러시아 EEZ는 우리 명태어선의 유일한 조업어장이므로 안정적인 조업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2월 IUU어업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010년 7월부터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통합고시를 제정·고시하였으나,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어 동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정부 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14.4)에서 2014년도 명태쿼터 40,000톤을 비롯하여 꽁치 7,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4,000톤, 기타 1,115톤 등 총 59,615톤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등 한·러 간 수산 분야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IUU어업 방지협정"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러시아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8. 남북수산업협력 사업 추진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정현정

### ❖ 추진 배경 및 개요

동·서해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수년간 계속해서 입어하여 조업하는 데 대해 우리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남북 수산물 교역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수산당국은 서해 평화정착 및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가졌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북한의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정부에서는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그동안 남북 당국 간 추진키로 합의한 수산협력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된 실정이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수산업협력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5.7)에서 남북수산물무회담 개최 문제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수산물협력실무협의회의(05.7)에서 ①서해에서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②서해상 제3국 불법 조업 통제 협력, ③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협력사업 추진, ④우량품종개발 및 수산 분야 기술교류 추진, ⑤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 6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북한의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남북 국방장관급회담(07.11) 및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07.12)을 개최하였으나, 북한이 현재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서해평화특별지대추진위원회(07.12)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동어로 실시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1차 남북농수산업협력분과위(07.12)에서는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①남측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협력, ②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 개발·양식 분야 협력, ③수산물 유통 분야 협력을 재차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해수역 입어는 2008년 중에 실시하고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실시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4-9-9〉 남북 수산협력사업 주요 추진 경과

일 자	회 담	주요 회담내용 및 결과
'05.6.24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합의
'05.7.9~12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제1차 남북수산실무협의회(7.25~27)의 개성 개최 합의
'05.7.25~27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 5개 사항에 대해 합의 및 합의서 채택 ① 서해상 공동어로 추진 ② 제3국 어선의 출입통제 ③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④ 우량품종개발 및 기술교류 추진 ⑤ 제3국 어장 진출 협력
'06.3.2~3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 북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의 근본적 재설정 주장 → 서해 공동어로, 바다목장사업 등 미 논의
'06.3.15	남북 수산 실무회담 제의	• 군사회담과 별개로 동해 공동어로를 위한 수산 실무회담(실무접촉 포함)을 제의 → 북은 군사회담과 서해 공동어로 선행을 주장하며 거부
'06.5.16~18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 제3차 회담과 동일하게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문제가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서해 공동어로 등 경제협력 사업이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 결렬
'06.6.3~6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남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합의 → 북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개최 지연
'07.2.27~3.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 북핵 6자회담 타결로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 → 4.18~21일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추위 개최 합의
'07.5.8~10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서해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고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함
'07.7.24~26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별다른 합의 도출 없이 종료 - 남측은 NLL기준으로 동일 면적에서 시범적 설정 주장 - 북측은 NLL이남 수역에 설정 주장
'07.10.2~4	제2차 남북정상회담	•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경제협력사업 적극 활성화 등 2007남북정상선언문 채택
'07.12.4~6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 개발, 양식협력 사업 등 4개 사항의 사업을 추진 협의
'07.12.14~15	제1차 남북 농수산 협력분과위원회	• '08년중 북측 동해수역 입어 추진,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 협력을 위해 '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합의 → '08년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

\*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그러나 2008년 들어 3월부터 북측의 당국 간 대화와 협력 거부, 금강산 관광 중단 및 핵실험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그해 중 추진키로 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채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으며,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남북교역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수산협력사업도 중단된 채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북한산 수산물의 위장반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중국 현지 실태조사 및 위장반입 차단 점검 등 범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남북 수산협력사업은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등 남북관계라는 업무 특수성을 가지고 추진돼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 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될 경우에는 호혜적인 남북 수산협력사업으로서 2007년에 합의한 수산협력사업 중 “우리 어선의 동해북측수역 입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 상호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산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 이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 남북 수산협력방안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는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남북 수산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2절 해외 수산자원 개발

###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원양산업과 사무관 박천일

#### ❖ 추진 배경 및 개요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 증가,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조업 경쟁의 심화, 자원을 보유한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의 규제 강화 등 원양산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해외 수산물 생산량은 2013년에 55만톤으로 2012년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생산금액과 수출금액은 참치 등의 어가하락으로 2012년보다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선척수 등과 같은 우리 원양 선단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어선의 노후화로 인해 인프라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자국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세계 각국은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수산기업이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수직 계열화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여 세계 수산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우리도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의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현대화와 해외 수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원양산업이 태동한 이후 최초로 원양산업 전반에 대한 총조사를 완료하였다. 해외를 무대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통계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총조사 결과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원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물 수출 증진을 위하여 노후한 원양어선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주력업종인 참치 선망어선 4척의 신조대체 사업을 완료하였다.

어업 외에도 양식,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자원이 풍부한 연안국의 수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1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외 진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외투자 정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개 국가의 투자여건(수산업 정책, 법령, 산업동향, 투자환경) 등을 조사·제공하였다. 원양산업 거점 국가의 교민을 임명한 명예수산물 8명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9년부터 시작한 해외수산 투자 기업 지원사업은 중요성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작은 실정이며, 융자 조건이 광물, 농업 등 타 해외지원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융자 조건을 개선하고 조사사업에 보조금도 지급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 성과를 감안하여 예산의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국제수산협력원을 설립 운영하여 국제 수산협상 전문가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IUU어업 규제 강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지속적인 해외 수산자원 확보기반 마련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ODA 지원 확대, 연안국,

지역수산 기구 등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 원양기업 및 원양산업 전문 인력 육성, 노후 어선의 현대화,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확대 등 원양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5개년간 원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밑그림이 될 제2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원양산업과 사무관 조성남

### ▼ 추진 배경 및 개요

해외어장 개발은 원양어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동안 연구기관 및 원양업체 등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고 해외어장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1994년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152개 연안국 중 125개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정책 강화 등에 따라 원양어선의 조업어장은 날로 좁아져 새로운 어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유지하고, 공해어장의 장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외어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 질서에 부합된 환경친화적인 어구·어법개발, 첨단장비를 통한 정확한 자원량 파악 등 종합적인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1957년 지남호에 의해 인도양 다랑어 연승어업 시험조업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해외어장 개발의 효시이며, 동 시험조업의 성공이 본격적인 해외어장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사모아, 인도양 등 다랑어어장 개발, 북태평양, 캄차카, 러시아수역, 베링공해, 북해도 등 명태어장 개발, 뉴질랜드, 포클랜드, 페루, 북태평양 오징어어장 개발, 북태평양 콩치어어장 개발 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03년 「해외어장 개발 장기 정책방향 연구」를 실시하여 해외어장 개발 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러시아 및 일본수역에서 주로 조업해 온 콩치붕수망어선의 조업쿼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대두되자 2002년 북태평양 서경어장에 대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주변국의 조업쿼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비어장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한바 있다. 2003년에는 남태평양 동부공해 전갱이 어장을 개발하여 상업적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에는 북태평양 중부 돔어장 개발, 2006년 FAO 47해구의 이빨고기어장을 개발, 2011년에는 FAO 47해구를 조사하여 금빛눈돔어장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2년에는 FAO 41해구에서 오징어어장 개발을 위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9-10〉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조사기간	조사선	업 종	조사수역	대상어종	예 산
'01~'02	과학원(탐구1호)	트 롤	인도양 심해	오렌지라피	18
'02.8~'10	연수원(갈매기)	봉수망	북태평양 서부공해	공 치	3
'03.4~'06	연수원(갈매기)	봉수망	북태평양 동부공해	공 치	4
'03.4~'06	연수원(갈매기)	봉수망	북태평양 서경어장	공 치	3
'03.8~'12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 롤	남태평양 중부공해	전갱이	24
'04.6~'09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 롤	북태평양 중부공해	돔	29
'05.7~'10	상업어선 7척	채낚기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24
'05.8~'10	상업어선 1척	채낚기	NAFO 동부	오징어	4
'06.4~'06	상업어선 2척	근해통발	마살수역	장어류	8
'06.12~'07.5	상업어선 2척	연 승	47해구 공해	메 로	10
'07.9~'08.2	상업어선 3척	참치연승	미드웨이	참 치	9
'07.7~'08	상업어선 2척	트 롤	중부베링	명 태	6
'08.8~'12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1해구	민대구	6.5
'08.9~'11	상업어선 1척	트 롤	베트남 EEZ	조기류	6.5
'09.7~'09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1해구	민대구	4.3
'09.6~'09	상업어선 1척	트 롤	베트남 EEZ	조기류	3.2
'09.8~'11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체르네	7
'10.8~'12	상업어선 1척	트 롤	SAEFO	전갱이류	4
'10.3~'11.2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이빨고기	5.2
'10.3~'06	상업어선 1척	트 롤	기니아 EEZ	돔류	4.8
'11.10~'11	상업어선 15척	봉수망	북태평양 공해	공치	8
'11.10~'11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7해구	금빛눈돔	1.1
'11.06~'08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41 · 47해구	오징어	4
'12.09~'11	상업어선 2척	채낚기	FAO 41	오징어	8
'13.10~'12	상업어선 12척	봉수망	북태평양 공해	공치	13

\*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25개 수역에, 66척을 투입(218억원 투자)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8개 수역에서 상업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1년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으로 매년 쾡치, 전갱이 등 22,000톤을 어획하고 있으며, 매년 260억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또한 공해상에서의 꾸준한 조업실적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 연안국과의 입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어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계속하고 신어장 개발을 위한 해외어장 자원조사 위주에서 해역수산물관리기구(RFMO) 어장 및 쿼터할당 유지를 위한 과학조사·시험연구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 원양산업과 사무관 박천일

### ❖ 추진 배경 및 개요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업체의 경영 안정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4년부터 원양어업의 출어경비 일부를 영여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연근해어업과 달리 원양어업에서만 특별히 소요되는 입어로, 항만 제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인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2004년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3년에는 2,580억원의 원양어업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원양업체의 경영개선은 물론 해외어장에서의 지속적인 조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 평가 및 향후 계획

원양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원양업체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2014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경영자금 2,5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 원양산업과 사무관 안명호

### ❖ 추진 배경 및 개요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참치 원양어선 182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은 164척으로 노후선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다. 선박 노후화는 경영비 상승은 물론, 냉동능력 저하에 따른 어획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제품가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양 참치어업으로 주로 횡감용 및 가공용 참치를 연간 약 30만여톤을 생산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매년 3억달러 정도 일본시장에 수출되는 참치류가 전체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 ❖ 추진 내용 및 성과

원양어업 중 경쟁력이 있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치어업을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수산발전기금에서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4년도와 2006년, 2009년도에 선망어선 1척씩 총 3척을 건조하였고, 2010~2012년도에는 선망어선 3척을 건조하였다. 또한 2013년까지 총 7척의 참치 연승어선의 중고선 도입자금도 융자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선망어선 4척 건조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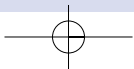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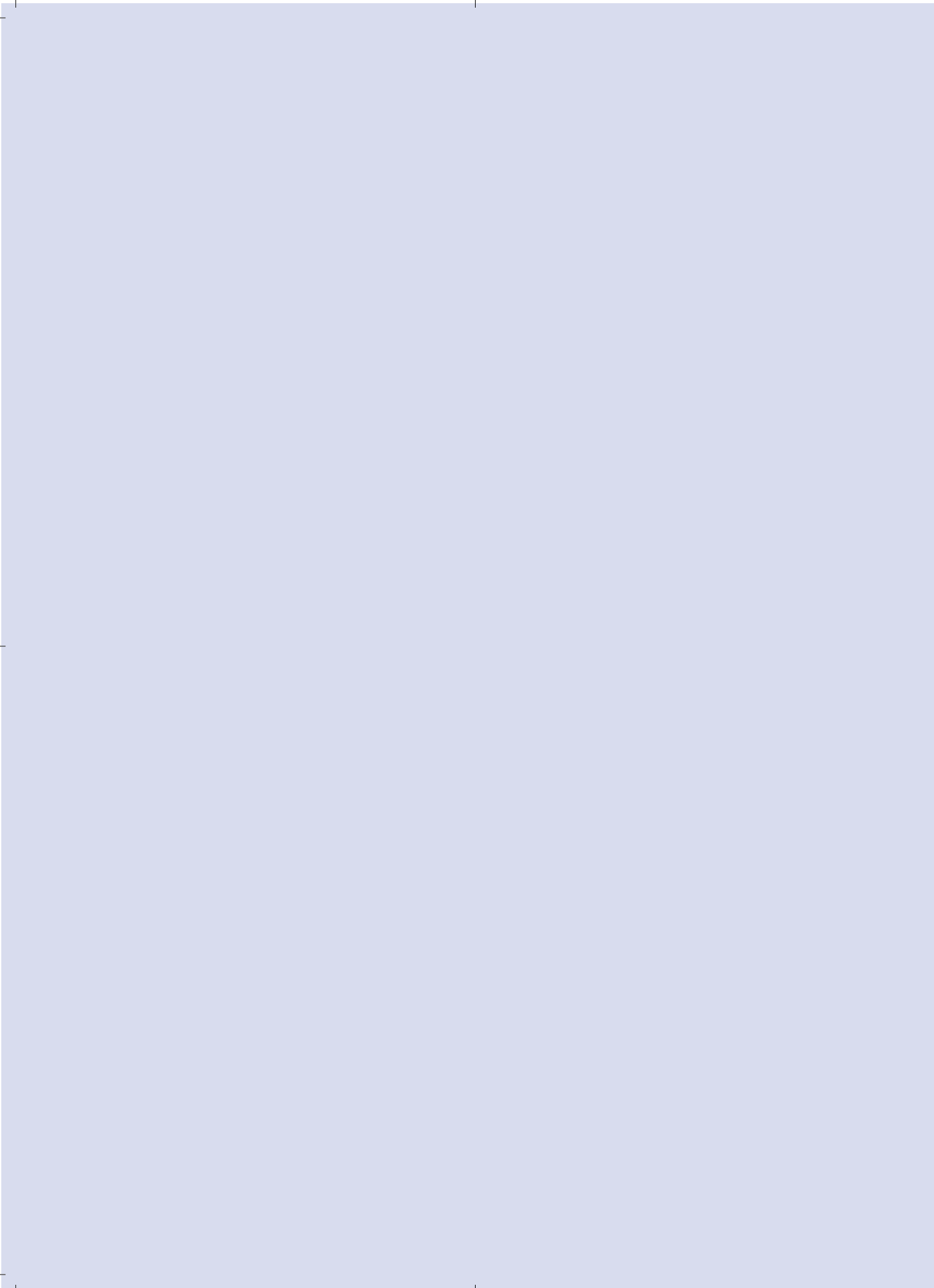
### ❖ 평가 및 향후 계획

동 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이전에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참치선망어선 3척 및 연승어선 등 5척에 대하여 각각 신조, 중고선 대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13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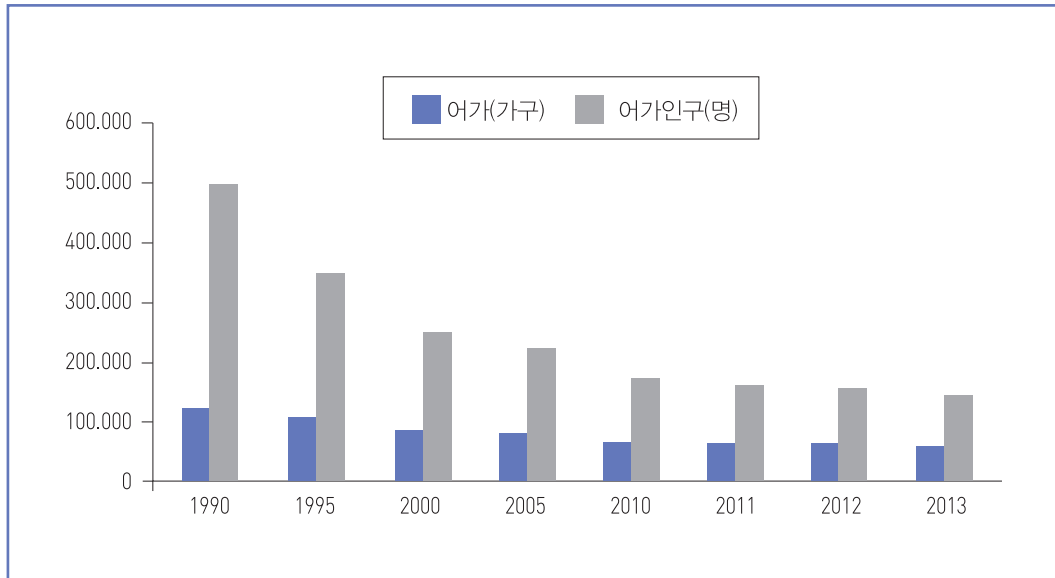
# 제5편

##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 1. 어가 및 어가인구

### ▽ 어가수 및 증감률 추이



### ▽ 총조사 연도별 어가 및 어가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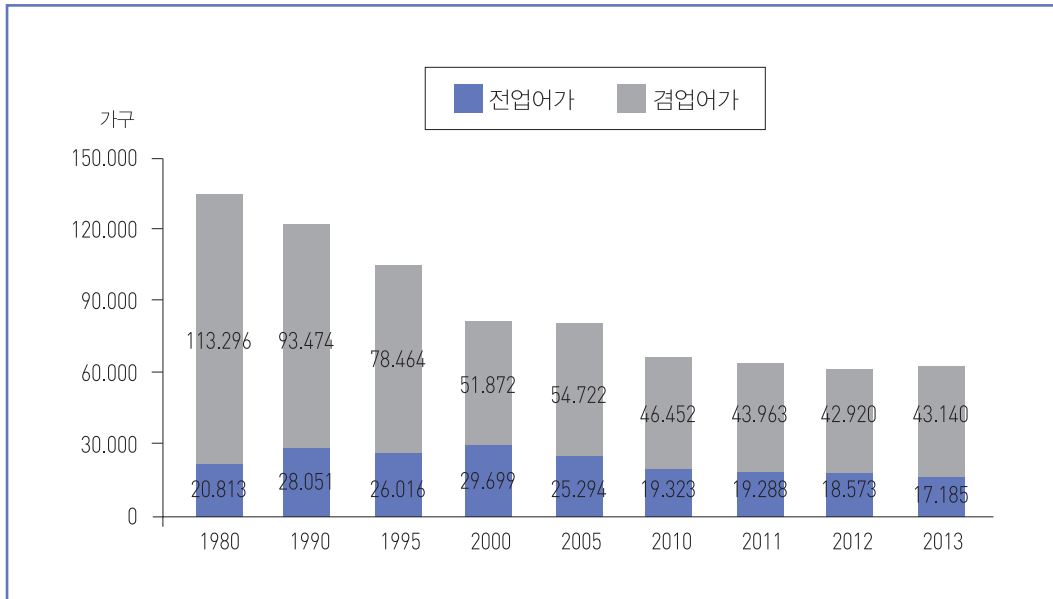
(단위: 가구, 명, %)

연도	어 가	증감률	어가인구	증감률
'90	121,525	△9.4	496,089	△31.6
'95	104,480	△14.0	347,210	△30.0
'00	81,571	△21.9	251,349	△27.6
'05	79,942	△2.0	221,132	△12.0
'10	65,775	△17.7	171,191	△22.6
'11	63,251	△3.8	159,299	△6.9
'12	61,493	△2.8	153,106	△3.9
'13	60,325	△1.9	147,330	△3.8

\* 전수조사연도 : 끝자리가 0, 5로 시작되는 연도임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2. 연도별 어가 현황(전·겸업별)

###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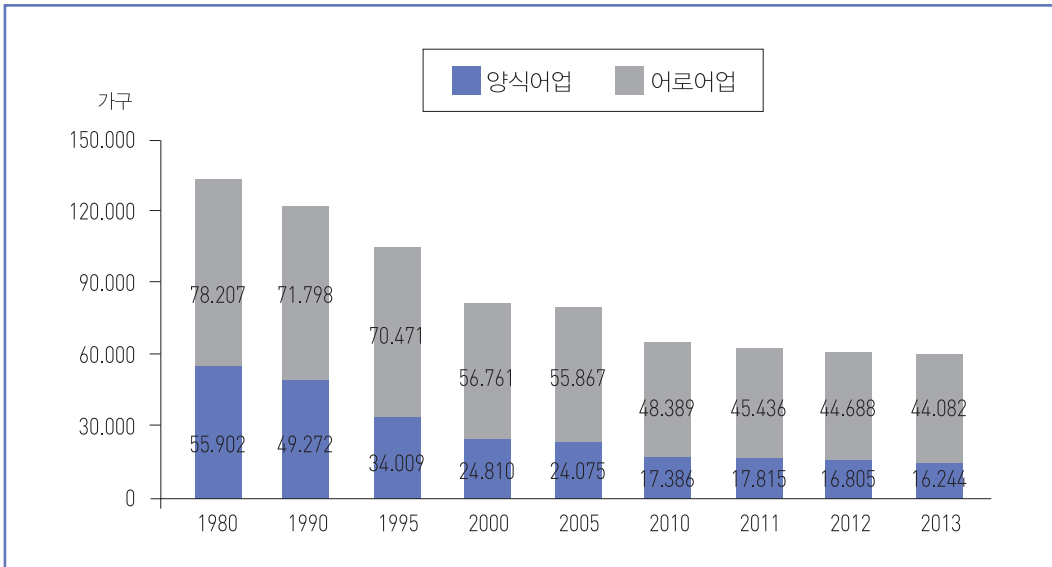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연도	총어가	구성비	전업어가	구성비	겸업어가	구성비
'80	134,109	100.0	20,813	15.5	113,296	84.5
'90	121,525	100.0	28,051	23.1	93,474	76.9
'95	104,480	100.0	26,016	24.9	78,464	75.1
'00	81,571	100.0	29,699	36.4	51,872	63.6
'05	79,942	100.0	25,294	31.6	54,722	68.4
'10	65,775	100.0	19,323	29.4	46,452	70.6
'11	63,251	100.0	19,288	30.5	43,963	69.5
'12	61,493	100.0	18,573	30.2	42,920	69.8
'13	60,325	100.0	17,185	28.5	43,140	71.5

### 3. 어업형태별 어가 현황

####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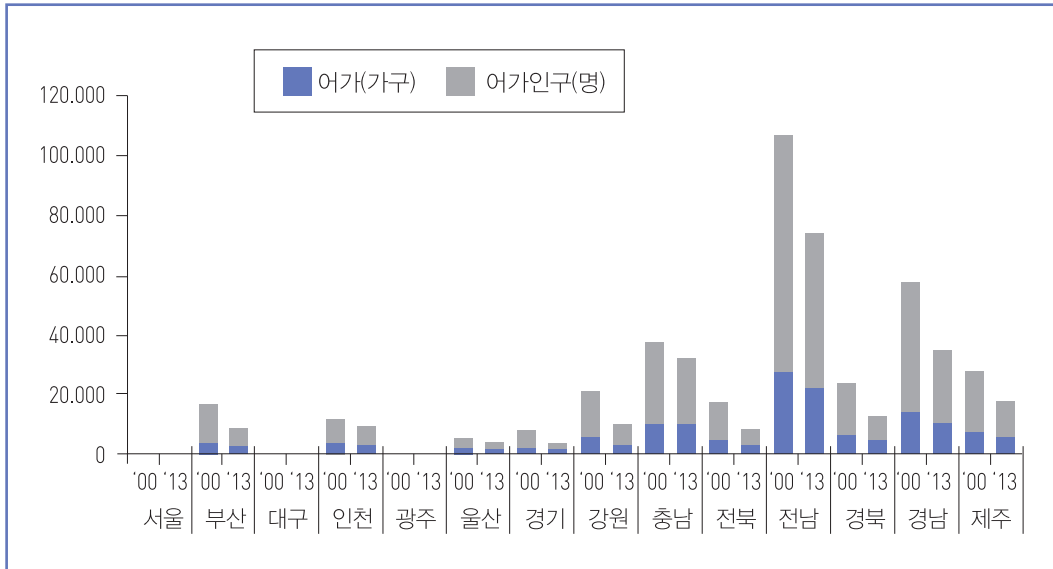


(단위: 가구, %)

연도	총어가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소계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80	134,109 (100.0)	55,902 (41.7)	78,207 (58.3)	31,844 (23.7)	46,363* (34.6)
'90	121,525 (100.0)	49,272 (40.9)	71,798 (59.1)	39,170 (32.3)	32,628* (26.8)
'95	104,480 (100.0)	34,009 (32.6)	70,471 (67.4)	37,109 (35.5)	33,362* (31.9)
'00	81,571 (100.0)	24,810 (30.4)	56,761 (69.6)	38,968 (47.8)	17,793 (21.8)
'05	79,942 (100.0)	24,075 (30.1)	55,867 (69.9)	36,733 (46.0)	19,134 (23.9)
'10	65,775 (100.0)	17,386 (26.4)	48,389 (73.6)	29,062 (44.2)	19,327 (29.4)
'11	63,251 (100.0)	17,815 (28.2)	45,436 (71.8)	27,533 (43.5)	17,903 (28.3)
'12	61,493 (100.0)	16,805 (27.3)	44,688 (72.7)	26,642 (43.3)	18,046 (29.3)
'13	60,325 (100.0)	16,244 (26.9)	44,082 (73.1)	26,213 (43.5)	17,868 (29.6)

\* 남의 어선 승선가가 '95년까지는 어선 비사용 가구에 포함되었으나, '00년부터는 어선 사용가구에 포함되었음  
출처: 통계청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4. 어가 및 어가인구 증감 현황



(단위: 가구, 명, %)

	어 가			어 가 인 구		
	'00	'13	증감률	'00	'13	증감률
전국	81,571	60,325	△26	251,349	147,330	△41
서울	1			4	-	
부산	3,591	2,061	△43	12,968	5,751	△56
대구	1	-		6	-	
인천	3,035	2,423	△20	8,624	6,196	△28
광주	-	-		-	-	
울산	1,165	947	△19	3,932	2,592	△34
경기	1,807	853	△53	5,790	2,433	△58
강원	4,814	2,666	△45	15,989	6,778	△58
충남	9,444	9,385	△1	27,575	21,375	△22
전북	4,275	2,386	△44	13,170	5,673	△57
전남	26,936	21,747	△19	80,247	52,933	△34
경북	5,778	3,760	△35	17,642	8,534	△52
경남	14,009	9,346	△33	44,121	23,568	△47
제주	6,715	4,752	△29	21,281	11,497	△46

출처: 통계청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5. 지역별 어가 및 어가인구

(단위 : 가구, 명)

	어 가	어 가 인 구		
		합계	남자	여자
전국	60,325	147,330	72,423	74,907
서울	-			
부산	2,061	5,751	2,804	2,947
대구	-			
인천	2,423	6,196	3,161	3,035
광주	-			
울산	947	2,592	1,228	1,365
경기	853	2,433	1,251	1,182
강원	2,666	6,778	3,409	3,369
충청	9,385	21,375	10,413	10,962
전북	2,386	5,673	2,887	2,786
전남	21,747	52,933	26,027	26,907
경북	3,760	8,534	4,114	4,420
경남	9,346	23,568	11,793	11,775
제주	4,752	11,497	5,337	6,160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6. 연도별·지역별 어업인구

(단위 : 명)

연도	합계	시·도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5	751,353	5,996	-	-	39,144	89,714	60,267	19,656	310,259	65,612	111,656	49,049
'80	725,314	11,459	11,326	-	29,781	61,974	73,754	20,596	304,575	56,942	112,529	42,378
'85	602,237	10,839	9,119	-	31,649	52,659	55,567	21,770	253,344	34,849	96,094	36,347
'90	496,089	21,527	10,099	-	21,889	28,918	54,158	23,478	186,198	29,363	87,031	33,428
'95	347,210	19,694	13,868	-	7,841	21,302	39,519	16,855	116,904	22,326	62,467	26,434
'96	330,464	18,803	12,546	-	7,508	20,197	38,736	15,153	109,953	20,630	60,966	25,972
'97	323,383	18,524	12,539	5,511	6,938	19,804	37,647	14,759	105,420	20,969	54,519	26,752
'98	322,229	19,361	13,132	5,374	7,619	19,460	37,918	14,955	102,962	20,906	55,857	24,685
'99	315,198	18,854	13,227	5,494	7,688	19,872	37,373	14,667	100,432	20,175	53,252	24,163
'00	251,349	12,968	8,624	3,932	5,790	15,989	27,575	13,170	80,247	17,642	44,121	21,281
'05	221,132	10,800	8,803	3,462	3,868	12,605	27,309	10,182	68,603	14,998	41,811	18,617
'10	171,191	7,408	6,983	2,932	2,475	8,320	27,302	6,771	54,981	10,422	28,916	14,573
'11	159,299	6,862	7,052	2,780	2,514	7,601	24,150	5,853	52,969	9,637	26,467	13,414
'12	153,106	6,262	6,694	2,614	2,447	7,185	22,270	5,882	52,924	8,979	25,128	12,721
'13	147,330	5,751	6,196	2,592	2,433	6,778	21,375	5,673	52,933	8,534	23,568	11,497

\* '05, '10 합계수치에 서울, 대구, 광주지역 어업인구가 일부 포함됨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7. 성별 어업인구 및 어업종사 가구원

(단위: 명)

연 도	성별 어업인구			어업종사자 가구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80	725,314	371,287	354,027	294,928	168,303	126,625
'85	602,237	301,701	300,536	236,237	135,826	100,811
'90	496,089	248,839	247,250	211,753	118,648	93,105
'95	347,210	171,793	175,417	176,123	94,136	81,987
'96	330,464	160,901	169,563	171,822	87,309	84,513
'97	323,383	158,016	165,367	173,743	89,603	84,140
'98	322,229	158,091	164,138	172,701	89,112	83,589
'99	315,198	155,636	159,562	170,590	89,026	81,564
'00	251,349	126,775	124,574	139,837	76,188	63,649
'05	221,132	110,658	110,474	130,589	70,307	60,282
'10	171,191	85,590	85,601	107,163	57,224	49,939
'11	159,299	78,470	80,829	103,903	54,856	49,047
'12	153,106	75,318	77,789	100,173	52,482	47,691
'13	147,330	72,423	74,907	97,972	50,936	47,036

출처: 통계청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8. 어업가구

### 연도별·지역별 어업가구

(단위: 가구)

연도	계	시·도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90	121,525	4,901	2,530	-	6,286	12,934	5,623	45,566	7,451	20,843	7,208	8,183
'95	104,480	5,097	4,678	-	2,398	12,357	5,056	36,647	6,723	17,728	5,997	7,799
'96	101,677	4,982	4,249	-	2,307	12,251	4,654	35,546	6,458	17,713	5,790	7,727
'97	99,912	5,012	4,207	1,595	2,224	12,188	4,686	34,208	6,551	16,323	5,512	7,406
'98	98,972	5,119	4,262	1,527	2,410	12,148	4,686	33,411	6,561	16,533	5,546	6,769
'99	97,754	5,082	4,309	1,518	2,438	11,972	4,665	32,731	6,375	16,197	5,723	6,744
'00	81,571	3,591	3,035	1,165	1,807	9,450	4,275	26,932	5,778	14,009	4,814	6,715
'05	79,942	3,216	3,320	1,137	1,295	10,505	3,695	25,489	5,517	14,827	4,221	6,698
'10	65,775	2,469	2,678	1,021	844	11,021	2,633	21,809	4,069	10,768	3,039	5,393
'12	61,493	2,197	2,575	822	861	9,538	2,406	21,578	3,887	9,753	2,731	5,046
'13	60,325	2,061	2,423	947	853	9,385	2,386	21,747	3,760	9,346	2,666	4,752

\* '05, '11년 합계수치는 서울, 대구, 광주의 일부 가구가 포함된 수

\* 전수조사 시기: '0, '5로 시작되는 연도

\* 표본조사 시기: 전수조사 연도 외

### 연도별·어업경영 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가구)

연도	합계	어로어업			양식어업
		계	어선	비어선	
'90	121,525	71,798	39,170	32,628	49,727
'95	104,480	70,471	37,109	33,365	34,009
'96	101,677	67,647	37,328	30,319	34,030
'97	99,912	65,997	35,999	29,998	33,915
'98	98,972	65,378	38,019	27,359	33,594
'99	97,754	65,394	38,216	27,178	32,360
'00	81,571	56,761	38,968	17,793	24,810
'05	79,942	55,867	36,733	19,134	24,075
'10	65,775	48,389	29,062	19,327	17,386
'12	61,493	44,688	26,642	18,046	16,805
'13	60,325	44,082	26,213	17,868	16,244

출처: 통계청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9. 어가소득

(단위 : 천원)

연 도	어가소득			
	전 체	어업소득	어업 외 소득	이전소득
'04	26,159	11,959	9,168	5,032
'05	28,028	11,950	9,399	6,679
'06	30,006	11,603	10,361	8,043
'07	30,668	11,975	10,981	7,712
'08	31,176	13,801	10,120	7,254
'09	33,945	16,220	11,136	6,589
'10	35,696	16,607	11,931	7,159
'11	38,623	20,432	11,378	6,813
'12	37,381	19,539	11,360	6,482
'13	38,586	18,538	13,037	7,011

\* 농업소득, 기타겸업소득, 사업외소득은 2003년부터 "어업외소득"으로 발표(통계청)

- 2013년도 어가의 가구당 소득은 연간 38,586천원으로 전년(37,381천원)에 비해 3% (1,025천원) 증가
- 어가소득중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어업의존도)은 48.0%임
- 어업소득은 전년에 비해 감소(△5.1%)하였고, 어업외소득은 14.8% 증가, 이전소득(비경상소득 포함)은 8.2% 증가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10. 어가가계비

(단위: 천원)

연도	어가가계비								가계비 충족도 (%)	평균 소비성향 (%)
	계	음식물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비	교육비	의료비	가계잡비		
'99	13,639	2,794	637	707	547	1,923	1,074	5,957	75.7	74.7
'00	15,058	3,035	872	787	524	1,841	1,116	6,883	66.9	80.5
'01	16,601	3,190	1,048	810	534	1,832	1,440	7,747	66.8	75.3
'02	17,299	3,245	1,028	844	555	1,823	1,349	8,455	58.8	80.0
'03	16,249	4,129	1,088	1,166	637	778	1,091	7,360	53.7	80.7
'04	16,602	4,452	1,078	1,184	655	683	1,199	7,351	56.7	76.6
'05	17,682	4,699	1,215	1,236	642	620	1,409	7,861	52.2	77.5
'06	18,156	4,746	1,256	1,247	695	638	1,358	8,216	48.6	74.8
'07	18,264	4,757	1,208	1,242	679	650	1,538	8,190	52.1	70.3
'08	20,051	5,160	1,633	1,319	708	561	1,644	9,026	54.3	77.7

※ 비소비지출액은 가계부분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이 포함

※ 가계비충족도(%) = 어업소득/가계비\*100,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연도	어가가계비									가계비 충족도 (%)	평균 소비성향 (%)
	계	식품 및 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료 및 신발	주거 및 수도 광열	보건	교통 및 통신	교육	가계 잡비		
'09	18,780	4,038	461	700	1,787	1,750	2,563	486	6,995	64.4	68.2
'10	19,976	4,151	425	747	1,970	1,960	2,732	530	7,461	62.2	68.9
'11	21,141	4,320	440	785	2,027	2,102	2,709	626	8,132	74.2	65.6
'12	20,399	3,754	412	790	2,009	2,012	2,775	495	8,152	73.4	65.5
'13	21,569	4,353	404	814	2,124	2,265	2,877	486	8,246	66.1	67.1

※ '09년 조사부터 국제기준 및 가계동향조사의 분류체계인 COICOP분류체계를 따름

- 2013년도 어가의 가계지출은 연간 28,032천원(소비지출 21,569천원 비소비지출 6,463천원)으로 전년도 26,625천원(소비지출 20,399천원, 비소비지출에 6,226천원)에 비해 5.3% 증가하였음.(소비지출은 5.7%, 비소비지출은 3.8% 각각 증가)

출처 : 어가경제조사(통계청)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11. 어가자산

(단위 : 천원)

연 도	어가자산			
	계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
'00	121,074	76,484	5,201	39,389
'01	132,226	96,457	6,897	28,872
'02	139,057	99,256	7,069	32,732
'03 <sup>1)</sup>	140,477	100,400	40,077	-
'04	160,698	111,870	48,828	-
'05	183,841	127,397	56,444	-
'06	209,644	147,274	62,369	-
'07	225,992	153,483	72,509	-
'08	221,066	161,721	59,345	-
'09	257,095	186,102	70,993	-
'10	258,872	178,364	80,508	-
'11	287,650	195,232	92,418	-
'12	297,669	198,667	99,002	-
'13	298,462	216,665	81,797	-

1) 기존 유통자산과 유동자산을 '03년부터 유동자산으로 통합

- 2013년도 어가자산은 298,462천원으로 전년(297,669천원)에 비해 2.7%(793천원) 증가하였으며, 어가자산 중에서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2.6%로서 전년(66.7%)에 비해 5.9% 증가

출처 : 어가경제조사(통계청) / 해양수산물 소득복지과

## 12. 어가부채

### ▽ 차입처별

(단위: 천원)

연도	부채액	차입처별						
		금융기관				사채		
		계	수협	농(축)협	기타	계	농어가	기타
'80	564	-	-	-	-	-	-	-
'90	5,926	4,515	2,059	2,147	309	1,411	801	609
'94	9,293	7,892	3,426	4,010	456	1,401	713	688
'95	11,035	9,110	4,275	4,353	481	1,925	875	1,049
'96	12,342	10,378	5,097	4,744	536	1,964	786	1,178
'97	11,906	10,282	4,872	4,773	637	1,624	809	815
'98	11,319	9,588	4,636	4,513	438	1,731	703	1,028
'99	11,555	9,451	4,269	4,751	431	2,104	695	1,410
'00	13,635	11,094	5,112	5,477	504	2,541	744	1,798
'01	15,466	12,755	5,862	6,039	854	2,711	817	1,894
'05	34,531	28,516	-	-	-	6,015	-	-

※ 03년도부터 금융기관 부채와 사채로 발표(통계청)

연도	부채액	금융기관 부채	사채
'08	33,587	28,828	4,759
'09	35,864	29,517	6,347
'10	35,640	27,974	7,666
'11	37,862	30,051	7,810
'12	39,518	32,559	6,959
'13	40,422	35,080	5,342

- 2013년도 어가부채는 40,422천원으로 전년(39,518천원)에 비해 2.3%(904천원) 증가하였으며 금융기관 부채가 86.7%(35,080천원), 사채가 13.2%(5,342천원)으로 나타남
- 어가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차입처별로 비율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액과 사채의 비율은 각각 1990년도 76%, 24%, 1995년도 83%, 17%, 2005년도에 83%, 17%, 2010년도에 79%, 21%로 나타나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용도별 어가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계	생 산 성 부 채			가계성부채	채무상환용
		계	어 업	겸업		
'80	564	363	311	52	178	23
'90	5,926	4,738	3,281	1,457	871	317
'94	9,293	7,553	4,842	2,712	1,382	357
'95	11,035	8,928	5,924	3,004	1,726	381
'96	12,342	9,848	5,826	4,022	1,845	649
'97	11,906	9,513	5,512	4,000	1,763	631
'98	11,319	9,056	4,733	4,324	1,793	469
'99	11,555	8,294	4,165	4,129	2,097	1,164
'00	13,635	9,709	4,950	4,759	2,552	1,374
'01	15,466	10,923	5,859	5,064	3,179	1,364

\* '03년부터 어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부채로 발표(통계청 자료)

연 도	계	어업용 부채	어업용 이외부채
'05	34,531	23,051	11,480
'06	34,422	22,521	11,902
'07	34,407	22,133	12,274
'08	33,587	22,962	10,625
'09	35,864	23,636	12,228
'10	35,640	23,303	12,337
'11	37,682	24,013	13,669
'12	39,518	26,569	12,949
'13	40,422	27,105	13,337

\* 어업용 부채는 어업용 + 겸업용,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 + 기타용 부채임

- 어가부채 중 용도별 비중은 1990년도에는 생산성부채 80%, 가계성부채 15%, 채무상환용 부채가 5%이며, 1995년도에는 생산성부채 81%, 가계성부채 16%, 채무상환용부채가 3%였으나, 2006년도에는 생산성부채가 65%로 생산성부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특히, 채무상환용 부채의 비율이 1999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1999년도부터 본격 시작된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른 부채대책자금의 지원에 기인함

출처 : 어가경제통계(통계청)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13. 지구별·조합별 어촌계 및 어촌계원 현황

(단위: 개, 명)

조합명	어촌계	계원	조합명	어촌계	계원	조합명	어촌계	계원
조합계(70)	1,992	139,471						
경인계(5)	108	9,778	부 안	19	2,927	경남계(14)	453	25,503
경인북부	21	1,160	고창군	13	722	거 제	69	4,169
웅 진	35	3,236	전남계(14)	837	54,211	고성군	26	1,500
인 천	18	2,013	강진군	29	2,137	마 산	21	1,313
경기남부	28	2,438	목 포	47	2,851	삼천포	21	1,602
영 흥	6	931	신안군	71	4,489	울 산	33	2,371
강원계(9)	77	5,132	영광군	13	1,868	의 창	13	1,868
고성군	10	1,321	완도금일	125	6,900	진 해	14	1,198
동해시	6	649	완도소안	61	2,768	통 영	80	3,795
삼척시	14	571	진도군	49	3,084	하동군	25	1,821
원 덕	8	351	해남군	70	3,116	남해군	102	3,774
속초시	5	502	거문도	11	652	육 지	18	466
양양군	13	358	고흥군	162	11,752	사 천	9	631
강릉시	13	854	나로도	21	1,236	사 량	14	533
죽 양	5	290	전남동부	30	1,879	창원서부	8	462
대 포	3	236	여 수	106	8,511	부산계(2)	41	3,303
충청계(8)	160	14,908	장흥군	42	2,968	부산시	23	1,996
당진군	8	2,174	경북계(8)	152	7,745	부산동부	18	1,307
보 령	28	3,927	경주시	17	829	제주계(6)	100	11,939
서 산	48	3,965	강 구	17	879	서귀포	19	1,903
서천군	8	929	구룡포	32	1,852	모슬포	12	1,542
서천서부	10	545	울릉군	11	556	성산포	13	1,970
태안남부	12	840	죽 변	17	729	제주시	33	4,404
안면도	43	2,272	영덕북부	13	766	추자도	5	341
대천서부	3	256	포 항	30	1,020	한 림	18	1,779
전북계(4)	64	6,952	후 포	15	1,114			
군산시	20	2,392						
김 제	12	911						

- 2013년말 현재 어촌계수는 전국 70개 지구별 조합에 1,992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어촌계원은 139,471명이다. 입지유형별로는 연안촌락이 1,313개소로 6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도벽지 및 접적지역이 395개소로 19.8%, 도시근교가 284개소로 14.3%를 차지하고 있음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14. 영어자금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70	'75	'80	'85	'90	'95	'00	'05	'09	'10	'11	'12	'13		
합계	소요액	-	895	2,955	5,789	9,110	18,805	29,749	38,920	44,223	46,837	48,689	62,352	63,560	
	공급액	31	200	1,200	2,870	6,000	7,500	12,050	14,050	19,050	19,050	19,050	19,050	19,700	
	공급율(%)	-	22	41	50	66	40	41	36	43	41	39	31	31	
	재원	재정자금	26	25	90	301	765	2,393	5,814	5,636	5,636	5,525	5,285	4,982	4,678
		한은차입	5	37	465	1,070	2,617	1,723	-	-	-	-	-	-	-
		수협자금	-	138	460	1,499	2,618	3,084	4,796	3,933	8,433	9,544	10,284	11,087	12,541
		상호금융	-	-	185	-	-	300	1,440	4,481	4,981	3,981	3,481	2,981	2,481
	연근해	소요액	-	436	1,951	4,328	7,287	14,098	24,931	33,854	39,210	40,973	42,655	56,003	59,808
공급액		31	127	950	2,400	5,190	6,500	10,900	13,400	17,850	17,850	17,850	17,850	18,650	
공급율(%)		-	29	49	56	71	46	44	40	46	44	42	32	31	
재원		재정자금	26	22	90	301	765	2,393	5,814	5,636	5,636	5,525	5,285	4,982	4,678
		한은차입	5	23	345	855	2,212	1,365	-	-	-	-	-	-	-
		수협자금	-	82	330	1,244	2,213	2,442	3,646	2,783	7,233	8,344	9,084	9,887	11,491
		상호금융	-	-	185	-	-	300	1,440	4,481	4,981	4,981	3,481	2,981	2,481
원양		소요액	-	459	1,004	1,461	1,823	4,707	4,818	5,066	5,013	5,864	6,034	6,349	6,752
	공급액	-	73	250	470	810	1,000	1,150	650	1,200	1,200	1,200	1,200	1,050	
	공급율(%)	-	16	25	32	44	21	24	13	24	21	20	19	16	
	재원	재정자금	-	3	-	-	-	-	-	-	-	-	-	-	-
		한은차입	-	14	120	215	405	358	-	-	-	-	-	-	-
		수협자금	-	56	130	255	405	642	1,150	650	1,200	1,200	1,200	1,200	1,050
		상호금융	-	-	-	-	-	-	-	-	-	-	-	-	-

- 영어자금 소요액 대비 공급률은 199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공급액 증가율이 소요액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공급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연근해 부분 800억 원 증액 공급하였음
- 공급재원은 2000년 이후 재정자금, 상호금융은 감소하고 수협자금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15. 연도별 수산정책자금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	'03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23,041	24,169	26,645	26,302	24,940	24,467	27,577	26,298	25,288	25,081	26,422
영어자금	12,050	14,050	14,050	15,050	15,050	15,050	19,050	19,050	19,050	19,050	19,700
원양어업 경영자금	3,310	2,590	1,480	1,480	1,480	1,480	1,480	1,480	1,480	1,480	1,480
어가부채경감 대책자금	7,109	6,654	9,687	8,352	6,970	5,760	4,577	3,353	2,407	1,847	1,467
피해복구 지원자금	572	875	1,428	1,420	1,440	1,406	1,269	1,098	1,026	944	1,169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자금	-	-	-	-	-	771	1,125	1,117	869	868	876
후계어업인 육성자금	-	-	-	-	-	-	76	191	425	672	979
귀어귀촌정책 지원자금	-	-	-	-	-	-	-	9	31	69	170
양식시설 현대화자금	-	-	-	-	-	-	-	-	-	151	581

\* 영어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당해연도 운용규모를 기준으로, 외는 당해연도말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작성

- 1995년 이후 수산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영어자금은 2013년에 1조 9천700억 원으로 2001년 대비 7,65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FTA 대책 및 귀어·후계어업인 육성 등의 일환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은 2000년 이후 어가부채 경감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상환으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16. 연도별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기금총운용규모	해양환경분야	수산어촌분야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01	26,190	-	5,030	-	21,160
'02	83,732	-	58,653	91	24,988
'03	156,086	742	56,128	1,337	97,879
'04	241,559	1,460	93,773	2,863	143,463
'05	627,225	6,948	504,472	807	114,998
'06	627,964	9,688	533,161	1,233	83,882
'07	604,856	15,039	504,933	1,236	83,648
'08	590,994	17,481	509,540	1,306	62,667
'09	599,576	52,703	498,811	1,299	46,763
'10	575,580	15,780	483,685	1,243	74,872
'11	642,611	15,900	548,101	1,546	77,064
'12	678,968	15,692	560,151	1,458	101,667
'13	745,554	17,789	590,638	1,481	135,646

- 수산발전기금은 2001년 설치 당시 운용규모가 262억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중 수산부문사업(3,694억원)이 이관, 2006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금 편입 등에 따라 2013년도 현재 운용규모는 7,456억원 수준
- 2013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해양환경분야가 2.4%, 수산어업분야가 79.2%, 기금 운영비가 0.2%, 여유자금운용이 18.2%임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17. 어업용면세유 공급 실적

(단위 : 천t, 억원)

구 분	2005			2009			2010		
	공급량	공급액	감면액	공급량	공급액	감면액	공급량	공급액	감면액
합 계	6,391	5,862	6,564	1,122	6,723	7,522	1,104	7,743	7,004
경 유	5,204	4,724	5,317	908	5,346	6,310	904	6,274	5,877
중 유	474	385	55	76	416	58	69	456	60
휘발유	682	640	1,180	129	798	1,134	122	850	1,048
윤활유	32	114	11	7	152	15	8	156	16
LPG	-	-	-	2	11	5	1	7	3

구 분	2011			2012			2013		
	공급량	공급액	감면액	공급량	공급액	감면액	공급량	공급액	감면액
합 계	993	9,114	6,030	968	9,578	6,555	1,028	9,416	6,907
경 유	821	7,465	5,125	810	7,848	5,491	868	7,868	5,835
중 유	51	434	49	41	387	47	40	356	45
휘발유	113	1,052	839	108	1,178	999	111	1,021	1,010
윤활유	7	154	15	7	156	16	7	159	16
LPG	1	9	2	1	9	2	1	12	1

-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점유율은 경유가 대부분(83%이상)이며, 휘발유, 중유, 윤활유 순으로 나타남. 경유는 주로 대형선박 및 생산기초시설 등에서 사용되고, 휘발유는 선외내역기관 선박(대부분 2톤 이하)에서, 중유는 대형선박 및 육상양식시설 등에서 사용
- 어업용면세유는 1972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01년부터 시행된 에너지가격 합리화 정책에 의거 경유, 휘발유의 세금부과액(교통세, 주행세, 특소세 등)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액의 규모도 증가추세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18. 어업인후계자 육성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22,588	675,494	18,652	445,603	3,660	203,476	276	26,415
'81	150	1,091	150	1,091	-	-	-	-
'82	152	1,293	152	1,293	-	-	-	-
'83	193	1,380	193	1,380	-	-	-	-
'84	520	3,683	520	3,683	-	-	-	-
'85	979	6,891	979	6,891	-	-	-	-
'86	937	6,595	937	6,595	-	-	-	-
'87	816	6,884	816	6,884	-	-	-	-
'88	400	3,530	400	3,530	-	-	-	-
'89	150	1,493	150	1,493	-	-	-	-
'90	150	1,500	150	1,500	-	-	-	-
'91	150	1,950	150	1,950	-	-	-	-
'92	1,100	20,000	1,000	15,000	100	5,000	-	-
'93	1,094	19,910	994	14,910	100	5,000	-	-
'94	742	17,000	642	12,000	100	5,000	-	-
'95	994	27,375	746	15,000	243	12,150	5	225
'96	1,036	31,675	783	18,725	243	12,150	10	800
'97	1,117	38,728	848	22,928	254	14,600	15	1,200
'98	1,193	40,642	927	25,440	260	14,602	6	600
'99	784	25,890	608	15,900	173	9,690	3	300
'00	794	24,600	625	15,900	166	8,400	3	300
'01	696	21,870	547	14,310	149	7,560	-	-
'02	732	21,870	581	14,310	151	7,560	-	-
'03	673	20,500	534	13,500	139	7,000	-	-
'04	477	14,350	379	9,450	98	4,900	-	-
'05	526	18,350	399	11,950	127	6,400	-	-
'06	437	15,350	328	9,450	98	4,900	11	1,000
'07	410	15,700	310	10,471	91	4,419	9	810
'08	424	15,699	350	11,749	69	3,450	5	500
'09	442	20,000	234	7,600	168	8,400	40	4,000
'10	504	23,942	340	12,802	123	7,110	41	4,030
'11	985	50,470	726	31,770	216	14,450	43	4,250
'12	864	42,679	620	25,344	217	14,635	27	2,700
'13	980	50,019	753	33,399	201	14,020	26	2,600
'14	987	62,585	781	47,405	174	12,080	32	3,100

## 19. 연도별 어업생산량 (어업별 총괄)

(단위 : 천M/T, 억원)

연 도	합 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90	3,198	24,182	1,472	14,162	773	4,199	919	4,913	34	908
'95	3,348	37,963	1,425	24,794	996	6,481	897	5,260	29	1,429
'96	3,248	39,963	1,624	27,351	875	6,433	719	4,926	30	1,253
'97	3,244	40,906	1,367	24,834	1,015	9,218	829	5,469	32	1,385
'98	2,835	43,884	1,308	22,936	777	9,503	723	10,009	27	1,436
'99	2,911	43,204	1,336	22,800	765	8,319	791	10,944	18	1,142
'00	2,514	40,664	1,189	23,295	653	6,839	651	9,297	21	1,234
'01	2,665	42,529	1,252	24,683	656	7,172	739	9,641	18	1,033
'02	2,476	42,052	1,096	24,870	782	7,945	580	8,094	19	1,143
'03	2,487	47,708	1,097	24,058	826	11,657	545	10,726	20	1,267
'04	2,519	47,313	1,077	26,097	918	12,171	499	7,373	25	1,672
'05	2,714	50,493	1,097	27,060	1,041	13,484	552	8,192	24	1,757
'06	3,032	52,859	1,109	27,513	1,259	14,432	639	8,910	25	2,004
'07	3,275	57,519	1,152	29,391	1,386	15,995	710	9,902	27	2,231
'08	3,361	63,451	1,285	32,223	1,381	15,201	666	13,274	29	2,753
'09	3,182	69,242	1,227	36,404	1,313	18,463	612	11,638	30	2,738
'10	3,111	74,257	1,133	39,117	1,355	18,156	592	13,645	31	3,338
'11	3,256	80,729	1,235	44,441	1,478	17,842	511	14,670	32	3,775
'12	3,183	76,891	1,091	39,510	1,489	17,593	575	16,554	28	3,233
'13	3,135	72,269	1,045	37,476	1,515	17,258	550	14,080	25	3,454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20. 연도별 어업생산량 (품종별 총괄)

(단위: 천M/T)

연도	계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90	3,198	1,822	435	112	346	42	442
'95	3,348	1,695	405	120	421	35	671
'96	3,248	1,699	390	118	451	27	562
'97	3,244	1,550	394	112	483	34	671
'98	2,835	1,578	320	107	312	34	482
'99	2,911	1,402	297	93	591	41	487
'00	2,514	1,280	300	83	428	36	387
'01	2,665	1,467	283	74	413	39	388
'02	2,476	1,202	272	72	394	27	508
'03	2,487	1,144	403	89	379	15	457
'04	2,519	1,157	410	85	306	15	546
'05	2,714	1,265	409	92	295	16	636
'06	3,032	1,261	474	110	392	17	778
'07	3,275	1,330	555	124	432	23	811
'08	3,361	1,448	428	126	402	23	935
'09	3,182	1,425	420	132	312	24	870
'10	3,111	1,331	440	147	256	22	915
'11	3,256	1,356	467	130	269	28	1,007
'12	3,183	1,268	433	135	293	23	1,032
'13	3,135	1,195	346	149	282	23	1,140

출처: 통계청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21. 주요품종별 연도별 생산량(일반해면)

### ▽ 어류

(단위: 천M/T)

	'90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멸치	130	231	231	250	239	201	274	236	250	197	249	265	221	262	204	250	293	222	209
고등어	96	200	160	173	178	146	204	142	122	184	136	101	144	187	118	94	139	125	102
갈치	104	95	67	75	64	81	80	60	63	66	60	64	66	72	85	59	33	33	47
강달이류	53	70	68	54	50	31	25	20	19	19	15	19	14	11	12	5	14	8	7
전쟁이류	17	12	23	22	14	20	18	26	20	26	43	23	19	23	22	19	43	31	15
참조기	28	25	22	15	13	20	8	11	7	18	15	21	34	33	34	32	59	37	35
삼치류	17	17	11	23	20	26	26	26	23	27	34	36	42	41	37	36	29	33	29
붕장어	22	20	19	12	10	8	8	17	17	17	15	15	19	18	14	14	16	16	13
가자미류	13	14	18	20	20	15	15	14	13	12	15	20	24	20	20	20	20	20	18
병어류	10	11	11	13	15	8	7	6	7	9	11	14	9	8	6	9	7	5	5
청어	6	9	13	13	20	13	8	2	4	5	8	12	28	45	38	25	23	28	45
아귀	9	8	5	4	3	5	6	10	10	12	11	12	14	18	15	13	16	12	12
전어	9	8	14	11	10	6	9	5	7	4	6	7	10	7	6	8	6	11	9
공치	5	7	19	5	11	20	5	7	1	3	4	1	5	5	4	3	3	2	3
송어류	3	4	6	5	10	9	10	9	8	8	10	9	11	8	6	7	7	5	3
가오리류	8	4	3	3	4	2	3	2	3	2	2	3	4	2	3	2	2	2	2
도루묵	3	2	2	1	2	2	1	3	2	2	2	3	4	3	4	4	4	5	6
조피볼락	-	2	2	2	2	3	3	3	4	4	3	4	4	4	3	2	3	3	2
넙치류	2	2	2	2	2	2	2	2	2	2	2	2	3	4	5	6	5	4	4
대구	0	0	0	0	1	2	2	2	2	3	4	7	8	5	7	7	9	9	9
방어류	5	4	6	10	9	5	6	5	4	5	3	5	7	13	14	19	10	9	14
기타	571	213	180	196	179	145	132	106	69	47	74	72	72	89	139	102	102	84	106

▶ 패류

(단위 : M/T)

연도	계	굴류	바지락	동죽	소라, 고동류	개량 조개류	키조개	골뱅이	맛류	백합류	기타
'90	106,458	16,079	12,868	27,234	2,673	3,353	15,299	6,382	2,480	935	19,155
'95	92,267	18,262	15,041	9,225	8,834	9,038	3,634	5,224	4,905	2,715	15,389
'96	82,636	18,259	12,392	10,944	7,361	6,053	834	2,975	3,833	2,315	17,670
'97	91,788	17,210	16,854	8,851	6,878	7,179	4,098	1,617	4,081	2,075	22,945
'98	79,562	9,905	14,585	2,411	9,192	2,877	6,456	1,325	2,862	3,472	26,477
'99	74,302	11,690	13,963	4,325	7,283	7,620	6,771	1,672	1,751	1,799	17,428
'00	77,103	15,939	20,982	2,468	7,281	4,149	5,795	818	1,572	1,430	16,669
'01	65,328	10,056	20,004	5,774	6,274	3,409	3,828	730	1,452	1,044	12,757
'02	57,336	7,950	14,758	6,730	7,193	3,464	3,500	1,555	702	1,704	9,780
'03	109,878	20,201	13,148	21,240	14,065	5,694	2,443	2,600	6,311	6,918	17,258
'04	100,180	25,690	12,902	13,433	9,507	3,363	2,471	2,101	5,456	6,860	18,397
'05	81,012	27,320	14,447	5,201	8,498	128	3,453	1,696	2,240	3,135	14,894
'06	80,434	31,016	7,559	7,597	7,496	612	5,409	1,434	854	4,490	13,967
'07	73,714	29,316	8,640	2,601	6,909	606	7,897	1,639	1,457	2,662	11,987
'08	81,308	29,185	20,761	1,444	8,647	146	5,487	1,133	1,344	1,415	11,746
'09	90,192	24,254	22,488	698	8,333	331	7,368	1,288	807	1,396	23,229
'10	80,380	22,686	12,818	1,393	10,260	248	10,224	-	698	1,146	20,907
'11	72,230	24,985	12,230	1,444	9,790	544	7,521	-	372	793	14,551
'12	58,056	18,424	12,405	531	9,726	402	6,557	-	264	572	9,175
'13	50,634	12,751	13,565	1,968	8,891	218	5,060	-	208	132	7,841

▽ 갑각류

(단위 : M/T)

연도	계	붉은대게	젓새우류	꽃게	꽃새우	중하	보리새우	대하	대게	달새우류	기타
'90	104,856	-	22,579	23,004	-	3,358	2,336	912	3	698	51,966
'95	117,161	33,155	16,495	17,651	5,414	2,168	2,399	1,406	79	1,242	37,152
'96	116,795	37,362	18,411	15,754	3,405	2,211	1,783	1,242	133	1,121	35,373
'97	109,405	38,896	15,624	11,430	2,729	1,976	2,102	1,911	815	918	33,004
'98	104,222	33,146	15,993	13,813	3,249	3,651	1,138	1,245	459	458	31,070
'99	90,038	22,366	19,389	11,819	4,620	3,633	480	814	1,134	485	25,298
'00	74,994	16,281	13,985	12,842	5,263	2,621	578	1,211	756	461	20,996
'01	67,070	12,973	11,705	13,016	3,145	2,385	513	582	1,001	415	21,335
'02	57,327	9,166	7,013	18,659	4,132	1,736	217	222	896	391	14,895
'03	66,002	19,262	12,885	9,478	3,988	325	240	148	1,889	393	17,394
'04	57,110	23,113	7,889	2,683	2,575	414	132	848	2,605	595	16,256
'05	62,075	21,926	7,352	3,714	3,364	834	282	989	3,240	742	19,632
'06	73,715	23,890	7,810	6,894	4,272	980	215	1,261	4,062	772	23,559
'07	85,297	25,388	12,553	13,606	3,885	1,010	315	704	4,817	734	22,285
'08	87,631	28,293	14,934	17,596	2,496	1,646	254	259	3,019	554	18,580
'09	100,126	29,993	13,722	31,302	3,452	1,048	297	219	2,372	1,111	16,610
'10	108,199	30,749	18,861	33,193	2,587	652	123	252	2,606	1,093	18,083
'11	101,723	32,520	20,728	26,608	1,944	1,052	74	52	2,567	1,151	15,027
'12	105,232	36,973	20,221	26,861	1,699	1,328	59	352	2,318	1,303	14,118
'13	105,538	38,013	18,930	30,448	1,924	1,154	221	472	1,868	704	11,804

연체동물

(단위 : M/T)

연도	계	살오징어	낙지류	문어류	주꾸미	갑오징어류	꼴뚜기류	기타
'90	109,236	74,172	9,264	5,962	4,422	12,395	2,391	630
'95	227,019	200,897	10,803	7,027	3,870	2,567	1,222	633
'96	277,415	252,618	11,611	6,064	3,709	1,484	1,380	549
'97	252,285	224,959	10,103	8,236	4,613	2,082	1,455	837
'98	198,089	163,016	6,395	12,038	7,999	2,563	4,119	1,959
'99	278,098	249,991	5,966	8,179	5,117	6,652	1,629	564
'00	248,047	226,309	5,861	8,718	4,569	1,267	885	438
'01	248,331	225,616	5,911	9,668	4,294	1,443	898	501
'02	251,411	226,656	5,297	12,408	3,911	1,920	836	383
'03	252,624	233,254	7,248	5,121	5,200	872	758	171
'04	232,588	212,760	7,023	5,953	5,048	905	793	106
'05	211,517	189,126	7,658	7,637	4,390	1,325	1,304	77
'06	219,792	197,084	7,397	7,894	4,032	1,988	1,354	43
'07	205,611	174,479	8,625	12,033	6,828	1,938	1,657	51
'08	216,273	186,160	7,879	11,838	4,052	3,034	2,378	932
'09	223,212	189,160	7,013	15,386	4,285	3,396	2,260	1,712
'10	187,777	159,130	6,954	10,813	2,977	4,105	2,203	1,595
'11	197,415	171,643	6,445	10,421	2,596	2,461	2,495	1,354
'12	207,409	181,408	5,799	10,080	3,415	3,136	2,231	1,340
'13	178,423	154,555	5,061	9,109	2,340	4,025	1,494	1,839

기타수산동물

(단위 : M/T)

연도	계	성게류	해삼	우렁쉥이	미더덕	기타
'90	9,608	4,325	2,491	222	1,961	609
'95	8,706	3,707	1,891	2,067	25	1,016
'96	9,308	2,802	1,979	3,641	13	873
'97	8,752	2,771	2,217	2,780	35	949
'98	4,782	1,410	1,439	891	56	986
'99	4,558	1,182	1,204	1,142	29	1,001
'00	6,205	1,461	1,419	1,440	3	1,882
'01	4,709	1,454	900	1,004	49	1,302
'02	5,253	1,459	833	966	59	1,936
'03	6,340	1,607	1,281	836	994	1,622
'04	5,522	1,301	1,154	1,115	211	1,741
'05	5,278	2,035	1,135	1,485	62	561
'06	6,072	2,596	1,614	1,105	8	749
'07	7,518	2,651	2,936	1,127	1	803
'08	7,836	3,555	2,256	1,482	0	543
'09	7,091	2,846	2,789	1,107	5	344
'10	6,939	2,868	2,687	1,076	1	307
'11	6,731	2,467	2,259	1,730	17	258
'12	5,825	2,351	1,935	1,448	6	85
'13	7,014	3,091	2,112	1,573	7	231

▼ 해조류

(단위 : M/T)

연도	계	톳	우무 가사리	미역류	청각	김류	다시마류	파래류	도박류	기타
'90	30,324	7,222	8,339	5,075	565	3,533	7	1,425	756	3,402
'95	22,368	6,179	7,798	3,868	530	62	979	497	-	2,455
'96	22,910	8,086	3,551	6,642	381	189	1,795	373	120	1,773
'97	23,233	7,783	6,182	4,490	92	90	761	490	70	3,275
'98	12,594	3,856	3,136	784	280	635	500	61	15	3,327
'99	12,895	7,423	2,307	600	391	418	577	183	24	972
'00	13,023	6,062	2,872	1,717	220	1	350	64	15	1,722
'01	14,933	7,024	3,768	2,664	404	11	357	40	13	652
'02	10,427	5,081	2,150	1,089	558	29	88	412	2	1,018
'03	5,154	2,744	467	942	27	122	37	182	7	626
'04	9,060	5,284	1,791	719	616	3	-	71	48	528
'05	15,212	3,520	3,079	4,740	3,083	13	9	246	128	394
'06	13,754	2,933	3,012	3,569	2,875	2	12	164	473	714
'07	18,189	2,672	2,859	6,384	3,950	24	28	167	446	1,659
'08	13,866	2,721	1,093	3,114	1,400	1	2	295	1,170	4,070
'09	10,843	2,590	822	3,882	553	23	354	297	670	1,652
'10	13,043	2,366	3,715	4,783	451	8	180	368	118	1,054
'11	14,787	4,797	5,011	2,742	396	43	90	305	220	1,183
'12	10,123	2,242	3,532	2,184	593	35	39	592	153	753
'13	8,566	1,617	2,724	2,787	132	28	4	373	235	666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22. 천해양식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 ▽ 어류

(단위 : M/T)

연도	계	넙치류	조피볼락	송어류	참돔	농어	감성돔	기타돔류	기타볼락	방어	기타
'96	11,402	8,861	1,922	27	27	266	2	14	114	116	53
'97	39,121	26,274	11,069	201	115	703	12	30	245	302	170
'98	37,323	22,277	12,544	106	146	940	51	134	231	266	628
'99	33,453	21,368	9,459	347	176	797	92	186	721	236	71
'00	25,986	14,127	8,473	968	412	605	221	386	225	494	75
'01	29,297	16,426	9,254	1,415	641	873	275	94	76	95	148
'02	48,073	23,348	16,550	3,898	960	2,006	685	234	86	186	120
'03	72,393	34,533	23,771	4,093	4,417	2,778	1,084	1,287	167	114	149
'04	64,476	32,141	19,576	3,596	3,988	1,850	1,379	1,430	132	45	339
'05	81,437	40,075	21,297	5,500	5,816	2,600	2,671	2,048	339	57	1,034
'06	91,123	43,852	27,517	5,651	4,386	1,571	2,705	1,689	496	66	3,190
'07	97,663	41,171	35,564	4,921	7,213	2,361	2,841	1,109	415	5	2,063
'08	99,006	46,432	32,992	6,149	7,424	2,007	1,588	443	263	208	1,500
'09	109,516	54,674	33,020	5,581	9,226	2,395	1,694	918	270	304	1,434
'10	80,110	40,925	20,918	4,657	6,300	1,952	2,254	911	280	141	1,772
'11	72,449	40,805	17,338	4,850	3,498	1,835	1,233	722	307	34	1,827
'12	76,308	39,371	23,085	5,839	2,870	1,522	1,138	676	205	181	1,421
'13	73,108	36,944	23,757	4,788	2,755	1,248	913	798	188	145	1,572



▶ 패류

(단위 : M/T)

연도	계	굴 류	홍합류	바지락	피조개	꼬막류	가리비류	키조개	가무락	전복류	기타
'96	306,738	185,339	70,058	18,478	20,166	4,473	102	3	27	84	8,008
'97	301,873	200,973	63,572	13,958	13,156	2,843	637	22	5	7	6700
'98	239,754	175,926	17,785	17,178	23,029	5,041	360	190	33	3	209
'99	221,031	177,259	15,042	16,135	8,550	2,511	377	1,104	3	-	50
'00	222,608	177,079	11,713	17,927	10,618	820	2,371	1,998	46	20	16
'01	217,078	174,117	13,653	16,433	7,359	3,842	66	1,240	25	29	314
'02	212,433	182,229	13,201	10,652	4,745	413	5	577	219	85	307
'03	291,063	238,326	15,785	27,494	4,696	2,440	23	783	189	1,065	262
'04	304,889	239,270	20,409	27,570	3,134	10,849	173	1,997	79	1,260	148
'05	326,255	251,706	43,953	17,401	2,548	3,226	215	4,950	80	2,062	114
'06	391,060	283,296	81,617	14,327	2,064	5,063	292	872	256	3,050	223
'07	478,646	321,276	98,121	18,819	3,015	28,372	286	3,870	134	4,350	403
'08	343,704	249,976	67,442	15,541	1,903	1,637	421	1,318	68	5,146	252
'09	326,544	240,911	55,035	17,905	1,714	2,966	348	1,302	74	6,207	82
'10	355,699	267,776	54,440	23,430	1,560	1,155	253	748	109	6,228	0
'11	389,159	281,022	70,416	25,699	2,110	1,616	403	830	272	6,779	12
'12	370,074	284,856	61,310	12,623	1,872	2,232	519	81	17	6,564	0
'13	291,026	239,779	34,429	4,580	2,227	1,590	484	1	62	7,479	395

▽ 갑각류

(단위 : M/T)

연도	계	대하	흰다리새우	기타새우
'96	382	377	-	5
'97	1,537	1,533	-	4
'98	846	846	-	-
'99	1,180	1,142	-	38
'00	1,158	1,158	-	-
'01	2,081	2,081	-	-
'02	1,403	1,403	-	-
'03	2,324	2,324	-	-
'04	2,426	2,426	-	-
'05	1,399	1,399	-	-
'06	1,683	1,022	661	-
'07	1,321	463	858	-
'08	1,924	130	1,794	-
'09	1,893	81	1,812	-
'10	2,731	26	2,705	-
'11	2,860	16	2,844	-
'12	2,819	35	2,784	-
'13	3,827	42	3,785	-

▽ 기타수산동물

(단위 : M/T)

연도	계	우렁챙이	미더덕	기타(오만둥이 등)
'96	17,298	13,093	4,205	-
'97	24,760	22,318	2,442	-
'98	29,538	8,177	5,650	15,711
'99	35,916	11,845	11,292	12,779
'00	29,165	2,336	13,889	12,940
'01	33,833	4,603	15,084	14,146
'02	22,053	9,613	5,266	7,174
'03	8,411	3,116	2,047	3,248
'04	9,176	6,349	2,590	237
'05	10,827	9,334	1,412	81
'06	10,495	7,127	1,519	1,849
'07	15,221	9,318	2,309	3,594
'08	15,345	7,826	2,620	4,899
'09	16,743	7,208	3,845	5,690
'10	14,788	6,364	2,920	5,504
'11	20,795	11,676	2,655	6,464
'12	17,423	9,031	2,492	5,900
'13	15,945	10,282	2,759	2,904

▼ 해조류

(단위 : M/T)

연도	계	미역	김	다시마류	톳	파래	청각	말	기타
'96	538,990	305,813	166,199	35,640	23,054	8,272	8	-	4
'97	647,843	431,872	140,236	33,466	34,470	7,794	-	-	5
'98	469,769	239,742	191,578	7,931	24,993	5,298	-	-	227
'99	473,672	213,706	205,706	25,447	22,679	5,873	43	-	218
'00	374,456	212,429	130,488	14,160	11,654	5,288	164	-	273
'01	373,538	175,490	167,909	17,506	6,865	5,760	7	-	1
'02	497,557	242,135	209,995	24,873	11,016	9,291	72	-	175
'03	452,054	198,172	193,553	25,259	33,661	1,355	53	-	1
'04	536,748	261,574	228,554	22,510	22,814	1,154	142	-	-
'05	621,156	281,871	197,610	108,327	30,058	814	1,597	877	2
'06	764,913	322,371	217,559	201,919	21,125	682	165	919	173
'07	792,953	309,097	210,956	250,049	20,909	684	158	490	610
'08	921,024	381,076	224,242	285,221	17,701	8,003	1,186	1,059	2,536
'09	858,659	309,155	211,444	306,183	19,533	5,903	1,796	1,826	2,819
'10	901,672	393,616	235,534	241,322	21,133	4,531	1,394	2,383	1,759
'11	992,283	394,003	316,428	246,701	23,351	6,085	1,005	2,529	2,181
'12	1,022,326	339,924	349,827	308,601	13,024	6,002	855	1,354	2,739
'13	1,131,305	327,375	405,525	373,264	13,311	5,034	2,045	24	4,727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23.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 ▽ 어류

(단위 : M/T)

연도	계	명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공치	민어류	기타돔	갈치	가오리류	기타
'00	465,200	86,066	137,015	49,461	30,079	25,029	23,169	6,449	12,135	10,946	84,851
'01	568,795	199,123	137,569	58,957	31,335	20,869	22,033	4,834	3,503	8,903	81,669
'02	423,696	24,825	173,693	48,778	31,962	20,088	24,295	8,253	3,857	7,192	80,753
'03	397,196	21,890	153,328	52,192	21,839	31,219	23,401	6,604	3,264	7,441	76,018
'04	400,134	20,009	162,200	40,216	26,324	22,625	19,578	7,316	2,802	7,631	91,433
'05	439,711	26,004	171,641	52,474	24,178	40,509	18,712	7,627	2,065	5,058	91,443
'06	433,122	26,269	205,221	55,831	24,333	12,009	15,522	6,240	2,049	5,154	80,494
'07	448,335	20,109	214,934	54,040	22,827	16,976	16,593	5,689	2,483	4,780	89,904
'08	445,367	27,980	187,277	70,778	20,092	29,591	15,404	6,979	2,779	3,450	81,037
'09	493,857	38,996	257,481	36,823	21,921	22,001	15,990	6,819	2,383	4,459	86,984
'10	488,155	46,794	216,720	67,138	25,234	21,360	18,491	7,040	580	4,081	80,717
'11	413,985	48,793	173,334	45,736	22,985	18,068	14,739	5,274	432	3,293	81,331
'12	463,970	39,025	211,891	60,436	24,721	13,961	12,294	9,430	1,800	3,293	87,119
'13	407,376	24,341	200,866	44,013	21,648	20,055	12,511	6,726	558	2,052	74,606

▽ 갑각류

(단위 : M/T)

연도	계	남빙양새우	기타새우	계류	새우류	기타
'00	6,534	4,499	1,835	192	-	8
'01	5,233	1,650	1,852	30	-	1,701
'02	13,663	12,965	275	5	-	418
'03	20,927	20,411	162	101	6	247
'04	25,648	25,212	104	176	-	156
'05	28,842	28,678	26	82	-	56
'06	33,807	33,677	43	32	-	55
'07	37,250	37,074	53	95	-	28
'08	35,522	35,441	22	6	-	53
'09	29,585	29,396	8	4	-	180
'10	36,057	35,843	104	3	-	107
'11	24,705	24,362	221	-	-	122
'12	26,205	25,956	195	-	-	54
'13	39,397	38,117	264	1,016	-	-

▽ 연체동물

(단위 : M/T)

연도	계	오징어류	갑오징어	문어류	한치류	기타
'00	179,533	177,843	824	457	-	409
'01	165,029	163,092	1,076	92	-	769
'02	142,987	141,352	1,100	87	-	448
'03	126,468	121,945	3,633	217	-	673
'04	73,618	69,999	2,882	557	-	180
'05	83,543	81,172	1,908	80	362	21
'06	172,255	170,211	945	550	449	100
'07	227,247	223,338	1,315	381	2,165	48
'08	185,293	181,780	1,310	19	1,649	535
'09	88,505	84,652	1,993	721	1,080	59
'10	67,904	65,416	1,282	15	1,131	60
'11	71,934	70,130	1,089	6	709	-
'12	85,133	81,526	1,026	218	1,995	368
'13	103,155	100,129	794	179	2,052	1

## 24.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 ▽ 어류

(단위 : M/T)

연도	계	항어	뽕장어	송어류	붕어류	메기	잉어	미꾸라지류	피라미	동자개류	기타
'08	25,343	1,028	6,576	2,811	2,543	3,905	1,871	432	113	381	5,683
'09	25,718	930	6,766	2,737	2,636	3,869	2,001	506	156	476	5,641
'10	26,326	1,169	8,021	2,652	2,734	4,282	2,002	703	227	391	4,145
'11	26,521	1,434	7,257	3,015	2,802	4,940	1,917	569	249	443	3,895
'12	22,872	1,738	4,365	3,067	2,745	3,825	1,975	466	292	574	3,825
'13	20,461	1,068	5,217	3,390	1,571	4,040	1,121	609	244	403	2,798

### ▽ 갑각류

(단위 : M/T)

연도	계	게류	새우류	기타
'08	726	207	519	-
'09	511	134	349	28
'10	345	92	250	3
'11	262	70	181	11
'12	321	153	165	2
'13	211	115	96	0

### ▽ 패류

(단위 : M/T)

연도	계	재첩	큰노우렁이	다슬기류	기타
'08	2,993	628	1,581	612	172
'09	3,742	591	2,114	930	107
'10	4,085	798	2,458	690	139
'11	5,297	1,173	3,383	701	40
'12	4,688	988	3,191	510	-
'13	4,526	1,330	2,706	490	-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25. 연근해 주요 어업별 생산량

(단위 : 천M/T)

연도	계	대형 기저	근해 트롤	중형 기저	선망	기 선 권현망	근 해 채낚기	안강망	연승	통발	정치망	잠수기	기타
'70	724	114	4	45	37	21	70	99	30	-	14	28	262
'80	1,370	153	95	59	222	107	40	244	20	11	80	23	316
'90	1,472	121	173	61	359	86	51	244	33	40	16	22	266
'95	1,425	128	104	26	228	140	94	174	33	77	65	17	339
'00	1,189	106	132	15	180	75	81	102	38	44	69	14	333
'01	1,252	97	160	11	232	98	75	95	32	41	72	13	326
'02	1,096	89	142	16	182	90	73	85	30	51	39	11	288
'03	1,097	69	144	22	159	134	74	70	15	54	49	11	296
'04	1,077	78	124	18	231	105	67	64	11	54	37	11	277
'05	1,097	86	102	22	192	132	63	68	15	61	49	12	295
'06	1,109	96	108	24	168	143	66	74	16	64	45	11	294
'07	1,152	76	99	29	236	109	63	73	17	75	40	12	325
'08	1,285	65	106	35	287	150	61	76	25	69	56	10	344
'09	1,227	64	120	37	287	116	60	74	17	71	33	11	337
'10	1,133	64	100	41	209	158	46	78	15	72	38	10	301
'11	1,235	72	118	45	263	154	45	79	17	73	29	10	330
'12	1,091	66	119	49	216	133	49	59	15	80	30	9	266
'13	1,045	68	101	45	203	140	43	61	15	79	32	9	249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26. 연근해어업 생산량(지역별)

(단위: 천M/T)

연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0	1,472	426	64	-	37	80	39	84	297	86	323	36
'95	1,425	449	58	-	14	83	43	63	235	142	283	55
'96	1,624	640	49	-	13	92	42	53	270	133	282	50
'00	1,189	381	40	20	18	56	62	42	180	137	211	42
'01	1,252	437	35	19	16	56	46	39	183	127	250	44
'02	1,096	368	38	18	14	40	45	39	162	117	212	43
'03	1,097	343	24	22	5	42	69	61	135	122	229	45
'04	1,077	352	17	17	3	46	70	48	145	131	203	45
'05	1,097	300	21	20	9	57	57	30	158	117	262	66
'06	1,109	294	28	22	5	53	69	29	173	119	257	59
'07	1,152	322	32	18	7	63	68	35	169	142	232	63
'08	1,285	369	27	15	10	58	58	35	206	168	253	85
'09	1,227	366	37	17	7	63	81	35	173	166	220	64
'10	1,133	287	33	20	5	54	92	33	170	126	254	59
'11	1,235	369	37	17	4	47	82	30	184	136	258	69
'12	1,091	309	35	17	4	46	70	19	149	141	241	59
'13	1,045	275	25	22	3	53	72	18	146	131	239	61

-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6년 162만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110만톤~128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13년 생산량은 105만톤으로 지역별로는 부산, 경남, 전남, 경북이 전체 생산량의 76%를 차지

출처: 통계청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27.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지역별)

(단위 : M/T)

연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0	119,211	438	-	-	4,443	2,435	8,829	3,441	60,809	1,254	36,952	610
'80	540,564	22,470	-	-	9,966	87	34,682	4,011	211,946	9,402	246,608	1,392
'90	772,731	52,849	87	-	14,245	133	19,044	61,026	386,542	20,779	217,920	106
'95	996,451	56,535	4,251	-	1,192	577	29,945	16,759	654,466	12,895	217,207	2,624
'96	874,810	50,225	1,518	-	69	932	26,742	10,051	565,656	1,445	215,540	2,632
'97	1,015,134	46,183	1,159	-	769	1,560	23,974	10,107	682,484	8,409	234,715	5,774
'98	777,230	58,064	1,191	5,151	1,157	1,264	28,937	21,103	439,414	4,464	208,757	7,728
'99	765,252	53,912	1,302	6,529	1,624	1,178	25,808	23,433	431,196	4,273	206,048	9,949
'00	653,373	50,244	1,439	11,389	801	3,163	24,394	20,704	330,399	4,413	201,034	5,393
'01	655,827	41,775	868	15,556	881	698	29,409	21,719	328,963	4,719	205,172	6,067
'02	781,519	48,529	1,666	16,936	1,021	324	25,202	25,833	439,985	5,333	205,524	11,166
'03	826,245	37,508	1,588	14,820	3,920	265	38,331	26,183	474,627	6,789	205,957	16,257
'04	917,715	45,458	1,512	13,508	3,874	786	43,715	26,305	531,242	6,890	226,366	18,059
'05	1,041,074	75,405	1,714	12,923	5,145	1,076	42,800	25,880	578,427	8,610	268,374	20,720
'06	1,259,274	39,884	1,537	10,551	5,509	937	52,576	32,121	756,097	8,536	329,113	22,413
'07	1,385,804	40,272	2,244	11,840	8,462	1,612	37,445	40,676	793,058	9,763	419,147	21,285
'08	1,381,003	53,916	3,492	11,488	9,383	2,068	26,059	44,101	848,285	8,289	348,512	25,410
'09	1,313,355	34,575	1,318	7,027	13,321	963	33,865	46,746	805,761	8,137	330,127	31,515
'10	1,355,000	57,208	2,430	5,581	12,473	1,667	35,799	42,648	834,952	6,788	333,365	22,089
'11	1,477,546	63,344	775	6,544	8,180	2,574	32,000	35,117	938,365	5,875	361,182	23,590
'12	1,488,950	42,548	434	6,075	8,066	3,125	38,416	23,978	973,757	4,752	362,773	25,026
'13	1,515,210	42,997	3,336	8,338	11,756	1,696	47,549	30,734	1,057,927	5,355	281,825	23,697

- 천해양식어업은 1997년 1,015천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해조류와 패류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 2013년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전남이 1,058천톤으로 69.8%, 경남이 282천톤으로 18.6%, 충남이 48천톤으로 3.1%로 전체의 91.6%를 차지함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28. 내수면어업 생산량

### ▽ 분류별

(단위 : M/T)

연도	계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
'08	29,180	25,343	726	2,993	118
'09	30,071	25,718	511	3,742	100
'10	30,982	26,326	345	4,085	226
'11	32,270	26,521	262	5,297	190
'12	28,131	22,872	321	4,688	250
'13	25,414	20,461	211	4,525	217

### ▽ 지역별

(단위 : M/T)

연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	29,180	1,210	486	23	3	12	0	5,964	2,860	2,471	2,032	4,602	5,692	1,336	2,451	38
'09	30,071	1,012	234	37	-	12	7	5,255	2,657	2,414	2,798	5,312	6,333	1,202	2,785	13
'10	30,982	767	221	126	-	12	0	3,966	2,524	2,743	3,427	5,645	7,133	1,460	2,937	21
'11	32,270	722	84	209	2	12	0	3,837	2,612	2,570	3,905	5,818	7,415	1,604	3,477	3
'12	28,131	764	60	178	2	10	5	3,243	2,634	2,612	3,282	4,420	5,613	1,552	3,731	25
'13	25,282	684	18	196	10	7	6	2,806	2,341	1,906	2,591	4,568	4,961	1,783	3,405	0

-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부터 정부의 맑은물 공급 정책과 수질환경 규제강화로 내수면어업 생산의 42%를 차지하는 가두리양식면허를 불허함으로써 어업생산량이 크게 감소한바 있으나,
- '03년 이후 친환경순환여과식 등 양식시설현대화 및 양식품종 다양화(송어, 메기, 향어, 다슬기 등)로 2013년 현재 내수면 전체 생산량(25,413톤) 대비 양식생산량이 72%(18,236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출처 : 통계청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29. 원양어업 생산추이

### 업종별 · 연도별

(단위 : 톤)

연도	계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 채낚기	북양트롤	해외트롤	기타
'60	914	914	-	-	-	-	-
'70	89,621	71,363	-	-	-	18,258	-
'80	456,549	112,673	-	-	258,905	63,676	21,295
'90	919,312	69,524	173,343	88,843	312,218	161,650	113,734
'00	651,267	58,387	170,025	159,726	87,830	133,100	42,199
'10	722,597	67,467	200,905	82,158	231,210	113,600	27,257
'99	791,409	48,703	142,091	263,312	147,379	156,014	33,910
'00	651,267	58,387	170,025	159,726	87,830	133,100	42,199
'05	552,096	49,619	210,777	28,144	26,726	187,929	48,901
'07	712,832	45,438	254,897	118,139	20,272	245,973	28,113
'09	611,950	43,907	283,380	43,342	36,524	174,380	30,417
'10	592,116	41,697	278,227	31,759	49,597	158,149	32,687
'11	510,624	41,011	212,628	34,992	49,976	143,223	28,794
'12	575,308	42,585	264,994	48,646	42,476	146,702	29,905
'13	549,928	36,134	241,083	61,703	24,425	157,291	29,292

-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시험조업을 실시하여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원양어획물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최근에는 매년 50여만톤을 어획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참치연승어업이 약 5만톤, 참치선망어업이 20만톤 내외 수준으로 중서부태평양 등에서 조업하고 있고, 북양트롤어업은 2002년부터 러시아 민간쿼타 미확보 및 어선세력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출처 : 원양어업통계(한국원양산업협회)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30. 원양어업 어종별 · 연도별 생산량

(단위: 톤)

연도	계	참치류	명태	오징어	꽁치	기 타
'60	914	914	-	-	-	-
'70	89,621	71,363	-	-	-	18,258
'80	456,549	124,753	189,774	4,687	-	137,335
'90	919,312	241,110	311,703	233,331	17,762	115,406
'95	897,324	227,173	336,810	193,017	31,321	109,003
'98	722,597	267,286	230,143	112,291	13,922	98,955
'99	791,409	189,709	145,720	309,195	18,159	128,626
'00	651,267	225,795	86,066	177,843	25,029	136,534
'05	552,096	260,354	26,004	81,172	40,509	144,057
'07	712,832	300,283	20,109	223,338	16,976	152,126
'09	611,950	327,181	38,996	84,652	22,001	139,120
'10	592,116	319,712	46,794	65,416	21,360	138,834
'11	510,624	251,093	48,793	70,130	18,068	122,540
'12	575,308	305,335	39,025	81,526	13,961	135,461
'13	549,928	274,909	24,341	100,129	68,814	81,735

-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원양어획물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 어종별로는 참치류가 약 27만톤으로 꾸준히 어획되고 있고, 명태류는 러시아 쿼타량에 따라, 오징어류는 포클랜드 수역의 어황에 따라 어획량 기록이 매우 심한 편임

출처: 원양어업통계(한국원양산업협회)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31. 원양어업 어종별 · 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 천\$)

연도	계	참치류	명태	오징어	저서어류	기 타
'60	153	153	-	-	-	-
'70	38,008	35,694	-	-	-	2,314
'80	351,865	196,581	24,209	-	-	131,075
'90	516,880	329,357	45,314	14,315	-	127,894
'95	539,513	298,382	88,964	45,961	29,804	76,402
'98	529,540	318,934	48,798	24,655	35,674	101,479
'99	429,325	292,124	32,972	16,189	37,583	50,457
'00	538,972	350,723	39,417	39,340	52,318	57,174
'05	380,162	232,072	981	59,164	72,178	15,767
'07	471,044	276,491	-	66,371	112,828	15,354
'09	539,688	365,428	610	44,574	123,930	5,146
'10	658,297	477,655	-	53,161	111,705	15,776
'11	675,761	441,626	199	62,853	152,907	18,176
'12	712,344	499,931	3,757	54,767	138,315	15,574
'13	572,428	389,008	2,331	41,434	119,436	20,219

- 원양어획물 수출에서는 참치류가 1990년 이후 매년 약 3억불 정도가 일본시장에 수출되어 전체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참치류는 어황에 따라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어가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러시아 명태는 어획 쿼터 감소요인에 의하여 수출금액의 변동을 가져옴

출처 : 원양어업통계(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32. 원양업체 현황

### 연도별

(단위 : 개소)

	'60	'70	'75	'80	'85	'90	'95	'99	'00	'05	'07	'09	'10	'11	'12	'13
업체수	1	36	92	82	112	157	185	147	139	112	110	95	90	88	79	75

- 1957년 인도양 참치연승어업 진출 이래 1970년 36개사로 매년 계속 증가를 보이다가 1995년 185개사를 정점으로 2013년 현재 75개사로서 감소 추세에 있음

### 연도별 · 업종별 추이

연도	계(척)	참치연승	참치선망	북양트롤	새우트롤	해외트롤	오징어채낚기	기 타
'60	3	3	-	-	-	-	-	-
'70	278	246	-	27	5	-	-	-
'80	750	439	2	39	112	90	13	55
'90	810	276	39	44	68	135	88	160
'95	637	226	30	36	32	157	124	32
'98	545	203	26	38	8	146	99	25
'99	550	202	26	34	3	158	105	22
'00	535	197	26	33	8	155	92	24
'05	410	177	28	7	1	123	51	23
'07	387	165	28	6	-	116	30	42
'09	362	153	29	5	-	101	31	43
'10	353	149	30	5	-	97	30	42
'11	359	149	30	7	-	100	31	42
'12	344	148	31	6	-	91	32	36
'13	342	150	32	6	-	87	32	35

- 1957년 참치연승어선 1척이 원양에 처녀 진출한 이래 원양어선 세력이 매년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 810척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3년 현재 342척으로 원양어업 생산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추세임

출처 : 원양어업통계(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33. 원양어업 선령별 · 업종별 현황

(단위: 척)

업종별	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계	342	8	4	13	5	82	98	132
참치연승	150	1		4	2	61	72	10
참치선망	32	6	4	1		5		16
북양트롤	6					1	1	4
오징어채낚기 (외줄낚시겸업) [꽂치붕수망겸업]	32 (1)					6	11	15 (1)
꽂치붕수망 (오징어채낚기겸업)	14 (13)	1 (1)					3 (3)	10 (9)
트 롤	87			4	2	4	10	67
태평양	20					1	4	15
대서양	55			4	2	1	3	45
인도양	9					1	3	5
남빙양	3					1		2
새우트롤								
저연승	3					2		1
통발 · 저연승겸업	10			4	1	2	1	2
모선식외줄낚시	8					1		7

- 원양어선은 2013년말 현재 342척으로서 21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북양트롤 어선,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21년 이상 노후선박이고, 해외 트롤어선의 93% 이상이 21년 이상 노후선박임

출처 : 원양어업통계(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34. 원양어업 업종별 · 해역별 출어 현황

(단위: 척)

업종별	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비고
계	342	227	90	22	3	
참치연승	150	125	16	9		
참치선망	32	27	1	4		
오징어채낚기	32(1)	32(1)				(원양외출낚시겸업) [공치붕수망 겸업]
공치붕수망	14(13)	14(13)				(오징어채낚기겸업)
북양트롤	6	6				
해외트롤	87	20	55	9	3	
새우트롤						
기타	21	3	18			
•통발+저연승	10	1	9			
•저연승	3	2	1			
•모선식외출낚시	8		8			

- 원양어선은 전체 342척 중에서 참치어선이 182척으로 53%를 차지하고 있고, 트롤어선이 93척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음
- 해역별로 보면, 태평양수역에 227척, 대서양수역에 90척, 인도양수역에 22척이 진출하고 있음

출처 : 원양어업통계(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35. 수출입 실적

### ▼ 국가전체 및 농림수산물 수출입실적

(단위 : 백만\$,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A)	2013년 (B)	증감률 (B/A)
수 출	국가전체	422,007.3	363,533.6	466,383.8	555,213.7	547,869.8	559,632.4	2.1
	농림수산물	4,502.8	4,809.3	5,880	7,691.7	8,007.7	7,876.6	△1.6
	● 농 식 품	3,048.2	3,298.1	4,081.8	5,383.5	5,645.6	5,724.6	1.4
	- 농산물	2,714.6	2,990.8	3,721.6	4,940.8	4,785.6	4,741.0	△0.9
	- 축산물	215.1	139.6	146.1	176.3	395.2	435.7	10.2
	- 임산물	118.5	167.7	214.1	266.4	464.8	547.9	17.9
	● 수산물	1,454.6	1,511.2	1,798.2	2,308.2	2,362.1	2,152.0	△8.9
수 입	국가전체	435,274.7	323,084.5	425,212.2	524,413.1	519,584.5	515,585.5	△0.8
	농림수산물	23,217.8	21,242.0	25,787.2	33,184.0	33,415.7	34,192.7	2.3
	● 농 식 품	20,120.3	18,346.5	22,329.9	28,994.1	29,411.3	30,299.4	3.0
	- 농산물	13,904.6	11,753.6	13,987.8	18,362.0	18,711.2	19,105.8	2.1
	- 축산물	3,352.1	2,485.1	3,123.0	5,071.4	4,720.9	4,687.7	△0.7
	- 임산물	2,863.6	4,107.8	5,219.1	5,560.7	6,009.2	6,505.9	8.3
	● 수산물	3,097.5	2,895.5	3,458.4	4,191.9	3,974.6	3,894.7	△2.0
수 지	국가전체	△13,267.4	40,449.1	41,171.6	30,800.6	28,285.3	44,046.9	-
	농림수산물	△18,715.0	△16,432.7	△19,907.2	△25,492.3	△25,408.0	△26,316.1	-
	● 농 식 품	△17,072.1	△15,048.4	△18,248.1	△23,610.6	△23,795.7	△24,574.8	-
	● 수산물	△1,642.9	△1,384.3	△1,660.2	△1,883.7	△1,612.5	△1,742.7	-

▶ 품목별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톤, 천\$, %)

구 분	'11		'12		'13		'13/'12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합 계	686,930	2,308,155	708,638	2,362,050	687,569	2,151,951	△3.0	△8.9
활 어	5,948	78,357	5,722	81,579	5,420	74,959	△5.3	△8.1
신선·냉장	25,348	221,909	28,239	249,750	22,115	183,929	△21.7	△26.4
냉 동	492,229	1,437,191	519,322	1,399,867	488,486	1,239,240	△5.9	△11.5
기 타	163,405	570,698	155,355	630,854	171,548	653,823	10.4	3.6

▶ 국가별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천\$, %)

구 분	'10	'11	'12	'13	'13/'12
합 계	1,798,162	2,308,155	2,362,050	2,151,951	△8.9
일 본	859,483	993,537	981,683	815,506	△16.9
중 국	231,223	464,819	372,257	370,446	△0.5
미 국	142,166	180,852	191,004	217,490	13.9
태 국	126,824	173,433	260,783	206,890	△20.7
베트남	32,009	61,453	54,465	70,089	28.7
뉴질랜드	71,915	92,707	72,663	48,848	△32.8
홍 콩	27,980	31,295	28,418	36,938	30.0
나이지리아	33	15,824	20,602	34,652	68.2
스페인	55,491	54,767	39,488	31,878	△19.3
대 만	22,314	26,515	28,506	28,627	0.4
사 모 아	0	0	15,157	21,783	43.7
캐 나 다	15,383	17,199	24,949	21,022	△15.7
이탈리아	34,331	15,036	22,919	18,186	△20.7
프 랑 스	11,054	7,516	15,925	16,253	2.1
호 주	7,286	12,303	12,432	13,580	9.2
기 타	160,670	160,899	220,799	199,763	△9.5

▽ 어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 %)

구 분	'10	'11	'12	'13	'13/'12
합 계	1,798,162	2,308,155	2,362,050	2,151,951	△8.9
참 치	374,354	393,668	603,419	556,512	△7.8
김	105,197	161,495	231,039	251,727	9.0
오징어	114,762	181,034	119,636	139,310	16.4
넙 치	70,657	54,010	52,144	79,483	52.4
굴	66,057	81,689	55,843	70,163	25.6
붕장어	42,105	55,264	70,325	59,984	△14.7
게 살	43,054	54,172	58,699	59,700	1.7
명 태	29,595	47,332	59,821	58,203	△2.7
전 복	36,820	52,351	58,248	53,784	△7.7
삼 치	54,635	67,667	53,717	52,297	△2.6
고등어	27,364	48,879	71,579	46,166	△35.5
어 란	14,427	45,863	52,647	37,977	△27.9
이빨고기	28,505	46,651	40,596	37,328	△8.1
대 구	25,621	53,052	36,235	34,713	△4.2
바지락	42,960	37,989	39,366	29,676	△24.6
미 역	19,039	40,765	36,494	28,503	△21.9
돔	20,242	27,258	35,884	27,130	△24.4
전갱이	24,825	23,076	27,805	26,253	△5.6
캐비아	30,397	32,040	33,264	22,851	△31.3
툰	29,622	31,886	27,165	20,993	△22.7
기 타	597,924	772,014	598,124	459,198	△23.2

▽ 총수출 대비 수산물 구성비

(단위 : 백만\$, %)

구 분	'10	'11	'12	'13	'13/'12
총 수 출	466,384	555,214	547,870	559,632	2.1
수 산 물	1,798	2,308	2,362	2,152	△8.9
구 성 비	(0.4)	(0.4)	(0.4)	(0.4)	-

▼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단위 : 천\$, %)

구 분	국가전체(A)	수산물(B)	수산물 비중(B/A)
'60	32,827	5,755	17.5
'70	835,185	82,324	9.9
'80	17,504,862	759,524	4.3
'90	65,015,731	1,513,094	2.3
'95	125,057,988	1,721,748	1.4
'97	136,164,204	1,492,588	1.1
'98	132,313,143	1,369,014	1.0
'99	143,685,459	1,520,534	1.1
'00	172,267,510	1,504,470	0.9
'01	150,439,144	1,273,619	0.8
'02	162,470,528	1,160,435	0.7
'03	193,817,443	1,129,385	0.6
'04	253,844,672	1,278,638	0.5
'05	284,418,743	1,193,117	0.4
'06	325,464,848	1,088,948	0.3
'07	371,489,086	1,225,832	0.3
'08	419,083,091	1,454,635	0.3
'09	361,199,736	1,511,230	0.4
'10	466,383,762	1,798,162	0.4
'11	555,213,656	2,308,155	0.4
'12	547,869,792	2,362,050	0.4
'13	559,632,434	2,151,951	0.4

- 수산물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까지 15억\$ 내외 수출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전년에 이어 2012년도 수산물 수출은 23억만\$로 전체 수출액 5,478억\$ 중 0.4%의 비중을 차지
-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첨단산업 발전의 영향으로 국가전체 수출액 대비 수산물 비중이 매년 정체 되고 있음

▶ 품목별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톤, 천\$, %)

구분	'11		'12		'13		'13/'12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계	4,845,662	4,191,944	4,829,157	3,974,627	5,387,008	3,894,740	11.6	Δ2.0
활어	26,956	268,571	23,905	255,847	25,259	285,826	5.7	11.7
신선·냉장	114,329	336,996	107,795	312,394	98,277	326,179	Δ8.8	4.4
냉동	1,013,154	2,651,802	947,228	2,473,246	906,378	2,326,588	Δ4.3	Δ5.9
기타	3,691,223	934,575	3,750,229	933,140	4,357,094	956,147	16.2	2.5

▶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천\$, %)

구분	'10	'11	'12	'13	'13/'12
합계	3,458,400	4,191,944	3,974,627	3,894,740	Δ2.0
중국	1,096,264	1,250,436	1,082,620	1,026,162	Δ5.2
러시아	495,267	662,758	654,125	590,087	Δ9.8
베트남	376,338	482,607	506,886	484,108	Δ4.5
미국	126,179	155,412	177,421	221,407	24.8
칠레	76,957	142,581	110,864	120,718	8.9
노르웨이	97,108	138,833	114,402	120,249	5.1
태국	100,957	135,111	144,216	119,345	Δ17.2
대만	96,041	128,598	131,795	117,271	Δ11.0
일본	226,204	168,543	116,003	106,223	Δ8.4
호주	118,435	112,822	102,324	100,908	Δ1.4
캐나다	52,950	67,852	63,021	77,139	22.4
페루	41,514	71,556	78,030	71,641	Δ8.2
인도	48,581	44,924	46,055	68,237	48.2
인도네시아	63,970	69,815	69,902	61,659	Δ11.8
세네갈	12,709	18,038	35,681	55,924	56.7
기타	428,926	542,058	541,282	553,662	2.3

▼ 어종별 수입현황

(단위 : 천\$, %)

구분	'10	'11	'12	'13	'13/'12
합 계	3,458,400	4,191,944	3,974,627	3,894,740	△2.0
명 태	416,233	397,926	367,879	358,983	△2.4
새 우	217,184	271,530	278,917	281,719	1.0
소 금	224,727	220,889	193,312	209,312	8.3
낙 지	154,129	194,527	174,911	176,033	0.6
새 우 살	106,037	141,224	152,879	155,898	2.0
오 징 어	90,063	142,476	164,992	145,316	△11.9
참 치	89,278	139,500	165,970	139,078	△16.2
연 어	68,918	122,583	98,621	136,493	38.4
실 장 어	53,073	81,643	82,312	108,498	31.8
갈 치	107,986	110,641	107,349	108,486	1.1
조 기	150,927	162,631	126,745	105,413	△16.8
어 란	67,606	112,544	124,239	96,000	△22.7
주 꾸 미	77,129	117,857	94,640	95,437	0.8
넙 치	39,351	73,399	68,172	72,502	6.4
대 계	23,213	41,951	60,805	59,419	△2.3
아 귀	82,664	100,045	66,294	59,185	△10.7
바닷가재	22,306	23,745	31,609	57,784	82.8
골 뱅 이	33,940	37,529	40,816	56,155	37.6
대 구	40,566	66,035	52,895	55,255	4.5
콩 치	46,179	62,678	62,102	53,528	△13.8
기 타	1,346,891	1,570,591	1,459,168	1,364,246	△6.5

▼ 총수입 대비 수산물 구성비

(단위 : 백만\$, %)

구분	'10	'11	'12	'13	'13/'12
총 수입	425,212	524,413	519,584	515,586	△0.8
수 산 물	3,458	4,192	3,975	3,895	△2.0
구 성 비	(0.8)	(0.8)	(0.8)	(0.8)	-

▼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단위 : 천\$, %)

구 분	국가전체(A)	수산물(B)	수산물 비중(B/A)
'80	22,291,663	37,284	0.2
'85	31,135,655	83,229	0.3
'90	69,843,678	368,095	0.5
'95	135,119,933	842,808	0.6
'97	144,616,374	1,045,474	0.7
'98	93,281,754	587,481	0.6
'99	119,752,282	1,178,968	1.0
'00	160,481,018	1,410,598	0.9
'01	141,097,821	1,648,372	1.2
'02	152,126,153	1,884,417	1.2
'03	178,826,657	1,961,145	1.1
'04	224,462,687	2,261,356	1.0
'05	261,238,264	2,383,574	0.9
'06	309,382,632	2,769,348	0.9
'07	356,845,733	3,056,368	0.9
'08	435,274,737	3,097,450	0.7
'09	323,084,521	2,895,495	0.9
'10	425,212,160	3,458,400	0.8
'11	524,413,090	4,191,944	0.8
'12	519,584,473	3,974,627	0.8
'13	515,585,515	3,894,740	0.8

- 수산물 수입은 1999년 12억\$의 수입실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도는 국내수산물 소비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수산물의 수입단가가 높아져 전년보다 6.5% 수입이 감소하여 약 29억\$의 수입을 기록하였고, 2012년도는 수산물 수입은 39억 7천만\$로 전체수입액 5,196억\$ 중 0.8%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5%의 감소를 보임

출처 : 수출입통계(관세청)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 36. 세계 수산물 수출입 현황(FAO, 2011년)

### ▽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순 위	국가별	연도별			비 고
		2009	2010	2011	
계		96,473	110,674	129,594	
1	중국	10,245	13,267	16,959	
2	노르웨이	7,072	8,819	9,456	
3	태국	6,235	7,149	8,141	
4	베트남	4,300	5,108	6,241	
5	미국	4,144	4,661	5,788	
6	칠레	3,606	3,401	4,504	
7	덴마크	3,980	4,183	4,482	
8	캐나다	3,239	3,847	4,198	
9	스페인	3,142	3,310	4,185	
10	네덜란드	3,137	3,205	3,549	
21	한국	1,348	1,597	2,011	
	기타국	45,514	52,127	60,080	

### ▽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순 위	국가별	연도별			비 고
		2009	2010	2011	
계		99,892	111,313	129,805	
1	미국	13,858	15,496	17,466	
2	일본	13,258	14,891	17,340	
3	중국	4,976	6,157	7,572	
4	스페인	5,907	6,512	7,309	
5	프랑스	5,579	5,975	6,567	
6	이탈리아	5,060	5,419	6,211	
7	독일	4,570	5,026	5,513	
8	영국	3,593	3,714	4,257	
9	한국	2,693	3,191	3,935	
10	스페인	2,617	3,317	3,663	
	기타국	37,583	41,615	49,972	

출처 : FAO year book, Fishery and Aquaculture Statistics, 2011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37. 세계 수산물 생산 현황(FAO, 2012년)

### ▶ 생산현황

(단위: M/T)

순 위	국가별				비 고
		계	어획	양식	
계		182,853,313	92,443,611	90,409,702	
1	중국	70,365,449	16,425,083	53,940,366	
2	인도네시아	15,406,955	5,821,441	9,582,514	
3	인도	9,079,778	4,862,861	4,213,917	
4	베트남	5,942,300	2,622,200	3,320,100	
5	미국	5,557,787	5,137,763	9,582,514	
6	페루	4,917,402	4,845,109	72,293	
7	필리핀	4,865,265	2,323,300	2,541,965	
8	일본	4,816,643	3,742,842	1,073,801	
9	러시아	4,484,450	4,337,995	146,455	
10	미얀마	4,464,819	3,579,250	885,569	
11	노르웨이	3,612,010	2,290,891	1,321,119	
12	방글라데시	3,261,781	1,535,715	1,726,066	
13	한국	3,187,238	1,680,508	1,506,730	
14	태국	3,075,416	1,835,029	1,240,387	
15	말레이시아	2,092,551	1,477,281	615,270	
16	칠레	1,769,463	693,916	1,075,547	
17	멕시코	1,724,881	1,581,134	143,747	
18	브라질	1,551,178	842,987	708,191	
19	아이슬란드	1,475,097	1,467,666	7,431	
20	이집트	1,371,975	354,237	1,017,738	

출처 : FAO year book, Fishery and Aquaculture Statistics, 2012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38. 연도별 수산물 가공 생산량

(단위 : 톤, 개소)

연도	가공품생산량	가공업체현황	가공시설지원현황	비 고
'70	183,791	221	-	-
'80	366,979	376	-	-
'90	1,754,887	562	101	-
'95	1,691,810	619	94	-
'96	1,727,497	1,694r	113	-
'97	1,653,342	1,677r	124	-
'98	1,541,249	1,912r	116	-
'99	1,594,134	1,720r	75	-
'00	1,465,094	1,869r	126	-
'01	1,546,839	1,690r	89	-
'02	1,590,000	1,630r	102	-
'03	1,357,717	1,465	100	-
'04	1,528,753	1,480	131	-
'05	1,559,201	2,937	53	-
'06	1,546,784	2400r	82	-
'07	1,384,000	2,424	48	-
'08	1,766,528	2,502	73	-
'09	1,898,135	2,580	72	-
'10	1,560,209	2,726	73	-
'11	1,865,546	2,726	115	-
'12	1,885,437	2,752	65	-
'13	1,819,686	2,944	116	-

\* r 표시된 수치는 수정치임

- 수산물 가공품 생산은 1970년대~1980년대 수산가공 기반시설 미비 등에 따라 대부분의 수산물을 미가공 상태로 유통하여 1970년대 184천톤, 1980년대 367천톤에 불과하였음.
- 1990년대 이후 가공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자동화에 따른 고차가공의 증가와 가공품의 소비 증가에 따라 현재까지 꾸준히 가공품을 생산하여, 2013년에는 생산량이 1,820톤을 생산하였고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출처 :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39.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물량

(단위: 톤)

연 도	계	가락동시장	노량진시장	구리시장	안양시장	기타시장
'90	353,780	155,436	172,044	-	-	26,300
'95	389,772	192,573	132,491	-	-	64,708
'96	389,470	185,955	142,397	-	-	61,118
'97	459,679	183,514	140,296	49,059	19,691	67,119
'98	445,956	162,858	127,673	69,988	12,712	72,725
'99	406,253	148,287	116,698	64,284	11,604	65,380
'00	409,006	148,491	118,732	71,013	12,981	57,789
'01	421,424	145,732	116,951	69,345	13,724	75,672
'02	379,586	127,044	108,381	64,073	14,609	65,479
'03	379,197	125,685	105,200	58,776	16,250	73,286
'04	385,851	123,928	102,191	59,847	18,481	81,404
'05	384,547	121,152	98,102	60,447	18,878	85,968
'06	382,049	124,311	98,300	55,571	13,542	90,325
'07	382,373	122,530	101,049	56,151	12,061	90,582
'08	373,613	117,781	99,336	53,718	11,166	91,612
'09	411,833	120,855	100,799	52,683	8,836	128,660
'10	418,216	119,671	102,109	46,628	7,601	142,207
'11	444,023	111,474	96,801	42,472	8,419	184,857
'12	450,933	106,915	101,137	40,887	8,853	193,141

- 도매시장 취급물량은 2012년 기준으로 수도권 시장인 가락동, 노량진, 구리시장의 거래량이 248,939톤으로 전체 18개 도매시장(단독 공판장 2개 포함) 거래량의 55.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출처 : aT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 40.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금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가락동시장	노량진시장	구리시장	안양시장	기타시장
'90	462,044	248,964	182,570	-	-	30,510
'95	814,113	399,115	286,644	-	-	128,354
'96	807,664	395,509	300,140	-	-	112,015
'97	881,058	377,895	295,142	62,762	13,998	131,261
'98	894,996	352,888	281,397	91,081	25,542	144,088
'99	886,783	347,596	282,605	90,853	27,620	138,109
'00	901,355	365,375	277,024	114,383	24,936	119,637
'01	1,052,979	408,653	305,364	129,265	32,819	176,878
'02	1,024,534	390,939	315,459	125,378	36,451	156,307
'03	980,524	347,838	308,595	118,812	42,902	162,377
'04	1,093,646	385,961	330,459	126,250	50,874	200,102
'05	1,082,112	392,390	310,225	119,932	53,081	206,484
'06	1,082,561	394,242	318,138	114,438	38,067	217,676
'07	1,074,994	388,399	322,128	116,611	28,689	219,167
'08	1,128,417	404,353	331,221	128,292	26,931	237,620
'09	1,321,302	428,051	343,084	135,351	30,656	384,160
'10	1,443,592	476,241	347,087	130,601	30,053	459,610
'11	1,522,798	475,426	357,689	131,203	31,106	527,374
'12	1,468,981	449,494	363,513	139,095	32,292	484,587

- 도매시장 거래금액은 취급 물량 및 단가 변동에 연동됨

출처 : aT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 41. 연도별 수산물 소비량

### ▼ 우리나라 1인 수산물 연간 소비량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수산물 소비량 (kg/인/Yr)	43.7	43.6	34.7	38.3	36.8	42.2	44.7	44.9	49.0	49.5	56.5	55.0	54.9	49.8	51.3	53.5	54.9

※ 수산물 소비량 : 어패류(Fishes and Shellfishes) + 해조류(Seaweeds)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식품수급표 자료

### ▼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률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자급율(%)	97.2	98.3	112.5	102.2	93.9	80.6	70.2	69.1	63.7	73.0	72.5	79.1	80.8	83.0	78.0	81.0	75.3

※ 자급율 : 어패류(Fishes and Shellfishes) + 해조류(Seaweeds)

### ▼ 국가별 연간 식품공급량

구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뉴질랜드
수산물 (kg/인/Yr)	80.5	56.6	24.1	21.1	23.4	21.9	33.6	26.3

※ 기준(한국2012년, 타 국가 2009년)  
 ※ 조식품(폐기물을 감안하지 않은 식품)공급량 기준임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42. 수산물 수급 현황

### 총괄

(단위: 천톤)

	수요			합계	공급			비고
	국내소비	수출	이월		생산	수입	재고	
'01	3,260	1,080	641	4,981	2,665	1,806	510	
'02	3,434	1,140	769	5,343	2,476	2,226	641	
'03	3,578	1,202	743	5,523	2,486	2,268	769	
'04	4,092	1,116	531	5,739	2,519	2,477	743	
'05	4,169	1,121	512	5,802	2,714	2,557	531	
'06	4,568	1,047	575	6,190	3,032	2,646	512	
'07	4,625	1,211	618	6,454	3,275	2,604	575	
'08	4,280	1,266	567	6,113	3,360	2,135	618	
'09	4,071	1,336	528	5,935	3,182	2,186	567	
'10	3,625	1,751	603	5,979	3,112	2,339	528	
'11	3,813	1,466	639	5,918	3,256	2,059	603	
'12	4,024	1,072	877	5,973	3,170	2,144	659	

### 주요품목별

(단위: 톤)

		수요			합계	공급		
		국내소비	수출	차년이월		생산	수입	전년재고
명태	'10	321,497	38,801	100,544	460,842	46,683	363,460	50,699
	'11	284,106	39,064	86,853	410,023	48,794	260,685	100,544
	'12	296,977	52,338	110,705	460,020	39,026	330,030	90,964
오징어	'10	229,664	61,912	55,509	347,085	224,546	49,878	72,661
	'11	226,390	66,747	58,307	351,444	241,773	54,162	55,509
	'12	290,835	59,237	129,140	479,212	262,934	130,208	86,070
고등어	'10	136,289	26,029	51,193	213,511	99,819	42,560	71,132
	'11	126,435	42,403	93,917	262,755	150,762	60,799	51,194
	'12	102,392	65,709	66,371	234,472	125,843	32,295	76,334
갈치	'10	86,051	1,688	13,578	101,317	59,823	29,369	12,125
	'11	58,682	1,969	15,400	76,051	33,533	28,940	13,578
	'12	56,090	1,713	19,885	77,688	34,326	27,192	16,170
조기	'10	60,546	343	21,636	82,525	36,691	44,242	23,571
	'11	87,213	538	33,055	120,806	62,742	36,428	21,636
	'12	71,623	337	20,299	92,259	39,541	27,926	24,792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 해양수산부 유통기공과

### 43. 어업권 현황

(단위: 칸)

	허 가			면 허			신고 어업	내수면		
	근해	연안	구획어업	정치망	마을어업	천해양식		허가	면허	신고
'80	7,309	-	-	-	-	-	-	-	-	-
'90	7,837	-	-	-	-	-	-	2,811	631	1,513
'94	7,759	61,349	1,995	632	2,350	8,588	58,469	3,192	486	2,144
'95	7,742	62,072	2,285	606	2,345	8,040	61,872	3,344	455	2,411
'96	7,573	60,682	5,217	592	2,284	8,061	61,240	3,403	418	2,461
'97	7,374	65,925	6,843	582	2,366	8,047	55,626	3,645	349	2,462
'98	7,158	83,592	7,485	575	2,309	8,232	58,660	4,089	303	2,403
'99	6,914	83,580	7,587	565	2,286	8,243	58,779	4,179	273	2,507
'00	5,874	86,129	8,406	555	2,291	8,462	58,663	4,155	228	2,751
'01	5,591	85,144	8,378	553	2,362	8,554	56,521	4,889	219	2,802
'02	4,904	84,949	8,445	552	2,439	8,717	55,234	4,712	211	3,275
'03	4,637	84,311	8,260	556	2,539	8,839	57,004	4,991	199	3,666
'04	4,467	81,489	8,271	479	2,447	9,046	55,491	4,977	166	3,415
'05	4,359	80,518	7,876	553	2,726	9,110	61,897	4,820	155	3,542
'06	4,246	75,723	7,611	551	2,840	9,297	63,498	4,934	146	3,479
'07	4,061	71,756	7,446	555	2,835	9,352	67,773	4,882	115	3,366
'08	3,957	66,660	7,138	540	2,897	9,555	100,984	4,962	92	3,417
'09	3,406	61,388	6,899	536	3,020	9,709	121,453	4,847	82	3,454
'10	3,276	58,091	6,540	536	3,058	9,815	127,320	4,708	75	3,674
'11	3,280	55,432	6,424	526	2,892	9,795	129,447	4,983	61	3,905
'12	3,238	54,866	6,327	520	3,309	9,755	123,920	4,986	67	4,134
'13	3,188	53,882	6,193	513	2,844	9,922	104,020	4,904	69	4,264

- 근해어업 허가는 1992년 신규허가 금지와 1994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시행으로 1992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허가정수를 자원량에 맞게 조정('03년, '07년, '13년)
- 연안어업은 1997년 무허가·무등록어선 양성화 조치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허가억제(2000년) 및 허가정수 설정(2002년), 허가정수 조정(2013년)으로 감소추세이며, 양식어업은 2000년도 해조류 불법양식어장의 양성화조치로 어업권 증가
- 내수면어업은 1998년도 정부의 맑은물 공급정책과 수질환경 규제강화로 인한 가두리양식 면허 불허로 감소하였고, 허가 및 신고어업은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낚시어업이 꾸준히 증가

출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 44. 연도별 어선 세력

(단위: 천톤)

	계		동력선		무동력선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60	34,438	107,017	4,349	57,979	30,089	49,038
'70	68,355	358,366	14,085	268,182	54,270	90,184
'80	77,574	770,688	51,113	740,266	26,461	30,422
'90	99,658	976,731	79,365	954,977	20,293	21,754
'95	76,801	958,599	71,041	951,213	5,760	7,386
'97	81,000	964,471	73,780	958,155	7,220	6,316
'98	90,997	978,334	82,803	971,704	8,194	6,630
'99	94,852	991,956	87,502	986,339	7,350	5,617
'00	95,890	923,099	89,294	917,963	6,596	5,136
'01	94,935	884,853	89,347	880,467	5,588	4,386
'02	94,388	816,563	89,327	812,629	5,061	3,934
'03	93,257	744,335	88,523	750,663	4,734	3,672
'04	91,608	724,980	87,203	721,398	4,405	3,582
'05	90,735	700,810	87,554	697,956	3,181	2,854
'06	86,113	673,719	833,58	671,299	2,755	2,420
'07	85,627	663,869	82,796	661,519	2,831	2,350
'08	80,766	621,338	78,280	619,098	2,486	2,239
'09	77,713	594,772	75,247	592,445	2,466	2,327
'10	76,974	600,622	74,669	598,365	2,305	2,257
'11	75,629	606,627	73,427	604,414	2,202	2,213
'12	75,031	610,005	72,922	607,887	2,109	2,117
'13	71,287	607,224	69,323	605,303	1,964	1,921

- 1960~1990년도까지는 어선 현대화의 영향으로 어선세력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1990년이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으로 1996년까지 어선세력이 감소함
- 1997년 이후 무허가·무등록어선 일제정비 추진으로 소형어선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00년이후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으로 어선세력이 감소함

출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45. 연도별 · 톤급별 어선 척수 현황

(단위: 척)

	계	1톤미만	1~5톤	5~10톤	10~50톤	50~100톤	100~200톤	200톤이상
'80	77,574	23,314	42,839	3,507	5,077	1,805	450	582
'90	99,658	34,428	52,797	4,530	4,552	1,937	630	784
'95	76,801	26,403	36,809	6,220	4,075	1,904	676	714
'97	81,000	31,356	36,162	6,329	3,810	2,001	642	700
'98	90,997	36,712	40,361	6,879	3,788	1,950	613	694
'99	94,852	38,067	42,884	7,019	3,717	1,872	595	698
'00	95,890	37,542	44,794	7,332	3,465	1,584	518	655
'01	94,935	35,013	46,424	7,662	3,249	1,463	490	634
'02	94,388	33,967	47,156	7,963	3,010	1,271	422	599
'03	93,257	33,123	47,040	8,091	2,851	1,168	407	577
'04	91,608	31,974	46,920	8,057	2,644	1,084	369	560
'05	90,735	30,962	47,253	8,048	2,559	1,024	346	543
'06	86,113	29,753	44,892	7,085	2,501	1,012	341	529
'07	85,627	28,839	45,790	6,672	2,469	991	341	525
'08	80,766	27,118	43,484	6,163	2,298	900	311	492
'09	77,713	25,855	42,371	5,811	2,111	800	273	492
'10	76,974	24,454	42,957	5,967	805	862	398	778
'11	75,629	22,627	43,213	6,187	777	881	404	791
'12	75,031	21,295	43,634	6,512	2,061	785	260	484
'13	71,287	18,644	42,260	6,776	2,090	777	261	479

- 10톤미만 소형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10톤이상 어선은 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감소 추세임
- 다만, 1997년부터는 무등록어선 일제정비 추진으로 10톤미만 소형어선이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전체 어선이 감소 추세임

출처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45. 연도별 · 어업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톤)

		계	원 양	연근해	양 식	내수면	기 타
'75	척수	67,655	825	44,517	20,767	1,000	546
	톤수	647,700	353,055	253,063	25,939	941	14,702
'80	척수	77,574	654	41,874	31,631	2,874	541
	톤수	770,688	317,639	379,295	35,629	2,674	35,451
'90	척수	99,658	783	57,648	37,831	3,057	339
	톤수	976,731	405,550	451,272	46,601	2,559	70,749
'95	척수	76,801	625	51,357	19,906	2,399	2,514
	톤수	958,599	352,002	445,196	27,140	1,653	132,608
'98	척수	90,997	628	64,284	20,911	2,624	2,550
	톤수	978,334	357,412	438,205	27,894	1,703	153,120
'99	척수	94,852	620	66,776	21,742	2,742	2,972
	톤수	991,956	365,146	434,143	29,733	1,589	161,345
'00	척수	95,890	597	68,629	20,359	3,664	2,641
	톤수	923,099	349,420	397,868	28,516	2,874	144,421
'01	척수	94,935	568	67,990	19,856	4,330	2,191
	톤수	884,853	335,552	386,181	28,945	3,490	130,685
'02	척수	94,388	543	67,411	19,751	4,683	2,000
	톤수	816,563	318,855	362,163	29,137	4,112	102,296
'03	척수	93,257	517	66,698	19,228	4,510	2,304
	톤수	754,335	273,086	344,992	28,009	3,941	104,307
'04	척수	91,608	491	66,063	18,792	3,991	2,271
	톤수	724,980	261,237	330,203	27,296	3,102	103,142
'05	척수	90,735	493	64,579	18,244	4,164	3,255
	톤수	700,810	257,614	322,811	27,131	3,518	89,736
'06	척수	86,113	483	63,518	16,337	4,150	1,625
	톤수	673,719	258,422	312,580	23,955	3,557	75,204
'07	척수	85,627	470	63,100	16,352	4,000	1,705
	톤수	663,869	249,952	308,512	25,226	3,354	76,825
'08	척수	80,776	448	57,183	17,104	4,040	1,988
	톤수	621,338	242,666	281,038	28,270	3,728	65,441
'09	척수	77,713	370	53,799	17,786	3,824	1,934
	톤수	594,772	188,174	257,292	31,077	2,974	115,255
'10	척수	76,974	379	50,757	17,594	2,973	5,271
	톤수	600,622	199,859	249,695	32,845	2,149	116,074
'11	척수	75,629	377	49,488	17,737	2,860	5,167
	톤수	606,627	200,316	248,233	35,155	1,714	121,210
'12	척수	75,031	349	47,955	18,389	2,937	5,401
	톤수	610,005	195,073	234,702	41,302	1,863	137,065
'13	척수	71,287	315	47,493	16,772	2,908	3,799
	톤수	607,224	178,580	242,944	38,586	1,765	145,347

- '90년까지 어선세력증가 추세와 관련 어업별 어선세력도 증가하였으나, 원양어선은 '90년 이후, 연근해어선은 '98년 이후, 양식어선도 '99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출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47. 인공어초 시설 현황

### ▽ 종류별 시설면적

(단위 : ha)

	계	사각형	반구형	잠보형	육교형	원통형	뿔삼각형	요철형	강제어선	사다리형	기타
'90	8,092	6,529	506	767	70	-	16	81	-	-	123
'93	8,323	6,236	1,058	698	-	69	-	135	-	-	127
'94	10,436	8,798	496	364	139	68	331	240	-	-	-
'95	10,837	8,625	893	633	62	-	324	300	-	-	-
'96	11,120	8,512	1,211	581	80	-	417	319	-	-	-
'97	12,213	9,031	1,177	640	588	-	458	265	-	-	54
'98	10,357	7,527	969	484	132	-	490	189	-	-	566
'99	8,651	6,232	569	496	196	-	261	296	-	-	601

	계	사각형	잠보형	육각형	뿔삼각	신요철	2단 상자형 강제	상자형 강제	대형 전주	대형 강제	기타
'00	9,209	6,367	496	-	175	177	48	48	-	-	1,898
'01	5,670	3,891	320	48	107	63	70	87	-	-	1,084
'02	8,482	5,145	384	79	230	166	464	497	18	-	1,499
'03	7,908	2,756	304	160	85	82	1,134	481	-	140	2,766
'04	5,668	2,557	208	80	145	146	981	444	332	621	154
'05	5,263	1,532	512	478	119	155	493	485	240	144	1,105
'06	5,261	838	368	432	52	136	708	448	496	64	1,719
'07	4,837	617	144	224	20	100	720	160	622	208	2,022
'08	3,899	434	-	224	20	46	688	128	416	160	1,783
'09	4,319	608	-	80	4	12	112	80	-	304	3,119
'10	4,167	552	-	32	4	14	-	48	-	144	3,373
'11	3,133	368	-	128	-	36	48	-	-	48	2,505
'12	3,274	256	-	128	-	-	-	-	-	72	2,818
'13(p)	2,658	-	-	-	-	-	-	-	-	-	-

- 2000년까지는 콘크리트 사각형 어초가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강제어초,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세라믹어초 등 다양한 재질의 어초가 새로이 개발되어, 강제 및 복합재료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사각형어초의 비율은 66%로 감소하였다.

지역별 시설 면적

(단위 : ha)

	계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80	494	-	-	-	-	150	-	-	78	116	88	62
'90	8,092	176	-	-	393	1,065	493	377	1,630	1,123	1,730	1,105
'93	8,323	112	-	-	446	1,187	562	373	2,041	1,050	1,299	1,253
'94	10,436	83	-	-	462	1,198	1,173	708	2,188	1,212	1,703	1,709
'95	10,837	93	202	-	315	1,338	1,296	717	2,187	1,201	1,728	1,760
'96	11,120	96	521	-	313	1,354	1,302	782	2,164	1,236	1,767	1,585
'97	12,213	134	621	-	315	1,253	1,288	926	2,331	1,213	2,438	1,694
'98	10,357	208	713	282	275	1,115	1,008	848	1,894	1,152	1,518	1,344
'99	8,651	176	624	128	176	682	1,152	592	1,622	961	1,329	1,209
'00	9,209	176	599	160	192	665	1,153	558	1,793	996	1,602	1,346
'01	5,654	96	385	112	272	287	768	357	1,114	499	1,071	693
'02	8,482 (35척)	203	801 (13)	224	224	777 (2)	896	656 (6)	1,559	608 (6)	1,422 (8)	1,112
'03	7,908 (53척)	164	758 (16)	76	32	590 (2)	528	528 (4)	2,397 (27)	428	1,174 (4)	1,233
'04	5,668 (14척)	108	492 (5)	52	324	350	612	535 (4)	1,341	364	560 (5)	930
'05	5,734	104	564	68	416	354	772	531	1,098	140	580	1,107
'06	5,261	88	328	64	244	240	516	1,142	896	104	570	1,069
'07	4,837	88	244	56	340	230	528	1,022	868	164	268	1,029
'08	3,899	72	196	74	400	184		864	829	164	268	848
'09	4,319	96	492	60	388	204	564	496	831	132	164	892
'10	4,167	96	660	80	204	164	248	512	645	104	566	888
'11	3,133	80	116	8	224	88	276	304	332	120	353	1,232
'12	3,274	64	276	4	180	204	288	384	388	192	478	816
'13(p)	2,658	72	112	4	164	108	140	368	348	112	462	808

- 인공어초시설사업 초기(1971~1980년)에는 시험시설단계로 소규모로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1991년 이후에는 동사업의 시설효과가 입증되면서 전국 11개 연안 시·도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 현재 총 시설대상면적(307천ha) 대비 219천ha(71%)가 시설됨

## 48. 불법어업 단속 실적

(단위 : 건수)

	계	본부	해경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	3,773	954	1,950	111	11	9	34	5	132	68	141	34	309	15
'08	4,449	1,106	2,502	108	29	8	17	11	74	79	155	24	305	31
'09	3,394	875	1,474	88	47	12	34	46	50	100	167	22	459	20
'10	3,221	610	1,871	64	27	54	39	7	56	93	203	18	161	18
'11	3,293	818	1,685	72	27	54	31	14	112	98	215	30	135	16
'12	2,833	847	1,189	42	42	4	26	14	69	87	348	38	115	12
'13	2,959	923	1,340	46	41	1	33	3	87	79	287	40	69	10

- '95년 4,054건이던 불법어업 건수가 지속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과 어업인의 자발적인 준법어업 노력에 의해 불법어업이 2013년에는 2,959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출처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49.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단위: 척)

	외 국 어 선				국내어선	어업지도선 보유현황
	소계	중국	일본	기타		
'90	-	-	-	-	2,862	15
'95	46	45	1	-	3,595	15
'97	39	39	-	-	3,443	16
'98	39	39	-	-	3,157	18
'99	84	80	4	-	3,277	20
'00	63	62	1	-	3,161	25
'01	177	174	3	-	3,291	25
'02	176	175	1	-	3,102	25
'03	240	240	-	-	2,067	28
'04	449	443	6	-	3,673	30
'05	584	584	-	-	4,054	32
'06	522	522	-	-	3,015	33
'07	494	494	-	-	3,773	33
'08	432	432	-	-	3,198	33
'09	381	381	-	-	3,394	34
'10	370	370	-	-	3,221	34
'11	534	534	-	-	3,293	34
'12	467	467	-	-	2,833	34
'13	488	487	1	-	2,959	34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건수는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2001년 이후 중국어선의 단속건수가 급격히 증가 하였음

출처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50. 국가 및 지방어항 건설 추진 현황

### ▶ 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투자현황(시설비)			
	총 계 획	'13까지	잔사업비	투자율
계	103,120	46,602	56,518	45%
국가어항	81,044	33,039	48,005	41%
지방어항	22,076	13,563	8,513	61%

### ▶ 완공 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대 상 항	'13까지 완공	미 완 공	완 공 율
계	394	275	119	70%
국가어항	109	100	9	92%
지방어항	285	175	110	61%

출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51. 시·도별 국가 및 지방어항 건설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완공항(완공율%)	개발중인항	미개발항	
합계	계	394	275개항(70%)	94개항(24%)	25개항(6)
	국가어항	109	100개항(92)	3개항(3)	6개항(5)
	지방어항	285	175개항(61)	91개항(32)	19개항(7)
부산	국가어항	3	다대포, 대변(67)	-	천성(33)
	지방어항	13	9개항(70)	2개항(15)	2개항(15)
인천	국가어항	5	어유정, 장봉, 덕덕도, 울도, 선진포(100)	-	-
	지방어항	15	10개항(67)	5개항(33)	-
울산	국가어항	2	정자, 방어진항(100)	-	-
	지방어항	4	4개항(100)	-	-
경기	국가어항	1	-	-	궁평(100)
	지방어항	5	4개항(80)	1개항(20)	-
강원	국가어항	14	대진, 거진, 아야진, 대포, 남애, 사천진, 금진, 덕산, 장호, 임원, 수산, 안목, 공현진, 궁촌(100)	-	-
	지방어항	14	9개항(64)	5개항(36)	-
충남	국가어항	8	안흥, 오천, 외연도, 흥원, 모항, 남당, 삼길포(88)	-	장고항(12)
	지방어항	29	22개항(76)	4개항(17)	3개항(11)
전북	국가어항	6	연도, 위도, 격포, 말도, 여청도(83)	구시포(17)	-
	지방어항	12	5개항(42)	5개항(42)	2개항(16)
전남	국가어항	31	국동, 돌산, 안도, 녹동, 발포, 시산, 풍남, 계마, 안마, 원평, 전장포, 서거차, 서망, 어란진, 마량, 청산도, 소안, 사동, 수품, 여서, 득암, 낭도, 초도, 여호, 가거도, 우이도, 보옥, 연도, 회진(94)	도장(3)	이목(3)
	지방어항	91	46개항(51)	34개항(37)	11개항(12)
경북	국가어항	14	죽변, 대진, 구계, 대보, 양포, 감포, 읍천, 저동, 사동, 축산, 현포, 오산, 구산, 남양(100)	-	-
	지방어항	23	15개항(65)	7개항(31)	1개항(4)
경남	국가어항	19	광암, 외포, 능포, 맥전포, 신수, 능양, 미조, 삼덕, 옥지, 물건, 다대포, 매물도, 지세포, 구조라, 원전, 호두(85)	대포근포(5)	남포, 노랑항(10)
	지방어항	61	45개항(74)	16개항(26)	-
제주	국가어항	6	신양, 모슬포, 위미, 도두, 김녕, 하효(100)	-	-
	지방어항	18	6항(33)	12개항(67)	-

출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52. 어촌 정주어항 지정 및 소규모어항 현황

(단위: 개소)

시·도	시·군·구	전체소규모 어항수			어촌정주어항 지정수		
		계	육지	도서	계	육지	도서
합계	11개 시·도 66개 시군구	1,309	548	761	595	480	115
부산	기장군	7	7		2	2	
	해운대구	2	2				
	수영구	1	1				
	남구	1	1				
	영도구	2	2				
	서구	1	1				
	사하구	4	4				
	강서구	10	10		3	3	
	사상구	1	1				
	소계(9)	29	29	0	5	5	0
인천	중구	3		3	5	4	1
	서구				1		1
	강화군	19	15	4	7	7	
	옹진군	17		17	18	2	16
		소계(4)	39	15	24	31	13
울산	동구	7	7				
	북구	4	4		4	4	
	울주군	2	2		5	5	
		소계(3)	13	13	0	9	9
경기	안산시	10	8	2	2	2	
	평택시	1	1				
	화성시	1	1		7	4	3
	김포시				2	2	
	시흥시	4	4				
		소계(5)	16	14	2	11	8
강원	강릉시	3	3		3	3	
	동해시				3	3	
	속초시				2	2	
	삼척시				9	9	
	고성군	1	1		2	2	
	양양군	3	3		5	5	
		소계(6)	7	7		24	24
충남	보령	13	5	10	2	2	
	서산	7	6	1	5	3	2
	서천	3	3				
	홍성	2	1	1			
	태안	14	12	2	13	13	
	당진	4	3	1			
		소계(6)	43	30	15	20	18

시·도	시·군·구	전체소규모 어항수			어촌정주어항 지정수		
		계	육지	도서	계	육지	도서
전북	군산	1		1	9	9	
	김제						
	고창	1		1			
	부안	8	2	6			
	소계(4)	10	2	8	9	9	
전남	목포	8	1	7			
	여수	118	52	66	51	26	25
	순천	2	2		4	4	
	광양	10	10				
	고흥	124	67	57			
	장흥	27	26	1	1		1
	강진	22	21	1			
	해남	39	33	6	2	2	
	무안	17	15	2	10	10	
	함평	4	4		1	1	
	영광	16	7	9	2	2	
	완도	202	30	172	2		2
	신안	198	4	194			
	보성	6		6	11	11	
	진도	100		100			
소계(15)	893	272	621	84	56	28	
경북	포항	44	44				
	경주	7	7				
	영덕	14	14		5	5	
	울진	12	12		4	4	
	울릉	8		8			
	소계(5)	85	77	8	9	9	
경남	(마산)						
	창원	35	29	6	6	4	2
	통영	97	42	55	49	25	24
	거제	11	11		82	54	28
	고성	2	2		59	59	
	사천				40	34	6
	남해				95	92	3
	하동				11	10	1
소계(7)	145	84	61	345	281	64	
제주	제주	11	1	10	36	36	
	서귀포	18	16	2	10	10	
	소계(2)	29	17	12	46	46	

※ 지자체(시·군·구)에서 해수부에 제출한 자료(2013년말 기준)  
 ※ 연안 시·군·구 중 어항이 없는 부산(동구, 중구), 인천(동구, 연수구, 남동구), 울산(남구, 중구) 전남(영암) 제외  
 출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53. 어촌종합개발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실적

### ▽ 1단계(160개 권역) 투자 실적('94~'08)

(단위 : 백만원)

	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권역수	160	10	11	17	23	16	8	8	16	6	15	4	1	17	8	-
투자액	554,531	13,170	52,500	56,000	55,500	42,100	34,940	37,352	34,968	34,980	43,140	50,418	32,817	38,646	14,000	14,000

### ▽ 2단계(70개 권역) 투자실적 및 계획('07~계속)

(단위 : 백만원)

	계	'07	'08	'09	'10	'11	'12	'13	향후계획
계획 권역수	70	14	-	10	6	16	2	4	18
실적 권역수	52	14	-	10	6	16	2	4	18
투자액	320,916	21,530	24,789	25,831	26,457	39,484	35,019	34,594	113,212

### ▽ 시·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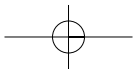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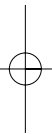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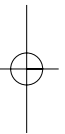
(단위 : 권역, 백만원)

시·도	총 계획		실 적 ('94~2013)		계 획			
					'14		'15이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30	875,447	212	762,235	7	21,463	11	91,749
부 산	3	10,478	3	10,478			0	0
인 천	7	22,417	6	19,417			1	3,000
울 산	4	15,948	4	15,106		842	0	0
경 기	4	18,270	3	14,270	1	1,600	0	2,400
강 원	17	56,620	17	56,620			0	0
충 남	13	49,257	12	45,257	1	390	0	3,610
전 북	10	38,487	10	34,168		1,733	0	2,586
전 남	87	336,103	79	284,301	4	10,687	4	41,115
경 북	22	82,520	18	65,520			4	17,000
경 남	47	185,899	44	161,379	1	4,394	2	20,126
제 주	16	59,448	16	55,719		1,817	0	1,912

※ 신규사업 착수 기준

- '94년 농어촌특별세 재원 5,545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 160개 권역을 완료('94~'08),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07년부터 70개 권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2단계사업(3,209억원)을 추진 중

출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2013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14년 11월 일 인쇄

2014년 11월 일 발행

발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18

해양수산부 (044)200-5426

디자인 및 인쇄 : 한라기획 (044)868-7334~5

---

